

환 경 법 전

(상)

2020. 12.



환경부

일 러 두 기

1. 수록 법령의 범위

가. 이 법령집은 2020년 12월 현재 주요 시행중인 환경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수록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개정·공포되어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의 일부 조항은 음영 처리하였습니다.

2. 수록순서

법령 수록은 분야별로 배열하였으나 일부 관련이 있는 법령인 경우에는 같이 게재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연혁의 표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을 본문 법령제명 아래에 법령의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제·개정 순서에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4. 본 법령집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내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에 게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제·개정 되는 법령도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에 게재하겠습니다.

전 체 목 차

제1편 녹색전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02.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	71
03.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93
0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3
0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155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01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335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1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1
10.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589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611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627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643

제2편 환경일반

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663
02.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705
0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759

0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765
0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771

제3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779
0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793
0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815
0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33
0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875
0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01
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921
0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937
0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65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5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275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1305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42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1543

제4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5
0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853
03.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869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37
0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07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19
0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217
0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599
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647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701

제5편 대기·기후

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2715
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193
0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235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241
05.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311
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379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3439

제6편 환경보전

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463
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25
03.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635
0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시행규칙	3727
05.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793
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921
07.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931
0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997
0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033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103
11. 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4221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97
13.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355

제7편 물통합

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31
02.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643
0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51
04.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4771
05. 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779
06. 먹는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817

0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969
08.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4983
09. 상수원 관리규칙	5187
10.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5207
11.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5223
12.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5275
1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303
14.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413
15.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5421
1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5569
17.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587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5709
19.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5821

제8편 물환경

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831
0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5961
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311
04.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6365

제9편 수자원

0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67
02. 댐사용권등록령·시행규칙	6665
0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6681
0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709
0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777
06.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6825
07.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005
0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	7011

제10편 부 록

0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7051
--------------------------	------

제1편

녹색전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3
02.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	71
03.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93
0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3
0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155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01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335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1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1
10.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589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611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627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643

제1편
녹색전환

0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0	제1조(목적) 10	제1조(목적) 10
제2조(기본이념) 10		
제3조(정의) 1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1		
제5조(사업자의 책무) 12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2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12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12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13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3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3		
제11조(보고) 14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 1. 5.>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14	제2조(환경기준) 14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15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15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15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5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15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6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16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17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17 제17조 삭제 18	제4조(중기계획의 내용 등) 18 제5조(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 18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19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19 제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19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9 제18조의2(시·도 환경계획의 승인) 20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20 제19조의2(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 21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21 제21조(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21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22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22	제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20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22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 22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23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24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24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25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25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25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25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5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27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27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27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27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28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28		제3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26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28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28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29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29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29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29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30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29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30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30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31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31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32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32 제41조(환경영향평가) 32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32 제43조(피해 구제) 33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3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33 제46조(회계의 세입) 33 제47조(회계의 세출) 35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37 제49조(차입금) 37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37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정 2011. 7.21 법률 제10893호</p> <p>2011. 7.28 법률 제10977호 (09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12. 2. 1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p> <p>2012. 2. 1 법률 제11268호</p> <p>2013. 1. 1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2013. 4. 5 법률 제11751호</p> <p>2013. 7.16 법률 제1191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p> <p>2013. 7.16 법률 제119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2013. 7.30 법률 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p> <p>2015. 7.20 법률 제1341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2015.12. 1 법률 제13535호</p> <p>2015.12.15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7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7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8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8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2016. 1.27 법률 제13894호</p> <p>2016. 5.29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p> <p>2016.12.27 법률 제14494호</p> <p>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p> <p>2018.12.31 법률 제1609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2019. 1.15 법률 제16267호</p> <p>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2019.11.26 법률 제16619호</p> <p>2019.12.31. 법률 제16861호</p>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령을 위한 법률)</p> <p>2020.12.29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p> <p>2021. 1. 5 법률 제17857호</p>	<p>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7호</p> <p>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정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p> <p>2012.11.27 대통령령 제24203호</p> <p>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2017. 4.25 대통령령 제28002호</p> <p>2018. 3.27 대통령령 제28720호</p> <p>2018. 5.28 대통령령 제28919호 (산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2019. 2. 8 대통령령 제2951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p> <p>2020. 5.12 대통령령 제30674호</p>	<p>제정 2019. 7.12 환경부령 제816호</p> <p>2020. 5.26 환경부령 제865호</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16. 1. 27.,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p> <p>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p> <p>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p> <p>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p> <p>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p>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11조(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21. 1.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환경기준</p> <p>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p>	<p>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p>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p>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기본적 시책</p> <p>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p>		<p>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 15.,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 	<p>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p> <p>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p> <p>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p> <p>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p> <p>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p> <p>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p> <p>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 1. 5.></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본조신설 2015. 12. 1.]</p> <p>제17조 삭제 <2021. 1. 5.></p>	<p>제4조(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 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p> <p>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5.></p> <p>제5조(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중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중기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키,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p> <p>③ 삭제 <2021. 1. 5.></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p>	<p>수정하려는 경우</p> <p>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p> <p>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제18조의2(시·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삭제 <2021. 1. 5.></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p>	<p>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p> <p>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p> <p>제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p> <p>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p> <p>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제19조의2(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제21조(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p>	<p>경우</p> <p>2.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군·구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p> <p>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입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p>	<p>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p> <p>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 희귀성·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 그 밖에 수질·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4. 25.]</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 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p>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p>	<p>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기술 교류 및 전시회·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⑤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기간·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p>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p>제3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p> <p>② 영 제1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말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생태 관련 실태조사·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p> <p>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p>	<p>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p> <p>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p> <p>[제목개정 2019. 1. 15.]</p> <p>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p>	<p>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p>	<p>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p> <p>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증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증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증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증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증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증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증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증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증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증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p> <p>③ 증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사회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p> <p>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p> <p>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p>	<p>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p> <p>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p> <p>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3. 7. 30., 2015. 7. 20., 2015. 12. 22., 2016. 1. 27., 2016. 5. 29., 2017. 1. 17.,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 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p> <p>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p> <p>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p> <p>3의3. 삭제 (2020. 12. 29.)</p> <p>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p> <p>5.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p> <p>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p> <p>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가산금</p> <p>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p> <p>7의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p> <p>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p> <p>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p> <p>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p> <p>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따른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용자금의 원리금수입</p> <p>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p> <p>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p> <p>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p> <p>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p> <p>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수입</p> <p>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p> <p>17.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수입</p> <p>18.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p> <p>19.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p> <p>20.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p> <p>2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p> <p>2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p> <p>23.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p> <p>24.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운영하여 생긴 수입금</p> <p>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 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4. 5., 2013. 7. 30., 2016. 1. 27., 2016. 5. 2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환경개선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2의2. 삭제 <2020. 12. 29.>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p> <p>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p> <p>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p> <p>14. 제46조제1호·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p> <p>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p> <p>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p> <p>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p> <p>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p> <p>②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용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7. 16., 2015. 12. 1.></p> <p>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p> <p>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p> <p>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p> <p>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p> <p>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p> <p>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장 환경정책위원회</p> <p>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21. 1. 5.></p> <p>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p> <p>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p>	<p>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한 사항</p> <p>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p> <p>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p> <p>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p> <p>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p> <p>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p> <p>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용 등에 관한 사항</p> <p>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p> <p>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p> <p>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9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p> <p>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p>	<p>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p>제26조(사업계획 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7조(사업 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장 보칙</p> <p>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p> <p>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p>	<p>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p>제28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미세먼지(PM-2.5)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p>	<p>부칙 <제816호, 2019. 7. 12.></p> <p>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65호, 2020. 5. 26.></p> <p>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p> <p>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5.12.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12.2.1]</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7. 「환경정책기본법」</p> <p>②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p>	<p>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7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9조제8호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p> <p>④ 급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p> <p>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p> <p>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p> <p>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⑨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p> <p>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p> <p>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p>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조·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p> <p>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⑮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⑯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⑰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4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42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p> <p>⑳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6조의3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의2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p> <p>⑲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203호, 2012. 11. 27.)</p> <p>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 목1)의 개정규정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div> <p>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p> <p>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㉖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㉗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p> <p>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㉙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㉚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p> <p>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002호, 2017. 4. 2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720호, 2018. 3. 2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19호, 2018. 5. 28.>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514호, 2019. 2.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교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교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 (PM-2.5)"로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p> <p>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㉔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㉕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p> <p>㉖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㉗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674호, 2020. 5. 12.〉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p> <p>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p> <p>⑮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256호, 2012. 2. 1.>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1268호, 2012. 2. 1.>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603호, 2013. 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p> <p>부칙 <제11751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913호, 2013. 7.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p> <p>부칙 (제11917호, 2013. 7.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p> <p>부칙 (제11980호, 2013. 7.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3410호, 2015. 7.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과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3535호, 2015. 12. 1.></p> <p>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550호, 2015. 12.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p> <p>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p> <p>부칙 (제13872호, 2016. 1. 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873호, 2016. 1. 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p> <p>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p> <p>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p> <p>부칙 (제13883호, 2016. 1. 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다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13889호, 2016. 1.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 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389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494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9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4229호, 2016. 5. 29.> (자원순환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p> <p>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p> <p>부칙 <제14494호, 2016. 12. 27.></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p> <p><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6096호, 2018. 12. 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p> <p>부칙 (제16267호, 2019. 1. 15.)</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p> <p>부칙 <제1661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861호, 2019. 12. 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7857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65
[별표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	69

[별표 1] <개정 2020. 5. 12.>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μ g/m ³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μ g/m ³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μ g/m ³ 이하
오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5 μ g/m ³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μ g/m ³ 이하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0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소음

(단위: Leq dB(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0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대장균군 (군수/100mL)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otal phos- phorus) (mg/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도안 모형	도안 요령	색상		
			원	물방울	입
매우 나쁨	la			파란색(cyan, C) 100-90%, 빨간색(magenta, M) 20-17%, 검은색(black, K) 5%	빨간색(mag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나쁨	lb			파란색(cyan, C) 85-80%, 노란색(yellow, Y) 43-40%, 빨간색(magenta, M) 8%	빨간색(magenta, M) 60%, 노란색(yellow, Y) 100%
약간 나쁨	II			파란색(cyan, C) 57-45%, 노란색(yellow, Y) 96-85%, 검은색(black, K) 7%	
보통	III			파란색(cyan, C) 20%, 검은색(black, K) 42-30%	
약간 나쁨	IV			빨간색(magenta, M) 35-3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0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급	도안 모형	도안 요령	색상		
			원	물방울	입
나쁨	V			빨간색(magenta, M) 65-55%,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매우 나쁨	VI			빨간색(magenta, M) 100-90, 노란색(yellow, Y) 100%, 검은색(black, K) 10%	

나. 도안 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 등급	생물 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생물(底棲生物)	어류	
매우 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물날도래, 바수연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 조류(藻類)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숫갯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 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꼬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 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 나쁨 ~ 매우 나쁨	원뿔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갈따꾸, 나방파리, 꽃등애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 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나. 호소

-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과 같다.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mg/L)	총질소 (total nitro- gen) (mg/L)	클로로필 -a (Chl-a) (mg/m ²)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항 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mg/L)
기 준	6.5 ~ 8.5	1,000 이하	0.01 이하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I (매우 좋음)	23 이하
II (좋음)	24 ~ 33
III (보통)	34 ~ 46
IV (나쁨)	47 ~ 59
V (아주 나쁨)	60 이상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단위: µg/L)

중금속류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6가크롬 (Cr ⁶⁺)
단기 기준*	3.0	7.6	34	9.4	19	200
장기 기준**	1.2	1.6	11	3.4	2.2	2.8

* 단기 기준: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mg/L)
모든 수역	6가크로뮴(Cr ⁶⁺)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0.0005
	폴리클로리네이트디페닐(PCB)	0.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0.25
	1.1.1 - 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0.005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별표 2] <신설 2020. 5. 1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2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0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7조의2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제1편
녹색전환

02

지속가능발전법·시행령

목 차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5	제1조(목적) 75
제2조(정의) 75	
제3조 삭제 75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 4. 7.>
제4조 삭제 75	제2조 삭제 75
제5조 삭제 75	제3조 삭제 75
제6조 삭제 76	제4조 삭제 76
	제5조 삭제 76
	제6조 삭제 76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76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76
제8조 삭제 76	제8조 삭제 76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76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76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76	
제11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76	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76
제12조 삭제 77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77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77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78	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78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1. 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4. 7.>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78	
제16조(위원회의 기능) 78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78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3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7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79
	제15조(회의) 79
	제16조(전문위원회) 79
	제17조 삭제 79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79	제18조(의견수렴 등) 79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79
	제20조(수당 등) 80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80	제21조(운영세칙) 80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80	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80
제21조(교육·홍보 등) 81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8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81	
부칙 82	부칙 82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정 2007. 8. 3 법률 제9612호 개정 2010. 1.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5. 3.27 법률 제13261호 2015.12. 1 법률 제13532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 위원회 소관 65개 법 를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08. 4.16 대통령령 제20769호 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 3.18 대통령령 제22077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2010. 4. 7 대통령령 제22113호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4.27 대통령령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6.22 대통령령 제26333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9.18 대통령령 제2917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8.26 대통령령 제3097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0 대통령령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p>제3조 삭제 (2010. 1.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p> <p>제4조 삭제 (2010. 1. 13.) 제5조 삭제 (2010. 1.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 4. 7.></p> <p>제2조 삭제 (2010. 4. 7.) 제3조 삭제 (2010. 4. 7.)</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6조 삭제 (2010. 1. 13.)</p> <p>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0. 1. 13.]</p> <p>제8조 삭제 (2010. 1. 13.)</p> <p>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p> <p>③ 삭제 (2010. 1. 13.)</p> <p>④ 삭제 (2010. 1. 13.)</p> <p>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p> <p>제11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제4조 삭제 (2010. 4. 7.)</p> <p>제5조 삭제 (2010. 4. 7.)</p> <p>제6조 삭제 (2010. 4. 7.)</p> <p>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제8조 삭제 (2010. 4. 7.)</p> <p>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p> <p>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2020. 5. 26.></p> <p>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목개정 2020. 5. 26.]</p> <p>제12조 삭제 <2010. 1.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p> <p>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p>	<p>협약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p> <p>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10. 4. 7.]</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1. 13.></p> <p>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 13.]</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0. 1. 13.]</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p>[제목개정 2010. 4. 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4. 7.></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② 당면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2020. 5. 26.></p> <p>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3.></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3.></p> <p>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목개정 2010. 1. 13.]</p> <p>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1. 13.]</p>	<p>제13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10. 4. 7.]</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4. 7.></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4. 7.></p> <p>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4. 7.></p> <p>제1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p> <p>제17조 삭제 <2010. 4. 7.></p> <p>제18조(의견수렴 등)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p>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p> <p>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p> <p>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2. 12. 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p> <p>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p> <p>제20조(수당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7.></p> <p>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4. 7.></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2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4.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0. 4. 7.> 2. 삭제 <2010. 4. 7.> 3.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p> <p>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p>	<p>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p>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12호, 2007. 8.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p> <p>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8조를 삭제한다.</p> <p>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69호, 2008. 4.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p> <p>제3조(법령 및 행정계획의 통보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때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작성된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가 수립·작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영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47호, 2009. 11. 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p> <p>⑳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p> <p>㉑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p> <p>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p> <p>제12조를 삭제한다.</p> <p>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p> <p>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p> <p>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8호 중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p> <p>⑩ 부터 ⑬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85호, 2010. 1.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53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p> <p>⑧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77호, 2010. 3. 18.> (연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4조 생략</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9. 제22조에 따른 국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p> <p>제17조의 제목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p> <p>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p> <p>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530호,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13호, 2010. 4. 7.)</p> <p>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p> <p>②부터 ③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755호, 2012. 4.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㉞ 및 ㉟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261호, 2015. 3. 2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32호, 2015. 12. 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⑰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⑳부터 ㉞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0>부터 <418>까지 생략</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33호, 2015. 6. 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07호, 2017. 1. 2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4>부터 <388>까지 생략</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부터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172호, 2018. 9.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2호, 2018. 11.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975호, 2020. 8.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68호, 2020. 11. 20.〉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p>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91
----------------------------------	----

[별표] <개정 2020. 11. 20.>

중·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8.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2.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5.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8.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21.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24.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2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8. 「도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31.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32.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3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7.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4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41.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42.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4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44.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4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4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49.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50.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51.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5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5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9.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6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62.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3. 「하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65.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6.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67.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68.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6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7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71.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7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제1편
녹색전환

03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97	제1조(목적) 97	제1조(목적) 97
제2조(정의) 9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8		
제4조(책무) 98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98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98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99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99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99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100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100	
	제5조의2(위원의 해촉) 100	
	제6조(위원회의 임기) 100	
	제7조(위원장의 직무) 100	
	제8조(회의) 101	
	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01	
	제8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01	
	제9조(간사) 101	
	제10조(수당 등) 101	
	제11조(운영 세칙) 102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02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102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103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103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103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103	제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103
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104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104	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104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104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105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105 제6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105
제14조 삭제 106		제7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106
제15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106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06
		제9조(위원장의 직무) 107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107
		제11조(간사) 107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107
		제13조(운영 세칙) 107
		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07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108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108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109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109	제15조 삭제 109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109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109		
제19조(청문) 110		
제20조(과태료) 110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10	
부칙 110	부칙 110	부칙 110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정 2008. 3.21 법률 제8949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5. 2. 3 법률 제13173호 2017. 3.21 법률 제14746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12.12 법률 제15199호 2018. 6.12 법률 제1566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 위 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법을 위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 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 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 	<p>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7호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 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역 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9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08.12. 3 환경부령 제309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 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입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2018.12.13 환경부령 제783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p> <p>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활용 및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p> <p>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p> <p>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p>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5. 26.></p> <p>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8. 6. 12.></p> <p>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p> <p>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제5조의2(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8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2.></p>	<p>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p> <p>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p> <p>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p> <p>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p> <p>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p> <p>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p> <p>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p> <p>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5. 26.></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p>	<p>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을 말한다.</p> <p>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p>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p> <p>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p>		<p>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p> <p>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p> <p>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p> <p>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p> <p>제6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p> <p>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p> <p>⑦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제14조 삭제 <2018. 6. 12.></p> <p>제15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정한다. <개정 2018. 12. 13.></p> <p>[제목개정 2018. 12. 13.]</p> <p>제7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3.></p> <p>[제목개정 2018. 12. 13.]</p> <p>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p>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2. 13.></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13.></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2. 13.></p> <p>②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3.></p> <p>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p> <p>제11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12. 13.></p> <p>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③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p> <p>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3.></p> <p>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13.></p> <p>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8조의3제1항</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p>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p>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p>	<p>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p>[본조신설 2018. 12. 13.]</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p>	<p>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p>	<p>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p> <p>제15조 삭제 <2016. 12. 30.></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있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3. 2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교육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4.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p>제1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제20조(과태료) ①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⑤ 삭제 <2018. 6. 12.>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49호, 2008. 3. 2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97호, 2008. 10.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9호, 2008. 12. 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11)까지 생략 <51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2조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1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 및 <18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3호, 2018. 1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258>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3173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지산자 등의 결정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자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746호, 2017. 3. 2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25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p> <p>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31>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56>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9349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99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60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11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18

[별표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1급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2급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3급	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이란 생태생활(2시간), 환경교육자원(4시간), 안전관리 및 교육(4시간) 및 체험환경교육(6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숍 연수과정(16시간)을 말한다.

0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정별 교육 내용

과정별	교육 내용		시 간		
	구분	교육 분야	계	이론	실습
1급 과정 (102시간 이상)	계		102	44	58
	환경 인식	환경심리학	8	4	4
		환경 지식	환경정책 및 법규	8	4
	환경교육네트워크 이해		8	4	4
	환경 교육 수행	수요조사	8	4	4
		환경교육공학(Ⅲ)	12	4	8
		전시기획	8	4	4
		환경교육기획	8	4	4
	기획 관리	지역사회환경	12	4	8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8	4	4
		조직운영관리	8	4	4
	발표	환경(교육)경영	8	4	4
		포드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계		144	65	79
2급 과정 (144시간 이상)	환경 인식	환경철학·사회학(Ⅱ)	4	4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Ⅱ)	8	4	4
		생태생활(Ⅱ)	10	2	8
	환경 지식	지역환경교육	12	4	8
		지구환경문제(Ⅱ)	6	6	-
		환경생태학	8	4	4
환경조사방법	12	4	8		

과정별	교육 내용		시 간		
	구분	교육 분야	계	이론	실습
환경 교육 수행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12	4	8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	8	4	4
		환경교육교재 연구 및 개발	12	4	8
		환경교육공학(Ⅱ)	6	2	4
기획 관리		환경교육시설 계획	8	4	4
		자원활동관리	8	4	4
	선택 과목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30	15	15
3급 과정 (96시간 이상)	계		96	48	48
	환경 인식	환경철학·사회학(Ⅰ)	4	4	-
		생태생활(Ⅰ)	2	2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Ⅰ)	4	4	-
	환경 지식	환경교육론	4	4	-
		환경교육자원	12	4	8
		지구환경문제(Ⅰ) (기후변화, 에너지, 위해성 등)	6	6	-
	환경 교육 수행	교수학습방법	12	4	8
		환경교육공학(Ⅰ)	6	2	4
		안전관리 및 교육	8	4	4
		체험환경교육	14	2	12
	선택 과목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24	12	12

비고: 1. 교육과정에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각 교육과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교육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와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않은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10	10	2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121
[별표 2]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7조 관련)	121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1.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별표 2] <개정 2018. 12. 13.>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7조 관련)

1. 인증표시



지정번호 제 호
환 경 부

2. 작도법

- 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원형 중앙 도형은 정부 심볼마크를 사용하며, 윗부분에는 지정명칭을, 아랫부분에는 환경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한다.
- 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 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색상(도형 및 문자)은 정부 심볼마크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하고,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제1편
녹색전환

0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127	제1조(목적) 127	제1조(목적) 127
제2조(정의) 12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127	
제2조의2(적용범위) 128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128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129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129	제4조 삭제 129	
제5조 삭제 129	제5조 삭제 129	
	제6조 삭제 130	
	제7조 삭제 130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1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130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130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1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1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13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131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1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132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132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132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132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133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133		
제13조 삭제 133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133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134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134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134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135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135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135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13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136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136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36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137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7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138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140 제18조의3(청문) 140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140 제20조(과태료) 141 제21조 삭제 141 부칙 141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136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37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137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138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138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139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41 부칙 141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137 제4조(자료의 제출) 138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139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139 부칙 1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4.12.31 법률 제7296호 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6. 9.27 법률 제8013호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배기물관리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47호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1. 7 법률 제933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4. 1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10. 1.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0호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55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3.12.30 법률 제12140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20. 1.29 법률 제16894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2020. 1. 29.)</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p>제정 2005. 6.13 대통령령 제18863호 개정 2007. 3.27 대통령령 제19970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1호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5호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8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3.18 대통령령 제25261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2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3.30 대통령령 제26171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5.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p>제정 2011.10. 5 환경부령 제424호 개정 2012. 8. 2 환경부령 제473호 2012.12.27 환경부령 제490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20.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p>[본조신설 2011. 4. 5.]</p> <p>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p>[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p>[제목개정 2011. 4. 5.]</p> <p>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4. 5., 2011. 7. 21.></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목개정 2011. 4. 5.]</p> <p>제5조 삭제 (2010. 2. 4.)</p>	<p>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p> <p>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4조 삭제 (2011. 9. 30.)</p> <p>제5조 삭제 (2011. 9. 30.)</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p>[제목개정 2011. 4. 5.]</p> <p>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6조 삭제 <2011. 9. 30.> 제7조 삭제 <2011. 9. 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p> <p>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p>	<p>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p> <p>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p>[본조신설 2014. 3. 18.]</p> <p>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1. 4. 5.]</p> <p>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구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목개정 2011. 4. 5.]</p>	<p>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5.]</p> <p>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12. 30.></p> <p>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p> <p>제13조 삭제 <2009. 1. 7.></p> <p>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5.]</p> <p>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p> <p>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10. 2. 4.,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p>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7.,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p> <p>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1. 4. 5.]</p> <p>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 <p>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7. 31.]</p>	<p>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p>[본조신설 2011. 4. 5.]</p> <p>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11. 4. 5.)</p> <p>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4. 5.)</p> <p>[제목개정 2010. 2. 4.]</p>	<p>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본조신설 2010. 2. 4.]</p> <p>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p> <p>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1. 4. 5.]</p> <p>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7. 31.]</p> <p>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p>	<p>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 현황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p> <p>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 4. 5.]</p>	<p>정 2015. 3. 30.)</p> <p>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p>[본조신설 2012. 7. 31.]</p>	<p>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12. 27.></p> <p>[전문개정 2012. 8. 2.]</p> <p>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1.]</p> <p>제1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p> <p>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p>		<p>매장 지정 신청서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09. 1. 7., 2011. 4. 28., 2013. 7. 16., 2015. 12. 1.> [제18조에서 이동 <2006. 9. 27.>]</p> <p>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1조 삭제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6호, 200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를 삭제한다.</p> <p>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를 삭제한다.</p>	<p>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삭제 <2015. 3. 30.> 삭제 <2015. 3. 30.>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863호, 2005. 6.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24호, 2011. 10. 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내지 <68>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3호, 2006. 9. 27.></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970호, 2007. 3. 27.></p> <p>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⑰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11호, 2008. 9. 18.></p> <p>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195호, 2011. 9.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98호, 2012. 7.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3호, 2012. 8. 2.></p> <p>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90호, 2012.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친환경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8> 까지 생략 <519> 친환경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47호, 2008. 3. 2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261호, 2014. 3. 18.></p> <p>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621호, 2014. 9.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171호, 2015. 3. 30.></p> <p>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p> <p>⑦ 및 ⑧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35호, 2009. 1. 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p> <p>제13조를 삭제한다.</p> <p>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584호, 2009. 4. 1.> (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적합한 상품</p> <p>부칙 <제10030호, 2010. 2. 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550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p> <p>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255호, 2012. 2. 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7>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7호, 2013. 7.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140호, 2013. 12. 30.></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894호, 2020. 1. 29.></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2015.3.30.>	15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5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50	100	150

제1편
녹색전환

0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160	제1조(목적) 160	제1조(목적) 160
제2조 삭제 160		
제3조 삭제 160		
제4조 삭제 160		
제5조 삭제 160		
제6조 삭제 160		
제7조 삭제 160		
제8조 삭제 160	제2조 삭제 160	제2조 삭제 160
	제3조 삭제 160	제3조 삭제 160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60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160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161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162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163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164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164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165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165
	제8조의3(분할납부 등) 165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16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166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167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 167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167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167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 168	제12조 삭제 168	제8조 삭제 168
	제13조 삭제 168	제9조(규제의 재검토) 16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169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169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169 제16조 삭제 169 제17조 삭제 169 제17조의2 삭제 169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169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169 제12조 삭제 170 제13조 삭제 170 제14조 삭제 170 제15조 삭제 170 제16조 삭제 170 제17조 삭제 170 제18조 삭제 170	제19조 삭제 170 제20조 삭제 170 제21조 삭제 170 제22조 삭제 170 제23조 삭제 170 제24조 삭제 170 제25조 삭제 170 제26조 삭제 170 제27조 삭제 170	제10조 삭제 170 제11조 삭제 170 제12조 삭제 170 제13조 삭제 170 제14조 삭제 170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170 제20조(강제징수 등) 170 제21조(결손처분) 171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171 제22조(권한의 위임) 171	제28조(권한의 위임) 171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2	
부칙 172	부칙 172	부칙 17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정 1991.12.31 법률 제4493호 개정 1994. 1. 5 법률 제4714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장등외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1999. 2. 8 법률 제5861호 1999.12.31 법률 제6097호 (환경정책기본법) 2001. 1.29 법률 제6406호 (산악인지방개발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유위험도자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p> <p>2005. 1.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 1. 3 법률 제8215호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5.25 법률 제10316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7.16 법률 제11916호 2015. 1.20 법률 제13039호 2019. 4.16 법률 제16319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령을 위한 법률)</p>	<p>제정 1992. 7.21 대통령령 제13699호 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 (행정관회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0호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환경청외고속기관지체)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환경청외고속기관지체)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4호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 (행정관회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 8.19 대통령령 제15465호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5호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4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청외고속기관지체) 2002. 9.11 대통령령 제17739호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등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환경정밀관리법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천리플을위한기석방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6. 4.28 대통령령 제19463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2007. 2. 1 대통령령 제19865호 2007. 6. 4 대통령령 제20082호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7.12.28 대통령령 제20476호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9. 2.13 대통령령 제21324호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9호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물의 제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p>	<p>제정 1992. 8. 8 총 리 령 제403호 개정 1993.12.31 총 리 령 제443호 1995. 1.13 환경부령 제1호 1999. 1.14 환경부령 제58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고속기관지체시행규칙) 2002. 9.11 환경부령 제129호 2007. 6. 7 환경부령 제233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0.11.26 환경부령 제385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2.19 환경부령 제547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5. 6.15 환경부령 제603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0. 5. 25.]</p> <p>제2조 삭제 (2010. 5. 25.)</p> <p>제3조 삭제 (2010. 5. 25.)</p> <p>제4조 삭제 (2010. 5. 25.)</p> <p>제5조 삭제 (1999. 12. 31.)</p> <p>제6조 삭제 (1999. 12. 31.)</p> <p>제7조 삭제 (1999. 12. 31.)</p> <p>제8조 삭제 (1999. 12. 31.)</p> <p>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 20.></p>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2. 3.13 대통령령 제23664호 2014. 1.14 대통령령 제25085호 2014. 3.24 대통령령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5. 6. 9 대통령령 제26309호 2018. 5.15 대통령령 제28886호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p> <p>제2조 삭제 (2000. 8. 17.)</p> <p>제3조 삭제 (2000. 8. 17.)</p> <p>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 6. 9.)</p> <p>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9.></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p> <p>제2조 삭제 (2002. 9. 11.)</p> <p>제3조 삭제 (2015. 6. 15.)</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p> <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p> <p>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p> <p>③ 삭제 <2015. 6. 9.></p> <p>④ 삭제 <2015. 6. 9.></p> <p>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p> <p>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p>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p> <p>⑦ 삭제 <2019. 10. 15.></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2015. 6. 9.></p> <p>② 삭제 <2015. 6. 9.></p> <p>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p> <p>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p> <p>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무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삭제 <2015. 1. 20.></p> <p>3. 삭제 <2015. 1. 20.></p> <p>4. 삭제 <2015. 1. 20.></p> <p>5. 삭제 <2015. 1. 20.></p> <p>6. 삭제 <2015. 1. 20.></p> <p>7. 삭제 <2015. 1. 20.></p> <p>8. 전사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9.></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 삭제 <2015. 6. 9.></p> <p>② 삭제 <2015. 6. 9.></p> <p>③ 삭제 <2015. 6. 9.></p> <p>④ 삭제 <2015. 6. 9.></p> <p>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p> <p>1.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p> <p>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키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p>	<p>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p> <p>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p>[전문개정 2014. 1. 14.] [제목개정 2015. 6. 9.]</p> <p>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2015. 6. 9.> 3. 삭제 <2015. 6. 9.>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p>	<p>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2015. 6. 9.> ③ 삭제 <2015. 6. 9.> [전문개정 2014. 1. 14.]</p> <p>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6. 9.,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p>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별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p>	<p>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전문개정 2010. 11. 26.]</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p>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p>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p>	<p>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9. 10. 15.)]</p> <p>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9. 10. 15.)</p> <p>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p> <p>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p>	<p>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저장·관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11. 26.]</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p> <p>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p> <p>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9. 4. 16.></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4. 16.></p> <p>[전문개정 2010. 5. 25.]</p>	<p>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p>⑥ 삭제 <2019. 10. 15.></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목개정 2014. 1. 14.]</p> <p>[제8조의2에서 이동 <2019. 10. 15.>]</p> <p>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p>	<p>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0. 11. 26.]</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2015. 6. 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p>	<p>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0. 11. 26.]</p> <p>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0. 11. 26.]</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p> <p>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p> <p>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10. 15.] [종전 제11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9. 10. 15.>]</p> <p>제12조 삭제 <2015. 6. 9.> 제13조 삭제 <2015. 6. 9.></p>	<p>제8조 삭제 <2015. 6. 15.></p> <p>제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4. 30.]</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삭제 <2015. 1. 20.>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0. 5. 25.]</p> <p>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 7. 2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증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5. 25.]</p>	<p>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 6. 9.>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에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목개정 2015. 6. 9.]</p> <p>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6. 9.> [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6조 삭제 <2015. 6. 9.> 제17조 삭제 <2015. 6. 9.> 제17조의2 삭제 <2015. 6. 9.></p> <p>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12조 삭제 <2010. 5. 25.> 제13조 삭제 <2007. 1. 3.> 제14조 삭제 <2007. 1. 3.> 제15조 삭제 <2007. 1. 3.> 제16조 삭제 <2007. 1. 3.> 제17조 삭제 <2007. 1. 3.> 제18조 삭제 <2007. 1. 3.></p> <p>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10. 5. 25.]</p> <p>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p>	<p>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9조 삭제 <2007. 6. 4.> 제20조 삭제 <2007. 6. 4.> 제21조 삭제 <2007. 6. 4.> 제22조 삭제 <2007. 6. 4.> 제23조 삭제 <2007. 6. 4.> 제24조 삭제 <2007. 6. 4.> 제25조 삭제 <2007. 6. 4.> 제26조 삭제 <2007. 6. 4.> 제27조 삭제 <2007. 6. 4.></p>	<p>제10조 삭제 <2007. 6. 7.> 제11조 삭제 <2007. 6. 7.> 제12조 삭제 <2007. 6. 7.> 제13조 삭제 <2007. 6. 7.> 제14조 삭제 <2007. 6. 7.></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21조(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 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5. 25.]</p>	<p>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19.,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93호, 1991.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p>	<p>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p> <p>② 삭제 <2007. 6. 4.></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p> <p>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p> <p>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p> <p>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99호, 1992. 7.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03호, 1992. 8. 8.></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증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3호, 1993.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호, 1995. 1.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4714호, 1994. 1.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내지 ⑨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861호, 1999. 2. 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p>	<p>같이 개정한다.</p> <p>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811호, 1992. 12. 31.> (청소년기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⑩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3823호, 1992. 12. 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호, 1999. 1. 1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29호, 2002. 9. 1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3호, 2007. 6. 7.></p> <p>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85호, 2010. 11. 26.></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부칙 <제6097호, 1999. 12. 31.> (환경정책기본법)</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p> <p>부칙 <제6406호, 2001. 1.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p> <p>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내지 ⑩생략</p> <p>부칙 <제14070호, 1993. 12. 31.></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8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255호, 1994. 5. 4.> (환경처와고스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7호, 2014. 2. 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03호, 2015. 6. 15.></p> <p>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p> <p>(85)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386호,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③내지 ⑥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4450호, 1994. 12. 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p> <p><59>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 제25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5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p> <p><60>내지 <68>생략</p> <p>부칙 <제14494호, 1994. 12. 31.></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7·8·19></p> <p>부칙 <제15137호, 1996. 8. 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p> <p>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부칙 <제8215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0316호, 2010. 5.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항제2호"로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p>④및 ⑤생략</p> <p>부칙 <제15465호, 1997. 8. 1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개선부담금 감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5817호, 1998. 6.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⑬내지 ⑯생략</p> <p>부칙 <제16081호, 1998. 12. 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p> <p>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p> <p>④생략</p> <p>부칙 <제16379호, 1999. 6. 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p> <p>⑦생략</p>	
<p>부칙 <제11916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6605호, 1999. 11.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p>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13039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16953호, 2000. 8. 1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p> <p>부칙 〈제16319호, 2019. 4.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6954호, 2000. 8. 17.〉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외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739호, 2002. 9. 11.〉</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039호, 2003. 6.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㉔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로 한다.</p> <p>㉕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만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457호, 2004. 6. 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내지 ㉓생략</p> <p>㉔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 발촉진법"으로 한다.</p> <p>㉕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8978호, 2005. 7. 27.> (식품위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내지 ㉔생략</p> <p>㉕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p> <p>부칙 <제19463호, 2006. 4. 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③내지 ④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9865호, 2007. 2. 1.></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0082호, 2007. 6. 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383호, 2007. 1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⑯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76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77호, 2008. 1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㉟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p> <p>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ata-bbox="609 726 1027 81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제15호의 숙박시설</p> </div> <p>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p> <div data-bbox="609 981 1027 101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div>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부칙 <제21324호, 2009.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p> <p>부칙 <제22499호, 2010. 11.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2556호, 2010. 12. 28.> (광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취득"을 "채굴"로 한다.</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67호, 2011. 6.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664호, 2012. 3.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85호, 2014. 1.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273호, 2014. 3. 24.>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09호, 2015. 6. 9.></p> <p>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886호, 2018. 5. 15.></p> <p>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50호, 2018.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p>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30127호, 2019. 10. 15.></p> <p>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별표

[별표]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190
---	-----

[별표] <신설 2019. 4. 16.>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제9조제4항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삭제 <1994.12.31.>	195
[별표 2] 삭제 <1994.12.31.>	195
[별표 3] 삭제 <2019. 10. 15.>	195
[별표 4] 삭제 <2015.6.9.>	195
[별표 5] 삭제 <2015.6.9.>	195
[별표 6] 삭제 <2015.6.9.>	195
[별표 6외2]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195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196

[별표 1] 삭제 <1994.12.31>

[별표 2] 삭제 <1994.12.31>

[별표 3] 삭제 <2019.10.15.>

[별표 4] 삭제 <2015.6.9.>

[별표 5] 삭제 <2015.6.9.>

[별표 6] 삭제 <2015.6.9.>

[별표 6의2] <개정 2015.6.9.>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적용 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199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부과금액 (원/반기)	12,150	20,250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별표 7] (개정 2015.6.9.)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1.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2,500 이하	1.25
2,500 초과 3,500 이하	1.75
3,500 초과 6,500 이하	2.64
6,500 초과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2. 지역계수

지역별	인구 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	0.40	0.85	0.87	1.00	1.53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3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 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우 사용 자동차: 1.0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삭제 <2015.6.15.>	199
-----------------------------	-----

[별표] 삭제 <2015.6.15.>

제1편
녹색전환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213	제1조(목적) 213	제1조(목적) 213
제2조(정의) 213	제2조 삭제 213	제2조(환경시설) 214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15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15	제3조 삭제 216
제4조 삭제 216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15	
	제5조 삭제 216	
	제6조 삭제 216	
	제7조 삭제 216	
	제8조 삭제 216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16	
	제10조 삭제 217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217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217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217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218	
	제14조(출연금의 지급·관리) 218	
	제15조(출연금의 사용) 218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19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219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219	
제5조의3 삭제 221	제16조의3 삭제 221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221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221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221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222	제5조 삭제 222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222	제18조의2 삭제 223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222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2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226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224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225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225 제19조의2 삭제 226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226	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226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227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227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227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227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227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28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228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29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232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32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229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33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 229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233	제19조의7(환경기술·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 233	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230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234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234	제6조의8(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 231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5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 235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235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236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236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236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37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237
제10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37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239	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239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240
제12조(환경기술지원) 239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239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241
제13조(기술진단) 241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241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241
		제12조(기술진단 비용) 242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242	제2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243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242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243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244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245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245	
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246		
제14조 삭제 247		제14조 삭제 247
		제15조 삭제 247
		제16조 삭제 247
		제17조 삭제 247
		제18조 삭제 247
		제19조 삭제 247
		제20조 삭제 247
		제21조 삭제 247
		제21조의2 삭제 247
		제22조 삭제 247
		제23조 삭제 247
		제24조 삭제 247
		제25조 삭제 247
		제26조 삭제 2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247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47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248	제27조 삭제 247 제28조 삭제 247 제29조 삭제 247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247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248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249 제33조(시공감리자) 249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249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249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253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254 제22조의8(환경건설링회사의 등록기준) 257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249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250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251 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251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252 제33조의7(보고·검사의 면제) 253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253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256 제33조의10(환경건설링회사 등록의 신청) 257 제33조의11(환경건설링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257 제33조의12(환경건설링회사 등록 등의 공고) 257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254 제16조의4(환경건설링회사의 등록) 257	제22조의9(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259 제22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261 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261	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259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260 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 260
제16조의5(환경건설링회사에 대한 지원) 258 제16조의6(환경건설링회사의 등록취소 등) 258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259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259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259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261 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2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시정조치) 262	제22조의12(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262	
제16조의13(과징금) 263	제22조의13(매출액 등) 263	
제16조의13(과징금) 264	제22조의14(과징금 부과기준) 263	
	제22조의1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64	
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265	제22조의16(포상금의 지급) 265	제33조의16(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265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265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266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266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266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266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266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267	제36조 삭제 267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267	제25조의2 삭제 267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67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268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68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268
제19조의2 삭제 269		
제19조의3 삭제 269		
제19조의4 삭제 269		
제19조의5 삭제 269		
제19조의6 삭제 269		
제19조의7 삭제 270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270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270	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한) 270
제21조(인증심사원) 271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271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270
제21조의2(업무규정) 271	제27조의2(업무규정) 271	제41조(심사원의 교육) 271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272		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271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272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273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272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2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274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273	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274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274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274	
제25조(수수료 등) 274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274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275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274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275	제31조 삭제 275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275	제46조 삭제 275
		제47조 삭제 275
제27조의2 삭제 276		제48조 삭제 275
제28조(사후관리) 276		제49조 삭제 275
		제50조(사후관리) 276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278		제51조 삭제 277
제30조(청문 등) 278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277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278	제33조(위임 및 위탁) 278	제53조(수수료) 277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0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278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281	
제32조(별칭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81		제55조(규제의 재검토) 281
제33조(포상) 281		
제34조(별칭) 282		
제35조(별칭) 283		
제36조(양별규정) 283		
제37조(과태료) 283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83	
제38조 삭제 28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삭제 284 제40조 삭제 284 제41조 삭제 284		
부칙 284	부칙 284	부칙 284

환경기초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초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정 1994.12.22 법률 제4830호 전문개정 2000. 2. 3 법률 제6282호 2001. 1.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 2001.12.31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2003. 5.29 법률 제6913호 2004. 2. 9 법률 제7170호 (약취빙차법) 2004. 9.23 법률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4.12.31 법률 제729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법률 제7294호 2004.12.31 법률 제7296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우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12.30 법률 제7820호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6호 2007. 4.11 법률 제8369호 (소음·진동규제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2009. 1. 7 법률 제9335호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 5.21 법률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1.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4.12 법률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1. 4. 5 법률 제1055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3.23 법률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16 법률 제11917호 2014. 3.24 법률 제12523호 2015. 2. 3 법률 제13174호 2015.12. 1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지원법) 2015.12.22 법률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1374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2016. 1.19 법률 제13781호</p>	<p>제정 1995. 6. 1 대통령령 제14657호 전문개정 2000. 8.17 대통령령 제16953호 개정 2001. 7.16 대통령령 제17305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 2003.12.11 대통령령 제18157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유형의식양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한국환경자연공사시행령) 2005. 2. 7 대통령령 제18695호 (약취빙차법 시행령) 2005. 4.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 6.13 대통령령 제18863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2005. 6.23 대통령령 제18880호 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6.29 대통령령 제19574호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분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5호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4.30 대통령령 제214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 4.30 대통령령 제2146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9. 6.16 대통령령 제21544호 2010. 4.13 대통령령 제22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미오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교육정보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 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정 1995. 6.10 환경부령 제12호 전문개정 2000. 8.30 환경부령 제98호 개정 2001. 6.27 환경부령 제108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4. 1.16 환경부령 제152호 2004. 7.29 환경부령 제161호 2005. 7. 1 환경부령 제177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2006. 6.30 환경부령 제213호 2007. 6.29 환경부령 제238호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 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의 규 칙 등 일부개정령) 2009. 7.27 환경부령 제343호 2010.12. 6 환경부령 제387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2012. 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추진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8. 3 환경부령 제47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28 환경부령 제505호 2014. 1.17 환경부령 제540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 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9.30 환경부령 제576호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20 환경부령 제663호</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6. 1.27 법률 제13886호 (친유성오염물질 관리법) 2016. 1.27 법률 제13892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 1.16 법률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0.16 법률 제15845호 2020. 3.31 법률 제17183호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4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14 대통령령 제25083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27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 7.12 대통령령 제27334호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1.24 대통령령 제27803호 2017. 8.16 대통령령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4.17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3.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6호 2020.12. 1 대통령령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26 환경부령 제690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9.29 환경부령 제8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p> <p>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조 삭제 <2011. 10. 28.></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p> <p>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p> <p>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p> <p>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p> <p>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p> <p>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p> <p>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p> <p>6. "표시"란 제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p> <p>7.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p>		<p>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p>[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p> <p>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 <2011. 4. 28.> <p>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研)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p>	<p>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p> <p>[전문개정 2009. 6. 1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p> <p>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p> <p>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 4. 28.></p> <p>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p> <p>[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p> <p>제4조 삭제 (2009. 1. 7.)</p> <p>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p>제5조 삭제 (2009. 6. 16.)</p> <p>제6조 삭제 (2009. 6. 16.)</p> <p>제7조 삭제 (2009. 6. 16.)</p> <p>제8조 삭제 (2009. 6. 16.)</p> <p>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조 삭제 (2005. 7. 1.)</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p> <p>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p> <p>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p> <p>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p> <p>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p>	<p>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p> <p>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p> <p>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p> <p>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p> <p>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p> <p>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0조 삭제 (2005. 6. 23.)</p> <p>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p> <p>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p> <p>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p> <p>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p> <p>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4조(출연금의 지급·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5. 12. 1., 2016. 1. 19.></p> <p>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p>	<p>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 7. 4.></p> <p>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6. 12. 30., 2017.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2016. 11. 29., 2017. 1. 24., 2020. 12. 29.></p> <p>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4.></p> <p>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16.></p> <p>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p>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본조신설 2013. 7. 16.] [중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3. 7. 16.>]</p>	<p>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p> <p>[본조신설 2014. 1. 14.] [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5조의3 삭제 (2015. 12. 1.)</p> <p>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p>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1.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16조의3 삭제 (2016. 11. 29.)</p> <p>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p>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p> <p>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p>	<p>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p> <p>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p> <p>4.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 2014. 12. 9.></p> <p>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p>	<p>포함한다)</p> <p>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p> <p>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p> <p>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5조 삭제 <2004. 1. 16.></p> <p>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p> <p>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p>	<p>서류</p> <p>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p> <p>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p> <p>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p> <p>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p> <p>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p> <p>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p> <p>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p> <p>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2018. 1. 16.></p>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는 기술</p> <p>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p> <p>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p> <p>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8조의2 삭제 <2007. 7. 4.></p> <p>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중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의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3.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p> <p>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p>	<p>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p> <p>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4.></p>	<p>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p> <p>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p> <p>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 1. 17.,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p>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p>[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p>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9조의2 삭제 <2007. 7. 4.></p> <p>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 7. 4.></p> <p>② 삭제 <2007. 7. 4.></p> <p>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 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p>	<p>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p> <p>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p> <p>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8., 2013. 7. 16.></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7. 16.]</p> <p>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4. 28.></p> <p>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본조신설 2003. 12. 11.] [제목개정 2014. 1. 14.]</p> <p>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p> <p>① 삭제 <2007. 7. 4.></p> <p>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p> <p>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p>	<p>②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9. 12. 20.> [전문개정 2011. 10. 28.] [제목개정 2014. 1. 17.]</p> <p>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4. 1. 17.>]</p> <p>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p> <p>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p> <p>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목개정 2011. 4. 28.]</p> <p>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의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p> <p>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p> <p>③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4.></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p> <p>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p> <p>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p> <p>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p> <p>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p> <p>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6. 16.></p> <p>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6. 16.></p> <p>[본조신설 2003. 12. 11.]</p> <p>[제목개정 2011. 10. 28.]</p> <p>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p>	<p>"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p>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4. 1. 1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p> <p>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된 것으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7. 1. 26.]</p> <p>[중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7. 1. 26.>]</p> <p>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의 연혁·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 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p>[본조신설 2017. 1. 26.]</p> <p>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 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 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 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p>		<p>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p>④ 성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p> <p>⑤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 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p>⑥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p> <p>⑦ 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26.]</p> <p>제6조의8(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중전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16. 1. 27.)]</p> <p>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 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2016. 7. 12.,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3.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p>	<p>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 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본조신설 2011. 10. 28.] [제6조의5에서 이동 (2017. 1. 2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제7조의5에서 이동 (2016. 1. 27.)]</p> <p>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p>	<p>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9조의7(환경기술·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③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4. 28.]</p>	<p>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의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4. 28.,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p>②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28.></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p> <p>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본조신설 2011. 4. 28.]</p> <p>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2020.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p> <p>5.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p> <p>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p> <p>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p> <p>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p> <p>6.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p> <p>7. 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p> <p>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2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선택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p>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4. 28.)</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선택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5.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기업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중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1. 10. 28., 2014. 12. 9., 2016. 12. 30.,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p>	<p>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p>④ 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p>	<p>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삭제 <2011. 10. 28.> <p>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3조(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7. 1. 19.,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 9. 30.> 2.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p>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 10. 28.>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의 환경산업체를 유지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p> <p>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12조(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1. 4. 28.]</p> <p>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p>	<p>제2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24.]</p>	<p>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p>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3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7. 1. 26.> [본조신설 2016. 7. 20.] [제목개정 2017. 1. 2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위치와 규모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 목적 3.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 등 배치계획 5.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인력 양성,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 제고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3. 31.></p> <p>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일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 또는 수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라 한국환경산</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본조신설 2016. 1. 27.] [중점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6. 1. 27.>]</p> <p>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시설의 개발·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본조신설 2011. 4. 28.]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 1. 27.>]</p>	<p>업기술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기관·단체 및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p> <p>[본조신설 2016. 7. 1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7. 1. 24.>]</p> <p>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개정 2016. 7.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연구·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연구·실험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자 <p>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p>③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위한 조사·연구사업 [본조신설 2011. 10. 28.]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7. 1. 24.)]</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4조 삭제 <2012. 2. 1.></p> <p>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2., 2011. 4. 28.></p> <p>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p>	<p>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8.></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p> <p>가. 대기 분야: 4명 이상</p> <p>나. 수질 분야: 4명 이상</p> <p>다.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p> <p>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삭제 <2007. 10. 24.></p> <p>제15조 삭제 <2007. 10. 24.></p> <p>제16조 삭제 <2007. 10. 24.></p> <p>제17조 삭제 <2007. 10. 24.></p> <p>제18조 삭제 <2007. 10. 24.></p> <p>제19조 삭제 <2007. 10. 24.></p> <p>제20조 삭제 <2007. 10. 24.></p> <p>제21조 삭제 <2007. 10. 24.></p> <p>제21조의2 삭제 <2007. 10. 24.></p> <p>제22조 삭제 <2007. 10. 24.></p> <p>제23조 삭제 <2007. 10. 24.></p> <p>제24조 삭제 <2012. 8. 3.></p> <p>제25조 삭제 <2007. 10. 24.></p> <p>제26조 삭제 <2007. 10. 24.></p> <p>제27조 삭제 <2007. 10. 24.></p> <p>제28조 삭제 <2007. 10. 24.></p> <p>제29조 삭제 <2007. 10. 24.></p> <p>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 「에너지이용량산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1. 4. 28., 2015. 2. 3.,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p>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28., 2017.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또는 상호 	<p>4와 같다. (개정 2011. 10. 28.)</p> <p>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에너지이용량 산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p> <p>3. 1년내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 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p> <p>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p> <p>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p> <p>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p> <p>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p>	<p>2. 영업소의 소재지</p> <p>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p> <p>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p> <p>5. 전담기술인력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p>	<p>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1. 10. 28.]</p> <p>제33조(시공감리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p> <p>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1. 4. 28., 2016. 1. 6.></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2011. 4. 28.></p> <p>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p>		<p>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 2011. 10. 28.></p> <p>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p> <p>③ 삭제 <2014. 1. 17.></p> <p>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p>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0. 12. 6.]</p> <p>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0. 12. 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2013. 3. 23.)</p>		<p>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대기·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 7. 20.)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2. 6.)</p>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0. 12. 6.]</p> <p>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10. 1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6., 2014. 1. 17.) ③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p>		<p>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에게 재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산설 2012. 6. 15., 2014. 1. 17.> [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0. 12. 6.]</p> <p>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0. 1. 13., 2011. 4. 28., 2013. 6. 4., 2016. 1. 27., 2017. 1. 17.></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1. 13.]</p>	<p>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0. 4. 13.]</p>	<p>제33조의7(보고·검사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 발생·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9조의2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0. 6. 28., 2011. 10. 28., 2014. 12. 9., 2016. 7. 12., 2017. 1. 24., 2018. 1. 16., 2020.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 	<p>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p>[본조신설 2011. 10. 28.]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p> <p>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p> <p>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p> <p>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p> <p>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p> <p>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p> <p>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p> <p>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p> <p>차. 「약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p> <p>카. 「하수도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p> <p>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1. 13.] [제19조의3에서 이동 (2008. 3. 21.)]</p>	<p>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p> <p>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7. 12.)</p> <p>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p> <p>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p> <p>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p> <p>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p> <p>[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0. 4. 13.]</p>	<p>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p> <p>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p> <p>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09. 7. 27.] [제목개정 2010. 12. 6.]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행정행위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5. 2. 3.,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p>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p>③ 시·도지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p>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 <2011. 10. 28.>]</p> <p>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3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1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1. 10. 28.>]</p> <p>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p>[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p>		<p>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9. 30.> [전문개정 2009. 7. 27.] [제33조의11에서 이동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4. 28.]</p> <p>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p>	<p>제22조의9(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 시·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33조의13(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 2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4. 28.]</p>		<p>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8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여부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분야 인증·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2. 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p>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3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p>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p> <p>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p> <p>[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6. 1. 19.]</p> <p>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가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p>	<p>제22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 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 7. 12.></p> <p>[본조신설 2014. 9. 24.] [제목개정 2016. 7. 12.]</p> <p>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p>	<p>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p> <p>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들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들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들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들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p> <p>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p>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조사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p>[본조신설 2014. 9. 24.]</p> <p>제22조의12(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크기</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6. 1. 19.]</p> <p>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p>	<p>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p>제22조의13(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p>제22조의14(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6. 7. 12.]</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p> <p>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기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p> <p>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일 : 2021. 12. 30.] 제16조의13</p>	<p>제22조의1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들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1. 19.]</p> <p>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22조의16(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p>	<p>제33조의16(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내용 2.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20.]</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p> <p>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삭제 <2014. 1. 14.>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p>	<p>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1.>]</p> <p>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3. 24.></p> <p>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 	<p><개정 2011. 10. 28.></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5조의2 삭제 <2017. 1. 24.></p>	<p>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36조 삭제 <2006. 6. 30.></p> <p>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⑥ 삭제 (2016. 1. 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3. 21.)]</p> <p>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p>		<p>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 9. 29.) [전문개정 2009. 7. 27.]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9. 30.)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9. 30.]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6. 1. 27.>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p>[전문개정 2008. 3. 2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2008. 3. 21.>]</p> <p>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16조의2로 이동 <2008. 3. 21.>]</p> <p>제19조의3 [종전 제19조의3는 제16조의3로 이동 <2008. 3. 21.>]</p> <p>제19조의4 [종전 제19조의4는 제16조의4로 이동 <2008. 3. 21.>]</p> <p>제19조의5 [종전 제19조의5는 제16조의5로 이동 <2008. 3. 21.>]</p> <p>제19조의6 [종전 제19조의6은 제16조의6로 이동 <2008. 3. 21.>]</p>		<p>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9조의7 [중전 제19조의7은 제16조의7로 이동 (2008. 3. 21.)]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 [제23조에서 이동, 중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별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소)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p>② 삭제 (2005. 7. 1.)</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8. 3. 21.>]</p>	<p>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 <p>제41조(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p> <p>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p> <p>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p>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p> <p>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p> <p>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p> <p>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전문개정 2009. 7. 27.]</p> <p>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p> <p>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p> <p>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p> <p>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 4. 28.></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p>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p>[전문개정 2009. 6. 16.]</p>	<p>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p> <p>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1조의2로 이동 (2008. 3. 21.)]</p> <p>제25조(수수료 등)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p>	<p>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보고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p>[전문개정 2008. 3. 2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3. 21.)]</p> <p>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6. 1. 27.]</p>	<p>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 7. 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31조 삭제 (2005. 6. 13.)</p> <p>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46조 삭제 (2016. 7. 1.) 제47조 삭제 (2016. 7. 1.) 제48조 삭제 (2016. 7. 1.) 제49조 삭제 (2016. 7. 1.)</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7조의2 [중전 제27조의2는 제24조의2로 이동 (2008. 3. 21.)]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보조·융자받은 자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p>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p>		<p>제50조(사후관리) ① 삭제 (2007. 10. 24.)</p> <p>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1. 10. 28., 2014.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삭제 (2014. 1. 17.)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하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 1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3. 21.>]</p>		<p>제51조 삭제 <2007. 6. 29.>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3조(수수료) ① 삭제 <2007. 10. 24.> ② 삭제 <2007. 10. 24.>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자로 내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1. 10. 28.>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7. 27., 2014. 1. 17.> ⑤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 26.> 1.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 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1. 2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3조에서 이등 <2008. 3. 21.>]</p> <p>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19.,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p>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p>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p>	<p>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 1. 1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16., 2014. 1. 14., 2017. 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p>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 7. 2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28., 2013. 7. 16., 2014. 3. 24., 2015. 12. 1., 2016. 1. 19., 2016. 1. 27.></p> <p>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p> <p>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p>	<p>및 지정취소</p> <p>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p> <p>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p> <p>4.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③ 삭제 <2012. 7. 31.></p> <p>④ 삭제 <2014. 1. 14.></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6. 16., 2011. 10. 28., 2012. 7. 4., 2014. 1. 14., 2016. 7. 12., 2017. 1. 24.></p> <p>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p> <p>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p> <p>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p> <p>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p> <p>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p> <p>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p> <p>7.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p> <p>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p> <p>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p> <p>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p> <p>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상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p> <p>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검토</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전문개정 2008. 3. 2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3. 21.)]</p>	<p>16., 2017. 1. 24.)</p> <p>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p> <p>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p> <p>⑦ 삭제 (2009. 6. 16.)</p> <p>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2. 7. 4.)</p> <p>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2. 7. 4., 2012. 7. 20.)</p> <p>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p> <p>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p> <p>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무</p> <p>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p> <p>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p> <p>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4. 삭제 (2011. 4. 28.) 5. 삭제 (2011. 4. 28.)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 3. 21.)]</p> <p>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사무</p> <p>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p> <p>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20. 3. 3.) 3.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의8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4. 4. 30.]</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3. 21.)]</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19.,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0조로 이동 (2008. 3. 21.)]</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1조로 이동 <2008. 3. 21.>]</p> <p>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2조로 이동 <2008. 3. 21.>]</p> <p>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6. 16.]</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28.]</p> <p>제38조 [종전 제38조는 제34조로 이동 <2008. 3. 21.>]</p> <p>제39조 [종전 제39조는 제35조로 이동 <2008. 3. 21.>]</p> <p>제40조 [종전 제40조는 제36조로 이동 <2008. 3. 21.>]</p> <p>제41조 [종전 제41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62호, 2000.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953호, 2000. 8.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8호, 2000. 8.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2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조(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p> <p>제4조(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p> <p>제5조(방지사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p> <p>제6조(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사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p> <p>제7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의 방지사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p>	<p>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교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교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p>	<p>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교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p> <p>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p> <p>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p>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p>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p> <p>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p> <p>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p> <p>⑥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⑦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05호, 2001. 7. 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p>	<p>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p> <p>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p> <p>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p> <p>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p> <p>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p> <p>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페수"를 "수탁페수"로 한다.</p> <p>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페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페수처리업의 변경 등록 : 5천원 <p>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p> <p>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③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p> <p>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p> <p>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p> <p>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p> <p>제48조제1항중 "방지사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p> <p>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p> <p>㉔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p> <p>제7장의 제목 "방지사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p> <p>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p> <p>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p>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지체)</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내지 ㉔생략</p> <p>㉕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㉖및 ㉗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157호, 2003. 12.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기술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된 환경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교육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총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p>	<p>제81조를 삭제한다.</p> <p>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p> <p>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p> <p>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6조 각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p> <p>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p> <p>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p>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p> <p>별표 23 제2호 마감을 삭제한다.</p> <p>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지역의 살형 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합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p>제50조제1항중 "방지사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p> <p>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p> <p>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천리치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연공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환경자연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연공사 생략 <p>부칙 <제18695호, 2005. 2. 7.> (악취방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 기관 생략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08호, 2001. 6. 2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p> <p>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p> <p>③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p> <p>제6장의 제목 "방지사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p> <p>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p> <p>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자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 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p>부칙 <제18796호, 2005. 4.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p> <p>⑭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8863호, 2005. 6. 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p> <p>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를 삭제한다.</p> <p>부칙 <제18880호, 2005. 6. 23.></p> <p>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p>	<p>"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p> <p>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사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사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p> <p>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사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사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p> <p>⑤내지 ⑬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52호, 2004. 1. 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용중인 환경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7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종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4년 7월 1일을 당해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p> <p>제3조(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분야(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에 한한다)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p> <p>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p> <p>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p> <p>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장"을 "보고"로 한다.</p> <p>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⑯생략</p> <p>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7>생략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239>내지 <241>생략</p> <p>부칙 <제19574호, 2006. 6.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p> <p>제3조(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p>	<p>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161호, 2004. 7. 2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환경표지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제177호, 2005. 7.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장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최초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용중인 환경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1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 및 2006년 7월 1일 당시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1일 및 2006년 7월 1일을 각각 해당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p> <p>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6353호, 2001. 1. 16.> (과학기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6590호, 2001. 12. 31.> (기금관리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p> <p>⑧내지 ⑩생략</p> <p>제5조 및 제6조 생략</p>	<p>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p> <p>제4조(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p> <p>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2제2항제10호 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p> <p>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9719호, 2006. 10.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	<p>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의한 자동차 분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자 배출가스 측정기기 또는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제5조(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로 고시된 자는 법 제17조제1항, 영 제22조의2 및 이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p> <p>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p> <p>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6913호, 2003. 5.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3을 삭제한다.</p> <p>②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를 삭제한다.</p> <p>③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p> <p>제20조를 삭제한다.</p> <p>부칙 <제7170호, 2004. 2. 9.> (약취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약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취"로 한다.</p> <p>③ 내지 ⑥ 생략</p> <p>제4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p> <p>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165호, 2007. 7. 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241호, 2007. 9. 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7219호, 2004. 9. 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 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⑰ 내지 ⑳ 생략</p> <p>제5조 생략</p>	<p>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⑰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⑳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13호, 2006. 6. 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3호 사무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로서 사용 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해당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다목(7) 및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7292호, 2004. 12.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294호, 2004. 12. 31.></p>	<p>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238호, 2007. 6. 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9호,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p> <p>제3조(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6호, 2004. 12. 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p> <p>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p> <p>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383호, 2007. 1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p> <p>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p>	<p>다)-분노처리시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호, 2007. 1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p> <p>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⑥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p> <p>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사</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43>생략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항"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⑥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820호, 2005. 12. 30.></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p>	<p>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① 및 ②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생략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p>	<p>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p> <p>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p> <p>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p> <p>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②내지 ⑩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216호, 2007. 1.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69호, 2007. 4. 11.></p>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증지명령</p> <p>②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1461호, 2009. 4.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p> <p>부칙 <제21462호, 2009. 4.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p> <p>부칙 <제21544호, 2009. 6. 16.></p>	<p>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⑩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43호, 2009. 7.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별로 정도관리의 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기준으로 한다.</p> <p>제3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방지시설 기술 요원과정 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는 제46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소음·진동규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 생략</p> <p>⑳ 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p> <p>④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p> <p>㉒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및 제3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124호, 2010. 4.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p> <p>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p> <p>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p> <p>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p> <p>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5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87호, 2010. 12.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제33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작성·공개할 수 있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p> <p>㉘ 및 ㉙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까지 생략</p> <p><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4> 및 <5>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⑦ 생략</p> <p>부칙 <제23267호, 2011. 10.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p> <p>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법인</p> <p>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p> <p>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6> 까지 생략</p> <p>(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528)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p> <p>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p> <p>③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p> <p>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p> <p>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460호, 2012. 6. 15.></p> <p>(간선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p> <p>(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74호, 2012. 8. 3.></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를 삭제한다.</p> <p>부칙 <제505호, 2013. 3. 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0호, 2014. 1.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p> <p>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p> <p>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p> <p>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p> <p>⑧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9335호, 2009. 1. 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⑥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⑦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p>	<p>시행 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p> <p>(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0호, 2014. 6. 5.></p> <p>(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76호, 2014. 9.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61호, 2016. 7. 1.></p> <p>(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2조(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p> <p>⑤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⑦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p> <p>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p>	<p>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⑧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3934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663호, 2016. 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3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⑨부터 ⑪까지 생략</p> <p>부칙 (제690호, 2017. 1. 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999호, 2012. 7. 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p> <p>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p> <p>부칙 <제832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7호, 2020.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p> <p>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9685호,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p> <p>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치세법" 제8조"로 한다.</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083호, 2014. 1. 14.></p> <p>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627호, 2014. 9. 24.></p> <p>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시설</p> <p>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p>	<p>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p> <p>④ 생략</p> <p>부칙 <제887호, 2020. 9. 29.></p> <p>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및 ㉕ 생략 제8조 생략</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p> <p>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영향 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p>	<p>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㉔ 및 ㉕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334호, 2016. 7. 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12부터 제22조의15까지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p> <p>부칙 <제27737호, 2016. 12. 30.></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p> <p>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p> <p>⑬ 및 ⑭ 생략</p> <p>부칙 <제10250호, 2010. 4.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p> <p>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803호, 2017. 1.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술료의 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차목 또는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550호, 2011. 4.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p> <p>제3조(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날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과된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인 경과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p> <p>제4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 법</p>	<p>제4조(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시행 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처분의 횟수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은 시행 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8243호, 2017. 8. 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시행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방지사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지사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녹색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다.</p> <p>제7조(환경컨설팅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로 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부칙 <제28799호, 2018. 4. 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p> <p>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⑥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521호, 2020.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076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212호, 2020. 12.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및 ⑧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31297호, 2020. 12. 29.></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로 한다.</p> <p>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총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p> <p>제8조 생략</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㉞부터 ㉟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266호, 2012. 2.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2>까지 생략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㉞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p>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㉞까지 생략 제12조 생략</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17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는 그 기술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23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4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 제1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534호, 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p> <p>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5조의3을 삭제한다.</p> <p>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3601호,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9조 생략</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747호, 2016. 1.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3781호, 2016. 1. 1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p> <p>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부칙 <제13886호, 2016. 1.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②부터 ④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92호, 2016. 1.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에 대한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조성 중인 단지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녹색기업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p> <p><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p> <p>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4>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344호, 2018. 1. 16.> (과학기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45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83호, 2020. 3. 3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321
[별표 2] 삭제 <2017. 1. 24.>	321
[별표 2의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0 관련)	322
[별표 2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4 관련)	323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324

[별표 1] <개정 2018. 12. 1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1. 고급인력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p> <p>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바.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사. 환경 외의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자.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 일반인력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나.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마.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비고

1.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지하수를 포함한다),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을 포함한다),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환경 분야 업무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은 일반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삭제 <2017. 1. 24.>

[별표 2의2] <개정 2016. 7. 1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0 관련)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가.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3] <신설 2016. 7.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4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16조의13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과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및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되,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22조의1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유형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초과 2.0%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 초과 1.6% 이하	2억원 초과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이상 0.8% 이하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나.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위반기간	가중범위
1년 이상	20% 초과 30%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0% 초과 20%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10% 이하

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최근 3년간 위반횟수	가중범위
4회 이상	40% 초과 50% 이하
3회	20% 초과 40% 이하
2회	20% 이하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 조정

해당 제조업자들의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0.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200	25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200	250	300
다.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200	250	300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60	80	100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60	80	100
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60	80	1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327
[별표 1의2] 삭제 <2007.10.24.>	328
[별표 2]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	328
[별표 3] 삭제 <2007.10.24.>	328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329
[별표 5]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330
[별표 6] 삭제(2004.1.16.)	331
[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	331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331

[별표 1] <개정 2014.1.17>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표시

가. 도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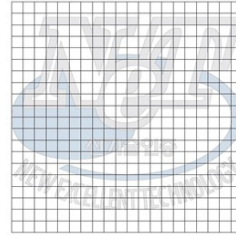
<신기술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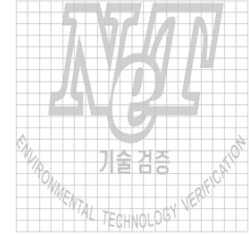
<기술검증>

- 비고: 1. 기본 심벌은 “Ne”, “T”, “태극”,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또는 “기술검증”,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 색상 적용: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기술검증”,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은 검은색으로, “T”의 내부는 30% Black Screen으로, 태극모양은 전자청색(DIC 142)으로 합니다.
3. 심벌은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2색도 적용형, 소형 사용형, 엠블럼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심벌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4. 심벌은 Vector Type(*.ai, *.wmf, *.cdr 등)의 컴퓨터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합니다.

나. 도안 요령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비고: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표시의 사용방법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합니다.

<표시 예 1>

심벌칠러 적용



<표시 예 2>

심벌 단색적용(흑스크린)



<표시 예 3>

심벌 단색도 적용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표시 예 4〉

엠블럼 응용 표시



[별표 1의2] 삭제 〈2007.10.24〉

[별표 2] 〈신설 2017. 1. 26.〉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 비고: 1.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Yellow(노란색), K : Key(검은색)
 2. 글자체는 도안 모형을 따르며, 도안 중 글자 크기의 비율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별표 3] 삭제 〈2007.10.24〉

[별표 4] (개정 2014.9.30.)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진동 분야	1) 소음·진동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건축기사·토목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중 1명

비고

-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 기술사·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 사·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 다. 소음·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공학박사(소 음·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 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 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 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마. 부유물질(SS)
- 바. 유류(油類)(동물성·식물성 포함)

비고

-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7. 1. 26.>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1. 환경표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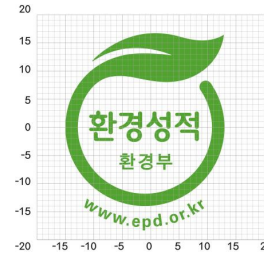
- 비고: 1. 환경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Yellow(노란색), K : Key(검은색)
 2. 글자체는 도안 모형을 따르며, 도안 중 글자 크기의 비율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도안의 오른쪽에 대상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주별로 표시할 수 있다.

2. 환경성적표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 비고: 1. 환경성적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글자체는 도안 모형을 따르며, 도안 중 글자 크기의 비율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제37조의2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환경성적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글자 대신 해당 환경성적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
 4. 해당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계량적인 수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삭제 <2004.1.16>

[별표 7] <개정 2014.1.1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53조제4항 관련)

1. 평가등록비

내용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만원
기술검증	200만원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	350만원

2. 평가수수료

「에너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술 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1건당): 2백만원

[별표 8] <개정 2014.9.30.>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5조제5항제1호·제2호, 법 제16조의6제1호·제2호 및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나) 3회 이상	법 제15조 제5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다)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가 전혀 없는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라) 기술능력 요건에 속하는 실험기가 부족한 경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법 제15조 제5항제5호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8호	등록취소			
10)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제9호	등록취소			

나.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호	등록취소		
2) 임원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의6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나)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3호	경고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6조의6 제4호	경고	등록취소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6조의6 제5호	경고	경고	등록취소

다.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9조 제5호	지정취소			
가)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인증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8호	지정취소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339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339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339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340
제5조 삭제	340
제6조(지정취소등)	340
제7조(규제의 재검토)	340
부칙	34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p>제정 1998. 8.11 환경부령 제49호 2000. 5.12 환경부령 제93호 2001. 6.27 환경부령 제109호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7. 6.27 환경부령 제235호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9. 7.13 환경부령 제339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2. 6.15 환경부령 제461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6. 3.29 환경부령 제6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p> <p>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p> <p>5. 삭제 (2000. 5. 12.)</p> <p>6. 제3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4개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1인 이상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p> <p>③「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6. 27., 2014. 12. 24.></p>
--	--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1. 6. 27., 2007. 6. 27., 2007. 12. 28., 2016. 3. 29.,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 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 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7.>

제2조(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5. 12., 2001. 6. 27., 2007. 6. 27., 2007. 10. 24., 2007. 10. 25., 2007. 12. 28., 2012. 6. 15., 2018. 1. 17.>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6. 27.>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2., 2002. 8. 17., 2007. 6. 27., 2012. 6. 15.>

1. 약제 <2000. 5. 12.>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3. 약제 <2006. 7. 4.>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5.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7. 6. 27., 2009. 7. 13., 2012. 6. 15.>

③시·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12. 6. 15.>

④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7. 6. 27., 2012. 6. 15., 2016. 12. 30.>

1. 관리대행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⑤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2007. 6. 27., 2012. 6. 15.>

제5조 약제 <2007. 6. 27.>

제6조(지정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2012. 6. 15.>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49호, 1998.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 2000.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09호, 2001.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 2007.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 2009.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㉑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1호, 2012.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해서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시·도지

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 및 ㉑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45호, 2016. 3.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347
[별표 1의2] 따로두어야하는기술인력의수[제3조제3항관련]	348
[별표 2]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349

[별표 1] <개정 2018. 1. 17.>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3조제1항관련)

1.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	실험실 및 사무실
1.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2. 대기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황산화물(SO ₂) 나. 암모니아 다. 이황화탄소 라. 황화수소 마. 먼지 바. 매연 사. 일산화탄소 아. 질소산화물 자. 포름알데히드 차. 브롬화합물 카. 벤젠화합물 타. 아연화합물 파.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하여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대행관리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채취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1. 실험실 : 실용면적 20㎡ 이상 2.<삭제>

2.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	실험실 및 사무실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 수질환경기사 또는 환경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환경기사 1인 이상 4. 분석요원 1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크롬(Cr) 마.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자가측정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동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료운반용 차량(시료변질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1대 이상	1. 실험실 : 실용면적 20㎡ 이상 2.<삭제>

비고

1. 내지 3. 삭제 <2000.5.12>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기측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4의2.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 나.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라. 환경측정분석사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5의2. 시설 및 장비중 시료운반용 차량은 이를 임차할 수 있다.
-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 7.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가 된 자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별표 1의2] <신설 2007.6.27.>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제3조제3항 관련)

- 1. 각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1\text{종 사업장 수} \times 0.66) + (2\cdot3\text{종 사업장 수} \times 0.44) + (4\cdot5\text{종 사업장 수} \times 0.33)\text{인} - 4\text{인} = ()\text{인}$$

비고

-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 2. 각 종별 계수 0.66, 0.44, 0.33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인력 수인 4를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3.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 4.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 2.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있는 경우

$$(1\text{종 사업장 수} \times 0.50) + (2\cdot3\text{종 사업장 수} \times 0.33) + (4\cdot5\text{종 사업장 수} \times 0.25) = ()\text{인}$$

비고

-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 2. 각 종별 계수 0.50, 0.33, 0.25는 각 종별 초과 사업장(1종 2개, 2·3종 3개, 4·5종 4개) 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최소인원(1인)에 대한 역수를 말한다.
- 3. 위 산정에서 각 종별 사업장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가장 큰 1개종에 대하여는 초과 사업장 수만을 사업장 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종에 대하여는 총 관리대행 사업장 수를 사업장 수로 한다.
- 4.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 5.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6. 12. 30.>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나.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관련업자의 해당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때		지정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		경고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		지정 취소			
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0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 5)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		경고 지정 취소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3개월

비고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편
녹색전환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58	제1조(목적) 358	제1조(목적) 358
제2조(정의) 358		
제3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58	제2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358	
	제3조 삭제 359	
제4조 삭제 359	제4조 삭제 359	
	제5조 삭제 359	
	제6조 삭제 359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359	제7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359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359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60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360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361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361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362		
제3장 측정기기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362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362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364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364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364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36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366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366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367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 367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368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368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370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369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370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371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371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374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372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372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375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373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373
제4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 2. 1.>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374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375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375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375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378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377	제3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 8. 3.>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379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378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375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381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378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377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81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381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377
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382	제13조의5(시험·검사기관 등) 382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378
제18조의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등) 384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378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380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81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382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382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383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38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386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386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387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387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388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388	제19조(시험위원) 389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390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389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391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390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392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390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392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391
제6장 보칙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391
제24조(시험·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392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391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392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394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394	제5장 보칙
제26조(국제협력) 394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393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394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393
제28조(사후관리) 395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393
제29조(청문) 396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394
제30조(수수료) 396		제29조(사후 관리) 395
		제30조(수수료) 39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권한의 위임) 397	제17조(권한의 위임) 397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8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399	제31조(규제의 재검토) 399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0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400		
제34조(양벌규정) 401		
제35조(과태료) 40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01	
부칙 403	부칙 403	부칙 40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6.10. 4 법률 제8038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8292호 (친유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25 법률 제8486호 (산림표준화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4. 1 법률 제9590호 (국가표준기본법)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2. 4 법률 제10036호 2010. 5.25 법률 제10315호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2. 2. 1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2. 2. 1 법률 제1126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16 법률 제11918호 2014. 3.18 법률 제12468호 2015. 2. 3 법률 제13176호 2015.12.22 법률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 1.27 법률 제13886호 (친유성오염물질 관리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2.12 법률 제15200호 2020. 3.31 법률 제17184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 위한 환경노동위 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5호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 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3999호 2013. 4. 3 대통령령 제24493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 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력 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14 대통령령 제25084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 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6. 1.19 대통령령 제269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6. 9.22 대통령령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17 대통령령 제28185호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0.16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8.12.11 대통령령 제29351호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7호</p>	<p>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7.13 환경부령 제338호 2010. 3. 2 환경부령 제364호 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2. 8. 3 환경부령 제474호 2012.11.30 환경부령 제487호 2014. 1.17 환경부령 제541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 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강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7.17 환경부령 제707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29 환경부령 제751호 2018.12.13 환경부령 제781호 2019. 2.13 환경부령 제799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 부령) 202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7.16 환경부령 제876호 2020. 9.29 환경부령 제885호</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분석·평가(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환경설비의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p>제3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검사등의 운영체제의 기본방향 2. 시험·검사등의 증장기 투자계획 3. 시험·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 삭제 (2010. 2. 4.)</p> <p>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溯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3조 삭제 (2012. 7. 31.)</p> <p>제4조 삭제 (2012. 7. 31.)</p> <p>제5조 삭제 (2012. 7. 31.)</p> <p>제6조 삭제 (2012. 7. 31.)</p> <p>제7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6. 24., 2011. 10. 28., 2016. 9. 22.,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측정기기</p> <p>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p> <p>[본조신설 2012. 8. 3.]</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p> <p>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p>기관</p> <p>③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와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p>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분석방법이 없고,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020. 5. 26.></p>	<p>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p>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측정기기</p> <p>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5., 2012. 2. 1.,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 2017. 7. 17., 2018. 3. 29.></p> <p>1. 자동차 분야</p> <p>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3)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p>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p> <p>4) 매연측정기</p> <p>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p> <p>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2. 대기 분야</p> <p>가.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 탄화수소·산소에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에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다. 대기(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p> <p>3. 수질 분야</p> <p>가.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라.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마.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바.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사.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아.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4. 소음·진동 분야</p> <p>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p> <p>나.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p> <p>5. 토양 분야</p> <p>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p> <p>6. 먹는물 분야</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 2. 1.></p> <p>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가.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총부유세균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노급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p> <p>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8. 3.></p> <p>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3., 2019. 12. 20.)</p> <p>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p> <p>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1. 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p> <p>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p>		<p>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19. 12. 20.></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검사기관의 예비성능시험에서 적합 승인을 받은 것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p> <p>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검사등의 정밀도·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p> <p>② 제작자들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③ 제작자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p> <p>④ 제작자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p>		<p>일 것</p> <p>3.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p> <p>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수수료를 포함한다)이 마련되면 해당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성능시험 결과 예비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외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 8. 3.]</p> <p>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p>[본조신설 2012. 8. 3.]</p> <p>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들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p>		<p>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 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p> <p>② 제작자들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 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8. 3.]</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p>②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p>		<p>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校正用品)"이라 한다. 이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p>		<p>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p> <p>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校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p>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p>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p>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p> <p>[제목개정 2012. 2. 1.]</p>	<p>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도검사(精度檢査) 검사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분야 : 6명 이상 2) 대기 분야 : 5명 이상 3) 수질 분야 : 5명 이상 4) 소음·진동 분야 : 2명 이상 5) 토양 분야 : 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 : 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 : 4명 이상 나. 검정(檢定) 검사기관 : 4명 이상 2. 검사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2. 7. 31.]</p>	<p>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 17.></p> <p>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8. 3.></p> <p>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4. 기술능력 5. 시설 또는 장비 <p>[제목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목개정 2012. 8. 3.]</p> <p>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9. 12. 20.></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2. 1.]</p>		<p>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p> <p>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p>제4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 2. 1.></p> <p>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2. 2. 1., 2017. 12. 12.></p> <p>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도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5. 12. 22., 2017. 1. 17.></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p>	<p>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7. 7. 17.></p> <p>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춘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p> <p>2.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p> <p>3.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도검사나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20. 7. 16.> [제목개정 2012. 8. 3.]</p> <p>제3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 8. 3.></p> <p>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 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④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 8. 3., 2017. 7. 17.> ⑥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8. 3., 2017. 7. 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 ⑧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등록번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⑥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p>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7. 7. 17.,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 7. 17.></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상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17., 2018. 12. 13.></p> <p>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p> <p>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p>	<p>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p>[본조신설 2020. 9. 29.] [중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0. 9. 29.>]</p> <p>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p>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p>	<p>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본조신설 2018. 12. 13.]</p> <p>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결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p>[본조신설 2020. 9. 29.]</p> <p>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p> <p>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9. 29.]</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원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p>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보급 촉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p>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9. 29.]</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p> <p>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p> <p>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p> <p>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p> <p>9. 삭제 (2012. 2. 1.)</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p>	<p>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을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9. 29.]</p>	<p>〈개정 2009. 7. 13., 2018. 12. 13.〉</p> <p>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p> <p>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p> <p>③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p>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p>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등을 할 수 없다.</p>	<p>제13조의5(시험·검사기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0., 2017. 1. 17., 2017. 7. 17., 2018. 1. 16., 2018. 10. 16., 2018. 12. 1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 전문기관 	<p>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0. 7. 16.></p> <p>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p> <p>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8. 3.]</p> <p>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표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준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시험·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p>	<p>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p> <p>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p> <p>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p> <p>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p> <p>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여 판정</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7. 3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9. 29.)]</p>	<p>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8. 3.]</p> <p>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기기의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⑥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2. 12.></p> <p>⑦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12. 2. 1.]</p> <p>제18조의3(시험·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p> <p>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7. 16.> [본조신설 2012. 8. 3.]</p> <p>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0. 4. 2.,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p> <p>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p> <p>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p> <p>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p> <p>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p> <p>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p> <p>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p> <p>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p> <p>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p> <p>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p> <p>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도물 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p> <p>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 2제7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p>		<p>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p> <p>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p> <p>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p> <p>[본조신설 2014. 1. 17.]</p> <p>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 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해당 분야에서 확보한 시험·검사기관: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p> <p>2. 제1호 외의 시험·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p> <p>[본조신설 2014. 1. 17.]</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7.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환경측정분석사</p> <p>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 5.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2. 2. 1., 2015. 2. 3., 2015. 12. 22., 2017. 1. 17., 2017. 12. 12.,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③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환경측정분석사</p> <p>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환경측정분석사</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p> <p>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p> <p>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p> <p>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p> <p>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p> <p>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 7. 31., 2020. 9. 29.></p> <p>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 7. 31.></p> <p>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p>	<p>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3.></p> <p>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 분야·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4. 12. 29.></p> <p>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p> <p>⑤ 삭제 (2014. 12. 29.)</p> <p>⑥ 삭제 (2014. 12. 29.)</p> <p>⑦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p> <p>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p>	<p>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13.></p> <p>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 		<p>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7. 13.]</p> <p>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13.]</p> <p>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p> <p>3.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p>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p>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4조(시험·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p>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7. 7. 17.,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p> <p>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3.></p> <p>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26조(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p>	<p>13., 2020. 9. 29.)</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p>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0. 9. 29.></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사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등의 운영체제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7. 12. 12.,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측정대행업자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p>③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p>		<p>제29조(사후 관리)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립·시행할 수 있다. <산설 2012. 2. 1.>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문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7. 12. 12.,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p>제3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p>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17. 7. 17.></p> <p>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p>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8. 12. 11., 2020. 9. 29.></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p>	<p>④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8. 12. 11.></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31., 2017.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의3.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취소 또는 조치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8.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p>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p> <p>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0. 9. 29.)</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p>[전문개정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 		<p>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p> <p>7. 제18조제4항에 따른 실기시험 응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4. 4. 30.]</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입신고를 한 자</p> <p>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p> <p>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등을 한 자</p> <p>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한 결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p> <p>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p> <p>[전문개정 2020. 3. 31.]</p> <p>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5. 25.]</p> <p>제35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9. 29.></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2. 12.></p> <p>[전문개정 2010. 5. 25.]</p>	<p>[전문개정 2011. 4. 5.]</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8038호, 2006. 10. 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p> <p>제3조(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p>	<p>부칙 <제20297호, 2007. 9.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5조에 따라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별표 6과 별표 9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기술직, 기능직 또는 분석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p> <p>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교란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p>	<p>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p> <p>별표 3 비교란과 별표 5 비교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를 삭제한다.</p> <p>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의2를 삭제한다.</p> <p>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삭제한다.</p> <p>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를 삭제한다.</p> <p>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를 삭제한다.</p> <p>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를 삭제한다.</p> <p>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를 삭제한다.</p> <p>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를 삭제한다.</p> <p>⑩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진동 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p>	<p>삭제한다.</p> <p>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법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p> <p>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③ 생략</p>	<p>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p> <p>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⑦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92호, 2007. 1. 2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875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p>	<p>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486호, 2007. 5. 25.> (산업표준화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도해양부"로 한다.</p>	<p>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⑬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3999호, 2012. 7.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별 제35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의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측정대행업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24493호, 2013.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p> <p>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교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⑮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교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p> <p>⑯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환경분야</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29)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9590호, 2009. 4. 1.> (국가표준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084호, 2014. 1. 14.></p> <p>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6907호, 2016. 1. 1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p> <p>부칙 <제27506호, 2016. 9.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p> <p>⑦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사설업"을 "방지사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한다.</p> <p>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한다.</p> <p>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p> <p>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사설업자"를 "방지사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나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0036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315호, 2010.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9조 생략</p>	<p>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p> <p>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p> <p>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338호, 2009.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64호, 2010. 3. 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1261호, 2012. 2.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p> <p>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부칙 <제28185호, 2017. 7.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⑪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소음·진동관리법」</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474호, 2012. 8. 3.></p>
<p>부칙 <제11266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p> <p>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p> <p>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⑭부터 ⑯까지 생략</p> <p>부칙 <제29231호, 2018. 10.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제3호,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최초정도검사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로 추가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정도검사 주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받은 정도검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받은 최초의 정도검사는 종전의</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p> <p>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51호, 2018. 12. 11.></p> <p>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7호, 2020. 9.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규정에 따르되, 그 최초 정도검사를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87호, 2012. 11. 30.></p> <p>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1호, 2014. 1. 17.></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0호, 2014. 6. 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⑯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p> <p>⑰부터 ㉓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1918호, 2013. 7. 1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468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176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 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601호,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한다.</p> <p>⑪ 생략</p> <p>부칙 <제707호, 2017. 7.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법 제11조</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86호, 2016. 1. 2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1호, 2018. 3.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p> <p>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6>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200호, 2017. 12.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원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p>		<p>별표 11 제1호 단서에 따라 별표 9 제2호 기술능력란의 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수행하게 하는 측정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기술능력 변경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1호, 2018. 12.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9호, 2019. 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여러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57호, 2020.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7184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7항·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 계약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p> <p>부칙 <제876호, 2020. 7. 16.></p> <p>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85호, 2020. 9. 29.> (부칙 <환경부령 제885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p> <p>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419
[별표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419
[별표 3]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420
[별표 4]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	421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421

[별표 1] <신설 2020. 9. 29.>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신설 2020. 9. 29.>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3조의3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증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증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증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제16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3] <개정 2020. 9. 29.>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별표 4] <개정 2020. 9. 2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

검정 분야	검정방법	검정과목
대기환경 측정분석 분야	필기시험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악취 공정 시험기준,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수질환경 측정분석 분야	필기시험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 분석, 중금속 분석, 유기물질 분석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20.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1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	50	70	1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의2	50	70	100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 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3호	50	70	10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	50	70	100
바.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2	50	70	100
사. 법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3	50	70	100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300	300
자.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5호	50	70	100
차.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6호	100	100	100
카.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7호	50	70	10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425
[별표 1의2]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	425
[별표 2]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426
[별표 2의2] 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	429
[별표 3]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429
[별표 4] 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430
[별표 5]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	430
[별표 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432
[별표 7]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438
[별표 8]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439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440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442
[별표 1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445
[별표 11의2] 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445
[별표 11의3]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447
[별표 12] 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447
[별표 13]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448

[별표 1] <신설 2012.8.3>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1.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 가. 인력기준은 시험과 검사 분야로 나누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 책임자 : 시험분야 1인, 검사분야 1인 총 2인 이상
 - 가)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 나)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다) 관련분야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2) 연구원 : 시험분야 10인 이상, 검사분야 20인 이상
 - 가)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나) 관련분야의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관련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1) 시험·검사실 : 시험실(3실 이상), 검사실(3실 이상), 기기분석실(1실 이상), 크린룸(10,000 class 이하), 천칭실(1실 이상), 시험·검사품 보관실(1실 이상)
 - 2) 장비는 시험과 검사 분야로 각각 나누어 구비할 수 있다.
 - 가) 시험분야 : 고분해능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기ICP,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C), 정밀저울 각 1조 이상(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 인정)
 - 나) 검사분야 :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각 1조 이상
 - 다. 운영관리 : 시험·검사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의 관련분야, 시험검사실의 면적, 분야별 대상장비, 정도관리 등 기준시험·검사실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의2] <개정 2012.8.3>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제작 회사 :	기기 형식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세로 40mm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9. 12. 20.>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동력계는 원동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용 원동기를 시험운전모드로 운전하여 제어하는 것으로서, 회전축에 부하를 부여하는 제동부와 지시부, 회전속도 지시부, 연료유량 지시부, 공기유량 지시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원동기의 모든 속도에서 부여되는 부하와 원동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증량부여장치, 자동차 바퀴 회전에 따른 롤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원동기동력계·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채취하여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염이온화법(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에 따른 탄화수소 분석기로 밀폐실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밀폐실 내의 탄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범위를 가져야 하며 증발가스 분석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 장치를 가져야 한다.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 또는 입자개수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 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 분석기,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대기온도 및 압력센서, 엔진 제어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증량부여장치, 자동차 바퀴 회전에 따른 롤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산소, 공기과잉률 등을 채취하여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는 배출가스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비분산형적외선 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휘발유, 가스 및 알콜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비분산적외선 방법(산소는 자기식 및 전기화학식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기과잉률을 계산 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채취부, 계측부, 농도지시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매연농도를 광반사식방법 또는 부분유량채취식·광투과식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대 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테이프구동장치,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력 및 출력단자장치, 마이크 부착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도를 녹화·재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카메라, 주제어장치,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매연 등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장치,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데이터 출력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장치, 분석부와 데이터처리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배출가스 중 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 및 배출가스유속 등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기록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대기 중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및 먼지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 먼지시료채취장치는 흡인노즐, 흡인관, 피토티(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여과지홀더, 여과부가열장치, 임핀저트레인,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시료채취장치는 자동등속 흡인제어부, 유량자동제어밸브, 측정데이타기록부 등을 갖추어 등속흡인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가스시료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임핀저트레인, 연결관, 시료장치, 가스시료 흡수병 그리고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수질분야

용존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 질소·총 인·총 유기탄소·수소이온농도·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시료·시약의 계량부, 반응조, 가열기, 교반기, 적정기, 검출기, 변환기, 시약저장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폐수 및 하천, 호소 등 공공용수역에서 물의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량, 총 인량, 총 유기탄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량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

마이크로폰, 레벨렌지변환기, 교정장치, 청감보정회로, 동특성조정기, 출력단자, 지시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진동레벨계

진동픽업, 레벨렌지 변환기, 교정장치, 감각보정회로, 출력단자, 지시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토양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액상부 누출측정기기는 누출측정기, 온도계, 데이터 분석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상부 누출측정기기는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안전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판독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검출기, 광원, 시료조, 지시·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전극, 전극보호구, 변환기, 지시·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자동 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흡입펌프, 유량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및 총 부유세균을 용이하게 포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에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구조·성능의 세부기준과 변경승인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개정 2012.8.3>

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교정가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1퍼센트
 -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 다. 그 밖의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2. 자동차분야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표준필터는 매연농도값의 ±2퍼센트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1033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정용품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개정 2012.8.3>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공동시험장치(안지름 100mm 이상인 것) 나.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온도기록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인 것)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검정용 자동차(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유량교정장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	가. 역전류검출기(ocilloscope) 나. 증류수제조장치
대기연속자동 (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 및 먼지) 측정기	증류수제조장치
굴뚝시료 채취장치	가. 압력펌프 나. 전압·전류 측정기(0.01mV, 0.001mV 이하 측정 가능)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1대
총질소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1대 다. 회로시험기
총인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소음계	가.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Hz~16kHz) 나. 기록장치

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진동레벨계	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Hz~90Hz) 나. 기록장치
저장시설 누출측정기	자동기록장치
탁도연속 자동측정기	직류전압 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 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pm 0.001mV$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가. 위상차현미경 나. 배양기(세균)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	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나. 영점교정장치 다. 직류전압 공급장치

[별표 6] <개정 2019. 12. 20.>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나.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각 분야에서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
- 2)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공통되거나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

다. 제2조의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중 해당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동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성능·정도검사 및 검정검사를 위하여 사용(위탁관리를 포함한다)하는 측정기기(이하 “기준장비”라 한다) 및 제9조의 교정용품에 대하여는 다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성능·정도검사 및 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만 소유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도검사의 검사기관

가. 자동차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나) 해당 측정항목의 영점(霧點)을 교정할 수 있는 표준가스 발생장치 1조 다) 전압·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사) 흡입량 측정장치 3조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조 자) 검정용 자동차 1대(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절연저항시험기 2조 카)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온도기록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인 것) 1대 타) 회전수측정기(tachometer) 1대 파) 광학측정기 1대
2)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시설 및 장비[자)는 제외한다] 나) 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측정장치) 1조 다) 기체유량 교정장치 1조 라) 차압계(정확도 ± 0.25%) 2대 마) 압력핌프(압력변환 가능한 것) 1대 바) 기준압력계(manometer) 1대 사) 풍동시험장치(안지름 100mm 이상인 것) 1조 아) 기준 피토관(pitot tube, 계수 0.95~1.00) 1대 자) 기준온도계 1대 차) 순간유량계(정확도 ±0.25%, 유량에 따라 변환이 가능한 것)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입자개수 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 입자 전위 차계, 입자개수 측정기) 각 1대 파) 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 ± 2%이내) 1대 하) 가스디바이더(정확도±0.5%) 1대 이상(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대기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기준장비 성분별 각 1조 나) 교정용 표준가스 성분별 각 1조 및 교정용 가스희석장치 각 1조 다) 해당 측정항목의 영점을 교정할 수 있는 표준가스 발생장치 1조 라)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마) 자동기록장치 3대 바) 수소이온농도계(pH계), 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사) 유량교정장치 1대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연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해당 측정항목의 영점을 교정할 수 있는 표준가스 발생장치 2조 나) 자동기록계 3대 다)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라) 역전류검출기(ocilloscope) 1대 마) 표준가스 정확장치 1조 바) 입자계수기 1대 사) 표준전류·전압 공급장치(직류·교류) 각 1대 아) 반사율측정기 자) 표준습식가스 유량계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및 전도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계 1대 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하) 굴뚝배출가스 측정장치(먼지·연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유속) 각 1조 거) 실험분석실(습식분석장비·장치 보유) 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채취장치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데) 증류수제조장치 1대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1대 러) 배출가스 유량측정기 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cm×30cm 이상, 최대 유속 15% 이상) 1식
3) 대기연속자동(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 및 먼지)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기준장비 성분별 각 1조 나) 교정용 표준가스 성분별 각 1조 및 교정용 가스 희석장치 각 1조 다) 해당 측정항목의 영점을 교정할 수 있는 표준가스 발생장치 2조 라)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마) 자동기록장치 3대 바) 오존교정기 1대 사) 대용량 공기채취기, 입자계수기, 베타선(β -Ray)검출기, 주파수인가장치 및 연속가변저항기 각 1대 아) 증류수제조장치 1대 자) 수소이온농도계(pH계)·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차) 전자저울 1대 카) 표준입자 발생장치 1조 타) 유량교정장치 1대 파) 가변저항기 1대
4) 굴뚝시료 채취장치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유량 측정시스템(직관부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 정확도는 0.3% 이내일 것) 1조 나) 유량계교정장치 1대 다) 기준유량계 2대 라) 디지털압력계 2대 마) 압력펌프 1대 바) 기압계 1대 사) 전압·전류 측정기(0.01mV, 0.001mV 이하 측정 가능)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아) 초시계(0.01초 이하 측정 가능) 1대 자)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차) 풍동장치(피토관 시험용) 1조 카) 온도계(최소 눈금 0.1℃ 이하) 1대 타) 미세눈금자(micrometer, 최소 눈금 2 μ m 이하) 1대 파) 온도교정장치 1조 하) 절연저항계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채취 장치 1대 더) 기준 피토관(계수 0.95~1.00) 1대 러) 항온항습시설[온도 (23 \pm 1)℃, 상대습도 55% 이하] 1조

다. 수질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준장비(용존산소·pH) 1대 나) 전자저울(200g 이상, 0.1mg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다) 기준온도계(0~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는 것)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 Ω 이상인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pm 1mV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의 온도를 \pm 1℃ 이내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kW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kW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차)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 Ω 및 500M 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1대 카) 신호기록장치 1대 타)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파) 항온항습실험실 하)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2)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나) 기준장비(화학적 산소요구량) 1대
3)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나) 기준장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대
4) 총 질소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나) 기준장비(총 질소) 1대
5) 총 인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나) 기준장비(총 인) 1대
6)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나) 기준장비(총 유기탄소)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과 장비 나) 기준장비(pH기준장비) 1대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부터 너)까지의 시설과 장비 나) 기준장비(SS기준장비) 1대

라. 소음·진동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계	기술직 2명	가)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Hz~16kHz) 1대 나) 표준음발생기 (1) 200~500Hz 1대 (2) 1,000Hz 1대 주 : (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라) 음발생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 마) 음주파수 응답분석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바) 기록장치 1대 사)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dB 이내)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microphone) 결합장치(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2) 진동레벨계	기술직 2명	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 Hz ~90Hz) 1대 나) 표준진동발생기 6.3~90Hz 1대 다) 표준진동픽업 1개 라) 진동가진장치: 6.3~9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에서 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 기기 1대 마) 진동주파수 응답분석장치: 6.3~90Hz 범위의 모든 진동(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바) 기록장치 1대 사)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dB 이내)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 1대

마. 토양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저장시설 누출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저장시설 액상부 측정기(시간당 0.4ℓ 이하의 누출량을 감지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것) 및 그 부속기기 1조 나) 저장시설 기상부 측정기(9.8Pa 이하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 측정기 환경시험용 온도 및 습도 가변시험시설 1조 라) 측정기기 시험시설(직경 240cm, 길이 400cm 이상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재질의 원통형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안의 액체 및 압력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1조 마) 전자저울(0.1mg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1대 바)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1대 사) 절연저항측정기 1대 아) 내전압측정기 1대 자) 자동기록장치 1대

바. 먹는물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다) 직류전압 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의 정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1대 라)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1대 마)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1대 바) 절연저항측정기(1kV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2000MΩ 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사) 내전압측정기(1kV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아) 신호기록장치 1대 자) 시료보관용 항온장치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차) 증류수(순수)제조장치 1대 카) 항온수조[5~10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부착된 것] 1대 타)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1대 파) 항온항습시설
2) 잔류염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위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의 너)부터 파)까지의 시설과 장비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1대 다) 기준온도계(-20~9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는 것) 1대

사.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료채취 기준장비 성분별 각 1조 나) 위상차현미경 1대 다) 전자현미경 1대 라) 유량측정장치(100mL/min 이상 측정 가능하고 유량을 계속 더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5대 마) 온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 1대 바) 순간유량 측정장치(비누방울 측정방법) 1대 사) 압력측정장치(5개 채널 이상) 1대 아) 습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 1조 자) 배양기(세균) 1조 차) 시료포집펌프 1조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카) 전자저울(0.001mg 이하 측정 가능한 것) 1대 타)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조 파)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하) 자동기록장치 3대 거) 절연저항계측정기 각 1대 너) 압력펌프 1대 다) 미세먼지(PM10) 공기포집기 3대 라) 가변저항기 2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베타) 무균시험실 서) 장비검사실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이산화황) 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자동측정기 기준장비 성분별 각 1조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라) 열 탈착기 1대 마)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바)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조 사) 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 각 1조 아) 교정용 가스화석장치 각 1조 자) 영점교정장치 각1조 차)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카) 자동기록장치 3대 타) 절연저항계측정기 1대 파) 시료포집펌프 1조 하) 가변저항기 2대 거) 온도시험장비(-20℃~40℃, 크기 1.5m×1.5m×1.5m이상) 1대 너)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더) 압력펌프 1대 러) 미세먼지(PM10) 공기포집기 3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베타) 장비검사실

3. 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교정용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가스표준물질 제조장치 1식 나) 가스분석기(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2식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식 라) 수분분석기 1식
나. 측정기기 교정액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 포함) 1식 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기(190~1,000nm) 1식 다)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수질 10MΩ 이상) 1식 라) 고압증기멸균기(120℃에서 가열할 수 있는 것) 1식 마) 배양기((20±1)℃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식 바) 항온수조(10℃에서 150℃까지 범위내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식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표준 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검정대상 환경측정기기 표준 검정기기 나) 검정대상 환경측정기기 표준 교정용품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비고

- 1.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분야별 기술인력을 다른 지정 분야의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2. 기술능력 중 기술직과 기능직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직
 - 1)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 2)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 및 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자
 - 3)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나. 기능직
 -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제2호에서 "관련 분야"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별표 기 <개정 2012.8.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

(제10조제4항 관련)

-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가.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 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현장평가 세부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점수부여와 점수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가.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
 - 나. 평가팀원 각자의 합계 평점을 구한 후 산술평균하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 4.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근 1년 내에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 성적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가)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라)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14조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지정취소			

비고: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표 9] (개정 2020. 9. 2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 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 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 (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 9. 29.)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조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 ₂) 다) 포름알데히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 ₂)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 ₃)(「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 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5. 약취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약취물질 실험실(지정약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약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수행한 사람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약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가) 복합약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약취희석장치 1식 나)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약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고

-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삭제 <2020. 9. 29.>
-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화학분석기사 또는 환경기사
 -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대기환경보전법」
 - 다. 「먹는물관리법」
 - 라. 「소음·진동관리법」

-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바. 「화학물질관리법」
- 사. 「폐기물관리법」
- 아. 「하수도법」
-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카. 「토양환경보전법」
- 6. 삭제 <2020. 9. 29.>
- 7. 삭제 <2020. 9. 29.>

[별표 10] <개정 2020. 9. 29.>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 (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마)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시료채취용 장비를 실을 수 없거나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가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	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8)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 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측정 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의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 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5)의 마) 및 바)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 및 실험기기를 말한다.
 - 가. 대기 분야: 피토포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흡입관, 가스미터,

- 기압계, 고온온도계, 진공펌프, 마노미터, 산소측정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화학천평(化學天秤) 및 킬달분해장치
- 나. 수질 분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란기(解卵器),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수소이온농도계(pH계), 비화수소발생장치, 화학적산소요구량 환류장치, 전자포획검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 다. 소음·진동 분야: 소음계, 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의부교정기
- 라. 실내공기질 분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HPLC), 열탈착장치(TD), 미니볼륨에어샘플러(Mini volume air sampler), 전자저울, 위상차 현미경, 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 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 라돈 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 마. 악취 분야
 - 1) 복합악취: 시료채취장치, 무취공기 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시료채취장치, 악취농축장비, 열탈착장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및 원자흡광광도계 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별표 11] <개정 2018. 3. 29.>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진동분야는 제외한다)
 - 나.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 다.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라. 차량 운행일지
5.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이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1의2] <신설 2012.8.3>

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 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Z = \frac{x - X}{s}$$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 가) 표준시료 제조값
-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 2) 분야별 항목평가는 도출된 개별 평가항목의 Z값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한다.

항목별 Z 값에 따른 평가

적합	부적합
$ Z \leq 2$	$2 < Z $

나. 오차율에 의한 평가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text{오차율}(\%) = \frac{\text{대상기관의 분석값} - \text{기준값}}{\text{기준값}} \times 100$$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 가) 표준시료 제조값
-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30 %이하인 경우 “적합”, ±30 %보다 큰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미생물과 같이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과 위 “가”, “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분야별 기관 평가는 “가”에서부터 “다”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항목 평가결과를 만족 “5점”, 불만족 “0점”으로 부여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분야별 환산점수는 연차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연도	적합	부적합
2012년 ~ 2014년	≥ 80점	< 80점
2015년부터	≥ 90점	< 90점

(분야별 환산점수 산출식)

$$\text{환산점수} = \frac{\text{총점}}{\text{항목수}} \times \frac{100}{5}$$

마.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을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단, 법 제18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3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2. 현장평가 판정기준

- 가. 현장평가 내용은 기술인력, 시설, 장비, 실험실 운영을 포함한 운영 및 기술, 시험·검사 능력,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으로 구분 한다.
- 나. “가”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나”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숙련도 시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의 환산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항목 수에는 포함시켜 계산한다.

$$\text{합계평점} = (\text{운영 및 기술 점검표의 환산점수} + \frac{\text{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text{평가항목수}}) \div 2$$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라.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분	판정기준
적합	1.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며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부적합	1.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나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3.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4. 현장평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미흡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1. 인력의 허위 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 2. 숙련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등)한 경우
- 4.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개별법의 등록·지정·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

3. 정도관리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 결과와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정도관리 적합으로 판정한다.

[별표 11의3] <신설 2020. 7. 16.>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제17조의4제3항 관련)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별표 12] <개정 2009.7.13.>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경고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 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다.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자격취소			

[별표 13] <개정 2018. 3. 29.>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가. 자동차 분야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641,000	269,000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4륜차용	647,000	299,000
	(2) 2륜차용	647,000	348,000
	(3) 삭제 <2018. 3. 29.>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원동기	775,000	347,000
	(2) 차대(4륜차용)	822,000	347,000
	(3) 차대(2륜차용)	1,013,000	409,000
	(4) 삭제 <2018. 3. 29.>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637,000	424,000
	마) 입자형태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차대 및 원동기(전체용)	478,000	241,000
(2) 원동기(부분 채취식용)	792,000	315,000	
(3) 입자개수 측정장치	1,458,000	1,157,000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785,000	762,000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196,000	227,000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163,000	236,000	
다)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2)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포함)	528,000 565,000 651,000	73,000 73,000 94,000 (83,000)
	라) 매연측정기 (1) 여지반사식 (2) 광투과식	681,000 1,015,000	73,000 175,000
	마)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362,000	86,000
	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855,000	1,259,000
나.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671,000 809,000	184,000 223,00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나) 가스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1,163,000 1,163,000 1,385,000	651,000 651,000 802,000
	(라) 유속계	964,000	480,000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1,028,000	606,000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나) 가스	658,000 555,000	481,000 426,000
다. 수질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12,000	322,000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분야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387,000 1,276,000	755,000 765,000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37,000 1,237,000	755,000 755,000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651,000 1,006,000	535,000 517,000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026,000	549,000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29,000 931,000	439,000 440,000
마.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695,000 1,427,000 795,000	37,000 248,000 40,000
바. 토양 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지상 포함) 1) 액상부 2) 기상부	2,384,000 312,000	1,540,000 300,000
사. 실내 공기질 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109,000 622,000 557,000	713,000 170,000 163,000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시료채취 장치와 그 부속기기	557,000	163,000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82,000	341,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03,000	606,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03,000	606,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03,000	606,000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03,000	606,000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88,000	488,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2. 검정수수료

교정용품	수수료(원)	비고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44,000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10,000(13,000)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35,0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3,100)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 m/1롤 기준)	4,300(11,7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3. 출장비
 - 가.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연료료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제1편
녹색전환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457	제1조(목적) 457	제1조(목적) 457
제2조(정의) 457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458
제3조(국가의 책무) 45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59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459	제2조(통합허가) 460	제3조(사전협의) 459
제6조(통합허가) 460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465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460
제7조(허가기준 등) 463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466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461
제8조(허가배출기준) 465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461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466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463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467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465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468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466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 1. 5.>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469		
제11조의3(결격사유) 469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470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471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47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472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473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474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474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474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475 제13조(오염도 측정) 476 제14조(개선명령 등) 477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475 제6조(개선기간) 477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477 제8조(자체 개선) 478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479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475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476 제12조(개선계획서 등) 477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479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481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481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481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482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483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483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484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484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478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 480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481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482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483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484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484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482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483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484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485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485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 480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485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485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485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482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48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486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486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487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487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487	제20조(조치계획서 등) 487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489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488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487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491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490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492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490
제23조(과징금) 493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493	제24조(조치계획서 등) 491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494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등) ··· 495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94
	제25조(실태조사) 496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495
제25조(실태조사) 496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497	제27조(기술작업반) 496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497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496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498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98	제29조(정보 공개 등) 498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499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99	
	제30조(위원장의 직무) 5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501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503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504 제31조(자가측정) 505 제32조(기록·보존) 507 제33조(연간 보고서) 507 제34조(수수료) 507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508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08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1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510	제31조(위원회의 운영) 500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501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501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503 제35조(권한의 위임) 508 제36조(업무의 위탁) 510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503 제31조(출입·검사 등) 504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505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506 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 507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07 제36조(수수료) 507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제38조(벌칙) 511 제39조(벌칙) 511 제40조(벌칙) 511 제41조(벌칙) 512 제42조(벌칙) 513 제43조(벌칙) 513 제44조(벌칙) 513 제45조(벌칙) 513 제46조(양벌규정) 514 제47조(과태료) 514 부칙 516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14 부칙 516	부칙 5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5.12.22 법률 제13603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7호 2018.10.16 법률 제15832호 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9.11.26 법률 제1661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56호</p>	<p>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9. 5.21 대통령령 제2977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3호 2020. 8.11 대통령령 제30930호</p>	<p>제정 2016.12.30 환경부령 제686호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2.29 환경부령 제735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30 환경부령 제7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8.12.31 환경부령 제797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 5.24 환경부령 제808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2.24 환경부령 제850호 2020.11.23 환경부령 제88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p> <p>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騒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p>		<p>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약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p> <p>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p> <p>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p>	<p>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p>	<p>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p> <p>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정한다.</p> <p>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p> <p>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 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p>	<p>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p> <p>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p>	<p>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p>	<p>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②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p> <p>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 제1호·제2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 2. 영 별표 2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별표 2 제4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4.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p>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p> <p>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p>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p> <p>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p>	<p>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p>	<p>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p>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p> <p>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p> <p>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p>		<p>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p> <p>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p> <p>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p>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p>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목표</p> <p>3. 배출시설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p> <p>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p> <p>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p> <p>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p> <p>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관리 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p> <p>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p> <p>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p>	<p>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p>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p>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p> <p>4. 「약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약취방지법」</p> <p>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p> <p>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p> <p>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p>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자하는 경우 인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p> <p>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 1. 5.〉</p> <p>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p>②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p> <p>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p> <p>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 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절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p> <p>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p> <p>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p>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p> <p>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2020. 2. 24., 2020. 1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약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 소음 10. 진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6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p>	<p>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p>	<p>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간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전화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p>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배출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 	<p>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p> <p>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이하 "공동방지사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p>	<p>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 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p>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6.></p> <p>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p> <p>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p> <p>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p> <p>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p>	<p>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p> <p>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p> <p>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p>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p> <p>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p>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1 제1호기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할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할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p>	<p>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p>	<p>납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p> <p>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p> <p>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p>④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5. 21.]</p> <p>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방법·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p>	<p>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은 별표 12와 같다.</p> <p>③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p>	<p>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p> <p>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p> <p>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바꾸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p> <p>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p>	<p>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기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p>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차 및 운</p>	<p>1.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p> <p>2.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 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p> <p>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p> <p>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p>	<p>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p> <p>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의 개선·변경·점검·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p> <p>2. 영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p> <p>⑥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차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p> <p>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p> <p>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p> <p>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p> <p>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p>	<p>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p> <p>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p> <p>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p>		<p>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p> <p>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p> <p>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희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p> <p>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p> <p>3. 희석배율 및 희석량</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p> <p>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2.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p> <p>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년 2. 법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 3. 법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6개월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p>	<p>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p>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을 철거한 경우</p> <p>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p> <p>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p>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p> <p>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최적가용기법</p> <p>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최적가용기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최적가용기법</p> <p>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p> <p>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p>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p>	<p>제27조(기술작업반)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링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p>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 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직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직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이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사항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최적이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7조(정보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p>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雇)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p> <p>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p> <p>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p> <p>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p> <p>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p> <p>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p> <p>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p> <p>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p> <p>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p> <p>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p> <p>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p> <p>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p> <p>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배출시설등의 허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기술을 갖추었을 것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회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p>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p>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p> <p>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검사할 수 있다.</p> <p>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⑦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p> <p>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p> <p>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p> <p>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0. 2. 24.></p> <p>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p> <p>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p> <p>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p> <p>③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p> <p>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기록·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p>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p>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p> <p>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p>제36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p>〈개정 2020. 2.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 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2.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수정·보완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2.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p> <p>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확인</p> <p>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p> <p>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감면 및 조정 등</p> <p>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p> <p>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p> <p>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p> <p>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p> <p>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p> <p>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p> <p>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p> <p>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p>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p>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p>제3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 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 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p> <p>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p> <p>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p> <p>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p> <p>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p> <p>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p> <p>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허가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약취에 대한 허가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5조(벌칙)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p> <p>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 5.></p> <p>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p> <p>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p> <p>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p> <p>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 〈제13603호, 2015.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p>부칙 〈제27737호, 2016.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2 제2호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p> <p>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 측정 결과를 적용한다.</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p>	<p>부칙 〈제686호, 2016.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③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p> <p>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p> <p>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p>	<p>한다.</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p> <p>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부칙 (제735호, 2017. 12. 29.)</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p> <p>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p> <p>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p> <p>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p> <p>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p> <p>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 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p> <p>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2호, 2018. 3.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p> <p>⑥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p> <p>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p> <p>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p> <p>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p>	<p>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p>	<p>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속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칙 (제797호, 2018. 12. 31.)</p> <p>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원에 관한 미나미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잔류성오염물질</p> <p>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잔류성오염물질</p> <p>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른 과징금</p> <p>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p> <p>부칙 (제1447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p> <p><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65>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p> <p><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p> <p>㉞ 생략</p> <p>부칙 (제29776호, 2019. 5.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과 별표 9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8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p>	<p>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p> <p>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808호, 2019. 5. 24.)</p> <p>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영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0호, 2020. 2.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p> <p>(88) 및 (89) 생략</p>	<p>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p> <p>부칙 (제2995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483호, 2020. 2. 2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p> <p>부칙 (제30930호, 2020. 8.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p>	<p>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행정적 지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부터 3년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부터 4년이 되는 날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을 뺀 기간(3년이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만큼 연장한다.</p> <p>부칙 (제888호, 2020. 11. 2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의 질 목표 수준 관련 유효기간)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07호, 2017. 11. 2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32호, 2018. 10. 16.)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18호, 2019. 11. 26.)</p>	<p>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라 본다.</p> <p>②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p> <p>③ 별표 1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56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p> <p>제3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527
[별표 2]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528
[별표 3]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530
[별표 4]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3조 관련)	531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532
[별표 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534
[별표 7]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536
[별표 8]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536
[별표 9]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541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542
[별표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543
[별표 12]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제18조제2항 관련)	544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546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547

[별표 1] <개정 2020. 2. 25.>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의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2019년 1월 1일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응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2020년 1월 1일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 16.>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톤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세제곱미터 이상(「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또는 2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등을 신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체 또는 변경하거나 연료·원료·부원료·제조 공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을 새로 설정하여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다. 나목에 따른 측정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다.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라.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이라 한다)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 마.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바.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아.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 새로운 악취를

-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자.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차.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그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지정·고시될 때(같은 항 제2호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고시될 때를 말한다)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라.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18. 1. 16.>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1.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배출시설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방지사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 중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을 말한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증설 또는 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설, 교체 또는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사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비산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함으로써 배출시설의 규모(동일한 시설·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하며,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개수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5)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6)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7)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8)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9) 법 제2조제2호바목의 비점오염원(이하 “비점오염원”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장 부지면적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10) 비점오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11)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12)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13)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14)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나. 방지사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대기오염방지사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사설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질오염방지사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사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악취방지사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8)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다. 배출시설등에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운영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등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일일 작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한 경우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한 경우 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한 경우
 - 라.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마.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한 경우
 - 바.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경우
 - 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에 그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별표 4] <개정 2020. 2. 25.>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제3조 관련)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환경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로 유출되는 오수·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저류시설(非常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할 것
 - 나. 제18조제1항제2호의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 측정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배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배출기준을 고시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
 - 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목에 따른 물질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로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1) 배출시설을 증설하지 않을 것

2)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된 이후에는 나목1) 및 2)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1)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전량 유입·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것

2)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바.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별표 5] <개정 2019. 5. 21.> [시행일 : 2020. 1. 1.] 질소산화물 관련 규정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

(제9조제1항 후단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1.0으로 한다.

다.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1.5	0.5	1.0

비고

1.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2. 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3.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라. 농도별 부과계수

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제21조제1호에 따른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된 측정자료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0.5% 초과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나) 가)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2) 1) 외의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65	0.8	0.95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35	0.5	0.65	0.8	0.95

(3)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나) 질소산화물 외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비고

배출농도

1.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 $\frac{\text{배출농도}}{\text{최대배출기준 농도}} \times 100$
2. "배출농도"란 별표 6 제1호(가목2)가)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1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	제1종사업장 (단위: m ²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1.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나.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다.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라. 특례지역: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3.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나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라.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1	1.2	1.4	1.6	1.8

구분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농도별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frac{\text{배출농도} - \text{방류수수질기준}}{\text{최대배출기준 농도} - \text{방류수수질기준}} \times 100$
2. “방류수수질기준”이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4. 제1호의 최대배출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않는 동일 시설의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2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9. 5. 21.>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 1)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2) 자가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의 경우
 - 가)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frac{\text{자가측정된 각각의 일일 배출량의 합계}}{\text{자가측정 횟수}}$$

(2)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허가배출기준 이내인 경우

$$\frac{\text{(1)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 \text{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1 + \text{검사 횟수}}$$

나)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1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2)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추가배출량} = (\text{허가배출기준농도} - \text{일일평균 배출농도}) \times \text{초과배출기간} \times \text{검사 결과에 따른 측정가스유량}$$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 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7조제4항(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가목2가(1)에 따른 일일 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 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에 측정 당시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가스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 가스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 및 일일가스유량은 별표 8 제1호가목1)다)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가목2나)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농도는 부과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 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가목2나)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을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30분 평균치를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 1)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2) 1)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일일평균 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 × 일일평균 폐수유량)

- 3) 2)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폐수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8 제2호가목1)다)를 준용한다.

- 4) 2)에 따른 일일평균 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은 "일일평균 폐수유량"으로, "일일 배출량"은 "일일폐수유량"으로 본다.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배출농도의 3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 배출폐수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7] <개정 2019. 5. 21.>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할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 1)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
-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 3)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나.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다.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가목에 따라 추정할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 1)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2) 1)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3) 2)에 따라 산정한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가목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별표 8] <개정 2020. 2. 25.>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기준초과 배출량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의 기간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가스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오염물질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일반 오염 물질	황산화물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64÷22.4
	먼지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질소산화물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46÷22.4
	암모니아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17÷22.4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34÷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76÷22.4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19÷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36.5÷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27÷22.4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2.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말한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4.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Sm³)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다) 일일가스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text{일일가스유량} = \text{측정가스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비고

1. 측정가스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0분 동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가 허가배출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에 따라 산정한 초과배출량에서 다음의 초과배출량 공제분을 공제한다.

$$\text{초과배출량 공제분} = (\text{허가배출기준농도} - \text{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 \times \text{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

비고

1.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간 매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 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 공제분으로 한다.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

나)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를 한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는 횡수를 위반횡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횡수를 1회로 보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횡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횡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라.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금액단위: 원)

구 분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불소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시안화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 = $\frac{\text{배출농도} - \text{허가배출기준 농도}}{\text{허가배출기준 농도}} \times 100$
2.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3. 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4.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마. 정액부과금: 0원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기준초과 배출량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
-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 \text{일일폐수유량} \times \text{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times 10^{-6}$$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
2. 특정수질오염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다) 일일폐수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일일폐수유량} = \text{측정폐수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

비고

1. "측정폐수유량"이란 배출농도를 측정할 당시의 폐수유량을 말하며,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측정폐수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로 측정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지사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폐수의 유량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시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시간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 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m ³ /일 이상 4,000m ³ /일 미만	4,000m ³ /일 이상 7,000m ³ /일 미만	7,000m ³ /일 이상 10,000m ³ /일 미만	10,000m ³ /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위반횟수 적용의 일반 기준

가)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라.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구 분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 지역 및 가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폐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안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스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 = $\frac{\text{배출농도} - \text{허가배출기준 농도}}{\text{허가배출기준 농도}} \times 100$
2.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회색하여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稀釋水)를 제외한 배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구 분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된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된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 질소	500	
총 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폐놀류	150,000	
시안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구 분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비고 : 유기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배출부과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마. 정액부과금

- 1) 정액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제1종사업장: 400만원
 - 나) 제2종사업장: 300만원
 - 다) 제3종사업장: 200만원
 - 라) 제4종사업장: 100만원
 - 마) 제5종사업장: 50만원
- 2) 1)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9] <개정 2019. 5. 21.>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가. 대기오염물질

- 1) 황산화물
- 2) 먼지
- 3) 질소산화물

나. 수질오염물질

- 1) 유기물질
- 2) 부유물질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오염물질등

가. 대기오염물질

- 1) 황산화물
- 2) 암모니아
- 3) 황화수소
- 4) 이황화탄소
- 5) 먼지
- 6) 불소화물
- 7) 염화수소
- 8) 질소산화물
- 9) 시안화수소

나. 수질오염물질

- 1) 유기물질
- 2) 부유물질
-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4) 시안화합물
- 5) 유기인화합물

- 6) 납 및 그 화합물
- 7) 6가크롬화합물
- 8) 비소 및 그 화합물
- 9) 수은 및 그 화합물
-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 11) 구리 및 그 화합물
- 12) 크롬 및 그 화합물
- 13) 폐놀류
- 14) 트리클로로에틸렌
-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6) 망간 및 그 화합물
- 17) 아연 및 그 화합물
- 18) 총 질소
- 19) 총 인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을 준용한다.
-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 1) 부과기준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가)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 나) 법 제22조에 따른 폐쇄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 다)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한 날
 - 라) 제8조에 따라 자체 개선의 완료를 확인한 날
 - 2) 부과기간
 -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별표 11] <개정 2020. 8.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배출부과금 면제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배출부과금 면제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배출부과금 면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라.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분의 20 -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30 -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40 - 3년 이상: 100분의 50
마.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별표 12] <개정 2018. 1. 16.>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1) 부착대상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부착 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 등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한다. 다만, 배출시설등의 전력사용량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1) 부착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에 따른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만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바)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을 같은 표에 따른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또는 3종 사업장으로 변경(이하 “사업장 종류모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류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배출시설이 사업장 종류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이 된 경우로서 종류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부착 유예를 인정받은 후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1) 부착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2) 부착 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측정자료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계 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수질자동측정기기

1) 측정 대상 및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2) 부착 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계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2) 같은 성상(性狀)의 폐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와 나)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19. 7.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약취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text{과징금 금액} = \text{조업정지일 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100만원)}$$

비고

- 1.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2.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text{과징금 금액} = \text{조업정지일 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times \text{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 1.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부과계수
제1종사업장	2.0
제2종사업장	1.5
제3종사업장	1.0
제4종사업장	0.7
제5종사업장	0.4

2.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text{과징금 금액} = \text{사용중지일 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500만원)} \times \text{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독성 등가치)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0.5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			
1)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00	300	500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300	650	1,000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300	600	9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0	1,000	1,500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6항제1호	100	150	200
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1) 부착한 측정기기를 일부 방치하는 행위		200	200	200
2) 부착한 측정기기를 모두 방치하는 행위		400	400	500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6항제2호	200	200	200
사.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6항제3호	120	160	200
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000	1,400	1,500
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300	500	700
차.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3호	200	300	500
카.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300	500	7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100	200	300
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5항	100	200	3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551
[별표 2] 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552
[별표 3]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553
[별표 4]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554
[별표 5]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557
[별표 6]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557
[별표 7]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559
[별표 8]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561
[별표 9]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6항 관련)	563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19조 관련)	564
[별표 11]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565
[별표 1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	565
[별표 13]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제23조 관련)	575
[별표 14]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577
[별표 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582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588
[별표 17] 수수료(제36조 관련)	588

[별표 1] (개정 2019. 12. 20.)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농축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가. 유수 분리시설

8) 탈수·건조시설

9) 멸균분쇄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 분리시설

9) 탈수·건조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시설
-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시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 나) 사료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다) 퇴비화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3) 버섯재배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사. 골재가공시설
- 아. 의약품 제조시설
-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 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2] <개정 2020. 2. 24.>

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5.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7.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8.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별표 3] <개정 2020. 11. 23.>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오염물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

물질명	농도기준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물질명	농도기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 ³
납 및 그 화합물	0.05mg/m ³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 ³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 ³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 ³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 ³
폴리염화비페닐	1pg/m ³
다이옥신	0.001ng-TEQ (독성등가치)/m ³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 ³
이황화메틸	0.1ppb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아닐린,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 ³
그 밖의 특정대기유해물질	0.00

2) 특정대기유해물질 외의 대기오염물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이하 "정량한계값"이라 한다)

나. 수질오염물질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물질명	농도기준(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트디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그 밖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량한계값

2)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

2.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량한계값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20. 2. 24.>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등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미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되,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나.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조사·분석할 때에는 측정·조사·분석의 일시 및 지점, 방법 등을 배출영향분석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

가. 대상지역 정보

1) 배출영향분석의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 정보에는 대상지역의 표고 및 기울기 등 지형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오염물질의 배출이 해당 지역의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나)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배출시설 주변에서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다) 배출시설 주변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3)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직접 방류되는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배출되는 하천이 건천(乾川)인 경우 등 그 유량값을 산정할 수 없어 배출영향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천등으로 합류되는 지점
- 나) 오염물질이 방류하천등과 완전히 혼합되는 지점
- 다) 방류하천등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나. 기상 정보

- 1) 기상 정보는 가목1)에 따른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을 말한다.
- 2) 기상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 환경부장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에서 측정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상자료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 자료 중 환경부장관이 기상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하천유량 정보

- 1) 하천유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량 자료 중 배출지점과 인접한 상류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한 저수기 유량(1년간의 일일유량 중 275일은 이 유량보다 적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수질 측정망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서 측정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하천유량 정보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 자료 중 환경부장관이 하천유량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라.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1)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구별로 산정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굴뚝의 위치 및 높이
- (2) 배출구의 형상 및 면적
- (3) 배출가스의 속도, 유량 및 온도
-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배출지점의 위치
- (2) 오염물질의 배출 방식
- (3) 폐수배출량
-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2) 배출 정보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정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구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는 먼지 항목의 연간 배출량이 1톤 이하이거나 세 항목의 연간 배출량의 합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등에 대한 배출 정보를 산정하지 않는다.

3. 배출영향의 분석

가. 기존 오염도의 산정

- 1)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오염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가) 환경부장관이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자료(먼지의 경우에는 PM-10 항목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준 오염도 자료

나) 배출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자료 중 환경부장관이 기준 오염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3) 2)가)부터 다)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 오염도를 산정할 때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의 기준 오염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0.0

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의 2분의 1

나. 추가 오염도의 산정

1) 추가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의 농도 증가량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치를 각각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기상 정보

다) 제2호라목1)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3)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농도 증가량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제2호가목3)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나) 제2호다목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오염물질을 호소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최초로 호소에 배출된 시점부터 호소에 완전히 혼합된 시점까

지 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 제2호라목1)나)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라) 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

4) 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부터 마)까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다)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방류하천등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라) 수질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그 수질오염물질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추정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등

다. 총 오염도의 산정

1) 총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준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값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영향분석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개정 2020. 2. 24.>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1호에 따라 설정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 가. 영 별표 4 제2호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 나. 영 별표 4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또는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에 따라 설정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나목1)가)에 따른 청정지역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따르되,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농도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별표 6] <개정 2020. 11. 23.>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 가.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 나.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이하 "허가배출기준안"이라 한다)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1)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1)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 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연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연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장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 2)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단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단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장기 환경기준을 뺀 값 이하이거나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단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나)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장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 3)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대기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3)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
- 가. 소음 및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 가.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경우
 - 2)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허가배출기준안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1)에 따른 청정지역
 -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4 이하이고,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른 기준 오염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 1) 외의 지역
-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4 이하인 경우
 - 나)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다)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2)가)·

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수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1)나) 또는 나목2)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2)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악취

-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하되, 별표 15에 따른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별표 기 <개정 2020. 11. 23.>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항 목	단 기	장 기
아연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1,0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50 $\mu\text{g}/\text{m}^3$ 이하
암모니아	1시간 평균치 2,5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80 $\mu\text{g}/\text{m}^3$ 이하
이황화탄소	1시간 평균치 1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64 $\mu\text{g}/\text{m}^3$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15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5 $\mu\text{g}/\text{m}^3$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7.5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0.25 $\mu\text{g}/\text{m}^3$ 이하
구리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2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0 $\mu\text{g}/\text{m}^3$ 이하
염화비닐	1시간 평균치 1,851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59 $\mu\text{g}/\text{m}^3$ 이하
황화수소	24시간 평균치 15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40 $\mu\text{g}/\text{m}^3$ 이하

항 목	단 기	장 기
다이클로로메탄	24시간 평균치 3,0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700 $\mu\text{g}/\text{m}^3$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	24시간 평균치 1,000 $\mu\text{g}/\text{m}^3$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12 ng/m^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20 ng/m^3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5 ng/m^3 이하
포름알데히드	1시간 평균치 1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5 $\mu\text{g}/\text{m}^3$ 이하
브롬화합물	1시간 평균치 0.07 mg/m^3 이하	-
시아나화수소	1시간 평균치 220 $\mu\text{g}/\text{m}^3$ 이하	-
먼지	24시간 평균치 300 $\mu\text{g}/\text{m}^3$ 이하	연간 평균치 150 $\mu\text{g}/\text{m}^3$ 이하

비고: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수질오염물질

항 목	환경의 질 목표 수준(mg/L)
구리(Cu; Copper)	0.1 이하
니켈(Ni; Nickel)	0.02 이하
용해성망간(Mn; Manganese)	1 이하
바륨(Ba; Barium)	0.1 이하
셀레늄(Se; Selenium)	0.04 이하
아연(Zn; Zinc)	0.1 이하
용해성철(Fe; Iron)	1 이하
크롬(Cr; Chromium)	0.05 이하
플루오르(불소)(F; Fluoride)	1.5 이하
페놀류	0.1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	0.06 이하
1,1-다이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 이하
염화비닐(Vinyl Chloride or Chloroethylene)	0.01 이하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0.01 이하
브로모폼(Bromoform)	0.03 이하
나프탈렌(Naphthalene)	0.05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0.03 이하
톨루엔(Toluene)	0.7 이하
자일렌(Xylene)	0.5 이하

항 목	환경의 질 목표 표준(mg/L)
페놀(Phenol)	0.0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0.001 이하
총질소(T-N)	매우좋음(Ia) : 2 이하 좋음(Ib) : 3 이하 약간좋음(II) : 4 이하 보통(III) : 5 이하 약간나쁨(IV) : 8 이하 나쁨(V) : 10 이하 매우 나쁨(VI) : 10 초과

비고: 총질소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 좋음(Ia):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I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III):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IV):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V):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VI):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별표 8] <개정 2020. 2. 24.>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1)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먼지 및 증기속은 시료 채취량을 1m³ 이상으로 하거나, 시료채취 전·후의 여과지 무게차를 5mg 이상으로 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측정할 때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균한다.

나.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분석한 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라. 악취

- 악취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같은 기준 중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폐수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 판정

가. 대기오염물질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특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때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

(2)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때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1주 8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소음 및 진동

제1호나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 수질오염물질

1) 자동측정기기(영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측정기기로 한정한다. 이하 2)에서 같다)로 측정·전송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된 3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라. 악취

제1호라목에 따라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중 어느 하나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제1호마목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9]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6항 관련)

1.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를 보통, 양호, 우수의 3단계로 평가하여야 한다.

구 분	평가 요소
가. 영 제4조제2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등 배출 농도의 수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등 유해한 오염물질등의 취급·관리 수준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 적용된 전체 환경관리기법 중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한 비율
다. 영 제4조제2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법령 위반 건수 및 중대성 ○ 최근 5년간 환경오염사고 건수 및 피해의 심각성 ○ 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
라. 영 제4조제2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측정 여부 및 적절성 ○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측정값과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값의 일치 여부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및 적절성 ○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보존의 적절성

2. 검토주기의 연장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인 경우: 3년

나.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인면서 2개 이상이 우수인 경우: 2년

다.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인 경우: 1년

3.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19조 관련)

1.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성능 및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측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대신할 수 있다.

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점검·교정할 때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1]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1.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 가. 제출시기: 교정 전
 - 나. 개선사유: 표준용액을 이용한 검·교정 및 검량선 확인 등 측정기기 성능확인 및 교정
2. 측정기기를 청소하는 경우
 - 가. 제출시기: 청소 전
 - 나. 개선사유: 시료채취조 청소, 센서류의 전극 세척, 튜브 등 소모품 교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가. 정도검사
 - 1) 제출시기: 검사 전
 - 2) 개선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
 - 나. 설비점검
 - 1) 제출시기: 점검 전
 - 2) 개선사유: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등 사전 계획된 설비점검
 - 다. 비정상 상태정보 발생
 - 1) 제출시기: 사유 발생 후 8시간 이내
 - 2) 개선사유
 - 가) 통신불량: 측정기기의 전원 단절, 통신회선 불량 등 점검
 - 나) 작동불량: 시료·시약의 미공급, 주요부품 고장 등 점검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2] <개정 2020. 2. 24.>

배출시설등 및 방지사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사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 연료·원료 및 배출되는 오염물 질등의 특성,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여건,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지사설의 용량은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이상으로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대기오염방지사설의 후드(Hood)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거지역 및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 등으로부터 소음·진동의 발생원을 최대한 분리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5) 용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을 설계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폐수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재이용수 사용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 6)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등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수를 재이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폐수처리시설의 바닥은 지반침하로 인한 폐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생산 설비 또는 야적지로부터 누출된 액상 화학물질, 고형물 등이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

565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자동 투입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부품에 대해서는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부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비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유기용제 등 휘발성이 높은 약취 유발물질은 밀폐하여 취급·보관하여야 한다.
 - 7) 「약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약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사업장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도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처리 방법이 다른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오염물질등의 함량이 적은 연료 및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등의 발생을 줄이고 연소 효율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연료 및 원료를 반입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연소실의 공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연료의 충분한 연소가 가능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 4)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반입·보관되는 연료의 성분 및 함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보존하고, 공급처가 다른 연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며, 화재감지 장치 및 소화설비 등 발화에 대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공정별로 배출되는 폐수가 집수되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집수된 폐수의 성상(性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6) 폐수는 처리방법별 또는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처리 없이 재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흡착제, 여과재 등 방지시설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은 방지시설의 적정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도 측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체주기를 명시하고 교체 주기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8)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은 암모니아 슬립현상(반응하지 않고 배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9)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밸브, 배관, 패킹 등에서 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온도, 압력, 유속, 송풍량(급·배기량) 등 운전의 주요 매개변수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11) 연소 개선을 통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그 연소 조건을 기록하고, 그 조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2) 안정적으로 공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13)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4) 환경 관련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5) 오염물질등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등이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다른 형태의 오염물질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6) 배출시설등을 가동하는 기간 동안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종료 등으로 배출시설등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수 및 토양을 시설 설치 전의 상태로 복원(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지하수 또는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7)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배출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가스터빈, 송풍기, 증기터빈, 팬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흡음기, 방음설비 또는 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를 밀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터빈, 발전기, 펌프, 압축기, 전동기, 팬 등 회전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회전기계의 기초(Anchoring)에 나선형 강재 스프링, 고무성분 등 진동방지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기초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세척수에 유분(油分)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에 유수분리조(油水分離槽)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액체연료 이송배관은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고 차량 및 그 밖의 장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지상의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송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굴착 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 5) 지정악취물질은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액체연료 저장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不透水性)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고체연료를 하역할 때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하역하여야 한다.
- 2) 고체연료를 선박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의 운반장치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장치를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2차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Biomass)는 집진설비가 설치된 밀폐형 사일로(저장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 4) 이탄(泥炭)은 운송과정에서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함수율(含水率)을 최소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5) 비산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연소잔재물, 소석회(消石灰) 등의 저장시설 투입구는 최대한 밀폐하고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된 컨베이어나 차량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6)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액체연료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연료가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7)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액체연료는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8)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부지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9) 고체연료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표면 덮개를 설치하고 빗물은 집수하여 침전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10) 2차 연료로 사용되는 슬러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밀폐되거나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로 수송하고 밀폐된 건물 내에서 하역하여야 하며, 흡착시설을 설치한 폐쇄형 사일로나 음압 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 11) 슬러지 등을 2차 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와 바닥재는 유출되거나 먼지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 및 이송하여야 한다.
 - 12) 액체연료 저장시설과 이송배관은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첨가제와 반응제는 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각종 세척수, 유출수, 행굼수 등은 유분, 중금속, 염분 등의 포함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공기압축기, 증기터빈 발전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방음설비 내부에 설치하거나 흡음설비, 방음설비 또는 차음설비를 설치하고 출입구의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2)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3)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에 출입 및 개폐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함한 공기는 연소실 공기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공기 공급 장치를 통해 연소실로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컨테이너 형태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부지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증기 트랩에서 증기가 배출될 때 수격 작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가급적 사전에 해체하여 파쇄물의 크기를 줄여야 하며, 파쇄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파쇄기 전단 날의 마모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 5)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 6) 폐기물 소각로는 가급적 연속적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 7) 폐기물의 지하시설 보관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이동할 때 배관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8) 누출이나 누수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 시설이나 내부 배수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9) 지하저장 용기의 누출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용기의 수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10) 다이옥신류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소각로 출구 배출가스가 최적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바닥재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강열감량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3)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시설 내에서 폐기물이 자연발화하는 현상 등에 대비하여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등 소방 설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펠브, 커넥터, 플랜지 등 원료 또는 제품의 누출 위험이 있는 설비 및 부품은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하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로(furnace) 내에 침적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등 불순물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유지·보수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에틸렌을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열교환기의 냉각수에 벤젠, 큐멘, 에틸벤젠, 헥산, 나프탈렌,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및 1,3-부타디엔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배출되는 탄화수소 또는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3) 유증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증기 회수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통해 빠져 나온 유증기를 최대한 회수하여야 한다.

- 4) 공정 폐기물과 잔류물의 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5) 냉각시스템에는 무독성 또는 저독성의 냉각수 첨가제를 사용하여 하며, 간접냉각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하여야 한다.
5.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제강공정 및 주조공정 등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탈지단계에서는 탈지용액 정화 및 재사용을 통한 탈지 순환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
- 나.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고철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탄화수소 함량이 큰 폐수 등 유기물이 포함된 폐수는 냉각수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3) 사용된 폐산은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재순환하여야 한다.
 - 4) 공정 과정에서 추출된 부생가스는 최대한 활용하여 1차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6.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배출시설등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생산되는 제품별로 공정의 특성과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용융과정에서 슬트 슬래그 또는 슬트 케이크 등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과 교통로에 침적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청소를 하거나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스크랩 또는 절삭분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에 이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7.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상압증류(常壓蒸溜)공정, 감압증류(減壓蒸溜)공정, 고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성가스처리 설비, 황 회수 설비 또는 폐가스처리 설비 등의 황 성분 회수·처리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저장용량이 20m³이상인 유류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의 내부 용적을 가진 방류벽과 저장용량의 90퍼센트 이상 주입 시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공급차단 장치 또는 수위 경보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누유 여부의 모니터링 시설 및 누유 시 경보가 작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3)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비상운전 상황에 대비하여 환경·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운전중 플레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 4) 코크스 및 촉매 배출 공정은 비산먼지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계해야 하고, 설비 및 배출구에는 이중 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서 환경 및 안전사고로 인한 수계로의 오염물질 유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빗물관에 차단시설 또는 비상저류(貯留)시설을 설치하고, 차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우수분리 기능이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6)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운전상황을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비상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7)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분해가 어려운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염소 성분, 황 성분 등 설비를 부식시키고 연소 후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성분을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받지 않고 플레어스택으로 유입처리해서는 안 된다.
- 2) 설비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내부부상형탱크 또는 외부부상형탱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밀폐장치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류 및 폐기물은 회수하여 연료화하는 등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류 또는 폐기물을 자체 연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산물에 의해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상압증류설비 및 감압증류설비 등의 탈황(脫黃)설비는 부식 방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산성 원유 등 부식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방지제 등 부식을 제어할 수 있는 부식방지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4) 간접 냉각수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8.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 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2)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공정 운영 중(가동 시작 및 가동 정지를 포함한다)에 발생된 배기가스 중 탄화수소류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또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설비별 최적운영조건을 도출하여 관리해야 한다.
 - 4)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소 및 염화수소의 비산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관로 및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 5)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 6)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低減施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처리대상 면적에 대해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설비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광석 및 분체상(粉體狀) 원부재료 사용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역, 운송, 이동, 보관 및 저장 과정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는 구조로 설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침전부 및 여과부의 침전물, 여과된 물질 등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운영·관리사항을 월 1회 기록하여 강우 전·후의 시설물 점검 기록과 함께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 4) 보오크사이트를 원료로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시 발생하는 공정오니(汚泥)는 침출수 및 먼지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처리 및 관리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공정폐기물과 부산물의 성분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중금속 함량이 높은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 내에서 중금속 회수율을 높여 폐수 및 폐기물에 배출되는 중금속 함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 4) 연속식으로 운영되는 발열반응 공정 또는 폐열 발생공정의 경우에는 스팀 생산, 열교환 등의 효과적인 열회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의 연료 사용량을 저감해야 한다.
9. 영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원료 투입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탄화수소류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 이상으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설계하여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액상물질(공업용수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을 이송하는 배관은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및 그 밖의 장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지상의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고 이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송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도면으로 작성·보관하고 굴착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 3) 젤라틴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돈피와 우피의 취급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은 밀폐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음압(陰壓)으로 관리하는 등의 악취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유기용제 등 액상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방류벽 또는 바닥면 포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
 - 5) 사업자는 다음의 각 공정에서 굴뚝 등 배출구 외에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는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시설 또는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가소제 제조공정: 알코올류(옥탄올, 2-에틸헥산올)
 - 나) 산화방지제 제조공정: 메탄올 및 이소부틸렌
 - 다) 계면활성제 제조공정 및 접착제 제조공정: 알킬페놀류

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6)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원료투입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개폐를 최소화해야 하며, 설비 세척 시에는 고압세척, 스팀세척 등의 세척효율이 높은 방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상시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가스를 연소시설의 연소공기로 활용하는 등 악취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 3) 액체원료 저장시설과 이송배관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기의 수위 및 누출여부 등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간접 냉각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간접냉각수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산물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 3)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10.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인광석과 황산의 반응시설은 최대한 밀폐해야 하며,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희질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별도의 탈질(脫窒)설비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설비별 최적운영조건을 도출하여 운영해야 한다.
 - 3) 질산 등의 유·무기산 저장시설(황산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석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공정 내에서 재이용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 5) 폐석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불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폐수는 별도의 계통으로 처리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인광석은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밀폐된 컨베이어나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 2) 유기질비료 제조공정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은 밀폐하여 취급·보관해야 한다.
 - 3) 비료 제조공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입자상물질은 최대한 포집하여 재이용해야 한다.
 - 4) 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처리하여 해당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및 폐수는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비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조립수 또는 폐가스세정시설의 세정수 등의 적절한 용도로 최대한 재이용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산물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촉매의 활성 저하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 4) 황산 제조공정에서 흡수시설의 황산화물 배출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흡수시설의 효율 저하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 5) 연속식으로 운영되는 발열반응 공정 또는 폐열 발생공정의 경우에는 스팀 생산, 열교환 등의 효과적인 열회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의 연료 사용량을 저감해야 한다.

- 6) 인광석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성분 및 함량을 분석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11.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표백공정에 염소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과정을 최대한 밀폐하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목재를 고온에서 삶거나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흑액(펄프 제조 중에 발생하는 암갈색 액체)은 공정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 3) 흑액 회수용 보일러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단계적 연소 방식 등을 적용하거나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4) 기계적인 방법으로 펄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섬유의 회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일(고효율로 한정한다) 또는 다단으로 구성된 정쇄시설(목재를 잘게 분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5) 폐지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사업장 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이하 '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준수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공정 슬러지(공정 중에 발생하는 침전물) 또는 폐수 슬러지는 원료, 연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함수율(含水率: 슬러지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목재를 고온에서 삶거나 흑액을 농축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회수용 보일러 등에서 연소시켜 황 성분을 회수해야 한다.
 - 3) 초지공정(종이를 형성시켜 탈수 및 건조하는 공정) 등에 사용한 용수는 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최대한 재이용해야 한다.

- 4) 녹말(전분)을 공정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 국소배기장치
 - 나) 여과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 다) 살수장치
 - 라) 시설의 밀폐
 - 마) 그 밖에 비산먼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적정하다고 인정한 조치
 - 5) 사업장 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준수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에는 유기물질 농도의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의 총유기탄소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 2) 생물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별도로 집수(集水)하여 처리하거나 유량을 조절하는 등 처리의 효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3) 정선공정(이물질을 선별하는 공정) 등에서 분리된 이물질에 포함된 섬유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4) 기계적인 방법으로 펄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정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제조공정에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 5) 사업장 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을 준수해야 한다.
12.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송풍기, 압축기, 펌프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소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에 흡음설비, 방음설비 또는 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세정시설, 탈지시설, 저장시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시설에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전자회로기판 재단시설, 절단시설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습식 시설은 제외한다)에는 여과집진시설 등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집수조 등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5) 산·알칼리물질, 유기용제가 포함된 화학물질 또는 액상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방류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6) 질산 등 유기산·무기산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순수(純水)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최대한 재활용하여 배출되는 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2) 식각(蝕刻, etching)·세정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산성 폐수는 성상별 또는 농도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공정 내 재사용 및 공정조건 개선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이거나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4)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구리가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분리하고, 응집침전 등을 통해 최대한 재활용하여 배출되는 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5) 분말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공기이송 방법을 적용하거나 원료 이송시설을 밀폐하는 등 비산먼지가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6)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세정, 도금 등 공정에는 분무수세(물이나 약품을 뿌려 세정하는 방법) 및 다단수세(여러 단계를 거쳐 세정하는 방법) 등 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 7) 암모니아, 톨루엔 등 악취물질을 취급하는 표면처리시설 등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밀폐하는 등 악취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난방 또는 제조공정 등의 필요한 열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장 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 2)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의 구리,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20. 2. 24.>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제23조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2) 고체연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료의 성분 분석서를 확보하고 연료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
 - 3) 고체연료 저장소에 모인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중금속, pH, 용존산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모인 빗물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5)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염화비닐 단량체를 포함한 염소계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에틸렌, 염화비닐 단량체, 디클로로에탄, 염소 또는 염산을 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건물 및 사업장 내부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4)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 제3호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코크 제조설비 및 유동상 접촉분해설비(Fluidic Catalytic Craking)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상에서 비산먼지의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클로로알칼리, 무기안료 및 실리콘 제조시설은 염소 또는 염화수소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플라스틱 및 고무 첨가제 제조시설은 염화비닐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6) 계면활성제 및 접착제 제조시설은 알킬페놀류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폐석고 매립시설은 침출수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인산 제조공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가 주변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4] <개정 2020. 2. 24.>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가목8)나 중 매연의 경우, 제2호가목 중 법 제2조제2호가목·라목 또는 바목의 시설의 경우 및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그에 딸린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나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위반횟수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위반횟수는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제1항제1호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사용중지			
		폐쇄명령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4호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명령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사용중지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5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경고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6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법 제14조 제2항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p> <p>가) 소음·진동 또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p> <p>나) 가) 외의 경우</p>	법 제22조 제1항제7호	사용중지	사용중지	사용중지	사용중지
<p>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p> <p>나) 가) 외의 경우</p>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p>가)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p> <p>나) 가) 외의 경우</p>	법 제22조 제1항제11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p>10)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p>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p> <p>(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나)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p> <p>(2)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p>(3)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p>	법 제22조 제1항제11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p>경고</p>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p>경고</p>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30일	
<p>조업정지 10일</p>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p>조업정지 10일</p>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p>조업정지 10일</p>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5)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다)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필요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후단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나)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중지	허가취소		
1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2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14)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3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6)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비고

1.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위 표의 2)가), 4)가), 5)가) 및 7)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날(가동개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날)
 나. 위 표의 8)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다. 위 표의 11)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또는 설치기준에 맞는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위 표의 9)나) 및 12)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 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1호에 따른 생태독성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최근 1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위 표의 5) 또는 16)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8호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9호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라)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	법 제20조 제4항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수질자동측정기기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4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0호	허가취소			

[별표 15] <개정 2020. 11. 23.>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6) 15(6) 33(6)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1(4)
황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6) 80(6)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0(6) 70(6) 80(15) 43(4)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30(12) 30(12) 30(12)	
황산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30(12) 30(12) 30(12)	
	질소산화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70(12) 90(12) 70(12) 90(12) 70(12) 70(12)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일산화탄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20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20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20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염화수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2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2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15(12)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0(4)
	나)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황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28(4)
질소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5(4) 150(4)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마)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일산화탄소 (pp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다)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48(12)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45(12)
마) 부타디엔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 또는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鐵)과정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6(15)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5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20	
	나) 제강(製鋼)과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서 생산된 쇠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0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시설	40	
	라) 산재생시설	44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3(15)
	질소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5)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1)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200	
염화수소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화합물 (pp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3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암모니아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5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구리 제조과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과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과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황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0
	질소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3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9(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19(4)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8(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34(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202(8)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8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산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5(12)
질소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한다)	148(4)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41(12)
황화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암모니아 (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46
벤젠 (ppm)	폐수소각시설	7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염화수소 (pp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질소산화물 (pp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93
	다)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8)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황산화물 (ppm)	황산 제조시설	218(8)
질소산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68
	나) 희질산 제조시설	195
암모니아 (ppm)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화합물 (ppm)	인산 제조시설	3

9)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화학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공정의 표백시설	3

10)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질소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44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100
불소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페놀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비고

1. 최대배출기준 난의 표준산소농도는 배출가스 중 산소의 비율을 말한다.
2.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3. 가목1)부터 10)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0)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가목4) 및 5)의 배출시설란 중 "전기로"란 전기아크로 및 전기유도로를 말한다.
6.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용융·용해시설"이란 용선로(鑄銹爐: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반사로 및 전해로를 말한다.
7.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귀금속"이란 금, 은 및 백금족(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튬, 이리듐, 오스뮴)을 말하고, "희소금속"이란 인듐, 갈륨, 셀레늄, 텔루륨, 레늄, 비스무스, 안티몬 및 텅스텐을 말하며, "기타 비철금속"이란 니켈, 코발트 및 마그네슘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₂) 또는 질소산화물(NO_x):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의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되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또는 별표 8 제2호나목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소음·진동

가. 소음의 최대배출기준은 70dB(A)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진동의 최대배출기준은 75dB(V)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	22 이하
부유물질량	30 이하
총질소	60 이하
총인	2 이하

2)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	28 이하
부유물질량	40 이하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3) 영 별표 1 제1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4)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	40 이하

5) 그 밖의 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비고: 1)부터 4)까지의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구분에 해당하는 기준
- 3)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약취

약취의 최대배출기준은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취의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구 분	측정횟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2. 수질오염물질

구 분	측정횟수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별표 17]

수수료(제36조 관련)

종 별	수수료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40,000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15,000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5,000원

제1편
녹색전환

10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목 차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593	제1조(목적) 593
제2조(법인격) 593	
제3조(사무소) 593	
제4조(정관) 593	
제5조(설립등기) 593	제2조(설립등기) 593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94	
제7조(임원의 임명) 594	
제8조(임원의 임기) 594	
제9조(임원의 직무) 594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594	
제11조(별칭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95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595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595	
제14조(대리인의 선임) 595	
제15조(이사회) 595	
제16조(직원의 임면) 595	
제17조(사업) 595	
	제3조(사업) 596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96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596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597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597
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598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598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599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599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7조(출연금의 지급)
제24조(출자 등)	제8조(출자 등)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26조(자금의 차입)	제10조(채권의 형식)
제27조(채권의 발행)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4조(채권발행총액)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8조(이권 흡결의 경우)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21조(예비비)
	제22조(계속비)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부칙	부칙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정 2009. 2. 6 법률 제9433호 개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2. 5.23 법률 제11446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18 법률 제12467호 2014. 3.24 법률 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구제법) 2020. 3.31 법률 제17181호 2021. 1. 5 법률 제17853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p> <p>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의 운영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채권의 발행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개정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7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5. 23.></p> <p>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p> <p>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 5. 23.></p> <p>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 5.></p> <p>1. 삭제 <2021. 1. 5.></p> <p>2. 삭제 <2021. 1. 5.></p> <p>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 1. 5.></p> <p>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1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행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p> <p>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p> <p>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4. 28., 2012. 5. 23., 2014. 3. 24., 2017. 1. 17., 2017. 11. 28.,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7.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p> <p>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p> <p>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p> <p>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사업</p> <p>13. 삭제 (2020. 3. 31.)</p> <p>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p> <p>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16. 석면안전관리 사업</p> <p>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p> <p>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p> <p>19.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p> <p>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p> <p>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p> <p>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p> <p>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p> <p>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p> <p>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p>	<p>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3. 폐기물 매립지의 정비·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하수·폐수 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 6.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양도 사업 <p>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p>② 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7.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p>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p>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4.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 4. 15.)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專用上水道)의 설치 인가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專用工業用水道)의 설치 인가 <p>제20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과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채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제7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2. 대주(貸主)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p> <p>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p> <p>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p> <p>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p>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p> <p>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p> <p>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p> <p>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p>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p>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p>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8조(이권 출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p> <p>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p> <p>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p> <p>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p> <p>제3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p>	<p>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3호, 2009. 2. 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p> <p>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와 중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공단의 임원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6조 및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p> <p>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중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p> <p>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p>제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2010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해산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200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⑤ 공중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7.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명의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p> <p>제6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6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제7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p> <p>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다.</p> <p>제9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의 설립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의 합병으로 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p> <p>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p> <p>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로</p>	<p>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p> <p>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⑩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⑪ 수도권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2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5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p> <p>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⑦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p> <p>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p> <p>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p> <p>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및 「환경관리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p>	<p>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p> <p>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p> <p>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p> <p>27. 「한국환경공단법」</p> <p>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p> <p>1. 한국환경공단</p> <p>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p> <p>2. 한국환경공단</p> <p>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446호, 2012. 5. 2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p> <p>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⑲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p> <p>㉒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㉓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환경공단</p> <p>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p> <p><12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p> <p><123>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67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19호, 2014. 3.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㉔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p> <p>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1항제8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p> <p>㉗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8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098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81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단이 수행 중인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사업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위탁계약 변경·해지 등의 사유로</p>	<p>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6>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㉚ 및 ㉛ 생략</p> <p>제3조 생략</p>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p>공단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3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p>	

제1편
녹색전환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시행령

목 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615	제1조(목적) 615
제2조(법인격) 615	
제3조(설립등기) 615	
제4조(사무소 등) 615	
제5조(정관) 615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615
제6조(사업) 616	제3조(사업) 616
제7조(임원의 구성 등) 617	
제8조(임원의 직무) 617	
제9조(임원의 임기) 617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617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617	
제12조(직원의 임면) 617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617	
제14조(이사회) 618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618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618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618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618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618	
제18조(기부금품) 618	
제19조(차입금) 618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618
제20조(사업수익금 등) 619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619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19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619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19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619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619
제24조(잉여금의 처리) 6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620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620	
제27조(지도·감독) 620	
제28조(업무협력) 620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620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20	
제31조(「민법」의 준용) 621	
제3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21	
제33조(별칙) 621	
제34조(과태료) 621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21
부칙 621	부칙 6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5.12. 1 법률 제13534호 개정 2016. 1.19 법률 제13781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설립등기) ①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p> <p>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p>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p>	<p>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p> <p>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④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p> <p>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기술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기술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기술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14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p> <p>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8조(기부금품)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20조(사업수익금 등) ①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p> <p>[법률 제13534호(2015. 12.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견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p> <p>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p> <p>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24조(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p> <p>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p> <p>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8조(업무협력)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지원·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34호, 2015. 1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p> <p>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6호, 2016. 11.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④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p>제5조의3을 삭제한다.</p> <p>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81호, 2016. 1.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p> <p>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5조의3을 삭제한다.</p> <p>제31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제16조의3을 삭제한다.</p> <p>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p> <p>⑧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625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300	500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50	250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목 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631
제2조(적용대상)	631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631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631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632
제6조(인증 신청 등)	632
제7조(인증 심사 등)	632
제7조의2(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33
제8조(인증기준 등)	633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633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633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633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634
제13조 삭제	634
제14조(인증 수수료)	634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34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35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635
부칙	635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2013. 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개정 2014. 6.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6. 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 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3.)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6. 13.)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영역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1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기관명
 - 1의2.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6. 8. 12.)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13.)
-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6. 13.)
-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1. 단독주택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제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3.]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에 따른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6. 8. 12.>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0.>
-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6. 13.>
-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별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평가서 및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 인증취득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받은 건축물의 전문분야별 총점은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제목개정 2016. 6. 13.]

제13조 삭제 <2016. 6. 13.>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6. 6. 13.>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6. 13.]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13.]

부칙 (제16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특례) 2013년 8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3,000제곱미터"는 "10,000제곱미터"로 본다.

제4조(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구성한 인증운영위원회는 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성

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36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녹색건축 인증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부칙 <제103호, 2014. 6. 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 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18호, 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건축 인증 신청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건축 인증 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녹색건축 인증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9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전문분야(제4조제4항 관련)	639
[별표 2] 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	639
[별표 3] 삭제 <2016. 6. 13.>	641

[별표 1]

전문분야(제4조제4항 관련)

전문분야	해당 세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
물순환관리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
생태환경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또는 생물학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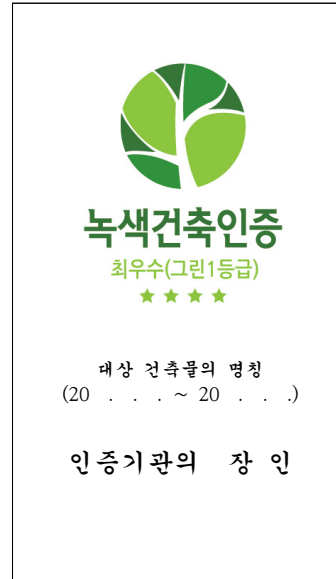
[별표 2]

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

1. 최우수(그린1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영문판]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우수(그린2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

대상 건축물의 명칭
(20 ~ 20)

인증기관의 장 인

[영문판]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20 ~ 20)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3. 우량(그린3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등급)
☆☆

대상 건축물의 명칭
(20 ~ 20)

인증기관의 장 인

[영문판]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20 ~ 20)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4.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별표 3] 삭제 <2016. 6. 13.>

5. 비고

- 가. 크기: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 나. 재질: 동판
- 다. 글씨: 명조체
- 라. 색채: 검은색
- 마.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 바. 건축주등의 요청에 따라 한글판 혹은 영문판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편
녹색전환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목 차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1조(목적)	647
제2조(정의)	647
제3조(시험의 의뢰)	647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647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648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648
제7조(수수료)	648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648
제9조(시험결과 표시)	648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648
부칙	648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정	1990. 3.22	환경부령	제359호
개정	1996.12.16	환경부령	제25호
	2003. 1. 4	환경부령	제13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5. 2.22	환경부령	제172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 1.18	환경부령	제273호
	2009. 4. 1	환경부령	제328호
	2009. 7.14	환경부령	제341호
	2010.12.31	환경부령	제389호
	2011. 3.23	환경부령	제40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011.11.22	환경부령	제43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인·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檢定) 또는 검토투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우수·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2.]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제13호·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전문개정 2011. 11. 22.]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제13호·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 성적서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22.]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①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부칙 <제359호, 1990.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1996. 12.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6호, 2003. 1.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호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CVS-40 모드	360.000
	- CVS-47 모드	360.000
	- CVS-75 모드	540.000
	- IM240 모드	540.000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km이내)	3,097.00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km 기준, 초과시 1km당 369원 가산)	29,589.000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5,895.000
	○ 증발가스 시험	232.000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D-13 모드	631.000
	- ND-13 모드	631.000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620.000
	○ 정지가동시 시험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7.000	
- 매연	1.200	

부칙 <제172호, 2005. 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②생략

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2008.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 2009.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33호, 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653
-------------------------------	-----

[별표] <개정 2019. 12. 20.>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가스 성분시험	1. 암모니아	17,400
	2. 일산화탄소	6,000
	3. 염화수소	17,400
	4. 염소	17,200
	5. 황산화물	18,300
	6. 질산화물	18,400
	7. 이황화탄소	17,700
	8. 포름알데히드	23,100
	9. 황화수소	16,700
	10. 불소	17,100
	11. 시안	30,000
	12. 브롬	22,300
	13. 벤젠	47,300
	14. 페놀	19,100
	15. 비소	25,500
	16. 수은	29,700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성분시험	1. 먼지	12,000
	2. 비산먼지	22,000
	3. 중금속	20,700
	4. 매연	5,500
유류시험	연료 중 유황 함유량 분석	33,000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시험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시험	2,488,5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배출가스시험 및 소음 인증시험	1. 길들이기 가. 차대동력계(車臺動力計) 나. 원동기동력계	7,660,000 11,616,000
	2.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가. CVS-75 나. IM240 다. ECE15+EUDC (입자상물질계수법 적용 시) 라. 이륜차 배출가스시험(최고속도 45km/h 이상) 마. 이륜차 배출가스시험(최고속도 45km/h 미만)	1,042,800 587,300 1,045,700 1,189,700 630,800 530,500
	3.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가. ND-13 나. ETC 다. KC 1-8 라. ELR	1,129,400 1,129,400 1,129,400 1,129,400
	4. 대형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2,025,700
	5. 저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3,625,400
	6. 증발가스 가.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晝間) 증발] 나.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 증발) 다. 주행 중 증발	359,700 1,013,400 2,004,500
	7. 정지가동시험 가. CO/HC 나. 간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다. 무부하(無負荷) 매연검사	7,400 7,400 2,900
	8. 소음검사 가. 가속주행 소음 나. 경적 소음 다. 배기 소음	56,600 22,900 22,9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	1.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3,514,300
	2.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4,607,187
	3. 연료 또는 첨가제	
	가. 휘발유 또는 휘발유용 첨가제	
	1) 중금속(납)	59,700
	2) 중금속(크롬 · 알루미늄 · 구리 · 아연 · 망간 · 철 · 카드뮴 · 니켈)	126,400
	3) 탄화수소류(방향족 · 벤젠 · 올레핀 · 산소)	632,400
	4) 황 함유량	224,000
	5) 증기압	50,200
	6) 90% 유출온도	44,300
	7) 인 함유량	126,900
	8) 용해도(고체 연료 첨가제인 경우)	25,700
	9) 회분(고체 연료 첨가제인 경우)	25,700
	나. 경유 또는 경유용 첨가제	
	1) 중금속(크롬 · 알루미늄 · 구리 · 아연 · 망간 · 철 · 카드뮴 · 니켈)	126,500
	2) 황 함유량	224,000
	3) 10% 잔류 탄소량	60,100
	4) 밀도	41,100
	5) 윤활성	120,800
	6) 다고리방향족가	167,700
	7) 방향족 화합물	157,000
	8)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66,400
	다.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용 첨가제	
1) 황 함유량	142,600	
2) 증기압	40,000	
3) 밀도	40,500	
4) 동판 부식	40,900	
5) 100mL 증발 잔유물	49,4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6) 프로판 혼합 비율	51,100
	라.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디젤용 첨가제	
	1)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	86,000
	2) 잔류 탄소분	16,500
	3) 동점도(動粘度)	19,700
	4) 황분	39,000
	5) 회분	15,700
	6) 밀도@ 15°C	11,200
	7) 전산가(全酸價)	13,600
	8) 모노글리세리드	27,100
	9) 디글리세리드	27,100
	10) 트리글리세리드	27,100
	11) 유리 글리세린	27,100
	12) 총 글리세린	27,100
	13) 산화 안정도	25,400
	14) 메탄올	34,100
	15) 알칼리금속(Na + K)	51,600
	16) 알칼리금속(Ca + Mg)	51,600
	17) 인	50,000
	마. 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용 첨가제	
	1) 메탄	118,200
	2) 에탄	118,200
	3) C ₃ 이상의 탄화수소	118,200
	4) C ₆ 이상의 탄화수소	118,200
	5) 황분	111,100
	6) 불활성가스(CO ₂ , N ₂ 등)	118,200
	4. 촉매제	
	가. 요소(UREA) 함량 a	33,700
	나. 밀도@ 20°C b	12,900
	다. 굴절률 20°C c	27,900
	라. 알칼리도(NH ₃)	23,5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마. 뷰렛(Biuret)	62,300
	바. 알데히드(Aldehyde)	70,400
	사. 불용해성(不溶解性) 물질	25,500
	아. 인(PO ₄)	75,200
	자. 칼슘(Ca)	21,300
	차. 철(Fe)	21,300
	카. 구리(Cu)	21,300
	타. 아연(Zn)	21,300
	파. 크롬(Cr)	21,300
	하. 니켈(Ni)	21,300
	거. 알루미늄(Al)	21,300
	너. 마그네슘(Mg)	21,300
	더. 나트륨(Na)	21,300
	러. 칼륨(K)	21,300
시설 확인검사	1. 국내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설비 1)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695,700
	2)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경유자동차)	723,600
	3)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이륜자동차)	695,700
	나. 저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설비	867,400
	다. 증발가스 설비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 증발)	491,600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 증발)	607,600
	3) 주행 중 증발	1,039,000
	라. 원동기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	635,400
	마. 소음 측정용 주행로 및 측정기기	259,700
	2. 국외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설비 1)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962,6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2)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경유자동차)	1,004,400
	3)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이륜자동차)	962,600
	나. 저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설비	1,213,700
	다. 증발가스 설비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 증발)	669,600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 증발)	837,000
	3) 주행 중 증발	1,464,700
	라. 원동기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	878,900
	마. 소음 측정용 주행로 및 측정기기	334,800
인증시험 입회 (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 포함)	1. 국내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1) CVS-75	389,600
	2) ECE-15+EUDC	389,600
	3) CVS-40	157,700
	4) CVS-47	157,700
	5) UDC Cold	259,700
	6) ECE40+EUDC	269,000
	나.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1) ND-13	436,000
	2) ETC	436,000
	3) KC 1-8	436,000
	4) ELR	436,000
	다. 대형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649,400
	라. 저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389,600
	마. 증발가스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 증발)	301,500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 증발)	445,300
	3) 주행 중 증발	811,700
	바. 무부하 매연검사	3,200
	사. 소음검사 1) 가속주행 소음	34,7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2) 경적 소음	13,900
	3) 배기 소음	13,900
	2. 국외	
	가.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1) CVS-75	544,000
	2) ECE-15+EUDC	544,000
	3) CVS-40	209,200
	4) CVS-47	209,200
	5) UDC Cold	334,800
	6) ECE40+EUDC	376,600
	나.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1) ND-13	627,700
	2) ETC	627,700
	3) KC 1-8	627,700
	4) ELR	627,700
	다. 대형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920,700
	라. 저온 일산화탄소 배출가스	544,000
	마. 증발가스	
	1)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 증발)	418,500
	2)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1일 주간 증발)	627,700
	3) 주행 중 증발	1,130,000
	바. 무부하 매연검사	4,100
	사. 소음검사	
	1) 가속주행 소음	46,000
	2) 경적 소음	20,900
	3) 배기 소음	20,900
인증 생략 검사	1. 인증 생략 대상 차량 확인	
	가. 국립환경과학원 구내	
	1)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21,400
	2) 이륜차	11,100
	나. 현지조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1)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127,500
	2) 이륜차	89,400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直接官能法)	36,700
	2. 공기희석관능법	36,500
	3. 기기분석법	
	가. 암모니아	34,400
	나. 황화수소	83,000
	다. 메틸메르캡탄	83,000
	라. 황화메틸	83,000
	마. 이황화메틸	83,000
	바. 트리메틸아민	53,900
	사. 스티렌	48,000
	아. 아세트알데히드	50,100
환경 소음·진동측정	1. 기록 측정	
	가. 소음	3,400
	나. 진동	3,400
	2. 대역(帶域) 분석	
	가. 소음	6,900
	나. 진동	6,500
	3. 소음 표시 권고 대상 기계의 소음도 측정	7,300
	4. 방음자재 성능검사	
	가. 흡음률	979,600
	나. 투과율	1,239,600
	5. 바닥충격을 성능시험	1,155,360
	6. 음향파워 레벨 측정	
	가.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은 제외한다)	185,000
	나.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만 해당한다)	212,000
	다. 일반기계류	198,0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수질검사(폐수·하수·오수·하천수·호소수(湖沼水)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온도	300
	2. 수소이온농도	800
	3. 용존산소	2,800
	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
	5. 화학적 산소요구량	7,300
	6. 투과율법에 의한 색도(色度) 측정	2,900
	7. 부유물질	2,800
	8. 노말핵산 추출물질	6,000
	9. 노말핵산 추출물질 중 광유류	15,400
	10. 염소이온	2,900
	11. 암모니아성 질소	10,800
	12. 아질산성 질소	2,800
	13. 질산성 질소	5,400
	14. 총질소	3,700
	15. 용존 총질소	3,700
	16. 인산염인	5,600
	17. 총인	3,400
	18. 용존 총인	3,400
	19. 페놀류	7,800
	20. 시안	13,100
	21. 불소	7,400
	22. 크롬	6,900
	23. 아연	6,900
	24. 구리	6,900
	25. 카드뮴	6,900
	26. 납	6,900
	27. 망간	6,900
	28. 니켈	6,900
	29. 철	6,900
	30. 비소	13,900
	31.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셀레늄 측정	6,0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32. 6가 크롬	6,900	
	33. 수은	10,600	
	34. 알킬수은	17,400	
	35. 유기인	20,300	
	36. 폴리염화비페닐(PCB _s)	125,200	
	37. 음이온 계면활성제	13,200	
	38.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류	13,900	
	39. 클로로필 a	1,300	
	40. 전기전도도	3,000	
	41. 총 대장균군		
	가. 하천수·호소수	14,800	
	나. 폐하수	6,200	
	42.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하천수·호소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1,400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600	
	44. 생태 독성	455,000	
	수질검사(먹는 물·먹는샘물등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일반세균	5,300
		2. 저온 일반세균	6,100
		3. 총 대장균군	8,800
		4. 분원성 대장균군	8,400
		5. 대장균	6,200
		6. 분원성 연쇄상구균	9,200
		7. 녹농균	13,100
		8. 아황산환원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포자 형성균	5,300
		9. 쉬젤라	14,600
10. 살모넬라		15,900	
11. 여시니아	28,100		
12. 바이러스	1,304,6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13. 원생동물	535,200
	14. 수소이온농도	300
	15. 맛	300
	16. 냄새	600
	17. 색도	2,600
	18. 구리	6,100
	19. 카드뮴	6,100
	20. 납	6,100
	21. 아연	6,100
	22. 알루미늄	6,100
	23. 망간	6,100
	24. 철	6,100
	25. 셀레늄	6,600
	26. 비소	7,700
	27. 수은	6,600
	28. 6가 크롬	3,900
	29. 탁도(濁度)	400
	30. 경도(硬度)	2,400
	31. 유리탄산	2,500
	32. 중발잔류물	2,900
	33.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
	34. 잔류염소	3,700
	35. 염소이온	3,900
	36. 암모니아성 질소	2,300
	37. 질산성 질소	7,200
	38. 시안	11,300
	39. 페놀류	9,300
	40. 세제	9,200
	41. 불소	9,300
	42. 황산이온	11,800
	43.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페니트로	15,6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티온만 해당한다)	
	44. 카바릴	15,700
	45. 휘발성 유기물질류	
	가. 총 트리할로메탄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1,1-트리클로로에탄	19,600
	나. 디클로로메탄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1,1-디클로로에틸렌 · 사염화탄소	13,600
	46. 보론(B)	3,100
	47.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21,400
	48.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만 해당한다)	29,200
수처리제	1. 수소이온농도	1,900
	2. 비중	1,100
	3. 염기도(鹽基度)	4,700
	4. 염화물	2,900
	5. 건조감량	2,100
	6. 체 잔류물	4,300
	7. 암모니아성 질소	7,000
	8. 황산이온	9,600
	9. 물 불용물(不溶物)	2,600
	10. 염기치환용량	9,600
	11. 경도(硬度)	3,300
	12. 비소	9,600
	13. 수은	9,100
	14. 정인산염	5,100
	15. 산 불용성 회분	9,100
	16. 유리알칼리	2,800
	17. 유리산	2,9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18. 페놀가	9,000
	19. 알킬벤젠설폰산염(ABS)가	7,200
	20. 메틸렌블루 탈색력	5,600
	21. 요오드 흡착력	3,000
	22. 염화나트륨	4,900
	23. 철	9,300
	24. 3가철	8,200
	25. 2가철	8,000
	26. 납	9,700
	27. 카드뮴	9,700
	28. 크롬	10,300
	29. 망간	9,600
	30. 셀레늄	8,100
	31. 아연	9,500
	32. 황산	1,700
	33. 강열잔류물	6,000
	34. 유효염소	3,600
	35. 산화알루미늄	4,000
	36. 알긴산나트륨	4,100
	37. 인산염	6,400
	38. 규산염	9,400
	39. 산화칼슘	4,100
	40. 황산동	2,600
	41. 수산화나트륨	3,000
	42. 이산화규소	7,200
	43. 이산화염소	3,000
	44. 폴리아민 함량	3,400
	45. 에피클로로히드린 및 총 클로로프로판올	14,800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유독물시험	1. 확인시험	성분당 23,300
	2. 함량시험	성분당 23,300
폐기물시험	1. 수소이온농도	4,000
	2. 수분	2,200
	3. 고형물	2,200
	4. 강열감량	4,000
	5. 유기물 함량	4,000
	6. 기름 성분	10,800
	7. 시안	
	가. 함유시험	18,200
	나. 용출시험	22,200
	8. 유기인	
	가. 함유시험	25,100
	나. 용출시험	29,000
	9. 폴리염화비페닐(PCBs)	
	가. 함유시험	188,000
	나. 용출시험	123,000
	10.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가. 함유시험	27,400	
나. 용출시험	28,200	
11. 할로겐화 유기물질		
가. 함유시험(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800	
나. 함유시험(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20,200	
다. 용출시험(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라. 용출시험(비휘발성 물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43,800	
12. 크롬·구리·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가. 함유시험	23,100	
나. 용출시험		

1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이리 규칙 별표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단위: 원)
	13. 비소	성분당 39,100
	가. 함유시험	성분당 15,100
	나. 용출시험	
	14. 수은	13,700
	가. 함유시험	16,900
	나. 용출시험	
	15. 6가 크롬	8,800
	가. 함유시험	11,800
	나. 용출시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측정·분석시험	1. 다이옥신 시료 채취	2,166,000
	2. 다이옥신 분석	2,568,500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시험	1. 아포균 검사법(배양액이 없는 지표생물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65,500
	2. 아포균 검사법(시판용 제품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	127,000
	3. 세균배양검사법	114,200
	4. 멸균테이프검사법	12,700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수질검사 중 분원성 대장균과 총 대장균의 경우 같은 시료에 대하여 두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추정시험에 대한 비율을 빼고 수수료를 산정한다.
3.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기술료는 266,000원으로 하고, 토양오염도검사 시료 채취비는 43,600원으로 한다.
4. 시설 확인검사 및 인증시험 입회(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를 포함한다) 시 시험 대상 시설 또는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가능한 경우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표 수수료의 25%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나.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시설 또는 장비별로 위 표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5. 인증 생략 대상 차량 확인의 현지조사 수수료 산정 시 인증 생략 신청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 표 수수료의 25%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6.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제2편

환경일반

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663
02.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705
0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759
0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765
0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771

제2편
환경일반

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667	제1조(목적) 667
제2조(정의) 668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671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671	
제5조(과실범) 672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672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 등의 가중처벌) 672	
제8조(누범의 가중) 672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672	
제10조(양벌규정) 673	
제11조(추정) 673	
제12조(과징금) 673	제2조 삭제 673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673
	제4조 삭제 675
	제5조 삭제 675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75
	제7조 삭제 675
제13조(행정처분 등) 675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675
제13조(행정처분 등) 676	제9조(표지판) 676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677	
제15조(포상금) 677	제10조(포상금의 지급) 677
제15조의2(환경감시관) 677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677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678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678
	제14조(활동비 지급) 67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679	제15조(증표) 679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679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679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679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680	제17조(권한의 위임) 680
제19조(권한의 위임) 680	제18조(보고) 680
부칙 681	부칙 68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정 1999.12.31 법률 제6094호</p> <p>2001. 1.16 법률 제6368호 (지하수법)</p> <p>2001. 3.28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p> <p>2004. 2. 9 법률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p> <p>2004. 2. 9 법률 제7168호 (수질환경보전법)</p> <p>2004. 2. 9 법률 제7170호 (약취방지법)</p> <p>2004.12.31 법률 제7291호 (토양환경보전법)</p> <p>2004.12.31 법률 제729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2004.12.31 법률 제7297호 (자연환경보전법)</p> <p>2005. 3.31 법률 제7456호 (자연공원법)</p> <p>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p> <p>2005. 7.29 법률 제7643호 (수로업무법)</p> <p>2006. 9.27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p> <p>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p> <p>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p> <p>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p> <p>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p> <p>2007. 4.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p> <p>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08.12.31 법률 제9313호 (자연공원법)</p> <p>2009. 2. 6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p> <p>2009. 6. 9 법률 제9774호 (축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2010. 2. 4 법률 제10031호 (약취방지법)</p> <p>2011. 4.28 법률 제10616호</p> <p>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p> <p>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11. 8. 4 법률 제11016호 (골재채취법)</p> <p>2013. 5.22 법률 제11790호</p> <p>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p> <p>2013. 7.30 법률 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14. 3.24 법률 제1252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2015. 2. 3 법률 제13175호</p> <p>2015.12.2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p> <p>2019.11.26 법률 제18616호</p>	<p>제정 2000. 6.27 대통령령 제16870호</p> <p>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2005. 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05.12. 9 대통령령 제19171호</p> <p>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2011.10.28 대통령령 제23268호</p> <p>2013.10.22 대통령령 제24808호</p> <p>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2020.11.10 대통령령 제31153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3. 5. 22., 2013. 6. 4., 2015. 12. 22., 2017. 1. 17.)</p> <p>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p>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p> <p>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p> <p>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p> <p>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p> <p>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p> <p>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p> <p>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p> <p>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p> <p>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p> <p>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p> <p>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p> <p>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p> <p>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p> <p>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p> <p>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p> <p>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p> <p>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을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p> <p>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p> <p>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p> <p>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p> <p>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p> <p>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p> <p>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p> <p>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5조(과실법)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4. 28.] [제목개정 2011. 7. 28.]</p> <p>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써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써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1. 4.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p>제2조 삭제 (2020. 11. 10.)</p> <p>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배출한 자</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p> <p>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p> <p>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누출한 자</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p>	<p>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 2019. 11. 26.></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산설 2019. 11. 26.></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p> <p>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1. 4. 28.]</p> <p>제1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매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증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p> <p>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p> <p>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11. 10.]</p> <p>제4조 삭제 (2020. 11. 10.)</p> <p>제5조 삭제 (2020. 11. 10.)</p> <p>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11. 10.]</p> <p>제7조 삭제 (2020. 11. 10.)</p> <p>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6. 3.,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p>제1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영업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6. 3., 2017. 1. 17., 2020. 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호지역 2.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 <p>[시행일 : 2021. 2. 19.] 제13조</p>	<p>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p>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 10.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 <p>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범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20. 「보건의법」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아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1. 「환경보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본조신설 2011. 10. 28.] [중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10. 28.)]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0.) 1. 강등·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 10. 28.] [중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28.)]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0.)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 (2020. 11. 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 10. 28.] [중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 10.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3.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제9호·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p> <p>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19. 11. 26.> [본조신설 2011. 4. 28.]</p> <p>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28.]</p> <p>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관에 그 오염도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p>	<p>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 10. 28.] [제11조에서 이동 <2011. 10.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28.]</p>	<p>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11. 10.>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증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1.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p>[전문개정 2011. 10. 28.] [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28.>]</p> <p>제18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 [제13조에서 이동 <2011. 10. 28.>]</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94호, 199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68호, 2001. 1. 16.> (지하수법)</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지하수법 제19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452호, 2001. 3. 28.> (도양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870호, 2000. 6. 27.></p> <p>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⑦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953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171호, 2005. 12. 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내지 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8호, 2004. 2. 9.>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㉒ 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383호, 2007. 1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로 한다.</p> <p>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p> <p>②내지 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70호, 2004. 2. 9.> (약취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약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p> <p>⑥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1호, 2004. 12. 31.> (도양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도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도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2호, 2004. 12.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p>	<p>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8호, 2011. 10.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808호, 2013. 10.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6호, 2005. 3. 31.> (자연공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p>	<p>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36호, 2014. 12. 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⑬ 생략 제6조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p> <p>③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43호, 2005. 7. 29.) (수로업무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37호, 2016. 12.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p> <p>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0호, 2006.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53호, 2020. 11. 1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p> <p>제12조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⑥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부터 제12조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p> <p>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③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p> <p><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55>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13호, 2008. 12. 31.> (자연공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㉞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㉞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p> <p>㉞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31호, 2010. 2. 4.) (약취방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6호, 2011. 4.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4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③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㉑ 및 ㉒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016호, 2011. 8. 4.> (골재채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90호, 2013. 5. 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⑮부터 ㉔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79호, 2013. 7.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21호, 2014. 3. 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5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p> <p>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p> <p><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p> <p>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p> <p><85>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16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별표 1]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699
[별표 2]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699

[별표 1] <개정 2011.4.28.>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규모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기준
1. 바다		10,000㎡	가. 수은	0.005mg/L
2. 하천		유하거리(流下距離) 500m	나. 구리	0.01mg/L
3. 호소	수역면적 10,000㎡ 미만	수역면적의 1/2	다. 납	0.1mg/L
	수역면적 10,000㎡ 이상	5,000㎡	라. 6가크롬	0.05mg/L
4. 지하수		50,000L	마. 시안화합물	0.1mg/L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별표 2] <개정 2011.4.28>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구분	규모	
	자연산	양식산
바다	500kg	5,000kg
하천·호소	200kg	2,000kg

비고 :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조개류의 경우에는 껍질의 무게를 포함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703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704
[별표 3]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	704

[별표 1] <개정 2020. 11. 1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가.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의 구분	기준부과율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천분의 25 이하	1천분의 25 초과 1천분의 50 이하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	1천분의 30 이하	1천분의 30 초과 1천분의 50 이하

나.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1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법 제12조제2항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화비용의 부과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화에 필요한 조사, 설계, 공사 및 검증 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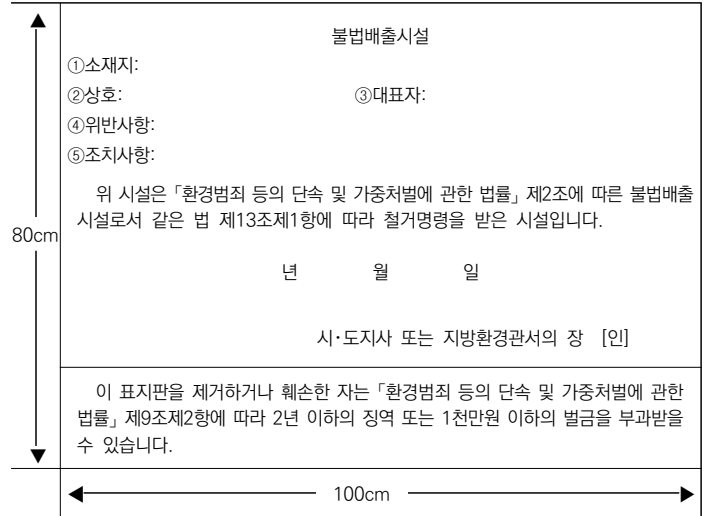
[별표 2] <개정 2011.10.28>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 가. 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3. 법 제2조제5호다목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가능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4.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경우 가. 허가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	사용중지 폐쇄 철거
5. 법 제2조제5호마목의 경우	폐쇄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철거)
6. 법 제2조제5호바목의 경우	철거

[별표 3] <개정 2011.10.28>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제9조 관련)



제2편
환경일반

02

환경분쟁 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713	제1조(목적) 713	제1조(목적) 713
제2조(정의) 713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713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714		
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 2. 1.>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714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714		
제6조(관할) 715	제3조(관할) 715	
	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716	
	제4조의2(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716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716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716		
제9조(결격사유) 717		
제10조(신분보장) 7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718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718	제5조(제척·기피 등) 718	
제13조(사무국) 719	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719	
	제7조(수당 등) 719	
제1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19		
제15조(규칙 제정 등) 720		
제15조의2(의견의 통지) 720		
제3장 분쟁 조정(調整) <개정 2012. 2. 1.>		
제1절 통칙 <개정 2012. 2. 1.>		
제16조(조정 신청 등) 720	제8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720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 721	
	제10조(신청의 변경) 722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722	
	제12조(조정 처리기간) 722	
	제13조(신청의 철회) 723	
제16조의2(합의 권고) 723		
제17조(신청의 각하 등) 723	제14조(신청의 각하) 723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723		
제19조(신청대표자) 724		
제20조(참가) 724	제15조(참가신청) 724	
제21조(피신청인의 경정) 725	제16조(경정신청) 725	
제22조(대리인) 725		
	제17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726	
	제1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726	
	제19조(심사관의 출석) 726	
제23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726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727		
제25조(절차의 비공개) 727		
제26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727	제20조(환경단체의 요건) 727	
제2절 알선 <개정 2012. 2. 1.>		
제27조(알선위원의 지명) 727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727	
제28조(알선위원의 임무) 728		
제29조(알선의 중단) 728	제22조(알선 중단의 통지) 728	
제3절 조정(調停) <개정 2012. 2. 1.>		
제30조(직권조정) 728	제23조(직권조정 대상 및 절차) 728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729	제24조 삭제 729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729		
제32조의2(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730		
제33조(조정 성립) 730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730	
제33조의2(조정결정) 730		
제3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31		
제35조(조정 종결) 731		
제35조의2(조정 효력) 732		
제4절 재정 (개정 2012. 2. 1.)		
제35조의3(재정의 종류) 732	제26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732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732	제27조(조서의 작성) 733	
제37조(심분) 733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734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734	제29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734	
제39조(증거보전) 734		
제40조(재정) 735		
제41조(원상회복) 735	제30조(재정의 경정) 735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735	제31조(문서 등의 이송) 736	제2조(서류의 송달 등) 736
제43조(조정예외 회부) 736		제3조(문서의 서식) 736
		제4조(장부의 종류) 739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739	제31조의2(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 740	
제44조(시효의 중단 등) 740	제31조의3(준용규정) 740	
제45조(소송과의 관계) 740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741	
	제3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741	
제5절 중재 (신설 2015. 12. 22.)		
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741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741 제45조의4(중재의 효력) 742 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742		
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개정 2012. 2. 1.)		
제46조(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742		
제47조(허가요건) 742		
제48조(신청의 경합) 743		
제49조(허가 결정) 743		
제50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743		
제51조(공고 등) 744		
제52조(참가의 신청) 744		
제53조(효력) 744		
제54조(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745		
제55조(조정절차의 준용) 745		
제56조(배분) 745		
제57조(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745		
제58조(배분기준) 745		
제59조(공제) 746		
제60조(배분계획의 공고) 746		
제61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746		
제5장 보칙 (개정 2012. 2. 1.)		
제62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747		
제63조(조정비용 등) 747	제34조(조정비용) 747	제35조(수수료) 747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48	
제64조(준용규정) 748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 <개정 2012. 2. 1.></p> <p>제65조(벌칙) 748</p> <p>제66조(과태료) 748</p> <p>부칙 749</p>	<p>제36조(과태료의 부과) 748</p> <p>부칙 749</p>	<p>제5조 삭제 748</p> <p>부칙 749</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정 1990. 8. 1 법률 제4258호 개정 1997. 8.28 법률 제5393호 2002.12.26 법률 제6831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12.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6. 3.24 법률 제7919호 2007. 5.11 법률 제8428호 2008. 3.21 법률 제8955호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2. 2. 1 법률 제11267호 2015.12.22 법률 제13602호 2018.10.16 법률 제15846호	제정 1991. 2. 2 대통령령 제13302호 개정 1998. 2.24 대통령령 제15672호 2003. 6.23 대통령령 제18007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물위험가석방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6. 7.27 대통령령 제19628호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2호 2010. 5.25 대통령령 제22170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8호 2016.11. 8 대통령령 제27576호 2019.10. 8 대통령령 제30113호	제정 1991. 2. 2 총 리 령 제379호 개정 1998. 2.28 환경부령 제44호 1999. 2.18 환경부령 제67호 2003. 7. 8 환경부령 제141호 2006. 7.24 환경부령 제218호 2008. 9.19 환경부령 제296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26 환경부령 제482호 2016.11.11 환경부령 제678호 2019.10.16 환경부령 제827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p> <p>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p>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6.]</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p> <p>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p> <p>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2. 2. 1.)</p> <p>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p> <p>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p> <p>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2. 2. 1.] <p>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의 재정(제5호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증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p>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증재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2. 22., 2018. 10. 16.)</p>	<p>제3조(관할)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p> <p>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증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증재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증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2. 2. 1.]</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2. 22.></p> <p>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p> <p>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의 재정 또는 증제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1. 8.></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4조의2(처리실적외의 제출 요청)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1. 8.]</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p> <p>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22.></p> <p>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④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2.></p> <p>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10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p>	<p>제5조(제척·기피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한다.</p> <p>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⑥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1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分掌)할 심사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칭하는 사항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p> <p>④ 위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건별로 10명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1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p> <p>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p> <p>[전문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5. 12. 22.]</p> <p>제15조의2(의견의 통지) 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으로 연계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분쟁 조정(調整) <개정 2012. 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개정 2012. 2. 1.)</p> <p>제16조(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p> <p>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p> <p>1. 알선·조정(調停)의 경우</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p> <p>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p> <p>다. 분쟁의 경과</p> <p>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p> <p>마. 그 밖의 참고자료</p> <p>2. 재정의 경우</p> <p>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p> <p>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p> <p>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1)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 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 사실</p> <p>2) 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 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 금액</p> <p>3. 중재의 경우</p> <p>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p> <p>나.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p> <p>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p> <p>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p> <p>마.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9조(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 [제목개정 2016. 11. 8.]</p> <p>제10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p> <p>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분(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p>제12조(조정 처리기간)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2019. 10.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합의 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17조(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흡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흡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p> <p>③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p>	<p>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2. 5. 1.]</p> <p>제13조(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p> <p>제14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19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20조(참가) ①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15조(참가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21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을 때에 있는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2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p>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p> <p>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의 철회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p>[전문개정 2012. 2. 1.]</p>	<p>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16조(경정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23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p>	<p>제17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1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19조(심사관의 출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p> <p>제25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6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7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p>	<p>제20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p>[전문개정 2012. 5. 1.]</p> <p>제21조(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7조·제31조제</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8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29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p> <p>제3절 조정(調停) (개정 2012. 2. 1.)</p> <p>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p>	<p>2항·제36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조정위원·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p> <p>② 위원장은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전문개정 2012. 5. 1.]</p> <p>제22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p>제23조(직권조정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8.)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설 2015. 12. 22.)</p> <p>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p> <p>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p> <p>제24조 삭제 (2008. 9. 18.)</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32조의2(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33조(조정서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p> <p>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0. 16.]</p> <p>제33조의2(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p>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3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5조(조정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p> <p>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개정</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2018. 10. 16.)</p> <p>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청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신설 2015. 12. 22.></p> <p>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p> <p>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15. 12. 22.></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5조의2(조정 효력)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4절 재정 <개정 2012. 2. 1.></p> <p>제35조의3(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p>제26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p> <p>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p> <p>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7조(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분쟁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사건 <p>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분쟁사건 2. 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 <p>[전문개정 2016. 11. 8.]</p> <p>제27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들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구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p> <p>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9조(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28조(출석의 요구 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29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40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신청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1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② 재정위원회가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p>	<p>제30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p> <p>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3조(조정예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31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p>제2조(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이나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10. 26.]</p> <p>제3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의 결정·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결정서·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의2 서식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3. 법 제3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7호서식 3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p> <p>4. 법 제37조제1항(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영 제31조제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8호서식</p> <p>5. 법 제38조(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9호서식</p> <p>6. 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영 제31조제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p> <p>7. 법 제38조제1항제2호(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p> <p>8. 법 제38조제1항제3호(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p> <p>9. 법 제40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3호서식</p> <p>10. 법 제45조제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3호의2서식</p> <p>③ 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1., 2019. 10. 16.></p> <p>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별지 제14호서식</p> <p>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알선·조정신청:</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별지 제15호서식</p> <p>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 별지 제16호서식</p> <p>3의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증재신청: 별지 제16호의2서식</p> <p>4. 영 제10조에 따른 알선·조정·재정·증재 변경신청: 별지 제17호서식</p> <p>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18호서식</p> <p>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별지 제19호서식</p> <p>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0호서식</p> <p>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1호서식</p> <p>9.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2호서식</p> <p>10. 법 제22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23호서식</p> <p>10의2. 법 제3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p> <p>11. 법 제39조제1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9조제1항(영 제3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24호서식</p> <p>12.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25호서식</p> <p>13. 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 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26호서식</p> <p>④ 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2.]</p>		<p>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4호서식: 제척·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2. 별지 제16호의2서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 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17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18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5. 별지 제19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6.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쟁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7. 별지 제22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8. 별지 제23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p>[전문개정 2012. 10. 26.]</p> <p>제43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사건 처리부 <p>[전문개정 2012. 10. 26.]</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44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5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6.></p> <p>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1조의2(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8.]</p> <p>[중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9. 10. 8.>]</p> <p>제31조의3(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p> <p>[본조신설 2016. 11. 8.]</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중재 <신설 2015. 12. 22.></p> <p>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p> <p>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p> <p>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p> <p>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2.]</p>	<p>[제31조의2에서 이동 <2019. 10. 8.>]</p> <p>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들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45조의4(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p> <p>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調整) (개정 2012. 2. 1.)</p> <p>제46조(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7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p> <p>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 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p> <p>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 이 500만원 이하일 것</p> <p>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 할 것</p> <p>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8조(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 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 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49조(허가 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 에는 제46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50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의 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1조(공고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2조(참가의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47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3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52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전문개정 2012. 2.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54조(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52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 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5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6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57조(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제59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2. 1.]</p> <p>제58조(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2. 2. 1.]</p> <p>제59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p>[전문개정 2012. 2. 1.]</p> <p>제60조(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요지 2. 제57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제56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61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5장 보칙 <개정 2012. 2. 1.></p> <p>제62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34조 및 제35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審議會)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63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p> <p>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3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3. 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p>[전문개정 2012. 5. 1.]</p> <p>제35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p> <p>③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금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6. 11. 8.></p> <p>④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5. 1.]</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64조(준용규정) 문서의 송달 및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제6장 벌칙 <개정 2012. 2. 1.></p> <p>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12. 2. 1.]</p> <p>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변경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파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p>[전문개정 2012. 5. 1.]</p> <p>제3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18.]</p>	<p>제5조 삭제 <2008. 9. 19.></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p> <p>2.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p> <p>②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부칙 <제5393호, 1997. 8. 2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속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부칙 <제6831호, 2002. 12. 26.></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속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부칙 <제15672호, 1998. 2. 24.></p> <p>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007호, 2003. 6. 23.></p> <p>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증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628호, 2006. 7. 27.></p> <p>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012호, 2008. 9. 18.></p> <p>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호, 1998. 2. 28.></p> <p>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7호, 1999. 2. 1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1호, 2003. 7. 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8호, 2006. 7. 24.></p> <p>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6호, 2008. 9. 19.></p> <p>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44>생략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7796호, 2005. 12. 29.> (국가공무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p> <p>부칙 <제7919호, 2006. 3. 24.></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8428호, 2007. 5. 1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2170호, 201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3758호, 2012. 5. 1.>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576호, 2016. 11. 8.>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113호, 2019. 10. 8.>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2호, 2012.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78호, 2016. 11.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쟁조사관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환경분쟁조사관증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환경분쟁조사관증으로 본다.</p> <p>부칙 <제827호, 2019. 10. 16.>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부칙 <제8955호, 2008. 3. 2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p> <p>③(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⑬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1267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p> <p>부칙 <제13602호, 2015. 12.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금지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지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5846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p>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p>제33조의2,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된 조정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조정안의 수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정을 위한 조정안의 수락, 해당 조정의 성립·효력 및 종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4항제2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p>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75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757

[별표 1] <개정 2019. 10. 8.>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2] <개정 2016. 11.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호	10	20	30
1)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02.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2호	10	20	30
3)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2호	30	60	100
나. 법 제38조제4항(법 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	10	20	30

0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목 차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763
제2조 (예산)	763
제3조 삭제	763
제4조 (중요정책사항)	763
제5조 (법령질의)	763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763
제7조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763
부칙	763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1991. 4.23 총 리 령 제385호
 개정 2004.11.24 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07. 4. 5 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09. 1. 8 환경부령 제31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4., 2007. 4. 5., 2009. 1. 8.>

제2조 (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 11. 24.]

제3조 삭제 <2007. 4. 5.>

제4조 (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1. 대통령·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 (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4., 2009. 1. 8.)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본조신설 2004. 11. 24.]

제7조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09. 1. 8.]

부칙 <제385호, 1991.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 2004.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07.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0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769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769
제3조(자원조사)	769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769
제4조의2(권한의 위임)	769
제5조(비축명령)	769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769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769
부칙	769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1995. 1.14 환경부령 제2호
 개정 1999. 6.25 환경부령 제75호
 2001. 9. 3 환경부령 제112호
 2007. 8.27 환경부령 제242호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3. 2 환경부령 제324호
 2011. 3.23 환경부령 제40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1.17 환경부령 제4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계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전문개정 2011. 11. 17.]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의2(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4.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전문개정 2011. 11. 17.]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1. 17.]

부칙 <제2호, 1995.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01.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 2007.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호, 2007. 1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부칙 <제324호, 2009.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2011. 3. 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1호,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5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목 차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775
제2조(적용 범위)	775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775
제4조(설립 허가)	775
제5조(설립 관련 보고)	775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775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776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776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76
제10조(해산 신고)	776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776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776
부칙	776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개정	2007.10.30 2008. 2.28	환경부령 제253호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3.10 2010. 3.22 2012. 7. 4	환경부령 제325호 환경부령 제365호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3.15	환경부령 제6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7. 3. 15.)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3. 15.)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7. 3. 15.)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2017. 3. 15.>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는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3호, 2007.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 2009.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 2010. 3. 22.>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 2017.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779
0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793
0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815
0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33
0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875
0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01
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921
0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937
0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65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1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59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75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1305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425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1543

제3편
자연보전

01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

목 차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783	제1조(목적) 783
제2조(법인격) 783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783
제3조(사무소) 783	
제3조의2(정관) 783	제3조(설립등기) 784
제4조(등기) 784	제4조(이전등기) 784
	제5조(변경등기) 784
제5조(임원) 784	
제6조(대리인의 선임) 784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784
제7조(직원의 임면) 784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784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85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785
제9조(사업) 785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786	제9조(사업) 786
제11조(출자 등) 786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786
제12조(수수료의 징수) 786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786
제13조(자금의 차입) 786	제12조(출자 등) 786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787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787
제15조(잉여금의 처리) 787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787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787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787	제16조(예비비) 789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788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788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788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788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788	
제22조(공단의 규정) 788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788	
제24조(지도·감독) 789	
제25조(민법의 준용) 789	
제26조(벌칙) 789	
부칙 789	부칙 789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제정 2016. 5.29 법률 제14226호 개정 2018.10.16 법률 제15830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p>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정 2017. 5.29 대통령령 제28076호 개정 2019. 1.15 대통령령 제29489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p> <p>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 제3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과 소재지 <p>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p> <p>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p>	<p>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p>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p>② 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2. 이전한 하부조직의 종전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3. 이전한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 4.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 <p>③ 공단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주된사무소의 또는 하부조직의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한다.</p> <p>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3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된 후 2주일 이내 2.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 변경된 후 3주일 이내 <p>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p>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p>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p>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p>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사유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p>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p>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p>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填)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적립한다.</p> <p>제16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법을 제14226호(2016. 5.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공단지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p> <p>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p> <p>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p> <p>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제24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226호, 2016. 5.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은 공단의 명의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076호, 2017. 5. 29.></p> <p>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89호, 2019. 1.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2. 국립공원공단</p> <p>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p> <p>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30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국립공원공단</p> <p>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p>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제3편
자연보전

0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797	제1조(목적) 797
제2조(정의) 797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797
제3조(적용 범위) 797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797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797
제5조(사업) 798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798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799	제4조(설립등기) 799
	제5조(정관 포함사항) 800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800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800
제8조(임원 및 직원) 800	
제9조(임원의 직무) 801	
제10조(임원의 임기) 80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801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801	
제13조(이사회) 802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802	
제15조(대리인의 선임) 802	
제16조(운영 재원) 802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803	
제17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803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803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803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803
제19조(차입금) 803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803
제20조(수익사업 등) 804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804
제21조(사업연도) 80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804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04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804
	제14조(업무보고 사항) 805
제23조(잉여금의 처리) 805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805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805
제25조(출입·검사 등) 805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805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806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806
제28조(비밀엄수의무) 806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06	
제30조(「민법」의 준용) 806	
제31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806	
제32조(별칙) 807	
제33조(과태료) 807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07
부칙 807	부칙 807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5. 1.20 법률 제13033호 2019.11.26 법률 제16602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선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1. 26.)] <p>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선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p style="text-align: right;">전부개정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p>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4. 국내의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등 연구·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중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19. 11. 26.] [제3조에서 이동, 중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p>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p> <p>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p> <p>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중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p>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생물 분야 <p>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p>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p> <p>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8조(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11. 26.></p> <p>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p>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처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p> <p>[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p>[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3조(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증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7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p> <p>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간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p> <p>[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p> <p>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원에서 사육·재배·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p>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의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5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연구, 교육·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2. 경영현황</p> <p>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p> <p>[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 11. 26.)]</p> <p>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6조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p> <p>[제27조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p>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p> <p>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제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28조에서 이동 <2019. 11. 26.>]</p>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33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5. 1. 20.] 제2조 <p>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5. 1. 20.] 제3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482호, 2020. 2. 2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5. 1. 20.] 제4조</p> <p>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p> <p>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5. 1. 20.] 제8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02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시행일 : 2019. 11. 26.] 제2조</p> <p>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p> <p>[시행일 : 2019. 11. 26.] 제3조</p> <p>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시행일 : 2019. 11. 26.] 제4조</p> <p>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칭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p> <p>제6조(예산안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제출할 수 있다.</p> <p>[시행일 : 2019. 11. 26.] 제6조</p> <p>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시행일 : 2019. 11. 26.] 제7조</p> <p>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9조를 삭제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813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 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1)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가 생물자원관법인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	300	500
2)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가 생물자원관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	200	300

제3편
자연보전

0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819	제1조(목적) 819
제2조(법인격) 819	
제3조(설립등기) 819	
제4조(정관) 819	
제5조(사업) 820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820	
제6조(임원) 821	
제7조(임원의 직무) 821	
제8조(임원의 임기) 821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821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822	
제11조(이사회) 822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822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822	
제14조(대리인의 선임) 823	
제15조(운영 재원) 823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823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823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823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823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823
제18조(차입금) 823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823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824
제20조(수익사업 등) 824	
제21조(사업연도) 82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24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24	제7조(결산서의 제출) 824
제23조(결산서의 제출) 82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잉여금의 처리) 824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824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824
제26조(출입·검사 등) 825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825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825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825
제29조(비밀엄수의무) 825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26	
제31조(「민법」의 준용) 826	
제3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26	
제33조(별칙) 826	
제34조(과태료) 82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26
부칙 826	부칙 82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3. 6. 12 법률 제11890호 개정 2014. 3. 18 법률 제12453호 2018. 6. 12 법률 제15650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설립등기) ① 국립생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p> <p>제4조(정관) ① 국립생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생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8호 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5조(사업) ① 국립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2.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3.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4.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생태계교란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의 생태계 위해(危害) 관리에 관한 연구 6.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의 유형화, 평가 및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7. 동식물 등 생태 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 시설 조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 국내외 생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생태계 정보망 구축·운영 사업 10. 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12. 생태계 조사·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p>②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p> <p>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증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보전·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p> <p>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p> <p>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 <p>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6조(임원) ①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p> <p>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고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처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p> <p>④ 감사는 국립생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p> <p>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는 제외한다)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생태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p>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국립생태원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국립생태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제11조(이사회) ① 국립생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생태원 증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3조(직원의 임면 등) ① 국립생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p> <p>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p> <p>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립생태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빌린 곳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생태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립생태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생태원의 경영상태,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 및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p>	<p>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생태원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국립생태원 관련 기념품·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국립생태원에서 사육·재배한 동식물 등의 보급 4.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생태원 시설의 임대 6. 국립생태원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p> <p>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생태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국립생태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생태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생태원은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전시·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제29조(비밀엄수 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적절성 등</p> <p>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p> <p>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p> <p>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p>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80호, 2013.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p>[시행일:2013.6.12]</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718호, 2013. 9. 9.></p> <p>이 영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p> <p><32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p> <p><323>부터 <418>까지 생략</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한다. [시행일:2013.6.12]</p> <p>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3.6.12]</p> <p>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의는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p> <p>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3.6.12]</p> <p>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53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50호, 2018. 6. 12.></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831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가 국립생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50	300 150	500 250

제3편
자연보전

0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	
제1조(목적) 839	제1조(목적) 839	제1조(목적) 839
제2조(정의) 839		
제3조(금지행위) 840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840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2장 허가과 신고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841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841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841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842	제4조(허가의 변경) 841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842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842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842
제6조(결격사유) 842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843	제7조(허가의 협의) 844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845	제8조(허가 협의의 예외사유) 845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845	
제9조(조건부 허가) 846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846	
제10조(허가의 제한) 846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846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846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846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847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847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848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848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848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849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84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850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851 제16조(해양오염방지) 851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854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p>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850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850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 3. 21.)</p> 제18조(폐기물 처리) 851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852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852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852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853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854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850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도 및 감독</p>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854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855 제20조(시정명령) 856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남극활동감시원</p>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854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855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854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p>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56 제21조의2(실태조사) 857 제22조(홍보 및 교육) 858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p>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856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56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857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제23조(벌칙) 858 제24조(벌칙) 858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 (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벌칙) 858		
제26조(양벌규정) 858		
제27조(과태료) 859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59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59
부칙 860	부칙 860	부칙 86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정 2004. 3.22 법률 제191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우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12.26 법률 제925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3.23 법률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4.10.15 법률 제12768호 2018. 1.16 법률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0.16 법률 제15787호 2020. 3.31 법률 제17159호 2020. 5.26 법률 제1730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氷棚·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 	<p>제정 2005.10.25 대통령령 제19094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3.21 대통령령 제23670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4.17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9. 4.16 대통령령 제2968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2. 3. 21.></p> <p>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p>	<p>제정 2010. 3. 8 외교 부 령 제103호 개정 2013. 3.23 외교통상부령 제 1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 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결당사국을 말한다.</p> <p>5.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심의하여 체결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p> <p>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p> <p>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p> <p>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 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p> <p>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조류·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말한다.</p> <p>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p>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란 남극조약협 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p> <p>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허가과 신고</p> <p>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p>	<p>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활동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 3. 31., 2014. 10. 15., 2018. 10. 16., 2020. 3.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역의 실행을 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12. 3. 21.] <p>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남극활동 참가자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p> <p>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p> <p>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 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p> <p>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적영향을 포함한</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약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⑤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약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p>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p> <p>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무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p>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 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p>	<p>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1.></p> <p>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③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 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⑤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p> <p>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p> <p>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p>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남극토착동식물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p> <p>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毀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p>	<p>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횡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횡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횡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p> <p>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p>	<p>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3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 3. 21.></p> <p>제18조(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p>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1. 반입된 조류제품</p> <p>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p>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p>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도 및 감독</p> <p>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 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할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남극활동감시원</p> <p>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p>	<p>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⑤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지명·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p>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p>	<p>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p>[전문개정 2012. 3. 21.]</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31.></p> <p>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p> <p>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p> <p>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p> <p>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018. 10. 16., 2020. 3. 31.)</p> <p>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6.></p> <p>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의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p> <p>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p>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 <개정 2012. 3. 21.></p>	

납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납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납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26.]</p> <p>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납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납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납극활동을 한 자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납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p>9. 삭제 <2020. 3. 31.></p> <p>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납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0. 3. 31.></p>	<p>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2. 3. 21.]</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삭제 <2013. 3. 23.> ⑤ 삭제 <2013. 3. 23.></p> <p>부칙 <제7195호, 2004. 3. 22.></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⑦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p>	<p>부칙 <제19094호, 2005. 10. 2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673호, 2008. 2. 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p> <p>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103호, 2010. 3. 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163〉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256호, 2008. 12.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제4항, 제</p>	<p>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③ 부터 〈138〉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670호, 2012. 3.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24호, 2013. 3.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p> <p>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13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p> <p>⑩부터 ⑳까지 생략</p>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p> <p>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⑤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p> <p><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제3조 본문·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제12768호, 2014. 10. 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부칙 <제15344호, 2018. 1. 16.> (과학기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p> <p>⑩부터 ㉓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5787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1호 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p> <p>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112>부터 <146>까지 생략</p> <p>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p> <p>⑨부터 ⑱까지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부칙 <제17159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04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799호, 2018. 4. 17.>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9685호, 2019. 4. 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86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868

[별표 1] <개정 2012.3.2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활동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활동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남극활동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0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마) 그 밖에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취소		
나.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취소		
다.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1) 남극활동 참가자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2) 남극활동 목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3) 남극활동 경로를 현저히 이탈한 경우(50퍼센트 이상 이탈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4) 승인을 받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활동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승인지역 외의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활동하거나 승인지역 외의 지역에서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6) 승인된 수량보다 많은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7) 승인된 종류 외의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6개월	취소	
8) 승인조건 외의 남극토착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포획 등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라.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활동정지 3개월	활동정지 6개월	취소
2)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활동정지 1개월	활동정지 3개월	취소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300	7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7호	300	500	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8호	500	700	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9호	700	1,000	1,00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873
-------------------------------	-----

[별표]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 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300	7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7호	300	500	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8호	500	700	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9호	700	1,000	1,000

제3편
자연보전

0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879	제1조(목적) 879	제1조(목적) 879
제2조(정의) 879		
제3조(적용 범위) 880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880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880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81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881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881	제3조(조사계획) 882
제6조(기초조사 등) 882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882	제3조의2(도서조사원) 883
제6조의2(도서조사원) 883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883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883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883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884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885
제8조(행위제한) 885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886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886
제9조(허가) 886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887
제10조(출입금지 등) 887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887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888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888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888		
제12조의3 삭제 889	제6조(권한의 위임) 889	
제13조(위임 및 위탁) 889	제7조(보고) 889	
제14조(벌칙) 890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양벌규정) 890		
제16조(과태료) 890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90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890
부칙 891	부칙 891	부칙 8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정 1997.12.13 법률 제5447호 개정 1999. 5.24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2002.12.30 법률 제68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19호 2004. 2. 9 법률 제7167호 (야생동물·식물보호법) 2007. 5.17 법률 제8485호 2009. 5.21 법률 제9696호 2011. 4.28 법률 제10612호 2011. 7.28 법률 제10974호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18 법률 제12458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을 위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중유석(鍾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정 1998. 6.20 대통령령 제15814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물류인가서발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43호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4호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8. 7. 3.></p>	<p>제정 1998. 7. 6 환경부령 제48호 개정 2002. 8.17 환경부령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4. 6.30 환경부령 제158호 2007.11.16 환경부령 제258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시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p>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 		<p>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p>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 6. 25.></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6조(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조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p> <p>④ 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5., 2007. 1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p>⑤ 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p>	<p>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6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서조사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p>	<p>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p>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p> <p>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30.]</p> <p>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 흙, 돌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p>		<p>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p>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7. 11. 16.]</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③ 해뜨기 전과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항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8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p>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 6. 30.></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p> <p>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p> <p>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군사·항해·조난구조(遭難救護) 행위</p> <p>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p> <p>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p> <p>4.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p> <p>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p> <p>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9조(허가)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p> <p>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p> <p>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改築)</p> <p>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p>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p> <p>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p> <p>2. 행위자</p> <p>3. 행위의 기간</p> <p>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p> <p>5. 행위의 내용·규모</p> <p>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p>	<p>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7., 2004. 6. 30., 2007. 11. 16.></p> <p>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p> <p>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p> <p>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행위</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0조(출입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항해·조난구조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p>② 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2조의3 삭제 (2011. 4. 28.)</p> <p>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6. 25.]</p> <p>제6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6.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7. 1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p>제7조(보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p>	<p>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p> <p>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 7. 3.]</p>	<p>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한 자</p> <p>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 에 출입한 자</p> <p>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부칙 <제5447호, 1997. 12. 1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5982호, 1999. 5. 24.>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p> <p><78>생략</p> <p>제4조 내지 제5조생략</p> <p>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p>	<p>부칙 <제15814호, 1998. 6. 2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⑨내지 ⑳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443호, 2004. 6. 25.></p> <p>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호, 1998. 7.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8호, 2002. 8. 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⑤내지 ⑳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58호, 2004. 6. 30.></p> <p>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6846호, 2002. 12. 30.>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p> <p>제5조제1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p> <p>②내지 ⑥생략</p> <p>부칙 <제7019호, 2003. 12. 30.></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p>	<p>부칙 <제20384호, 2007. 11. 15.></p> <p>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9025호, 2018. 7. 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258호, 2007. 11. 16.></p> <p>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p> <p>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p> <p>⑤내지 ⑮생략</p> <p>제3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5호, 2007. 5. 1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696호, 2009. 5. 2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2호, 2011. 4. 2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③(시·도특정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특정도서는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로 본다.</p> <p>부칙 <제10974호, 2011. 7. 2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②부터 ⑦까지 생략</p> <p>부칙 <제12458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89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 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150	250	300

제3편
자연보전

0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905	제1조(목적) 905	제1조(목적) 905
제2조(정의) 905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905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906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906	
제3조(등록 등) 906	제3조(등록요건 등) 906	제2조(등록절차) 906
제4조(등록의 취소) 907		제3조(변경등록절차) 907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908	제3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908	
	제3조의3(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908	
	제3조의4(위원회의 운영) 909	
	제3조의5(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910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911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911	제4조(휴원신고절차) 911
		제5조(폐원신고절차) 911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911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912		제6조(생물종의 조사 등) 912
제7조(금지행위) 912		
제8조(안전관리) 912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912		
제10조(자료의 제출) 913	제5조(자료의 제출) 913	
제11조(지도·점검 등) 913		
제12조(조치명령) 913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9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비용지원) 914		
제15조(청문) 914		
제16조(벌칙) 914		
제17조(양벌규정) 915		
제18조(과태료) 915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15	
부칙 915	부칙 915	부칙 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6. 5.29 법률 제14227호 개정 2018. 6.12 법률 제15651호 2018.12.31 법률 제1616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중 동물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p>제정 2017. 5.29 환경부령 제28075호 개정 2018.12.11 대통령령 제29350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p>	<p>제정 2017. 5.30 환경부령 제699호 개정 2018. 1.13 환경부령 제787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종합계획과 시·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명칭 	<p>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3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절차)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시설의 소재지</p> <p>3. 시설의 명세</p> <p>4. 시설 대표자의 성명·주소</p> <p>5. 전문인력의 현황</p> <p>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p> <p>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p> <p>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p> <p>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개정 2018. 12. 11.)</p> <p>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휴원·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리·운영계획서 1부 <p>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제3조(변경등록절차)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3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3조의3(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상당하는 공무원</p> <p>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p> <p>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11.]</p> <p>제3조의5(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을 각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3조의4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p> <p>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p>	<p>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p> <p>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p>	<p>제4조(휴원신고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원사유서 1부 2. 보유 생물 관리계획서 1부 3. 연간 개방계획서 1부 <p>제5조(폐원신고절차)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지하는 행위 <p>제8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p>제6조(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생물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척추동물종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척추동물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척추동물종 <p>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종 개체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생물종의 서식환경 4. 생물종의 건강·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수족관 내 생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생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동물원이 보유한 생물종에 해당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종에 해당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8. 12. 13.]</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p> <p>2.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p> <p>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p>제5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p> <p>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 되는 경우</p> <p>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유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1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227호, 2016. 5.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동물원·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p>	<p>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075호, 2017. 5. 29.></p> <p>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50호, 2018. 12. 11.></p> <p>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99호, 2017.5.30.></p> <p>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7호, 2018. 12. 13.></p> <p>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5651호, 2018. 6. 1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165호, 2018. 12. 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p>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제3조제1항 관련)	91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920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제3조제1항 관련)

1. 동물원

구분	등록요건
가. 시설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것 1)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전시시설 3) 사육시설 4)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나.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것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동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원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양서류·파충류
-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가.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0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수족관

구분	등록요건
가. 시설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것 1)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전시시설(수조를 포함한다) 3) 생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수조를 포함한다) 4) 해수 또는 담수의 공급 및 정화시설
나.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것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명 이상(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2) 생물의 분류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수산학, 동물자원학, 애원동물학, 생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 생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포유류·양서류·파충류·조류
나. 해조류·해초류·무척추동물
다. 어류
-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2)의 전문인력을 생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가.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나. 보유한 생물의 종이 총 40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 및 보유생물의 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제3편
자연보전

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목 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제7조(보전·관리계획)	제7조(보전·관리계획)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제9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제13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제14조(회계 등)	제14조(회계 등)
제15조(조세감면)	제15조(조세감면)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931
제18조(준용)	932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932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932
제6장 보칙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932
제22조(모금)	933
제7장 벌칙	
제23조(과태료)	933
부칙	934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정 2006. 3.24 법률 제7912호 개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75호 2018.10.16 법률 제15831호 2019.11.26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2. 3 법률 제16696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재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p>제정 2007. 3.22 대통령령 제19945호 개정 2009. 6.26 대통령령 제21573호 (참천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6.21 대통령령 제27252호 (참천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p> <p>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p> <p>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p> <p>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p>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0. 5. 26.></p> <p>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p> <p>제7조(보전·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p>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p> <p>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p>	<p>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유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지형·지질·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보전·운용하여야 한다.</p> <p>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p> <p>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임을 인정하는 자 <p>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p> <p>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p>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p>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전협약</p> <p>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p> <p>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p>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전 2. 개발사업 : 해당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p>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p> <p>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 	<p>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p>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p>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삭제 <2016. 1. 27.></p> <p>④ 삭제 <2016. 1. 27.></p> <p>⑤ 삭제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12호, 2006. 3. 2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945호, 2007. 3. 22.></p> <p>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73호, 2009. 6. 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부터 ⑦ 까지 생략</p> <p>제3조 및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252호, 2016. 6.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p> <p>⑪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p> <p>⑨부터 ⑮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p>	<p>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부터 ⑯까지 생략</p>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p>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5호, 2016. 1. 2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31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96호, 2019. 12.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 중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 부분: 2020년 6월 4일 2.부터 6.까지 생략 	

제3편
자연보전

0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941	제1조(목적) 941
제2조(정의) 941	제2조(정책) 94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42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942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943	제3조 삭제 943
	제4조 삭제 943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943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943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944	제6조 삭제 944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944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944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944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946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948
제8조(사전협의) 949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950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교환) 950
제10조(토지등의 매수·교환) 950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950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950	제11조 삭제 951
제11조 삭제 951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951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951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952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952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952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953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954	제12조(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 953
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955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954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955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955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955	제15조(권한의 위임) 955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956	
제17조(벌칙) 956	
제18조(양벌규정) 956	
부칙 957	부칙 95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정 2003.12.31 법률 제7038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28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005. 5.31 법률 제7548호 2007. 7.13 법률 제8506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3. 5 법률 제9479호 2011. 4. 6 법률 제10561호 2012.12.18 법률 제11565호 2014. 3.11 법률 제12414호 2017. 4.18 법률 제14772호 2020. 5.26 법률 제17318호</p>	<p>제정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8호 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2호 2006. 1.26 대통령령 제192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2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 6.16 대통령령 제21537호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레드운송법 시행령)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축산·수호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8.17 대통령령 제22346호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 9.11 대통령령 제25596호 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3호 2018. 4.17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0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4. 6.]</p>	<p>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09. 6. 16.></p> <p>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북정맥: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p> <p>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게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p>[본조신설 2020. 5. 26.]</p>	<p>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급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급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짜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p>[본조신설 2020. 11. 24.]</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임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3조 삭제 (2005. 11. 30.)</p> <p>제4조 삭제 (2009. 6. 16.)</p> <p>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p>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p>수립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p>[제목개정 2020. 11. 24.]</p> <p>제6조 삭제 <2005. 11. 30.></p> <p>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17. 10. 17.></p> <p>[제목개정 2005. 11. 30.]</p> <p>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p> <p>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p> <p>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p> <p>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p> <p>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p> <p>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조난</p>	<p>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6. 16., 2009. 11. 2., 2010. 8. 17., 2014. 9. 11.,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철도·하천·계도시설 또는 송전탑. 다만, 송전탑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작업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은 송전탑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최소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 3. 국가통신시설 4.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6. 「광산폐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p>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8. 4., 2009. 6. 16., 2010. 3. 9., 2014. 9. 11.,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입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보전·관리 또는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p>③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이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9. 10.,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2. 개발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경내채광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석회석 노천채광 <p>④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6. 20., 2009. 11. 26., 2014. 9. 11., 2015. 12. 22.)</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p> <p>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p> <p>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p> <p>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p> <p>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p> <p>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p> <p>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1.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p> <p>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을 위한 시설</p> <p>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로서 부지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⑤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20. 11. 24.)</p> <p>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p> <p>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p> <p>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p> <p>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p> <p>⑥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p> <p>1. 진입로</p> <p>2. 현장사무소</p> <p>3. 작업장</p> <p>4. 지질·토양의 조사·탐사 시설</p> <p>5.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 [제목개정 2009. 6. 16.]</p> <p>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삭제 <2005. 11. 30.></p> <p>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p> <p>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업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p> <p>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p> <p>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p> <p>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8. 4. 17.></p> <p>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p> <p>1. 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p> <p>2. 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p> <p>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 2014. 9. 11.></p> <p>1.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p> <p>2.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p> <p>3. 상하수도시설</p> <p>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허가 등에</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의 설치</p> <p>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p> <p>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p> <p>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p> <p>12. 삭제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p>	<p>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1. 30.,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2.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p>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 11. 30., 2009. 6. 16., 2014. 9. 11.)</p> <p>⑨ 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육류·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2. 농장 조망시설 및 눈·비 대피시설 3. 자동관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간이매점 및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p>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p> <p>⑪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9. 11., 2017. 10. 17.)</p> <p>[제목개정 2009. 6. 16.]</p> <p>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 3.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p>	<p>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30., 2007. 10. 15., 2009. 12. 14., 2014. 9. 11.,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p>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의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10조(토지등의 매수·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p> <p>[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0. 5. 26.]</p> <p>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결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p>[본조신설 2005. 11. 30.] [제목개정 2009. 6. 16., 2020. 11. 24.]</p> <p>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입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p>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 삭제 <2009. 3. 5.>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p>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본조신설 2005. 11. 30.] [제목개정 2009. 6. 16.]</p> <p>제11조 삭제 <2009. 6. 16.>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p>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세부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p>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30.]</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p> <p>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p>	<p>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임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임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 임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p>[본조신설 2005. 11. 30.]</p> <p>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임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11. 15.></p> <p>[본조신설 2005. 11. 30.]</p> <p>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11조의3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임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만 해당하는)을 첨부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6., 2010. 5. 4.,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의,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p> <p>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p> <p>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p>	<p>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 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p> <p>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p> <p>⑦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별채허가 또는 신고일(별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연도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별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연도의 경우에는 별채허가·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할계산한다.</p> <p>[본조신설 2005. 11. 30.]</p> <p>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4.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p>[본조신설 2005. 11. 30.]</p> <p>제12조(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물·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 산림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 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지원 대상·기준 및 보호·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6.]</p> <p>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중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5. 26.)]</p>	<p>[본조신설 2020. 11. 24.] [중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1. 24.)]</p> <p>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p> <p>1. 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p> <p>2. 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p> <p>②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p> <p>④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p> <p>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3.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3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20. 5. 26.] [중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26.)]</p> <p>제14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4. 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5. 26.)]</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4. 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5. 26.)]</p>	<p>[본조신설 2020. 11. 24.]</p> <p>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시설의 설치 목적 3. 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면적 4. 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6.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7. 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p>[본조신설 2020. 11. 24.]</p> <p>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1. 26., 2007. 10. 15., 2009. 6. 16.,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5. 26.)]</p> <p>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1. 4. 6.]</p> <p>[제15조에서 이동 (2020. 5. 26.)]</p> <p>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전문개정 2009. 3. 5.]</p>	<p>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p> <p>4. 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p> <p>5. 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결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산설 2010. 8. 17.></p> <p>1. 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2. 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 17., 2020. 11. 24.></p> <p>[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24.)]</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6조에서 이동 <2020. 5. 26.>]</p> <p>부칙 <제7038호, 2003. 12. 3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인가·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7284호, 2004. 12. 3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7548호, 2005. 5. 31.></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06호, 2007. 7. 13.></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618호, 2004. 12. 30.></p> <p>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152호, 2005. 11. 30.></p> <p>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292호, 2006. 1. 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①생략 ②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79호, 2009. 3. 5.></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61호, 2011. 4. 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565호, 2012. 12.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14호, 2014. 3. 11.></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터 ㉔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322호, 2007. 10. 1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772호, 2017. 4. 1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18호, 2020. 5.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호 중 “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지식경제부 제2차관·국토해양부 제1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p> <p>⑤ 부터 ⑯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854호, 2008. 6.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p> <p>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p> <p>⑬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37호, 2009. 6. 1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㉔ 부터 ㉕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47호, 2009. 11. 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부터 ㉑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㉒ 부터 ㉓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p> <p>④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p> <p><7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77>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346호, 2010. 8.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송전탑의 작업장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송전탑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작업장의 설치면적 및 설치기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전협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협의를 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p> <p>⑤부터 <11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74호, 2013. 3. 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p> <p>⑪부터 ⑱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596호, 2014. 9. 11.></p> <p>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02호,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363호, 2017. 10. 17.)</p> <p>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799호, 2018. 4. 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80호, 2020. 11. 24.></p> <p>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제3편
자연보전

0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71	제1조(목적) 971	제1조(목적) 971
제2조(정의) 971		
제3조(기본원칙) 97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74		
제5조(국민의 책무) 97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74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974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974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97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75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976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76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977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77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77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977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978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978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978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978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978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979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979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980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방법) 980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980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981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981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981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98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982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982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982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983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983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 984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983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984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985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 10. 16.>		
제21조 삭제 985		
제21조의2(위해성평가) 985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985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지정해제 관련 협의) 986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986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절차) 986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987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988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989		제10조 삭제 989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989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990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990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991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99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993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 992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994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관련 변경신고) 992
제25조(승인·허가의 취소 등) 995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993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 994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996		제12조(승인·허가의 취소 절차) 995
제27조(기술개발) 996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997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997	제14조 삭제 997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997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997		
제29조(교육·홍보) 998		
제7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998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998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99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999
제31조(국고 보조) 999		
제32조(청문) 1000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000	제16조(권한의 위임) 1000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1001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02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10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몰수) 1003		
제37조(양벌규정) 1003		
제38조(과태료) 100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03	
부칙 1004	부칙 1004	부칙 100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2. 2. 1 법률 제11257호 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14. 3.18 법률 제12459호 2016.12.27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10.16 법률 제15833호 2019.12.10 법률 제16906호</p>	<p>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3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8호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1.30 대통령령 제28616호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5호 2020. 6. 2 대통령령 제30749호</p>	<p>제정 2013. 2. 1 환경부령 제499호 개정 2013.12.18 환경부령 제530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 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9.10.17 환경부령 제828호 2020. 6. 9 환경부령 제87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p>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p> <p>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p> <p>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p> <p>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p> <p>다. 삭제 (2018. 10. 16.)</p> <p>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p> <p>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p> <p>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p> <p>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p> <p>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p> <p>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총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락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p> <p>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p>	<p>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p>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p> <p>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p> <p>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p>	<p>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p>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p> <p>③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p>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 30.></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30.></p>	<p>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p> <p>제13조(외국인들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p>		<p>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p>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p>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p>	<p>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6. 9.></p> <p>[제목개정 2020. 6. 9.]</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p> <p>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p> <p>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p>	<p>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p> <p>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p>[본조신설 2020. 6. 2.]</p> <p>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p> <p>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p> <p>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p> <p>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p> <p>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p>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p> <p>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p> <p>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p> <p>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p>	<p>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 10. 16.)</p> <p>제21조 삭제 (2018. 10. 16.)</p> <p>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p>		<p>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 위해성평가의 방법 <p>②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p>		<p>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p> <p>4.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p> <p>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p> <p>③ 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7.]</p> <p>제20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지정해제 관련 협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p> <p>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種名) 증명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p>		<p>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p> <p>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9. 10. 17.]</p> <p>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생물학적·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④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⑤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p>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p> <p>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p>		<p>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 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0조 삭제 (2019. 10. 17.)</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8. 10. 16.]</p> <p>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용·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p>		<p>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용·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0. 17.></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p> <p>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p> <p>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관련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상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p>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량 또는 반입량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확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p> <p>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p>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p> <p>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승인·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p>		<p>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p> <p>5.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p> <p>제12조(승인·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p>[전문개정 2019. 10. 17.]</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p> <p>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3.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p>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평가 및 증진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p> <p>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p>	<p>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p>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삭제 (2019. 10. 15.)</p>	<p>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현황 <p>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7.></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29조(교육·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 	<p>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한 자</p> <p>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p> <p>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 	<p>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p> <p>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p> <p>라.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p> <p>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p> <p>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p> <p>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p> <p>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p> <p>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5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수입·반입 허가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신고의 수리 7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의5.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의6.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8. 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8의2.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13. 12. 11.>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 불체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6. 2.>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6. 2.> <p>[본조신설 2013. 12. 11.]</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6조(물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물수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p>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2.></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 <제11257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24283호, 2012.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8.1.30></p> <p>제3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p> <p>⑧부터 ⑫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499호, 2013. 2.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별표 2를 삭제한다.</p> <p>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530호, 2013. 12. 18.></p> <p>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828호, 2019. 10. 17.></p> <p>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p> <p>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p> <p>제5조의2를 삭제한다.</p> <p>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p> <p>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p> <p>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p> <p>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p>	<p>부칙 〈제24998호, 2013. 12. 11.〉</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165호, 2017. 6.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p> <p>〈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p>	<p>부칙 〈제871호, 2020. 6. 9.〉</p> <p>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p> <p>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p> <p>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p> <p>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p> <p>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p> <p>제35조의 제목“(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p> <p>제36조의 제목“(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p>	<p>〈250〉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616호, 2018. 1.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125호, 2019. 10. 15.〉</p> <p>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749호, 2020. 6. 2.〉</p> <p>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제37조를 삭제한다.</p> <p>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p> <p>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p> <p>부칙 (제11536호, 2012. 12. 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2459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13호, 2016. 12. 2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15833호, 2018. 10.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806호, 2019. 12. 1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01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014

[별표 1] (신설 2020. 6.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 가.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 다.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 가.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 다.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별표 2] <개정 2020.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10

습지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1021	제1조(목적) 1021	제1조(목적) 1021
제2조(정의) 1022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1022		
제4조(습지조사) 1023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1023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23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1024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024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024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1025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1025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1026	
	제3조의6(운영세칙) 1026	
제6조(습지조사원) 1026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1026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1026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1027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 3. 24.)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1027	제4조 삭제 1027	제4조 삭제 1027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1028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1028
제9조(협약의 이행) 1029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1028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1029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1030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1030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1030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1031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1030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1031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31	
제13조(행위 제한) 1032	제9조(습지보전·이용시설) 1031	제6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1031
	제10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 1031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1032	제7조(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 1032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033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1033
제14조(중지명령 등) 1034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1034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1034
제15조(출입 제한) 1035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1034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36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1035	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시등) 1035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1036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1036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1036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1036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1036		
제18조의2(이용료) 1037		제10조의2(이용료) 1037
제3장 보칙 (개정 2014. 3. 24.)		
제19조(포상금) 1038	제15조(포상금) 1038	
제20조(손실보상) 1039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1039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1039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1039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1039	제12조(재결신청서) 1039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040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1039	
	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1040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1043	제19조(보고) 1043	
제22조의2(국고 보조) 1043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1043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1043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1043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1044
제4장 벌칙 (개정 2014. 3. 24.)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44	
제23조(벌칙) 1045		
제24조(벌칙) 1045		
제25조 삭제 1045		
제26조(양벌규정) 1045		
제27조(과태료) 1046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46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1046
부칙 1046	부칙 1046	부칙 1046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1999. 2. 8 법률 제5866호 개정 2002.12.26 법률 제6825호 2004. 2. 9 법률 제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 3.31 법률 제7461호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1.26 법률 제8291호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58호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16 법률 제11910호 2014. 3.24 법률 제12525호 2016. 1.27 법률 제13880호 2019. 8.27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1. 1. 5 법률 제17844호</p>	<p>제정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8호 개정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 6.25 대통령령 제18017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직면처리를위한가석방자 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2호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7.24 대통령령 제20188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8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1.14 대통령령 제25081호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2호</p>	<p>제정 1999. 8. 7 환경부령 제79호 개정 2003. 7.29 환경부령 제143호 2005. 9.30 환경부령 제184호 2007. 7.26 환경부령 제241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14 환경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0. 4. 9 환경부령 제860호, 해양수산부령 제404호</p>
<p>제1장 총칙 <개정 2014.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排水), 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천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14. 3. 24.]</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습지조사)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 	<p>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안 <p>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p> <p>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p>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p> <p>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본조신설 2007. 7. 24.]</p> <p>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 7. 24.]</p> <p>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6조(습지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p>	<p>[본조신설 2007. 7. 24.]</p> <p>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 7. 24.]</p> <p>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7. 7. 24.]</p>	<p>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생물학,토양학,해양학,환경학,수문학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p> <p>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p> <p>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답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 3. 24.)</p> <p>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p>제4조 삭제 (2005. 9. 30.)</p>	<p>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제4조 삭제 (2003. 7.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지역</p> <p>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p>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위한 공청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p>	<p>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 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p>		<p>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20. 4. 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 간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p> <p>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20. 4. 9.></p> <p>[본조신설 2003. 7.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으로 정한다.</p> <p>②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제지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p>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 9. 30.></p> <p>③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3.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p> <p>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우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p> <p>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p> <p>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p>	<p>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p>제9조(습지보전·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p>제10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p>	<p>제6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 2007. 7. 26., 2008. 3. 14., 2020.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5. 습지보전·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p>[제목개정 2007. 7. 26.]</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p>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천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p>	<p>7. 24.)</p> <p>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24.] 	<p>제7조(경작·포획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군·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4. 3., 2010.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점유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4조(중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p>	<p>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②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③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p>[본조신설 2003. 6. 25.]</p> <p>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4.]</p>	<p>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p>[본조신설 2003. 7.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5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습지보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2.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의 	<p>제9조(출입제한·금지의 표지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 7. 29., 2008. 3. 14., 2013. 3. 23.></p> <p>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① 정부는 제1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보존된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p>	<p>서식상황 조사</p> <p>6. 그 밖에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5., 2005. 9. 30., 2007. 7. 24., 2008. 2. 29., 2010. 10. 14., 2013. 3. 23.></p> <p>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p>	<p>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 7. 29.></p> <p>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주변에 해류·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26., 2020. 4. 9.></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 7. 26., 2008. 3. 14., 2013. 3. 23., 2020. 4. 9.></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7. 7. 26., 2020. 4. 9.></p> <p>④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20.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 <개정 2014. 3. 24.></p> <p>제19조(포상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p>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p> <p>6.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p> <p>7.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거주자</p> <p>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포획·채취가 허용되는 자</p> <p>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 내인</p> <p>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6.></p> <p>[본조신설 2003. 7.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20조(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p>	<p>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p>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2. 2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p>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p>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p>	<p>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매수(買收)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p> <p>②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p>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p>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본조신설 2003. 6. 25.]</p> <p>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 계획의 수립·시행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 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0. 29.></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5. 1.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 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관리</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0. 29.></p> <p>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 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p> <p>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p> <p>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p> <p>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p> <p>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p> <p>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p> <p>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p> <p>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p> <p>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p> <p>[전문개정 2003. 6. 25.] [제목개정 2019. 10.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9. 10. 29.]</p> <p>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p>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 3. 24.]</p>	<p>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p>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본조신설 2003. 6. 25.]</p> <p>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0.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습지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무 	<p>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본조신설 2003. 7. 29.]</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칙 <개정 2014. 3. 24.></p> <p>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p>[전문개정 2014. 3. 24.]</p> <p>제25조 삭제 <2008. 3. 21.></p> <p>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위촉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24.]</p> <p>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66호, 1999. 2. 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1. 3. 29.]</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528호, 1999. 8. 7.></p> <p>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p> <p>제5조 생략</p>	<p>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7. 29., 2005. 9. 3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호, 1999. 8. 7.></p> <p>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3호, 2003. 7. 2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4호, 2005. 9. 30.></p> <p>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1호, 2007. 7. 26.></p> <p>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25호, 2002. 12.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7호,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p> <p>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017호, 2003. 6. 25.></p> <p>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072호, 2005. 9. 30.></p> <p>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⑲ 내지 ㉔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88호, 2007. 7. 2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호, 2008. 12. 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㉔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동·식물”로 한다. ㉑내지 ㉕생략 제30조 생략</p> <p>부칙 <제7461호, 2005. 3. 31.></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291호, 2007. 1. 2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p>	<p>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722호, 2008. 2. 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부터 <138> 까지 생략</p> <p>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p> <p>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환경부령 제860호, 해양수산부령 제404호, 2020. 4. 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p> <p>⑱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p> <p>⑲내지 ㉔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할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p> <p><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p>	<p>①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점용</p> <p>⑫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p> <p><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110>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사용허가”를 “점용·사용허가”로 한다.</p> <p>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p> <p>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림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p> <p>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513〉부터 〈760〉까지 생략</p>	<p>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p> <p>⑯부터 ㉓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738호, 2011. 3.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4001호,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8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부터 ㉢ 까지 생략 ㉡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p>	<p>제12조제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및 ㉡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호·제2호·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81호, 2014. 1. 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p> <p>①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⑤부터 ⑦까지 생략</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p> <p>〈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p>	<p>부칙 〈제25985호, 2015. 1. 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p> <p>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p> <p>⑯부터 ㉑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부칙 〈제30172호, 2019. 10.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p> <p>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로 한다.</p> <p>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504〉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910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p> <p>부칙 〈제12525호, 2014.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각 호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2.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80호, 2016. 1.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양식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p> <p>⑥부터 <61>까지 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44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용료 사용 목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p>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105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057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구 분	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3개월 6개월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6개월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2개월 4개월 6개월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6개월

[별표 2] <개정 2014.1.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거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제3편
자연보전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8.>		
제1조(목적) 1070	제1조(목적) 1070	제1조(목적) 1070
제2조(정의) 1070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1070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1070
		제3조 삭제 1070
		제4조(유해야생동물) 1071
		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1072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107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072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절 총칙 <개정 2011. 7. 28.>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73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1073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1074	
제5조의2 삭제 1074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1074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1075		제5조(실태조사) 1075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1075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1075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1075
	제6조 삭제 1076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1076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1076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1078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1078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1078
제10조(뿔, 창에, 울무 등의 제작금지 등) 1079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1079
제11조 삭제 1079		제10조 삭제 1079
제11조의2 삭제 1079		제11조 삭제 107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1079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1079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10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p> <p>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1081</p> <p>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1082</p> <p>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 1082</p> <p>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1086</p> <p>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1086</p> <p>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1086</p> <p>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1086</p> <p>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088</p> <p>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1092</p>	<p>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장기 보전대책) 1081</p> <p>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1081</p> <p>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1082</p> <p>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1083</p> <p>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1086</p> <p>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088</p> <p>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1092</p>	<p>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1082</p> <p>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1083</p> <p>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1084</p> <p>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1084</p> <p>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1084</p> <p>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1085</p> <p>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 1086</p> <p>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1088</p> <p>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1088</p> <p>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의 발급 등) 1089</p> <p>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1090</p> <p>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1091</p> <p>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1092</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1094</p> <p>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1096</p> <p>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1096</p> <p>제16조의5(개선명령) 1097</p> <p>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1097</p> <p>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1098</p> <p>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1098</p> <p>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1099</p> <p>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1100</p> <p>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1101</p> <p>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p> <p>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1101</p>	<p>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1094</p> <p>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1096</p> <p>제14조(보호시설 등) 1100</p>	<p>제23조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 1092</p> <p>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1093</p> <p>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1094</p> <p>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094</p> <p>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1095</p> <p>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1096</p> <p>제23조의9(개선명령) 1097</p> <p>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1098</p> <p>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1100</p> <p>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1101</p> <p>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1101</p> <p>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1102</p> <p>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신고) 1103</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1104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1104		제28조(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1104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1104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1106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1106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 1105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1106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1107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1108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1108 제31조의4(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109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1109 제33조 삭제 1110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1108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1109		
제25조 삭제 1110		
제25조의2 삭제 1110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1110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개정 2011. 7. 28.)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1110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1110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1111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11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1112 제16조(재해의 범위) 1112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1112	
제29조(출입 제한) 1113	제18조(금지행위) 1113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1113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1114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11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중지명령 등) 1115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1115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1115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1115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1115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1116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1117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1118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1115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1115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1116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1117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1118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1118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1118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1119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평가) 1119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 3. 24.>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119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 1121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1120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 1121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1121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비용의 지원) 1122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1122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1123 제34조의7(질병진단) 1124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1125 제34조의9(역학조사) 1126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1123 제23조의5 삭제 1124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1123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1124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1125
제34조의10(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1128		제44조의7(역학조사) 1127 제44조의8(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이동제한·살처분 명령) 1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1131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131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1130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130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1131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131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1132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1132
제36조(등록취소) 1133		제46조(변경등록사항) 1133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1134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1134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1134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1134	
	제24조의2 삭제 1134	
	제25조 삭제 1134	
제39조 삭제 1135	제26조 삭제 1135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1135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1135
제41조 삭제 1136		제48조 삭제 1136
제41조의2 삭제 1136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 7. 28.>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1136	제28조(수렵장의 설정) 1136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1136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1138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1138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1136
제44조(수렵면허) 1138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1138	제51조(수렵장 안내판·시설 등의 설치기준) 1137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1140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1140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1138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1140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1140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1140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11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결격사유) 1142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1141
제47조(수렵 강습) 1142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1141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1144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1142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1144		제59조(수렵강습) 1143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1145	제33조 삭제 1145	제60조(수강신청 등) 1143
제50조(수렵승인 등) 1146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1146	제61조(수렵면허증 등) 1144
제51조(수렵보험) 1147	제35조(보험 가입) 1147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1145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1147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1147	제63조(수렵승인신청) 1146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1147		제64조 삭제 1147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1149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1147
제55조(수렵 제한) 1150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1148
제5장 보칙 (개정 2011. 7. 28.)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1148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1151	제37조(보고) 1151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1149
제57조(포상금) 1152	제38조(포상금의 지급) 1152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1150
제57조의2(보상금 등) 1154	제38조의2(보상금) 1154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1150
제58조(재정 지원) 1154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1152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1155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1154
제58조의3(수수료) 1156		제72조의2(수수료) 11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1156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1156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1157		제74조(직무 범위) 1156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1157		제75조(보수) 1157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 1157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1157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1158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1158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1158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1158
제64조(청문) 1159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1159		
제66조(위임 및 위탁) 1159	제39조(권한의 위임) 1159	
제66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60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62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1164	제79조(규제의 재검토) 1164
제6장 벌칙 <개정 2011. 7. 28.>		
제67조(벌칙) 1165		
제68조(벌칙) 1165		
제69조(벌칙) 1166		
제70조(벌칙) 1167		
제71조(몰수) 1168		
제72조(양벌규정) 1169		
제73조(과태료) 1169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169	제80조 삭제 1169
부칙 1172	부칙 1172	부칙 117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4. 2. 9 법률 제7167호 2004.12.31 법률 제7297호 (자연환경보전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취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31 법률 제7457호 2005. 3.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 4.11 법률 제8365호 (약사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 5.17 법률 제8467호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6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2. 4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 7.23 법률 제10388호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2011. 9.16 법률 제110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2 법률 제1166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 7.16 법률 제11912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3.11 법률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4. 3.24 법률 제12521호 2015. 2. 3 법률 제13167호 2016. 1.27 법률 제13882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2.12 법률 제15196호 2018.10.16 법률 제15835호 2019.11.26 법률 제16602호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1.26 법률 제16609호</p>	<p>제정 2005. 2. 7 대통령령 제18696호 2005. 9.14 대통령령 제19049호 2007. 4. 4 대통령령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5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1호 2011. 1.20 대통령령 제22630호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7호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청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6 대통령령 제25480호 2015. 3.24 대통령령 제26159호 2015. 7.20 대통령령 제2641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69호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3.27 대통령령 제28721호 2019. 9.10 대통령령 제30073호 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6호 2020. 9.11 대통령령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 9.29 대통령령 제31070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2호</p>	<p>제정 2005. 2. 7 환경부령 제171호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 9.27 환경부령 제183호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2. 4 환경부령 제260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시를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1 환경부령 제332호 2011. 1.21 환경부령 제393호 2011. 3.31 환경부령 제404호 2012. 5.31 환경부령 제457호 2012. 7. 3 환경부령 제466호 2012. 7.27 환경부령 제469호 2012.12.31 환경부령 제491호 2013. 2. 1 환경부령 제49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9.10 환경부령 제516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17 환경부령 제565호 2015. 3.25 환경부령 제598호 2015. 8. 4 환경부령 제612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1.30 환경부령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공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환경부령 제737호 2018.12.10 환경부령 제784호 2019. 9.25 환경부령 제82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5.27 환경부령 제867호 2020. 9.29 환경부령 제884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2호</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2020. 8.11 법률 제17472호 (정부조직법)</p> <p>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8.></p> <p>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12. 2. 1.,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p>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3조 삭제 <2013. 2. 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p> <p>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p> <p>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p> <p>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p> <p>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p> <p>4. 삭제 (2012. 2. 1.)</p> <p>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p> <p>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p> <p>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p>	<p>처한 종</p> <p>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p> <p>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렬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 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야생동물 질병)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p> <p>제1절 총칙 (개정 2011. 7. 28.)</p> <p>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9. 9.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조의2 삭제 <2012. 2. 1.></p>	<p>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찰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p>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2018. 12. 10.> [전문개정 2012. 7. 27.]</p> <p>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p>제6조 삭제 (2012. 7. 31.)</p>	<p>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현황 명세서 2. 운영 현황 명세서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p>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p> <p>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밧,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p> <p>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p> <p>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p> <p>9. 삭제 (2013. 7. 16.)</p> <p>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p> <p>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밧,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p> <p>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p> <p>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p> <p>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7. 28.]</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삭제 <2017. 12. 12.> <p>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p>		<p>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10조(땃, 창애, 울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땃, 창애,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11조 삭제 (2014. 3. 24.)</p> <p>제11조의2 삭제 (2014. 3. 24.)</p> <p>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p>	<p>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땃·창애·울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p> <p>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p> <p>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땃·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10조 삭제 (2015. 3. 25.)</p> <p>제11조 삭제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0.,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p> <p>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p>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p>	<p>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p> <p>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p> <p>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p> <p>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p> <p>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p> <p>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p> <p>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p> <p>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다.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p> <p>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p> <p>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나. 물품매도화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다. 사용계획서</p> <p>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p> <p>1. 폭발물, 덩, 창에,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p> <p>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p>		<p>만 해당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p>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p> <p>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p>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p> <p>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면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p>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I·II·III)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p>② 삭제 <2007. 5. 17.></p>	<p>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서 정한 식물로서</p>	<p>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공증식된 식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인지에 관한 사항 	<p>"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p> <p>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p> <p>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p> <p>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p> <p>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p> <p>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p> <p>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p> <p>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p> <p>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사용계획서</p> <p>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p> <p>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p> <p>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수량·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9.,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p>사본(협약 부속서 II·III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p> <p>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다.</p> <p>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p> <p>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p>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p> <p>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기 인증서를 발급한 약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p> <p>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약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약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약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약기 사진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p> <p>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p> <p>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p>		<p>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약기 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0.]</p> <p>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증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p>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p>	<p>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11.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6.]</p>	<p>가족견본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 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p>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p>[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4. 7. 1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2020. 2.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p>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5(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본조신설 2014. 7. 16.]</p>	<p>[본조신설 2014. 7. 17.]</p> <p>제23조의9(개선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p>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7. 1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p> <p>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추어</p> <p>3.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p>		<p>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 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1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하게 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구입,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p>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 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p>	<p>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p>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 시키거나 확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p> <p>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p>에 따른 생물자원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근종류만 해당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5. 3. 25.]</p> <p>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p> <p>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p> <p>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p> <p>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p>		<p>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p> <p>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p> <p>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p> <p>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p> <p>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수량, 구입일·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목개정 2015. 3. 25.]</p> <p>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p> <p>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p>1. 폭발물, 밧, 창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p> <p>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p> <p>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p> <p>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p> <p>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p> <p>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p> <p>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p> <p>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으로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p> <p>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p>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전문개정 2015. 3. 25.]</p> <p>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확대받거나 훼손될 위험 		<p>제28조(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5. 3. 25.]</p> <p>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7. 11. 30.,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최소화할 것</p> <p>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p> <p>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p> <p>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행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p> <p>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p> <p>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p>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2020. 5. 26.></p> <p>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p> <p>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p>	<p>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p> <p>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p> <p>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p> <p>가. 물품대화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사용계획서</p> <p>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p> <p>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p> <p>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p> <p>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족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을 말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1. 27.></p> <p>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p>	<p>없고, 야생생물 중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p> <p>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p> <p>[전문개정 2012. 7. 31.] [제목개정 2015. 3. 24.]</p>	<p>다른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의 종 관별</p> <p>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전문개정 2012. 7. 27.] [제목개정 2015. 3. 25.]</p> <p>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p> <p>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p>		<p>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p> <p>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p> <p>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2013. 9. 10.) [전문개정 2012. 7. 27.]</p> <p>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합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p>		<p>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p> <p>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p> <p>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31조의4(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p> <p>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5조 삭제 <2012. 2. 1.> 제25조의2 삭제 <2012. 2. 1.>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개정 2011. 7. 28.></p> <p>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 삭제 <2013. 2. 1.></p> <p>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p>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p>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 	<p>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p>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p> <p>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p>	<p>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등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p>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p>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시)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 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 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p>	<p>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p>	<p>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계산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p>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우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p> <p>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 8. 11.></p> <p>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서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불의 진화(鎮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적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평가)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p>		<p>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p> <p>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⑤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24.]</p> <p>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 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추는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것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p> <p>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p> <p>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계획서</p> <p>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 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5. 3. 25.]</p> <p>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비용의 지원) 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p> <p>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p> <p>3.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확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p>	<p>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p> <p>[본조신설 2015. 3. 24.]</p>	<p>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7(질병진단)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진단 및 조사·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p>제23조의5 삭제 <2020.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p>②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 5. 27.></p> <p>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p> <p>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2020.</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p>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試料)의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1. 26.></p> <p>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p>		<p>9. 29.)</p> <p>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9. 29.></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p>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p>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③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시·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 <p>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p> <p>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3. 24.]</p>		<p>제44조의7(역학조사) 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기술·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p>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의10(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7.]</p> <p>제44조의8(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이동제한·살처분 명령)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p> <p>3. 야생동물의 살처분</p> <p>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p>		<p>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2020. 5. 27.></p> <p>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p> <p>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p> <p>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1. 삭제 <2020. 5. 27.></p> <p>2. 삭제 <2020. 5. 27.></p> <p>3. 삭제 <2020. 5. 27.></p> <p>④ 시·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중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p> <p>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5. 27., 2020. 9. 29.></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신설 2019. 11. 26.></p> <p>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4. 3. 24.]</p>		<p>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p> <p>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p> <p>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27.></p> <p>1.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p> <p>2.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p> <p>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7.></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목개정 2020. 5. 27.]</p> <p>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 5. 27.></p>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 5. 27.></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물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p> <p>[본조신설 2015. 3. 25.]</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목개정 2019. 11. 26.]</p> <p>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p> <p>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p>		<p>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p>[본조신설 2015. 3. 25.]</p> <p>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p> <p>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p>		<p>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p>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p> <p>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p> <p>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p> <p>[제목개정 2011. 7. 28.]</p> <p>제36조(등록취소)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1. 시설요건</p> <p>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p> <p>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p> <p>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는 것</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p> <p>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p> <p>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p>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24조의2 삭제 <2020. 2. 25.></p> <p>제25조 삭제 <2020. 2. 25.></p>	<p>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의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p>[본조신설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8.]</p> <p>제39조 삭제 <2019. 11. 26.></p> <p>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6조 삭제 <2020. 2. 25.></p> <p>제27조 삭제 <2020. 2. 25.></p>	<p>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 삭제 (2012. 2. 1.) 제41조의2 삭제 (2012. 2. 1.)</p> <p>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 7. 28.)</p> <p>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p> <p>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48조 삭제 (2013. 2. 1.)</p> <p>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p>		<p>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이용방법·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51조(수렵장 안내판·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의 명칭·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p>②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p>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31.]</p>	<p>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p> <p>8. 안전관리시설</p> <p>[전문개정 2015. 8. 4.]</p> <p>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9. 9.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p>		<p>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p> <p>4. 증명사진 1장</p> <p>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19. 9. 25.></p> <p>1.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p> <p>2. 증명사진 1장</p> <p>3. 수렵면허증</p> <p>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31.]</p>	<p>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p> <p>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7. 27.]</p> <p>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7. 27.]</p> <p>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p> <p>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p> <p>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11. 7. 28.]</p>		<p>나.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삭제 <2015. 8. 4.></p> <p>② 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 전문인력 명세서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59조(수렵강습)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p> <p>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p> <p>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60조(수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 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p>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p>		<p>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4.></p> <p>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 8. 4.></p> <p>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전문개정 2012. 7. 27.]</p> <p>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p>제33조 삭제 <2012. 7. 31.></p>	<p>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p>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p> <p>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0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p> <p>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p>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p>③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 등의 지원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1억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7.>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7. 17.> [전문개정 2012. 7. 27.]</p> <p>제64조 삭제 <2014. 7. 17.></p> <p>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계획 2. 시설계획</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명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p>[전문개정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 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p>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운영 현황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p>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p>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p> <p>③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p> <p>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p> <p>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p> <p>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7. 27.]</p> <p>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p> <p>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 (개정 2011. 7. 28.)</p> <p>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2. 2. 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 2. 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p>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p>	<p>제37조(보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7. 31.] [제목개정 2020. 9. 29.]</p>	<p>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 8. 4.]</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p> <p>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p> <p>2. 제10조를 위반하여 밧, 창에,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p> <p>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p>	<p>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p>	<p>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밧, 창에,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p> <p>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p> <p>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밧, 창에,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p> <p>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p> <p>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p> <p>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p> <p>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p> <p>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p> <p>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치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p> <p>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p> <p>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p> <p>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3. 24.> [전문개정 2012. 7. 3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본조신설 2019. 11. 26.]</p> <p>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삭제 <2012. 2. 1.> 	<p>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p> <p>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5. 26.]</p>	<p>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p> <p>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p> <p>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p> <p>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72조의2(수수료) 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7.]</p> <p>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75조(보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 계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 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에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p>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2. 7. 2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가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3. 3. 23.></p> <p>④ 삭제 <2012. 2. 1.>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가</p>	<p>제3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8.]</p>	<p>포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양수·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의 등록의 접수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이송</p> <p>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p> <p>13. 삭제 (2020. 5. 26.)</p> <p>14. 삭제 (2020. 5. 26.)</p> <p>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위의 제한</p> <p>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 제한·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p> <p>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증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p> <p>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p> <p>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p> <p>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p> <p>21. 삭제 (2020. 5. 26.)</p> <p>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검사 및 질문</p> <p>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p> <p>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p> <p>25.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p> <p>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p> <p>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p> <p>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p> <p>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의 경우로 한정한다)</p> <p>30. 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제12호·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2020. 9. 29.></p> <p>[전문개정 2012. 7. 31.]</p> <p>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 3. 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p> <p>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p> <p>11. 삭제 (2020. 5. 26.)</p> <p>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p> <p>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p> <p>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p> <p>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p> <p>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p> <p>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p> <p>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p> <p>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p> <p>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p> <p>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p> <p>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p> <p>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p> <p>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7. 31.]</p> <p>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p>[본조신설 2014. 7. 16.]</p>	<p>제7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23조의4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2014년 7월 17일 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2014년 7월 17일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8.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제47조제3항에 따른 박제업자의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 11. 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 <개정 2011. 7. 28.></p> <p>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p>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밧, 창에,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p>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p>		<p>[전문개정 2014. 7. 17.]</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밧, 창에,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 2. 1.> 9. 삭제 <2012. 2. 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 2. 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렵한 사람</p> <p>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p> <p>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p> <p>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2. 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밧, 창에, 울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 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p> <p>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p> <p>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p> <p>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p> <p>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p> <p>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p> <p>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p> <p>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p> <p>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p> <p>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p> <p>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71조(물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물수한다. (개정 2013. 7. 16.)</p> <p>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p> <p>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전문개정 2011. 7. 28.]</p> <p>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p> <p>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2019. 11. 26.>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p>	<p>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31.]</p>	<p>제80조 삭제 <2009. 6. 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p> <p>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p> <p>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p> <p>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2. 삭제 <2014. 3. 24.></p> <p>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p> <p>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p> <p>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10. 삭제 (2012. 2. 1.)</p> <p>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p> <p>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p> <p>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p> <p>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p> <p>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18. 삭제 (2012. 2. 1.)</p> <p>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p> <p>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p> <p>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p> <p>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7. 23.></p> <p>⑤ 삭제 <2010. 7. 23.></p> <p>⑥ 삭제 <2010. 7. 23.></p> <p>⑦ 삭제 <2010. 7. 23.></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7호, 2004. 2. 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급으로 본다.</p> <p>제4조(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 급으로 본다.</p> <p>제5조(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696호, 2005. 2. 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한다.</p> <p>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호, 2005. 2. 7.></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1을 삭제한다.</p> <p>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p> <p>제6조(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p> <p>제7조(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p> <p>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제9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0조(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1조(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p>	<p>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9049호, 2005. 9. 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991호, 2007. 4.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p>	<p>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④ 내지 ② 생략</p> <p>부칙 <제183호, 2005. 9. 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9호,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p> <p>④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2조(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3조(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4조(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 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5조(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 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16조(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 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17조(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 로 등록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된 자로 본다.</p> <p>제18조(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p>	<p>장”으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0385호, 2007. 11. 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부터 ⑯ 까지 생략</p> <p>부칙 <제21078호, 2008. 10.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p>	<p>부칙 <제260호, 2007. 12.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 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리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2호, 2009. 6.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93호, 2011. 1. 21.></p> <p>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04호, 2011. 3.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57호, 2012. 5.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19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20조(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 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21조(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2조(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p> <p>제23조(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4조(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p>	<p>부칙 <제21481호, 2009. 5.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p> <p>부칙 <제22630호, 2011. 1. 20.></p> <p>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737호, 2011. 3.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2977호, 2011. 6. 24.> (기조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조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p>	<p>부칙 <제466호, 2012. 7. 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9호, 2012. 7.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p>부칙 <제491호, 2012.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99호, 2013.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제26조(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제27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2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p> <p>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p> <p>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p> <p>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p> <p>제17조를 삭제한다.</p> <p>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p>	<p>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4001호, 2012. 7.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p> <p>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p> <p>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516호, 2013. 9. 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5호, 2014. 7. 17.></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98호, 2015. 3.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의 지원</p> <p>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p> <p>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p> <p>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p>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p> <p>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p> <p>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p> <p>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p> <p>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의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p>	<p>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p> <p>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p> <p>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5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p>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p> <p>제9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p>	<p>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2호, 2015. 8.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물·식물보호법”으로 한다.</p> <p>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물·식물보호법</p> <p>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p> <p>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의 산지</p> <p>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물·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p> <p>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종·식물”을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물·식물”로 한다.</p> <p>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물·식물보호법</p> <p>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p>	<p>종의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480호, 2014. 7. 16.></p> <p>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159호, 2015. 3. 24.></p> <p>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416호, 2015. 7. 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수렵감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수렵 감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감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수렵 감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감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21호, 2017. 11.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737호, 2017. 12. 29.></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p>	<p>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569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류 및 차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578호, 2018. 1. 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1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나목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20. 5. 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총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 내지 ⑥ 생략</p> <p>제9조 생략</p>	<p>및 같은 표 제3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073호, 2019.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482호, 2020. 2. 2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제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p>	<p>부칙 <제30706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7호, 2005. 3. 3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76호,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⑩내지 ⑭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6호, 2005. 8.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p> <p>⑨부터 ⑬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0호, 2020. 9.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82호, 2020. 11. 24.〉</p> <p>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⑤내지 <87>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p> <p>㉓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p>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및 ⑥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43호, 2007. 4. 11.> (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내지 ⑳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65호, 2007. 4. 11.> (약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p> <p>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p> <p>제2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㉖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7호, 2007. 5. 1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p> <p>⑫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62호, 2007. 12.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㉕ 부터 <61> 까지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 생략</p> <p>부칙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p> <p>⑥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0388호, 2010. 7. 2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7호, 2011. 7.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본다.</p> <p>제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p> <p>제5조(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p> <p>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p> <p>제7조(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p> <p>제8조(야생동·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p> <p>제9조(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p> <p>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p> <p>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p> <p>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p> <p>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p> <p>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p> <p>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p> <p>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p> <p>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p> <p>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진단·제3항·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으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p> <p>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49 886 558 989"> <tr> <td data-bbox="149 886 201 933">149</td> <td data-bbox="201 886 407 93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td> <td data-bbox="407 886 558 933">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td> </tr> <tr> <td data-bbox="149 933 201 989">150</td> <td data-bbox="201 933 407 98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td> <td data-bbox="407 933 558 989">야생생물 보호 구역</td> </tr> </table> <p>⑯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p>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구역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p> <p>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p> <p>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p> <p>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⑲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⑳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1060호,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p> <p>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p> <p>제5조의2를 삭제한다.</p> <p>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p> <p>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p> <p>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p> <p>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p> <p>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p> <p>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p> <p>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p> <p>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및 ⑦ 생략</p> <p>부칙 <제11666호, 2013. 3.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도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제66조제1항 중 “국도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505>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p> <p>㉞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㉞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1912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12호, 2014. 3.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521호, 2014.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항·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67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388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96호, 2017. 12.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의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p> <p>부칙 (제15835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602호, 2019. 11. 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9조를 삭제한다.</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16609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으로 본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p>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p> <p>㉔부터 ㉞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207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1208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1209
[별표 1의4]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21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213

[별표 1] (개정 2018. 3. 27.)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 나) 작살, 밧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재수출허가

-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2)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 3)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나) 작살, 밧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재수출허가

-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된 생물

가.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생물이 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2)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4)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때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재수출승인

- 나)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확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전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비교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표본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본다.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된 동물로서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포유류의 가공품과 고래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별표 1의2] <개정 2016. 11. 1.>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1.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목(CANIVORA)			
고양이과(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I
2	사자	Panthera leo	II
3	시라소니	Lynx lynx	II
4	푸마	Puma concolor	II
5	자가	Panthera onca	I
6	표범	Panthera pardus	I
7	호랑이	Panthera tigris	I
8	설표	Uncia uncia	I
곰과(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I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I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II
12	불곰	Ursus arctos	II

2.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악어목(CROCODYLIA)			
알리게이타악어과(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II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II
크로커다일악어과(Crocodylidae)			
15	뉴기니아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II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I
17	삼악어	Crocodylus siamensis	I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II
인도악어과(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I
뱀목(SERPENTES)			
코브라과(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II

[별표 1의3] <개정 2016. 11. 1.>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1.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목(CA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작은발톱수달	Aonyx cinereus	II

나.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거북목(TESTUDINES)			
돼지코거북과(Carettochelyidae)			
2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II
대륙남생이과(Testudinidae)			
3	설카타거북	Geochelone sulcata	II
4	육발이거북	Testudo(Manouria) emys	II
늑대거북과(Chelydridae)			
5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II
남생이과(Geoemydidae)			
6	남생이	Chinemys reevesii	II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영장目(PRIMATES)			
긴꼬리원숭이과(Cercopithecidae)			
1	흑백콜로부스	Colobus guereza	II
2	필리핀원숭이(개잡이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II
3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II
4	히말라야원숭이	Macaca mulatta	II
5	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II
6	검둥이원숭이	Macaca nigra	II
7	보닛원숭이	Macaca radiata	II
8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I
9	토쿠원숭이	Macaca sinica	II
10	사바나원숭이	Cercopithecus aethiops	II
11	아누비스개코원숭이	Papio anubis	II
12	다이애나원숭이	Cercopithecus diana	I
13	맨드릴	Mandrillus sphinx	I
14	브라자원숭이	Cercopithecus neglectus	II
15	녹색원숭이	Chlorocebus sabaeus	II
16	망토개코원숭이	Papio hamadryas	II
17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II
거미원숭이과(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	II
올빼미원숭이과(Aotidae)			
19	올빼미원숭이	Aotus trivirgatus	II
로리사과(Lorisidae)			
20	슬로우로리스	Nycticebus coucang	I
성성아과(Hominidae)			
21	침팬지	Pan troglodytes	I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22	고릴라	Gorilla gorilla	I
23	오랑우탄	Pongo pygmaeus	I
긴팔원숭이과(Hylobatidae)			
24	사망원숭이	Symphalangus syndactylus	I
25	검은손긴팔원숭이	Hylobates concolor	I
26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I
여우원숭이과(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I
꼬리감는원숭이과(Cebidae)			
28	흰턱케프친	Cebus capucinus	II
29	코먼마모셋	Callithrix jacchus	II
30	마모셋원숭이	Callithrix penicillata	II
31	다람쥐원숭이	Saimiri oerstedii	II
32	갈색꼬리감기원숭이	Cebus apella	II
33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I
소목(ARTIODACTYLA)			
소과(Bovidae)			
34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II
35	마코	Capra falconeri	I
36	흰오릭스	Oryx dammah	I
사슴과(Cervidae)			
37	바라싱가	Cervus duvaucelii	I
낙타과(Camelidae)			
38	과나코	Lama guanicoe	II
페커리과(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Tayassu tajacu	II
말목(PERISSODACTYLA)			
말과(Equidae)			
40	몽고야생말	Equus przewalskii	I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식육목(CANIVORA)			
물개과(Otariidae)			
1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II
고래목(CETACEA)			
참돌고래과(Delphinidae)			
2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Tursiops truncatus	II
3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II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4	참매	Accipiter gentilis	II
5	말뚝가리	Buteo buteo	II
6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I
7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II
8	붉은허벅지말뚝가리	Parabuteo unicinctus	II
9	달마수리	Terathopus ecaudatus	II
10	독수리	Aegypius monachus	II
콘돌과(Cathartidae)			
11	큰콘돌	Vultur gryphus	I
파랑새목(CORACIIFORMES)			
코뿔새과(Bucerotidae)			
12	붉은코뿔새	Aceros nipalensis	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뱀목(SERPENTES)			
비단왕뱀과(Pythonidae)			
13	미안마왕뱀	Python molurus bivittatus	II
14	그물무늬왕뱀	Python reticulatus	II
왕뱀과(Boidae)			
15	덴메릴보아구렁이	Acrantophis dumerili	I
16	왕뱀	Boa constrictor	II
17	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II
18	노랑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II
도마뱀목(SAURIA)			
이구아나과(Iguanidae)			
19	그린이구아나	Iguana iguana	II
악어도마뱀과(Xenosauridae)			
20	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II
데구도마뱀과(Teiidae)			
21	데구도마뱀	Tupinambis teguixin	II
왕도마뱀과(Varanidae)			
22	물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II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CITES 등급
도롱뇽목(CAUDATA)			
엠비스토마과(Ambystomatidae)			
23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II
장수도롱뇽과(Cryptobranchidae)			
24	중국장수도롱뇽	Andrias davidianus	I

[별표 1의4] <신설 2020. 5. 26.>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나.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 × 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호	50	100	100
나. 삭제 <2015.3.2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3호	50	100	100
마.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바.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4호	50	100	100
사.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아.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2	100	100	100
자.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3	100	100	100
차.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4	30	50	100
카.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5	50	100	100
타.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5호의6	5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6호	50	100	100
하.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7호	50	100	100
거. 법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2호의2	100	150	200
너.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	50	100	100
더.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의2	50	100	100
러.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9호	50	100	100
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1호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5) 야생생물의 동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7) 가축의 방목		50	100	100
8)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9)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50	100	100
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2호	50	100	100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군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3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처.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	50	10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커.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2	50	100	100
터.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3호의3	50	100	100
퍼.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허. 법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5호	100	150	200
고. 법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6호	100	150	200
노.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4호	50	100	100
도.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춰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5호	50	100	100
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6호	50	100	100
모.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7호	50	100	100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19호	100	100	100
소.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0호	50	100	100
오.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1호	50	100	100
조.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2호	50	50	100
초. 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3호	100	100	100
코.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3조 제2항제7호	100	150	200
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24호	100	100	10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1219
[별표 2] 삭제 <2013.2.1.>	1225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225
[별표 3의2] 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	1225
[별표 4]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1227
[별표 5] 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1228
[별표 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228
[별표 6]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1231
[별표 7]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제26조 관련)	1248
[별표 8]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1248
[별표 8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1259
[별표 8의3]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1260
[별표 8의4]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1262
[별표 8의5]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	1264
[별표 8의6]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4 관련)	1264
[별표 9]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1265
[별표 10]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1266
[별표 11] 삭제 <2012.7.27.>	1266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267

[별표 1] <개정 2020. 5. 27.>

멸종위기 야생생물(제2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 다. 육상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 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포유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종 명
1	늑대 <i>Canis lupus coreanus</i>
2	대륙사슴 <i>Cervus nippon hortulorum</i>
3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4	붉은박쥐 <i>Myotis rufoniger</i>
5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6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7	수달 <i>Lutra lutra</i>
8	스라소니 <i>Lynx lynx</i>
9	여우 <i>Vulpes vulpes peculiosa</i>
10	작은관코박쥐 <i>Murina ussuriensis</i>
11	표범 <i>Panthera pardus orientalis</i>
12	호랑이 <i>Panthera tigris altaic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종 명
1	담비 <i>Martes flavigula</i>
2	무산쇠족제비 <i>Mustela nivalis</i>
3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4	물범 <i>Phoca largha</i>
5	삼 <i>Prionailurus bengalensis</i>
6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7	토끼박쥐 <i>Plecotus auritus</i>
8	하늘다람쥐 <i>Pteromys volans aluco</i>

3. 조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종 명
1	검독수리 <i>Aquila chrysaetos</i>
2	넓적부리도요 <i>Eurynorhynchus pygmeus</i>
3	노랑부리백로 <i>Egretta eulophotes</i>
4	두루미 <i>Grus japonensis</i>
5	매 <i>Falco peregrinus</i>
6	먹황새 <i>Ciconia nigra</i>
7	저어새 <i>Platalea minor</i>
8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9	청다리도요사촌 <i>Tringa guttifer</i>
10	크낙새 <i>Dryocopus javensis</i>
11	호사비오리 <i>Mergus squamatus</i>
12	흑고니 <i>Cygnus olor</i>
13	황새 <i>Ciconia boyciana</i>
14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 명
1	개리 <i>Anser cygnoides</i>
2	검은머리갈매기 <i>Larus saundersi</i>
3	검은머리물떼새 <i>Haematopus ostralegus</i>
4	검은머리족새 <i>Emberiza aureola</i>
5	검은목두루미 <i>Grus grus</i>
6	고니 <i>Cygnus columbianus</i>
7	고대갈매기 <i>Larus relictus</i>
8	긴꼬리딱새 <i>Terpsiphone atrocaudata</i>
9	긴점박이올빼미 <i>Strix uralensis</i>
10	까막딱다구리 <i>Dryocopus martius</i>
11	노랑부리저어새 <i>Platalea leucorodia</i>
12	느시 <i>Otis tarda</i>
13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14	따오기 <i>Nipponia nippon</i>
15	뜸부기 <i>Gallinago cinerea</i>
16	무당새 <i>Emberiza sulphurata</i>
17	물수리 <i>Pandion haliaetus</i>
18	벌매 <i>Pernis ptilorhynchus</i>
19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20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21	붉은해오라기 <i>Gorsachius goesagi</i>
22	뿔쇠오리 <i>Synthliboramphus wumizusume</i>
23	뿔종다리 <i>Galerida cristata</i>
24	새매 <i>Accipiter nisus</i>
25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26	섬개개비 <i>Locustella pleskei</i>
27	솔개 <i>Milvus migrans</i>
28	쇠검은머리족새 <i>Emberiza yessoensis</i>
29	수리부엉이 <i>Bubo bubo</i>
30	알락개구리매 <i>Circus melanoleucos</i>
31	알락꼬리마도요 <i>Numenius madagascariensis</i>

번호	종 명
32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33	올빼미 <i>Strix aluco</i>
34	재두루미 <i>Grus vipio</i>
35	젓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36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37	참매 <i>Accipiter gentilis</i>
38	큰고니 <i>Cygnus cygnus</i>
39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40	큰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eurhythmus</i>
41	큰말똥가리 <i>Buteo hemilasius</i>
42	팔색조 <i>Pitta nympha</i>
43	항라머리검독수리 <i>Aquila clanga</i>
44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45	흑두루미 <i>Grus monacha</i>
46	흑비둘기 <i>Columba janthina</i>
47	흰목물떼새 <i>Charadrius placidus</i>
48	흰이마기러기 <i>Anser erythropus</i>
49	흰족자수리 <i>Aquila heliaca</i>

4. 양서류·파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번호	종 명
1	비바리뱀 <i>Sibynophis chinensis</i>
2	수원청개구리 <i>Hyla suweonensis</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명
1	고리도롱뇽 <i>Hynobius yangi</i>
2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3	금개구리 <i>Pelophylax chosonicus</i>
4	남생이 <i>Mauremys reevesii</i>
5	맹꽁이 <i>Kaloula borealis</i>
6	표범장지뱀 <i>Eremias argus</i>

5. 어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번호	종명
1	감돌고기 <i>Pseudopungtungia nigra</i>
2	꼬치동자개 <i>Pseudobagrus brevicorpus</i>
3	남방동사리 <i>Odontobutis obscura</i>
4	모래주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5	미호종개 <i>Cobitis choui</i>
6	얼룩새코미꾸리 <i>Koreocobitis naktongensis</i>
7	여울마자 <i>Microphysogobio rapidus</i>
8	암실납자루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9	좁수수치 <i>Kichulchoia brevifasciata</i>
10	통사리 <i>Liobagrus obesus</i>
11	흰수마자 <i>Gobiobotia nakdongensis</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명
1	가는돌고기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2	가시고기 <i>Pungitius sinensis</i>
3	찍저기 <i>Coreoperca kawamebari</i>

번호	종명
4	꾸구리 <i>Gobiobotia macrocephala</i>
5	다목장어 <i>Lethenteron reissneri</i>
6	돌상어 <i>Gobiobotia brevibarba</i>
7	묵납자루 <i>Acheilognathus signifer</i>
8	백조어 <i>Culter brevicauda</i>
9	버들가지 <i>Rhynchocypris semotilus</i>
10	부안종개 <i>Iksookimia pumila</i>
11	연준모치 <i>Phoxinus phoxinus</i>
12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i>
13	칠성장어 <i>Lethenteron japonicus</i>
14	큰줄납자루 <i>Acheilognathus majusculus</i>
15	한강납줄개 <i>Rhodeus pseudosericeus</i>
16	한독종개 <i>Cottus hangiongensis</i>

6. 곤충류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번호	종명
1	붉은점모시나비 <i>Parnassius bremeri</i>
2	비단벌레 <i>Chrysochroa coreana</i>
3	산굴뚝나비 <i>Hipparchia autonoe</i>
4	상제나비 <i>Aporia crataegi</i>
5	수염풍뎠이 <i>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i>
6	장수하늘소 <i>Callipogon relictus</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 명
1	깊은산부전나비 <i>Protantigius superans</i>
2	꼬마잠자리 <i>Nannophya pygmaea</i>
3	노란잔잔잠자리 <i>Macromia daimoji</i>
4	뫼무늬길앞잡이 <i>Cicindela anchoralis</i>
5	대모잠자리 <i>Libellula angelina</i>
6	두점박이사슴벌레 <i>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i>
7	똥보주름메뚜기 <i>Haplotropis brunneriana</i>
8	멋조롱박딱정벌레 <i>Damaster mirabilissimus mirabilissimus</i>
9	물방개 <i>Cybister chinensis</i>
10	물장군 <i>Lethocerus deyrolli</i>
11	소똥구리 <i>Gymnopleurus mopsus</i>
12	쌍꼬리부전나비 <i>Cigaritis takanonis</i>
13	애기뿔소똥구리 <i>Copris tripartitus</i>
14	여름어리표범나비 <i>Mellicta ambigua</i>
15	왕은점표범나비 <i>Argynnis nerippe</i>
16	은줄팔랑나비 <i>Leptalina unicolor</i>
17	참호박뒤영벌 <i>Bombus koreanus</i>
18	창언조롱박딱정벌레 <i>Damaster changeonleei</i>
19	큰자색호랑꽃무지 <i>Osmoderma opicum</i>
20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i>Sinia divina</i>

7. 무척추동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번호	종 명
1	귀이빨대칭이 <i>Cristaria plicata</i>
2	나팔고둥 <i>Charonia lampas sauliae</i>
3	남방방게 <i>Pseudohelice subquadrata</i>
4	두드럭조개 <i>Lamprotula coreana</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 명
1	갯게 <i>Chasmagnathus convexus</i>
2	거제외줄달팽이 <i>Satsuma myomphala</i>
3	검붉은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suensoni</i>
4	금빛나팔돌산호 <i>Tubastraea coccinea</i>
5	기수갈고동 <i>Clithon retropictus</i>
6	깃산호 <i>Plumarella spinosa</i>
7	대추귀고동 <i>Ellobium chinense</i>
8	둔한진총산호 <i>Euplexaura crassa</i>
9	망상맵시산호 <i>Echinogorgia reticulata</i>
10	물거미 <i>Argyroneta aquatica</i>
11	밤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castanea</i>
12	별혹산호 <i>Verrucella stellata</i>
13	붉은발말뚝게 <i>Sesarmops intermedius</i>
14	선침거미불가사리 <i>Ophiacantha linea</i>
15	연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mollis</i>
16	염주알다슬기 <i>Koreanomelania nodifila</i>
17	울릉도달팽이 <i>Karaftohelix adamsi</i>
18	유척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cribrosa</i>
19	의염통성게 <i>Nacospatangus alta</i>
20	자색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putteri</i>
21	잔가지나무돌산호 <i>Dendrophyllia ijimai</i>
22	착생깃산호 <i>Plumarella adhaerens</i>
23	참달팽이 <i>Koreanohadra koreana</i>
24	촉맵시산호 <i>Echinogorgia complexa</i>
25	칼세오리옆새우 <i>Gammarus zeongogensis</i>
26	해송 <i>Myriopathes japonica</i>
27	흰발농게 <i>Uca lactea</i>
28	흰수지맨드라미 <i>Dendronephthya alba</i>

8. 육상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번호	종 명
1	광릉요강꽃 <i>Cypripedium japonicum</i>
2	금자란 <i>Gastrochilus fuscopunctatus</i>
3	나도풍란 <i>Sedirea japonica</i>
4	만년콩 <i>Euchresta japonica</i>
5	비자란 <i>Thrixspermum japonicum</i>
6	암매 <i>Diapensia lapponica</i> var. <i>obovata</i>
7	죽백란 <i>Cymbidium lancifolium</i>
8	털복주머니란 <i>Cypripedium guttatum</i>
9	풍란 <i>Neofinetia falcata</i>
10	한라솜다리 <i>Leontopodium hallaisanense</i>
11	한란 <i>Cymbidium kanran</i>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번호	종 명
1	가는동자꽃 <i>Lychnis kiusiana</i>
2	가시연 <i>Euryale ferox</i>
3	가시오갈피나무 <i>Eleutherococcus senticosus</i>
4	각시수련 <i>Nymphaea tetragona</i> var. <i>minima</i>
5	개가시나무 <i>Quercus gilva</i>
6	개병풍 <i>Astilboides tabularis</i>
7	갯봄맞이꽃 <i>Glaux maritima</i> var. <i>obtusifolia</i>
8	검은별고사리 <i>Cyclosorus interruptus</i>
9	구름병아리난초 <i>Gymnadenia cucullata</i>
10	기생꽃 <i>Trientalis europaea</i> ssp. <i>arctica</i>
11	끈끈이귀개 <i>Drosera peltata</i> var. <i>nipponica</i>
12	나도숨마 <i>Kirengeshoma koreana</i>
13	날개하늘나리 <i>Lilium dauricum</i>
14	넓은잎제비꽃 <i>Viola mirabilis</i>

번호	종 명
15	노랑만병초 <i>Rhododendron aureum</i>
16	노랑붓꽃 <i>Iris koreana</i>
17	단양썩부쟁이 <i>Aster altaicus</i> var. <i>uchiyamae</i>
18	참달꽃 <i>Halenia corniculata</i>
19	대성산물 <i>Anagallidium dichotomum</i>
20	대청부채 <i>Iris dichotoma</i>
21	대흥란 <i>Cymbidium macrorhizon</i>
22	독미나리 <i>Cicuta virosa</i>
23	두잎악난초 <i>Cremastra unguiculata</i>
24	매화마름 <i>Ranunculus trichophyllus</i> var. <i>kadzusensis</i>
25	무주나무 <i>Lasianthus japonicus</i>
26	물고사리 <i>Ceratopteris thalictroides</i>
27	방울난초 <i>Habenaria flagellifera</i>
28	백부자 <i>Aconitum coreanum</i>
29	백양더부살이 <i>Orobanche filicicola</i>
30	백운란 <i>Vexillabium yakusimensis</i> var. <i>nakaianum</i>
31	복주머니란 <i>Cypripedium macranthos</i>
32	분홍창구채 <i>Silene capitata</i>
33	산분꽃나무 <i>Viburnum burejaeticum</i>
34	산작약 <i>Paeonia obovata</i>
35	삼백초 <i>Saururus chinensis</i>
36	새깃아재비 <i>Woodwardia japonica</i>
37	서울개발나무 <i>Pterygopleurum neurophyllum</i>
38	석곡 <i>Dendrobium moniliforme</i>
39	선제비꽃 <i>Viola raddeana</i>
40	섬개아광나무 <i>Cotoneaster wilsonii</i>
41	섬개현삼 <i>Scrophularia takesimensis</i>
42	섬시호 <i>Bupleurum latissimum</i>
43	세볼투구꽃 <i>Aconitum austrokoreense</i>
44	손바닥난초 <i>Gymnadenia conopsea</i>
45	솔붓꽃 <i>Iris ruthenica</i> var. <i>nana</i>
46	솔잎난 <i>Psilotum nudum</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번호	종 명
47	순채 <i>Brasenia schreberi</i>
48	신안새우난초 <i>Calanthe aristulifera</i>
49	애기송이풀 <i>Pedicularis ishidoyana</i>
50	연잎쟁의다리 <i>Thalictrum coreanum</i>
51	왕제비꽃 <i>Viola websteri</i>
52	으름난초 <i>Cyrtosia septentrionalis</i>
53	자주멍귀개 <i>Utricularia yakusimensis</i>
54	전주물꼬리풀 <i>Dysophylla yatabeana</i>
55	정향풀 <i>Amsonia elliptica</i>
56	제비동자꽃 <i>Lychnis wilfordii</i>
57	제비붓꽃 <i>Iris laevigata</i>
58	제주고사리삼 <i>Mankyua chejuense</i>
59	조름나물 <i>Menyanthes trifoliata</i>
60	죽절초 <i>Sarcandra glabra</i>
61	지네발란 <i>Cleisostoma scolopendrifolium</i>
62	진노랑상사화 <i>Lycoris chinensis</i> var. <i>sinuolata</i>
63	차겉이란 <i>Oberonia japonica</i>
64	참물부추 <i>Isoetes coreana</i>
65	초령목 <i>Michelia compressa</i>
66	칠보치마 <i>Metanarthecium luteo-viride</i>
67	콩짜개란 <i>Bulbophyllum drymoglossum</i>
68	큰바늘꽃 <i>Epilobium hirsutum</i>
69	탐라란 <i>Gastrochilus japonicus</i>
70	파초일엽 <i>Asplenium antiquum</i>
71	피부리풀 <i>Stellera chamaejasme</i>
72	한라송이풀 <i>Pedicularis hallaisanensis</i>
73	한라옥잠난초 <i>Liparis auriculata</i>
74	해오라비난초 <i>Habenaria radiata</i>
75	흑난초 <i>Bulbophyllum inconspicuum</i>
76	홍월굴 <i>Arctous alpinus</i> var. <i>japonicus</i>
77	황근 <i>Hibiscus hamabo</i>

9. 해조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번호	종 명
1	그물공말 <i>Dictyosphaeria cavernosa</i>
2	삼나무말 <i>Coccophora langsdorfii</i>

10. 고등균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종 명
화경버섯 <i>Lampteromyces japonicus</i>

[별표 2] 삭제 <2013. 2. 1.>

[별표 3] <개정 2015. 8. 4.>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평,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불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3의2] <개정 2019. 12. 20.>

야생동물 질병(제4조의2 관련)

원인체	질병명
세균 (39종)	가성결핵(pseudotuberculosis), 결핵병(tuberculosis), 급성호흡기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기증저(blackleg), 단독(erysipelas), 대장균증(colibacillosis), 디프테리아(diphtheria), 라임병(lyme disease),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매독(syphilis), 백일해(pertussis), 브루셀라병(brucellosis), 비브리오패혈증(<i>Vibrio vulnificus</i> sepsis), 세균성이질(bacillary dysentery), 세균성폐렴(bacterial pneumonia), 수막구균성뇌수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 야토병(tularemia), 예시니아증(yersinosis),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유비저(melioidosis),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hemorrhagic <i>E. coli</i> infection), 장티푸스(typhoid fever), 캄필로박터증(campylobacteriosis), 콜레라(cholera), 탄저병(anthrax), 파라티푸스(paratyphoid fever), 파상풍(tetanus), 파스튜렐라병(Pasteurellosis), 페스트(pest), 헬리코박터감염증(<i>Helicobacter pylori</i> infection), 가금티푸스(fowl typhoid),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마이코플라스마증(mycoplasmosis), 보툴리누스중독증(botulism),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앵무병(psittacosis), 조류결핵병(avian tuberculosis), 추백리(雞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바이러스 (58종)	가성광견병(pseudorabies), 개전염성간염(infectious canine hepatitis), 개홍역(canine Distemper), 고양이면역결핍증(feline immunodeficiency syndrome),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feline panleukopenia), 고양이백혈병(feline leukemia), 광견병(rabie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돼지열병(hog cholera), 돼지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뎅기열(Dengue fever),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virus infection),

원인체	질병명
	<p>림프구성핵막뇌막염(lymphocytic choriomeningitis), 마르부르그병(Marburg fever), 바이러스성간염(viral hepatitis), 바이러스성출혈열(viral hemorrhagic fever),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블루팅병(blue tongue), B형간염(type B hepatitis), 성홍열(scarlet fever), 소바이러스성설사증(bovine virus diarrhea), 소전염성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itis), 시미안면역결핍증(simian immunodeficiency syndrome), 시미안포아미바이러스감염증(simian foamy virus infection),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알류산병(Aleutian disease), 양아구창(orf), A형간염(type A hepatitis), 에볼라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enterovirus infection), 우역(rinderpest), 유행성이하선염(mumps), 유행성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 인플루엔자(influenza),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파보바이러스성장염(parvoviral enteritis), 폴리오(polio), 풍진(rubell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virus infection),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황열(yellow fever), 홍역(measles),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뇌척수염(encephalomyelitis),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 레오바이러스감염증(reovirus infection), 봉입체성간염(inclusion body hepatitis), 산란저하증후군(egg drop syndrome), 써코바이러스감염증(PCV-2 infection), 오리바이러스성장염(duck viral enteritis),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조두(fowl pox),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조류콜레라(fowl cholera), 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포진)(<i>Herpes simplex virus infections</i>)</p>

원인체	질병명
<p>기생충 (18종)</p>	<p>간흡충증(clonorchiasis), 개선충증(scabies), 다방조충증(multilocular echinococcosis), 바베시아증(babesiosis), 선모충증(Trichinellosis), 심장사상충증(heartworm disease), 아메리카너구리회충증(baylisascariasis), 왜소조충증(hymenolepiasis), 요충증(enterobiasis), 장흡충증(intestinal trematodiasis), 천공개선충증(<i>Sarcoptes scabiei</i> var. <i>suvis</i> infestation), 촌충증(taeniasis), 독소플라즈마증(toxoplasmosis), 편충증(trichuriasis), 폐흡충증(paragonimiasis), 포낭충증(hydatidosis), 크립토스포리듐증(cryptosporidiosis), 회충증(ascariasis)</p>
<p>곰팡이 (6종)</p>	<p>피부사상균증(dermatophytosis), 곰팡이증(fungal infection), 크립토크커스증(cryptococcosis), 히스토플라스마증(histoplasmosis), 클라미디아증(chlamydiosis), 황아리곰팡이병(chytridiomycosis)</p>
<p>원충 및 리켓치아 (12종)</p>	<p>리케치아병(rickettsioses), 말라리아(malaria), 조류말라리아(avian malaria), 발란티듐증(balantidiasis), 발진열(endemic typhus), 발진티푸스(typhus fever), 아메바성 이질(amoebic dysentery), 지아디아증(giardiasis), 탈일레리아증(theileriosis), Q열(Q fever), 류코사이토준병(leucocytozoonosis), 블라스토씨스토시스증(blastocystosis)</p>
<p>프리온 단백질 (3종)</p>	<p>사슴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양해면상뇌증(scrapie)</p>
<p>중독 등 (3종)</p>	<p>조류중독증(algal poisoning), 선천성기형(congenital anomaly), 농약중독증(pesticide poisoning)</p>
<p>기타</p>	<p>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p>

[별표 4] (개정 2012.7.27)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가. 야생동물을 가공·유통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 분	등급	종 명
포유류	I 급	가. 반달가슴곰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나.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 parvipes</i> 다. 산양 <i>Naemorhedus caudatus</i> 라. 수달 <i>Lutra lutra</i>
	II 급	가. 담비 <i>Martes flavigula</i> 나.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다. 삿 <i>Prionailurus bengalensis</i>
조류	II 급	가. 뜰부기 <i>Gallinula cinerea</i> 나.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다. 흑기러기 <i>Branta bernicla</i>
파충류	II 급	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3.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의 야생동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가.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나.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다. 노루 <i>Capreolus pygargus</i> 라. 멧돼지 <i>Sus scrofa</i> 마. 멧토끼 <i>Lepus coreanus</i> 바. 오소리 <i>Meles leucurus</i>

구 분	종 명
조류	가. 가창오리 <i>Anas formosa</i> 나. 고방오리 <i>Anas acuta</i> 다.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i> 라. 쇠오리 <i>Anas crecca</i> 마.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바.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양서류	가.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sis</i> 나.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다.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5] <개정 2012.7.27>

곰의 처리기준(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종류	처리기준(나이)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
큰곰	25년 이상	10년 이상
반달가슴곰	24년 이상	10년 이상
늑보곰	40년 이상	10년 이상
말레이곰	24년 이상	10년 이상
아메리카흑곰	26년 이상	10년 이상

[별표 5의2] <개정 2018. 12. 10.>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외,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잡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4)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직인 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별표

5)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원숭이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사망원숭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 넓이 31.5㎡, 높이 3m	42%	
	투쿠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본원숭이, 필리핀원숭이(개잡이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손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흑백클로부스	- 넓이 11.6㎡, 높이 2.5m	42%	
	검둥이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올빼미원숭이, 데브라자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바나원숭이, 녹색원숭이, 보넷원숭이, 모나원숭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코주부원숭이	- 넓이 5.3㎡, 높이 3m	35%	
	목화머리타마린, 코먼마모셋, 슬로우로리스, 흰털케친, 마모셋원숭이	- 넓이 2.8㎡, 높이 2.5m	35%	
	다람쥐원숭이	- 넓이 1.6㎡, 높이 2.5m	35%	
식육목	곰과	말레이곰	- 넓이 10.5㎡, 높이 2.5m - 방사장에 용덩이 설치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 높이 2.5m - 방사장에 용덩이 설치 권장	35%
		불곰	- 넓이 32㎡ - 방사장에 용덩이 설치 권장	35%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고양이과	치타		- 넓이 24.5㎡, 높이 2.5m	35%
	사자, 호랑이		- 넓이 14㎡, 높이 2.5m	35%
	스라소니		- 넓이 8㎡, 높이 2m	35%
	퓨마		- 넓이 8.4㎡, 높이 2m	35%
	재규어, 표범, 설표		- 넓이 14㎡, 높이 2.5m	35%
족제비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 넓이 5.3㎡, 높이 2m - 수영장 : 넓이 2.1㎡, 깊이 0.6m	35%
물개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 넓이 3.5㎡ - 수영장 : 표면적 14㎡, 깊이 1.5m 이상	35%
소목	바라싱가, 과나코, 흰오릭스	불이 있는 경우	- 넓이 35㎡, 높이 4m	35%
		불이 없는 경우	- 넓이 35㎡, 높이 3m	35%
	마코, 목도리 페커리	불이 있는 경우	- 넓이 14㎡, 높이 3m	35%
		불이 없는 경우	- 넓이 14㎡, 높이 2m	35%
말목	몽고야생말		- 넓이 35㎡, 높이 2m	35%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이상	35%

나. 조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매목	참매, 말뚝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뚝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코둘	- 가장 큰 개체 날개폭의 3배의 길이 및 너비, 날개폭 2배의 높이	길이 50%, 너비 25%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 높이 2m	35%

다. 파충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성체 기준)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안경카이만, 미시시피악어, 뉴기니아악어, 소만악어, 삼악어, 나일악어, 세렝겔악어	- 서식지 내에서 이동과 선회가 가능해야 한다. - 물의 깊이는 몸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25%
거북목	돼지코거북, 술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늑대거북, 남생이	- 가장 큰 거북이의 등갑질 길이의 3배의 길이, 등갑질 너비의 2배의 너비	25%
뱀목	인도코브라	- 둘레 : 가장 긴 개체의 길이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아나콘다, 노랑아나콘다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 높이 : 2m 이상	35%
	덴메릴보아구렁이	- 둘레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 - 최소 너비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 길이 10% 증가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 폭·높이 1.5m 이상, 넓이 3㎡ 이상	25%
	테구도마뱀	- 폭 1m 이상, 높이 1.5m 이상, 넓이 2㎡ 이상	25%

비고

1. 사육면적은 실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의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제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2.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 나.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 다.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 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 마. 법 제71조에 따라 물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임시 사육시설

[별표 6] <개정 2020. 11. 27.>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제24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
2.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익수목(CHIROPTERA)			
관박쥐과(Rhinolophidae)			
1	관박쥐	Rhinolophus ferrumequinum	
애기박쥐과(Vespertilionidea)			
2	고바야시박쥐	Eptesicus kobayashii	
3	생박쥐	Eptesicus nilsoni	
4	문둥이박쥐	Eptesicus serotinus	
5	큰집박쥐	Hypsugo savii	
6	긴가락박쥐	Miniopterus schreibersi	
7	관코박쥐	Murina leucogaster	
8	긴꼬리수염박쥐	Myotis frater	
9	최큰수염박쥐	Myotis ikonnikovii	
10	큰발윗수염박쥐	Myotis macrodactylus	
11	큰수염박쥐	Myotis mystacinus	
12	흰배윗수염박쥐	Myotis bombinu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3	우수리박쥐	Myotis petax	
14	멧박쥐	Nyctalus aviator	
15	작은멧박쥐	Nyctalus noctula	
16	집박쥐	Pipistrellus abramus	
17	북방애기박쥐	Vespertilio murinus	
18	애기박쥐	Vespertilio sinensis	
큰귀박쥐과(Molossidae)			
19	큰귀박쥐	Tadarida teniotis	
고슴도치목(ERINACEOMORPHA)			
고슴도치과(Erinaceidae)			
20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참새목(SORICOMORPHA)			
참새과(Soricidae)			
21	제주땃쥐	Crocidura dsinezumi	
22	땃쥐	Crocidura lasiura	
23	작은땃쥐	Crocidura shantungensis	
24	갯참새	Neomys fodiens	
25	참새	Sorex araneus	
26	뒤쥐	Sorex caecutien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7	쇠뒤쥐	Sorex gracillimus	
28	꼬마뒤쥐	Sorex minutissimus	
29	큰참새	Sorex mirabilis	
30	긴발톱참새	Sorex unguiculatus	
두더지과(Talpidae)			
31	두더지	Mogera wogura	
토끼목(LAGOMORPHA)			
토끼과(Leporidae)			
32	멧토끼	Lepus coreanus	
33	만주토끼	Lepus manschuricus	
우는토끼과(Ochotonidae)			
34	우는토끼	Ochotona hyperborea	
설치목(RODENTIA)			
청설모과(Sciuridae)			
35	청설모	Sciurus vulgaris	
36	다람쥐	Tamias sibiricus	
쥐과(Muridae)			
37	등줄쥐	Apodemus agrarius	
38	흰날적다리붉은쥐	Apodemus peninsul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9	비단털등줄쥐	<i>Cricetulus barabensis</i>	
40	쇠갈발쥐	<i>Lasiopodomys mandarinus</i>	
41	멧발쥐	<i>Micromys minutus</i>	
42	갈발쥐	<i>Microtus fortis</i>	
43	대륙발쥐	<i>Myodes rufocanus</i>	
44	숲들쥐	<i>Myodes rutilus</i>	
45	비단털쥐	<i>Tscherskia triton</i>	
뛰는쥐과(Dipodidae)			
46	긴꼬리꼬마쥐	<i>Sicista caudata</i>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47	승냥이	<i>Cuon alpinus</i>	
48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곰과(Ursidae)			
49	큰(불)곰	<i>Ursus arctos</i>	
족제비과(Mustelidae)			
50	산달	<i>Martes melampus</i>	
51	찰(검은돈)	<i>Martes zibellina</i>	
52	오소리	<i>Meles leucur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53	족제비	<i>Mustela sibirica</i>	
우제목(ARTIODACTYLA)			
멧돼지과(Suidae)			
54	멧돼지	<i>Sus scrofa</i>	
사슴과(Cervidae)			
55	노루	<i>Capreolus pygargus</i>	
56	붉은사슴	<i>Cervus elaphus</i>	
57	고라니	<i>Hypropotes inermis</i>	

3.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아비목(GAVIIFORMES)			
아비과(Gaviidae)			
1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2	큰회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i>	
3	회색머리아비	<i>Gavia pacifica</i>	
4	아비	<i>Gavia stellata</i>	
논병아리목(PODICIPEDIFORMES)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5	귀불논병아리	<i>Podiceps aurit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	뿔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i>	
7	큰논병아리	<i>Podiceps grisegena</i>	
8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i>	
9	논병아리	<i>Tachybaptus ruficollis</i>	
습새목(PROCELLARIIFORMES)			
습새과(Procellariidae)			
10	습새	<i>Calonectris leucomelas</i>	
11	흰배습새	<i>Pterodroma hypoleuca</i>	
12	붉은발습새	<i>Puffinus carneipes</i>	
13	쇠부리습새	<i>Puffinus tenuirostris</i>	
바다제비과(Hydrobatidae)			
14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사다새목(PELECANIFORMES)			
얼가니과(Sulidae)			
15	푸른얼굴얼가니새	<i>Sula dactylatra</i>	
16	갈색얼가니새	<i>Sula leucogaster</i>	
군함조과(Fregatidae)			
17	군함조	<i>Fregata ariel</i>	
가마우지과(Phalacrocorac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8	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pillatus</i>	
19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20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i>	
21	붉은뺨가마우지	<i>Phalacrocorax urile</i>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22	중대백로	<i>Ardea alba</i>	
23	왜가리	<i>Ardea cinerea</i>	
24	붉은왜가리	<i>Ardea purpurea</i>	
25	흰날개해오라기	<i>Ardeola bacchus</i>	
26	알락해오라기	<i>Botaurus stellaris</i>	
27	황로	<i>Bubulcus ibis</i>	
28	검은맹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a</i>	
29	검은해오라기	<i>Dupetor flavicollis</i>	
30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31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32	흑로	<i>Egretta sacra</i>	
33	열대붉은해오라기	<i>Ixobrychus cinnamomeus</i>	
34	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sin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5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36	검은머리흰따오기	Threskiornis melanocephalus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37	원앙	Aix galericulata	
38	고방오리	Anas acuta	
39	아메리카홍머리오리	Anas americana	
40	미국쇠오리	Anas carolinensis	
41	넓적부리	Anas clypeata	
42	쇠오리	Anas crecca	
43	청머리오리	Anas falcata	
44	홍머리오리	Anas penelope	
45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46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47	발구지	Anas querquedula	
48	미국오리	Anas rubripes	
49	알락오리	Anas strepera	
50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51	회색기러기	Anser anser	
52	흰기러기	Anser caerulescens	
53	흰머리기러기	Anser canagicus	
54	미국흰죽지	Aythya americana	
55	붉은가슴흰죽지	Aythya baeri	
56	흰죽지	Aythya ferina	
57	댕기흰죽지	Aythya fuligula	
58	검은머리흰죽지	Aythya marila	
59	큰흰죽지	Aythya valisineria	
60	캐나다기러기	Branta canadensis	
61	흰뺨오리	Bucephala clangula	
62	북방흰뺨오리	Bucephala islandica	
63	바다평	Clangula hyemalis	
64	흰줄박이오리	Histrionicus histrionicus	
65	검둥오리	Melanitta americana	
66	검둥오리사촌	Melanitta deglandi	
67	흰비오리	Mergellus albellus	
68	비오리	Mergus merganser	
69	바다비오리	Mergus serrator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번호	국명	학명	비고
70	붉은부리흰죽지	<i>Netta rufina</i>	
71	원앙사촌	<i>Tadorna cristata</i>	
72	황오리	<i>Tadorna ferruginea</i>	
73	흑부리오리	<i>Tadorna tadorna</i>	
74	머스코비오리	<i>Cairina moschata</i>	
75	붉은부리오리	<i>Dendrocygna autumnalis</i>	
76	황갈색오리	<i>Dendrocygna bicolor</i>	
수리목(ACCIPITRIFORMES)			
수리과(Accipitridae)			
77	초원수리	<i>Aquila nipalensis</i>	
78	왕새매	<i>Butastur indicus</i>	
79	말뚝가리	<i>Buteo buteo</i>	
80	털발말뚝가리	<i>Buteo lagopus</i>	
81	개구리매	<i>Circus spilonotus</i>	
82	수염수리	<i>Gypaetus barbatus</i>	
83	관수리	<i>Spilornis cheela</i>	
84	뿔매	<i>Spizaetus nipalensis</i>	
매과(Falconidae)			
85	비둘기조롱이	<i>Falco amur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86	헨다손매	<i>Falco cherrug</i>	
87	쇠황조롱이	<i>Falco columbarius</i>	
88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닭목(GALLIFORMES)			
꿩과(Phasianidae)			
89	들꿩	<i>Tetrastes bonasia</i>	
90	메추라기	<i>Coturnix japonica</i>	
91	멧닭	<i>Lyrurus tetrix</i>	
92	꿩	<i>Phasianus colchicus</i>	
두루미목(GRUIFORMES)			
두루미과(Gruidae)			
93	쇠재두루미	<i>Anthropoides virgo</i>	
94	캐나다두루미	<i>Grus canadensis</i>	
95	시베리아흰두루미	<i>Grus leucogeranus</i>	
뜸부기과(Rallidae)			
96	흰배뜸부기	<i>Amuornis phoenicurus</i>	
97	알락뜸부기	<i>Coturnicops exquisitus</i>	
98	물닭	<i>Fulica atra</i>	
99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00	쇠뚝부기사촌	Porzana fusca	
101	한국뚝부기	Porzana paykullii	
102	쇠뚝부기	Porzana pusilla	
103	흰눈썹뚝부기	Rallus aquaticus	
세가락메추라기목(TURNICIFORMES)			
세가락메추라기과(Turnicidae)			
104	세가락메추라기	Turnix tanki	
도요목(CHARADRIIFORMES)			
물평과(Jacaniidae)			
105	물평	Hydrophasianus chirurgus	
물떼새과(Charadriidae)			
106	흰물떼새	Charadrius alexandrinus	
107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108	큰왕눈물떼새	Charadrius leschenaultii	
109	왕눈물떼새	Charadrius mongolus	
110	큰물떼새	Charadrius veredus	
111	검은가슴물떼새	Pluvialis fulva	
112	개평	Pluvialis squatarola	
113	민당기물떼새	Vanellus cinereu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14	당기물떼새	Vanellus vanellus	
도요과(Scolopacidae)			
115	갭작도요	Actitis hypoleucos	
116	꼬까도요	Arenaria interpres	
117	메추라기도요	Calidris acuminata	
118	세가락도요	Calidris alba	
119	민물도요	Calidris alpina	
120	붉은가슴도요	Calidris canutus	
121	붉은갯도요	Calidris ferruginea	
122	아메리카메추라기도요	Calidris melanotos	
123	작은도요	Calidris minuta	
124	좁도요	Calidris ruficollis	
125	총달도요	Calidris subminuta	
126	흰꼬리좁도요	Calidris temminckii	
127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128	깍도요	Gallinago gallinago	
129	큰깍도요	Gallinago hardwickii	
130	깍도요사촌	Gallinago megala	
131	청도요	Gallinago solitar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32	바늘꼬리도요	Gallinago stenura	
133	노랑발도요	Heteroscelus brevipes	
134	송곳부리도요	Limicola falcinellus	
135	긴부리도요	Limnodromus scolopaceus	
136	큰부리도요	Limnodromus semipalmatus	
137	큰뒷부리도요	Limosa lapponica	
138	흑꼬리도요	Limosa limosa	
139	꼬마도요	Lymnocyptes minimus	
140	마도요	Numenius arquata	
141	쇠부리도요	Numenius minutus	
142	중부리도요	Numenius phaeopus	
143	붉은배지느러미발도요	Phalaropus fulicarius	
144	지느러미발도요	Phalaropus lobatus	
145	큰지느러미발도요	Phalaropus tricolor	
146	목도리도요	Philomachus pugnax	
147	멧도요	Scolopax rusticola	
148	학도요	Tringa erythropus	
149	알락도요	Tringa glareola	
150	큰노랑발도요	Tringa melanoleuc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51	청다리도요	Tringa nebularia	
152	백백도요	Tringa ochropus	
153	쇠청다리도요	Tringa stagnatilis	
154	붉은발도요	Tringa totanus	
155	누른도요	Tryngites subruficollis	
156	뒷부리도요	Xenus cinereus	
장다리물떼새과(Recurvirostridae)			
157	장다리물떼새	Himantopus himantopus	
158	뒷부리장다리물떼새	Recurvirostra avosetta	
호사도요과(Rostratulidae)			
159	호사도요	Rostratula benghalensis	
제비물떼새과(Glareolidae)			
160	제비물떼새	Glareola maldivarum	
갈매기과(Laridae)			
161	구레나룻제비갈매기	Chlidonias hybrida	
162	흰족지제비갈매기	Chlidonias leucopterus	
163	검은제비갈매기	Chlidonias niger	
164	한국재갈매기	Larus cachinnans	
165	갈매기	Larus canu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66	괭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167	긴목갈매기	<i>Larus genei</i>	
168	수리갈매기	<i>Larus glaucescens</i>	
169	작은흰갈매기	<i>Larus glaucoides</i>	
170	줄무늬노랑발갈매기	<i>Larus heuglini</i>	
171	흰갈매기	<i>Larus hyperboreus</i>	
172	붉은부리갈매기	<i>Larus ridibundus</i>	
173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174	재갈매기	<i>Larus vegae</i>	
175	북극흰갈매기	<i>Pagophila eburnea</i>	
176	세가락갈매기	<i>Rissa tridactyla</i>	
177	쇠목테갈매기	<i>Rhodostethia rosea</i>	
178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179	큰제비갈매기	<i>Sterna bergii</i>	
180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i>Sterna caspia</i>	
181	검은등제비갈매기	<i>Sterna fuscata</i>	
182	제비갈매기	<i>Sterna hirundo</i>	
183	큰부리제비갈매기	<i>Sterna nilotica</i>	
184	목테갈매기	<i>Xema sabin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도둑갈매기과(Stercorariidae)			
185	북극도둑갈매기	<i>Stercorarius parasiticus</i>	
바다오리과(Alcidae)			
186	작은바다오리	<i>Aethia pusilla</i>	
187	흰수염작은바다오리	<i>Aethia pygmaea</i>	
188	알락쇠오리	<i>Brachyramphus perdix</i>	
189	흰눈썹바다오리	<i>Cephus carbo</i>	
190	흰수염바다오리	<i>Cerorhinca monocerata</i>	
191	바다쇠오리	<i>Synthliboramphus antiquus</i>	
192	바다오리	<i>Uria aalge</i>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193	분홍가슴비둘기	<i>Columba oenas</i>	
194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195	염주비둘기	<i>Streptopelia decaocto</i>	
196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197	홍비둘기	<i>Streptopelia tranquebarica</i>	
198	녹색비둘기	<i>Treron sieboldii</i>	
사막꿩과(Pteroclididae)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99	사막꿩	Syrhaptus paradoxus	
두견목(CUCULIFORMES)			
두견과(Cuculidae)			
200	밤색날개빠꾸기	Clamator coromandus	
201	빠꾸기	Cuculus canorus	
202	검은등빠꾸기	Cuculus micropterus	
203	두견	Cuculus poliocephalus	
204	빙어리빠꾸기	Cuculus saturatus	
205	매사촌	Cuculus hyperythrus	
울뻐미목(STRIGIFORMES)			
울뻐미과(Strigidae)			
206	쇠부엉이	Asio flammeus	
207	칠부엉이	Asio otus	
208	금눈쇠울뻐미	Athene noctua	
209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210	흰울뻐미	Nyctea scandiaca	
211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212	소쩍새	Otus sunia	
213	긴꼬리울뻐미	Surnia ulul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속독새목(CAPRIMULGIFORMES)			
속독새과(Caprimulgidae)			
214	속독새	Caprimulgus indicus	
칼새목(APODIFORMES)			
칼새과(Apodidae)			
215	쇠칼새	Apus nipalensis	
216	칼새	Apus pacificus	
217	바늘꼬리칼새	Hirundapus caudacutus	
파랑새목(CORACIIFORMES)			
물총새과(Alcedinidae)			
218	물총새	Alcedo atthis	
219	호반새	Halcyon coromanda	
220	청호반새	Halcyon pileata	
221	뿔호반새	Megaceryle lugubris	
파랑새과(Coraciidae)			
222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후투티과(Upupidae)			
223	후투티	Upupa epops	
딱다구리목(PICIFORM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딱다구리과(Picidae)			
224	아물쇠딱다구리	<i>Dendrocopos canicapillus</i>	
225	붉은배오색딱다구리	<i>Hypopicus hyperythrus</i>	
226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227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228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229	쇠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inor</i>	
230	개미잡이	<i>Jynx torquilla</i>	
231	세가락딱다구리	<i>Picoides tridactylus</i>	
232	청딱다구리	<i>Picus canus</i>	
참새목(PASSERIFORMES)			
제비과(Hirundinidae)			
233	귀제비	<i>Cecropis daurica</i>	
234	흰털발제비	<i>Delichon dasypus</i>	
235	제비	<i>Hirundo rustica</i>	
236	갈색제비	<i>Riparia riparia</i>	
종다리과(Alaudidae)			
237	종다리	<i>Alauda arvensis</i>	
238	쇠종다리	<i>Calandrella brachydactyl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39	북방쇠종다리	<i>Calandrella cheleensis</i>	
할미새과(Motacillidae)			
240	붉은가슴발종다리	<i>Anthus cervinus</i>	
241	쇠발종다리	<i>Anthus godlewskii</i>	
242	흰등발종다리	<i>Anthus gustavi</i>	
243	횡동새	<i>Anthus hodgsoni</i>	
244	큰발종다리	<i>Anthus richardi</i>	
245	한국발종다리	<i>Anthus roseatus</i>	
246	발종다리	<i>Anthus rubescens</i>	
247	물레새	<i>Dendronanthus indicus</i>	
248	알락할미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249	백할미새	<i>Motacilla alba lugens</i>	
250	검은턱할미새	<i>Motacilla alba ocularis</i>	
251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252	노랑머리할미새	<i>Motacilla citreola</i>	
253	긴발톱할미새	<i>Motacilla flava</i>	
254	검은등할미새	<i>Motacilla grandis</i>	
직박구리과(Pycnonotidae)			
255	직박구리	<i>Microscelis amaurotis</i>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때까치과(Laniidae)			
256	때까치	<i>Lanius bucephalus</i>	
257	노랑때까치	<i>Lanius cristatus</i>	
258	재때까치	<i>Lanius excubitor</i>	
259	긴꼬리때까치	<i>Lanius schach</i>	
260	물때까치	<i>Lanius sphenocercus</i>	
261	침때까치	<i>Lanius tigrinus</i>	
할미새사촌과(Campephagidae)			
262	검은할미새사촌	<i>Coracina melaschistos</i>	
263	할미새사촌	<i>Pericrocotus divaricatus</i>	
여새과(Bombycillidae)			
264	황여새	<i>Bombycilla garrulus</i>	
265	홍여새	<i>Bombycilla japonica</i>	
물까마귀과(Cinclidae)			
266	물까마귀	<i>Cinclus pallasii</i>	
굴뚝새과(Troglodytidae)			
267	굴뚝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바위종다리과(Prunellidae)			
268	바위종다리	<i>Prunella collar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69	멧종다리	<i>Prunella montanella</i>	
휘파람새과(Sylviidae)			
270	큰부리개개비	<i>Acrocephalus aedon</i>	
271	쇠개개비	<i>Acrocephalus bistrigiceps</i>	
272	개개비	<i>Acrocephalus orientalis</i>	
273	점무늬가슴쥐발귀	<i>Bradypterus thoracicus</i>	
274	휘파람새	<i>Cettia diphone</i>	
275	북방개개비	<i>Locustella certhiola</i>	
276	붉은허리개개비	<i>Locustella fasciolata</i>	
277	쥐발귀개개비	<i>Locustella lanceolata</i>	
278	알락꼬리쥐발귀	<i>Locustella ochotensis</i>	
279	큰개개비	<i>Megalurus pryri</i>	
280	쇠솔딱새	<i>Muscicapa dauurica</i>	
281	흰머리딱새	<i>Oenanthe hispanica</i>	
282	쇠솔새	<i>Phylloscopus borealis</i>	
283	산솔새	<i>Phylloscopus coronatus</i>	
284	솔새사촌	<i>Phylloscopus fuscatus</i>	
285	노랑눈썹솔새	<i>Phylloscopus inornatus</i>	
286	버들솔새	<i>Phylloscopus plumbeitars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87	노랑허리솔새	<i>Phylloscopus proregulus</i>	
288	긴다리솔새사촌	<i>Phylloscopus schwarzi</i>	
289	되솔새	<i>Phylloscopus tenellipes</i>	
290	쇠흰턱딱새	<i>Sylvia curruca</i>	
291	숲새	<i>Urosphena squameiceps</i>	
솔딱새과(Muscicapidae)			
292	큰유리새	<i>Cyanoptila cyanomelana</i>	
293	파랑딱새	<i>Eumyias thalassinus</i>	
294	흰꼬리딱새	<i>Ficedula albicilla</i>	
295	노랑딱새	<i>Ficedula mugimaki</i>	
296	황금새	<i>Ficedula narcissina</i>	
297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298	붉은가슴올새	<i>Luscinia akahige</i>	
299	진홍가슴	<i>Luscinia calliope</i>	
300	쇠유리새	<i>Luscinia cyane</i>	
301	올새	<i>Luscinia sibilans</i>	
302	흰눈썹올새	<i>Luscinia svecica</i>	
303	꼬까직박구리	<i>Monticola gularis</i>	
304	바다직박구리	<i>Monticola solitari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05	제비딱새	<i>Muscicapa griseisticta</i>	
306	솔딱새	<i>Muscicapa sibirica</i>	
307	검은등사막딱새	<i>Oenanthe pleschanka</i>	
308	딱새	<i>Phoenicurus aureus</i>	
309	검은머리딱새	<i>Phoenicurus ochruros</i>	
310	검은뺨딱새	<i>Saxicola ferreus</i>	
311	검은딱새	<i>Saxicola torquatus</i>	
312	유리딱새	<i>Luscinia cyanura</i>	
지빠귀과(Turdidae)			
313	검은목지빠귀	<i>Turdus atrogularis</i>	
314	검은지빠귀	<i>Turdus cardis</i>	
315	붉은배지빠귀	<i>Turdus chrysolaus</i>	
316	개똥지빠귀	<i>Turdus eunomus</i>	
317	되지빠귀	<i>Turdus hortulorum</i>	
318	대륙검은지빠귀	<i>Turdus merula</i>	
319	노랑지빠귀	<i>Turdus naumanni</i>	
320	흰눈썹붉은배지빠귀	<i>Turdus obscurus</i>	
321	흰배지빠귀	<i>Turdus pallidus</i>	
322	호랑지빠귀	<i>Zosterops aure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23	흰눈썹지빠귀	Zoothera sibirica	
개개비사촌족(Cisticolidae)			
324	개개비사촌	Cisticola juncidis	
325	꼬리치레	Rhopophilus pekinensis	
상모술새족(Reguliidae)			
326	상모술새	Regulus regulus	
붉은머리오목눈이족(Timaliidae)			
327	수염오목눈이	Panurus biarmicus	
328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us	
긴꼬리딱새족(Monarchidae)			
329	북방긴꼬리딱새	Terpsiphone paradisi	
박새족(Paridae)			
330	진박새	Parus ater	
331	박새	Parus major	
332	북방쇠박새	Parus montanus	
333	쇠박새	Parus palustris	
334	곤줄박이	Parus varius	
오목눈이족(Aegithalidae)			
335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스원호오목눈이족(Remizidae)			
336	스원호오목눈이	Remiz pendulinus	
동고비족(Sittidae)			
337	동고비	Sitta europaea	
338	쇠동고비	Sitta villosa	
나무발발이족(Certhiidae)			
339	나무발발이	Certhia familiaris	
동박새족(Zosteropidae)			
340	한국동박새	Zosterops erythropleurus	
341	동박새	Zosterops japonicus	
멧새족(Emberizidae)			
342	긴발톱멧새	Calcarius lapponicus	
343	붉은머리멧새	Emberiza bruniceps	
344	노랑눈썹멧새	Emberiza chrysophrys	
345	멧새	Emberiza cioides	
346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347	붉은뺨멧새	Emberiza fucata	
348	점박이멧새	Emberiza jankowskii	
349	흰머리멧새	Emberiza leucocephalo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50	북방검은머리속새	<i>Emberiza pallasi</i>	
351	쇠붉은뺨멧새	<i>Emberiza pusilla</i>	
352	속새	<i>Emberiza rustica</i>	
353	꼬까참새	<i>Emberiza rutila</i>	
354	검은머리속새	<i>Emberiza schoeniclus</i>	
355	촉새	<i>Emberiza spodocephala</i>	
356	흰배멧새	<i>Emberiza tristrami</i>	
357	검은멧새	<i>Emberiza variabilis</i>	
358	흰멧새	<i>Plectrophenax nivalis</i>	
되새과(Fringillidae)			
359	홍방울새	<i>Carduelis flammea</i>	
360	쇠홍방울새	<i>Carduelis hornemanni</i>	
361	방울새	<i>Carduelis sinica</i>	
362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s spinus</i>	
363	붉은양진이	<i>Carpodacus erythrinus</i>	
364	양진이	<i>Carpodacus roseus</i>	
365	공새	<i>Coccothraustes coccothraustes</i>	
366	밀화부리	<i>Eophona migratoria</i>	
367	큰부리밀화부리	<i>Eophona personat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68	되새	<i>Fringilla montifringilla</i>	
369	갈색양진이	<i>Leucosticte arctoa</i>	
370	솔갓새	<i>Loxia curvirostra</i>	
371	흰족지솔갓새	<i>Loxia leucoptera</i>	
372	솔양진이	<i>Pinicola enucleator</i>	
373	멋쟁이새	<i>Pyrrhula pyrrhula</i>	
374	긴꼬리홍양진이	<i>Uragus sibiricus</i>	
찌르레기과(Sturnidae)			
375	찌르레기	<i>Sturnus cineraceus</i>	
376	쇠찌르레기	<i>Sturnus philippensis</i>	
377	갯빛쇠찌르레기	<i>Sturnus sinensis</i>	
378	북방쇠찌르레기	<i>Sturnus sturninus</i>	
379	흰점찌르레기	<i>Sturnus vulgaris</i>	
참새과(Passeridae)			
380	참새	<i>Passer montanus</i>	
381	섬참새	<i>Passer rutilans</i>	
피꼬리과(Oriolidae)			
382	피꼬리	<i>Oriolus chinensis</i>	
바람까마귀과(Dicru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83	바람까마귀	Dicrurus hottentottus	
384	회색바람까마귀	Dicrurus leucophaeus	
385	검은바람까마귀	Dicrurus macrocerus	
숲제비과(Artamidae)			
386	흰가슴숲제비	Artamus leucorhynchus	
까마귀과(Corvidae)			
387	까마귀	Corvus corone	
388	갈까마귀	Corvus dauuricus	
389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390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391	물까치	Cyanopica cyanus	
392	어치	Garrulus glandarius	
393	잣까마귀	Nucifraga caryocatactes	
394	까치	Pica pica	
395	붉은부리까마귀	Pyrrhocorax pyrrhocorax	

4.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거북목(TESTUDINATA)			
자라과(Trionych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	자라	Pelodiscus maackii	
장수거북과(Dermochelyidae)			
2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schlegelii	
바다거북과(Chelonidae)			
3	바다거북	Chelonia mydas japonica	
뱀목(SQUAMATA)			
뱀亞目(Serpentes)			
뱀과(Colubridae)			
4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5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m	
6	실뱀	Orientocoluber spinalis	
7	누룩뱀	Elaphe dione	
8	무자치	Oocatochus rufodordatus	
9	유혈목이	Rhabdophis lateralis	
10	줄꼬리뱀	Orthriophis taeniurus	
코브라과(Elapidae)			
11	먹대가리바다뱀	Hydrophis melanocephalus	
12	바다뱀	Pelamis platura	
살모사과(Viper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3	살모사	Gloydus brevicaudus	
14	까치살모사	Gloydus saxatilis	
15	쇠살모사	Gloydus ussuriensis	
도마뱀亞目(SAURIA)			
장지뱀科(Lacertidae)			
16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도마뱀科(Scincidae)			
17	도마뱀	Scinella vandenburghi	

5.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유미목(CAUDATA)			
도롱뇽科(Hynobiidae)			
1	도롱뇽	Hynobius leechii	
2	제주도롱뇽	Hynobius quelpaertensis	
3	한국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koreanus	
4	이끼도롱뇽	Karsenia koreana	
무미목(ANURA)			
두꺼비科(Bufonidae)			
5	두꺼비	Bufo gargarizan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	물두꺼비	Bufo stejnegeri	
개구리科(Ranidae)			
7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8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9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별표 7] <개정 2015.3.25.>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제26조 관련)

구 분	종 명
포유류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조류	1. 물닭 <i>Fulica atra</i> 2.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3.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양서류	1.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ensis</i> 2.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3.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파충류	1. 까치살모사 <i>Gloydius saxatilis</i> 2.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m</i> 3. 살모사 <i>Gloydius brevicaudus</i> 4. 쇠살모사 <i>Gloydius ussuriensis</i>

비고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별표 8] <개정 2020. 11. 27.>

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제28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 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2.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익수목(CHIROPTERA)			
1	익수목 모든 종		
고슴도치목(ERINACEOMORPHA)			
고슴도치과(Erinaceidae)			
2	고슴도치과 모든 종		
참서목(SORICOMORPHA)			
참서과(Soricidae)			
3	제주땃쥐	<i>Crocidura dsinezumi</i>	
4	땃쥐	<i>Crocidura lasiura</i>	
5	작은땃쥐	<i>Crocidura shantungens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6	갯참서	<i>Neomys fodiens</i>	
7	참서	<i>Sorex araneus</i>	
8	뒤쥐	<i>Sorex caecutiens</i>	
9	쇠뒤쥐	<i>Sorex gracillimus</i>	
10	꼬마뒤쥐	<i>Sorex minutissimus</i>	
11	큰참서	<i>Sorex mirabilis</i>	
12	긴발톱참서	<i>Sorex unguiculatus</i>	
두더지목(Talpidae)			
13	두더지과 모든 종		
토끼목(LAGOMORPHA)			
토끼목(Leporidae)			
14	토끼과 모든 종		
우는토끼목(Ochotonidae)			
15	우는토끼	<i>Ochotona hyperborea</i>	
쥐목(RODENTIA)			
다람쥐목(Sciuridae)			
16	다람쥐과 모든 종		
쥐목(Muridae)			
17	쥐과 모든 종		
뛰는쥐목(Dipodidae)			
18	긴꼬리꼬마쥐	<i>Sicista caudata</i>	
나무타기호저목(Erethizontidae)			
19	멕시코나무타기포큐파인	<i>Sphiggurus mexican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0	우루과이나무타기포큐파인	<i>Sphiggurus spinosus</i>	
아구티목(Dasyproctidae)			
21	얼룩아구티	<i>Dasyprocta punctata</i>	
파카목(Cuniculidae)			
22	파카	<i>Cuniculus paca</i>	
식육목(CARNIVORA)			
고양이목(Felidae)			
23	고양이과 모든 종		
사향살목(Viverridae)			
24	사향살과 모든 종		
몽구스목(Herpestidae)			
25	인도갈색몽구스	<i>Herpestes fuscus</i>	
26	인도몽구스	<i>Herpestes edwardsii</i>	
27	회색몽구스	<i>Herpestes javanicus auropunctata</i>	
28	붉은몽구스	<i>Herpestes smithii</i>	
29	계잡이몽구스	<i>Herpestes urva</i>	
30	검은줄몽구스	<i>Herpestes vitticollis</i>	
아드윌프목(Hyaenidae)			
31	아드윌프	<i>Proteles cristatus</i>	
개목(Canidae)			
32	개과 모든 종		
곰목(Urs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33	곰과 모든 종		
물개과(Otariidae)			
34	물개과 모든 종		
바다코끼리과(Odobenidae)			
35	바다코끼리	<i>Odobenus rosmarus</i>	
족제비과(Mustelidae)			
36	족제비과 모든 종		
스컹크과(Mephitidae)			
37	스컹크과 모든 종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			
38	아메리카너구리과 모든 종		
기제목(PERISSODACTYLA)			
말과목(Equidae)			
39	말과 모든 종		
맥과목(Tapiridae)			
40	맥과 모든 종		
코뿔소과(Rhinocerotidae)			
41	코뿔소과 모든 종		
우제목(ARTIODACTYLA)			
돼지과(Suidae)			
42	돼지과 모든 종		
낙타과(Camel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43	낙타과 모든 종		
사슴과목(Cervidae)			
44	사슴과 모든 종		
소과목(Bovidae)			
45	소과 모든 종		
피갑목(CINGULATA)			
아르마딜로과(Dasypodidae)			
46	파나마아르마딜로	<i>Cabassous centralis</i>	
47	타투아아이아르마딜로	<i>Cabassous tatouay</i>	
빈치목(PILOSA)			
나무늘보과(Megalonychidae)			
48	호프만두가락나무늘보	<i>Choloepus hoffmanni</i>	
개미핥기과(Myrmecophagidae)			
49	작은개미핥기	<i>Tamandua mexicana</i>	
주머니쥐목(DIDELPHIMORPHIA)			
주머니쥐과목(Didelphidae)			
50	주머니쥐과 모든 종		
천산갑목(PHOLIDOTA)			
천산갑과목(Manidae)			
51	천산갑과 모든 종		
장비목(PROBOSCIDEA)			
코끼리과목(Elephantidae)			
52	코끼리과 모든 종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영장목(PRIMATES)			
53	영장목 모든 종		

3.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앵무목(PSITTACIFORMES)			
1	앵무목 모든 종		
참새목(PASSERIFORMES)			
2	참새목 모든 종		
아비목(GAVIIFORMES)			
아비과(Gaviidae)			
3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4	큰회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i>	
5	회색머리아비	<i>Gavia pacifica</i>	
6	아비	<i>Gavia stellata</i>	
논병아리목(PODICIPEDIFORMES)			
논병아리과(Podicipedidae)			
7	귀불논병아리	<i>Podiceps auritus</i>	
8	불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i>	
9	큰논병아리	<i>Podiceps grisegena</i>	
10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i>	
11	논병아리	<i>Tachybaptus ruficollis</i>	
습새목(PROCELLARIIFORM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습새과(Procellariidae)			
12	습새	<i>Calonectris leucomelas</i>	
13	흰배습새	<i>Pterodroma hypoleuca</i>	
14	붉은발습새	<i>Puffinus carneipes</i>	
15	쇠부리습새	<i>Puffinus tenuirostris</i>	
바다제비과(Hydrobatidae)			
16	바다제비	<i>Oceanodroma monorhis</i>	
사다새목(PELECANIFORMES)			
얼가니과(Sulidae)			
17	푸른얼굴얼가니새	<i>Sula dactylatra</i>	
18	갈색얼가니새	<i>Sula leucogaster</i>	
군함조과(Fregatidae)			
19	군함조	<i>Fregata ariel</i>	
가마우지과(Phalacrocoracidae)			
20	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pillatus</i>	
21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22	쇠가마우지	<i>Phalacrocorax pelagicus</i>	
23	붉은뺨가마우지	<i>Phalacrocorax urile</i>	
황새목(CICONIIFORMES)			
백로과(Ardeidae)			
24	중대백로	<i>Ardea alba</i>	
25	왜가리	<i>Ardea cinerea</i>	
26	붉은왜가리	<i>Ardea purpure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7	흰날개해오라기	<i>Ardeola bacchus</i>	
28	알락해오라기	<i>Botaurus stellaris</i>	
29	황로	<i>Bubulcus ibis</i>	
30	검은맹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a</i>	
31	검은해오라기	<i>Dupetor flavicollis</i>	
32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33	중백로	<i>Egretta intermedia</i>	
34	흑로	<i>Egretta sacra</i>	
35	열대붉은해오라기	<i>Ixobrychus cinnamomeus</i>	
36	덤불해오라기	<i>Ixobrychus sinensis</i>	
37	해오라기	<i>Nycticorax nycticorax</i>	
저어새과(Threskiornithidae)			
38	검은머리흰따오기	<i>Threskiornis melanocephalus</i>	
기러기목(ANSERIFORMES)			
오리과(Anatidae)			
39	원앙	<i>Aix galericulata</i>	
40	고방오리	<i>Anas acuta</i>	
41	아메리카홍머리오리	<i>Anas americana</i>	
42	미국쇠오리	<i>Anas carolinensis</i>	
43	넓적부리	<i>Anas clypeata</i>	
44	쇠오리	<i>Anas crecca</i>	
45	청머리오리	<i>Anas falcata</i>	
46	홍머리오리	<i>Anas penelope</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47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48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49	발구지	<i>Anas querquedula</i>	
50	미국오리	<i>Anas rubripes</i>	
51	알락오리	<i>Anas strepera</i>	
52	쇠기러기	<i>Anser albifrons</i>	
53	회색기러기	<i>Anser anser</i>	
54	흰기러기	<i>Anser caerulescens</i>	
55	흰머리기러기	<i>Anser canagicus</i>	
56	미국흰죽지	<i>Aythya americana</i>	
57	붉은가슴흰죽지	<i>Aythya baeri</i>	
58	흰죽지	<i>Aythya ferina</i>	
59	댕기흰죽지	<i>Aythya fuligula</i>	
60	검은머리흰죽지	<i>Aythya marila</i>	
61	큰흰죽지	<i>Aythya valisineria</i>	
62	캐나다기러기	<i>Branta canadensis</i>	
63	흰뺨오리	<i>Bucephala clangula</i>	
64	북방흰뺨오리	<i>Bucephala islandica</i>	
65	바다쟁	<i>Clangula hyemalis</i>	
66	흰출박이오리	<i>Histrionicus histrionicus</i>	
67	검둥오리	<i>Melanitta americana</i>	
68	검둥오리사촌	<i>Melanitta deglandi</i>	
69	흰비오리	<i>Mergellus albell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70	비오리	<i>Mergus merganser</i>	
71	바다비오리	<i>Mergus serrator</i>	
72	붉은부리흰죽지	<i>Netta rufina</i>	
73	원앙사촌	<i>Tadorna cristata</i>	
74	황오리	<i>Tadorna ferruginea</i>	
75	흑부리오리	<i>Tadorna tadorna</i>	
76	머스코비오리	<i>Cairina moschata</i>	
77	붉은부리오리	<i>Dendrocygna autumnalis</i>	
78	황갈색오리	<i>Dendrocygna bicolor</i>	
수리목(ACCIPITRIFORMES)			
콘돌목(Cathartidae)			
79	분홍빛콘돌	<i>Sarcoramphus papa</i>	
닭목(GALLIFORMES)			
꿩목(Phasianidae)			
80	들꿩	<i>Tetrastes bonasia</i>	
81	매추라기	<i>Coturnix japonica</i>	
82	멧닭	<i>Lyrurus tetrix</i>	
83	꿩	<i>Phasianus colchicus</i>	
84	작은칠면조	<i>Meleagris ocellata</i>	
85	흰점박이붉은트라고판	<i>Tragopan satyra</i>	
보관조목(Cracididae)			
86	푸른부리보관조	<i>Crax alberti</i>	
87	노랑흑보관조	<i>Crax daubenton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88	볼망태보관조	<i>Crax globulosa</i>	
89	큰보관조	<i>Crax rubra</i>	
90	민무늬애기과너	<i>Ortalis vetula</i>	
91	북방관머리보관조	<i>Pauxi pauxi</i>	
92	관머리보관조	<i>Penelope purpurascens</i>	
93	검은보관조	<i>Penelopina nigra</i>	
두루미목(GRUIFORMES)			
뜸부기목(Rallidae)			
94	흰배뜸부기	<i>Amauromis phoenicurus</i>	
95	알락뜸부기	<i>Coturnicops exquisitus</i>	
96	물닭	<i>Fulica atra</i>	
97	쇠물닭	<i>Gallinula chloropus</i>	
98	쇠뜸부기사촌	<i>Porzana fusca</i>	
99	한국뜸부기	<i>Porzana paykullii</i>	
100	쇠뜸부기	<i>Porzana pusilla</i>	
101	흰눈썹뜸부기	<i>Rallus aquaticus</i>	
세가락매추라기목(TURNICIFORMES)			
세가락매추라기목(Turnicidae)			
102	세가락매추라기	<i>Turnix tanki</i>	
도요목(CHARADRIIFORMES)			
물꿩목(Jacaniidae)			
103	물꿩	<i>Hydrophasianus chirurgus</i>	
물떼새목(Charadri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04	흰물떼새	<i>Charadrius alexandrinus</i>	
105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i>	
106	큰왕눈물떼새	<i>Charadrius leschenaultii</i>	
107	왕눈물떼새	<i>Charadrius mongolus</i>	
108	큰물떼새	<i>Charadrius veredus</i>	
109	검은가슴물떼새	<i>Pluvialis fulva</i>	
110	개평	<i>Pluvialis squatarola</i>	
111	민망기물떼새	<i>Vanellus cinereus</i>	
112	댕기물떼새	<i>Vanellus vanellus</i>	
도요목(Scolopacidae)			
113	깎작도요	<i>Actitis hypoleucos</i>	
114	꼬까도요	<i>Arenaria interpres</i>	
115	매추라기도요	<i>Calidris acuminata</i>	
116	세가락도요	<i>Calidris alba</i>	
117	민물도요	<i>Calidris alpina</i>	
118	붉은가슴도요	<i>Calidris canutus</i>	
119	붉은갯도요	<i>Calidris ferruginea</i>	
120	아메리카매추라기도요	<i>Calidris melanotos</i>	
121	작은도요	<i>Calidris minuta</i>	
122	좁도요	<i>Calidris ruficollis</i>	
123	종달도요	<i>Calidris subminuta</i>	
124	흰꼬리좁도요	<i>Calidris temminckii</i>	
125	붉은어깨도요	<i>Calidris tenuirostri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26	깎도요	<i>Gallinago gallinago</i>	
127	큰깎도요	<i>Gallinago hardwickii</i>	
128	깎도요사촌	<i>Gallinago megala</i>	
129	청도요	<i>Gallinago solitaria</i>	
130	바늘꼬리도요	<i>Gallinago stenura</i>	
131	노랑발도요	<i>Heteroscelus brevipes</i>	
132	송곳부리도요	<i>Limicola falcinellus</i>	
133	긴부리도요	<i>Limnodromus scolopaceus</i>	
134	큰부리도요	<i>Limnodromus semipalmatus</i>	
135	큰뒷부리도요	<i>Limosa lapponica</i>	
136	흑꼬리도요	<i>Limosa limosa</i>	
137	꼬마도요	<i>Lymnocyrtus minimus</i>	
138	마도요	<i>Numenius arquata</i>	
139	쇠부리도요	<i>Numenius minutus</i>	
140	중부리도요	<i>Numenius phaeopus</i>	
141	붉은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fulicarius</i>	
142	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lobatus</i>	
143	큰지느러미발도요	<i>Phalaropus tricolor</i>	
144	목도리도요	<i>Philomachus pugnax</i>	
145	멧도요	<i>Scolopax rusticola</i>	
146	학도요	<i>Tringa erythropus</i>	
147	알락도요	<i>Tringa glareola</i>	
148	큰노랑발도요	<i>Tringa melanoleuc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49	청다리도요	<i>Tringa nebularia</i>	
150	백백도요	<i>Tringa ochropus</i>	
151	쇠청다리도요	<i>Tringa stagnatilis</i>	
152	붉은발도요	<i>Tringa totanus</i>	
153	누른도요	<i>Tryngites subruficollis</i>	
154	뒷부리도요	<i>Xenus cinereus</i>	
장다리물떼새과(Recurvirostridae)			
156	장다리물떼새	<i>Himantopus himantopus</i>	
157	뒷부리장다리물떼새	<i>Recurvirostra avosetta</i>	
호사도요과(Rostratulidae)			
158	호사도요	<i>Rostratula benghalensis</i>	
제비물떼새과(Glareolidae)			
159	제비물떼새	<i>Glareola maldivarum</i>	
돌물떼새과(Burhinidae)			
160	흰눈썹돌물떼새	<i>Burhinus bistriatus</i>	
갈매기과(Laridae)			
161	구레나룻제비갈매기	<i>Chlidonias hybrida</i>	
162	흰죽지제비갈매기	<i>Chlidonias leucopterus</i>	
163	검은제비갈매기	<i>Chlidonias niger</i>	
164	한국재갈매기	<i>Larus cachinnans</i>	
165	갈매기	<i>Larus canus</i>	
166	괭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167	긴목갈매기	<i>Larus gene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68	수리갈매기	<i>Larus glaucescens</i>	
169	작은휘갈매기	<i>Larus glaucoides</i>	
170	줄무늬노랑발갈매기	<i>Larus heuglini</i>	
171	흰갈매기	<i>Larus hyperboreus</i>	
172	붉은부리갈매기	<i>Larus ridibundus</i>	
173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174	재갈매기	<i>Larus vegae</i>	
175	북극흰갈매기	<i>Pagophila eburnea</i>	
176	세가락갈매기	<i>Rissa tridactyla</i>	
177	쇠목테갈매기	<i>Rhodostethia rosea</i>	
178	쇠제비갈매기	<i>Sterna albifrons</i>	
179	큰제비갈매기	<i>Sterna bergii</i>	
180	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i>Sterna caspia</i>	
181	검은등제비갈매기	<i>Sterna fuscata</i>	
182	제비갈매기	<i>Sterna hirundo</i>	
183	큰부리제비갈매기	<i>Sterna nilotica</i>	
184	목테갈매기	<i>Xema sabini</i>	
도둑갈매기과(Stercorariidae)			
185	북극도둑갈매기	<i>Stercorarius parasiticus</i>	
바다오리과(Alcidae)			
186	작은바다오리	<i>Aethia pusilla</i>	
187	흰수염작은바다오리	<i>Aethia pygmaea</i>	
188	알락쇠오리	<i>Brachyramphus perdix</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189	흰눈썹바다오리	<i>Cephus carbo</i>	
190	흰수염바다오리	<i>Cerorhinca monocerata</i>	
191	바다쇠오리	<i>Synthliboramphus antiquus</i>	
192	바다오리	<i>Uria aalge</i>	
비둘기목(COLUMBIFORMES)			
비둘기과(Columbidae)			
193	분홍가슴비둘기	<i>Columba oenas</i>	
194	양비둘기	<i>Columba rupestris</i>	
195	염주비둘기	<i>Streptopelia decaocto</i>	
196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197	홍비둘기	<i>Streptopelia tranquebarica</i>	
198	녹색비둘기	<i>Treron sieboldii</i>	
199	장미빛비둘기	<i>Nesoenas mayeri</i>	
사막평과(Pteroclididae)			
200	사막평	<i>Syrhaptes paradoxus</i>	
두견목(CUCULIFORMES)			
두견과(Cuculidae)			
201	밤색날개뻐꾸기	<i>Clamator coromandus</i>	
202	뻐꾸기	<i>Cuculus canorus</i>	
203	검은등뻐꾸기	<i>Cuculus micropterus</i>	
204	두견	<i>Cuculus poliocephalus</i>	
205	병어리뻐꾸기	<i>Cuculus saturatus</i>	
206	매사촌	<i>Cuculus hyperythrus</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쏙독새목(CAPRIMULGIFORMES)			
쏙독새과(Caprimulgidae)			
207	쏙독새	<i>Caprimulgus indicus</i>	
칼새목(APODIFORMES)			
칼새과(Apodidae)			
208	쇠칼새	<i>Apus nipalensis</i>	
209	칼새	<i>Apus pacificus</i>	
210	바늘꼬리칼새	<i>Hirundapus caudacutus</i>	
파랑새목(CORACIIFORMES)			
물총새과(Alcedinidae)			
211	물총새	<i>Alcedo atthis</i>	
212	호반새	<i>Halcyon coromanda</i>	
213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214	불호반새	<i>Megaceryle lugubris</i>	
파랑새과(Coraciidae)			
215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후투티과(Upupidae)			
216	후투티	<i>Upupa epops</i>	
딱다구리목(PICIFORMES)			
딱다구리과(Picidae)			
217	아물쇠딱다구리	<i>Dendrocopos canicapillus</i>	
218	붉은배오색딱다구리	<i>Hypopicus hyperythrus</i>	
219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20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221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222	쇠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inor</i>	
223	개미잡이	<i>Jynx torquilla</i>	
224	세가락딱다구리	<i>Picoides tridactylus</i>	
225	청딱다구리	<i>Picus canus</i>	
오색조족(Capitonidae)			
226	왕부리오색조	<i>Semnornis ramphastinus</i>	
왕부리족(Ramphastidae)			
227	바일론종부리	<i>Bailloniuss bailloni</i>	
228	카스타노티스종부리	<i>Pteroglossus castanotis</i>	
229	이색왕부리	<i>Ramphastos dicolorus</i>	
230	점박이작은종부리	<i>Selenidera maculirostris</i>	

4.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거북목(TESTUDINATA)			
늑대거북목(Chelydridae)			
1	악어거북	<i>Macrochelys temminckii</i>	
2	늑대거북	<i>Chelydra serpentina</i>	
늘거북목(Emydidae)			
3	지도거북속 모든 종	<i>Graptemys spp.</i>	
남생이목(Geoemydidae)			

번호	국명	학명	비고
4	큰머리늑거북	<i>Mauremys megaloccephala</i>	
5	중국졸목거북	<i>Mauremys sinensis</i>	
6	아이버손거북	<i>Mauremys iversoni</i>	
7	라시오늑거북	<i>Mauremys pritchardi</i>	
8	구양자이졸목거북	<i>Ocadia glyphistoma</i>	
9	필리핀졸목거북	<i>Ocadia philippeni</i>	
10	비눈점거북	<i>Sacalia pseudocellata</i>	
뱀목(SQUAMATA)			
뱀亞目(Serpentes)			
뱀목(Colubridae)			
11	대륙유혈목이	<i>Amphiesma vibakari</i>	
12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m</i>	
13	누룩뱀	<i>Elaphe dione</i>	
14	무자치	<i>Oocatochus rufodordatus</i>	
15	실뱀	<i>Orientocoluber spinalis</i>	
16	줄꼬리뱀	<i>Orthriophis taeniurus</i>	
17	유혈목이	<i>Rhabdophis lateralis</i>	
18	인도올리브뱀	<i>Atretium schistosum</i>	
19	바다올뱀	<i>Cerberus rhynchops</i>	
20	바둑무늬뱀	<i>Xenochrophis piscator</i>	
코브라목(Elapidae)			
21	먹대가리바다뱀	<i>Hydrophis melanocephalus</i>	
22	바다뱀	<i>Pelamis platura</i>	

번호	국명	학명	비고
23	산호코브라	<i>Micrurus diastema</i>	
24	붉은띠코브라	<i>Micrurus nigrocinctus</i>	
살모사과(Viperidae)			
25	살모사	<i>Gloydius brevicaudus</i>	
26	까치살모사	<i>Gloydius saxatilis</i>	
27	쇠살모사	<i>Gloydius ussuriensis</i>	
28	복살모사	<i>Vipera sachalinensis</i>	
29	남방방울뱀	<i>Crotalus durissus</i>	
30	북방살모사	<i>Daboia russelii</i>	
도마뱀목(SAURIA)			
도마뱀부치과(Gekkonidae)			
31	끈끈이발도마뱀 속 모든 종	<i>Hoplodactylus</i> spp.	
32	뉴질랜드초록도마뱀 속 모든 종	<i>Naultinus</i> spp.	
33	도마뱀부치속 모든 종	<i>Gekko</i> spp.	<i>Gekko gecko</i> 제외
장지뱀과(Lacertidae)			
34	아무르장지뱀	<i>Takydromus amurensis</i>	
35	줄장지뱀	<i>Takydromus wolteri</i>	
도마뱀과(Scincidae)			
36	도마뱀	<i>Scinella vandenburghi</i>	

5.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유미목(CAUDATA)			
도롱뇽과(Hynobiidae)			
1	도롱뇽	<i>Hynobius leechii</i>	
2	제주도롱뇽	<i>Hynobius quelpaertensis</i>	
3	한국꼬리치레도롱뇽	<i>Onychodactylus koreanus</i>	
4	네발가락도롱뇽	<i>Salamandrella keyserlingii</i>	
5	이끼도롱뇽	<i>Karsenia koreana</i>	
무미목(ANURA)			
두꺼비과(Bufonidae)			
6	두꺼비	<i>Bufo gargarizans</i>	
7	작은두꺼비	<i>Bufo radei</i>	
8	물두꺼비	<i>Bufo stejnegeri</i>	
무당개구리과(Discoglossidae)			
9	무당개구리	<i>Bombina orientalis</i>	
청개구리과(Hylidae)			
10	청개구리	<i>Hyla japonica</i>	
개구리과(Ranidae)			
11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12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13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ensis</i>	
14	참개구리	<i>Pelophylax nigromaculatus</i>	
15	옴개구리	<i>Glandirana rugosa</i>	

[별표 8의2] <신설 2015.3.25.>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 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구 분	세부기준	
부 지	○ 전체면적: 1,000㎡ 이상 ○ 건물: 전체면적의 20%(200㎡) 이상	
시 설	진료실	○ 임상병리,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춘 것
	수술실	○ 수술 관련시설을 갖춘 것
	영상진단실	○ 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춘 것
	입원실	○ 진료실과 구분·운영하되,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케이지 및 시설을 갖춘 것
	교육실	○ 야생동물보호 홍보·교육관련 강의, 전시 및 영상상영시설을 갖춘 것
	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	○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것
	먹이준비실	○ 상하수도시설을 갖춘 것
	재활시설	○ 적정 면적 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춘 것
	창고시설	○ 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것
	격리·차폐시설	○ 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춘 것

1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별표

3. 장비 구비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구조차량	○ 야생동물 구조·운송에 적합한 차량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운 반 장 비	<p>모형도(예시)</p> 
	공 통
운 반 상 자 (예 시)	<p>대형 맹수류 (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 재료: 합판(15mm), 철판(1.2mm), 각재(45mm), 평강 및 ㄱ평강(3×40mm), 윤형강(15mm)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
	<p>그 밖의 맹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 재료: 합판(12mm), 철판(0.9mm), 각재(45mm), 평강 및 ㄱ평강(3×40mm), 윤형강(12mm)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구 분	세부기준
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갈래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올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Jab Stick (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전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

[별표 8의3] <개정 2019. 12. 20.>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5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	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질병진단 담당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야생동물 질병진단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검실 1실과 질병진단 전용실험실 1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광학현미경	1대
천평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장비명	수량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항온수조	1대
슬라이드건조기	1대
파라핀 용융기	1대
염색बाट 또는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형광현미경	1대
CO ₂ 배양기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장비명	수량
도립현미경	1대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진공펌프	1대 이상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전기영동장치	1대
초저온냉동고	1대
자외선 발광기(Illuminator)	1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스템(HPLC system)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에칠알콜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메칠알콜	
크리스탈 바이오렛(Crystal Violet)	
요오드	
항산성 염색시약	
혈구희석용피펫(blood cell diluting pipette)	
혈구계산판(Counting chamber)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슬라이드글라스	
커버글라스	

물품명	수량
파라핀	
자이렌(Xylene)	
김사(Giemsa)	
에오신(Eosin)	
헤마톡시린(Hematoxylin)	
포르말린	
페트리디쉬	
혈액배지	
물러힌턴배지(Muller hinton agar)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同定: 생물 분류 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용 배지수종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별표 8의4] <개정 2020. 5. 27.>

소각 및 매몰기준(제44조의9 관련)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유지 또는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몰 수량

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다) 매몰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크기

3) 매몰 장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나) 매몰지 굴착(땅파기)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몰지는 지하수 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음용 지하수 관정(管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3)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야생동물 사체의 매몰 방법

- 1) 야생동물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야생동물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kg당 85kg 비율로 뿌린다.
 - 라) 사체를 투입하고 토양으로 완전히 덮은 후 최종적으로 생석회를 뿌린다.
 - 마)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 바)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粘土)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85)로 충분히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cm 이상)한 후 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야생동물 사체 등의 운반
-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 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2) 사체 등의 소각·매몰 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9. 12. 2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44조의10제1항 관련)

1.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 사. 매몰지 점검결과 경사면붕괴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별표 8의6] <신설 2020. 11. 27.>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제31조의4 관련)

1. 매몰
 - 가. 매몰 장소
 -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 나. 매몰 방법
 -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3.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
 -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 나.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다. 고온·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별표 9] <개정 2015.3.25.>

수수료(제72조의2제1항 관련)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수입·반입하는 경우	수출·반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동물	살아있는 표본	10만원	10만원	
		죽은 표본	100개 이상	5만원	5만원
			100개 미만	2만원	2만원
	식물	3,000개 이상	5만원	5만원	
		3,000개 미만	2만원	2만원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

근거법령	구 분	수수료
법제16조의2 제1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10만원
법제16조의2 제2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5만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2만원

[별표 10] <개정 2015.8.4.>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제59조제2항 관련)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한다)

비고

1.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강습과목 중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은 강습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1] 삭제 <2012.7.27.>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호,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면허정지, 면허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승인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 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	법 제7조의2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5호	지정취소			
6)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6호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8)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8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9)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알선·중개를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9호	경고	지정취소		
10)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0호	경고	지정취소		
11)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1호	지정취소			
1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1항제12호	경고	지정취소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다. 사육시설등록자가 법 제16조의8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호	등록취소			
2) 1년에 3회 이상 사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2호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3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4호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5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6)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6호	경고	폐쇄명령 15일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7)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7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8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9)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9호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등록취소
10) 사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0호	경고	등록취소		
1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의8 제2항제11호	경고	폐쇄명령 1개월	폐쇄명령 3개월	폐쇄명령 6개월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마.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취소		
바.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호	허가취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3호	경고	허가취소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1호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허가취소			
아.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풀어 놓거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식재한 경우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법 제25조의2 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자.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 동물을 학대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 입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6)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6호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5 제1항제7호	경고	지정취소		
차.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7 제7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가) 시설과 인력 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타.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5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파.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의2 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 제1항제2호	승인취소	경고	승인취소	
하.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47조의2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가)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면허취소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6)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8)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나) 1년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가) 수렵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10)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279	제1조(목적) 1279	제1조(목적) 1279
제2조(정의) 1279		
제3조(적용 범위) 1279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28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80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1280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국가연락기관) 1280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1281	
제8조(국가책임기관) 1282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1283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1283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1283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1283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1285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1285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1283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1286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1285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1286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국가접점기관) 1286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1287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1287	제6조(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1287	제5조(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1287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1288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1288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1288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289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289	
제18조(협의회회의 구성·운영) 1290	제10조(협의회회의 구성) 1290	
	제11조(협의회회의 운영) 1291	
제19조(정보 보호) 1291	제12조(정보 보호) 1291	
제20조(국고 보조) 1292		
제21조(재원 확보) 1292		
제22조(수수료) 1292		제6조(수수료) 1292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92	제13조(권한의 위임) 1292	
	제14조(업무의 위탁) 1295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96		
제25조(규제의 재검토) 1296		
제5장 벌칙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97	
제26조(벌칙) 1297		
제27조(몰수·추징) 1297		
제28조(과태료) 1297	제16조(과태료) 1297	
부칙 1298	부칙 1298	부칙 1298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7. 1.17 법률 제14533호 개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12.24 법률 제1601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p>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정 2017. 8.16 대통령령 제28246호 개정 2018.12.18 대통령령 제29385호 2020. 9.11 대통령령 제31013호 (보전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7.11.27 환경부령 제720호 개정 2018.12.27 환경부령 제791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인간의 유전자원등</p> <p>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p> <p>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p> <p>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p> <p>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p> <p>제7조(국가연락기관)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p>	<p>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p> <p>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기관 현황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p> <p>2. 그 밖에 사무국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정보는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국가책임기관 및 그 소관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국가책임기관) ① 의정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p>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법 제12조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③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외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p> <p>3.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p> <p>4. 그 밖에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p> <p>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p>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p> <p>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p> <p>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p>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p>	<p>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p> <p>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p> <p>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인 신고인의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그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p> <p>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p> <p>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 등의 방법으</p>	<p>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p> <p>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p> <p>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및 이용기간</p> <p>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p> <p>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p> <p>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p> <p>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p> <p>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p> <p>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해당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2. 27.></p> <p>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p> <p>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2. 27.></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p>	<p>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한 유전자원(미생물은 제외한다)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 3.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국내 유전자원등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⑧ 법 제9조제4항에서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유전자원등의 원산지 국가로서 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유전자원등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제공국(이하 "제공국"이라 한다)인 국내 유전자원등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p>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p>	<p>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의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이 항에서 "생물다양성"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등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p> <p>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p>	<p>는 경우에는 미리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 및 사유 등에 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외 대상 및 사유와 신고의 제외사실 또는 절차간소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등</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p> <p>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p> <p>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p> <p>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p> <p>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p> <p>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p> <p>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p> <p>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p> <p>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p> <p>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p>	<p>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 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p>	<p>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6조(절차 준수 등의 조사 등) ①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p>	<p>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 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 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 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 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p>제7조(통합신고시스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8조(절차 준수 등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p>	<p>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센터(이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유전자원등에</p>	<p>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둔다.</p> <p>②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구축·운영하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권고에 관한 사항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p>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에서 규정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정보 보호) ①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원등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p> <p>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국고 보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1조(재원 확보)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수수료) ①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 	<p>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 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관한 조사·관리</p> <p>바.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p> <p>2. 국가접점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p> <p>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p> <p>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p> <p>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2. 18.></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12. 18.></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9. 11.></p> <p>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p> <p>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p> <p>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p> <p>2. 국가접점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마.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2. 국가접점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나.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처리 다.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의 처리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여부의 조사 및 절차 준수 권고 라.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목개정 2018. 12. 18.]</p> <p>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p> <p>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지원 나.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의 조사·관리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 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수리 여부 통지 마.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접수</p> <p>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의 조사</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p>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p> <p>다.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검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산설 2018. 12. 18.)</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절차 준수 의무의 조사 또는 권고: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p> <p>4.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7조(몰수·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 <p>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 〈제14533호, 2017. 1. 1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① 제12조 및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는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2017년 6월 27일까지는 각각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p>	<p>부칙 〈제28246호, 2017. 8. 16.〉</p> <p>이 영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제4항제2호, 제16조 및 별표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385호, 2018. 12. 1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p>	<p>부칙 〈제720호, 2017. 11. 27.〉</p> <p>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91호, 2018. 12. 2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법률 제14533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80〉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16호, 2018. 12. 2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p>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303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	400	8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100	200	4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13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1316	제1조(목적) 1316	제1조(목적) 1316
제2조(정의) 1316		제2조 삭제 1316
제2조의2(기본원칙) 1319	제2조(공원시설) 1317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1319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1319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1320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1320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1320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321	
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1321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1321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1322	
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1322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322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1322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1322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1323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1323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1323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1323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1324	제3조(지정기준) 1324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1324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325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1325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1325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327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1328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1328 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29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30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1331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1332	
제10조의2(전문위원) 1332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1332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1332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1332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1333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1333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1334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1334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1334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1335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1335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1336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1335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1336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 1336
		제6조 삭제 1336
		제7조 삭제 1336
		제8조 삭제 1336
		제9조 삭제 1336
		제10조 삭제 1336
		제11조 삭제 133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1337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1336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337	제13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1337	제13조 삭제 1337
제17조의4(진통사찰의 의견수렴) 1338		
제18조(용도지구) 1338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1339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339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341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345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347	
	제14조의6 삭제 1347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1347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1347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347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1347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349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1348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351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1351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1349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351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1349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1352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16조(환매권) 1353	
제23조(행위허가) 1353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1353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1353
	제18조(신고사항) 1354	제19조 삭제 1354
	제19조(신고생략사항) 1355	
	제20조(자연풍경훼손) 135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1358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1357	
제24조(원상회복) 1358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 1358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1359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1359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1359	
	제23조 삭제 1361	
	제24조 삭제 1361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1361		
제24조의4(이주대책) 1361		
제25조 삭제 1362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1362		
제27조(금지행위) 1362	제25조(금지행위) 1362	
제28조(출입 금지 등) 1363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1364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1364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1364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1365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1364
제31조(대집행) 1365		
제32조(감독처분) 1366		
제33조(청분) 1366		
제34조(사법경찰권) 1366		
제35조(공원대장) 1367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1367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1367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1367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신설 2011. 7. 28.〉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1368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1368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1368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1369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136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1370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1369 제27조의5(시정기간) 1370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1371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1371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1371		
제36조의7(비용부담) 1372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1372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1372
제36조의8(금지행위) 1372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 12. 3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1372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1372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산구의 입장료 징수) 1373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1373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1374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375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1375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1375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1375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1376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1376		
제43조(보조) 1376		
제6장 삭제 (2016. 5. 29.)		
제44조 삭제 1377	제28조 삭제 1377	
제45조 삭제 1377	제29조 삭제 1377	
제46조 삭제 1377	제30조 삭제 1377	
제47조 삭제 1377	제31조 삭제 1377	
제48조 삭제 1377	제32조 삭제 137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9조 삭제 1377	제33조 삭제 1377	
제50조 삭제 1377	제34조 삭제 1377	
제51조 삭제 1377	제35조 삭제 1377	
제52조 삭제 1377	제36조 삭제 1377	
제53조 삭제 1377	제37조 삭제 1377	
제54조 삭제 1377	제38조 삭제 1377	
제55조 삭제 1377	제39조 삭제 1377	
제56조 삭제 1377		
제57조 삭제 1377		
제58조 삭제 1377		
제59조 삭제 1377		
제60조 삭제 1377		
제61조 삭제 1377		
제62조 삭제 1377		
제63조 삭제 1377		
제64조 삭제 1377		
제65조 삭제 1377		
제66조 삭제 1378		
제67조 삭제 1378		
제68조 삭제 1378		
제69조 삭제 1378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78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1378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380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1379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1380
제73조(손실보상) 1380		
	제41조(재결의 신청) 138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1381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1381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1382	제41조의3(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1382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1383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1382	
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 1383		
제75조(처분의 제한) 1383	제42조(처분제한) 1383	
제76조(협약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1383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1384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1384	
	제44조(매수절차 등) 1384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1384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1385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1386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1386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386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89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1390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1390
제8장 벌칙 <개정 2008. 12. 31.>		
제82조(벌칙) 1390		
제83조(벌칙) 1391		
제84조(벌칙) 1391		
제85조(양벌규정) 1392		
제86조(과태료) 1392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392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1392	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1392
		제30조(규제의 재검토) 1393
부칙 1393	부칙 1393	부칙 139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정 2001. 3.28 법률 제6450호 개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5. 3.31 법률 제7456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1호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46호 (문화재보호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8. 3.21 법률 제8950호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10. 2. 4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2010. 2. 4 법률 제100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권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1. 4. 5 법률 제10548호 2011. 7.28 법률 제10978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6. 5.29 법률 제14228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법률 제14492호 2017. 4.18 법률 제14782호 2017.12.12 법률 제15198호 2018.10.16 법률 제15830호 (국립공원공단법) 2018.10.16 법률 제15838호 2019.11.26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25호	제정 2001. 9.29 대통령령 제17380호 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 (음역등기능전환에따른순환벌치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사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3호 2006. 3. 3 대통령령 제19370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유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4.12 대통령령 제20008호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3호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령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3호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레크리온술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1. 5. 3 대통령령 제22915호 2011. 9.30 대통령령 제23194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26 대통령령 제23558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령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 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5호 (수산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7. 5.29 대통령령 제28077호 2017. 6.27 대통령령 제28157호	제정 2001.10.17 환경부령 제117호 개정 2005. 9.30 환경부령 제186호 2006. 5.30 환경부령 제205호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6.29 환경부령 제237호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9.19 환경부령 제298호 2010.10. 1 환경부령 제379호 2011. 3.31 환경부령 제405호 2011.10. 6 환경부령 제424호 2012. 1.27 환경부령 제446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5.30 환경부령 제702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환경부령) 2019.12.31 환경부령 제841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p>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3.13 대통령령 제28698호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9. 1.15 대통령령 제29489호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 8 대통령령 제3123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p> <p>제2조 삭제 (2005. 9. 30.)</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p> <p>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p> <p>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p> <p>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공원을 말한다.</p> <p>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p> <p>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p> <p>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p> <p>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p> <p>1. 공원관리사무소·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 12. 31.]	<p>로 한정한다)·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사방(砂防)·호안(護岸)·방책(防柵)·방화(防火)시설·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p> <p>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p> <p>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대여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p> <p>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p> <p>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p> <p>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점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p> <p>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p> <p>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p>[본조신설 2020. 6. 9.]</p> <p>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p> <p>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p> <p>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의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p> <p>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p>	<p>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p> <p>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p> <p>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p> <p>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p>[본조신설 2005. 9. 30.]</p> <p>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식물의 분포,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 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p>②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p>[본조신설 2005. 9. 30.]</p> <p>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p>[본조신설 2005. 9. 30.]</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p> <p>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p> <p>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p> <p>제4조의4(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p>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5. 29., 2018. 10. 16.></p>	<p>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0. 10. 1.]</p> <p>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p> <p>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p>[전문개정 2010. 10. 1.]</p> <p>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0. 10. 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p> <p>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p>	<p>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0. 10. 1.]</p>	<p>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p>	<p>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 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p> <p>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p> <p>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p> <p>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목개정 2016. 5. 29.]</p> <p>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 5. 29.></p> <p>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p>	<p>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p> <p>1.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통신·방송·축수·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p> <p>[제목개정 2017. 5. 29.]</p> <p>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p> <p>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p> <p>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6.,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9. 30.></p> <p>⑥제3항제4호·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p> <p>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9. 7. 2.></p> <p>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⑨국립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10. 10. 1., 2018. 3. 13.></p> <p>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5. 29.]</p> <p>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5. 29.]</p> <p>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p> <p>②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③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전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p> <p>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p>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참여하지 못한다.</p> <p>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시·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p> <p>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7. 5. 29.]</p> <p>제8조(국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0조(공원위원회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은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7. 5. 2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4. 자연공원의 환경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p> <p>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9.></p> <p>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p>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p> <p>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 및 자문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30.]</p> <p>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20. 12. 8.]</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 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p>	<p>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정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p>[제목개정 2010. 10. 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둘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 9. 30.> 2. 삭제 <2011. 9. 30.> 3. 삭제 <2011. 9. 30.> 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1. 9. 30.> 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p> <p>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10. 1.]</p> <p>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p> <p>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하천 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p>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30., 2008. 12. 24., 2010. 10. 1., 2012. 7. 20.,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p>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5. 9. 30.]</p> <p>제6조 삭제 <2008. 9. 19.> 제7조 삭제 <2008. 9. 19.> 제8조 삭제 <2008. 9. 19.> 제9조 삭제 <2008. 9. 19.> 제10조 삭제 <2008. 9. 19.> 제11조 삭제 <2008. 9. 19.></p> <p>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 5. 26.></p> <p>[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p> <p>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자연자원·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3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 지형·지질, 수리·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p>	<p>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 10. 1.></p> <p>제13조 삭제 <2008. 9. 19.></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③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6. 5. 29.)]</p> <p>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11. 4. 5.]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6. 5. 29.)]</p> <p>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p>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p>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07. 7. 4.]</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p> <p>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p> <p>4. 삭제 <2011. 4. 5.></p> <p>5. 삭제 <2011. 4. 5.></p> <p>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p> <p>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p> <p>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p>	<p>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p> <p>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p> <p>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9. 18.]</p> <p>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3., 2017. 5. 29.></p> <p>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p> <p>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p> <p>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水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p> <p>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중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p> <p>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중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p>	<p>3.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재조사 행위</p> <p>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p> <p>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p> <p>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17. 5. 29.></p> <p>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중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p> <p>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중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p> <p>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p> <p>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p> <p>2. 공원자연환경지구</p> <p>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p>	<p>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p> <p>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전문개정 2008. 9. 18.] [제목개정 2010. 10. 1.]</p> <p>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임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7. 6. 27.></p> <p>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0. 12. 8.></p> <p>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p> <p>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p>	<p>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p> <p>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p> <p>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6. 21., 2017. 5. 29.></p> <p>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p> <p>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p> <p>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p> <p>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준</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p> <p>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p>	<p>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 건조·냉동·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p> <p>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p> <p>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p> <p>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p> <p>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 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p> <p>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호안(護岸)·방화(防火)·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p> <p>아. 군사훈련 및 농로·계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p>	<p>3.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p> <p>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p> <p>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p> <p>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p> <p>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계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p> <p>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p> <p>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p> <p>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p> <p>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경우만 해당한다)</p> <p>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p> <p>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공원마을지구</p> <p>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p>	<p>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p> <p>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p> <p>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및 야영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 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p>[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0. 10. 1.]</p> <p>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p>	<p>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p> <p>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09. 12. 15., 2010. 10. 1., 2011. 9. 30., 2015.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분뇨 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p>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 5. 29.></p> <p>[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1. 9. 30.]</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③ 삭제 <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5. 26.>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p> <p>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p>	<p>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30.]</p> <p>제14조의6 삭제 <2011. 9. 30.></p> <p>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본조신설 2008. 9. 18.]</p>	<p>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1. 10.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 10. 6.> <p>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p>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p>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p> <p>3. 공원사업시행계획서</p> <p>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p> <p>가. 계획평면도</p> <p>나. 배치도</p> <p>다. 조경계획도</p> <p>라. 우수처리시설 설계도서</p> <p>마.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우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p>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인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기부등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4. 1. 14., 2016. 12. 27.></p> <p>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 인가</p>	<p>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p> <p>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p> <p>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5. 29.]</p>	<p>2. 지적도 및 임야도</p> <p>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p> <p>1. 위치도</p> <p>2. 공원시설관리계획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p> <p>4. 삭제 (2010. 4. 15.)</p> <p>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p> <p>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p> <p>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p> <p>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p> <p>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p> <p>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p> <p>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p> <p>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p> <p>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p> <p>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p> <p>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p> <p>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허가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p>제16조(환매권)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말한다. <개정 2010. 10. 1.></p> <p>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 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p> <p>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9. 30.></p> <p>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6.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 6. 12.>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p>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6. 7. 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p> <p>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p> <p>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p> <p>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p> <p>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p> <p>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p> <p>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p>	<p>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장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p> <p>5. 삭제 <2006. 6. 12.></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10. 5. 4., 2010. 10. 1.></p> <p>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p> <p>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p> <p>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10. 10. 1., 2011. 9. 30., 2020. 12. 8.></p> <p>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p> <p>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p> <p>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p>	<p>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p>1. 토지등기부등본</p> <p>2. 지적도 및 입야도</p> <p>제19조 삭제 <2010. 10. 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용도변경하는 행위</p> <p>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p> <p>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1. 5. 3., 2011. 9. 30., 2014. 7. 14.,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의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7.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p> <p>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p> <p>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입산물의 채취행위</p> <p>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p> <p>9의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p> <p>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행위</p> <p>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p> <p>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p> <p>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관리를 위한 행위</p> <p>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p> <p>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p> <p>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 9. 30.></p> <p>제20조(자연동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p>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p>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20. 6. 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8. 6.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철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굿둑·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삭제 <2010. 10. 1.> <p>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 2 본문에서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淤)·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구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8. 6. 5.> [본조신설 2007. 7. 4.]</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p> <p>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수량·방치장소·제거일시·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 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p> <p>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7. 7. 4.]</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이 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 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 	<p>제23조 삭제 (2010. 10. 1.)</p> <p>제24조 삭제 (2010. 10. 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5. 29.]</p> <p>제25조 삭제 (2008. 12. 31.)</p> <p>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전문개정 2008. 12. 31.] <p>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딸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땃·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p>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시설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삼한 약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7. 4. 1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p>	<p>④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입야에 심는 행위 <p>[전문개정 2018. 3. 13.]</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p>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p>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6.> [제목개정 2010. 10. 1.]</p> <p>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구역·목적·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 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라.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경우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1조(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2조(감독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p> <p>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3조(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4조(사법경찰관)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방</p>	<p>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p>	<p>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 10. 6.>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p>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5.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p> <p>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p>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29.]</p> <p>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p>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p>	<p>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p> <p>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p>[본조신설 2012. 1. 26.]</p> <p>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p>	<p>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p>[본조신설 2012. 1. 27.]</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p>	<p>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p> <p>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 26.]</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본조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p> <p>1. 지질유산의 조사</p> <p>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p> <p>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p> <p>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p> <p>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p> <p>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지질공원의 명칭</p> <p>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p> <p>3. 인증취소 연월일</p> <p>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p> <p>[본조신설 2012. 1. 27.]</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 12. 31.></p> <p>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p>	<p>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7.]</p> <p>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p> <p>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p> <p>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p> <p>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9. 12. 31.></p> <p>1. 국민 및 그 수행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산실 2011. 4.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p>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p> <p>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p>		<p>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도지사가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p> <p>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p> <p>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p> <p>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p> <p>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7.></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에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 시·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p>		<p>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 2018. 10. 16.></p>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p> <p>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6장 삭제 (2016. 5. 29.)</p> <p>제44조 삭제 (2016. 5. 29.) 제45조 삭제 (2016. 5. 29.) 제46조 삭제 (2016. 5. 29.) 제47조 삭제 (2008. 12. 31.) 제48조 삭제 (2016. 5. 29.) 제49조 삭제 (2016. 5. 29.) 제50조 삭제 (2016. 5. 29.) 제51조 삭제 (2008. 12. 31.) 제52조 삭제 (2008. 12. 31.) 제53조 삭제 (2008. 12. 31.) 제54조 삭제 (2016. 5. 29.) 제55조 삭제 (2016. 5. 29.) 제56조 삭제 (2008. 12. 31.) 제57조 삭제 (2008. 12. 31.) 제58조 삭제 (2016. 5. 29.) 제59조 삭제 (2016. 5. 29.) 제60조 삭제 (2016. 5. 29.) 제61조 삭제 (2008. 12. 31.) 제62조 삭제 (2016. 5. 29.) 제63조 삭제 (2008. 12. 31.) 제64조 삭제 (2016. 5. 29.) 제65조 삭제 (2016. 5. 29.)</p>	<p>제28조 삭제 (2017. 5. 29.) 제29조 삭제 (2017. 5. 29.) 제30조 삭제 (2017. 5. 29.) 제31조 삭제 (2017. 5. 29.) 제32조 삭제 (2017. 5. 29.) 제33조 삭제 (2017. 5. 29.) 제34조 삭제 (2017. 5. 29.) 제35조 삭제 (2017. 5. 29.) 제36조 삭제 (2010. 10. 1.) 제37조 삭제 (2017. 5. 29.) 제38조 삭제 (2017. 5. 29.) 제39조 삭제 (2017. 5. 29.)</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66조 삭제 <2016. 5. 29.> 제67조 삭제 <2016. 5. 29.> 제68조 삭제 <2016. 5. 29.> 제69조 삭제 <2016. 5. 29.></p> <p>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p> <p>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2.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②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換地)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6. 5. 29.></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 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4. 15., 2011. 4. 5., 2019. 11. 26.,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 4. 15.>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p>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7. 20.,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p>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宅地)나 답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p>		<p>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p> <p>③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p>	<p>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p> <p>제41조의3(상·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9. 27., 2008. 9.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p>②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p>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p> <p>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5. 29.></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 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본조신설 2011. 4. 5.] [제목개정 2016. 5. 29.]</p> <p>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p> <p>제76조(협약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p>	<p>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숙박비·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29.></p> <p>[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7. 5. 29.]</p> <p>제42조(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016. 5. 29.)</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목개정 2016. 5. 29.]</p> <p>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p>[전문개정 2020. 12. 8.]</p> <p>제44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8조(토지매수 청구서의 제출서류)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p>	<p>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2. 토지의 지번·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p> <p>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p> <p>4. 매수청구사유</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 12. 8.></p> <p>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p>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p>	<p>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p> <p>2. 삭제 (2006. 7. 4.)</p> <p>3. 삭제 (2010. 10. 1.)</p> <p>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p>1. 토지등기부등본</p> <p>2. 토지이용계획확인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산설 2016. 5. 2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p>	<p>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p>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4., 2008. 9. 18.,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p> <p>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p> <p>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p> <p>4.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p> <p>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p> <p>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p> <p>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p> <p>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p> <p>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p> <p>7. 삭제 <2010. 10. 1.></p> <p>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p> <p>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p> <p>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p> <p>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p> <p>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p> <p>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p> <p>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p> <p>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p> <p>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p> <p>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p>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p> <p>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p> <p>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p> <p>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p> <p>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p> <p>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사항</p> <p>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사항</p> <p>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p> <p>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사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과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5.></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p> <p>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장 별칙 <개정 2008. 12. 31.></p> <p>제8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p>	<p>1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원사용료징수 허가에 관한 사무</p> <p>13. 법 제60조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관한 사무</p> <p>14.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p> <p>15.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p> <p>16. 법 제7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p> <p>17.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무</p> <p>18.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p> <p>19.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2. 1. 6.]</p>	<p>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문화·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p>[본조신설 2011. 10. 6.]</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p> <p>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p> <p>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p> <p>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p> <p>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p> <p>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p> <p>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땃·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p> <p>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p> <p>[전문개정 2008. 12. 31.]</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휴면행위를 한 사람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 	<p>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p> <p>[전문개정 2008. 9. 18.]</p> <p>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찰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p> <p>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p>	<p>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공단 직원이나 시·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2008. 9. 19.></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p> <p>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p> <p>1. 삭제 <2016. 12. 27.></p> <p>2. 삭제 <2016. 12. 27.></p> <p>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p> <p>[전문개정 2008. 12. 31.]</p> <p>부칙 <제6450호, 2001. 3.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80호, 2001. 9. 29.></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p>	<p>제3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17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4. 4. 30.]</p> <p>부칙 <제117호, 2001. 10.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조(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p> <p>제4조(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4호, 2002. 2. 4.) (국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p> <p>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p> <p>⑭내지 ⑯생략</p> <p>제7조 생략</p>	<p>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p> <p>③(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p> <p>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09호, 2002. 12. 18.) (국토기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별계획”으로 한다.</p> <p>⑤및 ⑥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6호, 2005. 9. 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이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5호, 2006. 5. 30.)</p> <p>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7호, 2007. 6.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벌칙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p> <p>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⑥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p> <p>④내지 ③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17952호, 2003. 4. 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인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073호, 2005. 9.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물체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p>	<p>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p> <p>㉔내지 ㉔7)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7456호, 2005.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p> <p>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p>	<p>지구”로 한다.</p> <p>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p> <p>부칙 <제19370호, 2006. 3. 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8호, 2008. 9. 19.></p> <p>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9호, 2010. 10. 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05호, 2011. 3.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④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p> <p>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p> <p>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내지 <8>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8211호, 2007. 1.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p>	<p>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p> <p><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171>내지 <241>생략</p> <p>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p> <p>④내지 ⑤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0008호, 2007. 4. 1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4호, 2011. 10. 6.></p> <p>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6호, 2012. 1. 27.></p> <p>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02호, 2017. 5. 30.></p> <p>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1호, 2019.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②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63호, 2007. 7.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부터 ⑱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34조제1항”으로 한다. ④9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⑧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⑯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5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부터 ⑲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13호, 2008. 9. 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9313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p> <p>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⑰ 부터 ㉕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㉔ 부터 ㉘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p> <p>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p> <p>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⑦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p>	<p>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축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부터 <192> 까지 생략</p> <p>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⑰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420호, 2010. 10. 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p> <p>제7조제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p>	<p>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p> <p>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915호, 2011. 5. 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194호, 2011. 9.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지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지설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세분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p> <p>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p> <p>⑯ 전월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p> <p>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p> <p>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⑲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⑳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유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㉑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부칙 (제23558호, 2012. 1. 26.)</p> <p>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㉖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㉗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㉙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㉚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㉛부터 ㉜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p> <p>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01호, 2010. 2.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p>	<p>㉔부터 ㉙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29>부터 <41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16호, 2015. 6.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권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②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권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권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④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제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p>	<p>부칙 <제27245호, 2016. 6. 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8077호, 2017. 5.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10548호, 2011. 4.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47 685 557 789"> <tr> <td>168</td> <td>「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3호</td> <td>공원마을지구</td> </tr> <tr> <td>170의2</td> <td>「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6호</td> <td>공원문화유산지구</td> </tr> </table> <p>부칙 <제10978호, 2011. 7. 2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168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p>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4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p> <p>부칙 <제28157호, 2017. 6.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253>부터 <388>까지 생략</p>	
168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⑧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⑧7)부터 ①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228호, 2016. 5. 29.></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98호, 2018. 3.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실시 중인 평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46호, 2018. 6. 5.> (일본식 용어 정비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p> <p>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489호, 2019. 1. 15.>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704호, 2020. 5.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④부터 <65>까지 생략</p> <p>부칙 <제14492호, 2016.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4782호, 2017. 4. 18.></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198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국립공원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p> <p>⑫부터 ⑱까지 생략</p> <p>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1237호, 2020. 12.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⑤ 생략</p> <p>부칙 <제1583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문화재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425호, 2020. 6. 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p>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p>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1415
[별표 1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1415
[별표 1의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416
[별표 1의4]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물증자생산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1416
[별표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1418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418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3조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도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별표 1의2] <개정 2020. 12. 8.>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제14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규모
공공시설	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교통·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란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 지역	면적(km ²)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	0.29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내	0.23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2. 허용기준

-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4] <개정 2017. 5. 29.>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

(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외의 자
해상 양식 어업 시설	해조류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나. 연승식	1 이상 1 이상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패류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나. 연승식 다. 땃목식	1 ~ 5 1 ~ 20 1 ~ 30	1 ~ 5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나. 투석식 등 1) 간석지 2) 천해 다. 침하식	1 ~ 100 1 ~ 30	1 ~ 20 1 ~ 20
			3.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20
	어류등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나. 땃목식	1 ~ 20 1 ~ 20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간석지 2) 천해 나. 투석식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한다)	1 ~ 100 1 ~ 30 1 ~ 20 1 ~ 20	1 ~ 20 1 ~ 20 1 ~ 20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외의 자
복합 양식어업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과 어류 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1 ~ 30	1 ~ 20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류만 해당한다)	1 ~ 100	1 ~ 20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0	1 ~ 20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20	1 ~ 20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	1 ~ 5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1 ~ 10	1 ~ 10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1 ~ 10	1 ~ 10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	1 ~ 5	1 ~ 5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으로 양식)	1 ~ 5	1 ~ 5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외의 자
		하는 굴과 그 밖의 패류만 해당한다)		
		4.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협동 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해상수산종자생산시설			1 이상	1 이상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범위
자연생태 체험사업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복원 현장 탐방
문화생태 체험사업	1. 전통시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무덤 등의 답사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체험
농어촌생태 체험사업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생활 체험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건강생태 체험사업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부대사업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별표 3] <개정 2018. 3.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10	20	3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5	5	5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5호	10	20	3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5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1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营业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4항	10	10	10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30	40	50

13.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423
[별표 1의2] 삭제 <2008.9.19.>	1423
[별표 2] 삭제 <2008.9.19.>	1423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1423

[별표 1] (신설 2012.1.27)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본소양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서비스교육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학	12
	커뮤니케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해설프로그램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응급처치	

2. 전문과정: 6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지질의 이해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지형의 이해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지질공원 제도의 이해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지질공원 해설실무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자연환경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문화관광	문화·역사·예술 자원	8

13.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삭제 <2008.9.19>

[별표 2] 삭제 <2008.9.19>

[별표 3] <개정 2019. 12. 20.>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0이상

14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434	제1조(목적) 1434	제1조(목적) 1434
제2조(정의) 1435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1437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438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1438
제5조(자연보호운동) 1440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1439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1440	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441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1441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1441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1442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442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1443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443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1443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 1444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1444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1444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1445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1445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1445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1445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1447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447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1446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447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1448 제12조(재해의 범위) 1448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1449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450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451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1449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1450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1451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1453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1452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1453
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1454	제17조(금지행위) 1453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1455
제17조(중지명령 등) 1455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1455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1455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1455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1456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1456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1456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1457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1457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1457		
제22조(자연유보지역) 1457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1458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1458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1459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1459		제9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1458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1459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1459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61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1460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461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461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1460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1462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462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1463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1464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1465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1465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1466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1464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1465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465	제24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 1466 제25조(별도관리지역) 1467	제16조(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1467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1466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1468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1468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1468	제16조의2 삭제 1469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1469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1470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1470 제20조 삭제 1471 제21조 삭제 1471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1469	제29조 삭제 1469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1471	제30조 삭제 1471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1471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1471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1472
제37조 삭제 1472	제32조 삭제 1472	제23조 삭제 147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p> <p>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472</p> <p>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1474</p> <p>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1474</p> <p>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1475</p> <p>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1476</p> <p>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1477</p> <p>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1478</p> <p>제44조 삭제 1479</p> <p>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1479</p> <p>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148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 1. 5.></p> <p>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1481</p> <p>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1482</p> <p>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 1483</p> <p>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14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 1. 5.></p> <p>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1484</p>	<p>제33조 삭제 1472</p> <p>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1474</p> <p>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1475</p> <p>제35조의2(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1479</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1485</p>	<p>제24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73</p> <p>제25조(시설의 이용료) 1473</p> <p>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1476</p> <p>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등) 1476</p> <p>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1478</p> <p>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1478</p> <p>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1479</p> <p>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1480</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1485	
	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1486	
	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1487	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1487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1487
		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1487
	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1488	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1488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1488	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1488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1488	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1488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1489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1489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1489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1490	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1490	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1490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1491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491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1492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1492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1492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1493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1494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1494	
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1495		
제53조(손실보상) 1496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1496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1496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1496	제38조(재결신청서) 1496
제54조(국고보조 등) 1497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1497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1497
		제40조(사업계획 등) 1497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1498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1498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1498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499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499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중) 1499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1499	제51조 삭제 1499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1499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1500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1500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1501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1501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01	제52조(권한의 위임) 1501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1503	
제62조 삭제 1503	제53조(보고) 1503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1503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03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1504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1504		
제64조(벌칙) 1505		
제65조(양벌규정) 1505		
제66조(과태료) 1505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505	제43조 삭제 1505
부칙 1506	부칙 1506	부칙 1506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1991.12.31 법률 제4492호 전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97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4.11 법률 제8355호 (광업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 5.17 법률 제8468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9. 1.30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 1.27 법률 제9982호 (광업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28 법률 제10979호 2012. 2. 1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 3.22 법률 제11671호 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2. 3 법률 제13168호 2016. 1.27 법률 제13885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0호 2018.10.16 법률 제15839호 2019.12.10 법률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별첨되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6호</p>	<p>제정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4호 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5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유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4. 4 대통령령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광업법 시행령)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6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 5.26 대통령령 제2079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 4.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 7.16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 7.27 대통령령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레드문송법 시행령)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환경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광업법 시행령)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6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26 대통령령 제23559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정 1992. 8.31 총리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 제191호 2006. 6.30 환경부령 제206호 2007. 9.27 환경부령 제422호 (광업법 시행규칙) 2007.10. 1 환경부령 제249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2007.11.16 환경부령 제259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환경부령 제3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1.31 환경부령 제447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12. 7.27 환경부령 제46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9.23 환경부령 제519호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5.28 환경부령 제76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p>	<p>2012. 7.31 대통령령 제240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2013. 9.23 대통령령 제24762호</p> <p>2013.12.11 대통령령 제24997호</p> <p>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3.24 대통령령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p> <p>2014. 4.29 대통령령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p> <p>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p> <p>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2014.12. 9 대통령령 제25837호</p> <p>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8. 5.21 대통령령 제28896호</p> <p>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8.11.27 대통령령 제2931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2019. 3.12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0. 4., 2012. 2. 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기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식공간을 말한다.</p> <p>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洲)·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p> <p>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p> <p>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p> <p>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p> <p>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p> <p>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p> <p>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p> <p>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p> <p>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p> <p>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p> <p>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p> <p>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p> <p>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 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p> <p>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p> <p>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p> <p>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p> <p>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p> <p>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p> <p>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p>		<p>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p> <p>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p> <p>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p> <p>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p> <p>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p> <p>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p> <p>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p> <p>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p> <p>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p> <p>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p> <p>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p>		<p>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1. 7. 21., 2017. 11. 28.></p> <p>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p>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p> <p>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p> <p>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p> <p>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p>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 2. 4.></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5. 26.></p>	<p>계획</p> <p>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p> <p>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p> <p>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p>	<p>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p> <p>8.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p> <p>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p> <p>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p>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p> <p>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p> <p>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결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5. 26.></p>	<p>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p>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써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p> <p>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p> <p>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경우 2.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땃·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09. 6. 9., 2017. 11. 2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p>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p>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협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 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4.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p> <p>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p> <p>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p>	<p>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p> <p>②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p>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9. 6. 9., 2014. 6. 3., 2020. 5. 26., 2021. 1. 5.></p> <p>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p> <p>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p> <p>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p> <p>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묘지의 설치</p> <p>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1. 제3항 각호의 행위</p>	<p>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p> <p>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p> <p>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p> <p>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p> <p>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p> <p>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분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p> <p>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p>	<p>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p> <p>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p>2. 증·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전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p>	<p>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2008. 10. 29., 2009. 7. 16.></p> <p>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p> <p>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p> <p>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총포판매사·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p> <p>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p> <p>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p> <p>바. 초등학교</p>	<p>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p> <p>2. 증·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p> <p>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p> <p>2. 증·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p> <p>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p> <p>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p>③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p>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8. 4. 3., 2010.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 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대상 사업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p>	<p>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개축시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동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 	<p>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 	<p>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땃·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는 해당 지역주민</p> <p>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3. 군사목적에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p> <p>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7.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환</p>	<p>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23.]</p> <p>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p>	<p>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p>[본조신설 2013. 9. 23.]</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5. 26.></p> <p>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p> <p>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p>	<p>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p> <p>②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p>[제목개정 2009. 7. 27.]</p> <p>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한</p>	<p>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증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7.</p>		<p>제9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1.,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2020. 5. 26.></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다. 생태·경관보전지역</p> <p>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5. 26.></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p>	<p>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p> <p>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p> <p>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p> <p>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p>	<p>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형태·색채·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p>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1., 2020. 5. 26.)</p> <p>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정·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p>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p>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p> <p>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하천·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p>④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 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p>		<p>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및 예산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의 선정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주기 4. 관찰내용 및 방법 5. 관찰결과의 기록 <p>③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26.)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p>		<p>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본다. <개정 2020. 5. 26.></p> <p>④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p> <p>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p> <p>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p> <p>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p> <p>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p> <p>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p> <p>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p> <p>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p>	<p>제24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별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4. 4.></p> <p>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p> <p>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p>	<p>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별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되는 지역</p> <p>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10. 3. 9., 2010. 12. 29., 2012.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p>제16조(생태·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④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p>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p>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p> <p>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p> <p>⑥ 삭제 <2017. 11. 28.></p> <p>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p>	<p>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p> <p>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p> <p>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p> <p>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p> <p>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p> <p>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p> <p>제29조 삭제 (2008. 10. 20.)</p>	<p>제16조의2 삭제 <2018. 5. 28.></p> <p>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p> <p>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p> <p>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5. 28.]</p> <p>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4. 제작결과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5. 28.]</p> <p>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p> <p>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2. 2. 1.> 2. 삭제 <2012. 2. 1.> 3. 삭제 <2012. 2. 1.> 4. 삭제 <2012. 2. 1.> 5. 삭제 <2012. 2. 1.> 6. 삭제 <2012. 2. 1.> <p>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제목개정 2012. 2. 1.]</p> <p>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1.></p> <p>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③ 삭제 <2012. 2. 1.></p>	<p>제30조 삭제 <2018. 5. 21.></p> <p>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 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p>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5. 28.]</p> <p>제20조 삭제 <2013. 9. 23.></p> <p>제21조 삭제 <2013. 9. 23.></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목개정 2012. 2. 1.]</p> <p>제37조 삭제 <2012. 2. 1.></p> <p>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p> <p>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p>	<p>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p> <p>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p> <p>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p> <p>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 현황</p> <p>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 4. 4.></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p>제32조 삭제 (2018. 5. 21.)</p> <p>제33조 삭제 (2018. 5. 21.)</p>	<p>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p> <p>②영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23조 삭제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p> <p>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 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p> <p>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p> <p>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p> <p>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24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p>제25조(시설의 이용료)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p>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p> <p>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p>	<p>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p>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p>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p>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p> <p>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p>	<p>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2.></p> <p>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p>		<p>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생태마을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심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생태·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도지정생태마을"로 본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p>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 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을"은 "시·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p>		<p>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8. 5. 28.]</p> <p>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p>④ 정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도지사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4조 삭제 <2021. 1. 5.></p> <p>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p>	<p>제35조의2(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p> <p>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8.]</p> <p>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3. 9.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야생생물 서식 중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중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중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8., 2018. 10. 16., 2020. 5. 26.></p> <p>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p>	<p>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지질·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중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p>	<p>다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9. 23.></p> <p>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 1. 5.>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p> <p>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p>		<p>작동시켜 조사</p> <p>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p>[본조신설 2013. 9. 23.]</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p> <p>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p> <p>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p> <p>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p>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p> <p>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p> <p>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p> <p>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p> <p>4.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p> <p>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정 2021. 1. 5.></p> <p>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5.></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9. 23.></p> <p>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8., 2013. 9. 23.></p> <p>[전문개정 2007. 11. 15.]</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2007. 1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017. 11. 28., 2021. 1. 5.)</p> <p>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p>	<p>경이 이루어지는 행위</p> <p>2.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p> <p>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p> <p>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p> <p>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p>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5. 21.)</p> <p>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8. 5. 21.)</p> <p>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담·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p> <p>2. 녹지지역 : 2</p> <p>3. 생산관리지역 : 2.5</p> <p>4. 농림지역 : 3</p> <p>5. 보전관리지역 : 3.5</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 자연환경보전지역 : 4</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5.></p> <p>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p> <p>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p> <p>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8. 5. 21.]</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5. 28.></p> <p>1. 1억원 이하 : 2회 이하</p> <p>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p> <p>2. 2억원 초과 : 4회 이하</p> <p>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6. 30.></p> <p>[전문개정 2007. 11. 16.]</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①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p>	<p>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1.]</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3.></p>	<p>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p> <p>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p>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p>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p>	<p>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p> <p>[본조신설 2013. 9. 23.]</p> <p>[제목개정 2018. 5. 28.]</p>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p> <p>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p> <p>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p> <p>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11. 7. 28., 2012. 2. 1., 2013. 3. 22., 2019. 12. 10., 2020. 5. 26., 2021. 1. 5.></p> <p>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p>		<p>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p> <p>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p>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p> <p>2. 삭제 <2021. 1. 5.></p> <p>3. 삭제 <2021. 1. 5.></p> <p>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p> <p>5. 제19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p> <p>6. 삭제 <2021. 1. 5.></p> <p>7. 삭제 <2021. 1. 5.></p> <p>8. 삭제 <2021. 1. 5.></p> <p>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p> <p>10. 삭제 <2021. 1. 5.></p> <p>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p> <p>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 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p> <p>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p> <p>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p> <p>1. 삭제 <2013. 9. 23.></p> <p>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p> <p>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p> <p>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p>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p>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p> <p>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2021. 1. 5.></p> <p>[제목개정 2021. 1. 5.]</p>	<p>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p> <p>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p> <p>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p> <p>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p>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 11. 15.></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p> <p>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p> <p>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p> <p>2. 반환받은 횟수가 2회 이하일 것</p> <p>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p>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007. 11. 15.)</p> <p>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p>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p> <p>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험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p>11. 16., 2013. 9. 23.)</p> <p>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18.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6.></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한한다)</p> <p>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p> <p>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p> <p>7. 하천·도로·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p> <p>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p> <p>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p> <p>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p> <p>11. 녹지지역·경관지구의 설정</p> <p>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p> <p>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p> <p>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p> <p>1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p> <p>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p> <p>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p> <p>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p>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p>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제목개정 2016. 1. 27.]</p> <p>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p>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p> <p>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p> <p>제40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3. 22.]</p> <p>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 국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徴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p>		<p>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011. 7.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p>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 5. 26.></p> <p>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p> <p>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 4. 4.></p> <p>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p>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p> <p>제51조 삭제 (2012. 1. 26.)</p>	<p>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등)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p> <p>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5. 28.></p> <p>② 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방법·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8.]</p> <p>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 [본조신설 2012. 1. 31.] [제목개정 2018. 5. 28.]</p> <p>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 5. 28.></p> <p>②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p>③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11. 7. 28.]</p> <p>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3. 3. 22., 2020. 5. 26.></p>	<p>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9.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p>다. <신설 2018. 5.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p> <p>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5. 28.></p> <p>[본조신설 2012. 1. 31.] [제목개정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등의 매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p>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26., 2013. 9. 23., 2018. 5.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법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금지 및 고시 4의3.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금지 해제 및 고시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증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삭제 <2018. 5. 21.> 8.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62조 삭제 <2006. 10. 4.></p>	<p>10.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p> <p>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p> <p>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p> <p>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p> <p>③ 삭제 <2007. 4. 4.></p> <p>제52조의2(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 5. 21.></p> <p>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p> <p>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p> <p>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p> <p>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p> <p>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p> <p>[본조신설 2013. 12. 11.]</p> <p>제53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2018. 5. 21.></p> <p>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p>	<p>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3.></p> <p>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9. 23.></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26.></p> <p>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p>	<p>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 5. 21.>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p> <p>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6. 12. 30.]</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p> <p>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p> <p>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p> <p>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p> <p>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p> <p>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p> <p>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p> <p>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26.></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20. 5. 26.></p> <p>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p> <p>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p>	<p>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전문개정 2011. 3. 29.]</p>	<p>제43조 삭제 (2012. 1. 31.)</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p> <p>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p> <p>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26.></p> <p>④ 삭제 <2017. 11. 28.></p> <p>⑤ 삭제 <2017. 11. 28.></p> <p>⑥ 삭제 <2017. 11. 28.></p> <p>부칙 <제7297호, 200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4조(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p>	<p>부칙 <제19245호, 2005. 12. 30.></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p> <p>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1호, 2005. 12. 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06호, 2006. 6. 30.></p> <p>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2호, 2007. 9. 27.> (광업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p> <p>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p> <p>②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p> <p>③ 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p> <p>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④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p> <p>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①71 생략 <17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 내지 <241> 생략</p> <p>부칙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4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p> <p>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령</p> <p>⑥ 내지 ⑥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9991호, 2007. 4.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p>	<p>한다.</p> <p>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9호,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로 한다.</p> <p>⑥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59호, 2007. 11. 1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p> <p>⑥환경법외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p> <p>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p> <p>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6호, 2008.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p> <p>②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447호, 2012. 1. 31.></p> <p>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p> <p>⑤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045호, 2006. 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p> <p>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p>	<p>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p> <p>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p> <p>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p> <p>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0222호, 2007. 8. 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 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469호, 2012. 7.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p>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p> <p>제62조를 삭제한다.</p> <p>③내지 ⑥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355호, 2007. 4. 11.> (광업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p> <p>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⑯내지 ⑳생략</p> <p>제6조 생략</p>	<p>조”로 한다.</p> <p>⑪ 부터 ⑭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20256호, 2007. 9. 10.> (광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p> <p>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0386호, 2007. 11.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노천탐광·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부칙 <제519호, 2013. 9. 2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3호, 2015. 12. 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60호, 2018. 5.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연환경해설사는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468호, 2007. 5. 1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p>	<p>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부칙 <제20763호, 2008. 4. 3.> (하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⑮ 부터 ㉑ 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0791호, 2008. 5.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⑳ 까지 생략</p> <p>부칙 <제21087호, 2008. 10.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②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법”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법”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p> <p>④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9774호, 20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부터 ④ 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부칙 <제9982호, 2010. 1. 27.></p>	<p>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p> <p>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p> <p>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p> <p>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p> <p>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충포판매소”를 “충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p> <p>② 부터 ③ 까지 생략</p> <p>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광업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양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p> <p>제8조제2항·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양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p>	<p>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p> <p>⑭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1445호, 2009. 4. 21.>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p> <p>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p> <p>⑰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1629호,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p> <p>⑩ 부터 ㉒ 까지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⑩부터 ⑮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1641호,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p> <p>⑥ 부터 <65> 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21807호, 2009. 11. 2.> (궤도운송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p> <p>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p> <p>⑲ 부터 ㉕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p> <p>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법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⑥부터 ③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p> <p>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p> <p>제36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p> <p>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p>	<p>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부터 <64>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부터 ⑥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2호, 2009. 12. 14.> (항만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p> <p>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p> <p>⑲ 부터 ㉗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른 서식지의보전기관의 지원</p> <p>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p> <p>⑬부터 ㉑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10979호, 2011. 7. 2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257호, 2012. 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p> <p>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p> <p>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p> <p>㉒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p> <p>㉓ 부터 ㉘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22073호, 2010. 3. 9.> (산림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p> <p>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p> <p>⑫ 및 ⑬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p> <p>㉒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p> <p>제36조의 제목“(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p> <p>제37조를 삭제한다.</p> <p>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p> <p>⑦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71호, 2013. 3. 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p>	<p>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p> <p>⑨부터 ⑯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56호, 2010. 12. 28.〉 (광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560호, 2010. 12.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3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p> <p>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p> <p>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p> <p>⑪부터 ⑮까지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p> <p>②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 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p> <p>⑧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38호,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3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부터 <65>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736호, 2011. 3.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529호, 2012. 1. 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39조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p> <p>⑧부터 ⑭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559호, 2012. 1. 26.></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168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8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00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제6항, 제59조제3항·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회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p> <p>제6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p> <p>②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p> <p>2. 시</p> <p>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p> <p>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p> <p>③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p> <p>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001호,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p> <p>⑨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⑰부터 ㉔까지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5839,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806호, 2019. 12.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46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4762호, 2013. 9. 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4997호, 2013. 12. 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273호, 2014. 3. 24.>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계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p>⑨부터 ⑬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p> <p>㉑부터 ㉓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p> <p>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㉗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13호, 2014. 11.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37호, 2014. 12.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302호,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부터 <54>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896호, 2018. 5.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 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0호, 2018. 11. 2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p> <p>⑮부터 ㉓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⑰부터 ㉓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1531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531
[별표 2의2]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1535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1535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536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제20조제2항 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말당담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1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1)부터 (3)까지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중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p> <p>(가) 발전소 (나) 345kW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kW 이상의 옥외변전소</p> <p>(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집단지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p> <p>(가) 발전소 (나) 345kW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kW 이상의 옥외변전소</p> <p>(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p> <p>(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라. 항만의 건설	<p>(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p>(다)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p> <p>(다)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p> <p>(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p>(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마.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p> <p>(가) 도로의 신설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p>
바. 수자원의 개발	<p>(1) 「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굿둑의 설치공사</p> <p>(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p>
사.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 한)의 건설	<p>(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p>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아.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자.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창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카. 특정 지역의 개발	(1) 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타. 체육 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별표 2의2] <신설 2018. 5. 21.>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퍼센트)
1. 생태·경관보전지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2.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3.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0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00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100
6.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100

1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3] <개정 2019. 7.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500	700	1,0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100 50	150 70	200 10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539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540
[별표 2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540
[별표 2의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1541
[별표 3]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 관련)	1541

[별표 1]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유형	지정기준
1. 자연생태 우수마을	<p>가. 총괄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p> <p>나. 지역환경 여건</p> <p>(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p> <p>(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p> <p>(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업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p> <p>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p> <p>(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p> <p>(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p> <p>(3) 지역문화 : 전통 문화재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p>

유형	지정기준
2.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p>가. 총괄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p> <p>나. 복원효과 (1) 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2)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p> <p>다. 활용 효과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p>

[별표 2] <개정 2019. 12. 20.>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 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압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8. 5. 28.>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
가. 해설안내	25	11	49	8
나. 자연환경의 이해	39	13	21	6
다.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	7	19	2
라. 커뮤니케이션	5	4	11	8
마. 합계	80	35	100	24

2. 비고

- 가.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나.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 라.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별표 2의3] <신설 2012.1.3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 가. 강의실
 - 나. 실습장
 - 다. 화장실, 급수시설
 -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인력기준
 - 가.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무인력 1명
 - 나. 전임강사 1명

[별표 3]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수시	사유발생시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법 제19조)	연 1회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법 제46조 및 제48조)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5.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법 제42조)	지정 : 연 1회 해제 : 수시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 사유발생시

15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554	제1조(목적) 1554	제1조(목적) 1554
제2조(정의) 155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556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1556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1557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1557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1557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1557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1557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1558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1558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1560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561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1561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156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563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1564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564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1564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1564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1564	제8조(심의를 생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1565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1565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1565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156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1567</p> <p>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568</p> <p>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1571</p> <p>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1574</p> <p>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574</p> <p>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1576</p> <p>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p> <p>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576</p>	<p>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1566</p> <p>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1567</p> <p>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568</p> <p>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1569</p> <p>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1570</p> <p>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1571</p> <p>제15조(설명회의 개최) 1571</p> <p>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1572</p> <p>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572</p> <p>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1573</p> <p>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574</p> <p>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574</p> <p>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576</p> <p>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1577</p>	<p>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1570</p> <p>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1571</p> <p>제5조(공청회의 진행) 1571</p> <p>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1572</p> <p>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1574</p> <p>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1574</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577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 1577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1578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 1580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580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1580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1580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1580	
제20조(재협의) 1581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 1580	
제21조(변경협의) 1582	제28조(재협의 대상) 1581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1582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1582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1584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584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1585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585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1585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1585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1588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1585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1587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1588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1587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587	제11조(공청회의 진행) 1589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1588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1589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159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594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1590 제39조(설명회의 개최) 1591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1591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1592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593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593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 1593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1594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1592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1594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p>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1596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1596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1596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597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597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598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599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599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600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1600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1600
제31조(조정 요청 등) 1600	제52조(조정 요청) 1600	
제32조(재협의) 1601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1601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1601	
제33조(변경협의) 1603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1603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1603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160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605</p> <p>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p> <p>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1607</p> <p>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1608</p> <p>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609</p> <p>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1609</p> <p>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1610</p> <p>제40조(조치명령 등) 1610</p> <p>제40조의2(과징금) 1611</p> <p>제41조(재평가) 1612</p> <p>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613</p> <p>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p>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613</p> <p>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1614</p>	<p>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p> <p>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1608</p> <p>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1609</p> <p>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1609</p> <p>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 1610</p> <p>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1611</p> <p>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1612</p> <p>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613</p> <p>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p>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1613</p> <p>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614</p>	<p>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1606</p> <p>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1607</p> <p>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607</p> <p>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1608</p> <p>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1608</p> <p>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1609</p> <p>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610</p> <p>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1610</p> <p>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1612</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1616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1617 제46조의2(변경협의) 1618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1619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1620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1620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1615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1616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1616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1616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1618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p>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1620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1620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1622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p>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1620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1621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 1622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1622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p>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623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p>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1623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1624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1624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1625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 1624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1625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162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626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626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1626
제55조(결격사유) 1628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1627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628		제25조 삭제 1628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1630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1629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1630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1629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1631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1630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업무 계속) 1632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1630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1632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1631
제60조(보고·조사) 1632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633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1633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1635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1634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1635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635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1636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1635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1636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1636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1638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1639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1639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1639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639
	제71조(응시자격) 164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1641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1642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1642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1643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1643 제67조(청문) 1644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1644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1644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645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1645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46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1651 제74조(벌칙) 1652 제75조(양벌규정) 1653 제76조(과태료) 1654 부칙 1657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1640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1641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1641 제75조 삭제 1642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1643 제77조(위임 및 위탁) 1646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1651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654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56 부칙 1657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1641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1641 제34조 삭제 1642 제35조 삭제 1642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1642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1642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643 제38조(규제의 재검토) 1651 부칙 165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정 1993. 6.11 법률 제4567호 전부개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2011. 8. 4 법률 제1101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p> <p>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5. 1.20 법률 제13040호 2015. 7.24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p> <p>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5.29 법률 제14232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6호 2018. 6.12 법률 제15662호 2019.11.26 법률 제16617호</p>	<p>제정 1993.12.11 대통령령 제14018호 전부개정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4.29 대통령령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 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5. 3.30 대통령령 제26170호 2015. 7.24 대통령령 제26438호 (역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p> <p>2015.12.30 대통령령 제26807호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p> <p>2016. 3.25 대통령령 제27057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6.28 대통령령 제272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6.11.29 대통령령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7. 3.29 대통령령 제27972호 (공방시설법 시행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 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1호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3.12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9. 4.23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2019.12.31 대통령령 제30292호</p>	<p>제정 1993.12.11 총리령 제442호 전부개정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법·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4.12. 2 환경부령 제580호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기술의 재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6. 1.14 환경부령 제636호 2016.11.30 환경부령 제680호 2017. 5.30 환경부령 제700호 2018.11.29 환경부령 제78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2019.12.30 환경부령 제838호 2020. 5.25 환경부령 제863호</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 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020. 2.25 대통령령 제3048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5.12 대통령령 제30673호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 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형안법 시행령) 2020. 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형안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대통령령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p> <p>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p> <p>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p> <p>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p> <p>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p> <p>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p> <p>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p> <p>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p> <p>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p> <p>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p> <p>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p> <p>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p> <p>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p>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p>	<p>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11. 29.]</p> <p>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p> <p>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p>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p> <p>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p> <p>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p> <p>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p> <p>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p> <p>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p>	<p>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p> <p>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p>	<p>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p>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 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p>	<p>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 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6. 11. 29.]</p> <p>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6. 11. 29.]</p>	<p>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 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p>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를 요청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1. 30.]</p> <p>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제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p>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p>	<p>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11., 2018. 11. 27.></p> <p>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概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p> <p>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p>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개정 2016. 11. 29.></p> <p>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p>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p>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p>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p> <p>[본조신설 2016. 11. 29.]</p> <p>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p> <p>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5부 <p>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p>	<p>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p>	<p>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p>	<p>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p>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p>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p> <p>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27.></p>	<p>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p> <p>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p> <p>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p> <p>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p> <p>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p> <p>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p> <p>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p> <p>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 한다) 5.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p>	<p>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p>	<p>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p>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p> <p>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p>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p>	<p>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p> <p>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p> <p>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p> <p>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p> <p>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p> <p>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p> <p>[제목개정 2016. 11. 29.]</p> <p>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p>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p>	<p>"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p>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p> <p>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p>[전문개정 2019. 12. 31.]</p> <p>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와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p>	<p>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4. 12. 2.]</p> <p>[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p> <p>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p>제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p> <p>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p> <p>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p> <p>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의 합이 1이 되는 면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p> </div>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p> <p>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p> <p>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p> <p>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 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p> <p>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p> <p>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p> <p>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p> <p>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p>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p> <p>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p>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p> <p>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p> <p>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p>	<p>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p>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p> <p>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p> <p>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p> <p>3. 토지이용 상황</p> <p>4. 사업의 성격</p> <p>5. 환경 특성</p> <p>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p> <p>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p>	<p>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p>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p> <p>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p> <p>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p> <p>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p> <p>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 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p> <p>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p>	<p>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p>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5부 	<p>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p> <p>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제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p>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p>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p>	<p>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p> <p>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p> <p>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통보할 수 있다.</p> <p>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p> <p>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p>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5. 29.></p> <p>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p>	<p>등을 게시</p> <p>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p> <p>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p>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p> <p>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p>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p>	<p>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p> <p>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지 않은 경우</p> <p>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p> <p>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p> <p>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p> <p>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p> <p>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p> <p>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p> <p>[본조신설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p> <p>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p> <p>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p> <p>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p> <p>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p>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p> <p>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p> <p>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12.></p> <p>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p>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p> <p>[제목개정 2016. 11. 29.]</p> <p>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p>[제목개정 2013. 3. 23.]</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p> <p>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 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1. 26.></p> <p>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p> <p>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p>	<p>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p>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p>	<p>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p>[전문개정 2019. 12. 31.]</p> <p>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52조(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p>	<p>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승인기관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p>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p>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p>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p> <p>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p>	<p>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線形事業,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p> <p>나.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p> <p>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삭제 <2014. 11. 11.></p> <p>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p> <p>1.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p> <p>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p>	<p>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p> <p>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p> <p>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p> <p>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p>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8. 1. 16.,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p>	<p>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별 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3. 삭제 <2014. 11. 11.></p> <p>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중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p> <p>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p>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p>	<p>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p> <p>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p> <p>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이나 변경협의를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p> <p>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p> <p>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능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p>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1. 30.></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p> <p>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p>	<p>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p> <p>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협회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된 자 <p>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p>	<p>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p>	<p>한 날부터 20일 이내</p> <p>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p> <p>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p>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6. 1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p>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p> <p>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p>	<p>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p> <p>[중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7.>]</p> <p>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p>[본조신설 2015. 3. 30.]</p> <p>[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7.>]</p> <p>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p>[본조신설 2018. 11. 27.]</p>	<p>제출해야 한다.</p> <p>2. 승인기관의 장: 1부</p> <p>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2.></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p> <p>[제목개정 2020. 5. 25.]</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p>	<p>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p>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p>	<p>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p> <p>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8. 11. 27.]</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국제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p>	<p>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p>[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p>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p>	<p>제5절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p>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p> <p>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p> <p>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p>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p> <p>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p> <p>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p> <p>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개정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 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p> <p>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p> <p>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p> <p>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승인기관의 장: 5부</p> <p>2. 협의기관의 장: 10부</p> <p>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p> <p>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p>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p>	<p>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p> <p>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p>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1. 26.></p> <p>[제목개정 2016. 5. 29.]</p> <p>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p>	<p>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p> <p>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12. 30., 2016.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행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행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p> <p>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p>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p>	<p>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p>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p> <p>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p> <p>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p> <p>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p> <p>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p>	<p>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p> <p>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p> <p>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p> <p>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p>	<p>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p>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p> <p>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p> <p>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p> <p>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p>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p> <p>5. 부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p> <p>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 받은 자</p> <p>[본조신설 2015. 12. 30.]</p> <p>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p> <p>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5. 12. 30.]</p> <p>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p>	<p>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p> <p>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p>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p> <p>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p> <p>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p>[본조신설 2015.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6. 1. 14.]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p> <p>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p> <p>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p> <p>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p> <p>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p> <p>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의2에서 이등 <2016. 1. 14.>]</p> <p>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p>	<p>그 계약서 사본)</p> <p>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p> <p>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p> <p>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p> <p>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p> <p>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p> <p>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p> <p>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p> <p>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p> <p>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p> <p>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p> <p>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p> <p>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상호 또는 명칭</p>	<p>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p>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 [제22조의2로 이동 (2014. 12. 2.)]</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p> <p>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p>		<p>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제목개정 2018. 11. 29.]</p> <p>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자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 5. 29.]</p> <p>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p>		<p>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 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 [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p> <p>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p> <p>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p>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60조(보고·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p>		<p>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30.]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9. 12. 30.>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4.></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5. 29.)</p> <p>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 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p>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p>	<p>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 11. 29.)</p> <p>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 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62조의 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6.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5. 29.]</p>	<p>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p> <p>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1. 29.]</p>	<p>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제35조에서 이동 <2017. 5. 30.>]</p> <p>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p>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p>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p>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p>		<p>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환경영향평가사</p> <p>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환경영향평가사</p> <p>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 11. 29.></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 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5. 30.]</p> <p>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4., 2017. 5. 30.></p> <p>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삭제 (2016. 5. 29.)</p> <p>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⑤ 삭제 (2016. 5. 29.)</p>	<p>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1. 29.)</p> <p>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p>② 삭제 (2016. 11. 29.)</p> <p>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p> <p>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p> <p>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p>	<p>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9. 11. 26.]</p>	<p>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29.]</p> <p>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p>	<p>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p> <p>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30.)</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p>	<p>제75조 삭제 (2016. 11. 29.)</p>	<p>제34조 삭제 (2016. 1. 14.)</p> <p>제35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7. 5. 30.)]</p> <p>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 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6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p>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목개정 2016. 5. 29.]</p> <p>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1. 29.]</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서는 아니 된다.</p> <p>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 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p> <p>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p> <p>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p> <p>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p> <p>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p> <p>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취소 또는 인정정지</p> <p>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p> <p>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p> <p>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p> <p>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p> <p>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반려 및 재검토</p> <p>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p> <p>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p> <p>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p> <p>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통보</p> <p>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p> <p>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p> <p>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p> <p>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p> <p>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p> <p>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p> <p>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p> <p>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p> <p>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조정·반려 및 재검토</p> <p>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p> <p>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p> <p>차.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p> <p>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p> <p>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p> <p>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p> <p>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p> <p>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p> <p>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p> <p>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12.></p> <p>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p> <p>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의 접수</p> <p>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p> <p>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p> <p>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p> <p>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p> <p>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p> <p>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p> <p>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p> <p>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p> <p>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p>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춘 것 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춘 것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별칙</p> <p>제7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p> <p>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p>	<p>다. 삭제 <2021. 1. 5.></p> <p>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p> <p>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p> <p>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p> <p>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p> <p>3.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16., 2020. 5. 25.></p> <p>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2015년 1월 1일</p> <p>2.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p> <p>3.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4. 4. 30.]</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p> <p>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p> <p>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p> <p>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p> <p>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p> <p>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p> <p>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p> <p>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p> <p>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p> <p>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p> <p>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p> <p>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p> <p>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p> <p>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p> <p>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p> <p>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p>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 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p>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p> <p>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2017. 11. 28., 2018. 6. 12., 2019. 11. 26.></p> <p>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p> <p>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p> <p>7. 삭제 <2016. 5. 29.></p> <p>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p> <p>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19. 11. 26.></p>	<p>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2호, 2011. 7.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법률 제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명령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4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작성 4.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평가서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의 요청 및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6호, 2012. 7.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마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618 898 1029 1004"> <tr> <td data-bbox="618 898 797 1004">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td> <td data-bbox="797 898 1029 100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td> </tr> </table>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7호, 2012. 7.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p>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 요청 및 협의의 내용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본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협의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협의의 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약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 중인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과 협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확보하여야 한다.</p> <p>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p> <p>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p>	<table border="1" data-bbox="617 194 1031 441"> <tr> <td>지정</td> <td>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td> </tr> <tr> <td>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td> <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r> <td>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td> <td>「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p> <p>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p>	지정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p>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0호, 2014. 12. 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간섭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6호, 2016. 1. 14.)</p> <p>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0호, 2016. 11.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700호, 2017. 5. 30.)</p>
지정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 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한 협의"로 한다.</p> <p>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p> <p>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p> <p>⑤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p>	<p>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p> <p>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p> <p>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0호, 2018. 11. 29.)</p> <p>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준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8호, 2019.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3호, 2020. 5. 25.)</p> <p>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p> <p>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p> <p>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p> <p>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p> <p>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p> <p>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p>	<p>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p> <p>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p> <p>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p> <p>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p> <p>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의6제1항 중 “사전환경성 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4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p>	<p>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p> <p>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⑫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으로 한다.</p> <p>제40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p> <p>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p> <p>제8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p> <p>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p> <p>㉗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한다.</p> <p>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㉘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p> <p>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㉚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㉛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개정한다.</p> <p>제7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25조의3”을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p> <p>제10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p> <p>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p> <p>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가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⑫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p>	<p>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p> <p>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p> <p>⑯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p> <p>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p> <p>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㉑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㉒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㉓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소방방재청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p>	<p>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㉒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p> <p>㉓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p> <p>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요청하여야 한다.</p> <p>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p> <p>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p> <p>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p>	<p>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p> <p>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p> <p>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p> <p>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p> <p>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아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p> <p>㉗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사”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p> <p>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p> <p>㉖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p>	<p>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p>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p> <p>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p> <p>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p> <p>㉕ 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p> <p>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p> <p>㉗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p> <p>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2호(과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2 제2호(과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p> <p>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㉒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㉓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p>	<p>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221 1026 321"> <tr> <td>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td> <td>「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48호, 2014. 7. 7.) (도시철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824 1026 894"> <tr> <td>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td> <td>「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td> </tr> </table> <p>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p>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㉔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 29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한다.</p> <p>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3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019호, 2011. 8.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8 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조"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473 1024 569"> <tr> <td style="width: 33%;">나. 도로의 건설</td> <td style="width: 33%;">「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td> <td style="width: 33%;">「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713호, 2014. 11.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 계획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p> <p>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p> <p>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파목(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553 1024 759"> <tr> <td data-bbox="613 553 818 656">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td> <td data-bbox="818 553 1024 656">「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r> <td data-bbox="613 656 818 759">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td> <td data-bbox="818 656 1024 759">「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중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p> <p>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p> <p>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4〉까지 생략</p> <p>〈5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516〉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3040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p>	<table border="1" data-bbox="613 194 1026 593"> <tr> <td data-bbox="613 194 852 335">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td> <td data-bbox="852 194 1026 33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 </tr> <tr> <td data-bbox="613 335 852 593">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td> <td data-bbox="852 335 1026 59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 </tr> </table>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6170호, 2015. 3.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6438호, 2015. 7.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등록이 취소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제1호 및 제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p> <p>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p> <p>제39조 생략</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6807호, 2015.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⑳ 생략</p> <p>부칙 <제14232호, 2016. 5.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및 반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p>	<p>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p> <p>제5조 및 제6조 생략</p> <p>부칙 <제27057호, 2016. 3. 25.>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p> <p>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p> <p>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별표 2 제1호바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224 1026 322"> <tr> <td>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td> <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362 1026 459"> <tr> <td>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td> <td>「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부칙 〈제27285호, 2016. 6.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p> <p>부칙 〈제27636호, 2016. 11.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p>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p> <p><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p> <p>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87>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06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p> <p>⑪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37호, 2016. 11.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5662호, 2018. 6. 1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617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p>	<p>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약식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 다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675호, 2016. 12.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 기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972호, 2017. 3. 29.> (공항시설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779 1026 924"> <tr> <td style="width: 30%;">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td> <td style="width: 35%;">「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td> <td style="width: 35%;">「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p> <p>「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p>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관 중 “안전행정부장</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28호,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p> <p>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948호, 2018. 6.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table border="1" data-bbox="613 197 1026 303"> <tr> <td data-bbox="613 197 821 303">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td> <td data-bbox="821 197 1026 30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 </tr> </table> <p data-bbox="613 315 1026 391">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13 403 1026 509"> <tr> <td data-bbox="613 403 821 509">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td> <td data-bbox="821 403 1026 509">「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td> </tr> </table> <p data-bbox="686 544 938 568"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1호, 2018. 11. 27.></p> <p data-bbox="589 579 1026 656">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589 662 1026 762">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data-bbox="589 767 1026 867">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data-bbox="589 873 1026 973">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data-bbox="589 979 1026 1003">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p>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617호, 2019. 3.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별표 4 비교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교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707호, 2019. 4. 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교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p> <p>(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292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482호, 2020. 2. 2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673호, 2020. 5. 1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환경영향평가기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기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704호, 2020. 5.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p> <p>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876호, 2020. 7. 28.> (항만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877호, 2020. 7. 2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597 356 1024 421"> <tr> <td>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계획</td> <td>「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td> </tr> </table> <p>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169호, 2020. 11.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p> <p>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p>	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693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694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1703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1704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1715
[별표 4의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1718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719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1725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727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727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1728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728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729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729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2) 수리·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5) 전파장애

6) 일조장애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 1) 사업개요
- 2) 지역개황
- 3) 자연생태환경
- 4) 생활환경
- 5)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2) 대기질, 악취
-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6) 경관
-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8) 인구, 주거, 산업

[별표 2] <개정 2020. 7. 2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 그 밖의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 통합관리계획 2)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다.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라. 수자원의 개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3)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4)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때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하수도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할 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때
마. 관광 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5)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6)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해당 계획의 확정 전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산림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임도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특정 지역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1)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자. 에너지 개발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계획의 확정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삭제 <2016. 11. 29.>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라 고사하기 전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어촌·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4) 삭제 <2016. 11. 29.>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삭제 <2016. 11. 29.>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2) 삭제 (2015.12.30.)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보호구역의 지정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4) 「자연공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의 결정 5)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6)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타. 산지의 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계획의 확정 전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9) 「도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도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전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1) 삭제 <2016. 11. 29.>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규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삭제 <2014.12.30.>	
	16) 삭제 <2014.12.30.>	
	17) 삭제 <2014.12.30.>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8) 삭제 <2014.12.30.>	
	19) 삭제 <2014.12.30.>	
	20) 삭제 <2014.12.30.>	
	21) 삭제 <2014.12.30.>	
	22) 삭제 <2014.12.30.>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6) 삭제 <2016. 11. 29.>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하. 체육 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삭제 (2016. 11. 2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4)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더. 삭제 (2016. 11. 29.)		

비고

-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기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6. 삭제 (2016. 11. 29.)

[별표 2의2] <개정 2018. 6. 8.>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별표 3] <개정 2020. 7. 2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p> <p>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p> <p>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p> <p>「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p> <p>「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p> <p>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p> <p>「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p> <p>「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p> <p>「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p>「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사업	<p>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p> <p>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p> <p>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p> <p>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p> <p>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灰)처리장</p> <p>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貯炭場)</p> <p>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p> <p>「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p> <p>「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p> <p>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p> <p>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p> <p>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p> <p>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p> <p>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p> <p>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 설치공사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p> <p>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p>	<p>「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p> <p>「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p>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4. 항만의 건설사업	<p>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p>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p>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p> <p>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p> <p>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p> <p>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p> <p>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p>	<p>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p> <p>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전</p> <p>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p>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 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p>「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지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溜池·웅덩이)의 조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p> <p>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p> <p>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p> <p>「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p>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p>「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p> <p>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p> <p>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p>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p> <p>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p>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p>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p> <p>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p>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p> <p>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개간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p> <p>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p>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 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p> <p>「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p> <p>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2)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유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실묘지 및 사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p> <p>「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체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가 시행하는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삭제 (2017. 3. 29.)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자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p> <p>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p> <p>「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p> <p>「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p>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 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p> <p>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p> <p>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p>	<p>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p> <p>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p> <p>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p>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p>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채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p>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용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p>	<p>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p> <p>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p>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터 이상 <p>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기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 <p>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p>	<p>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p> <p>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p> <p>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p> <p>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p> <p>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p>「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p>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p>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p> <p>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의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p> <p>「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p> <p>「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p> <p>「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 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8. 「초지법」 적용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라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frac{\text{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text{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frac{\text{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면적}}{\text{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dots$$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제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 4의2] <신설 2015.12.3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제67조의3제3항 관련)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20. 5. 12.)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에너지저장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총괄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2)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 (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자연생태환경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구 분	필요인 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2) 입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	1) 입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입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토지 환경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구 분	필요인 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2)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농림도양평가관련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생활 환경 · 기타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3명 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책임조사원급	2명 이상	육상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육상동물	1)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 환경 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육수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전문조사원급	4명 이상	-	1)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1)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 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일반조사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입업 분야(산림, 식물 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 심화학습을 이수한 후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생명과학 등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쌍안경	2대
	줄자(5m, 50m)	1세트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부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채취할 때 쓰는 송곳 같은 기구)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사면트랩)	여러 개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조류	망원렌즈(500mm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들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들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플랑크톤	siphon 시스템

비고

-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며,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총괄	2022. 7. 1. 부터	1명 이상	환경영향 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 6. 30. 까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2)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자연생태환경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토지환경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2) 산업기사: 환경분야(농림토양 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생활환경·기타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화학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화학 종목만 해당한다),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3) 산업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뭇(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구분	필요인원	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 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
책임조사원급	2명 이상	육상 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 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종 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상 동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 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수 생물	특급 평가자 이상	1) 기술사: 환경분야(자연환경관리 종 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 종 목만 해당한다) 2) 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생물 분류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 (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 한다)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조사원급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1) 기사: 환경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 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 (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 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명 이상		초급 평가자 이상	2) 산업기사: 환경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공통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표본실	1실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부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루페	1개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포획용 트랩(사문트랩)	여러 개
조류	망원렌즈(500mm이상)	1대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계수기	1개
양서· 파충류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표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아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부착조류 및 동식물 플랑크톤	채집장비(술,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siphon 시스템	1대

비고

-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 나.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 1)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 4)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5.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6.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고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초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

기술등급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신설 2016. 11. 29.>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시기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기	시간
가. 최초교육	1) 환경영향평가기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70시간
	2) 환경영향평가기사 아닌 사람		40시간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20시간

비고: 환경영향평가기업 기술인력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기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시험 (필기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제2차시험 (면접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별표 9] <개정 2016. 11. 2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 나. 별표 2 제2호다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별표 10] <개정 2020. 5.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2항	1,000	1,500	2,000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1호	200	300	5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2호	200	300	500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1호	500	700	1,000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3호	200	300	500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호	500	700	1,000
사.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4호	200	300	500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5호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1호	2,000	3,500	5,000
차.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2호	2,000	3,500	5,000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 제3호	2,000	3,500	5,000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2호의2	500	700	1,000
하.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3호	500	700	1,000
거.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4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8호	200	300	500
더. 법 제56조제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8호의2	200	300	500
러.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4항 제9호	200	300	500
머. 법 제62조제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1호	100	200	300
버. 법 제62조제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2호	100	200	300
서. 법 제62조제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5항 제3호	100	200	300
어.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 제5호	500	700	1,00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1735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738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739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741
[별표 4]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1742

[별표 1] <개정 2018. 11. 29.>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p>1. 도시의 개발사업</p> <p>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p> <p>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p> <p>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p> <p>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p> <p>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p> <p>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p> <p>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p> <p>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p> <p>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p>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p>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p> <p>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대상사업	조사기간
<p>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p> <p>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p>
<p>3. 에너지 개발사업</p> <p>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p> <p>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p>	<p>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p>
<p>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p> <p>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장장(貯炭場)</p> <p>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p> <p>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p> <p>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p>
<p>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p> <p>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p>
<p>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p> <p>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발전소</p>	<p>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p>

대상사업		조사기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 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민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조조성사업	

대상사업		조사기간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 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 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대상사업		조사기간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할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교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경우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별표 3] <개정 2016. 11. 30.>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업무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 2)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의2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제56호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 중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급 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1항제2호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인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격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5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사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사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6호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사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7호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8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제4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745
0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853
03.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869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37
0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07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19
0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217
0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599
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647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701

제4편
자원순환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54	제1조(목적) 1754	제1조(목적) 1754
제2조(정의) 1754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1754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1754
	제3조(방치폐기물) 1754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755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755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757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175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75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1759		
제5조(발주자의 의무) 1759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1759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1760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1760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 6. 9.)	제2장 삭제 (2020. 3. 24.)	
제8조 삭제 1760	제7조 삭제 1760	
	제8조 삭제 1760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1760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1761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1761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1761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 6. 9.)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 5. 18.)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1762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176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762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1763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762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1762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1763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1764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1766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1765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769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 1769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1769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769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1767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1768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1769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1770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1772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1773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1770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1769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1769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 6. 9.) 제20조 삭제 1774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774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 5. 18.)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776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1776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1770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1772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1774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1776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77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1779</p> <p>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1781</p> <p>제24조(결격사유) 1781</p> <p>제25조(허가취소 등) 1782</p> <p>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1785</p> <p>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1786</p> <p>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1789</p> <p>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1790</p> <p>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1791</p> <p>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1792</p> <p>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1793</p> <p>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1793</p>	<p>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1786</p> <p>제16조 삭제 1786</p>	<p>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1779</p> <p>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1780</p> <p>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781</p> <p>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1781</p> <p>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지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1785</p> <p>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1785</p> <p>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1786</p> <p>제17조 삭제 1788</p> <p>제18조(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1788</p> <p>제19조 삭제 1789</p> <p>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1789</p> <p>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1790</p> <p>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1791</p> <p>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792</p> <p>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1793</p> <p>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1793</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보고, 검사 등) 1794</p> <p>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p> <p>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1796</p> <p>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1796</p> <p>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1797</p> <p>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1797</p> <p>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1798</p> <p>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1798</p> <p>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1800</p> <p>제40조 삭제 1800</p> <p>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 6. 9.)</p> <p>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1800</p> <p>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1800</p> <p>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1802</p>	<p>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p> <p>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798</p> <p>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p> <p>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1800</p> <p>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1800</p> <p>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1801</p> <p>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1801</p> <p>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1802</p>	<p>제26조(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1794</p> <p>제27조(보고서 제출) 1794</p> <p>제28조(검사 등) 1795</p> <p>제29조(시험·분석기관) 1796</p> <p>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179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삭제 1802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1802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1803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1804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1804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1804	제24조(보증한도) 1804	
제49조(공제규정) 1805	제25조(보증대상) 1804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1805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1805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1806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1806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1806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1806		
제55조(협회의 설립) 1806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1806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1806		
제8장 보칙 (개정 2009. 6. 9.)	제8장 보칙	
제56조의2(교육) 1807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1807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1807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1808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1808
제57조(청문) 1808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1808	제28조(권한의 위임) 1808	
	제29조(업무의 위탁) 1809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1810		
제60조(수수료) 1810		제31조(허가 수수료) 1810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1810	제32조(규제의 재검토) 18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811		
제9장 벌칙 <개정 2009. 6. 9.>	제9장 벌칙	
제62조(벌칙) 1811		
제63조(벌칙) 1811		
제64조(벌칙) 1812		
제65조(양벌규정) 1813		
제66조(과태료) 1813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1813	
		제33조 삭제 1813
부칙 1816	부칙 1816	부칙 18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3.12.31 법률 제7043호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12.29 법률 제7782호 2006.12.28 법률 제8115호 2007.4.11 법률 제8369호 (소음·진동규제법) 2007.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27 법률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6.9 법률 제9769호 2009.6.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5.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6.12 법률 제11879호 2013.8.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3.18 법률 제12452호 2015.12.1 법률 제13527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7.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4.18 법률 제14781호 2019.4.16 법률 제16317호 2020.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6호 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28호 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 (농지법 시행령) 2007.9.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건축노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7호 2008.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4호 2009.6.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우예 등을 위한 건설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5.18 대통령령 제22164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5호 2012.7.4 대통령령 제23933호 2013.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7.14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6 대통령령 제25478호 (하수도법 시행령) 2016.5.31 대통령령 제27199호 2017.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7호 2018.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9.7.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정 2005.1.19 환경부령 제169호 개정 2005.7.18 환경부령 제178호 2005.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9 환경부령 제226호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71호 2008.3.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환경부령 제313호 2009.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우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6.9 환경부령 제372호 2010.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2.25 환경부령 제400호 2012.6.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13 환경부령 제529호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 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6.2 환경부령 제656호 2017.10.19 환경부령 제717호 2018.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4.17 환경부령 제861호</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p> <p>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p> <p>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p> <p>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p> <p>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p> <p>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p> <p>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급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p> <p>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p>[본조신설 2010. 5. 18.]</p> <p>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 	<p>여 산출</p> <p>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p> <p>가. 도로공사용</p> <p>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p> <p>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p> <p>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p> <p>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p> <p>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p> <p>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p> <p>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p> <p>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p> <p>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p> <p>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p> <p>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p> <p>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p> <p>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p> <p>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발을 위한 성토용</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p> <p>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p> <p>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p> <p>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p> <p>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p>	<p>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p>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p> <p>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07. 9. 27., 2007. 11. 30., 2007. 12. 28., 2008. 12. 24., 2010. 5. 18., 2011. 11. 16., 2013. 12. 11., 2014. 7. 14., 2014. 7. 16., 2016. 5. 31., 2017. 1. 17., 2018. 1. 16., 2019. 12. 31.)</p> <p>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p> <p>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p> <p>2. 삭제 <2013. 12. 11.></p> <p>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 조성사업</p> <p>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차공사</p> <p>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p> <p>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p> <p>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p> <p>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p> <p>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11.)</p> <p>[제목개정 2010. 5. 18.]</p> <p>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8., 2016. 5. 31.></p> <p>1. 파쇄·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p> <p>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p> <p>[제목개정 2010. 5. 18.]</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p> <p>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p> <p>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09. 6. 9.]</p> <p>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 6. 9.></p> <p>제8조 삭제 <2019. 4. 16.></p> <p>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 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p>	<p>제2장 삭제 <2020. 3. 24.></p> <p>제7조 삭제 <2020. 3. 24.></p> <p>제8조 삭제 <2020. 3. 24.></p>	<p>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정화(固形化) 최종처리: 매립 <p>[본조신설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p>		<p>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2019. 4. 16.></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p> <p>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p>	
<p>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 6. 9.></p>	<p>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 5. 18.></p>	
<p>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p>	<p>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2. 31.]</p>
<p>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p>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p>	<p>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p>[본조신설 2013. 12. 13.]</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 4. 18.) 	<p>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p> <p>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p> <p>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p> <p>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도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p>	<p>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 12. 13.)</p> <p>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p>		<p>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p> <p>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p> <p>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③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p> <p>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p> <p>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p> <p>⑤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3. 12. 13.]</p> <p>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p> <p>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p>	<p>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p> <p>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p> <p>3. 삭제 <2013. 12. 11.></p>	<p>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p> <p>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p> <p>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p> <p>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p>[본조신설 2013. 12. 13.]</p> <p>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p> <p>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p> <p>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 9., 2008. 12. 31.></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p>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p> <p>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p> <p>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9., 2016. 6. 2.,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p>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p> <p>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p> <p>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p>	<p>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침출수·약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10. 5. 18.]</p> <p>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제목개정 2010. 5. 18.]</p>	<p>2010. 6. 9.)</p> <p>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 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 6. 2.]</p> <p>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p> <p>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p>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p>	<p>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p>야 한다. <개정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p>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6. 9.]</p> <p>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2.></p>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에 상당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자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9. 12. 20.></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7. 10.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가 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p>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p> <p>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p> <p>[전문개정 2009. 6. 9.]</p>		<p>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p>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p> <p>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p> <p>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 6. 9.)</p> <p>제20조 삭제 <2009. 6. 9.></p> <p>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p>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 5. 18.)</p>	<p>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p>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p>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p> <p>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 6. 12., 2015. 12. 1.></p> <p>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p>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2019. 4. 16.></p> <p>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p> <p>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p> <p>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p> <p>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p>[제목개정 2010. 5. 18.]</p> <p>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p>	<p>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 12. 13.></p> <p>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5. 18., 2013. 12. 11., 2016. 5. 31.,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지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목개정 2010. 5. 18.]</p>	<p>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p>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 12. 13.></p> <p>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확산됨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확산됨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추 것 <p>다만 락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p> <p>다. 폐기물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라. 바닥포장</p> <p>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p> <p>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12. 13.></p> <p>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p>⑦ 삭제 (2016. 6. 2.)</p> <p>⑧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목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p>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6. 6. 2.,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p> <p>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p> <p>⑤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3.></p> <p>⑥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3.></p> <p>[전문개정 2010. 6. 9.]</p> <p>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p>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p>야 한다. <개정 2020.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본조신설 2010. 6. 9.]</p> <p>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0. 6. 9.]</p> <p>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p>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13. 6. 12., 2015. 12. 1.,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p> <p>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p>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p> <p>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p> <p>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2020. 5. 26.> [전문개정 2009. 6. 9.]</p> <p>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p>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p>[제목개정 2010. 6. 9.]</p> <p>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13.> [본조신설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경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p> <p>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p>[전문개정 2009. 6. 9.]</p> <p>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p>	<p>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5. 18.></p> <p>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8.></p> <p>제16조 삭제 (2010. 5. 18.)</p>	<p>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p>		<p>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3.)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2. 20.)</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6. 9.]</p>		<p>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 12. 13., 2019. 12. 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목개정 2010. 6. 9., 2013. 12. 13.] 제17조 삭제 <2007. 1. 9.> 제18조(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출한다)</p> <p>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0.></p> <p>[전문개정 2010. 6. 9.] [제목개정 2013. 12. 13.]</p> <p>제19조 삭제 <2010. 6. 9.></p> <p>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 6. 9.]</p> <p>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p> <p>[제목개정 2010. 6. 9.]</p> <p>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p>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25.,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p>[제목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6. 9.]</p> <p>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 		<p>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p> <p>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p> <p>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p> <p>[제목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p> <p>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 6. 9.>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p>		<p>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3. 12. 13., 2017. 10. 19.,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 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 12. 1., 2016. 12. 27.></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전문개정 2009. 6. 9.]</p> <p>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 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p>[전문개정 2009. 6. 9.]</p> <p>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p>②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9.></p> <p>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 9., 2010. 6. 9.> [제목개정 2010. 6. 9.]</p> <p>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폐업·폐업</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업·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폐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p>제26조(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p> <p>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 2020. 4. 17.></p> <p>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p> <p>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10. 6. 9.></p> <p>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9.></p> <p>제28조(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5., 2007. 12. 31., 2010. 6. 30.,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p> <p>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2.></p> <p>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p>	<p>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9조(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2., 2008. 3. 3., 2010. 6. 9.,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10. 6. 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p>[본조신설 2013. 6. 12.]</p> <p>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기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p> <p>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p>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p> <p>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p> <p>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p> <p>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09. 6. 9.]</p>	<p>인증을 받은 제품</p> <p>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p> <p>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p> <p>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p> <p>[전문개정 2010. 5. 18.]</p>	<p>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p> <p>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시·도시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p> <p>제40조 삭제 <2009.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 6. 9.></p> <p>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p> <p>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②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p> <p>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p>	<p>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p>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p>[전문개정 2013. 12. 11.]</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6. 9.]</p> <p>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44조 삭제 <2009. 6. 9.></p> <p>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5. 12. 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p>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5. 18.></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p> <p>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p> <p>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p> <p>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p> <p>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p> <p>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용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 	<p>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p>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 5., 2010. 5. 18.></p> <p>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만 해당한다)</p> <p>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p> <p>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자의 알선</p> <p>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p> <p>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p> <p>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p> <p>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영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용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p>	<p>3. 대출보증</p> <p>4. 납세보증</p> <p>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p>	<p>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8장 보칙 <개정 2009. 6. 9.></p> <p>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p>	<p>제8장 보칙</p>	<p>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 4. 17.></p> <p>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9.]</p> <p>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9.]</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p>[전문개정 2009. 6. 9.]</p> <p>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p>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6. 9.]</p> <p>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2. 25.]</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경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p>	<p>[전문개정 2010. 5. 18.]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5. 18.>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3. 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p>	<p>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9., 2012. 6. 15.></p> <p>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3항에 따른 배출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치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 <개정 2009. 6. 9.></p> <p>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p>[전문개정 2009. 6. 9.]</p> <p>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p>	<p>제9장 벌칙</p>	<p>변경승인·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p> <p>5.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p> <p>6. 제2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7.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6.> [본조신설 2014. 4. 30.]</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p> <p>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p> <p>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p> <p>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p> <p>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p> <p>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p> <p>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p> <p>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p> <p>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p> <p>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p> <p>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2015. 12. 1.></p> <p>1. 삭제 <2013. 6. 12.></p> <p>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p> <p>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9. 6. 9.]</p> <p>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 	<p>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5. 31.></p> <p>[전문개정 2008. 12. 24.]</p>	<p>제33조 삭제 <2008. 12. 31.></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p> <p>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p> <p>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p> <p>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p> <p>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p> <p>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p> <p>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p> <p>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p> <p>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p> <p>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p> <p>3. 삭제 <2013. 6. 12.></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삭제 <2013. 6. 12.> 5. 삭제 <2013. 6. 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 6. 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 6. 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p> <p>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p> <p>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p> <p>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 12.> [전문개정 2009. 6. 9.]</p> <p>부칙 <제7043호, 2003.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p>	<p>부칙 <제18666호, 2004. 12. 31.></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p>	<p>부칙 <제169호, 2005. 1. 1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방치폐기물처리비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4조(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p>	<p>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p> <p>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p> <p>부칙 <제19828호, 2007.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136호, 2007. 6. 29.> (농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매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p> <p>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p> <p>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⑥ 내지 <145>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② 내지 ③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82호, 2005. 12. 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p>	<p>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p> <p>② 부터 ⑦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89호, 2007. 9. 27.>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③ 부터 ⑨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제7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p> <p>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에 따른다.</p> <p>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 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115호, 2006. 12. 28.></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p> <p>부칙 <제8369호, 2007. 4. 11.> (소음·진동규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p> <p>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p> <p>③내지 ⑩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③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428호, 2007. 11.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0477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p> <p>제8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기물(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p> <p>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p> <p>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③생략 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28조, 제29조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184호, 200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p>	<p>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호, 2005. 7. 18.></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6호, 2007. 1. 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p> <p>(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p>	<p>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p>	<p>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p>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0호, 2007.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9769호, 2009. 6. 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p> <p>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 ”으로 한다.</p> <p>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p> <p>③ 부터 ⑤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p> <p>④ 부터 ⑥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164호, 2010. 5.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혼합간질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따른”으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271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p> <p>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p> <p>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부칙 〈제313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p> <p>④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p> <p><494>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94호, 2013. 5. 22.> (건설기술 진흥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297호, 2011.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15호, 2011. 12. 2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33호, 2012. 7. 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72호, 2010. 6. 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p> <p>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p> <p>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2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79호, 2013.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④부터 ⑦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996호, 2013. 12.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별표 3 제2호(마복2): 2015년 1월 1일 <p>제2조(신인도반영비를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복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④ 부터 ⑦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00호, 2011. 2.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②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9호, 2013. 1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56호, 2014. 7. 14.> (도로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78호, 2014. 7. 16.>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p> <p>③부터 ⑦까지 생략</p>	<p>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6호, 2016. 6. 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⑤부터 ⑦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452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527호, 2015. 1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p> <p>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199호, 2016. 5.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⑤부터 ⑧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367호, 2017. 10. 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p>	<p>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 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표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7호, 2017. 10. 19.></p> <p>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1호, 2020. 4. 17.></p> <p>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p> <p>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⑤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p>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313호, 2019. 12. 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542호, 2020. 3. 24.)</p> <p>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⑦부터 ⑸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4781호, 2017. 4. 1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317호, 2019. 4.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833
[별표 2] 삭제 <2007.12.28.>	1834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834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	1836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837

[별표 1] (개정 2019. 7. 2.)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페콘크리트
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료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척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페타일 및 페도자기
14. 페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2] 삭제 <2007.12.28>

[별표 3] <개정 2016. 5. 3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times 70/100$$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 평점} \times 10/100$$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순환골재판매액}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기술능력평점} \times 5/100)$$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파쇄시설 보유 현황	1차 파쇄시설만 보유	2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3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4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5차 이상 파쇄시설 보유
평 점	1	1.25	1.5	1.75	2

-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times \text{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times 10/100$$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times 10/100$$

-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

-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바.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반영비율}$$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2퍼센트
 - 나)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별표 4] <개정 2020. 3. 2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천만원	1억원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억원
15.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	-
16.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

[별표 5] <개정 2020. 3.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66조제1항 제1호	100	300	5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500	700	1,000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 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500	700	1,0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500	700	1,0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2호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500	700	1,000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의2	500	700	1,0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 제2호의2	500	700	1,000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2호	50	70	100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3호	50	70	100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500	700	1,000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500	700	1,000
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9호	500	700	1,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0호	500	700	1,000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8호	100	200	300
저.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4호	50	70	100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9호	100	200	300
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5호	50	70	100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2호	300	300	300
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1호	100	200	300
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	1,000	1,000	1,000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6호	50	70	100

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7호	100	100	100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2호	100	200	3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등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	500	700	1,000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4호	100	200	300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5호	500	700	1,000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6호	500	700	1,000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5호	100	200	300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7호	500	700	1,000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8호	50	70	1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1843
[별표 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1843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1845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제10조제2항 관련)	1846
[별표 2의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847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1848
[별표 4]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	1852

[별표 1]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부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페콘크리트
	40-01-02		페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페벽돌
	40-01-04		페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페타일 및 페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페보드류	
	40-04-12	페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페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선별·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합처리분업자 또는 폐기물중합처리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바.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입도(粒度)가 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페콘크리트 및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치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넨토나이트만 해당한 대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5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 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추어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6. 6. 2.>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입력

되어야 한다)

(8) 삭제 <2017. 10. 19.>

(9) 삭제 <2017. 10. 19.>

나. 장비

(1)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2)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자차량이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라.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증축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 (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6. 6.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

(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표 2의3] <신설 2010.6.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5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	경고	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1호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7호	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4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별표 4] (개정 2019. 12. 20.)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제7조의2 관련)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류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다.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지 덮개를 갖춘 경우	0.5	1
2. 보관시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	0.1	0.2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다.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	0.1	0.2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	0.1	0.2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3. 세류시설·세차 시설	가. 세류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0.5	0.5
	나. 세류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0.25	0.25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 각 호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등급	기술인력	가중치
1. 기술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5
2. 특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5
3. 고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4. 중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0.75
5. 초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0.5

제4편
자원순환

0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1857	제1조(목적) 1857
제2조(정의) 1857	
제3조(책무) 1857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1857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1858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185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58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1858	
제8조(사무소) 1859	
제9조(정관) 1859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1859
제10조(설립등기) 1859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1859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1860	
제12조(임원) 1860	
제13조(임원의 직무) 1860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1860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1860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860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1861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861	
제16조(직원의 입면) 1861	
제17조(별칭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861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1861	
제18조(이사회) 1861	
제19조(사업) 1861	
제20조(사업 재원) 1862	제5조의2(출자 등) 186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조금) 1863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1863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1863
제23조(채권의 발행) 1863	제7조(채권의 형식) 1863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1863
	제9조(채권의 응모 등) 1863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1864
	제11조(채권발행총액) 1864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1864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1864
	제14조(채권원부) 1864
	제15조(이권흡결의 경우) 1865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1865
제24조(운영위원회) 1865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865
제25조(사업연도) 1866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1866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1866
제27조(결산서의 제출) 1866	제19조(결산서의 제출) 1866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1866	
제29조(「민법」의 준용) 1867	
제29조의2(벌칙) 1867	
제30조(과태료) 1867	제20조 삭제 1867
부칙 1867	부칙 186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00. 1.21 법률 제6200호 개정 2005.12.29 법률 제7783호 2007. 4.11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11. 7.28 법률 제10975호 2017.12.12 법률 제15192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00. 7.10 대통령령 제16904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 6.15 대통령령 제19530호 2007.10. 4 대통령령 제2030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7. 6.13 대통령령 제2810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p>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p>	<p>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p>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p>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 15.)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p> <p>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p>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p> <p>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p> <p>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p> <p>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p> <p>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p> <p>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p> <p>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p> <p>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p> <p>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 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屬)된 업무</p> <p>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p> <p>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p>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사업개요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06. 6. 15.]</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p>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p> <p>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p> <p>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p> <p>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p> <p>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p> <p>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p> <p>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p> <p>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p> <p>2. 채권의 번호</p> <p>3. 채권의 발행연월일</p> <p>제14조(채권원부) ①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p> <p>2. 채권의 발행연월일</p> <p>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p> <p>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p> <p>5. 채권의 취득연월일</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p>②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5조(이권환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환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옴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p> <p>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15., 2007. 10. 4.,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p> <p>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p> <p>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7. 28.]</p> <p>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한다.</p>	<p>가. 학계·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p> <p>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p>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사업별예산·추경재무상태표·추경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p> <p>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인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p>[제목개정 2006. 6. 15.]</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1. 7. 28.]</p> <p>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7. 28.]</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00호, 2000. 1.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p> <p>제4조(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904호, 2000. 7. 10.></p> <p>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 내지 <241>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30호, 2006. 6. 15.></p> <p>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제6조(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783호, 2005. 12. 2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p> <p>㉞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⑱내지 ㉞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75호, 2011. 7.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192호, 2017. 12. 12.></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306호, 2007. 10. 4.> (지방자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p> <p>④부터 ⑧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03호, 2017. 6.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제4편
자원순환

03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875	제1조(목적) 1875	제1조(목적) 1875
제2조(정의) 1875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1876
		제3조(자원순환산업) 1876
		제4조(자원순환시설) 1877
제3조(기본원칙) 187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78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878		
제6조(사업자의 책무) 1878		
제7조(국민의 책무) 1879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1879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1879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1879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1880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1881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1880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1882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1882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1884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1884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1885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1885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1885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87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87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1888	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1890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1888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1890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p> <p>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1891</p> <p>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1891</p> <p>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1892</p> <p>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1894</p> <p>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1895</p> <p>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1896</p> <p>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189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p> <p>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1894</p> <p>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1894</p> <p>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1896</p> <p>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1897</p> <p>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1898</p> <p>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1899</p> <p>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1900</p> <p>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1901</p>	<p>제11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1891</p> <p>제12조(시·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1891</p> <p>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1892</p> <p>제1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1894</p> <p>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1895</p> <p>제16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1897</p> <p>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 1899</p> <p>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190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p> <p>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1902</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p> <p>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1902</p> <p>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1903</p> <p>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1904</p> <p>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1905</p> <p>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1906</p> <p>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1908</p> <p>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1909</p> <p>제24조(이의신청) 1909</p> <p>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1909</p>	<p>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1902</p> <p>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1906</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용도) 1910	제26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용도) 1910	
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1911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1911	제21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1912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1912		제22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1912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912		제23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1914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1913		
제27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1914		
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1914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1915	제28조(협의체) 1915	제24조(보고서의 제출) 1915
제30조(청문) 1916	제29조(권한의 위임) 1916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16	제30조(업무의 위탁) 1917	
	제31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1918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18	
제32조(별치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19		
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1919		
제6장 별칙	제6장 별칙	
제34조(별칙) 1920		
제35조(양발규정) 1920		
제36조(과태료) 1920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20	
부칙 1920	부칙 1920	부칙 1920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정 2016. 5.29 법률 제14229호 개정 2017. 1.17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8.10.16 법률 제15840호 2018.12.31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2호 개정 2018.12. 4 대통령령 제29330호 2019. 4. 9 대통령령 제29681호 2020. 3.24 대통령령 제3054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7.12.29 환경부령 제732호 개정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 4 환경부령 제782호 2019. 3.25 환경부령 제803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활동을 말한다.</p> <p>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활동</p> <p>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p> <p>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각목에서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집·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압축·절단·용융·분리·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산화·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퇴비화·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燒成)·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역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p>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p> <p>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p> <p>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p> <p>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p> <p>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말한다.</p> <p>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p> <p>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p> <p>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설비</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p> <p>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p>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p>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p>	<p>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p>	<p>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체 상태에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p> <p>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p> <p>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p> <p>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p> <p>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p>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p>	<p>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체계 등에 관한 검사</p> <p>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p> <p>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p> <p>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p> <p>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p> <p>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p> <p>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p> <p>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p> <p>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p> <p>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p> <p>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처리업 등록증</p> <p>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p> <p>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p>	<p>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p>	<p>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p>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p> <p>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p>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p> <p>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p>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p>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p> <p>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추진계획</p> <p>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p> <p>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p> <p>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p> <p>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p> <p>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자원순환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p> <p>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p> <p>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p> <p>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다.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p> <p>라.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p> <p>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용도별 재활용 현황</p> <p>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p> <p>사. 폐기물의 재활용·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p> <p>아.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p> <p>2.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p> <p>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p> <p>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 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 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자원순환 촉진시책 등</p>	<p>"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p> <p>나.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빗 재활용·처분 방법별 현황(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포함한다)</p> <p>다.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업제 현황</p> <p>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p> <p>마. 시·도 및 시·군·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p> <p>바.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p> <p>제11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p>제12조(시·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19. 3. 25.></p> <p>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p> <p>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p>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자원순환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③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설정제에 필요한 자료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p> <p>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p>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사업장별 원료·재료·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p>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자원순환정보체계</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p>	<p>제9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6조제6항에서 "명단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개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p>제10조(순환이용사업자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p>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p>⑨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자원순환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자원순환 목표 설정·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3. 25.></p> <p>제14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 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p> <p>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사업자</p> <p>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p> <p>3. 조강(條鋼) 또는 선철(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p> <p>②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p> <p>1. 폐지류</p> <p>2. 폐유리용기류</p> <p>3. 고철</p>	<p>다른 순환이용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p> <p>2.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p> <p>3.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 계획 및 이행</p> <p>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p> <p>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단체명</p> <p>2. 대표자</p> <p>3. 소재지</p> <p>4. 설립 목적</p> <p>5. 사업 범위</p> <p>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5. 26.></p> <p>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p>	<p>제11조(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p>	<p>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p> <p>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들어있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등</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 <p>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 물질</p> <p>마.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p> <p>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등</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3.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4.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 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할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p>	<p>제16조(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p> <p>영 제11조제4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3. 재질, 구조 및 함유된 유해물질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4.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의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생산자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p>	<p>3.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p>제14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물질 함유량 2. 유해물질 함유량 3.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性狀) 4.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p>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기준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p>	<p>제15조(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기관을</p>	<p>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순환자원 등에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5.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표지 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p>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품질표지 인증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 품질표지에 표시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공정·품질 심사를 실시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p>	<p>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p> <p>④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p> <p>제21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p>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받을 수 있다.</p> <p>⑦ 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표지를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p> <p>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p> <p>제17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감면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19조(폐기물처리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리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p>	<p>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필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p>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2019.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p>	<p>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p>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p>	<p>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p> <p>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島嶼)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 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p> <p>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p>	<p>계획의 사본</p> <p>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p> <p>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8. 영 별표 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④ 징수기관은 영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p>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p> <p>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리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3. 25.></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별표 5 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p> <p>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p> <p>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 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p> <p>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p>	<p>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 	<p>른 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징수기관은 영 제21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2조(신용카드등을 통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p>	<p>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2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p> <p>제2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5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p> <p>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p>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p> <p>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23조(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p>	<p>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p>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21조제8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p>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제21조(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2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p>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p>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p> <p>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순환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p>제23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 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3. 제17조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8조(협의체)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24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p> <p>5.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p> <p>6.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p> <p>7.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p> <p>2. 제20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p> <p>3.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p> <p>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4.></p> <p>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p> <p>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p>	<p>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다.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 징수 라.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바.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결과와 통지</p> <p>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p> <p>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p> <p>제3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4.></p> <p>1.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이행실적의</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평가</p> <p>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29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같은 호 각 목의 업무</p> <p>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공</p> <p>5.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정보 공개</p> <p>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 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p> <p>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 및 검사(위 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 의 이사장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 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 수관 및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9조 또는 제30 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제3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3. 제17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4.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5.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7.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p>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4조(벌칙)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229호, 2016. 5.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52호, 2017. 12. 29.></p> <p>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30호, 2018. 12.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32호, 2017. 12. 29.></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p> <p>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9)까지 생략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81호, 2019. 4. 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연차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도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0541호, 2020. 3. 2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782호, 2018. 12. 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3호, 2019. 3.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p>부칙 <제15840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1925
[별표 2]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제11조제1항 관련)	1925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11조제6항 관련)	1926
[별표 4]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927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1928
[별표 6]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929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929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별표 2]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제11조제1항 관련)

1. 납 또는 그 화합물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시안화합물
8. 유기인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석면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폴리브롬화비페닐
14. 트라이메틸아민
15. 아세트알데히드
16. 벤젠
17. 스타이렌
18. 톨루엔
19. 자일렌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11조제6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현재 생산·가공·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하되, 제품등의 재질,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험·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 1) 순환이용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다)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 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1)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 2)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을 분석한다.
-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 1)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분석방법

- 가. 측정 또는 시험·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별표 4]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총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항온·제습시설 및 후드시설을 갖춘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실험실을 해당 실험실 내에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	수량
1) 이물질 분석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2) 크기, 규격 등 성상 분석	순환자원의 규격과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3) 유해물질 분석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시약 및 초자류(礫子類) 등	1식 이상

비고

1. 폐지, 고철의 이물질을 현장에서 측정·분석하는 경우에는 1)의 장비를 갖추는 대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계량중명업자에게 의뢰하여 측정·분석을 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유해물질의 시험·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의 장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가. 산업기사 1명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분야

기술인력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환경학, 토양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농화학, 농생물학, 보건학, 의학 등 관련 전공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순환자원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어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의 기술인력은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환경 관련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0. 3. 2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1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100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60 5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100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단위: 퍼센트)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나. 기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비고

- 위 표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 위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20. 3. 2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건설 폐기물은 제외한다)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 위 표에서 폐기물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배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이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0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50	70	10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제11조 관련)	1933
[별표 1의2]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1934
[별표 2]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제17조제3항 관련)	1934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935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제11조 관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text{최종처분율(\%)} = \frac{\text{최종처분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text{추가 발생량} = \frac{\text{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text{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text{추가로 투입된 원료·재료 또는 연료의 양})} \times \text{잔재물 발생량}$$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text{순환이용률(\%)} = \frac{\text{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text{에너지회수율(\%)} = \frac{\text{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text{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times 100$$

나. 산정기준

-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9.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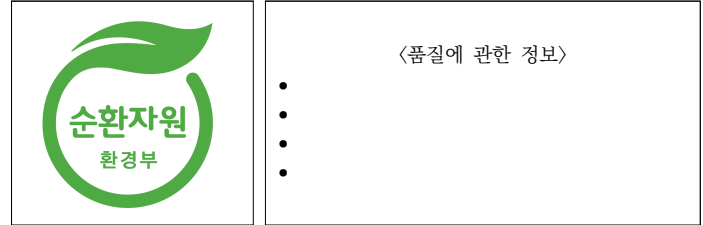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식품품 제조업
 - 나. 음료 제조업
 -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차. 1차 금속 제조업
 -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파. 전기장비 제조업
 -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별표 2]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제17조제3항 관련)

1. 도안 모형



- 가. 로고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한다.
- 나. 로고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를 말한다.

2. 도안 요령

- 가. 도안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순환자원 포장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 또는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도안의 크기는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순환자원의 포장, 홍보 인쇄물, 사업장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다. 도안을 표시하려는 장소가 좁아 도안 전체를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도안 모형 중 품질에 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지정 취소			

제4편
자원순환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950	제1조(목적) 1950	제1조(목적) 1950
제2조(정의) 1951	제2조 삭제 1951	
	제3조(지정부산물) 1951	
	제4조(재활용산업) 1953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1951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1953	제2조(재활용제품) 1952
	제5조(1회용품) 1954	제3조(재활용시설) 1952
	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1954	
제2조의2 삭제 1954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195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954		
제4조 삭제 1954		
제5조 삭제 1954		
제6조 삭제 1954		
제7조 삭제 1954	제6조 삭제 1954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 11. 28.)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 3. 21.)		
제8조(자원의 절약 등) 1955		
제8조의2 삭제 1955	제6조의2 삭제 1955	
	제6조의3 삭제 19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1955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1955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1957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1957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1957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1958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1959		제3조의5(개선명령) 1959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1960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1960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1959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960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1960	제3조의7(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1959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1962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1962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1963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963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1962
제12조(폐기물부담금) 1963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1963	제4조의3 삭제 1963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1965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1965	
제12조의3(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1966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1966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1966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 1968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 1968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1966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1967
제14조의2(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1967
제14조의3(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1968
제14조의4(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1969
제14조의5(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1969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19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1970</p>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p>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 3. 21., 2020. 6. 9.)</p> <p>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1972</p> <p>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974</p> <p>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1974</p> <p>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1976</p> <p>제14조(분리배출 표시) ······ 1976</p> <p>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1978</p> <p>제15조의2(비용기의 재사용 촉진) ······ 1978</p> <p>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1980</p> <p>제15조의3(비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 1982</p> <p>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 1983</p> <p>제15조의4(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 1983</p>	<p>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 1970</p> <p>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 1970</p> <p>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 1971</p> <p>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1972</p> <p>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1972</p> <p>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 1973</p> <p>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 1975</p>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 1976</p> <p>제17조(비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 1978</p>	<p>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 1970</p> <p>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1972</p> <p>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1977</p> <p>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 1978</p> <p>제12조의2(비용기보증금액) ······ 1979</p> <p>제12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 1979</p> <p>제12조의4(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 1980</p> <p>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 1983</p> <p>제12조의6(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 1983</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1984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1984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1984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p>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1985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1985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1989 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1990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1991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1989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1991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991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1991
제17조(재활용의무율) 1993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1993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1994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1994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1995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995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1995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1995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1996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1996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1997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1996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1996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1997	제27조(재활용비용) 1997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1998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1998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1998
		제18조의3 삭제 1999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1999	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1999	
	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2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2001 제21조 삭제 2001 제22조 삭제 2001 제22조의2 삭제 2001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2001 제24조 삭제 2002 제24조의2 삭제 2002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2003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2003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2004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2004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2007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2009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2010	제30조 삭제 2001 제30조의2 삭제 2001 제31조 삭제 2001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01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02 제34조 삭제 2002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03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2004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2006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2007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2007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2008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2008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2009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 20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2012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2012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2013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2012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2014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2014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2014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2015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2015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2015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2016		제20조의12(관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2016
제25조의13(관리·의무의 승계 등) 2016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입력) 2017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017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2018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2018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2019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2019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2019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 5. 22.)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2020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2020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20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2021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2022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202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2023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2023 제29조(분담금 등) 2023 제30조(「민법」의 준용) 2024		제21조의2(빈용기의 회수 및 촉진을 위한 사업) 2021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2022 제23조(인가의 취소) 2023 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023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17. 11. 28.)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2024 제32조 삭제 2025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2025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2025 제38조 삭제 2025 제39조 삭제 2025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2025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2026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2026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2026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2028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2028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2028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2027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2027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2026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2027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2029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2029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2028 제45조 삭제 20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2030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2031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2031		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2031
제34조의9 삭제 2032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2032		
제5장 보칙 (개정 2008. 3. 21.)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2032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2032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익신청) 2033	
	제46조의3 삭제 2034	
제35조의2 삭제 2034		
제35조의3 삭제 2034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2034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2034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2034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2036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2036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 2037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2038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038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038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2038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2039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2039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2040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2040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040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43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2044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2044	
		제28조(규제의 재검토) 20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청문) 2045		
제6장 벌칙 <개정 2008. 3. 21.>		
제39조(벌칙) 2045		
제39조의2(벌칙) 2046		
제40조(양벌규정) 2047		
제41조(과태료) 2047	제50조(과태료의 부과) 2047	
제41조(과태료) 2049		
제42조 삭제 2052		
부칙 2052	부칙 2052	부칙 2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2.12. 8 법률 제4538호 전부개정 2002. 2. 4 법률 제6653호 2003.12.30 법률 제7021호 2003.12.30 법률 제7023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2004.12.31 법률 제7296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 3.31 법률 제7464호 2005.11.29 법률 제7778호 2006. 3. 3 법률 제786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2호 2007. 1. 3 법률 제8212호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4.27 법률 제840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 5.11 법률 제8427호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 8. 3 법률 제8611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48호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 4. 1 법률 제9584호 (산악발전법) 2009. 5.21 법률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 7.23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2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5.22 법률 제11788호 2013. 8.13 법률 제12076호 2014. 1.21 법률 제12319호 2015. 1.20 법률 제13036호 2016. 5.29 법률 제14230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101호 2018.12.24 법률 제16083호 2019.11.26 법률 제16611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범용업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26호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제정 1993. 6.24 대통령령 제13915호 전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908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적활성화및공공설비에 관한법률시행령) 2004. 1.29 대통령령 제18267호 (유동산업발전법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정보처리기술위원회의사무장 관리규정중개정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42호 2004.11.30 대통령령 제18593호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1호 2005. 6.13 대통령령 제18863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8.17 대통령령 제19006호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4호 2006. 5.25 대통령령 제19487호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6.29 대통령령 제19572호 2007. 3.27 대통령령 제19971호 2007. 6.11 대통령령 제20088호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건축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9호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5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5호 2009. 6.30 대통령령 제21589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 (식물생태법 시행령)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8호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2.20 대통령령 제22535호 2011. 3.22 대통령령 제2271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1.22 대통령령 제24331호	제정 1993. 7.31 대통령령 제429호 전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35호 2004. 4.17 환경부령 제155호 2004.12.10 환경부령 제164호 2005.12.30 환경부령 제188호 2006. 6.29 환경부령 제211호 2006.11.10 환경부령 제220호 2007. 3.28 환경부령 제231호 2007. 6.29 환경부령 제234호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67호 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6.30 환경부령 제292호 2008.10.21 환경부령 제304호 2009. 4. 7 환경부령 제329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9. 7.13 환경부령 제340호 2009.12.31 환경부령 제356호 2010.12.31 환경부령 제390호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1.31 환경부령 제497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2 환경부령 제525호 2014. 2.12 환경부령 제545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령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9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28 대통령령 제251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7호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4. 7.21 대통령령 제25497호 2014.10.22 대통령령 제25664호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 2015.11.26 대통령령 제26667호 2016. 1.19 대통령령 제26906호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6호 2017. 1.26 대통령령 제2780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9호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2호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3호 2019.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9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 4.14 대통령령 제30618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p>	<p>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7.22 환경부령 제567호 2015.10.23 환경부령 제617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건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21 환경부령 제638호 2016. 4.29 환경부령 제650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29 환경부령 제729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2.31 환경부령 제798호 2018.11.28 환경부령 제777호 2018.12.31 환경부령 제798호 2019. 4.17 환경부령 제805호 (진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4 환경부령 제835호 2020. 5.27 환경부령 제869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품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p>제2조 삭제 <2007. 12. 28.></p> <p>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p>[전문개정 2009. 4. 6.]</p>	<p>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것을 말한다.</p> <p>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p> <p>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p>[본조신설 2014. 7. 22.]</p> <p>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p> <p>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 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 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p> <p>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p> <p>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p>	<p>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p>[전문개정 2009. 4. 6.]</p> <p>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p>[전문개정 2009. 4. 6.]</p>	<p>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p> <p>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p> <p>[전문개정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p> <p>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2조의2 삭제 (2017. 11. 28.)</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08. 3. 21.]</p> <p>제4조 삭제 (2017. 11. 28.)</p> <p>제5조 삭제 (2017. 11. 28.)</p> <p>제6조 삭제 (2017. 11. 28.)</p> <p>제7조 삭제 (2017. 11. 28.)</p>	<p>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p> <p>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p>[본조신설 2009. 4. 6.]</p> <p>제6조 삭제 (2017. 12. 26.)</p>	<p>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p>[전문개정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 11. 28.)</p> <p>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 3. 21.)</p> <p>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8조의2 삭제 (2017. 11. 28.)</p> <p>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p>제6조의2 삭제 (2017. 12. 26.)</p> <p>제6조의3 삭제 (2017. 12. 26.)</p> <p>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음료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원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p> <p>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마. 의약품류</p> <p>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p> <p>사. 전자제품류(3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p> <p>야.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p> <p>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p> <p>가. 삭제 (2015. 11. 26.)</p> <p>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p> <p>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p> <p>라. 삭제 (2015. 11. 26.)</p> <p>마. 삭제 (2009. 12. 31.)</p> <p>[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p>[본조신설 2013. 5. 22.] [제목개정 2018. 12. 24.]</p> <p>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 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24.]</p> <p>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12. 24.]</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p> <p>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p> <p>제3조의7(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의5(중단명령을 같은과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p>제7조의2(중단명령을 같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p>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p>	<p>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4.]</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p> <p>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p> <p>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p> <p>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p> <p>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p> <p>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p> <p>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p> <p>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p> <p>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p> <p>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p> <p>2. 삭제 <2018. 12. 31.></p> <p>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p>[본조신설 2007. 5. 11.]</p>	<p>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4. 2. 11.]</p>	<p>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2. 12.]</p> <p>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p>	<p>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p>[본조신설 2009. 4. 6.]</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p>[전문개정 2009. 4. 7.]</p> <p>제4조의3 삭제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p>「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p> <p>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p>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1. 26.></p> <p>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p>	<p>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p> <p>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p>	<p>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 2013. 1. 31., 2014. 2. 12.,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p>[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2. 11. 1.]</p> <p>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p> <p>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p> <p>[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p>	<p>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5. 27.]</p> <p>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9. 12. 24., 2020. 5. 27.></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p> <p>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p> <p>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p> <p>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9. 11. 26., 2020. 5. 26.></p> <p>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p> <p>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p>	<p>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재료·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p> <p>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p> <p>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p>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수입실적 및 회수·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p> <p>[본조신설 2013. 1. 22.]</p>	<p>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9. 12. 24., 2020. 5. 27.></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회수할 때에는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하거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1. 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p> <p>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발포폴리스티렌(EPS), 그 밖에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과 기준</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2. 2. 1.></p>	<p>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p>	<p>3.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재생원료·성형제품·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본조신설 2013. 1. 31.]</p> <p>제9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13. 1. 31.]</p> <p>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p> <p>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 22.></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p> <p>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p>	<p>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7.]</p> <p>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p>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11.] [중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 2. 11.)]</p> <p>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p>	<p>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p> <p>③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2.]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2. 1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중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3. 8. 13.)]</p>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p> <p>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신설 2008. 3. 21.,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p> <p>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p> <p>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2. 11.)]</p>	<p>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1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08. 3. 21.]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 8. 13.)]</p>	<p>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p>	<p>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p> <p>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2014. 7. 22.> [전문개정 2009. 4. 7.]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2. 1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p>	<p>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29.></p> <p>[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1. 21.)</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7. 12.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p>[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p> <p>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p>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p>[본조신설 2013. 5. 22.]</p> <p>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p>	<p>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p>	<p>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 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들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들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충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제17조(빈용기보충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p>[전문개정 2009. 4. 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09. 4. 6.>]</p>	<p>된 경우 [전문개정 2009. 4. 7.]</p> <p>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기능지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유통지원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6. 1. 21.]</p> <p>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 21.></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19조에서 이동 <2009. 4. 7.>]</p> <p>제12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2. 임차료 등 빈용기 보관에 드는 비용 3. 빈용기 운반에 드는 차량·유류비 <p>②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5. 1. 20.]</p> <p>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p>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6. 1. 21.]</p> <p>제12조의4(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의2 제7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지원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6. 1. 21.>]</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p> <p>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p> <p>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p> <p>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 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0. 6. 9.></p> <p>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p> <p>[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5. 1. 20., 2020. 6. 9.] [시행일 : 2022. 6. 10.] 제15조의2</p> <p>제15조의3(비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비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비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비용기보증금액보다 비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p>4의2. 비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빈 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본조신설 2008. 3. 21.]</p> <p>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기등의 회수를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p>4의2.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p> <p>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2. 6. 10.] 제15조의3</p> <p>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p>		<p>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p> <p>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가 미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 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 <p>[전문개정 2009. 4. 7.]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p> <p>제12조의6(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p> <p>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2. 6. 10.] 제15조의4</p> <p>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부과·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제15조의5</p> <p>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p>		<p>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1.]</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p> <p>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p> <p>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p> <p>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p> <p>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제15조의6</p> <p>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 3. 21.)</p> <p>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p>	<p>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1. 26.></p>	<p>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기본품 및 반포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9., 2010. 12. 20., 2011. 3. 22., 2013. 11. 20., 2014. 1. 28., 2014. 7. 16., 2015. 11. 26., 2016. 1. 19., 2016. 12. 30., 2017. 1. 26., 2018. 12. 31., 2019. 7. 2.></p> <p>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p> <p>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p> <p>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p> <p>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p> <p>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p> <p>바. 부탄가스제품</p> <p>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p> <p>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p> <p>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p> <p>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p> <p>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p> <p>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p> <p>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p> <p>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p> <p>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중량제 봉투는 제외한다)</p> <p>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p> <p>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p> <p>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p> <p>라. 1회용 비닐장갑</p> <p>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p> <p>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p> <p>가. 수은전지</p> <p>나. 산화은전지</p> <p>다. 니켈카드뮴전지</p> <p>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p> <p>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p> <p>바. 니켈수소전지</p> <p>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p>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p> <p>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p> <p>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p> <p>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p> <p>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p>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회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p> <p>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p> <p>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p> <p>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p> <p>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p> <p>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p> <p>9. 곤포(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p> <p>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p> <p>11.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20. 4. 14.]</p>	<p>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제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p>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4.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삭제 <2013. 11. 20.>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p>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중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 5. 2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p>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p>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p>	<p>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p> <p>7. 삭제 <2013. 11. 20.></p> <p>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p> <p>[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p> <p>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2020. 4. 14.>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6. 1. 19.]</p>	<p>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전문개정 2009. 4.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27.>]</p> <p>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 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1. 26.></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p>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p>		<p>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전문개정 2009.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p>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p>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2. 6. 10.] 제16조</p> <p>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p>	<p>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에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4. 6.]</p> <p>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2.]</p> <p>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반용기제사용생산자 	<p>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p> <p>[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p>	<p>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② 영 제24조에 따라 반용기제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5. 22.]</p>	<p>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p> <p>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p>	<p>11. 22., 2016. 1. 21.)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p> <p>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p> <p>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보증금대상사업자 <p>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5. 22.] [시행일 : 2022. 6. 10.] 제18조</p> <p>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p>	<p>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3. 11. 20.]</p> <p>제27조(재활용비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한</p>	<p><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p>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내역 <p>[전문개정 2009. 4. 7.] [제목개정 2013. 11.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p> <p>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p> <p>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상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p> <p>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p>	<p>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p> <p>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p> <p>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p> <p>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3. 11. 20.></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2020. 5. 27.></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2.></p> <p>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 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p> <p>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p> <p>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p>	<p>제28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1. 20., 2014. 10.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 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0. 5. 27.> [본조신설 2012. 11. 1.]</p> <p>제18조의3 [제12조로 이동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2. 1. 6.] 제19조의2</p>	<p>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1조 삭제 <2007. 4. 27.></p> <p>제22조 삭제 <2008. 3. 21.></p> <p>제22조의2 삭제 <2008. 3. 21.></p> <p>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p>	<p>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1. 20.></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목개정 2013. 11. 20.]</p> <p>제30조 삭제 <2007. 12. 28.></p> <p>제30조의2 삭제 <2007. 12. 28.></p> <p>제31조</p> <p>[제17조로 이동 <2009. 4. 6.>]</p> <p>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4조 삭제 (2007. 4. 27.) 제24조의2 삭제 (2014. 1. 21.)</p>	<p>3. 제철 및 제강업 [전문개정 2009. 4. 6.]</p> <p>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p>[전문개정 2009. 4. 6.]</p> <p>제34조 삭제 (2007. 12. 28.)</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증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p>[전문개정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p> <p>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p>		<p>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p> <p>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p> <p>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p> <p>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p> <p>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p> <p>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p> <p>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p> <p>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p> <p>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p> <p>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p> <p>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p> <p>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p> <p>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p>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7. 22.]</p> <p>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 <p>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2.]</p> <p>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p>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5. 27.]</p> <p>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제14호의8서식의 고행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20. 5. 27.></p> <p>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p> <p>제20조의4(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22.]</p> <p>제20조의5(고행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5. 27.></p> <p>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은 해당 고행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행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p> <p>[전문개정 2014. 7. 22.]</p> <p>[제목개정 2020. 5. 27.]</p> <p>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7. 22.] <p>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28.></p> <p>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p> <p>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 11. 28.></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법과 허가취</p>		<p>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p>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티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티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티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티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티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티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p>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티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티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티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티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7. 11. 28.]</p> <p>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p>		<p>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1. 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8.> [전문개정 2014. 7. 22.] [제목개정 2018. 11. 28.]</p> <p>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2.]</p> <p>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p>	<p>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p>	<p>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p> <p>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 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 (도면을 포함한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p> <p>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행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9(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p> <p>①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행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p> <p>② 고행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10(고행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p>	<p>하러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1.]</p>	<p>제20조의10(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p> <p>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p> <p>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m³ 이하 2.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m³ 이하 <p>[본조신설 2014. 7.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전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공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p>	<p>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p>	<p>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p> <p>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p>[본조신설 2014. 7.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p> <p>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1.]</p>	<p>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8.></p> <p>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자가중 원본</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품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품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8.) <p>[본조신설 2014. 7. 22.]</p> <p>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품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품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품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1.]</p>		<p>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7. 22.]</p> <p>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21.]</p>	<p>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1.]</p> <p>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p>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p>	<p>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 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 5. 22.)</p> <p>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p> <p>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1.]</p> <p>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p>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 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14. 7. 21.]</p>	<p>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2013. 11. 22.)</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p> <p>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p> <p>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8. 13.></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p> <p>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p>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p> <p>④ 삭제 <2013. 11. 22.></p> <p>⑤ 삭제 <2013. 11. 22.></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21조의2(빈용기의 회수 및 촉진을 위한 사업) 법 제28조의2 제4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빈용기</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3. 5. 22.]</p> <p>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 함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 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20. 6. 9.></p> <p>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 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④ 삭제 <2020. 6. 9.></p> <p>[본조신설 2013. 5. 22.]</p> <p>[시행일 : 2021. 6. 10.] 제28조의2</p> <p>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 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 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 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 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2.]</p>		<p>의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 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 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 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11.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p> <p>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13.] <p>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5. 1. 20.]</p>		<p>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2.]</p> <p>제23조의2(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1.]</p> <p>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 11. 28.></p> <p>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앞선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5. 22., 2014. 1. 21.,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p> <p>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p> <p>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p> <p>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p> <p>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p> <p>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p> <p>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09. 5. 21.)</p> <p>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p> <p>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32조 삭제 (2004. 12. 31.)</p> <p>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p> <p>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 사업</p> <p>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p> <p>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6.]</p> <p>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p> <p>제38조 삭제 (2005. 6. 13.)</p> <p>제39조 삭제 (2005. 6. 13.)</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p> <p>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2. 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p>[전문개정 2009. 4. 6.]</p> <p>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2.,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p>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p>	<p>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 12. 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p> <p>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별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p>	<p>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7.]</p> <p>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p>[전문개정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3. 21.]</p> <p>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p>	<p>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p> <p>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2. 3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3. 21.]</p> <p>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08. 3. 21.]</p> <p>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6.]</p> <p>제45조 삭제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 5.></p> <p>[본조신설 2008. 3. 21.]</p> <p>[시행일 : 2021. 7. 6.] 제34조의5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4조의5제5항</p> <p>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7. 11. 28.]</p> <p>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본조신설 2008. 3. 21.] [제목개정 2017. 11. 28.]</p> <p>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21.]</p>		<p>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4조의9 삭제 (2017. 11. 28.)</p> <p>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34조의10</p> <p>제5장 보칙 (개정 2008. 3. 21.)</p> <p>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p>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p>[전문개정 2009. 4. 6.]</p> <p>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5조의2 삭제 (2017. 11. 28.) 제35조의3 삭제 (2017. 11. 28.)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4. 1. 21., 2015. 1. 20., 2018. 12. 24.,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p>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0.] 제46조의3 삭제 (2017. 12. 26.)</p>	<p>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14. 2. 12., 2014. 7. 22., 2016. 1. 21.,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들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3. 제27조에 따른 조합</p> <p>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행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5. 1. 20.></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4. 1. 21., 2015. 1. 20.,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p>[전문개정 2009. 4. 7.]</p> <p>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4.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소매업자</p> <p>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p> <p>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p> <p>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p> <p>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p> <p>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p> <p>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p> <p>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자</p> <p>13. 제27조에 따른 조합</p> <p>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p> <p>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5. 1. 20.></p> <p>[전문개정 2008. 3. 21.]</p> <p>[시행일 : 2021. 6. 10.] 제36조</p>		<p>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p> <p>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p>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크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4. 7.]</p> <p>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1., 2013. 11. 22., 2017. 12. 29., 2020. 5. 27.></p> <p>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p> <p>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p> <p>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p> <p>3. 삭제 (2012. 11. 1.)</p> <p>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p> <p>5. 삭제 (2016. 1. 21.)</p> <p>6. 삭제 (2016. 1. 21.)</p> <p>7. 삭제 (2016. 1. 21.)</p> <p>8. 삭제 (2016. 1. 21.)</p> <p>9. 삭제 (2016. 1. 21.)</p> <p>[전문개정 2009. 4. 7.]</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p> <p>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 20.] [시행일 : 2022. 6. 10.] 제36조의2</p> <p>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p>		<p>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p>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6. 1. 21.]</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p> <p>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p> <p>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시행일 : 2022. 6. 10.] 제36조의3</p> <p>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p> <p>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자료의 제출</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4.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p>[전문개정 2009. 4. 6.]</p> <p>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p> <p>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같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p> <p>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명령 시 청문</p> <p>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가. 법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p> <p>나. 법 제41조제1항제15호</p> <p>다. 법 제41조제1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행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p> <p>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p> <p>1의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p> <p>1의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p> <p>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p> <p>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p> <p>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p> <p>4의2.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스템의 구축·운영</p> <p>4의3.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p> <p>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p> <p>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p> <p>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p> <p>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p> <p>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p> <p>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p> <p>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p> <p>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p> <p>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p> <p>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p> <p>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p> <p>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p> <p>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p> <p>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p> <p>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p> <p>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와 통보</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14. 7. 21.></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9. 12. 24.]</p> <p>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p> <p>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p> <p>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p> <p>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p> <p>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p> <p>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5. 11. 26.]</p> <p>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p> <p>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p> <p>[전문개정 2009. 4. 6.]</p> <p>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p>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역제·무상제공금지 대상 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3. 8. 13.]</p> <p>제6장 벌칙 <개정 2008. 3. 21.></p>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품연료제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12조의2에 따른 비용기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p>[전문개정 2014. 4. 30.]</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p> <p>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p> <p>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p> <p>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p> <p>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p>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2021. 1. 5.)</p> <p>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p> <p>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p> <p>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p> <p>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p> <p>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p> <p>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p> <p>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5.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p> <p>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본조신설 2014. 1. 21.]</p> <p>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 1. 21.]</p> <p>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p> <p>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p> <p>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p>	<p>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본조신설 2009. 4. 6.]</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p> <p>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겹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p> <p>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p> <p>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p> <p>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p> <p>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p> <p>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p> <p>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행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p> <p>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행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p> <p>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p> <p>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p> <p>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p> <p>[전문개정 2008. 3. 21.]</p> <p>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p> <p>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p> <p>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p> <p>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p> <p>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p> <p>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2. 6. 10.] 제41조</p> <p>제42조 삭제 <2014. 1. 21.></p> <p>부칙 <제6653호, 2002. 2. 4.></p> <p>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p> <p>제2조(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3조(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p>	<p>부칙 <제17808호, 2002. 12.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납부시기·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고시할 수 있다.</p> <p>제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부칙 <제135호, 2002. 12. 3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 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종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p> <p>부칙 <제155호, 2004. 4.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64호, 2004. 12. 1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88호, 2005. 12. 30.></p> <p>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에 같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7021호, 2003. 12. 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023호, 2003. 12. 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7296호, 2004. 12. 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p> <p>부칙 <제7464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8039호, 2003. 6.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8267호, 2004. 1. 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211호, 2006. 6. 29.>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2·제26조제11호의 2 및 별표 6 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0호, 2006. 1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페플라스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행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행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페플라스트 고행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행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페플라스트 고행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페플라스트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행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31호, 2007. 3. 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p> <p>부칙 <제7778호, 2005. 12. 29.></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864호, 2006. 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p> <p>부칙 <제8012호, 2006. 9.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212호, 2007. 1.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③내지 ⑦생략</p> <p>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p> <p>부칙 <제18442호, 2004. 6. 25.></p> <p>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8593호, 2004. 11. 30.></p>	<p>부칙 <제234호, 2007. 6. 29.></p> <p>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타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 생략</p> <p>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p> <p>㉘ 내지 ㉞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8405호, 2007. 4.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p> <p>제21조를 삭제한다.</p> <p>제24조를 삭제한다.</p> <p>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p> <p>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427호, 2007. 5. 11.></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p> <p>③(재활용의무물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p> <p>부칙 <제18611호, 2004. 12. 30.></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8863호, 2005. 6. 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p> <p>② 생략</p>	<p>“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p> <p>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p> <p>⑧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267호, 2007. 12. 31.></p> <p>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p> <p>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611호, 2007. 8. 3.></p>	<p>부칙 <제19006호, 2005. 8. 17.></p> <p>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204호, 2005. 12. 28.></p> <p>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487호, 2006. 5. 2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494호, 2006. 5.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p> <p>제6조 생략</p>	<p>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부칙 <제292호, 2008. 6.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04호, 2008. 10. 2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29호, 2009. 4. 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p>	<p>부칙 <제19572호, 2006. 6. 29.></p> <p>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971호, 2007. 3. 27.></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8948호, 2008. 3. 21.></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p> <p>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부칙 <제20088호, 2007. 6. 11.></p> <p>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244호, 2007. 9.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p>	<p>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340호, 2009. 7.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56호, 2009. 12. 31.></p> <p>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90호, 2010. 12. 31.></p> <p>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p> <p>부칙 <제9584호, 2009. 4. 1.> (산업발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9685호,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부터 ㉞ 까지 생략 제8조 생략</p> <p>부칙 <제10389호, 2010. 7. 23.> (폐기물관리법)</p>	<p>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㉞ 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부칙 <제20290호, 2007. 9.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㉞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0479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905호, 200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415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부칙 <제497호, 2013. 1.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페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페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p> <p>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676호, 2009. 8. 6.> (식품위생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p> <p>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5호, 2013. 11. 22.></p> <p>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5호, 2014. 2. 12.></p> <p>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0호, 2014. 6. 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7호, 2014. 7. 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7호, 2015. 10. 2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6조 생략</p> <p>부칙 <제11262호, 2012. 2. 1.></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p>	<p>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p>	<p>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8호, 2016. 1. 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50호, 2016. 4.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 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788호, 2013. 5. 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2076호, 2013. 8. 1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부칙 〈제12319호, 2014. 1.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행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⑰ 부터 ㉠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1958호, 200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2395호, 2010. 9. 20.〉 (지방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㊱부터 ㊳까지 생략</p>	<p>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729호, 2017. 12. 29.〉</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㊱부터 ㊳까지 생략</p> <p>부칙 〈제777호, 2018.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3036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14230호, 2016. 5. 29.></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101호, 2017. 11. 28.></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22497호, 2010. 11. 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p> <p>제8조 생략</p> <p>부칙 <제22535호, 2010. 12.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복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2715호, 2011. 3. 2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당시 사용 중인 고휘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휘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휘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휘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798호, 2018. 12. 31.></p> <p>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05호, 2019. 4. 17.> (잔류성유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리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083호, 2018.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11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채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⑤부터 ⑧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8조… <생략>…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p>	<p>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p> <p>③부터 ⑤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호, 2019. 12. 24.)</p> <p>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9호, 2020. 5.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중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p>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전의 제12조 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자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426호, 2020. 6. 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p>	<p>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4331호, 2013. 1.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기치세법 시행령)</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확인한 비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취급수수료를 반환·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47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비교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p> <p>⑥부터 ⑧까지 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869호, 2013. 11. 2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교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050호, 2013. 12. 30.></p> <p>(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33호, 2014. 1. 28.></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p> <p>⑩부터 ⑫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167호, 2014. 2. 11.></p> <p>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76호, 2014. 7. 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p> <p>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497호, 2014. 7. 21.></p> <p>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664호, 2014. 10.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류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 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복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p> <p>제3조(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088호, 2015. 2. 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667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범위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906호, 2016. 1.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36호, 2016.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06호, 2017. 1. 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p> <p>⑥부터 ⑩까지 생략</p> <p>제4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p> <p>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p> <p>⑯부터 ㉒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499호, 2017. 12. 26.></p> <p>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부터 <51>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312호, 2018. 11.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기본계획</p> <p>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53호, 201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30259호, 2019. 12.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재활용의무를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618호, 2020. 4.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2020년도 매출·수입액 또는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2075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같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2075
[별표 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2076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2077
[별표 3]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2078
[별표 4]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2079
[별표 5] 재활용의무를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81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2082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2083
[별표 7의2] 금지명령을 같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2083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2084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
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립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9. 12. 24.>

중단명령을 같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같음
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 \times 재활용의무율 \times 재활용단위비용$
-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의3] <개정 2019. 12. 2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13. 가구 제조업(C3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구 제조업(C320)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56.2원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자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 비고

- 위 표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 표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한다.
- 위 표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 투입량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10억원 ÷ 연간 매출액(원)
 -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
 - 나.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만킬로그램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70퍼센트) +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 50퍼센트)
-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고,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 감면한다.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60\text{퍼센트}) + (\text{연간 매출액 } 100\text{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times 30\text{퍼센트})$$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5호 각 목의 구분 및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투입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kg) × (연간 매출액 - 1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다. 연간 매출액 20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200억원 ÷ 연간 매출액(원)

[별표 3] <개정 2009.12.31>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1. 계산기 및 전자수첩
2. 면도기,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3. 휴대용 전등
4.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6. 카메라
7. 시계
8. 어린이용 완구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별표 4] <개정 2020. 4. 14.>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19조 관련)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 및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3.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14. 제18조제3호의2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 비고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다.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은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기준 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4.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위 표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6. 위 표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상자를 말한다.
 7. 위 표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8. 위 표 제10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9. "연간 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10.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9. 12. 24.>

재활용의무를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평균 재활용률} + (\text{장기 재활용목표율} - \text{평균 재활용률}) \times \text{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text{조정계수}$$

※ 비교

- 1) “장기 재활용목표율”이란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반영계수는 다음과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1/5	1/4	1/3	1/2	1

- 3) “재활용률”이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줄인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5호에 따른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4) “평균 재활용률”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해 최근 연도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재활용률을 말하며, 가중치는 최근 연도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다만,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부터 과거 2년 이내 재활용률을 가중치 없이 평균한 값을 말한다.
- 5) 전전년도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재활용률” 대신 “전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6) “조정계수”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9. 7. 2.>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kg당 185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kg당 87원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17원
		kg당 981원
		kg당 178원
kg당 235원		
kg당 360원		
kg당 327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kg당 317원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467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소포백	kg당 467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0.8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타이어	kg당 30원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윤활유	ℓ 당 20원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형광등	개당 143원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kg당 627원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곤포(몽치) 사일리지용 필름	kg당 527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kg당 545원

※ 비교

-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의 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 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표 7] <개정 2009.4.6>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가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단위비용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별표 7의2] <신설 2014.7.21>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기준

- 1)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금지기간”이라 한다)에 3)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2) 금지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 본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금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연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을 연간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해당 고�형연료제품이 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의 산출기준

연간 고품연료제품의 수입량·제조량 또는 사용량	금지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000톤 이하	50,000원
1,000톤 초과 2,500톤 이하	100,000원
2,500톤 초과 5,000톤 이하	200,000원
5,000톤 초과 7,500톤 이하	300,000원
7,500톤 초과 10,000톤 이하	400,000원
10,000톤 초과 12,500톤 이하	500,000원
12,500톤 초과 15,000톤 이하	600,000원
15,000톤 초과 17,500톤 이하	700,000원
17,500톤 초과 20,000톤 이하	800,000원
2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900,000원
25,000톤 초과 30,000톤 이하	1,000,000원
30,000톤 초과 40,000톤 이하	1,500,000원
40,000톤 초과 50,000톤 이하	2,000,000원
50,000톤 초과 60,000톤 이하	2,500,000원
60,000톤 초과 70,000톤 이하	3,000,000원
70,000톤 초과 80,000톤 이하	3,500,000원
80,000톤 초과 90,000톤 이하	4,000,000원
90,000톤 초과 100,000톤 이하	4,500,000원
100,000톤 초과 120,000톤 이하	5,000,000원
120,000톤 초과	6,000,000원

[별표 8] <개정 2020. 4.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2호의2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2호의3	100	200	3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호	500	700	1,000
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3항 제1호	50	70	100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4호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차.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6호	50	100	300
카.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기 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6호의2	50	150	300
타.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7호	200	250	300
파.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2호	500	700	1,000
하.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7호의2	200	25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3항 제2호	30	50	100
너.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8호			
1)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경우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150	200	300
더.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9호	200	250	3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러.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0호	100	200	300
머.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1호	50	150	300
버.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품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2호	100	200	300
서.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3호	100	200	300
어.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4호	100	150	200
저.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5호	100	200	300
차.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6호	100	200	300
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1조제3항 제3호	50	7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2091
[별표 1의2]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2093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2093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2095
[별표 4] 빈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2096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2096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2098
[별표 7]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2099
[별표 7의2] 고행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2100
[별표 8]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2101
[별표 8의2]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2101
[별표 9]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2102
[별표 10]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2104
[별표 11] 고행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2105

[별표 1] <개정 2018. 11. 28.>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 가. 폐금속류
- 나. 폐산·폐알칼리
- 다. 폐유기용제
- 라. 폐섬유
-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 바. 공정 오니
- 사. 육가공 잔재물
-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 자. 가죽가공 잔재물
- 차. 식물성 잔재물
-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 타.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도자기 편류(片類)
- 파. 건설폐자재[토사(土砂),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 하. 폐전지류
- 거. 폐석고류
-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사용한 중질지(中質紙) 또는 백상지(白上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 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 4) 1)부터 3)까지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 나. 폐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 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 이상 사용한 백판지(白板紙)
 -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Liner)
 - 4) 1)부터 3)까지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그 밖의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 나. 삭제 <2013.1.31.>

4. 페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페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成形)제품
- 나. 페플라스틱 재생원료(펠릿, 플레이크 등)
- 다. 페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 라. 페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마. 삭제 <2013.1.31.>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재생타이어 및 페타이어 단순가공제품
- 나. 폐고무를 분쇄한 고무분말
- 다.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
-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 마. 페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제품
- 바. 삭제 <2013.1.31.>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또는 소각 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 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 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 비료 또는 퇴비 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한 비누제품
 나.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 및 BD20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별표 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행연료 제품
 가. 일반 고행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 3) 폐합성섬유류
 -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 5) 폐타이어
 -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행폐기물
- 나. 바이오 고행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행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1) 폐지류
 -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반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굴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5) 초본류 폐기물
 -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 매스(Biomass) 폐기물

11.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별표 1의2] <신설 2019. 12. 24.>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구분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3.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비고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 12. 31.>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물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삼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창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창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퇴거할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2.12>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증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6.1.21.>

빈용기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2.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품목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별표 5] <개정 2016.1.21.>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1.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준수사항

- 가.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것
-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유통지원센터에 납부할 것
- 다.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라.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제품의 빈용기가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돌려줄 것. 다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한 자가 표준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 마.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보증금 환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바. 빈용기의 분류 및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및 빈용기 회수를 늘릴 것
- 사.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할 것
- 나.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전액 소매업자에 지급할 것
- 다.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할 것
- 라.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품별(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할 것
 - 마.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플라스틱 박스 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할 것
 - 바.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포함 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나.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
할 것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할 것
 - 라.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도매업자 및 빈용기재
사용생산자에게 반환 시 제조·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할 것
 - 마.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의 가격과 빈용기보증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바. 유통지원센터가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4. 유통지원센터의 준수사항
-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 나. 제1호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빈용기 반환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
 - 다. 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관리
할 것
 - 라.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것
 - 마. 라목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별표 6] <개정 2019. 12. 20.>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페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나. 페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다. 페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 나.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라. 페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사. 용광로 환원재,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물질	용출액 기준
납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3밀리그램(3mg/ℓ)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ℓ)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3밀리그램(0.3mg/ℓ) 이상

-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페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나. 페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다. 페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라. 페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을 제조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품연료제품으로 재활용
- 사. 페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산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기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 고품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품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품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	15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회분 함유량	wt. %	20 이하				
염소 함유량	wt. %	2.0 이하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	0.6 이하 (2.0 이하)				

비고

-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 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	10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회분 함유량		wt. %	15 이하			
염소 함유량		wt. %	0.5 이하			
황분 함유량		wt. %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	95 이상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7의2] <신설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수은 함유량	mg/kg	≤0.2	≤0.5	≤1
염소 함유량	wt. %	≤0.5	≤1	≤2
황분 함유량 (페타이어머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	≤0.2 (≤1.6)	≤0.4 (≤1.8)	≤0.6 (≤2.0)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단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kcal/kg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수은 함유량	mg/kg	≤0.1	≤0.3	≤0.6
염소 함유량	wt. %	≤0.1	≤0.3	≤0.5
황분 함유량	wt. %	≤0.05	≤0.1	≤0.6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품질등급	구분기준
최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이상
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8점 이상 10점 미만
양호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4점 이상 8점 미만

[별표 8] <개정 2014.7.2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에너지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준하여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항 목	산 정 기 준
인건비	에너지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을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2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출장비	현지 확인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모든 경비	인건비의 50% 이내로 한다.
검사비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별표 8의2] <신설 2018. 11. 2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계획
 -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 공급 계약기간
 -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4. 에너지 이용계획: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용도별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5. 방지시설 설치계획
 -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6.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
 -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
 - 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
 -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별표 9]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散)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라. 시설 전체나 각 설비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소감지센서 및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마. 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바.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1)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퍼트 등)일 것
 - 2) 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 3) 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4)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5) 고형연료제품의 보관량이나 반입량·반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기준
 - 가. 제조능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라. 저장시설
 - 1)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체하중(自體荷重), 적재하중(積載荷重), 지진력(地震力) 및 온도응력(溫度應力)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 3)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마. 투입시설
 - 1)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으로 투입·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바. 이송시설
 - 1)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이 연속적으로 이송되고, 이송과정에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 당 이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 정제, 낚, 탈리(脫離)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파쇄·분쇄·절단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파쇄·분쇄·절단 규격의 조정 및 소모품(파쇄 칼날 등)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아. 선별시설

1)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입도선별, 풍력선별, 자력선별, 비철금속선별, 광학선별 등)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선별된 후 발생하는 불연물 등의 잔재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 건조시설

1)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塗料)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

4)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차. 성형시설

1)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일 것

2) 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제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카. 포장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타. 환경오염 방지시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가.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에너지(열, 전기 등) 전환율을 자동 측정·기록·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그 밖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세부 검사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0제1항 관련)

-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화재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
 - 라. 고형연료제품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다만, 보관창고를 갖추고 추가로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해야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포장하여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마. 고형연료제품을 폐쇄된 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보관시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할 것
 - 바. 고형연료제품 운반차량은 차량 옆면에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명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밀폐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비산먼지 또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악취가 폐기물 저장시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삭제 <2015.12.22.>

-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 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별표 11] <개정 2020. 5. 27.>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제20조의11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금지명령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무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무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의 기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10 제2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5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금지명령 1개월	금지명령 3개월
2) 법 제25조의5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 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0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편
자원순환

0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111
제2조(적용범위)	2111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111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111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2111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2111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2112
제7조 삭제	2112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2112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2112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2112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2112
제12조(규제의 재검토)	2112
부칙	211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93. 8.17	총 리 령	제430호
전부개정	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
개정	2006. 3.14	환경부령	제202호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12.31	환경부령	제355호
	2011. 1. 6	환경부령	제392호
	2011.11.17	환경부령	제430호
	2012. 9.28	환경부령	제477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9.17	환경부령	제518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3.16	환경부령	제644호
	2016.10.10	환경부령	제676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병영역어 장애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1.29	환경부령	제8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발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16.]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7조 삭제 (2009. 12. 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17.]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1. 17.]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8.)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전문개정 2011. 11. 17.]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137호, 2003.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06. 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201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 201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 2012. 9. 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518호, 2013.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축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 2016.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2117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2118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2118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켄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2] <개정 2011.11.17>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기준:	차 이내)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검사일 등			
전문검사기관명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6.3.1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반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반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제4편
자원순환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27	제1조(목적) 2127	제1조(목적) 2127
제2조(정의) 2127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21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1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28		
제5조(사업자의 책무) 2129		
제6조(국민의 책무) 2130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2130		
제8조 삭제 2130	제2조 삭제 2130	
	제3조 삭제 2130	
	제4조 삭제 2130	
	제5조 삭제 2130	
	제6조 삭제 2130	
	제7조 삭제 2130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21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2130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2131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2131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132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2131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2132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 2132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132
	제12조(재활용사업자) 21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2134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2133	
제14조(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2134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2135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 2135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2135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2135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2138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2135	
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2138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2136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2138	제15조의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138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2137
	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2138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138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2139	제5조의2(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2138
	제15조의6(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2139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2141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2141	제5조의3(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2139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 2142	제5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2140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2140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2141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214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 2144</p> <p>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 2145</p> <p>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 2146</p> <p>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2147</p> <p>제18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2148</p> <p>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 2151</p> <p>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 2152</p> <p>제20조의2 삭제 …… 2152</p> <p>제20조의3 삭제 …… 2152</p> <p>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 2152</p> <p>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2153</p> <p>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 2154</p>	<p>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 2142</p> <p>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 2144</p> <p>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 2144</p> <p>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 2145</p> <p>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 2146</p> <p>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 2147</p> <p>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 2147</p> <p>제21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2148</p> <p>제21조의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의 등) …… 2149</p> <p>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 2150</p> <p>제21조의6 삭제 …… 2150</p> <p>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 2150</p>	<p>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2142</p> <p>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 2144</p> <p>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 2145</p> <p>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 2148</p> <p>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 2149</p> <p>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 2150</p> <p>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2152</p> <p>제11조의2 삭제 …… 2152</p> <p>제11조의3 삭제 …… 2152</p> <p>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2154</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2155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2155 제23조(분담금 등) 2155 제24조(「민법」의 준용) 2156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2155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폐자동차</p>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용의 준수 등) 2156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2158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보관 등) 2158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총담) 2159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2159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2159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2160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2156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 2157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2157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2158 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등) 2158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총담) ··· 2159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2159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2160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2159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2160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p>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2162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2163 제33조(결격사유) 2163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2164 제33조의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2164 제34조(등록취소 등) 2165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2162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2162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2162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2164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216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2165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2166
제5장 보칙		
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2167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2167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2167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2168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2168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170	제34조(운영관리 정보) 2170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2171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2171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172	
제41조(청문) 2171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2174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2172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75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2175	제20조(규제의 재검토) 2175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2176		
제44조(양벌규정) 2176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176	
제45조(과태료) 2176		
제45조(과태료) 2179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2181		
부칙 2182	부칙 2182	부칙 218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07. 4. 27 법률 제8405호 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 2. 6 법률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2호 (환경정책기본법) 2010. 2. 4 법률 제10033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2010. 7. 23 법률 제10390호 2011. 4. 5 법률 제10549호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 16 법률 제11913호 2015. 1. 20 법률 제13037호 2015. 1. 20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8.10.16 법률 제15842호 2018. 6. 12 법률 제15657호 2018.10.16. 법률 제15842호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8호</p>	<p>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0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3호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9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3호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6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 7.13 대통령령 제26400호 2016. 3.22 대통령령 제27049호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3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3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4호</p>	<p>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8호 개정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 1. 3 환경부령 제442호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2.31 환경부령 제534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 7.20 환경부령 제607호 2016. 3.22 환경부령 제643호 2019. 6.12 환경부령 제811호 2019.12.31 환경부령 제84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21. 1. 5.></p> <p>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장치를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장기에 의하</p>	<p>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p> <p>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p> <p>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p> <p>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p>		<p>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p> <p>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절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10. 16.></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p>②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p> <p>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물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8조 삭제 (2010. 2. 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p> <p>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p>	<p>제2조 삭제 (2011. 12. 30.)</p> <p>제3조 삭제 (2011. 12. 30.)</p> <p>제4조 삭제 (2011. 12. 30.)</p> <p>제5조 삭제 (2011. 12. 30.)</p> <p>제6조 삭제 (2011. 12. 30.)</p> <p>제7조 삭제 (2011. 12. 30.)</p> <p>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p> <p>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p>	<p>하는 전기·전자제품</p> <p>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p> <p>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p> <p>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p>[제목개정 2013. 12. 30.]</p> <p>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p> <p>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p>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④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성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한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p>	<p>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p> <p>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p>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p> <p>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3. 12. 30.)</p> <p>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p>	<p>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물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3. 7. 16., 2018. 6. 12.)</p> <p>②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p> <p>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8. 6. 12.)</p>	<p>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p> <p>3. 삭제 (2016. 3. 22.)</p> <p>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p> <p>5. 삭제 (2016. 3. 22.)</p> <p>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19. 6. 11.)</p> <p>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p> <p>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p> <p>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p> <p>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p> <p>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p> <p>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p> <p>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p> <p>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14조(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p> <p>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p>	<p>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p> <p>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p>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적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전문개정 2013. 7. 16.]</p> <p>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p>	<p>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12. 30.]</p> <p>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 12. 30.]</p> <p>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령</p> <p>2.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p> <p>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포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p> <p>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p> <p>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p> <p>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16]</p>	<p>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12. 30.]</p> <p>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6. 11.></p> <p>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of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3.></p> <p>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p> <p>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p> <p>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p>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16. 3.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3. 12. 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1.></p> <p>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p>	<p>제15조의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p>[본조신설 2019. 6. 11.] [중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9. 6. 11.>]</p> <p>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p>[제목개정 2013. 12. 31.] [제5조에서 이동, 중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31.>]</p> <p>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제목개정 2013. 12. 31.] [제4조에서 이동, 중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12. 31.>]</p> <p>제5조의2(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19. 6. 12.] [중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p>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 12. 30.] <p>[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9. 6. 11.>]</p> <p>제15조의6(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7. 13., 2019. 6. 11.></p> <p>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p> <p>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의3(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p> <p>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5에서 이동 <2019. 6. 11.>]</p>	<p>매입·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2019. 6. 12.></p> <p>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회수 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본조신설 2012. 1. 3.]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 7. 20.>]</p> <p>제5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 7. 20.>]</p> <p>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p>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제목개정 2011. 4. 5.]</p>	<p>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p> <p>[제목개정 2011. 12. 30.]</p>	<p>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서 1부 3.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p>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p> <p>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p> <p>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p> <p>[제목개정 2011. 12. 30.]</p> <p>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p>	<p>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p> <p>[제목개정 2012. 1. 3.]</p> <p>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서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3.></p> <p>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사업자 <p>[제목개정 2012. 1. 3.]</p> <p>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p> <p>[전문개정 2011. 12. 30.]</p>	<p>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p>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p>[제목개정 2012. 1. 3.]</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6.)</p> <p>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삭제 (2013. 7. 16.)</p> <p>④ 삭제 (2013. 7. 16.)</p> <p>⑤ 삭제 (2013. 7. 16.)</p> <p>⑥ 삭제 (2013. 7. 1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p> <p>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2. 30.)</p> <p>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 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p> <p>[제목개정 2013. 12. 3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p>	<p>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2. 30., 2016. 3. 22.)</p> <p>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6. 3. 22.)</p> <p>⑤ 삭제 <2019. 6. 11.></p> <p>⑥ 삭제 <2019. 6. 11.></p> <p>[제20조에서 이동 <2013. 12. 30.>]</p> <p>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별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p> <p>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p>	<p>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p> <p>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p> <p>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같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p> <p>[본조신설 2012. 11. 1.]</p> <p>[제목개정 2013. 12. 3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p>	<p>[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 12. 30.>]</p> <p>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p> <p>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p> <p>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p> <p>[본조신설 2011. 12. 30.] [제21조의5에서 이동 <2013. 12. 3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과금 등의 납부) 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p>	<p>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2013. 12. 30.></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2. 30.> [제목개정 2013. 12. 30.]</p> <p>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과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18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p>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6. 11.]</p> <p>제21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p> <p>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p>	<p>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p>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6. 11.]</p> <p>제21조의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p> <p>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p> <p>[본조신설 2019. 6. 12.]</p> <p>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p> <p>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6. 12.]</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⑥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p> <p>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p> <p>제21조의6 삭제 (2013. 12. 30.)</p> <p>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p>	<p>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5., 2013.</p>	<p>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6. 3. 22.></p> <p>[제목개정 2011. 12. 30., 2013. 12. 3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p>[제목개정 2011. 4. 5.]</p> <p>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20조의2 삭제 (2013. 7. 16.)</p> <p>제20조의3 삭제 (2013. 7. 16.)</p> <p>제20조의4(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p>		<p>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p>[본조신설 2015. 7. 20.]</p> <p>제11조의2</p> <p>[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 12. 31.)]</p> <p>제11조의3 삭제 (2013. 12. 3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20조의4</p> <p>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p>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목개정 2013. 7. 16.]</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 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p> <p>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22조의3(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23조(분담금 등)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p>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p> <p>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공제조합이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p> <p>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폐자동차</p> <p>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용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용(이하 “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p>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p>	<p>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증량으로 산정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p>③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p>	<p>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p> <p>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p> <p>④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용을 지켜야 한다.</p> <p>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p>	<p>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p>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p>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p> <p>제27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등)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p> <p>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총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총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용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총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총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 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11.]</p> <p>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p>	<p>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p>	<p>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p>	<p>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p> <p>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p> <p>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p> <p>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p> <p>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p> <p>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p> <p>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 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 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 7. 16.> <p>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p>	<p>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9. 6. 11.]</p> <p>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p> <p>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제목개정 2019. 6. 11.]</p>	<p>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 되는 경우 <p>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9. 6. 12.]</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p> <p>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33조의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p>		<p>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1. 휴업·폐업의 경우</p> <p>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p> <p>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8. 6. 12.]</p> <p>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p>		<p>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p> <p>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 7. 16.></p> <p>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p> <p>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p> <p>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사업자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p>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① 별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3. 12. 31.] <p>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p> <p>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 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p>	<p>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p> <p>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p> <p>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p> <p>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p> <p>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p> <p>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p> <p>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p>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 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p> <p>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p> <p>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기능물의 준수</p> <p>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p> <p>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p> <p>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반비용의 부담</p> <p>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p> <p>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p> <p>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업무의 이행</p> <p>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p> <p>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p> <p>8. 삭제 <2013. 12. 30.></p> <p>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p> <p>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용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용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p> <p>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p> <p>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p> <p>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p> <p>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p> <p>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p> <p>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p> <p>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여부</p> <p>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6. 12.)</p>	<p>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p> <p>15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p> <p>15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p> <p>15의4.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작성 여부</p> <p>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p> <p>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2020. 11. 24.)</p> <p>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p> <p>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p> <p>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p> <p>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p> <p>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p> <p>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p> <p>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p> <p>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p> <p>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제출</p> <p>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p> <p>8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p> <p>8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p>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p>[전문개정 2015. 1. 20.]</p>	<p>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p> <p>9. 그 밖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p>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3. 29.,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0.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7의3. 삭제 <2013. 12. 30.>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p> <p>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p> <p>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p> <p>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재발급</p> <p>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p> <p>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p> <p>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p> <p>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p> <p>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p> <p>15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p> <p>15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p> <p>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p> <p>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확인</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확인</p> <p>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 고지</p> <p>19의2. 삭제 (2013. 12. 30.)</p> <p>19의3. 삭제 (2013. 12. 30.)</p> <p>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p> <p>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p> <p>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p> <p>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p> <p>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지</p> <p>2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p> <p>[제목개정 2020. 11. 24.]</p> <p>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p> <p>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입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09. 12. 24.〉 [제목개정 2011. 12. 30.]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5. 7. 13.] [중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5. 7. 13.〉]</p> <p>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12. 30.] [제36조의2에서 이동 〈2015. 7. 13.〉]</p>	<p>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서식: 201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p> <p>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p>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 7.]</p>	<p>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p> <p>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p> <p>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p> <p>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8. 6. 12.)</p> <p>1.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p> <p>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p> <p>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p> <p>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1. 1. 5.)</p> <p>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물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p> <p>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p> <p>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p> <p>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p> <p>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p> <p>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p> <p>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p> <p>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p> <p>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p> <p>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8. 6. 12.></p> <p>1. 삭제 <2021. 1. 5.></p> <p>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 아니한 자</p> <p>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p> <p>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p> <p>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p> <p>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p> <p>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p> <p>[시행일 : 2021. 7. 6.] 제45조제2항제1호의2, 제45조제2항제1호의3, 제45조제4항제1호</p> <p>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0. 7. 23.]</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05호, 2007. 4.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p> <p>제4조(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80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전자제품으로서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p>제3조(재활용의무물의 산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물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물로 본다.</p> <p>제4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8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p> <p>제3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⑧ 부터 ⑩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2호, 2012. 1. 3.></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p> <p>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17) 까지 생략 ⑤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	<p>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⑱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p>	<p>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4호, 2013.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 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 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519)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433호, 2009. 2. 6.> (한국환경공단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 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p> <p>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④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로 한다.</p> <p>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p> <p>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p> <p>⑨ 부터 ⑪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83호, 2010. 1. 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769호, 2011. 3.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63호, 2011.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p>	<p>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7호, 2015. 7.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43호, 2016. 3. 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가목·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32호, 2010. 2. 4.>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33호, 2010. 2. 4.></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155호, 2012. 10. 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p>	<p>총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11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p> <p>④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0389호, 2010. 7. 23.>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p> <p>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p> <p>부칙 <제10390호, 2010. 7. 2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0549호, 2011. 4. 5.></p> <p>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⑩부터 ⑫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46호, 2013.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그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p> <p>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p> <p>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⑳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㉑부터 ㉓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p> <p><5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회수 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6400호, 2015. 7. 1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제3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재활용실적·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7049호, 2016. 3.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09)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913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p>	<p>연도별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9843호, 2019. 6. 1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30293호, 2019. 12. 31.〉</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p> <p>부칙 <제13037호, 2015. 1. 2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038호, 2015. 1. 20.>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p> <p>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회수 및 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부칙 <제31184호, 2020. 11.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으로 한다. ㉔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15657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5842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48호, 2021. 1. 5.></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 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2193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2195
[별표 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2195
[별표 3]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2200
[별표 3의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2201
[별표 3의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2202
[별표 4]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2202
[별표 5]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2203
[별표 6]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2203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2204
[별표 7]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2204
[별표 7의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2205
[별표 7의3]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2206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2208

[별표 1] <개정 2020. 11. 24.>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 자동차배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6.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재공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7.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노트북형·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0.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1.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3.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상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4. 유무선공유기: 유선·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5.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6.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7.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8.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음식물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0.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1.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2.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3.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4.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5.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6.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8.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9.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0.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가져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1.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2.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 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5. 전기온수기: 저장식·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비고

이 표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2] <개정 2020. 11. 24.>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차.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2. 자동차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비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2] <개정 2020. 11. 24.> [시행일 : 2021. 7. 1.] 제1호바목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가. 납

- 1) 형광튜브 유리에 함유된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3) 고온에서 녹는 땀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 4)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가) 축전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 나)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이상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다)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으로 한정한다.
 -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에 함유된 납
- 5)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press 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나)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열전도 모듈 링(thermal conduction module C-ring)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7)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에 함유된 납
 - 나) 이온 착색된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에 함유된 납
- 8)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땀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9)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flip chip]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10) 비에스퍼[BSP(BaSi2O5: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 11)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 12) 0.65mm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13)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축전기의 구멍을 통하여 기계를 납땀(soldering)하기 위한 땀납에 함유된 납
- 14)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셸(bearing shells, 베어링의 외각 부분)과 부시류(bushes, 절연체류)에 함유된 납
- 15) 크리스털유리에 함유된 납

- 16)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판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seal frit)에 함유된 산화납
 - 17)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에 함유된 납
 - 18) 아연붕산염 유리체를 기반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에 함유된 납
 - 19) 연소 엔진의 실린더 또는 크랭크케이스 내외부에 직접 장착된 점화모듈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20) 전기·전자 엔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외부 마감재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나. 수은
-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튜브가 씌워진(콤팩트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mg
 -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mg
 -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mg
 -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mg
 -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mm 이하: 7mg
 - 바) 특수용도용: 5mg
 -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튜브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mm 미만(예: T2): 4mg
 -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mm 이상 17mm 이하(예: T5): 3mg
 -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mm 초과 28mm 이하(예: T8): 3.5mg
 -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mm 초과(예: T12): 3.5mg
 -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mg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 튜브 지름 17mm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mg

(2)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mg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EEFL: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등에 함유된 수은

가) 짧은 길이(500mm 이하): 3.5mg

나) 중간 길이(500mm 초과 1,500mm 이하): 5mg

다) 긴 길이(1,500mm 초과): 13mg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저압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5mg

나) 일반용으로서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가 60Ra를 초과하는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30mg

(2) 155 W < $P \leq 405$ W: 40mg

(3) $P > 405$ W: 40mg

다) 그 밖에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25mg

(2) 155 W < $P \leq 405$ W: 30mg

(3) $P > 405$ W: 40mg

라) 메탈할라이드 램프(MH)에 함유된 수은

마)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다. 욱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욱가크롬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원샷펠릿(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열처리(striking)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리에 함유된 카드뮴

3) 불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마. 납, 수은, 욱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 함유된 납, 수은, 욱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카드뮴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2. 자동차

가. 납

1)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가공 목적의 철과 아연도금 철

(1)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비연속식 용융아연도금 강(batch hot dip 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연속 아연도금강판(continuously galvanized steel sheet)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나)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엔진, 변속기, 공조 압축기(air conditio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셀에 함유된 납: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라) 구리합금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부품에 함유된 납과 납 혼합물
- 가) 축전지(batteries)에 함유된 납: 직류 75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나) 진동감쇄장치(vibration dampers):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다) 동력전달계통용 고무류(powertrain elastomers)의 접착제에 함유된 중량기준 0.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라) 전자회로기판에 전기 또는 전자부품을 접합하는 땀납에 함유된 납과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가 아닌 부품, 부품 핀 및 전자회로기판에 적용하는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마) 전기회로기판 또는 유리의 납땀이 아닌 다른 전기적 용도로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바)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의 터미널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

으로 한정한다.

- 사) 대량 기류감지기(mass airflow sensors)의 유리 납땀에 사용되는 납: 2015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아) 고 용융점 땀납(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함유된 납: 차량 하네스 커넥터 결합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차)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 내 반도체 다이를 반송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카) 전력 반도체 어셈블리(assembly)에서 열분산기(heat spreader)를 방열체(heat sink)와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실리콘 칩의 투시면적이 1cm² 이상, 명목 전류밀도가 단위 실리콘 칩 면적(mm²)당 1A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타) 접합유리(laminated glazings)의 납땀이 아닌 경우로서 유리부품에 전기 장치(electrical glazing applications)를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파) 접합유리의 납땀에 사용되는 땀납에 함유된 납
- (1) 접합유리용 두께 2.1mm 이하의 단일 판유리(single panes)에 열전류 0.5A 이상의 발열장치(heating applications)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땀하는 경우[중간체 폴리머(intermediate polymer)와 맞닿는 부분의 납땀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하) 다음의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 다만, 전구용 유리나 점화플러그용 유약 또는 기)부터 더)까지의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은 제외한다.

(1) 유리 또는 세라믹

(2) 유리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 matrix compound)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ceramic matrix compound)

(3) 유리-세라믹 재료(glass-ceramic material)

(4) 유리-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ceramic matrix compound)

가) 집적회로나 독립된 반도체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에 함유된 납

너)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더) 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 sonar systems) 내 감지기의 온도편차를 보정하는 축전기의 유전체 세라믹 재료에 함유된 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러) 배기열 회수를 통한 이산화탄소(CO2) 저감 목적의 자동차용 열전(熱電) 재료에 함유된 납: 2019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수은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다. 육가크롬

냉각액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냉각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차량의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환경, 보건 및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카드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에 함유된 카드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납, 수은, 육가크롬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자동차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별표 3] <개정 2020. 11. 24.> [시행일 : 2023. 1. 1.] 제5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가. 냉장고 나.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에어컨디셔너 마. 제습기
2. 디스플레이기기 (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가. 텔레비전 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다. 내비게이션
3. 통신·사무기기	가.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마.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바.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사. 유무선공유기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4. 일반 전기·전자제품	가.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제품군	대상 제품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바. 전기비데 사. 공기청정기 아. 전기히터 자.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차. 전기밥솥 카. 연수기 타. 가습기 파. 전기다리미 하.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거.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너. 청소기 더.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러. 토스트기 머. 전기주전자 버. 전기온수기 서. 전기프라이팬 어. 헤어드라이어 저. 러닝머신 처. 감시카메라 커. 식품건조기 터. 전기안마기 퍼. 족욕기 허. 재봉틀 고.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제품군	대상 제품
	노. 제빵기 도. 튀김기 로. 커피메이커 모. 약탕기 보. 탈수기 소.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비고

1. 위 표는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제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별표 3의2] <개정 2019. 7. 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수입량·판매량,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분리수거량·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 \text{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text{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times (1 + \text{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1/4	1/3	1/2	1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별표 3의3] <신설 2015.7.13.>

제품군별 회수 여부를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

(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부를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부를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4] <개정 2016.3.22.>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

(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삭제 <2016.3.22.>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9. 12. 31.>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가. 온도교환기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kg당 470원	kg당 155원
나. 디스플레이기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kg당 611원	kg당 174원
다. 통신·사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kg당 4,123원	kg당 3,413원
	그 밖의 통신·사무기기	kg당 811원	kg당 166원
라. 일반 전기·전자 제품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kg당 480원	kg당 122원
	그 밖의 일반전기·전자 제품	kg당 950원	kg당 156원

[별표 6] <개정 2019. 6. 11.>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회수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1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0/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 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30/100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별표 7] <개정 2020. 11. 24.>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파쇄잔재물은 단위 중량기준으로 전력·증기·가스·금속·고형연료제품 등의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에너지회수율 및 재활용률(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text{파쇄잔재물 재활용률} = (\text{회수물질} + \text{회수에너지}) / (\text{투입물질} + \text{투입에너지})$$

※ 비고

1) 회수에너지는 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있으며, 총 회수에너지의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환산지수는 "파쇄잔재물의 저위 발열량/[1 - 파쇄잔재물의 회분(灰分)]"으로 산정한다.

3) 회수물질은 슬래그, 금속,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등이 있으며, 회수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4) 투입에너지는 파쇄잔재물과 그 밖의 투입에너지의 총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5) 투입물질은 파쇄잔재물의 불연분 등이 있으며 투입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6) 파쇄잔재물을 에너지회수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7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삭제 <2019. 6. 11.>

나) 삭제 <2019. 6. 11.>

7) 파쇄잔재물 에너지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 페가스류처리업자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충전용 용기에 보관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인수할 때에는 회수용기의 상태, 회수중량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출 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충전용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관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충전된 충전용 용기를 인수한 후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용기를 다시 제공할 때에는 용기 내에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소각 또는 산화·분해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율(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text{분해율(\%)} = \frac{(\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text{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times 100$$

※ 비고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은 처분을 위하여 시설에 투입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을 말한다.

-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생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잔여분은 처분시설에서 파괴되도록 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에 따른 회수재생매 품질규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바.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 7의2] <신설 2019. 6. 1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제27조 관련)

1. 회수 기준

가. 폐자동차에 남아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이용하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동일한 회수용기에 다른 종류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용기밸브를 이용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압력(게이지 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미만	음압 0.07메가파스칼(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이상	0메가파스칼(MPa)

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할 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용기의 밀봉(密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폐자동차별로 회수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측정·기록해야 한다.

2. 보관 기준

가. 회수용기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충전 여부에 따라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사용 중인 회수용기 및 빈 회수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충전이 완료된 회수용기 및 사용 중인 회수용기는 충전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 보관장소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일 것
- 2)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3) 보관장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을 것
 -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누출이나 체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지닌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환기가 가능할 것
- 라.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 보관장소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인계 기준
- 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회수용기가 전도(顛倒) 등으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기록해야 한다.

[별표 7의3] <신설 2019. 6. 1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1. 공통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이송·투입시설 또는 장비	
나. 보관시설	하루에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일 것
다. 계량시설	파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을 것

2. 폐자동차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파쇄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25센티미터 이하의 파쇄잔재물로 파쇄할 수 있을 것
2) 선별시설	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을 것
3) 투입장비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의 선별시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2)부터 4)까지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1) 선별시설	금속조각, 토사 등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
2) 에너지회수시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하는 소각열회수 시설 또는 소각시설일 것
3) 유류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4) 기타 시설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활용 방안 및 기술을 활용한 시설일 것

3. 폐가스류처리업: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처분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처분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일 것.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3) 수집·운반차량	
나. 재활용시설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1) 재활용시설	
2) 투입 설비 및 저장탱크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3) 검사설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산업표준(KS I 3004)의 시험방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
4) 수집·운반차량	

비고

1.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3) 및 나목4)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1항	2,000	2,500	3,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1호	2,000	2,000	2,000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5조제3항 제1호	1,000	1,000	1,000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성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1호			
1)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2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2호			
1)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2호의2	300	500	1,000
아.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1호	100	200	300
자.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3호	50	80	100
차.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4호	50	80	100
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2호	2,000	2,000	2,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3호	2,000	2,000	2,000
하.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4호	500	1,000	2,000
거.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3호	300	500	1,000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4호	300	500	1,000
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5호	50	80	100
러.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	500	1,000	2,000
머.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3호	100	200	300
버. 법 제32조제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2	500	1,000	2,000
서. 법 제32조제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4호	100	200	300
여. 법 제33조제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3	500	1,000	2,0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저.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4	500	1,000	2,000
처. 법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5호	100	200	300
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6호	500	1,000	2,000
터.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6호	100 80 50	200 150 80	300 200 100
퍼.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6호	50 30	80 50	100 80
허.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7호	50	8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8호	30	50	80
고.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고의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50	80	100
		30	50	80
		20	30	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2213
[별표 1의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2214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2214
[별표 2의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2215
[별표 3] 삭제 <2019. 6. 12.>	2216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2216

[별표 1] <개정 2019. 12. 31.> [시행일 : 2023. 1. 1.] 제5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기기 (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신·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반 전기·전자 제품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5. 태양광 패널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 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1의2] <개정 2019. 6. 1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1. 회수·분리 기준

-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다. 회수 후에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관 기준

-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 충전 중인 용기,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층을 견딜 수 있으며,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기준

- 가.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5.7.20.>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제5조의5 관련)

-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별표 2의2] <개정 2016.3.2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삭제 <2016.3.2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사유	감경금액
가. 삭제 <2016.3.22.>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감경 사유	감경금액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1.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3] 삭제 <2019. 6. 12.>

[별표 4] <개정 2013.12.31>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을 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제4편
자원순환

0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231	제1조(목적) 2231	제1조(목적) 2231
제2조(정의) 2231	제1조의2(정의) 2231	
	제2조(사업장의 범위) 2231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2232
		제2조의2 삭제 2232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2232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2232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2233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2233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2233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2235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2235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2235		
제3조(적용 범위) 2235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2237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2236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223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36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2237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238		
제7조(국민의 책무) 2238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239		
제9조 삭제 2239	제6조의2 삭제 2239	
제10조 삭제 2239		제7조 삭제 2239
제11조 삭제 2239		
제12조 삭제 2239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2239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239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2240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2240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2243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2246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2248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2248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2250 제14조의2 삭제 2250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250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251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 2251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2252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2251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256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2252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2255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2256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2257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2257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2258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2258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2258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2259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2260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226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2262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262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2268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2269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2269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2270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2272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2273 제16조(협약의 체결) 2278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2263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2268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2268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2273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2262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2262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2264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2265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2266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2266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2269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2269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2270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2271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2273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2274 제16조의7(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276 제16조의8(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2276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227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2279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2286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2288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2288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2289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2290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2292	제9조(폐기물의 감량저감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2285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2287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2279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279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2282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2285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2286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2287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2288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2288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2290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291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2292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2292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2293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2294 제25조의2 삭제 2294 제25조의3 삭제 2294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 2294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2294 제20조 삭제 2295 제21조 삭제 2295 제22조 삭제 2295 제23조 삭제 2295 제24조 삭제 2295 제24조의2 삭제 2295 제24조의3 삭제 2295		제27조 삭제 229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장 삭제 <2007. 8. 3.></p> <p>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p> <p>제25조(폐기물처리업) 2295</p> <p>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2308</p> <p>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2311</p> <p>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2313</p> <p>제26조(결격 사유) 2313</p> <p>제27조(허가의 취소 등) 2314</p> <p>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2317</p>	<p>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p> <p>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311</p> <p>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2313</p> <p>제10조의4(결격 사유) 2314</p>	<p>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2295</p> <p>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2300</p> <p>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2303</p> <p>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2303</p> <p>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2304</p> <p>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306</p> <p>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2306</p> <p>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2307</p> <p>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2308</p> <p>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308</p> <p>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2309</p> <p>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2310</p> <p>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2310</p> <p>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2311</p> <p>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2311</p> <p>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2311</p> <p>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2311</p> <p>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2313</p> <p>제34조의12(결격 사유) 2314</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2318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320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2328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2332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2336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2318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319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2320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336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337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2338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320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2320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2321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321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2322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2325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2327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 2332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 2332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 2332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2334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335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2335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336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2336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2338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의 이행기간) 2339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233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2339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2340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2341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2341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2343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2343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2344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2345	제17조(교육대상자) 2345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2345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2345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2345
		제51조(교육과정 등) 2347
		제52조(교육계획) 2348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2348
		제54조(교육결과 보고) 2349
		제55조(지도) 2349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2349
		제57조(교육경비) 2349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2350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2350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2352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2352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2353
제38조(보고서 제출) 2353		제60조(보고서의 제출) 2353
제39조(보고·검사 등) 2355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2355
		제62조 삭제 2355
		제63조(시험·분석기관) 2355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2356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235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2357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2360 제42조(조합의 사업) 2360 제43조(분담금) 2361 제44조(「민법」의 준용) 2361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2357 제19조 삭제 2357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2357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2358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359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360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2357
제6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2361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2362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2367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2368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2369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2369 제48조의2(의견제출) 2371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2362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2367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2367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 2362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2362 제65조 삭제 2362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2362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2364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2366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2368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2369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2369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2371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371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2372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2372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2373
제48조의5(과징금) 2374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2374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 2376
제49조(대집행) 2374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2377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2376	제24조(사후관리 대상) 2378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2378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2379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2379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2379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379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2379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2380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2379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2381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2380
	제29조(담보물의 제공) 2381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2381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2382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2383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2383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2383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2383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2383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2383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2384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2384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2384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2384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2384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2384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2384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2385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2385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238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국고 보조 등) 2386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2386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386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2386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2386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2386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2387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2387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2387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2388	
제59조(수수료) 2388		제82조(수수료) 2388
		제82조의2 삭제 2390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2390		제83조(행정처분기준) 2390
제61조(청문) 2390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2391	제37조(권한의 위임) 2391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2397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2398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98	
제62조의2(별칭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399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2399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2399	제84조(규제의 재검토) 2399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2401		
제64조(벌칙) 2402		
제65조(벌칙) 2403		
제66조(벌칙) 2405		
제67조(양벌규정) 2407		
제68조(과태료) 2407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2407	
	제39조 삭제 2412	
부칙 2412	부칙 2412	부칙 241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전부개정 2007. 4.11 법률 제8371호</p> <p>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2007. 5.25 법률 제8486호 (산입표준화법)</p> <p>2007. 8. 3 법률 제8613호</p> <p>2007.12.21 법률 제8789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p> <p>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p> <p>2010. 1.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2010. 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p> <p>2010. 7.23 법률 제10389호</p> <p>2011. 4.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2011. 7.21 법률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p> <p>2011. 7.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p> <p>2012. 6. 1 법률 제11465호</p> <p>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p> <p>2013. 7.16 법률 제11914호</p> <p>2013. 7.30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p>2013. 7.30 법률 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p> <p>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14. 1.21 법률 제12321호</p> <p>2015. 1.20 법률 제13038호</p> <p>2015. 7.20 법률 제13411호</p> <p>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p> <p>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p> <p>2017. 4.18 법률 제14783호</p> <p>2017.11.28 법률 제15103호</p> <p>2019. 4.16 법률 제16318호</p> <p>2019.11.26. 법률 제16614호</p> <p>2019.12. 3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p> <p>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영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2021. 1. 5 법률 제17851호</p>	<p>전부개정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p> <p>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아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p> <p>2008. 7.29 대통령령 제20946호</p> <p>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연지니어관리법 진흥법 시행령)</p> <p>2011. 1.21 대통령령 제22631호</p> <p>2011. 4. 6 대통령령 제22889호</p> <p>2011. 9. 7 대통령령 제23126호</p> <p>2011.12.30 대통령령 제23462호</p> <p>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2. 9.24 대통령령 제24119호</p> <p>2012.12.27 대통령령 제24266호</p> <p>2013. 5.28 대통령령 제24543호</p> <p>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자립도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4. 1.14 대통령령 제25082호</p> <p>2014.12.31 대통령령 제25951호</p> <p>2015. 6. 1 대통령령 제26297호</p> <p>2015. 7.24 대통령령 제26447호</p> <p>2015.12.22 대통령령 제26747호</p> <p>2016. 1.19 대통령령 제26907호</p> <p>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2016. 7.19 대통령령 제27350호</p> <p>2016. 8.31 대통령령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7. 1.17 대통령령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7.10.17 대통령령 제28365호</p> <p>2017.12.26 대통령령 제28498호</p> <p>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2018. 3.27 대통령령 제28722호</p> <p>2018. 5.21 대통령령 제28898호</p>	<p>전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p> <p>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07.12.31 환경부령 제266호</p> <p>2007.12.31 환경부령 제27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2008. 1.28 환경부령 제27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2008. 2.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2008. 8. 4 환경부령 제295호</p> <p>2008.10.21 환경부령 제305호</p> <p>2008.12.31 환경부령 제3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9. 6.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09. 8. 7 환경부령 제346호</p> <p>2010. 1.15 환경부령 제359호</p> <p>2010. 6.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2010.10.18 환경부령 제382호</p> <p>2011. 1.21 환경부령 제394호</p> <p>2011. 3.31 환경부령 제406호</p> <p>2011. 9.27 환경부령 제422호</p> <p>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2011.12.30 환경부령 제437호</p> <p>2012. 5.11 환경부령 제454호</p> <p>2012. 7. 3 환경부령 제464호</p> <p>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2012. 9.24 환경부령 제478호</p> <p>2012.11. 1 환경부령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2012.12.12 환경부령 제488호</p> <p>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8.12.18 환경부령 제29386호 2019. 7. 2 환경부령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7. 9 환경부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29 환경부령 제30173호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7.21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11.24 대통령령 제31183호	2013. 3.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5.31 환경부령 제508호 2013. 7.19 환경부령 제513호 2013.12.31 환경부령 제532호 2014. 1.17 환경부령 제542호 2014. 4.17 환경부령 제552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환경부령 제589호 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 2015. 6. 10 환경부령 제602호 2015. 7. 29 환경부령 제610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 2016. 4. 28 환경부령 제649호 2016. 5. 25 환경부령 제653호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 2016. 12.30 환경부령 제683호 2017. 1. 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0.19. 환경부령 제715호 2017.12.27. 환경부령 제726호 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 30 환경부령 제752호 2018. 4. 13 환경부령 제755호 2018. 5. 17 환경부령 제757호 2018. 5. 28 환경부령 제759호 2018.12.31 환경부령 제796호 2019. 7. 8 환경부령 제815호 2019. 7.24 환경부령 제819호 2019.10.29 환경부령 제830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 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p> <p>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 	<p>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2019.12.31 환경부령 제843호 2020. 5.27 환경부령 제868호 2020. 8.31 환경부령 제881호 2020.11.27 환경부령 제891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p>	<p>치·운영하는 사업장</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p> <p>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p> <p>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2. 28.></p>	<p>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p> <p>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p> <p>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p> <p>④ 삭제 (2008. 8. 4.)</p> <p>제2조의2 삭제 (2016. 7.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p> <p>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p> <p>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砕)·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양(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p> <p>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p> <p>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목개정 2007. 12. 28.]</p> <p>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p> <p>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p> <p>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p> <p>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p> <p>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p> <p>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p> <p>가. 폐타이어</p> <p>나. 폐섬유</p> <p>다. 폐목재</p> <p>라. 폐합성수지</p> <p>마. 폐합성고무</p> <p>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p> <p>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p> <p>4. 삭제 (2011. 9. 27.)</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9. 27.></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 1. 15., 2011. 9. 27.)</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p> <p>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체연구원(이하 "한국기체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p> <p>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p> <p>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 		<p>협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p> <p>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9. 27.]</p> <p>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p> <p>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p> <p>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p> <p>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p> <p>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p> <p>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p> <p>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p> <p>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p> <p>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7. 23.]</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에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p> <p>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p> <p>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7.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p>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p> <p>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제9조 삭제 <2017. 11. 28.> 제10조 삭제 <2017. 11. 28.> 제11조 삭제 <2017. 11. 28.> 제12조 삭제 <2015. 1.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p> <p>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의2 삭제 <2017. 12.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p> <p>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삭제 <2017. 12.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p> <p>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p>	<p>12. 31., 2015. 7. 24., 2017. 10. 17.)</p> <p>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p> <p>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p> <p>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p> <p>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p> <p>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p> <p>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p> <p>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p>	<p>7. 19., 2018. 5. 17.)</p> <p>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p> <p>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p> <p>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p> <p>4.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p> <p>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p> <p>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p> <p>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p> <p>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p> <p>나. 제2항 각 호의 자</p> <p>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p> <p>2) 기간: 5일 이내일 것</p> <p>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에 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p>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p> <p>[제목개정 2012. 9. 24.]</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 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p> <p>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p> <p>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p> <p>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p> <p>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고철·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p> <p>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p> <p>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p> <p>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p> <p>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p> <p>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p> <p>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p> <p>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p> <p>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p> <p>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p> <p>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 <p>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p> <p>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p> <p>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p> <p>10. 제조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조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뜻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p> <p>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p> <p>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p> <p>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p> <p>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p> <p>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p> <p>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이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뒷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뒷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p> <p>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p> <p>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p> <p>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p> <p>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p>	<p>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p> <p>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p> <p>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p> <p>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p> <p>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p> <p>1. 삭제 <2011. 9. 27.></p> <p>2. 삭제 <2011. 9. 27.></p> <p>[전문개정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p> <p>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p> <p>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p> <p>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p> <p>12. 폐산·페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p>	<p>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8. 5. 17.></p> <p>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나, 폐유리 나.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다. 토사석파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p> <p>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 9. 27., 2018. 5. 17.></p> <p>[제목개정 2011. 9.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증류수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p>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출 것</p> <p>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재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p> <p>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p> <p>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p>	<p>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p> <p>제14조의2 삭제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아니할 것</p> <p>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p> <p>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p> <p>1. 폐석면</p> <p>2. 폴리클로라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p> <p>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p> <p>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p> <p>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p>	<p>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19.]</p> <p>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19.]</p>	<p>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p> <p>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p> <p>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p> <p>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p> <p>라.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p> <p>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p> <p>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p> <p>다.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p> <p>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라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p> <p>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6. 7. 21.]</p> <p>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p> <p>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p> <p>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p> <p>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p>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돌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p>		<p>은 별표 5의5와 같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21.]</p> <p>[중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p> <p>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p>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p> <p>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p>	<p>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p>[본조신설 2016. 7. 19.]</p>	<p>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p> <p>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p> <p>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p> <p>[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p><개정 2020. 5. 2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p> <p>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p> <p>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p> <p>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p>		<p>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p> <p>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p> <p>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p> <p>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p> <p>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p> <p>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p> <p>마. 재활용 유형</p> <p>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p> <p>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p> <p>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p> <p>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p> <p>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p> <p>다. 재활용 유형</p> <p>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p> <p>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p>[본조신설 2016. 7. 19.]</p>	<p>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p> <p>[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포함하며, 시험·분석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p> <p>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p> <p>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p> <p>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p> <p>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p> <p>[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p>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p>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 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 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 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 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 7. 20.]</p>		<p>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21.]</p> <p>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 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 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6. 7.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0. 7.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p>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찰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p>		<p>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 조치명령의 내용 4. 조치명령의 사유 5. 조치기간·방법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p>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 9. 27.]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p> <p>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p> <p>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p>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p> <p>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p>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p> <p>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펠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식물성 잔재물 <p>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p> <p>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 폐기물처리 신고자</p>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p> <p>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p> <p>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p>		<p>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본조신설 2014. 1. 17.] [중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p> <p>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우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p>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p> <p>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p>		<p>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p> <p>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1.> [본조신설 2011. 9. 27.]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p> <p>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신고받은 경우</p> <p>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p> <p>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을 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p>		<p>[본조신설 2011. 9. 27.]</p> <p>[제15조의3에서 이동 <2014. 1. 1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p> <p>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p> <p>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7. 19.></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4.></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본조신설 2011. 9. 7.]</p> <p>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p>[본조신설 2014. 1. 14.]</p>	<p>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4. 1. 17.]</p> <p>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농약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p>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p> <p>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하는 경우</p> <p>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p> <p>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p> <p>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p> <p>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p> <p>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p> <p>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p> <p>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본조신설 2019. 12. 31.]</p> <p>[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p> <p>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9. 12. 31.] [중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p> <p>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p>	<p>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p>	<p>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1. 27.] [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20. 11.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p>	<p>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p>[본조신설 2014. 1. 14.]</p>	<p>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p>		<p>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p> <p>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p> <p>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p> <p>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p> <p>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p> <p>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0. 11. 27.)]</p> <p>제16조의7(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 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 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 1. 17.]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0. 11. 27.)]</p> <p>제16조의8(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p>		<p>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p> <p>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p> <p>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p> <p>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p> <p>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p> <p>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20. 5. 27.] [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11. 27.>]</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8. 31.></p> <p>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p> <p>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p> <p>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p> <p>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출자</p> <p>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조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페페인트, 페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 <p>마. 폐유독물질</p> <p>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p> <p>사. 수은폐기물</p> <p>아.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전문개정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p>		<p>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말한다.</p> <p>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1.] <p>[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p> <p>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p> <p>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p> <p>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p> <p>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p> <p>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p> <p>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p>		<p>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p> <p>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p> <p>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p> <p>6.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p> <p>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p> <p>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p> <p>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p> <p>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p> <p>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p> <p>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p>		<p>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p> <p>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p> <p>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p> <p>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p> <p>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자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p>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p> <p>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p> <p>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p> <p>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p> <p>8.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p> <p>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9.)</p> <p>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정하는 사항⁶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p>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p> <p>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7. 10. 19.></p> <p>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하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p> <p>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p>	<p>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위한 지침을 지켜</p>	<p>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5. 17.> 2. 삭제 <2018. 5. 17.> 3. 삭제 <2018. 5. 17.> 4. 삭제 <2018. 5. 17.> 5. 삭제 <2018. 5. 17.> <p>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2017. 10. 19.></p> <p>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p> <p>[본조신설 2008. 8. 4.]</p> <p>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에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 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p> <p>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p> <p>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p> <p>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p>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2. 12. 27., 2017. 10. 17.></p>	<p>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3. 5. 31.,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p>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입자하는 경우 입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p> <p>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p>	<p>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19.]</p>	<p>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p>		<p>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p> <p>6. 기술능력</p> <p>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8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p>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p> <p>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p>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 [본조신설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p> <p>② 삭제 <2015. 7. 20.></p> <p>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p>		<p>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p> <p>⑥ 삭제 (2007. 8. 3.)</p>		<p>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제량값을 말한다. (개정 2020. 5. 27.)</p> <p>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 5. 27.)</p> <p>[전문개정 2008. 8. 4.]</p> <p>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p>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p> <p>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p>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p>[본조신설 2018. 3. 30.]</p> <p>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표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p>		<p>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p> <p>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 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p>[본조신설 2018. 3. 30.]</p> <p>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p> <p>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p>		<p>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3. 30.]</p> <p>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3. 30.]</p> <p>[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p> <p>제25조의2 삭제 <2017. 10. 19.></p> <p>제25조의3 삭제 <2017. 10. 19.></p> <p>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0조 삭제 <2007. 8. 3.> 제21조 삭제 <2007. 8. 3.> 제22조 삭제 <2007. 8. 3.> 제23조 삭제 <2007. 8. 3.> 제24조 삭제 <2015. 7. 20.> 제24조의2 삭제 <2017. 4. 18.> 제24조의3 삭제 <2017. 4. 18.></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삭제 <2007. 8. 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p>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p> <p>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p>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8. 8. 4.]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30.>]</p> <p>제27조 삭제 <2008. 8. 4.></p> <p>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 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p> <p>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하는지 여부</p> <p>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p> <p>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p> <p>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p>		<p>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p> <p>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p> <p>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p> <p>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수집·운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 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p>		<p>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p> <p>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p> <p>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중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p> <p>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p>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p> <p>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p> <p>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p> <p>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제·보조기층제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관리자의 동의를 포함한다)</p> <p>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p> <p>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7.></p> <p>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p> <p>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p> <p>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p> <p>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p> <p>라. 운반차량(입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p> <p>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업</p> <p>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p> <p>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p> <p>다. 운반차량(입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p> <p>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p> <p>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p> <p>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p> <p>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p> <p>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p> <p>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p> <p>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p> <p>아. 허용보관량의 변경</p> <p>3. 폐기물 중증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p> <p>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라. 운반차량(입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p>아. 허용보관량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p> <p>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p>		<p>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p> <p>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p> <p>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p> <p>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p> <p>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할 것</p>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p> <p>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p> <p>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증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p> <p>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페레미콘,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p> <p>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汚泥)</p> <p>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p> <p>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테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p> <p>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p> <p>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p> <p>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p> <p>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p>		<p>6.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p> <p>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20. 5. 27.></p> <p>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p> <p>1. 상호의 변경</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p>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p> <p>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p>		<p>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p> <p>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p> <p>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p> <p>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p> <p>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p> <p>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p>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④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p>		<p>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p>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인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인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입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 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p>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p> <p>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p> <p>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p>		<p>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5. 1. 20.]</p> <p>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p> <p>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p>	<p>제10조의2(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p>	<p>관하여야 한다.</p> <p>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 10. 19.> [본조신설 2016. 1. 21.]</p> <p>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p> <p>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p>		<p>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p> <p>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 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동</p> <p>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p> <p>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p> <p>2. 폐기물 처분업</p> <p>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p>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p> <p>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p> <p>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와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3. 폐기물 재활용업</p> <p>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p>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제·보조기층제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p> <p>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p> <p>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와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p>	<p>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p>	<p>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p> <p>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들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p> <p>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p> <p>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9.]</p>	<p>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p> <p>2. 허가취소자들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본조신설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p> <p>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p> <p>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p> <p>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p> <p>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p> <p>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p> <p>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p> <p>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p> <p>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p> <p>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p> <p>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p> <p>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p> <p>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p> <p>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p> <p>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평명이나 사용증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p> <p>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p> <p>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p> <p>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전문개정 2007. 8. 3.]</p> <p>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p>[본조신설 2015. 1. 20.]</p> <p>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p>	<p>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p> <p>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营业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p>	<p>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p> <p>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5. 19.)</p> <p>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p> <p>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5. 19.)</p> <p>④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p> <p>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0. 7. 23.]</p> <p>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p>	<p>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7. 29.]</p> <p>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p>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p> <p>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p> <p>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p> <p>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p>		<p>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p>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1. 10. 28.></p> <p>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 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p>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p> <p>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p> <p>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 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 수지도를 포함한다)</p> <p>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p> <p>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p> <p>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p> <p>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 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p>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 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p>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p>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p> <p>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 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p> <p>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p> <p>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재할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p> <p>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p> <p>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별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p> <p>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나. 매립시설</p> <p>다. 열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p> <p>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p>		<p>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한다)</p> <p>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바. 소각열회수시설</p> <p>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열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p>③ 삭제 <2020. 11. 27.></p> <p>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p>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열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28., 2012. 6. 1.></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삭제 <2019. 11. 26.></p>		<p>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p> <p>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계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p> <p>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p> <p>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p> <p>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 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p> <p>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p> <p>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 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 감시체계 관계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p>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서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p> <p>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p> <p>가. 설계도면</p> <p>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p> <p>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p> <p>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p> <p>가. 설계도면</p> <p>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p> <p>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p> <p>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p> <p>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p> <p>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p> <p>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p> <p>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국·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p>		<p>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p> <p>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p>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할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p>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p>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받은 경우 		<p>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p> <p>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p> <p>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p> <p>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p>	<p>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11. 27.]</p> <p>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p> <p>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7. 29.]</p> <p>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2.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10. 1. 15.)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8. 8. 4.) 2. 삭제 (2008. 8. 4.) <p>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p> <p>④ 삭제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p> <p>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p> <p>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p>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본조신설 2016. 1. 19.]</p>	<p>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5. 1. 20.></p> <p>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와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⑩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 		<p>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p> <p>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1.></p>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p> <p>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p> <p>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p> <p>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p> <p>3. 삭제 <2009. 6. 9.></p> <p>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p> <p>[제목개정 2010. 7. 23.]</p>		<p>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p> <p>2. 혐기성 분해시설</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p> <p>[본조신설 2013. 5. 3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p> <p>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p> <p>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p>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p> <p>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p> <p>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p> <p>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p>	<p>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p> <p>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p>	<p>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p>[전문개정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9. 7., 2012. 9. 24.></p> <p>1. 매립시설의 경우</p> <p>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 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계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p> <p>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계곱미터 이상인 시설</p> <p>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p> <p>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p> <p>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p> <p>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p> <p>6. 시멘트 소성로</p> <p>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p> <p>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p> <p>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 17., 2016. 1. 19.></p> <p>1. 한국환경공단</p> <p>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p>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니어링사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p>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기술관리료의 횟수 또는 방법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p> <p>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p> <p>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p> <p>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p> <p>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p> <p>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p> <p>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다)가 고용한 기술요원</p> <p>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p> <p>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p> <p>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30.)</p> <p>④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p> <p>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p> <p>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p> <p>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③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16.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료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p>② 삭제 <2007. 8. 3.></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p>		<p>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p>2의2. 삭제 <2017. 10. 19.></p> <p>3. 폐기물처리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p>		<p>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p>		<p>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설 2018. 5. 28., 2020. 5. 27.></p> <p>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폐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p>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2016.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p>3의2. 삭제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p>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p>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7.]</p> <p>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p> <p>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p> <p>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 10. 19.></p> <p>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색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색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p> <p>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p> <p>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p> <p>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p> <p>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p> <p>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9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p> <p>⑤ 삭제 <2017. 10. 19.></p> <p>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 삭제 (2018. 1. 17.) 7. 삭제 (2018. 1. 17.) 8. 삭제 (2018. 1. 17.) 9. 삭제 (2018. 1. 17.) <p>제62조 삭제 (2008. 8. 4.)</p> <p>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 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p> <p>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0. 7. 23.]</p>		<p>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5., 2013. 3. 23., 2013. 5. 31.,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석유관리원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p> <p>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 8. 3.>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p>	<p>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9조 삭제 <2008. 7. 29.></p> <p>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8.></p>	<p>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 1. 1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 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p> <p>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p> <p>3. 삭제 <2007. 8. 3.></p> <p>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⑥ 삭제 <2007. 8. 3.></p>	<p>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p> <p>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p> <p>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p> <p>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p> <p>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p> <p>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p> <p>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p> <p>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p> <p>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p> <p>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08. 7. 29.]</p> <p>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p> <p>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08. 7. 29.></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p> <p>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9. 11. 26.></p> <p>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p> <p>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p> <p>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p>	<p>[제목개정 2008. 7. 29.]</p> <p>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p> <p>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p> <p>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 이내</p> <p>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 이행보증·선금급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p> <p>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2012. 6. 1.></p> <p>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p>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p> <p>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p> <p>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p> <p>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p>	<p>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9. 7., 2014. 1. 14.,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 <2017. 10. 17.> 3.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p>[본조신설 2008. 7. 29.]</p>	<p>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8. 8. 4.] [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p> <p>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p> <p>제65조 삭제 <2008. 8. 4.></p> <p>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p> <p>1. 등·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p> <p>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은 별표 17과 같다.</p> <p>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2. 7. 3.> 2. 삭제 <2012. 7. 3.> <p>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p>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p> <p>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3. 페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p> <p>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p>		<p>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페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페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페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p>[전문개정 2011. 9. 27.]</p> <p>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만 첨부한다.</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p> <p>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p> <p>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p> <p>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p> <p>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p> <p>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p> <p>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7.></p> <p>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p> <p>1. 폐기물 수집·운반 변경신고의 경우</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p> <p>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p> <p>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p>		<p>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p> <p>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p> <p>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p> <p>라. 재활용시설의 종류</p> <p>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p>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p> <p>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p> <p>[제목개정 2011. 9. 27.]</p> <p>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08. 8. 4.] [제목개정 2011. 9.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p>	<p>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 9. 7.></p> <p>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7.></p> <p>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 7. 29.]</p> <p>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p> <p>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p> <p>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절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9.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절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p>[본조신설 2008. 7. 29.]</p>	<p>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 		<p>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p> <p>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p>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7.]</p> <p>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치 이행계획량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한 자</p> <p>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 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p> <p>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p> <p>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p> <p>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p>		<p>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p> <p>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p> <p>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조치 이행실적</p> <p>2. 조치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p> <p>[본조신설 2010. 7. 23.]</p> <p>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1. 26.]</p>	<p>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 	<p>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5. 19.]</p> <p>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보활동</p> <p>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p> <p>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 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p> <p>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p>	<p>[본조신설 2020. 5. 19.]</p>	<p>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p> <p>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p> <p>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p> <p>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p> <p>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p>	<p>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p> <p>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19.]</p>	<p>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p> <p>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른다. <신설 2019. 11. 26.></p> <p>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p>		<p>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계획서</p> <p>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p> <p>나. 사후관리 추진일정</p> <p>다. 빗물배계계획</p> <p>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p> <p>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p> <p>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p> <p>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p> <p>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p> <p>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설 2016. 1. 21., 2017. 10. 19.></p> <p>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종료 검사 2. 폐쇄 검사 <p>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p> <p>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p>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 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21., 2016.</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p> <p>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p> <p>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p>	<p>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0. 17., 2018. 3. 27.></p>	<p>4. 28., 2017. 10. 19.)</p> <p>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p> <p>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p> <p>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p> <p>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p> <p>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p> <p>[본조신설 2013. 5. 31.]</p> <p>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p> <p>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p> <p>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 및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p> <p>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p> <p>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p> <p>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p> <p>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p>	<p>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p>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p>	<p>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p> <p>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 21., 2017. 10. 19.></p> <p>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p> <p>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9.></p> <p>④ 삭제 <2011. 9. 7.></p> <p>⑤ 삭제 <2011. 9. 7.></p> <p>[제목개정 2016. 1. 19.]</p> <p>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1. 19.></p> <p>②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p>③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p>[제목개정 2016. 1. 21.]</p> <p>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p> <p>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 1. 19.]</p> <p>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p> <p>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6. 8. 31.></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p> <p>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p> <p>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p> <p>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p> <p>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p> <p>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2011. 1. 21.) 라. 삭제 (2011. 1. 21.)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p> <p>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p> <p>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p> <p>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p>	<p>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p> <p>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p> <p>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p> <p>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p> <p>③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p>	<p>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6. 1. 21.></p> <p>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p> <p>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p> <p>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p>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p>	<p>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p> <p>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29., 2011. 9. 7.></p> <p>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 19.]</p> <p>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p> <p>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21., 2013. 5. 28.></p> <p>②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p>	<p>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p> <p>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p> <p>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p>	<p>이용하려는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할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p>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른다.</p> <p>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p> <p>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9. 7., 2016. 1. 19.></p>	<p>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경제성·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7.></p> <p>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8. 4.></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④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p>	<p>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p> <p>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제목개정 2011. 9. 7.]</p> <p>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p>[본조신설 2014. 1. 14.] [중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p> <p>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7. 16.) [본조신설 2007. 8. 3.]</p> <p>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 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p>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p> <p>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 1. 14.></p> <p>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p> <p>[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4. 1. 14.>]</p> <p>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p> <p>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 7. 29.] [제36조의3에서 이동 <2014. 1. 14.>]</p>	<p>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3. 30.></p> <p>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p> <p>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p> <p>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p> <p>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p> <p>[제목개정 2015. 7. 20.]</p>		<p>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 3. 30.></p> <p>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 3. 30.></p> <p>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p> <p>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p> <p>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1. 27.></p> <p>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3. 30.></p> <p>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p> <p>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p>(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30.></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p> <p>[전문개정 2016. 7. 21.]</p> <p>제82조의2 삭제 <2016. 7. 21.></p> <p>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p> <p>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p> <p>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p> <p>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p> <p>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p>	<p>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p> <p>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p> <p>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p> <p>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p> <p>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p> <p>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p> <p>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p> <p>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p> <p>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p> <p>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p> <p>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p> <p>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p> <p>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p> <p>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립</p> <p>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p> <p>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p> <p>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p> <p>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p> <p>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p> <p>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p> <p>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p> <p>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p> <p>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p> <p>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p> <p>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p> <p>쳐.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람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람 나.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p> <p>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p> <p>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p> <p>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p> <p>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p> <p>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명령</p> <p>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p> <p>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p> <p>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p> <p>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p> <p>더. 삭제 (2008. 7. 29.)</p> <p>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p> <p>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다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p> <p>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p> <p>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 신고의 수리</p> <p>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p> <p>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p> <p>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p> <p>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 지정</p> <p>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p> <p>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p> <p>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p> <p>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설 2010. 7. 23., 2015. 1. 20.)</p> <p>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p>	<p>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p> <p>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p> <p>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p> <p>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p> <p>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분석 수수료의 고시</p> <p>사. 삭제 (2016. 7. 19.)</p> <p>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p> <p>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p> <p>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p> <p>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p> <p>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 12. 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p>	<p>축·운영 업무</p> <p>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0. 29.></p> <p>[본조신설 2011. 9. 7.]</p> <p>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p> <p>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7. 19., 2020. 5. 19.></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7. 23.]</p> <p>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 [중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12. 1. 6.>]</p> <p>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p>	<p>제94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6. 7. 21., 2019. 7. 8.></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p> <p>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p> <p>[본조신설 2015. 7. 20.]</p>	<p>[총선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13.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014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기준 및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2017년 7월 1일 8.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 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0.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대상: 2014년 1월 1일 13. 제4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p> <p>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p>		<p>2014년 1월 1일</p> <p>14.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2014년 1월 1일</p> <p>15.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p> <p>16. 제48조 및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p> <p>17.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 2014년 1월 1일</p> <p>18. 제5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19.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2019년 1월 1일</p> <p>20. 제6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6.></p> <p>1. 삭제 <2019. 7. 8.></p> <p>2. 제68조 및 별표 18에 따른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2015년 1월 1일</p> <p>[전문개정 2014. 4. 30.]</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p> <p>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p> <p>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p> <p>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받은 자</p> <p>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p> <p>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p> <p>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 자</p> <p>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p> <p>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p> <p>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p> <p>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p> <p>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p> <p>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13. 삭제 (2017. 4. 18.)</p> <p>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p> <p>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p> <p>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p> <p>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p> <p>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p> <p>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p> <p>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p> <p>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p> <p>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p> <p>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p> <p>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p> <p>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p> <p>3. 삭제 <2007. 8. 3.></p> <p>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p> <p>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p> <p>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p> <p>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p> <p>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p> <p>5. 삭제 (2015. 1. 20.)</p> <p>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p> <p>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p> <p>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p> <p>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p> <p>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p> <p>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p> <p>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p> <p>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p> <p>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p> <p>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p> <p>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p> <p>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 준 자</p> <p>12의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p> <p>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p> <p>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5. 삭제 (2010. 7. 23.)</p> <p>16. 삭제 (2010. 7. 23.)</p> <p>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p> <p>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p> <p>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7. 23.]</p> <p>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p>	<p>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본조신설 2011. 4. 6.]</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18., 2019. 11. 26.)</p> <p>1. 삭제 <2019. 11. 26.></p> <p>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p> <p>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p> <p>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p> <p>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p> <p>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2. 삭제 <2015. 1. 20.></p> <p>3. 삭제 <2019. 11. 26.></p> <p>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p> <p>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p>	<p>[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p> <p>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p> <p>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삭제 <2010. 7. 23.></p> <p>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p> <p>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p> <p>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p> <p>1의2. 삭제 <2019. 11. 26.></p> <p>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삭제 <2015. 7. 20.></p> <p>4. 삭제 <2010. 7. 23.></p> <p>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p> <p>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p> <p>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8. 삭제 <2007. 8. 3.></p> <p>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p> <p>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p> <p>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p> <p>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p> <p>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p> <p>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p> <p>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p> <p>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p> <p>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p> <p>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p> <p>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p> <p>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10. 삭제 (2019. 11. 26.)</p> <p>11. 삭제 (2019. 11. 26.)</p> <p>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 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p> <p>제3조(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4조(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제5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p>	<p>제39조 삭제 (2012. 12. 27.)</p> <p>부칙 <제20244호, 2007. 9.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3조 삭제 (2007.12.28)</p> <p>제4조(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p>	<p>부칙 <제252호, 2007. 10.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 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㉔와 제6호 다목(나)①㉔,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p> <p>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p> <p>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5조(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p> <p>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p> <p>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p>	<p>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p> <p>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다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p> <p>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 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p>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p> <p>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p> <p>⑥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⑧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p>	<p>로 한다.</p> <p>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p> <p>⑦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p> <p>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p> <p>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p> <p>⑩ 정보보호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p> <p>⑫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p> <p>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p> <p>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 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12월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나목 (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⑩맹진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p> <p>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p> <p>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⑭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p> <p>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p> <p>⑯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p> <p>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small>〈제2029호, 2007. 9. 27.〉</small>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p> <p>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p> <p>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p> <p>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p> <p>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p> <p>⑰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p> <p>⑳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p> <p>㉑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㉒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㉓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㉕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p> <p>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⑱ 부터 ㉓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0478호, 200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p> <p>부칙 <제20946호, 2008. 7.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p> <p>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p> <p>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p> <p>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p> <p>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㉔연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㉕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㉖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 항”으로 한다.</p> <p>㉗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p> <p>㉘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p> <p>㉙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 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p> <p>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 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 로 한다.</p> <p>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p> <p>㉕ 부터 ㉘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p> <p>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 동관리법”으로 한다.</p> <p>㉖ 및 ㉗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626호, 2011. 1. 17.〉</p>	<p>5 제4호”로 한다.</p> <p>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 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 법 제46조”로 한다.</p> <p>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 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p> <p>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로 한다.</p> <p>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 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p> <p>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63호, 2007. 12.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 제3항”으로 한다.</p> <p>㉓ 전자거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p> <p>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p> <p>㉖ 주민미공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p> <p>⑦부터 ⑩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631호, 2011. 1.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2889호, 2011. 4. 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p>	<p>㉗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66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3호다목4)·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나목3)·다목2)바) 및 별표 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진행중인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5 제5호나목,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3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5호다목1)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하여 합격한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㉔추한미균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㉕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㉖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p> <p>㉗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p> <p>㉘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㉙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㉚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p> <p>㉛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p>	<p>규정도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㉚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126호, 2011. 9. 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p> <p>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62호, 2011. 12.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 1. 6.)</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076 221 1487 397"> <thead> <tr> <th>종류</th> <th>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th> </tr> </thead> <tbody> <tr> <td>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td> <td>녹색</td> </tr> <tr> <td>격리의료폐기물</td> <td>붉은색</td> </tr> <tr> <td>위해의료폐기물</td> <td>노란색</td> </tr> <tr> <td>일반의료폐기물</td> <td>오렌지색</td> </tr> </tbody> </table> <p>제4조(폐기를 인계서 또는 폐기를 간이 인계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 4 지정폐기물 분류번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1호, 2007. 12. 31.)</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5호, 2008. 1. 28.)</p> <p>(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p>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종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기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 (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	오렌지색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㉔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p> <p>㉕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p> <p>㉖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p> <p>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p> <p>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p> <p>㉘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119호, 2012. 9. 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 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p> <p>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266호, 2012.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호, 2008. 2. 26.></p> <p>(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호, 2008. 3. 3.></p> <p>(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5 제2호다목6)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17 제2호다목5)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p>⑥ 부터 ⑩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5호, 2008. 8.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p> <p>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⑥부터 <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486호, 2007. 5. 25.> (산업표준화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p> <p>⑩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기준으로 정한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p> <p>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p> <p>부칙 <제24543호, 2013. 5.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082호, 2014. 1. 1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p>	<p>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05호, 2008. 10. 2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6호, 2008. 12.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8613호, 2007. 8. 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789호, 2007. 12. 2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5951호, 201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6297호, 2015. 6. 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교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칙 <제346호, 2009. 8. 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59호, 2010. 1. 1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수출입 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수출입 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날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㉞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㉟ 부터 ㊸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p> <p>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지방세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10389호, 2010. 7. 23.></p>	<p>부칙 <제26447호, 2015. 7. 2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747호, 2015. 12. 2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907호, 2016. 1.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제4항”으로 한다.</p> <p>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부칙 <제382호, 2010. 10. 1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계·인수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부칙 <제394호, 2011. 1. 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목 10)나(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종전의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142 432 558 644"> <tr> <td>폐기물 수집·운반업</td> <td>폐기물 수집·운반업</td> </tr> <tr> <td>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외한다)</td> <td>폐기물 중간처리업</td> </tr> <tr> <td>폐기물 최종처리업</td> <td>폐기물 최종처리업</td> </tr> <tr> <td>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제외한다)</td> <td>폐기물 종합처리업</td> </tr> </table>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p>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종합처리업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부칙 <제27350호, 2016. 7.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부칙 <제406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22호, 2011. 9.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p> <p>제5조(휴업·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p> <p>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p>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종합처리업은 제외한다)	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정에 따른다.</p> <p>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p> <p>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p> <p>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②부터 ⑧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365호, 2017. 10. 17.></p> <p>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498호, 2017. 12. 26.></p> <p>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⑤부터 ⑭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722호, 2018. 3.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용을 계속 할 수 있다.</p> <p>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28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p> <p>⑥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37호, 2011.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4호, 2012. 5.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p> <p>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p> <p>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⑧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p> <p>⑩부터 ⑬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속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p>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8898호, 2018. 5. 21.〉</p> <p>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386호, 2018. 12. 1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부칙 〈제464호, 2012. 7. 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7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0888호, 2011. 7.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p> <p>제17조 생략</p>	<p>부칙 <제29972호, 2019. 7. 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173호, 2019. 10.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p>
<p>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p> <p>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p> <p>⑭부터 ⑰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p> <p>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p> <p>㉒ 및 ㉓ 생략</p> <p>제33조 생략</p>	<p>부칙 <제478호, 2012. 9.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처리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p>부칙 <제11465호, 2012. 6.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p>	<p>부칙 <제30684호, 2020. 5. 19.></p> <p>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861호, 2020. 7. 21.></p> <p>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183호, 2020. 11. 24.></p> <p>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p>제4조(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1862호,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p> <p>㉣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p> <p>㉤부터 ㉨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1914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p>		<p>부칙 <제484호, 2012. 11.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생략〉…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488호, 2012. 12. 1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03호, 2013. 3. 23.></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p> <p>⑫ 및 ⑬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11980호, 2013. 7.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⑬ 생략</p> <p>부칙 <제508호, 2013. 5.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513호, 2013. 7. 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32호, 2013. 12.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2호, 2014. 1.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52호, 2014. 4.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p> <p>부칙 <제12321호, 2014. 1. 2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038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p> <p>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p> <p>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84호, 2014. 12. 29.>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89호, 2014.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p> <p>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p>		<p>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5호, 2015. 3. 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매립시설의 복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2호, 2015. 6. 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0호, 2015. 7. 2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411호, 2015. 7.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28호, 2015. 12. 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7호, 2016. 1. 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제649호, 2016. 4.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p> <p>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p> <p>〈75〉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783호, 2017. 4. 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3호, 2016. 5. 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p> <p>부칙 (제15103호, 2017. 11. 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p>		<p>한다.</p> <p>부칙 (제661호, 2016. 7.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664호, 2016. 7. 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p> <p>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318호, 2019. 4. 16.></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14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p>		<p>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3호, 2016.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p> <p>⑥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5호, 2017. 10. 19.></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p> <p>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④ 및 ⑤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지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6호, 2017. 12. 27.></p> <p>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 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체계·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체계·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851호, 2021. 1. 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 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p> <p>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p> <p>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별표 14 비교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2호, 2018. 3.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5호, 2018. 4.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7호, 2018. 5.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광재류 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매립시설로서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광재류 중 고로슬래그 또는 제강슬래그만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759호, 2018. 5. 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96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15호, 2019.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19호, 2019.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0호, 2019. 10. 29.></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43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 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p> <p>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p> <p>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68호, 2020. 5. 27.></p> <p>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1호, 2020. 8. 31.></p> <p>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1호, 2020. 11.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자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p>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2447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2448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2449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2450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2451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2451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2452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2452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2453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2456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2456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2457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2458

[별표 1] <개정 2020. 7. 2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마. 소각재
 -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사. 폐촉매
 -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자.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 가. 할로젠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페페인트 및 페레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페인트 및 레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레커 제조업, 용적 5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이다. 페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0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 수은폐기물
 -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페렴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자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 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개정 2019. 10. 29.>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2. 위해의료폐기물
 -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별표 3] (개정 2020. 7. 21.)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농축 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7) 유수 분리시설
- 8) 탈수·건조 시설
- 9)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 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8) 유수 분리 시설
- 9) 탈수·건조 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 1) 고형화·고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 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마)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 생산시설
-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3) 버섯재배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 사. 골재가공시설
- 아. 약약품 제조시설
-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차. 수은회수시설
- 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 <개정 2013.5.28>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의2] <신설 2016. 7. 19.>

[시행일:2018.1.1] 제1호다목, 제1호라목, 제1호마목, 제1호자목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1. 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물리·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해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해야 한다.
 - 가. 폭발성
 - 나. 인화성
 - 다. 자연발화성
 - 라. 급수성(禁水性)
 - 마. 산화성
 - 바. 용출독성
 - 사. 감염성
 - 아. 부식성
 - 자. 생태독성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3] <개정 2019. 12. 24.>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별표 4의4] <개정 2016. 7.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항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별표 5] <개정 2019. 7. 2.>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제9조 관련)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식료품 제조업
 - 나. 음료 제조업
 -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마.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사.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차. 1차 금속 제조업
 -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파. 전기장비 제조업
 -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 5의2] <개정 2019. 7. 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해당 기관의 다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이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라. 시설기준 중 사무실, 실험실 및 기기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시설 및 장비는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 및 기기실은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지정권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일반 분야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동일한 소재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PCBs) 분야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분야의 시설 기준에 따른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 시설별로 각각 50퍼센트 이상의 면적과 책임자 1명 이상 및 담당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 분야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분야의 폐기물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 가. 일반 분야
 - 1) 분석항목

구분	분 석 항 목
일반항목	수소이온농도, 수분 및 고형물,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 기름성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유해물질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γ극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 노말헤산추출물질, 페놀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용해성철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 용해성망간 또는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총대장균군수,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성질소, 총인
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및 그 밖의 유기용제류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것. 다만, 가)부터 버)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대 이상 나) 구테르나다니쉬(K.D.) 농축기 또는 회전증발농축기 1대 이상 다) 정제용컬럼 10개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라) 수욕조(water bath) 1대 이상 마) 증류수 제조기 1대 이상 바) 0.1mg 단위의 저울 1대 이상 사) 4℃ 이하의 보관이 가능한 시료냉장보관실 1대 이상 아) 용출용 왕복진탕기(수평인 것으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자) 다음에 해당하는 체 각 1대 이상 (1) 재질이 철인 0.5mm의 체 (2) 재질이 철인 5mm의 체 (3) 재질이 비철인 0.5mm의 체 (4) 재질이 비철인 5mm의 체 차) 온도범위가 50℃부터 200℃까지인 건조기 1대 이상 카) 온도범위가 200℃부터 700℃까지인 회화로 1대 이상 타) pH 미터 1대 이상 파) 증류장치 세트(시안용) 1대 이상 하)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ICP) 1대 이상 거) 자석교반기 1대 이상 너) 전기열판 1대 이상 더) 자외선 및 가시선 분광계 1대 이상 러) 배양기(BOD 분석용) 1대 이상 머) 시료추출용 장치(분액갈대기 진탕추출기로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베틀) 속슬렛 추출장비 1대 이상

3) 기술능력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구분	자격기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 석사학위 또는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

- 1) 분석항목: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4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것. 다만, 가)부터 타)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대 이상 나) 구데르나다니쉬 농축기 또는 회전증발농축기 1대 이상 다) 정제용컬럼 10개 이상 라) 수욕조 1대 이상 마) 증류수 제조기 1대 이상 바) 0.1mg 단위의 저울 1대 이상 사) 4℃ 이하의 보관이 가능한 시료냉장보관실 1대 이상 아) 용출용 왕복진탕기(수평인 것으로 200rpm 이상인 것) 1대 이상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자) 다음에 해당하는 체 각 1대 이상 (1) 재질이 철인 0.5mm의 체 (2) 재질이 철인 5mm의 체 (3) 재질이 비철인 0.5mm의 체 (4) 재질이 비철인 5mm의 체 차) 시료추출용 장치(수직 진탕추출기로서 200rpm이상인 것) 1대 이상 카) 속출렛 추출장치 1대 이상 타) 환류냉각기 1대 이상

3) 기술능력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가)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석면 분야

- 1) 분석항목: 석면류
- 2) 시설 및 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30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것.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편광현미경(PLM) 1대 이상 나) X선 회절분석기(XRD) 1대 이상 다)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1대 이상 라)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1대 이상

3) 기술능력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전공,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전공, 또는 화학·화공 분야·전공에서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확보할 것

구분	자격기준
책임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갖춘 것
담당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춘 것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석면 관련 분석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별표 5의3] <신설 2020. 5. 19.>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인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20. 5. 19.>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않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8.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별표 기 <개정 2016. 7. 1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3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여.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300	3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증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2467
[별표 2]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	2468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2468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469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2476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2477
[별표 4의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2493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2494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2512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2512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2526
[별표 5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2528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2529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2531
[별표 5의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	2531
[별표 5의9]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	2532
[별표 6]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2533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2534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2542
[별표 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2545
[별표 8의3]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2545
[별표 8의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2546
[별표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2547
[별표 8의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	2548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2549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2562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2568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2569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2570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2579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2579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2580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2581
[별표 15의2]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	2583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2584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2585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2585
[별표 18]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	2586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2587
[별표 2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2589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589

[별표 1] <개정 2020. 8. 3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체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축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별표 3] <개정 2013.5.31>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4] <개정 2020. 11. 27.>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페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 03-05 소각재
 -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03-06-01 안정화처리물
 -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 03-06-03 고화처리물
 -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 03-07 폐촉매
 - 03-07-01 금속성폐촉매
 -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03-08-01 폐흡착제
 - 03-08-02 폐흡수제
- 04 폐유기용제
 -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 05 페인트 및 페락카
 - 05-01-00 폐유성페인트
 - 05-02-00 폐수성페인트
 - 05-03-00 페락카
- 06 폐유

- 06-01 폐광물유
 -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 06-01-04 폐연료유
 - 06-01-05 폐오일필터
 -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06-02-00 폐동식물유
 - 06-03-00 그 밖의 폐유
- 07 폐석면
 -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 07-01-01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 07-01-02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 필터 등
-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제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페랩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페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페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페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 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 51-15 페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 51-17-01 동물사체
 -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 51-17-04 폐패각
 - 51-17-05 폐모피류
 -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 51-17-07 동물털
 - 51-17-08 동물성유지류
 -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 51-17-21 주정박
 - 51-17-22 맥주박
 - 51-17-23 유박유잔재물
 - 51-17-24 초본류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 51-19-00 왕겨 및 쌀겨

-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13 폐발침목
 -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51-21 폐토사류
 - 51-21-01 폐토사
 - 51-21-02 건설폐토석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 51-22 폐콘크리트류
 - 51-22-01 폐콘크리트
 - 51-22-02 콘크리트폐발침목
- 51-23-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51-24-00 폐벽돌
- 51-25-00 폐블록
- 51-26-00 폐기와
- 51-27 폐섬유류
 - 51-27-01 폐천연섬유
 - 51-27-02 폐합성섬유
 - 51-27-03 폐의류
 -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51-28 폐지류
 -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8-02 폐종이류
 - 51-28-03 폐벽지
- 51-29 폐금속류
 - 51-29-01 고철
 - 51-29-02 비철금속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51-30 폐유리류
 - 51-30-01 폐유리
 -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30-03 페스마트유리
- 51-30-04 폐유리섬유
-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51-31-00 페타일
- 51-32-00 폐보드류
- 51-33-00 폐판넬
-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계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 51-36 폐가스포집물
 -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 51-37 폐냉매물질
 -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 51-39-00 폐사료
- 51-40 폐소화기류
 - 51-40-01 폐분말소화기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51-41 폐전지류
 -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41-02 2차폐전지
-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51-42-00 폐의약품류
- 51-43-00 폐흑연가루
-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51-45 폐차발생폐기물
 -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 51-45-02 폐차부품류
 -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 91-06-03 폐합성고무류
- 91-07-01 유리병
- 91-07-02 폐유리
-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 91-12-00 페타일 및 도자기류
- 91-13-00 폐형광등
- 91-14-00 폐전지류
- 91-15-00 연탄재
-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 91-17-00 식물성 잔재물
-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 91-19-00 폐소화기류
-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가. R-7-1: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다. R-7-3: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 라. R-7-4: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마. R-7-5: 석유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 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 1)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품질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기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4)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5)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 R-10-1: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4의3] <개정 2020. 11. 27.>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페폴리에틸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2	페폴리프로필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3	페폴리염화비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4	페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5	페페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6	페폴리우레탄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7	폐합성고무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8	페폴리스티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9	페아크리리노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3	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1-02-04	실리케제조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R-3-1, R-3-2, R-3-3,R-3-4, R-4-1, R-10	해당 없음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재활용 금지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5-1,R-10	해당
02-01-03	폐질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5-1,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2-01-99	그 밖의 폐산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2	폐암모니아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 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의 사용 으로 인한 고슬래그는 제외한다)	R-3-1, R-3-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3-01-99	그 밖의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2-00	분진	R-3-1, R-3-2, R-3-3,R-3-4, R-10	해당 없음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해당 없음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R-2-1,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8-02	폐흡수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10	해당 없음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5	페페인트 및 페락카		
05-01-00	페유성페인트	R-2-1, R-9-2, R-10 R-3-2, R-4-6, R-4-7, R-10	해당 없음 해당
05-02-00	페수성페인트	R-2-1, R-3-2, R-4-7, R-10	해당 없음
05-03-00	페락카	R-2-1, R-9-2, R-10 R-3-2, R-4-6, R-4-7, R-10	해당 없음 해당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어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4	폐연료유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5	폐오일필터	R-3-1, R-3-2, R-9-2,R-10	해당 없음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6-01-07	페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2-00	폐동식물유	R-9-2, R-10	
06-03-00	그 밖의 폐유	R-2-1,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봉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07-01-01	출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1-02	출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재활용 금지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집진필터 등	재활용 금지	
08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	재활용 금지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금지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재활용 금지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재활용 금지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재활용 금지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R-2-1, R-3-2, R-3-3, R-10	해당 없음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금지	
10-12-02	병리계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3	손상성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4-10	해당 없음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 첨가 페램프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2	수은 첨가 폐계측기기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3	수은 첨가 폐전지	R-3-3, R-4-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R-4-7	해당 없음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2.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3	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R-3-5,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	해당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R-3-5,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51-01-09	그 밖의 유기성오니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3	하수처리오니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4	하수준설토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5	건설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한정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	페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파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4-02	제강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4	선광공정광재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99	그 밖의 광재류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7-3, R-8-1,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3	발전시설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4	페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	해당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해당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5, R-10	해당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R-3-1, R-3-2, R-10	해당 없음
		R-3-5, R-4-2, R-10	해당
51-06-04	폐여과사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7-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7-02	폐도자기조각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3	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99	그 밖의 고품화·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99	그 밖의 폐촉매	R-1-1, R-3-1, R-3-2, R-3-4, R-4-1, R-4-7,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1-01	폐흡착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2	폐흡수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3	폐활성탄	R-1-1, R-3-4, R-4-5, R-10	해당 없음
		R-3-5, R-4-2, R-8-2, R-10	해당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R-1-1, R-3-2, R-3-3, R-3-4	해당 없음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2-02	폐석회	R-1-1	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R-4-5, R-10	해당 없음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R-4-2, R-8-2, R-10	해당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51-13-03	석탄재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10	해당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4-02	폐석재	R-1-1, R-2-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5	페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R-1-2, R-2-1, R-2-2,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R-1-2, R-2-1, R-2-2, R-3-3,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R-3-4, R-4-8, R-9-4, R-4-2,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4	폐패각	R-1-2, R-2-2, R-3-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7-2, R-10	해당
51-17-05	폐모피류	R-1-1,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7-07	등물털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10	해당
51-17-08	등물성유지류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19	그 밖의 등물성잔재물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1	주정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3	유박유잔재물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4	초분류	R-1-2, R-5-3, R-6-1,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R-5-4, R-6-1, R-8-2, R-10	해당 없음
		R-4-8, R-5-3, R-9-1, R-9-3, R-9-4, R-10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4-2, R-5-1, R-5-2, R-5-4, R-8-2, R-10	해당
		R-5-4, R-6-1, R-8-2, R-10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	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	해당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9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0	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1	건설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2	건설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3	폐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1	페토사류		
51-21-01	페토사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1-02	건설페토석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R-4-2, R-10	해당
51-22	페콘크리트류		
51-22-01	페콘크리트	R-1-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2-02	콘크리트폐반침묵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23-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	R-4-2, R-10	해당
51-24-00	페벽돌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5-00	페블록	R-1-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6-00	폐기와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R-8-1, R-8-2, R-10	해당
51-27-02	폐합성섬유	R-1-1, R-2-2, R-3-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3	폐의류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99	그 밖의 폐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2	폐종이류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3	폐벽지	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2	비철금속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R-2-1,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2-1,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3	페스마트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4	폐유리섬유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5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1, R-4-2, R-10	해당
51-30-99	그 밖의 폐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31-00	페타일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2-00	페보드류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3-00	폐판넬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R-3-1,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R-4-7, R-10	해당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R-4-7, R-10	해당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R-4-9, R-5-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	해당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R-5-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6-1, R-10	해당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R-4-9, R-9-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R-5-1, R-5-2, R-5-4, R-10	해당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8-2, R-9-2, R-10	해당
51-39-00	폐사료	R-3-4, R-5-3, R-10	해당 없음
		R-5-1, R-9-4, R-10	해당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2	2차폐전지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3	2차폐촉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촉전지는 제외한다)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2-00	폐의약품류	재활용금지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43-00	폐축연가루	R-1-1, R-2-1,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R-3-1, R-3-2, R-3-3, R-9-2,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5-02	폐차부품류	R-2-1	해당 없음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재활용 금지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R-3-3, R-9-1, R-10	해당 없음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R-3-3, R-4-1, R-10	해당 없음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10	해당
91-06-03	폐합성고무류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7-01	유리병	R-2-1,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7-02	폐유리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R-2-1,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R-4-2, R-10	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	페타일 및 도자기류	R-4-2, R-10	해당 없음
		R-7-1, R-10	해당
91-13-00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	폐전지류	R-3-1, R-3-3, R-10	해당 없음
91-15-00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 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91-17-00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R-3-3,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91-19-00	폐소화기류	R-4-1, R-4-4, R-5-1, R-10	해당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별표 4의4]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다. 일반기계기사 1명
-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 다. 토목기사 1명
- 라.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 라.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0. 11. 27.>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물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흘러내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흘러날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계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페타이어, 폐가규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11.9.29>

나) 삭제 <2011.9.29>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4.1.17>
-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4)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삭제 <2011.9.29>
- 7) 삭제 <2011.9.29>
-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페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흘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계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섬세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섬세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실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페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속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섬세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발생일시 (연/월/일)	발생량 (kg)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 7)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층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 8)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9) 8)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품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품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아) 폐축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 카) 석면(뿔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 한다.
-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1.9.29>
-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여야 한다.
 -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 하) 폐의약품은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 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나)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등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면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 7)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운반해야 한다.
 -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운반해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흡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흡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흡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관 시: <input type="checkbox"/> 운반 시: <input type="checkbox"/>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11)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5)에 따른 보관장고 또는 보관탱크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2) 11)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처리의 경우
-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바) 삭제 <2011.9.29>
-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4) 삭제 <2011.9.29>
- (5) 삭제 <2011.9.29>
- (6) 삭제 <2011.9.29>
- (7) 삭제 <2011.9.29>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가)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마) 삭제 <2011.9.29>
 - (바) 삭제 <2011.9.29>
-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페레커의 경우

- (1) 폐페인트와 페레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바) 폐석면의 경우

-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2) 고형화되어 있어 훔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뽀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울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조각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

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여야 한다.
-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가) 폐유독물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증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하여야 한다.
-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터)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㉔)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 1) 삭제 <2011.9.29>
-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 5)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전용용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6) 5)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 8)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9)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 10)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 11) 전용용기 및 3) 단서에 따른 포장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도형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	검정색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비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6)에 따라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다만, 9)에 따라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다.

- 1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5)가)에 따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 5) 삭제 <2008.8.4>
- 6) 삭제 <2008.8.4>
- 7) 삭제 <2008.8.4>
- 8) 삭제 <2008.8.4>
- 9) 삭제 <2008.8.4>

라. 수집·운반의 경우

-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실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의료폐기물은 혼날림·유출 및 약취의 새어나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 7)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 1)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 3)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 나)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 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할 수 있다.
- 5) 다음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최종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
- 6) 5)외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분 하여야 한다.
- 7)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 8)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9) 멸균분쇄처분 시 별표 11 제2호가목2)바)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10)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11)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차량중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체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4)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 2) 철도차량이나 선박
 -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별표 5의2] 삭제 <2016. 7. 21.>

[별표 5의3] <개정 2020. 11. 27.>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별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 일자와 양,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가전제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는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2)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3)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바. 별표 4의2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골재 제품을 제조해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유형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1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1-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3) 반드시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나) R-1-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 재사용해야 하며 대상 폐기물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폐기물을 혼합해 재사용할 수 없다.

(4) 철도용 폐반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반침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가) 목재 폐반침목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폐반침목은 표면에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 아의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증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R-2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2-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동일한 용도 및 공정에 재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용도와 다른 폐기물 특성을 이용해 재사용할 수 없다.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트럼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4) 폐황산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황산이 함유된 폐축전지를 수리·수선해 관련 품질 규격과 성능에 적합한 축전지로 재사용해야 한다.

(5) 삭제 <2020. 5. 27.>

나) R-2-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재사용해야 하며,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부착, 결합 등의 형태로 다른 제품의 부속물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재활용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페드립 등의 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회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철도용 폐반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반침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 (가) 목재 폐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은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정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 (나) 콘크리트 폐반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은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선박제조시설·증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

1) R-3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3-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 및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3) 폐촉매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중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산화물 중 오산화바나듐(V2O5)의 경우

- ① 바나듐: 무게비율 15.0퍼센트 이상
-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산화물 중 삼산화몰리브덴(MoO₃)의 경우

- ① 몰리브덴: 무게비율 30.0퍼센트 이상
-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R-3-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폐가전제품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해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해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

(나)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나 뒷면 유리를 분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다)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해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2)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회수된 금속을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폐촉매에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 등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2)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유발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3)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가)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나)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①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② ①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라) R-3-4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되, 별도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밖에 해당 원료물질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을 관리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마) R-3-5 유형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② 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③ 그 외의 경우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입도(粒度)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국산업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비산재, 바닥재 등 소각재와 그 잔재물이나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가) 강열감량(強熱減量)은 5.0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1.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을 따른다.
2. 고화제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는 소각재 및 그 화합물과 다른 원료물질을 혼합하여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실험한 결과 기준 농도 이내이면 용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보크사이트 잔재물 등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의 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따른 요업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도록 소각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7) 정수처리오니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하는 정수처리오니는 (11)(나)②에서 정한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된 요업제품은 (6)(가)의 용출기준과 (나)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소성과정을 거쳐 폐패각을 가공한 폐패각 분말은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패각 분말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6)(나)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등 함량 기준 이내

(나)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9)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 (라)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 (10) 폐석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시멘트 응결지연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무수황산: 무게비율 38.0퍼센트 이상
- (나) 수용성 인산: 무게비율 0.1퍼센트 미만
- (다)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 (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 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철 대체원료의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 ㉦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 ㉬ 납: 킬로그램 당 3,2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9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② 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 ㉻ 납: 킬로그램 당 7,000밀리그램 미만
 - ㉼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밀리그램 미만
 - ㉽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 ㉾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③ 제철소의 폐기물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및 오니(습식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서 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 ㊀ 납: 킬로그램 당 4,000밀리그램 미만
 - ㊁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 ㊂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 ㊃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 ㊄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 (12)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실리카포함)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만을 재활용 할 수 있다.
-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 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 나) R-4-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철도용 폐반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 성형탄(成型炭)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성형목탄의 사용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다) R-4-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생윤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페אי소프르필알콜을 제외한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을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업용으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납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나) 비소와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다) 수은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라) 카드뮴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마) 크롬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바) 증발찌꺼기: 무게 비율로 0.1퍼센트 이하

(3) 폐유기용제 중 페אי소프르필알콜(프로판-2-올)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소프르필알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공된 정제아이소프르필알콜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함량: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 (나) 수분: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 (다) 증발찌꺼기: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나목4)의 공업용 도료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타협약」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산, 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산, 폐알칼리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제조한 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처리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오염물질 중 수처리제에 함유된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수소이온농도는 제외한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3) 폐산·폐알칼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마) 침출수처리시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폐기물을 발효 등의 분해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부유물질(SS) 15,000mg/L 이하
- (나) 노르말렉산(N-Hexan) 1,000mg/L 이하

- (다) 총질소(T-N) 3,000mg/L 이하
 - (라) 총인 400mg/L 이하
 - (마) 총휘발성유기산 40,000mg/L 이상
 - (바)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나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 (사)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제지슬러지를 소각한 분말형태의 소각재를 산성폐수응집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량기준 40퍼센트 미만의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등 알칼리성 분말과 혼합하여 pH 12.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6) 하수처리오니를 오·폐수 처리용 담체(擔體)로 재활용하는 경우 소성·소결과정을 거쳐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 바) R-4-10 유형의 재활용 기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 1) R-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가) R-5-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나) R-5-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어류 등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어류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료제조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 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4) 제조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는 제조한 곳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없이 뜻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R-6 유형의 재활용 기준
- 가) R-6-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나) R-6-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녹화토를 생산하는 경우 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부속공정을 거쳐야 한다.
 -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무기성오니는 하수준설도(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재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및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류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4) 폐석재의 경우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만 재활용할 수 있다.
- (5)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6) 성토재 등(제14조의5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기간 및 성토재 등의 매립 종료 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까지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 등을 측정(석탄재에 일반토사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01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의 수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R-7-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공유수면은 바다만 해당하며,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과 매립면허 또는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 (3) 폐폐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해야 하며,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4) 폐석고·폐석회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적절하게 혼합·중화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가) 혼합·중화하는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는 80퍼센트, 폐석고는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5) 공유수면의 성토재나 뒷채움재로 재활용한 지역의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에 따른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6)의 기준은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일반토사와 혼합한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고화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pH): 12.4 이하

㉡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 투수계수: $1.0 \times 10^{-7} \text{cm/sec}$ 이상 $1.0 \times 10^{-3} \text{cm/sec}$ 이하

㉣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② 그 밖에 복토재로의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폐기물매립시설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승인·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폐석회, 폐석고를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한다.

(나) 선별·파쇄 등의 중간 처리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여 다지는 등의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①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산에서 채석 시 또는 골재[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바다골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다)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한 골재

(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

재 및 폐석분토사와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2)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 (4)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오염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입폐기물 및 지하수, 지표수 등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기관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분기마다 1회 이상 (3)에 따른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하는 기간에는 매분기별 1회, 재활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5년간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의 수질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 수질 등을 분석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 (5) (3) 및 (4)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6)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撒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R-7-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지하 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점토점결 폐주물사나 단일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로서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 대상 폐주물사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려는 지역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석유저장탱크의 하부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사에 한정한다.

(나) 옥외석유저장탱크의 하부 방식사로만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2)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2)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8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8-1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 (나) (가)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납: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이하
 - ②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 ③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④ 비소: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이하
 - ⑤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⑥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이하
 - ⑦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R-8-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휘폐기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만 재활용할 수 있다.

2) R-9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9-2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유를 이용하여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화시켜야 한다.
- (나) 유화정제연료유(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다)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2) 폐유나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정제 연료유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가)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 ②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 ③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④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⑥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⑨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3)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켜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페이퍼트 및 페라커 혼합물, 할로젠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로 한정하며,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①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 ②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
- (나)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 ②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 ③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 ④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 ⑤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 ⑥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 ⑦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 ⑧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R-9-3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페타이어 및 폐목재류 등을 이용하여 연료화 시설에서 가스·유류 등을 뽑아 내거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한 유류는 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철도용 폐반침목(목재인 것만 해당한다)은 절단,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된 것만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②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③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 ④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다) R-9-5 유형의 재활용 기준

- (1) 연료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2) 유기성 오니의 저위발열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 (3) 연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과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목 상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가공하여 혼합할 수 있다.
- (4) 가공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5)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 (6)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바. 제품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R-10-1 유형의 재활용 기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적합한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의4] <개정 2019. 12. 3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14조의3제5항 관련)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나)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라)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
 마) 침출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통해 침출수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고화·고형화·안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토양오염물질: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

- 1)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이내
- 2)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내
- 3)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 4)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 5) 침출수: 별표 11 제2호나목2)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
- 6)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가. 공통사항

- 1) 영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이하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이 지하로 침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유해 폐기물을 보관·저장·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바닥 포장, 유출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분말·미립자 형태의 고상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별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을 탱크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춘 탱크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탱크나 용기 등이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4)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5) 유해폐기물은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폭발, 유해가스 발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화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그 밖에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 7)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별사항

- 1)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분리·보관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산화제와 혼합·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폭발이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화재가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불꽃·정전기 또는 고온체 등 발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급수성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등 물이나 증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산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연물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혼합되지

- 않도록 하고, 과일·총격·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용출독성 또는 생태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 7)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은 내부식성을 갖는 용기에 보관하고, 누출·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재활용 대상 부지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이물질 등을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 나) 혼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 또는 유·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혼합해야 한다.
 - 다)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한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이후 지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과의 혼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비산, 누·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 마)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부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염 등의 영향이 없도록 혼합·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 바) 고화제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고화처리물의 건조·양생 등 안정화기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의5] 〈신설 2016. 7. 21.〉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1. 공통 사항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 재활용 시설 및 공정, 재활용 대상 부지(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시연공정 또는 대체공정을 포함한다)에서 대기·수질·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 가. 재활용 대상 부지가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5)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지역
- 나.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 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다. 중급속 등 유해물질의 유출시험 및 대상 부지의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과 대상 부지 토양과의 반응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 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분석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분석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바. 재활용하려는 부지의 생물생장 및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목에 따라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대상 부지의 지질 현황, 재활용 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통보해야 한다.
- 아.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미만이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대상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의6] <개정 2018. 12. 3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장비명	수량
폭발성	시간·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충격·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1식 이상
인화성(액상)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인화성(고상)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1식 이상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1식 이상
산화성(액상)	시간·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산화성(고상)	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용출 독성	무기 물질류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유기 물질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폐기물의 유해특성(유출독성은 제외한다)의 시험·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생태독성에 대한 시험·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장비명	수량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장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항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1식 이상
오염물질 등의 이동·흡착·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1식 이상

2.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보건, 환경과학,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나. 기사 1명 이상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화학, 안전공학,	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공업화학, 토목, 토목시공, 응용지질 관련 분야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관련 학과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불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의4 관련)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 다. 폐기물 배출자 등이 자체 관리 및 위탁 처리 참고용으로 폐기물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
 -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구조작 조건,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 다. 시약소모대장
 - 라. 폐기물분석결과서 발송대장
 -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등록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소재지에서 일반 분야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분야를 중복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두 분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5.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분석 의뢰를 거부하거나 분석 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 8.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석을 의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5의9] <개정 2020. 5. 2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제19조의5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2. 평가기준

- 가. 폐기물 시험·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배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15
5)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오차율 평가	40

- 나. 폐기물 시험·분석 운영·관리

평 가 기 준	배점
1) 기술인력의 운영·관리	20
2) 보유시설의 운영·관리	15
3) 측정분석 장비의 운영·관리	15
4) 시료채취 및 보관의 운영·관리	10
5) 표준물질 및 시약의 운영·관리	20
6) 자료의 보관 및 운영·관리	20

3. 평가방법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세부 평가기준별로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평가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별로 주어진 배점을 배분한다.

*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불량: 40%, 매우 불량: 20%

다. 나목에서 구한 개별 평가팀원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전체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한다.

라. 평가항목별 각각의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하며, 두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20. 5. 27.>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1.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인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5.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기 <개정 2020. 11.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
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
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
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6) 계량시설 1식 이상
-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개별시설
 -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 1) 시설 및 장비
 -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소독시설
 -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 1) 실험실
 - 2) 시설 및 장비
 -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집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기술능력
 -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 1) 실험실
 -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3) 시설 및 장비
 -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집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4) 기술능력
 -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 시설
-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폐목재·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깎발장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한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15kW 이상인 것 1식 이상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스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축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설	기준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휘저어 섞는 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뿜아낼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시설	기준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원심분리기	시간당 재활용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그 밖의 시설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 (가) 수소이온농도(pH)
 -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다) 부유물질(SS)
 -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1) 공통시설 및 장비
 -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1) 계량시설 1식 이상
- (2) 파쇄·분쇄·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분쇄·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1) 시설 및 장비
 -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비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제작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매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20. 5. 2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젠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페인트 및 페라체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페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 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춘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인쇄설비
 - 2) 재단·접합가공설비
 -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절단설비
 - 2) 접합설비
 - 3) 인쇄설비
 - 4) 포장설비
 - 다. 합성수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 1) 용융·사출·성형설비
 - 2) 인쇄설비

비고: 인쇄설비를 전용용기의 인쇄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쇄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8의3] <신설 2016.1.21.>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용기의 뚜껑은 겹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겹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 2)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 한다.
3. 규격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겹의 필름으로 0.03m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mm 이상이어야 한다.
 -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계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cm²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cm 이상이어야 한다.
- 마.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cm² 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mm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색상 및 표시
-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오렌지색,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 나.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는 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 뒷면,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업 등록사항,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재활용하는 태반을 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의4] <신설 2016.1.21.>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시,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재질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개별사항

1) 골판지류 용기

- 가) 건상파열강도, 수직압축강도, 발수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음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 다)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전성시험, 낙하안전성시험은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 가)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
- 나)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다)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겹뚜껑을 달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
- 라)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 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마)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18±2℃)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 바) 손잡이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사)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 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아)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
- 자)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체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저온낙하안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8의5]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8의6] <신설 2020. 5. 27.>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1 관련)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 나.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 다. 가목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처리계획을 특례에 따른 처리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처리 승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 배출자, 수집·운반하는 자(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사업자번호를 포함한다),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례에 따른 처리를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가. 환경부장관
 - 나. 특례에 따른 처리를 담당할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례 처리업자"라 한다)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 다.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라. 한국환경공단
 - 마.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
 - 바. 특례 처리업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례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례 처리업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환경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개정 2020. 8. 3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4)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회수·이용률의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 가)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하여야 하는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거) 시간당 처분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너)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데)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고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3) 바닥재의 강열감량(強熱減量)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6)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분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본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유수분리시설
 -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탈수시설
 -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7) 건조시설
 -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 멸균분쇄시설
 -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분방식이어야 하며, 처분일자·처분온도·처분입력 및 처분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 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 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照射)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라.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 시설
 -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안정화시설
 -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분시설

1) 소멸화 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삭제 (2011.9.27)
- 다) 삭제 (2011.9.29)
- 라) 삭제 (2011.9.29)

2)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혐기성 분해시설

-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 3)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측대벽 및 독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독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분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할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10)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cm²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cm²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強度)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목		단위	기준	비고
용융지수		g/10min	1.0 미만	
밀도		g/cm ³	0.94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0 ~ 3.0	
카본블랙분산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중 80% 이상이 1급 이나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cm ²	150 이상	
	파단인장강도	kgf/cm ²	270 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 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 이상	
인열강도		kgf/cm	130 이상	
궤류림강도		kgf/cm	320 이상	
저온취약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수안정성		%	각 방향 ±2 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 이상	
산화유도시간 (OIT)	표준조건	min	100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min	400 이상	
열노화후 OIT유지율	표준조건	%	55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	80 이상	
자외선처리후 OIT유지율	가압조건	%	60 이상	
접합부강도	전단강도	kgf/cm ²	135 이상	
	박리강도	kgf/cm ²	97 이상	

비고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계표준(KPS M6000)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 중 4개 이상이 200시간 내에 파단(破斷)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나) 그 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매립시설 바다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2)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透過能)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인 지오킴포지트·지오텍스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 (3)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透水係數)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 (4)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空隙)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등을 설치할 것
 - (5)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 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할 것
 - (6)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인근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2) 매립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 바) 매립시설의 주입관로[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이하 “침출수 등”이라 한다)]를 매립시설에 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각각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 사)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카)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층의 적정 함수율(含水率)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관로, 주입펌프, 함수율 측정기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이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1)부터 (4)까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곧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최종복도층 아래의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계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 (2) 매립층에는 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침출수 등의 주입에 따라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립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재활용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2)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재활용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재활용시설은 지붕과 벽면이 있고 집진설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폐가전제품 중에 포함된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량 및 보관량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앞면 유리 및 뒷면 유리를 분리 시 발생하는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 6) 소각열회수시설 및 수은회수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재활용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계적 재활용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폐목재 반침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 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용융·용해시설은 용융·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벨트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재활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마) 흡입부에 폐유 증의 이물질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세척시설

- 가) 고압의 공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폐목재 받침목에 함유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질을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세척 과정에 사용한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학적 재활용시설

1) 고형화·고화시설

-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반응시설

-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응집·침전시설

-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및 부숙토·dung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부숙·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렁이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부숙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동애등에본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애등에본변토 생산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잉여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14)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15)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용해로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5)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소각열회수시설
- 1)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예열 및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열분해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진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시설규모,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6)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폐기물의 무게를 계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연소실·열분해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하는 온도 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의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연소실·열분해실의 외부는 철판을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칠하거나 단열처리 또는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회전식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 섭씨 250도 이하)여야 한다.

- 1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 1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 이상)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 13)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재활용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1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여야 하며, 이 경우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6)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7)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소각재를 제거할 때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18)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재활용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열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설비(생산되는 에너지를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설비(에너지 이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21)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설비에는 내부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2)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수은회수시설

- 1) 섭씨 600도 이상인 상태에서 수은폐기물을 배소(焙燒)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수은 회수과정에서 감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소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말한다)를 갖춰야 한다.
- 2) 기화된 상태에서 수은을 회수하는 응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3) 수은회수 공정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5) 수은회수 과정에서 수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출 시 필요한 수은회수통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비고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석탄재, 폐유리,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패각, 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건설폐재류(메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에 따른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3호마목 중 (1), (5), (7)부터 (9)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개정 2020. 11.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소각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흘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에너지 회수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소각열을 회수·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구분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재 강열감각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매립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p>차단형 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용
	<p>관리형 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내용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안정성

구분	검사항목
정기검사	<p>차단형 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장비 설치·관리상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p>관리형 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장비의 설치·관리상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상태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부 ○복토두께 ○침출수위 ○매립층의 함수율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사용종료·폐쇄 검사	<p>차단형 매립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구분	검사항목
관리형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차단층·배수층·식생대층) 설치상태 ○침하에 대한 안정성 ○축대벽과 독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사후관리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밀폐시설 관리 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관리형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장비 설치·관리 실태 ○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실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매립층 함수율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구분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방역 실태

비고: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멸균분쇄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의 적절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약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약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능력의 적절성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적절성 및 안정성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효율 ○파쇄시설의 설치 여부 및 파쇄능력 ○약취제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구분	검사항목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혼합시설의 적절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절 여부 ○발효시설의 구조·기능 및 적절 여부 ○후부숙(後腐熟)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소화 시설	○산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구조·기능 및 적절성 ○부숙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탄화·건조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 생산시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적절 여부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지렁이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구분	검사항목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培地配合施設)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입병(入瓶)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접종기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폐배지(廢培地)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정기검사	공통사항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 유지 여부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작동상태 ○선별시설의 작동상태 ○파쇄시설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가열·건조시설의 작동상태 ○사료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사료화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작동상태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구분	검사항목
협기성 소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발효시설의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숙방식] ○부숙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생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작동상태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분변 토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지렁이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의 적절성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5. 시멘트 소성로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 연소실 공기나 산소 공급장치 작동상태 ○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 연소실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6. 소각열회수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의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의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의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구분	검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실 압력측정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의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흘날림 방지조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에너지 회수 설비의 계측장비 설치 여부 ○에너지 이용 또는 공급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의 준수 여부 ○표지판의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연소상태의 유지 여부 ○소방장비의 설치 및 관리상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의 적절 여부 ○바닥재의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 법령(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시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3.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 검사항목 외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설 승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소각열회수시설의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자 여부 및 에너지 회수 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검사나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매립시설과 사용종료·폐쇄한 매립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법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사용종료·폐쇄 검사의 경우는 검사일 이전 1년) 내에 실시한 검사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신설 2020. 11. 2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

(제41조의3 관련)

1. 기술인력 요건

구분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보건,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시설·장비 요건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2) 장비	가) 광파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구분	시설·장비 요건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비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실험실 및 장비·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0의3] <신설 2020. 11. 2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
 -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유지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1] <개정 2020. 8. 3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 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유량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 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매립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파내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
- 2) 폐기물을 파내는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차수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파낸 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누출·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는 별표 8 제4호다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가전제품 등의 보관·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냉매물질, 형광물질 등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하.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해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폐기물 매립에 지장이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은 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섭씨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3) 삭제 <2008.1.28>
- (4)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ppm(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분능

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체상 폐기물을 연소실·열분해실·고온용융실로 직접 투입하여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설

- (가)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 (가)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분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분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나)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5)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 화학적 처분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 (1) 시멘트·물·윤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반응시설

- (1) 폐냉매물질 등 기체상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기체상 폐기물이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되는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분시설

가) 소멸화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사석 <2011.9.27>
- (3)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장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산소요구량(mg/L)			부유물질량 (mg/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mg/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지역	수소 이온 농도	노말핵산추출물질 함유량		폐놀류 함유량 (mg/L)	시아나 함유량 (mg/L)	크롬 함유량 (mg/L)	용해성 철 함유량 (mg/L)	아연 함유량 (mg/L)	구리 함유량 (mg/L)	카드뮴 함유량 (mg/L)	수은 함유량 (mg/L)	유기인 함유량 (mg/L)
		광유류 (mg/L)	동식물 유자류 (mg/L)									
청정 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지역	항 목	비소 함유량 (mg/L)	납 함유량 (mg/L)	6가 크롬 함유량 (mg/L)	용해성 망간 함유량 (mg/L)	불소 함유량 (mg/L)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 함유량 (mg/L)	총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 질소 (mg/L)	무기성 질소 (mg/L)	총인 (mg/L)	트리클로로 에틸렌 (mg/L)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mg/L)
청정 지역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가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나 지역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환경정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양)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침출수매립 시설원형정화설비가 설치된 매립시설은 5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독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페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이 본문의 방법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법이나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제 등 인공복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폐패각·석탄재·연탄재·폐유리·폐석분토사·폐석재·석재 또는 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흘날림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흘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학복토제 등 인공복토제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다만, 제2호나목2)카)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개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투과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파)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석면이 매립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인계받아 승계인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다음 (1)부터 (6)까지의 기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매립시설로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2)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4)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 함수율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침출수 등의 주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6)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별지 제4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거)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한다.

다. 재활용시설의 경우

1) 기계적 재활용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재활용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재활용을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여과망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바) 세척시설

- (1) 세척 과정에 사용된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세척에 사용된 세척수에 혼입된 폐목재 찌꺼기와 기름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재활용시설

가) 고형화·고화 시설

-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고분자화합물을 고화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가) 사료화·퇴비화·부숙시설, 부숙도·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1) 사료화·퇴비화시설, 부숙도·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사료화·퇴비화, 부숙도·동애등에분변토 생산 및 부숙·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소성로

-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다)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라)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 마) 연소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총탄화수소(THC)를 4시간 평균 6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3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용해로

- 가)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다) 연소실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가)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로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만을 같은 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섭씨 600도, 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다) 연소실·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종이류 또는 접착제·페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바)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사)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온수·증기 등의 회수열을 열원 또는 전기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은회수시설

가) 수은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수은 함유 폐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나) 수은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다)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제2호다목4)나)부터 바)까지 및 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2] <개정 2008.8.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측정주기

가.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2)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나.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별표 13] <개정 2018. 12. 3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3)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4)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나.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1) 대기: 다이옥신, 푸란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나. 조사지점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2)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

3)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4)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한다.
 - 5)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다.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지점 등이 제2호에 따른 조사 시기, 조사 지점 및 측정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1호나목1)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한 1회 측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4] <개정 2018. 1. 17.>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가.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 회수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마. 그 밖의 시설	○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명	점검항목
1. 중간처리시설	
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바닥·주요처리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소각시설 및 고온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사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흠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바. 유수분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차. 고형화·고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안정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타. 멸균분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멸균조건적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2. 최종 처분시설	
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기재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나. 차단형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바닥·외벽 및 내부벽의 파손 여부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다. 관리형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집수정·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 실시 여부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3. 재활용시설	
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 바닥·주요 재활용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은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흠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용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 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명	점검항목
차. 고형화·고화시설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항목

비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는 별표 9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점검항목은 제외한다.

[별표 15의2] <신설 2020. 5. 27.>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2. 폐기물 배출자에게 위탁받은 내용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하되, 폐기물 처분업자인 경우에는 운반업체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3.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4.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처리된 경우에는 잔재폐기물의 종류,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한다.
5.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종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공급처, 공급량 등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다)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폐기물 처리상황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6] <개정 2019. 12. 31.>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페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야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받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

는 자

9. 페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폐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별표 17] <개정 2017. 10. 19.>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습·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별표 17의2] <개정 2012.12.1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

[별표 18]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 관련)**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
2.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5. 납 또는 그 화합물
6. 시안화물
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별표 19] <개정 2020. 5. 27.>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인원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가. 빗물 배제방법

별표 9 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하)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침출수 등의 주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6) 별표 9 제2호나목2)자)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침출수 수위와 같은 목 2)라) 및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설치된 유량계와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각각 측정된 유량은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 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양)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0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2)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 3) 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1)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의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가. 제3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20] <개정 2018. 3. 30.>

허가·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삭제 <2011.3.31>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000원,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21] <개정 2020. 11. 27.>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 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 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 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 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1호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 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 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 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 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 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 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중 시멘트 소성료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금 지 1개월	해당 종류의 폐 기물 반입 및 처리금 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바) 그 밖의 재활용의 원천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1 개월	영업정지3 개월	영업정지6 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 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임원 또는 사용자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고	허가취소		

비고

-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분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분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분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분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3개월
		경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2개월	처리금지 3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3개월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경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4편
자원순환

0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605	제1조(목적) 2605
제2조(정의) 2606	제2조(폐기물의 종류) 2606
제3조(적용 범위) 2606	
제4조(국가의 책무) 2607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2607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2607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 7. 30.)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607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607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2610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2609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2610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2610
제9조 삭제 2611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2610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611	제7조 삭제 2611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2613	제8조 삭제 2611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2614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611
제13조 삭제 2614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2612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2614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2613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2614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2613
제1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등의 등) 2615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2614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2615	제14조 삭제 2614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2614
	제16조 삭제 2614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2615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2615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2615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2615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2618	제17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2618
제18조의4(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2618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2619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2619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2620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2620	
제19조(수출입 금지) 2621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2621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2621
제20조(반입명령 등) 2621	
제21조(대집행) 2622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2622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2622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2622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2622
제22조(보고·검사 등) 2623	제19조의3(보고·검사 등) 2623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2624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2624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2624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2624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2624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등) 2624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운영) 2625	
제3장 보칙 (개정 2013. 7. 30.)	제3장 보칙
제23조(수수료) 2625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2625
	제21조(수수료의 반환) 2626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2626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2627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2627
제26조 삭제 2627	제23조(청문) 2627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2627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2627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628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262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칙 (개정 2013. 7. 30.)</p> 제28조(벌칙) 2628 제29조(벌칙) 2629 제29조의2(벌칙) 2629 제30조(벌칙) 2630 제31조(양벌규정) 2630 제32조(과태료) 2630 부칙 2631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칙</p>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630 부칙 2631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정 1992. 12. 8 법률 제4534호 개정 1994. 1. 5 법률 제4714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7. 8. 28 법률 제5391호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1998. 2. 28 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9. 2. 8 법률 제5872호 2001. 1. 16 법률 제6361호 2007. 1. 19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 5. 17 법률 제8470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10. 3. 22 법률 제10153호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 7. 25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4. 3. 18 법률 제12465호 2016. 1. 27 법률 제13887호 2017. 4. 18 법률 제14784호 2019. 12. 3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피해물 관리법) 2020. 3. 31 법률 제17179호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제정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2호 개정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5호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5호 1999. 6. 21 대통령령 제16406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 (관세법시행령) 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7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7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9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5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6호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1호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6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아려운 병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1호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p> <p>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우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p> <p>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p>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우(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p> <p>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p> <p>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p> <p>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p> <p>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p> <p>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p> <p>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2019. 12. 31.></p> <p>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p> <p>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p> <p>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p> <p>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2. 29., 2013. 3. 23.></p> <p>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p> <p>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p>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 7. 30.></p> <p>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p> <p>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p> <p>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12. 30., 2017. 10. 17., 2019. 12. 31.)</p> <p>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 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p> <p>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p> <p>2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p> <p>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범성적서</p> <p>4. 삭제 <2009. 12. 31.></p> <p>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일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p> <p>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p> <p>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p> <p>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6., 2009. 12. 31.></p> <p>③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 7. 16., 2017. 10. 17., 2019. 12. 31.></p> <p>④ 삭제 <2001. 7. 16.></p> <p>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 12. 31., 1999. 6. 21., 2007. 11. 15., 2017. 10. 17.></p> <p>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p> <p>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p> <p>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언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 11. 15.></p> <p>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p> <p>⑧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p>[제목개정 2017. 10. 17.]</p> <p>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p> <p>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p> <p>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p> <p>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p> <p>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p> <p>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6. 21.> ③ 삭제 <1999. 6. 21.> [제목개정 1999. 6. 21.]</p> <p>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p> <p>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p> <p>[전문개정 2009. 12. 31.]</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9조 삭제 (1999. 2. 8.)</p> <p>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5.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7.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8.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제7조 삭제 (1999. 6. 21.)</p> <p>제8조 삭제 (1999. 6. 21.)</p> <p>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2016. 7. 19., 2016. 12. 30., 2017. 10. 17.,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p>4. 법 제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p> <p>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p> <p>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p> <p>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p> <p>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p> <p>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의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9. 삭제 <2009. 12. 31.>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8. 12. 31., 2001. 7. 16., 2007. 11. 15., 2009. 12. 31.> ③ 삭제 <2001. 7. 16.> ④ 삭제 <2001. 7. 16.>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7. 10. 17.]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p>	<p>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p> <p>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19. 12. 3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p>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6. 21., 2001. 7. 16., 2016. 12. 30.,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p> <p>[제목개정 2017. 10. 17.]</p> <p>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10. 17.)</p> <p>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7. 16., 2007. 11. 15., 2017. 10. 17.)</p> <p>[전문개정 1999. 6. 21.] [제목개정 2017. 10. 1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 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p> <p>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제13조 삭제 <2013. 7. 30.></p> <p>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명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p>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p>	<p>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p>[전문개정 2009. 12. 31.]</p> <p>제14조 삭제 <2014. 1. 28.></p> <p>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명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p> <p>[전문개정 2001. 7. 16.] [제목개정 2017. 10. 17.]</p> <p>제16조 삭제 <1998. 12. 31.></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p> <p>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p> <p>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p> <p>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p> <p>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p> <p>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p> <p>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제1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등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우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p> <p>②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4. 18.]</p> <p>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4. 18.]</p> <p>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5., 2009. 12. 31., 2010. 9. 17., 2017. 3. 29., 2017. 10. 17.></p> <p>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p>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 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31.,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 12. 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p>	<p>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 9. 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수출국에서의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31.)</p> <p>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p>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② 삭제 <2020. 3. 31.></p> <p>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1.></p>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18조의4(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p>	<p>나.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신고 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p> <p>[본조신설 2017. 10. 17.]</p> <p>제17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17.></p> <p>[본조신설 2010. 9. 17.]</p> <p>[제12조의2에서 이동 <2017. 10. 1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p> <p>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p> <p>[전문개정 2013. 7. 30.]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7. 4. 18.)] [제목개정 2020. 3. 31.]</p> <p>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p>	<p>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 1. 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의 입력 6.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p> <p>[본조신설 2010. 9. 17.] [제12조의3에서 이동 (2017. 10. 1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p> <p>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p> <p>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p>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p>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p> <p>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p>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p> <p>3의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p>	<p>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 7. 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 3. 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p>[제목개정 2001. 7. 16.]</p> <p>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p>[본조신설 2001. 7. 16.]</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을 때</p> <p>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1조(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허가·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7. 10. 17.]</p> <p>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p> <p>제22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수입한 자 또는 수출·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전문개정 2017. 10. 17.]</p> <p>제19조의3(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p>	<p>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p> <p>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p> <p>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를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세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 <개정 2013. 7. 30.></p> <p>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20. 9.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칙</p> <p>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p>	<p>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③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7. 10. 17.)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2. 28., 2001. 7. 16., 2010. 9. 17., 2017. 10. 17.)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9. 17.) ④ 삭제 (2001. 7. 16.)</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6조 삭제 <1997. 12. 13.></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7. 12. 31., 1998. 2. 28., 1999. 6. 21., 2001. 7. 16., 2009. 12. 31.></p> <p>제23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본조신설 2020. 9. 29.] <p>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7. 11. 15., 2010. 9. 17.,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2014. 1. 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 입안전문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별칙 <개정 2013. 7. 30.></p> <p>제2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p>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 9. 17.,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p>[전문개정 2001. 7. 16.] [제목개정 2010. 9. 17.]</p> <p>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별칙</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수입한 자</p> <p>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20. 3. 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3. 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9. 17.></p> <p>[전문개정 2009. 12. 31.]</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p> <p>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5.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p> <p>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4. 18.></p> <p>[전문개정 2013. 7. 30.]</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34호, 1992. 12. 8.></p> <p>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14호, 1994. 1.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 <p>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272호, 1994. 5. 28.></p> <p>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50호, 1994. 12. 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p> <p><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65>내지 <68>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85호, 1997. 12. 31.></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91호, 1997. 8. 28.〉</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29호, 1998. 2. 2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p> <p>⑥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⑦ 내지 ③ 생략</p> <p>제6조 및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72호, 1999. 2. 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734호, 1998. 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p> <p>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965호, 1998. 12.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406호, 1999. 6. 2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048호, 2000. 12. 29.〉</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61호, 2001. 1. 16.></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60호,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p> <p>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p> <p>⑦생략</p> <p>제2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70호, 2007. 5. 1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폐기물 수출·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p> <p>⑩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07호, 2001. 7. 16.></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p> <p>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고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⑦내지 ⑨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24호, 2002. 12. 30.></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9> 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153호, 2010. 3. 22.></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원자력안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관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⑳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387호, 2007. 11. 15.></p> <p>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215호, 2008. 12. 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80호, 2013. 7. 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59호, 200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 수출·수입·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폐기물의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385호, 2010. 9. 17.></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본다.</p> <p>부칙 <제12465호, 2014. 3. 18.></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87호, 2016. 1. 2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784호, 2017. 4. 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6699호,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7179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p>	<p>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⑩부터 ⑬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26호, 2014. 1. 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7351호, 2016. 7. 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971호, 2017. 3. 29.> (항공안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p> <p>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p> <p>⑲부터 ㉒까지 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366호, 2017. 10. 1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291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588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071호, 2020. 9. 29.〉</p> <p>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2641
[별표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3 관련)	2642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2643

[별표 1] <개정 2017. 10. 17.>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1. 포장방법

- 가.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 나.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다.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입폐기물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지부착방법

- 가. 수출입폐기물표지는 외부포장재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수출입폐기물표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크기는 20cm, 세로 30cm로 하며, 국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입폐기물표지 Export-Import Mark of the Waste		
○폐기물명 : Name of the Waste :	30cm	
○UN분류번호 : UN Classification No. :		
○허가번호 : Authorization No. :		
○수출국 : Country of Export :		
○수입국 : Country of Import :		
○경유국 : Expected Country of Transit		
○수출자 : Exporter of the Waste : • 주소 : Address : • 전화번호 : Tel :		
○수입자(수하인) : Consignee of the Waste : • 주소 : Address : • 전화번호 : Tel :		
○선적일자 : Shipping Date		
20cm		
※ 바탕색 : 황색, 글씨 : 흑색		

[별표 2] <개정 2017. 10. 17.>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3 관련)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수입자가 수입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거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 수입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고, 예약 입력하였을 때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 나. 운반자는 수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
 -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한 날(수입자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수입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ARS, 유선·무선 전화 등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상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나 정상가동 사실을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 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50	70	1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라.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4호	50	70	1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			
1)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2) 별표 2에 따른 포장·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0	40	50
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만 해당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아.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자.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0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2) (1)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차.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6호	50	70	1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3항 제6호의2	50	70	100
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7호	50	70	100

제4편
자원순환

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6조 삭제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 12. 27.)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2666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2666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2667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2667
제16조 삭제	2667	제16조 삭제	2667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 12. 27.)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2668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2668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2668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2668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2669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2669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2669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2670		
제18조(이주대책)	2670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2670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2670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2670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2670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2670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670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2671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2671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2672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2672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2673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673
제24조 삭제	2673	제29조 삭제	2673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2673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2673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2673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2674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2674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2674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2674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7.)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267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675	
제29조(연구·개발 등) 2675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2675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2676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2676
	제36조(규제의 재검토) 2676
제5장 벌칙 <개정 2007. 12. 27.>	
제31조(벌칙) 2677	
제32조(양벌규정) 2677	
부칙 2677	
	부칙 26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정 1995. 1. 5 법률 제4907호 개정 1997. 8. 28 법률 제5396호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청청도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1999. 2. 8 법률 제5867호 1999. 2. 8 법률 제5893호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 1999. 2. 8 법률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4. 2. 9 법률 제7169호 2005. 1.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7. 1. 3 법률 제8214호 2007. 4. 6 법률 제8338호 (하천법) 2007. 4.11 법률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 4.11 법률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 (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 (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1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12.27 법률 제8810호 2007.12.27 법률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9. 6. 9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10. 4.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31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2. 2. 1 법률 제11267호 (환경보정 조정법) 2013. 8.13 법률 제12077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4. 1.21 법률 제12322호 2014. 5.20 법률 제12622호 2015. 2. 3 법률 제13170호 2016.12.27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20. 1.29 법률 제16902호 (형안법) 2020. 6. 9 법률 제17427호</p>	<p>제정 1995. 6.30 대통령령 제14688호 전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6호 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59호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004. 8.10 대통령령 제18514호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6. 2.22 대통령령 제19352호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4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16 대통령령 제21543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연지니아령사업 진흥법 시행령)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4호 2012. 3.30 대통령령 제23700호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반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2.11 대통령령 제25165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8. 3 대통령령 제26468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6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 8 대통령령 제31238호</p>
<p align="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p> <p>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p>	<p>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p>	<p>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애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p>[전문개정 2009. 6. 16.]</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3. 8. 13.]</p> <p>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 2. 3.> <p>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p>	<p>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3.> <p>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5. 8. 3.> 2. 삭제 <2015. 8. 3.> <p>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총축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15. 8. 3.>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감축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p>	<p>한다. <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p> <p>⑧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8. 3.,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p> <p>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p> <p>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p> <p>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p>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p> <p>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p> <p>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p> <p>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p> <p>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p> <p>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p> <p>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p> <p>[전문개정 2009. 6. 16.]</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 12. 27.></p> <p>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p>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6조 삭제 <2004. 8. 10.></p> <p>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2.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p>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4. 5.></p> <p>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 <p>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p> <p>② 삭제 (1999. 2. 8.)</p> <p>③ 삭제 (1999. 2. 8.)</p> <p>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7., 2013. 8. 13.)</p> <p>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p> <p>[제목개정 2007. 12. 27.]</p> <p>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p> <p>[전문개정 2007. 12. 27.]</p>	<p>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p> <p>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p> <p>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p> <p>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p> <p>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p> <p>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p> <p>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p> <p>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p> <p>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p> <p>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p> <p>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p>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p>	<p>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 3.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p> <p>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자치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8. 13., 2014. 1. 14., 2016. 12. 27., 2020.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p>제13조 [중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99. 6. 30.>]</p> <p>제14조 [중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1999. 6. 30.>]</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p> <p>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p> <p>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p> <p>17. 삭제 (2010. 4. 15.)</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 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6조 삭제 <1999. 2. 8.></p>	<p>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른 가계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6조 삭제 <1999. 6. 30.></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 12. 27.)</p> <p>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p>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징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p>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자의 성명·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p>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p>[전문개정 2009. 6. 16.]</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p> <p>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0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의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1조(주민지원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p>	<p>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4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16.]</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p> <p>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p>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p> <p>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p> <p>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30.></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p>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p>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p> <p>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4조 삭제 <1997. 8. 28.></p> <p>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p>4. 지원 금액</p> <p>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16.]</p> <p>제29조 삭제 <1999. 6. 30.></p> <p>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적이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3.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16.]</p> <p>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전문개정 2009. 6. 16.]</p> <p>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전문개정 2009. 6. 16.]</p> <p>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7.></p> <p>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축·파쇄(破碎)·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p>[전문개정 2007. 12. 27.]</p> <p>제29조(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③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 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p> <p>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p> <p>[전문개정 2007. 12. 27.]</p>	<p>출자한 법인</p> <p>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20. 1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p>[전문개정 2009. 6. 16.]</p> <p>[제목개정 2020. 12. 8.]</p> <p>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20. 3. 3.> 2.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의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년 1월 1일 <p>[본조신설 2013. 12. 30.]</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 (개정 2007. 12. 27.)</p> <p>제31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p> <p>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0. 6. 9.]</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907호, 1995. 1. 5.)</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p> <p>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96호, 1997. 8. 28.)</p> <p>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86호, 199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령(1995년 7월 6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p>제3조(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p> <p>제4조(인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67호, 1999. 2. 8.></p> <p>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p> <p>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93호, 1999. 2. 8.> (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p> <p>⑧내지 ⑭생략</p> <p>제6조 생략</p>	<p>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6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459호, 1999. 6. 30.></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698호, 2002. 8. 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p> <p>④내지 ⑥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09호, 2002. 12. 18.> (국토기본법시행령)</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11호, 1999. 2. 8.)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p> <p>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p> <p>⑦내지 ⑤생략</p>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14호, 1999. 2. 8.)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⑩생략</p> <p>⑪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⑫내지 ④생략</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4호, 2002. 2. 4.) (국토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p> <p>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⑥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p> <p><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p> <p>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p> <p><65>내지 <73>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854호, 2002. 12.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p> <p>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p> <p>⑭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p> <p>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56호, 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p> <p><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p> <p><67>내지 <85>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 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p> <p>⑮내지 ⑳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428호, 2004. 6. 1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p> <p>⑤및 ⑥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514호, 2004. 8. 10.></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p> <p>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736호, 2005. 3.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내지 (74)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69호, 2004. 2. 9.)</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386호, 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p> <p>제6조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⑫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⑬내지 ⑰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352호, 2006. 2. 22.)</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64호, 2007. 7. 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680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1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 내지 ⑮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⑯ 내지 ⑳ 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98호,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㉔ 부터 ㉘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185호, 2008. 12.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⑰ 부터 ㉒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㉗생략</p> <p>㉘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p> <p>㉙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214호, 2007. 1. 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215호, 2008. 12. 31.)</p> <p>(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43호, 2009. 6.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공장·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38호, 2007. 4. 6.)</p> <p>(하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p> <p>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㉛생략</p> <p>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p> <p>㉝내지 ㉞생략</p> <p>제1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151호, 2010. 5. 4.)</p> <p>(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p> <p>(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p> <p>(178) 부터 (192)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43호, 2007. 4. 11.)</p> <p>(관광진흥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내지 ㉔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493호, 2010. 11. 15.)</p> <p>(은행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및 ㉔생략 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1호, 2007. 4. 11.)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㉔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㉔내지 ㉔생략 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2호, 2007. 4. 11.)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생략 <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내지 <7>생략 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0호, 2007. 4. 11.) (수도법)</p>	<p>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㉔ 및 ㉔ 생략 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874호, 2011. 4. 5.)</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700호, 2012. 3. 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p> <p>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내지 (66)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23호, 2007. 5. 11.) (지방자치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p>	<p>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966호, 2012. 7.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8810호, 2007. 12. 27.></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부칙 <제8819호, 2007. 12. 27.> (공유수면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820호, 2007. 12. 27.> (공유수면매립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65호, 2014. 2. 11.></p> <p>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942호, 2014. 12. 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763호, 2009. 6. 9.> (산림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468호, 2015. 8. 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238호, 2020. 12.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p> <p>제8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272호, 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부터 (75) 까지 생략</p> <p>제1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산지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2〉부터 〈89〉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267호, 2012. 2. 1.〉 (환경분쟁 조정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077호, 2013. 8. 1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 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p> <p><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p><115>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22호, 2014. 1. 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622호, 2014. 5.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170호, 2015. 2. 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902호, 2020. 1. 29.> (항만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427호, 2020. 6. 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2695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2696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2697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2698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2699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text{설치납부금액} =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부지 면적} \times \text{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text{시설 부지 면적(㎡)} = [1) + 2)] \times 100 \div \text{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설치비} = \text{소각시설 설치비} +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text{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text{소각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별표 1의2] <신설 2020. 12. 8.>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2)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

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입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별표 4] <개정 2009.6.16.>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구분	부대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의시설, 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목 차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705
제2조(정의)	270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70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05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2705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2705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2706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2706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2706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2707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2707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2707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707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2707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2708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2708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2708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2708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2709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2709
-----------------------	------

제21조(세제상의 지원)	2709
---------------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2709
제23조(「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	2709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2709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2709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2709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2709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2710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2710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2710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2710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2711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2711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2711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2711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2711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271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2711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2712

제40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712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2712

제42조(양벌규정) 2712

제43조(과태료) 2712

부칙 271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0. 6. 9 법률 제174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가. 방치폐기물
 -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 다. 재난폐기물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3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⑤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가. 국고
-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변회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신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금수혜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운영기관에 그 토지·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운영기관의 출연금
-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설치·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⑥ 설치·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읍·면·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 설치·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조사 주기·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주민복지지원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742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대기·기후

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2715
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193
0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235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241
05.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3311
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379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3439

제5편
대기·기후

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735	제1조(목적) 2735	제1조(목적) 2735
제2조(정의) 2735		제2조(대기오염물질) 2735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2735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735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2736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736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2736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2736
		제8조(첨가제) 2737
		제8조의2(촉매제) 2737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2738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738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2738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2738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2739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2739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2739
		제10조의5(상대) 2739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2739
제3조(상시 측정 등) 2739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2741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2741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74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42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2742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2741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2741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 2742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743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2743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2744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2743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2744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2745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2745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2745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 2745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2745	제2조(대기오염정보의 대상 지역 등) 2746	제13조(대기오염정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2745 제14조(대기오염정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2746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2747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2748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운영) 2748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2749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2749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749
제9조의3 삭제 2750		제14조의4 삭제 2750 제14조의5 삭제 2750 제14조의6 삭제 2750
제9조의4 삭제 2750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2750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2750		
제12조 삭제 2751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2751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2752	제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2751 제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2752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2753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2754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2756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2754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2755 제7조의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2755 제8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2756 제9조(수당 및 여비) 2756 제10조(운영 세칙) 2756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2757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758 제18조 삭제 2759		제15조(배출허용기준) 2757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2758 제17조 삭제 2759 제18조 삭제 2759 제19조 삭제 2759 제20조 삭제 2759
제19조 삭제 2759 제20조 삭제 2759 제21조 삭제 2759		제21조 삭제 2759 제22조 삭제 2759 제23조 삭제 2759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2759
제22조(총량규제) 2759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760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760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2760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2760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2760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2761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2764 제25조(사업장의 분류) 2765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2764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276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2765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2765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2765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766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2766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2767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2767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2767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2768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2768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2769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2769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2769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769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2770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2770	제35조(시운전 기간) 2770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2772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772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2771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2773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773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2773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2773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2773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2774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2774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2774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2776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2775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2776
제33조(개선명령) 2777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2777	제38조(개선계획서) 2777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2777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277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2780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779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2779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2780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2780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781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2781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2781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2782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2782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783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785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2786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786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2786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2786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787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2789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2787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2788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2788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2789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2791 제34조(부과금의 조정) 2791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2789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2791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2791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2792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2793	제49조(개선완료일) 2792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2793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2793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2796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2794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과징금 처분) 2796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2796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2797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2798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2798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2798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2798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2800
제39조(자가측정) 2801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2801
제40조(환경기술인) 2801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801	제53조 삭제 2801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2803	제40조(저황유 사용) 2803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2803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2804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2804	제55조의2(정제연료유) 2803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2806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2804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2809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2806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2805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2806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2806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2809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2806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2810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2810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811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사설 설치의 기준 등) 281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 2812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 2812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2813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 2813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 2813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 2814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2815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 2815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검사 등) …………… 2815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2816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 2816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2816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817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 2817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2818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 2818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2818	제64조(인증의 신청) …………… 2818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2823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 2819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2824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 2821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2824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 2821
제49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 2825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2824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 2822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2825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2825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2823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2823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2826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 2824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2824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 2825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 2824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2825
제49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 2825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2826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 282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2826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2826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2828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2828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2828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2828
제51조(결합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2829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2827	제72조(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 2829
		제73조(결합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2830
		제74조(결합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2831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2833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2834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2834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2834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2835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2835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2835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2836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2836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2836	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2836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2837		
제55조(인증의 취소) 2837		
제56조(과징금 처분) 2838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2838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2838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2838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2838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2839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2839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2839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2839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2846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 2848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2849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2850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2850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2850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2851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2851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2846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2847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2848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2840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2841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2841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2843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2843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2844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2845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2845 제79조의10(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2846 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 2847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2847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2848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임차 권고대상자) 284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공회전의 제한) 2851		제79조의15(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2851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2852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2852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2853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2853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2854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2855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2856 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2856 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2857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2858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2858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2858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2858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2860		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2860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2861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2862		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2862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2862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2863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2862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2863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2868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2868	제85조 삭제 2863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2863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2863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2864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2865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2866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2867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867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2867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2868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2869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2869 제91조(지정취소 등) 2870 제92조 삭제 2871 제93조 삭제 2871 제94조 삭제 2871 제95조 삭제 2871 제95조의2 삭제 2871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2872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2872 제98조 삭제 2872 제99조 삭제 2872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2869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2870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2871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871	
제64조 삭제 2872	제55조 삭제 2872	
제65조 삭제 287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삭제 2872 제67조 삭제 2872		제100조 삭제 2872 제101조 삭제 2872 제102조 삭제 2872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2872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872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2872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2872 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2873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2873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2875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2875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2876 제69조의2(결격 사유) 2877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2877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2878 제71조 삭제 2879 제72조 삭제 2879 제73조 삭제 2879	제58조 삭제 2879 제59조 삭제 2879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2877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2878 제108조 삭제 2879 제109조 삭제 2879 제110조 삭제 2879 제111조 삭제 2879 제112조 삭제 2879 제113조 삭제 2879 제114조 삭제 2879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2879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2879 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2879 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 2880 제118조 삭제 2880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2882</p> <p>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2883</p> <p>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2884</p> <p>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2884</p> <p>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28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 4. 5.)</p> <p>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885</p> <p>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2885</p> <p>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2886</p>	<p>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28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 2. 5.)</p>	<p>표시방법) 2880</p> <p>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2880</p> <p>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2881</p> <p>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2881</p> <p>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882</p> <p>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2882</p> <p>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2883</p> <p>제123조 삭제 2883</p> <p>제123조의2 삭제 2883</p> <p>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28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 2. 6.)</p> <p>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2885</p> <p>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2885</p> <p>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288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2886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2887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2887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2887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2887	
제76조의7 삭제 2888		
제76조의8 삭제 2888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2017. 11. 28.></p>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2888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 1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 11. 29.></p>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2889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2888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2889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2889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2888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2891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2889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2893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2889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2894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2890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2894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 2891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 <개정 2013. 4. 5.></p>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2895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2895
		제126조(교육계획) 2895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2896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2896
		제129조(지도) 2896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289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2897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2897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2897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2898		
제79조(회원) 2898		
제80조(업무) 2898		
제80조의2(골목자동측정기기협회) 2899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2899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2901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2900	제131조(출입·검사 등) 2901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2903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2903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2903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2904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2905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2905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2905		제134조(행정처분기준) 2905
제85조(청문) 2906		
제86조(수수료) 2907		제135조(수수료) 2907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2907	제63조(권한의 위임) 2907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 2911	
	제65조(보고) 2912	제136조(보고) 2912
	제66조(업무의 위탁) 2912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915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2915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2915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17	
제7장 벌칙 (개정 2013. 4. 5.)		
제89조(벌칙) 291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벌칙) 2919		
제90조의2(벌칙) 2921		
제91조(벌칙) 2921		
제91조의2(벌칙) 2923		
제92조(벌칙) 2923		
제93조(벌칙) 2924		
제94조(과태료) 2924	제67조(과태료) 2924	
제95조(양벌규정) 2928		
부칙 2929	부칙 2929	부칙 2929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정 2007. 4. 27 법률 제9404호 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3. 21 법률 제8956호 2008. 3. 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초계획 및 자원에 관한 법률) 2008. 3. 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2008.12.31 법률 제9311호 2009. 5. 21 법률 제9695호 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 2010. 1.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 4. 28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2. 2. 1 법률 제11265호 2012. 5. 23 법률 제11445호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 4. 5 법률 제11750호 2013. 7. 16 법률 제11907호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2015. 1. 20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5.12. 1 법률 제13528호 2016. 1. 27 법률 제13874호 2016.12.27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법률 제14487호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28 법률 제15096호 2019. 1. 15 법률 제16266호 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정책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9. 4. 2 법률 제16306호 2019.11.26 법률 제16604호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법률 제17797호</p>	<p>제정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개정 2008. 1. 15 대통령령 제20547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 5. 21 대통령령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29호 2008.12.31 대통령령 제2124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 2. 13 대통령령 제21325호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6호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임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0호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1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2호 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3. 1. 31 대통령령 제24344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30 대통령령 제2506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2. 5 대통령령 제25144호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0호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9호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5호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0호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 개정 2008. 2. 26 환경부령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외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 3. 3 환경부령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4. 17 환경부령 제285호 2008. 9. 19 환경부령 제297호 2008.10. 6 환경부령 제300호 2009. 1. 14 환경부령 제320호 2009. 2. 25 환경부령 제322호 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임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6. 30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 7. 14 환경부령 제342호 2010. 1. 6 환경부령 제358호 2010. 4. 13 환경부령 제367호 2010. 6. 30 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12.31 환경부령 제391호 2011. 3. 31 환경부령 제407호 2011. 8. 19 환경부령 제418호 2011.12. 2 환경부령 제434호 2011.12.30 환경부령 제440호 2012. 1. 25 환경부령 제444호 2012. 2. 3 환경부령 제449호 2012. 6. 15 환경부령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26 환경부령 제483호 2012.12.31 환경부령 제492호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 2. 1 환경부령 제500호 2013. 3. 23 환경부령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 2014. 2. 6 환경부령 제544호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6. 7.26 대통령령 제27392호	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24 대통령령 제27802호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환경부령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기술의 재활동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7. 8.16 대통령령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4.12.30 환경부령 제585호
		2015. 7.21 환경부령 제608호
		2015.12.10 환경부령 제626호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0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 1.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3호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2호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31 환경부령 제632호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6. 3.29 환경부령 제645호
	2019. 7. 2 대통령령 제2996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6. 6. 2 환경부령 제654호
		2016. 7. 1 환경부령 제661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9. 7.16 대통령령 제29988호	2016. 7.27 환경부령 제671호
	2020. 3.31 대통령령 제30589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물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0. 5.26 대통령령 제30707호	2017. 1.26 환경부령 제689호
		2017. 9.28 환경부령 제713호
		2017.10.18 환경부령 제714호
		2017.12.28 환경부령 제724호
		2017.12.28 환경부령 제727호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 3. 2 환경부령 제749호
		2018. 6.28 환경부령 제769호
		2018.12.31 환경부령 제793호
		2019. 2.13 환경부령 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
		2019. 6.27 환경부령 제814호
		2019. 7.16 환경부령 제817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30 환경부령 제837호
		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
		2020. 5.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12.30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p> <p>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p> <p>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p> <p>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p> <p>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p> <p>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p> <p>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p> <p>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p> <p>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p> <p>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p> <p>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p> <p>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p> <p>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p> <p>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p>	<p>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p>[본조신설 2020. 3.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p>	<p>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3.]</p> <p>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 2020. 4. 3.)</p> <p>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p> <p>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km)을 말한다.</p> <p>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p> <p>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3. "냉매(冷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20. 4. 3.> [본조신설 2013. 5. 24.]</p> <p>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 4. 3.> [본조신설 2016. 6. 2.]</p> <p>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1. 8. 19., 2013. 5. 24., 2014. 2. 6., 2016. 6. 2., 2019.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p> <p>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제목개정 2016. 1. 27.]</p>		<p>기측정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p>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2011. 8. 19.> <p>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p>	<p>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7. 26.]</p> <p>[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3. 31.>]</p>	<p>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14. 1. 14.></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5. 23.]</p>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준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심사·</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26.></p>	<p>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 5. 24.]</p> <p>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p>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p> <p>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p>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₃) <p>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3. 31.)]</p> <p>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p>[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20. 3.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p>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20. 3. 31.>]</p> <p>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p> <p>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p> <p>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0. 3. 31.>]</p> <p>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1조의7에서 이동 <2020. 3. 31.>]</p>	<p>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 4. 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 4. 3.></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p>		<p>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p> <p>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p> <p>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₃) <p>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p>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재사용·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p>	<p>3. 오존(O₃):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p> <p>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p> <p>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p> <p>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 20.></p>	<p>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사업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p>③ 삭제 <2015. 7. 20.> ④ 삭제 <2015. 7. 20.> [본조신설 2013. 1.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p> <p>[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5. 1. 20.]</p>	<p>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평가: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①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②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4.]</p> <p>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p> <p>①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9조의3 삭제 <2017. 11. 28.></p> <p>제9조의4 삭제 <2017. 11. 28.></p> <p>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p>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 7. 20.> [본조신설 2013. 1. 31.]</p>	<p>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③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p> <p>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1. 29.> [본조신설 2013. 5. 24.]</p> <p>제14조의4 삭제 <2018. 11. 29.></p> <p>제14조의5 삭제 <2018. 11. 29.></p> <p>제14조의6 삭제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관찰에 관한 사항</p> <p>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p> <p>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p> <p>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p> <p>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 체계의 구축</p> <p>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 삭제 <2010. 1. 13.></p> <p>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p> <p>①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p> <p>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p> <p>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p>	<p>제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①</p> <p>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p> <p>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p> <p>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5.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2. 1.]</p> <p>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8.></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제목개정 2016. 5. 31.] <p>제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 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6. 5. 31.></p>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목개정 2016. 5. 31.]</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p>	<p>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p> <p>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1. 31., 2013. 3. 23., 2014. 11. 19., 2016. 5. 31.,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p> <p>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p> <p>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신설 2012. 5. 23., 2015. 12. 1.></p> <p>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2. 1.></p> <p>[제목개정 2015. 12. 1.]</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5. 31.]</p> <p>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의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라 한다)은 단장(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연구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31.></p> <p>② 연구단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연구단원(이하 "연구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5. 31.></p> <p>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추천하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전문가 1명</p> <p>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는 사람</p> <p>[본조신설 2013. 1.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인력 교류 및 협력 	<p>[제목개정 2016. 5. 31.]</p> <p>제8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위원장, 실무위원장 및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단장: 연구단장이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단원이 요청한 경우 <p>[전문개정 2013. 1. 31.]</p> <p>제9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연구단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연구단에 참석한 경우 <p>[전문개정 2013. 1. 31.]</p> <p>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 31., 2016. 5. 31.></p> <p>[제목개정 2013. 1.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와 보급</p> <p>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홍보활동</p> <p>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p> <p>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p> <p>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목개정 2015. 12. 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p> <p>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p> <p>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p> <p>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20. 12. 29.></p> <p>⑦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p> <p>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4. 2.></p> <p>②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p>		<p>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p> <p>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p> <p>제18조 삭제 <2019. 4. 2.></p> <p>제19조 삭제 <2019. 4. 2.></p> <p>제20조 삭제 <2019. 4. 2.></p> <p>제21조 삭제 <2019. 4. 2.></p> <p>제22조(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 삭제 <2020. 4. 3.></p> <p>제18조 삭제 <2020. 4. 3.></p> <p>제19조 삭제 <2020. 4. 3.></p> <p>제20조 삭제 <2020. 4. 3.></p> <p>제21조 삭제 <2020. 4. 3.></p> <p>제22조 삭제 <2020. 4. 3.></p> <p>제23조 삭제 <2020. 4. 3.></p> <p>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p>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 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10.]</p> <p>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 5. 24.></p> <p>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p> <p>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p> <p>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 1. 31., 2015. 12. 10., 2019. 7. 16.)</p>	<p>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5. 24., 2019. 7. 16.)</p> <p>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p>		<p>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p> <p>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p>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p>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 7. 1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p>[제목개정 2013. 1.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p> <p>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9. 1. 15.></p> <p>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 15.></p> <p>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방지사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사설(이하 "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p>	<p>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p> <p>제14조(방지사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p> <p>2. 그 밖에 방지사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p>	<p>제28조(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p> <p>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 27.></p> <p>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p>	<p>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p>	<p>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p>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0. 12. 29.></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 2. 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p>		<p>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p>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p>		<p>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p>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0.)</p>	<p>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p> <p>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p> <p>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p>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p>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6.></p> <p>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p> <p>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p>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p> <p>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효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p>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p> <p>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 31., 2016. 3. 29.)</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p>	<p>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p> <p>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p> <p>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p>	<p>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31.></p> <p>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p> <p>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p> <p>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p>	<p>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9. 4. 2.></p> <p>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 5. 23., 2015. 1. 20.></p> <p>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p>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3. 31.]</p> <p>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p> <p>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p>[본조신설 2017. 1. 24.]</p>	<p>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p> <p>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 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바꾸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p>[본조신설 2017. 1. 26.]</p> <p>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p>[본조신설 2017. 1. 2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p> <p>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p> <p>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p> <p>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기측정계획</p> <p>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p>	<p>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p> <p>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p> <p>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p> <p>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p> <p>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p> <p>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p> <p>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p> <p>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p> <p>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p> <p>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기록 등으로 인한 경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목의 사항</p> <p>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는 것 나. 개선하려는 기간</p> <p>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p> <p>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p> <p>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p>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p>	<p>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p> <p>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p>	<p>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면,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p> <p>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2. 6.,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하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p> <p>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p> <p>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7. 1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4.,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p> <p>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p> <p>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p> <p>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2. 1., 2019. 11. 26.></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p>	<p>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p>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p>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 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6. 12. 27.>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p>	<p>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p> <p>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 3. 31.></p> <p>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p> <p>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p> <p>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p> <p>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p> <p>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12. 31.></p> <p>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 12. 31., 2016. 3. 29.></p> <p>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1.></p> <p>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p>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p> <p>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26., 2016. 3. 29.)</p> <p>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 31.></p> <p>[전문개정 2008. 12. 31.]</p> <p>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 2019. 7. 1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2019. 7. 16.)</p> <p>1.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p> <p>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로 배출했을 것</p> <p>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p> <p>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p> <p>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p>	<p>1.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p> <p>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 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⑧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출 수 있다. <개정 2012. 5. 23.></p> <p>⑨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p> <p>[제목개정 2012. 2. 1.]</p>	<p>와 다른 경우 :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p> <p>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p> <p>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p>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p> <p>[제37조에서 이동 <2013. 1.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 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p>	<p>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31., 2020. 5. 26.></p> <p>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p> <p>2.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p> <p>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p> <p>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31., 2020. 5. 26.></p>	<p>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같음한다)</p> <p>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p> <p>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p> <p>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p> <p>[본조신설 2012. 2. 1.]</p>	<p>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p> <p>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22., 2013. 1. 31.></p> <p>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p> <p>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9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p> <p>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 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p> <p>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31.></p>	<p>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 4. 3.></p> <p>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p> <p>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감</p> <p>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4. 3.></p> <p>1. 자발적 협약서 사본</p> <p>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할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할 결과, 	<p>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0. 4. 3.></p> <p>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한 날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p>	<p>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p> <p>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p>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p> <p>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 7. 16.></p> <p>[전문개정 2013. 1. 31.]</p>	<p>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환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2019. 11. 26.,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 경우</p> <p>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p> <p>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p> <p>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p> <p>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p> <p>20.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p>	<p>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p>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p> <p>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 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2. 1.,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증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p>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12. 29.></p> <p>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p> <p>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2. 1.></p> <p>⑥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p> <p>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증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7. 20.]</p>	<p>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전문개정 2013. 2. 1.]</p> <p>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p> <p>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p>		<p>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p> <p>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p> <p>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제의 시설의 목록</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p>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9. 7. 16., 2020. 4. 3.></p> <p>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p> <p>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p> <p>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p> <p>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p> <p>[전문개정 2015. 1. 20.] [제목개정 2016. 1. 27.]</p>		<p>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p>[본조신설 2015. 7. 21.] [중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1.>]</p> <p>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p> <p>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 2와 같다. <개정 2015. 7. 21., 2019. 7. 16.></p> <p>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 7. 21., 2019. 7. 16.></p> <p>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7. 21.></p> <p>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7. 1. 26., 2019. 7. 16.></p> <p>[본조신설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mall>(신설 2019. 11. 26.)</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p>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mall>(신설 2019. 11. 26.)</small></p> <p>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small>(개정 2019. 11. 26.)</small></p> <p>제40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small>(개정 2012. 2. 1.)</small></p>	<p>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small>(개정 2013. 1. 31.)</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p><small>[제51조의2에서 이동 <2015. 7. 21.>]</small></p> <p>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small>(개정 2010. 12. 31., 2017. 12. 28.)</small></p> <p>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small>(개정 2011. 8. 19.)</small></p> <p>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small>(신설 2020. 5. 27.)</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p>④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small>(개정 2020. 5. 27.)</small></p> <p>제53조 삭제 <small>(2013. 2. 1.)</small></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p>	<p>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p>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박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p> <p>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p> <p>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 12. 31.></p> <p>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과 그 유류의 회수처</p>	<p>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p> <p>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p> <p>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p>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p> <p>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p>	<p>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31.)</p> <p>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p>④ 삭제 (2013. 1. 31.)</p> <p>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p>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p>	<p>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펄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과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p>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p>	<p>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p> <p>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16.></p>	<p>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p> <p>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p> <p>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p> <p>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p>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7., 2013. 5. 24., 2015. 12. 31., 2017. 12. 28.></p> <p>② 별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p>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제목개정 2012. 5. 23.]</p>		<p>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p> <p>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 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5. 24.></p> <p>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 20.,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p>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p>	<p>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p> <p>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p> <p>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p>	<p>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종전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2015. 7. 21.)]</p> <p>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p> <p>⑤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제59조에서 이동 (2015. 7. 21.)]</p> <p>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별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4., 2015. 7. 21.></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⑥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p> <p>⑦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⑧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⑨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9. 1. 15.></p> <p>⑪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2019. 1. 15.></p> <p>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 5. 24.></p> <p>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 5. 24., 2019. 7. 16.></p> <p>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본조신설 2012. 5. 23.] [제목개정 2015. 1. 20.]</p> <p>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도양 	<p>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p>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p>[본조신설 2015. 7. 20.]</p>	<p>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21.] [종전 제61조의3은 제61조의4로 이동 <2015. 7. 2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p> <p>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1.]</p> <p>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p> <p>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p> <p>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 15.></p> <p>②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p>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사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p>		<p>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사설의 검사 등)</p> <p>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 한국환경공단</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p> <p>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 <p>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사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사설로 한다.</p> <p>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사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p>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분(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p> <p>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 [제61조의3에서 이동 <2015. 7. 21.>]</p> <p>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사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사설로 한다.</p> <p>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사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p>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분(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p> <p>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 [제61조의3에서 이동 <2015. 7. 21.>]</p> <p>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9. 4. 2.></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p> <p>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p>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p>	<p>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p> <p>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p>	<p>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p> <p>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p>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p>	<p>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6.,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p>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p>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7. 삭제 <2008. 12. 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p> <p>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p>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중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 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p>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참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12. 20.)</p> <p>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여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p> <p>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2. 1.)</p> <p>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7. 21.)</p> <p>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p>		<p>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p> <p>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2. 10. 26.></p> <p>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2. 10. 26.></p> <p>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신청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p>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p>		<p>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p> <p>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4.)</p> <p>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14.)</p> <p>④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4.)</p> <p>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시판을 이용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1. 28.></p> <p>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p>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p> <p>[본조신설 2008. 12. 31.]</p>		<p>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중전 제67조의2는 제6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p> <p>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6.,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p>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67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67조의3은 제67조의4로 이동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본조신설 2008. 12. 31.]</p> <p>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p>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와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67조의3에서 이동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49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1. 31.]</p> <p>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p>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⑤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2. 1.></p>	<p>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p>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p> <p>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2. 10. 26.]</p> <p>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⑥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2. 1.></p> <p>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2. 27.></p> <p>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p>	<p>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로부터 산정한다.</p>	<p>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한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p>	<p>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개월수/12)×(기준금액×0.1)]</p> <p>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26.]</p>	<p>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p> <p>②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2. 2. 3.]</p> <p>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제51조(결합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 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합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②결합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 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p>		<p>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p> <p>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3.]</p> <p>제72조(결합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합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결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 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5. 24., 2014. 2. 6.></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4.></p> <p>제74조(결합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 2. 6.></p> <p>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신설 2014. 2. 6.></p> <p>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p>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p>		<p>③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 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p> <p>④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p> <p>⑤ 자동차제작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 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p> <p>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p> <p>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p> <p>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p> <p>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p>		<p>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등지계획서 <p>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p> <p>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20. 4. 3.]</p> <p>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3조(부품의 결합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 및 결합원인 분석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합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합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제50조(부품의 결합시정 현황 및 결합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p> <p>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합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합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합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합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합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합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p>	<p>제77조(결합시정 현황 및 부품결합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합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합시정 내용 3. 결합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합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p>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합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합시정 내용 3. 결합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합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p>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합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합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합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합을 시정한 부품의 결합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 2017. 9. 2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 요구 건수가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1. 28.)</p> <p>③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합 건수 또는 결합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합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자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2017. 11. 28.)</p> <p>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합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합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합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합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합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합을</p>	<p>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1. 27.]</p> <p>제50조의2(결합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합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합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합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p>[본조신설 2016. 5. 31.]</p> <p>제51조(부품의 결합시정 명령의 요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합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6. 5. 31.,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합 건수(제작결합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합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② 삭제 (2018. 11. 27.) [제목개정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 <p>제77조의2(부품의 결합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합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8. 11. 29.]</p> <p>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합확인검사 및 결합의 시정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p> <p>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p> <p>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5. 1. 20.></p> <p>[제목개정 2015. 1. 20.]</p> <p>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4. 3.></p> <p>[본조신설 2012. 10. 26.] [제77조의2에서 이동 <2015. 7. 2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p> <p>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p> <p>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p>	<p>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 12. 26.></p>	<p>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 2. 1.></p> <p>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8. 3.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9. 4. 2.]</p>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p>		<p>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 5. 24.]</p> <p>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p>[본조신설 2020. 4. 3.]</p> <p>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충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p>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p> <p>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p>지게차 또는 굴착기</p> <p>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기무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p>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4. 3.]</p> <p>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8. 11. 29., 2020. 4. 3.></p> <p>[본조신설 2013. 2. 1.]</p> <p>[중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p> <p>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p> <p>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p> <p>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p> <p>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9. 4. 2., 2020. 5. 26.)</p> <p>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p>		<p>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5. 24.></p> <p>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 2. 1., 2014. 2. 6., 2017. 12. 28.></p> <p>[본조신설 2008. 9. 19.]</p> <p>[제7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3. 2. 1.>]</p> <p>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p> <p>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p> <p>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p> <p>3. 삭제 <2020. 12. 29.></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p>		<p>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 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7. 14., 2013. 2. 1., 2017. 12. 28., 2020. 4. 3.></p> <p>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2. 28.></p> <p>③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 2017. 12. 28.></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 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4. 3.></p> <p>[본조신설 2008. 9. 19.]</p> <p>[제79조의30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p> <p>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p> <p>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p>		<p>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2017. 12. 28.,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3. 5. 24.]</p> <p>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p>[본조신설 2013. 5. 24.] [중전 제79조의6은 제79조의8로 이동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①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4. 2., 2020. 5. 26.)</p> <p>③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0. 5. 26.)</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p> <p>⑤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2019. 4. 2.)</p>		<p>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p>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5. 24.]</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p> <p>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정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청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20. 5. 27.] [중전 제79조의8은 제79조의9로 이동 <2020. 5. 27.>]</p> <p>제79조의9(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8. 12. 31.,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p>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p> <p>[본조신설 2016. 7. 27.] [제79조의8에서 이동, 중전 제79조의9는 제79조의10으로 이동</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p> <p>⑯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p> <p>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p>	<p>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2020. 5. 27.></p> <p>제79조의10(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사·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p>②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p>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6. 7. 27.]</p> <p>[제7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0은 제79조의11로 이동 <2020. 5. 27.>]</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2. 29.)</p> <p>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p>	<p>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p>	<p>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7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1은 제79조의12로 이동 (2020. 5. 27.)]</p> <p>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p> <p>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 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p> <p>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을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p>[본조신설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20. 4. 3.] [제7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2는 제79조의13으로 이동 <2020. 5. 27.>]</p> <p>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 [제7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3은 제79조의14로 이동 <2020. 5. 27.>]</p> <p>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 [제7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4는 제79조의15로 이동</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20. 12. 29.)]</p>		<p>(2020. 5. 27.)</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7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6에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7에서 이동 <2020. 12. 29.>]</p> <p>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0. 5. 26.></p> <p>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2012. 5. 23.></p>		<p>제79조의15(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 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p> <p>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p> <p>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③ 삭제 <2019. 4. 2.></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p>[본조신설 2010. 1. 6.] [제79조의14에서 이동 <2020. 5. 27.>]</p> <p>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3.]</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2. 5. 23.]</p>		<p>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3. 31.]</p> <p>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7.,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7.,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 4. 3.></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 4. 3.></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 7. 27., 2020. 4. 3.></p> <p>[본조신설 2013. 5. 24.]</p> <p>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p>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p>		<p>진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4. 3.]</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p> <p>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p>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p>		<p>제6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p> <p>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4. 3.></p> <p>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치를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2. 1.]</p> <p>제6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 [본조신설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차량을 정비할 것 <p>[본조신설 2013. 2. 1.]</p> <p>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p> <p>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합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p>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중전 제82조의4는 제82조의5로 이동 <2020. 4. 3.>]</p> <p>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2. 1.]</p> <p>[제82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82조의5는 제82조의6으로 이동 <2020. 4. 3.>]</p> <p>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4. 3.></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2. 1.]</p> <p>[제82조의5에서 이동, 중전 제82조의6은 제82조의7로 이동 <2020. 4. 3.>]</p> <p>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6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 4. 3.></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p> <p>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4. 3.></p> <p>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6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4. 3.></p> <p>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7. 21., 2016. 12. 30.></p> <p>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 [본조신설 2013. 2. 1.] [제82조의6에서 이동 <2020. 4. 3.>]</p> <p>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4. 3.]</p> <p>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p> <p>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p> <p>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내구성 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p> <p>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p> <p>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9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2013. 5. 24., 2017. 1. 26.></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2013. 2. 1.> 3. 「도로교통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갈래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p> <p>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p>		<p>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p> <p>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3.]</p> <p>제85조 삭제 (2013. 2. 1.)</p> <p>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제목개정 2014. 2. 6.]</p> <p>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증명서 <p>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p> <p>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p> <p>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 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p> <p>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p>		<p>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 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 2. 6.)</p> <p>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p> <p>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2020. 5. 26.></p> <p>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본조신설 2014. 2. 5.]</p>	<p>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 2. 6.></p> <p>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 2. 6.> [제목개정 2014. 2. 6.]</p> <p>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2014. 2. 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 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관리권역 <p>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 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 	<p>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 시 및 화성시 	<p>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92조 삭제 <2013. 2. 1.> 제93조 삭제 <2013. 2. 1.> 제94조 삭제 <2013. 2. 1.> 제95조 삭제 <2013. 2. 1.> 제95조의2 삭제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자동차</p> <p>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p> <p>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대사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제64조 삭제 <2012. 2. 1.></p> <p>제65조 삭제 <2012. 2. 1.></p> <p>제66조 삭제 <2012. 2. 1.></p> <p>제67조 삭제 <2012. 2. 1.></p> <p>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p>	<p>제55조 삭제 <2013. 1. 31.></p> <p>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3. 1. 31.]</p> <p>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 10. 6., 2013. 2. 1.></p> <p>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 10. 6., 2013. 2. 1.></p> <p>제98조 삭제 <2013. 2. 1.></p> <p>제99조 삭제 <2013. 2. 1.></p> <p>제100조 삭제 <2013. 2. 1.></p> <p>제101조 삭제 <2013. 2. 1.></p> <p>제102조 삭제 <2013. 2. 1.></p> <p>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2017. 1. 2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p> <p>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p>	<p>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 1. 31.]</p>	<p>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7., 2013. 2. 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제목개정 2013. 2. 1.] 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1.]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력(이하“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6.></p> <p>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 1. 26.></p>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6.> [본조신설 2013. 2. 1.]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 <2013. 2. 1.>]</p> <p>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2. 1.> [본조신설 2008. 4. 17.] [제목개정 2013. 2. 1.] [제104조의2에서 이동 <2013. 2. 1.>]</p> <p>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p> <p>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p> <p>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p>[제목개정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2. 2. 1.]</p> <p>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12. 2. 1.]</p> <p>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충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p>		<p>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 2. 1.></p> <p>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3. 7. 16.></p> <p>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2. 1.></p> <p>④ 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p>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2017. 1. 26.></p> <p>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1.></p> <p>[제목개정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1조 삭제 <2012. 2. 1.> 제72조 삭제 <2012. 2. 1.> 제73조 삭제 <2012. 2. 1.></p> <p>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7. 16.></p> <p>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31.></p> <p>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제58조 삭제 <2009. 6. 30.> 제59조 삭제 <2009. 6. 30.></p>	<p>제108조 삭제 <2013. 2. 1.> 제109조 삭제 <2013. 2. 1.> 제110조 삭제 <2013. 2. 1.> 제111조 삭제 <2013. 2. 1.> 제112조 삭제 <2013. 2. 1.> 제113조 삭제 <2013. 2. 1.> 제114조 삭제 <2013. 2. 1.></p> <p>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 7. 14.> [제목개정 2009. 7. 14.]</p> <p>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제외) 법 제74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4.,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립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20. 12. 29.)</p> <p>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p>⑦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환경기술개발센터 [제목개정 2009. 7. 14.]</p> <p>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16. 6. 2.></p> <p>[제목개정 2009. 7. 14.]</p> <p>제118조 삭제 <2009. 7. 14.></p> <p>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 7. 14., 2016. 6. 2.></p> <p>[제목개정 2009. 7. 14.]</p> <p>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08. 12. 31.]</p>		<p>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1.]</p> <p>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p> <p>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p>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p>[전문개정 2009. 7. 14.]</p> <p>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p>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검사업무를 하는 행위</p> <p>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p> <p>[본조신설 2008. 12. 31.]</p> <p>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p>		<p>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4.,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4.></p> <p>[제목개정 2017. 12. 28.]</p> <p>제123조 삭제 <2017. 12. 28.></p> <p>제123조의2 삭제 <2017. 12. 28.></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2. 29.)</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p> <p>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본조신설 2008. 12. 31.]</p> <p>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9.></p> <p>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p> <p>[제목개정 2013. 7. 16.]</p> <p>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p>	<p>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p>	<p>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 4. 5.)</p> <p>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5.]</p> <p>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 2. 5.)</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 2. 6.)</p> <p>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7. 21.,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p>[본조신설 2014. 2. 6.]</p> <p>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p> <p>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4. 5.]</p> <p>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4. 5.]</p> <p>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p>		<p>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 7. 21.></p> <p>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7. 21.></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제출시기, 차이분·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4. 5.]</p> <p>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p> <p>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 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p>	<p>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3. 4. 5.]</p> <p>제76조의7 삭제 <2020. 12. 29.> 제76조의8 삭제 <2020. 12. 29.></p> <p>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2017. 11. 28.>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p>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p> <p>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 11. 27.></p>	<p>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p>	<p>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p>	<p>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사용기기 매매·임대·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제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p>[본조신설 2018. 11. 27.]</p>	<p>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들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 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p>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수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 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p>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p> <p>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p>		<p>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p>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6장 보칙 <개정 2013. 4. 5.></p> <p>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p>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p>	<p>제5장 보칙</p>	<p>제5장 보칙</p> <p>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30., 2010. 12. 3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 14.></p> <p>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p> <p>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9. 5. 21.]</p> <p>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 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p>[본조신설 2010. 1. 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2. 5. 23.]</p> <p>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 2. 1.></p> <p>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p> <p>[제목개정 2012. 2. 1.]</p> <p>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p>[전문개정 2012. 2. 1.]</p> <p>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정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사항</p> <p>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p>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p> <p>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p> <p>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p> <p>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p> <p>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p> <p>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p> <p>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p> <p>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p> <p>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의 사업 <p>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p> <p>1. 사업자 1의2. 삭제 <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p>		<p>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 2013. 5. 24., 2014. 2. 6., 2019. 7. 16.,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3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는 자</p> <p>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p> <p>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p> <p>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p> <p>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p> <p>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p> <p>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p> <p>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p> <p>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p> <p>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p> <p>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p> <p>9. 전문정비사업자</p> <p>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p> <p>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p> <p>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p> <p>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p> <p>12의3. 냉매회수업자</p> <p>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9. 삭제 (2013. 2. 1.)</p> <p>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p> <p>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p> <p>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p> <p>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p> <p>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p> <p>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p> <p>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p> <p>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p> <p>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p> <p>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p>		<p>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p> <p>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p>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3. 7. 16., 2019. 4. 2.,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p> <p>10. 제5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p> <p>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p>	<p>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p>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20. 3. 31.,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용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관리 <p>[본조신설 2014. 12. 31.]</p>	<p>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p>[전문개정 2012. 2. 1.]</p> <p>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31.,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p>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 2013.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p>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2.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p> <p>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p> <p>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3. 1. 31., 2014. 2. 5., 2015. 7. 20., 2016. 7. 26., 2017. 1. 24., 2019. 7. 16., 2020. 3. 31.></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p> <p>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p> <p>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p> <p>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p> <p>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p> <p>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p> <p>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p> <p>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p> <p>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p> <p>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조정 등</p> <p>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p> <p>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p> <p>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p> <p>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p> <p>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p> <p>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지명령</p> <p>4의20.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p> <p>4의2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p> <p>5.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p> <p>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 명령</p> <p>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지명령</p> <p>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채취·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p> <p>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p> <p>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p> <p>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p> <p>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p> <p>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3. 1. 31., 2014. 2. 5., 2016. 5. 31., 2018. 12. 31., 2020. 3. 31.></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p> <p>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p> <p>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p> <p>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p> <p>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p> <p>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합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p> <p>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p> <p>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p> <p>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p> <p>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p> <p>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p> <p>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p> <p>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p> <p>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p>	<p>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p> <p>[제목개정 2018. 12. 31.]</p> <p>제65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1. 31.]</p> <p>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p> <p>2의3. 삭제 <2018. 11. 27.></p>	<p>제136조(보고)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p> <p>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p> <p>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p> <p>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p> <p>5. 삭제 <2013. 1. 31.></p> <p>6. 삭제 <2013. 1. 31.></p> <p>7. 삭제 <2013. 1. 31.></p> <p>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p> <p>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p> <p>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p> <p>8의6.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8의7.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p> <p>8의8.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입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구매·입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p> <p>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p> <p>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다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p> <p>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p> <p>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p> <p>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p> <p>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 7. 20.></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p> <p>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2.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p> <p>④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p>	<p>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 5. 26.> [제목개정 2018. 11. 27.]</p> <p>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류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7.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014년 1월 1일 	<p>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6., 2016. 6. 2.,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4. 3.>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2020. 4. 3.>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p>	<p>9. 삭제 (2016. 12. 30.) 10. 삭제 (2020. 4. 3.) 11.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0. 4. 3.) 13. 삭제 (2020. 4. 3.) 14.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 제58조제4항·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0. 4. 3.) 17.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 삭제 (2020. 4. 3.)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 (2020. 4. 3.) 2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 삭제 (2020. 4. 3.) 26.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4. 8. 6., 2014. 12. 31., 2016. 3. 29., 2017. 3. 27., 2017. 12. 26., 2018. 11. 27., 2019. 7. 16., 2020. 3. 31.></p> <p>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p>	<p>27. 삭제 <2020. 4. 3.>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합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8.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 제82조의6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방법 및 결합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 제87조제1항·제2항·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과정·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p> <p>② 삭제 <2016. 12. 30.> [전문개정 2014. 4. 30.]</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 <개정 2013. 4. 5.></p> <p>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p>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삭제 <2016. 3. 29.> 3. 삭제 <2016. 3. 29.> 4. 삭제 <2016. 3. 29.> 5.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12. 1. 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증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p> <p>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p> <p>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p> <p>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p> <p>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5. 1. 20., 2015.</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2. 1., 2016. 12.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11. 26.,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제5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p> <p>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p> <p>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p> <p>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p> <p>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p> <p>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p> <p>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p> <p>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p>[본조신설 2019. 4. 2.]</p> <p>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p>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p>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p> <p>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합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p> <p>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p> <p>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p> <p>1. 삭제 <2019. 11. 26.></p> <p>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합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합시정계획을 부실</p>	<p>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4. 2. 5.></p> <p>[전문개정 2008. 12. 31.]</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하계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p> <p>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p> <p>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p> <p>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입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합시정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 및 결합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합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p> <p>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p> <p>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p> <p>1. 삭제 <2017. 11. 28.></p> <p>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4. 삭제 <2012. 2. 1.></p> <p>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p> <p>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p> <p>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 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1. 2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p> <p>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12. 31.]</p> <p>부칙 <제8404호, 2007. 4.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p> <p>제3조(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0383호, 2007. 11.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결합시정·부품결합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합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70호, 2007.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차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p> <p>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결합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합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합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 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② 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증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자의 확인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p> <p>제7조(방지사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사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사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p> <p>제8조(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p> <p>제9조(취합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증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p>	<p>제5조(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증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p> <p>제6조(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7조(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계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화수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계센터에 측정결과가</p>	<p>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일지체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p> <p>제6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7조(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증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p> <p>제8조(취합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요소 주유시설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계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 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p> <p>제10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p> <p>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p> <p>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계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p> <p>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p>	<p>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는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와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p>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p> <p>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p> <p>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p> <p>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p> <p>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p> <p>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p> <p>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p> <p>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9호”로 한다.</p> <p>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p> <p>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p> <p>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p>	<p>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p> <p>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p> <p>제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p> <p>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p> <p>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p>	<p>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p> <p>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p> <p>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p> <p>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p>	<p>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제10조(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p> <p>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조"로 한다.</p> <p>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p> <p>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p> <p>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p> <p>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p> <p>①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p> <p>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③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p> <p>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p> <p>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p> <p>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p> <p>⑪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p> <p>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p> <p>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p> <p>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p>	<p>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p> <p>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p> <p>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p> <p>⑯유동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p> <p>⑰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p> <p>⑱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⑲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p> <p>⑳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p> <p>㉑“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정규칙분</p>	<p>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p> <p>㉒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547호, 2008. 1. 1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면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p>	<p>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호, 2008. 2. 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호, 2008. 3.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p> <p>㉔「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㉖주한미군기지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㉗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p> <p>㉘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p> <p>㉙법을 제82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p>	<p>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p> <p>㉔ 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부칙 <제2068호, 2008. 2.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처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p>	<p>② 부터 ⑩ 까지 생략</p> <p>부칙 <제285호, 2008. 4. 1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기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97호, 2008. 9. 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0호, 2008. 10. 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20호, 2009. 1. 1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개정한다.</p> <p>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p> <p>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p> <p>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p> <p>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p> <p>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p> <p>㉔환경개선훈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p> <p>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p> <p>㉔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실”로 한다.</p> <p>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p> <p>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④ 부터 ⑨ 까지 생략</p> <p>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p> <p>⑧ 부터 ⑫ 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1025호, 2008. 9.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p> <p>⑪ 부터 ⑮ 까지 생략</p> <p>부칙 <제21229호, 2008. 12.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7호</p>	<p>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p> <p>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p> <p>부칙 <제322호, 2009. 2.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36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p> <p>㉓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241호, 2008. 12. 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325호, 2009. 2. 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86호, 2009. 6. 30.></p> <p>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90호, 2009. 6. 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42호, 2009. 7. 1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58호, 2010. 1. 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m)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⑫부터 (5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8956호, 2008. 3. 2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p>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p> <p>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p>	<p>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367호, 2010. 4.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p> <p>⑧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391호, 2010.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p> <p>③ 부터 ⑥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p> <p>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p> <p>④ 부터 <9> 까지 생략</p> <p>제10조 생략</p> <p>부칙 <제9311호, 2008.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축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축매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p>	<p>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1626호, 2009. 7. 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075호, 2010. 3.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p> <p><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 <p><56> 부터 <187> 까지 생략</p> <p>부칙 <제22100호, 2010. 3. 26.></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8호,</p>	<p>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4407호, 2011. 3. 3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18호, 2011. 8. 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34호, 2011. 12. 2.></p> <p>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0호, 2011.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4호, 2012. 1. 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49호, 2012. 2. 3.></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제작자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자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p> <p>부칙 <제9695호, 2009. 5. 2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770호,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9931호,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6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3항제6호, 제6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601호, 2010. 12.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23792호, 2012. 5. 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0호, 2012. 6.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63호, 2012. 7. 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83호, 2012. 10. 26.></p> <p>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92호, 2012.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p> <p>부칙 <제10615호,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 <제10893호,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p>	<p>자동차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344호, 2013. 1.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9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제1항제11호,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제66조의3, 제67조, 별표 10의 2, 별표 13 및 별표 15(제2호가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는”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은”으로 보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며, 같은</p>	<p>[본조신설 2015.7.21.]</p> <p>부칙 <제493호, 2012.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00호, 2013. 2.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한다.</p> <p>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부칙 <제503호, 2013. 3. 23.> (환경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p> <p>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p> <p>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p> <p>⑩부터 ⑬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11256호, 2012. 2. 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제3항제3호의2·제3호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p> <p>제3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p>	<p>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고, 별표 1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의2”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보며, 같은 호 퍼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74조제4항”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74조제3항”으로 본다.</p> <p>부칙 <제24451호, 2013. 3.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p> <p>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p>	<p>부장관”으로 한다.</p> <p>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p> <p>③부터 ⑬까지 생략</p> <p>부칙 <제506호, 2013. 5. 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p> <p>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연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p> <p>부칙 <제544호, 2014. 2. 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p> <p>제4조(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p> <p>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p> <p>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p> <p>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p> <p>부칙 〈제11445호, 2012. 5. 2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p>	<p>“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p> <p>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⑥부터 ⑧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5144호, 2014. 2. 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2호·제3호,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532호, 2014. 8. 6.〉</p>	<p>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자동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0조를 삭제한다.</p> <p>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p> <p>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p> <p>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p> <p><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p> <p>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p> <p><498>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1750호, 2013. 4. 5.></p> <p>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p> <p><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한다.</p> <p><324>부터 <418>까지 생략</p> <p>부칙 <제25950호, 2014. 12.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229호, 2015. 5. 6.></p> <p>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419호, 2015. 7. 20.></p> <p>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p>	<p>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p> <p>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0호, 2014. 6. 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1호, 2014. 12. 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재료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83호, 2014. 12. 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907호, 2013. 7. 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p>	<p>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6705호, 2015. 12. 1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차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p> <p>부칙 <제27062호, 2016. 3. 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⑤부터 ⑧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칙 <제585호, 2014.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비교란 제8호·제9호 및 별표 17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발생한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대해서 적용한다.</p> <p>부칙 <제608호, 2015. 7. 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교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㉔부터 (71)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p> <p>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㉕부터 <126>까지 생략</p> <p>제2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34호, 2015. 1. 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 도로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 도로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의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p>	<p>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200호, 2016. 5.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결합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합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299호, 2016. 6. 30.> (행정규제 정비 위한 개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392호, 2016. 7. 26.></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802호, 2017. 1. 24.></p>	<p>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 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6호, 2015. 12. 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8호, 2015. 12. 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29호, 2015. 12. 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32호, 2015.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실적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45호, 2016. 3. 29.></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산체계”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39호, 2015. 1. 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4호, 2016. 6. 2.></p> <p>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1호, 2016. 7. 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71호, 2016. 7. 27.></p> <p>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제1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부칙 <제13528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7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부터 <388>까지 생략</p> <p>부칙 <제28243호, 2017. 8. 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00호, 2017. 12. 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①까지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p> <p>부칙 <제29313호, 2018. 11. 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45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별표 5·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p>	<p>부칙 <제689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713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에 부착되어 출고된 부품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p> <p>부칙 <제714호, 2017. 10. 18.></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p> <p>⑬부터 (65)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4487호, 2016. 12.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p> <p>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p> <p>⑳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제15096호, 2017. 11. 28.)</p>	<p>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p> <p>제3조(방지사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の特례) ① 시·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사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사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사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사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사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사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p> <p>제4조(방지사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24호, 2017. 12. 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727호, 2017. 12. 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p> <p>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p> <p>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제직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p> <p>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266호, 2019. 1. 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6항, 제38조의2제3항·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p>	<p>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차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p> <p>②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차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514호, 2019. 2.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시행령, 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9호, 2018. 3. 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9호, 2018. 6. 28.></p> <p>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3호, 2018. 12. 31.></p> <p>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9호, 2019. 2.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칙 〈제16305호, 2019.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p> <p>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p>	<p>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② 생략</p> <p>부칙 〈제29518호, 2019. 2.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p> <p>⑨부터 ⑲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29988호, 2019. 7. 1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p>	<p>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부칙 〈제806호, 2019. 5. 2.〉</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14호, 2019. 6. 2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17호, 2019. 7. 16.〉</p> <p>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사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37호, 2019. 12. 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부칙 <제16306호, 2019. 4. 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인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p> <p>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p>	<p>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감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30589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30707호, 2020. 5. 26.></p> <p>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9호, 2020. 4. 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p> <p>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866호, 2020. 5.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p> <p>부칙 〈제16604호, 2019. 11.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⑧부터 〈102〉까지 생략</p>		<p>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우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우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99호, 2020. 12. 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7797호, 2020. 12. 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3호·제14호·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p> <p>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p>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p>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p> <p>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p> <p>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6항"으로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2961
[별표 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	2961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2962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2963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2963
[별표 3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2968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2969
[별표 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2969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2970
[별표 6]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2970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2971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2971

[별표 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2972
[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2973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2974
[별표 10의2] 저황유류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2975
[별표 11] 삭제 <2013.1.31.>	2976
[별표 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2976
[별표 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2977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2980
[별표 12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2980
[별표 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2981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2983
[별표 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2983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984

[별표 1] <개정 2020. 3. 3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예비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 나. 대기질 수집·분석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0TB 이상)
 - 다.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버(계산노드 16코어, 저장용량 50TB 이상)
 - 라. 대기질 예보 지원 시스템(측정 및 모델 결과표출 모듈 탑재)
 - 마. 그 밖에 영상회의 장비, 멀티스크린 등 대기질 분석·예보를 위한 시설
2.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
 - 2) 환경공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대기과학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대기질 예보 분야(기상, 대기측정, 배출량 또는 대기모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 기사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 관련 분야(대기환경,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화공, 화학분석, 대기환경 또는 기상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대기 관련 분야(대기환경, 화학 또는 기상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공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또는 대기과학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의2] <개정 2020. 3. 3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7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통합관리센터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1의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5.7.20.>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3] <개정 2019. 7.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나. 석유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 가열시설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촉매 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2963

부차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가) 인산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인광석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마.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바.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화학비료 제조시설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부차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사. 의약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자. 화학섬유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다.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 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파.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하.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수 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소결로(燒結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 한다)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러.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3) 전로, 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마.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2) 발전용 내연기관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바.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먼지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사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사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사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중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 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사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사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사설이 없는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사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 다만,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사설에 한한다.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고: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류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류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류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류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7. 1. 2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제19조의3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시설 및 장비	<p>가. 실험실을 갖추는 것</p> <p>나. 다음의 장비를 각각 갖추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다음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산화황 나) 질소산화물 다) 일산화탄소 라) 산소 2) 다음의 항목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먼지 나) 염화수소 다) 암모니아 라) 불화수소 3) 배출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유속 또는 유량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2. 기술인력	<p>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는 것</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기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구분	기준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2)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기계가공조립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2)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위 표 제1호나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또는 같은 목 3)의 유속·유량 및 온도 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위 표 제1호나목1)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의 항목 및 같은 목 3)의 유속·유량 및 온도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위 표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 제1호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공동사용계약 또는 인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인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위 표 제2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으로 한다.
4.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6. 위 표 제2호나목4) 및 다목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금액: 원)

구분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특정대기유해물질	불소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시안화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별표 5] <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1. 1.]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일일 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 3 항 관련)

1.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일반오염물질	황산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64÷22.4
	먼지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질소산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46÷22.4
	암모니아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17÷22.4
특정대기유해물질	황화수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34÷22.4
	이황화탄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76÷22.4
	불소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19÷22.4
	염화수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36.5÷22.4
	시안화수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 ⁻⁶ ×27÷22.4

비고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표준상태(0℃, 1기압을 말한다)에서의 세계곱미터당 밀리그램(mg/S m³)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비고

-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계곱미터(m³/h)로 한다.
-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별표 5의2] <신설 2010.12.31>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

(제25조제5항 관련)

초과배출량공제분 = (배출허용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

비고

1.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공제분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08.12.31>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비고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1.5
II 지역	0.5
III 지역	1.0

비고 : I, II, III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4 비교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8] <개정 2020. 3. 31.>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65	0.8	0.95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35	0.5	0.65	0.8	0.95

3)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비고

-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frac{\text{배출농도}}{\text{배출허용기준농도}} \times 100$
-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별표 9] <개정 2018. 12. 31.>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frac{\text{일일배출량의 합계}}{\text{자가측정횟수}}$$

2)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frac{\text{1)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 + \text{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1 + \text{검사횟수}}$$

나.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배출허용기준농도} - \text{일일평균배출농도}) \times \text{초과배출기간} \times \text{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 비고 :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5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 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2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별표 9의2] <개정 2019. 7. 16.>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분 류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가. 제철업 나. 제강업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능케 하는 공정)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다.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라.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마.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사.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아.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가. 축전기 제조업 나.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 강선 건조업 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분 류	업 종
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험물품 보관업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나.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가.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만,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수상기용 전자관 2) 산업용 및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3) 전자접속카드(인터페이스카드) 4) 인쇄회로사진원판(포토마스크)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라.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비고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제7호 및 제8호는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0] <개정 2018. 1. 16.>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중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중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중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중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중사업장(1중사업장부터 4중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고 : 1. 4중사업장과 5중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1. 1중사업장과 2중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중사업장과 5중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10의2] <개정 2019. 7. 2.>

저항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항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우(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우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전 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원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 남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철곡군
경 남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 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 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 북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 제천시
충 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전 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 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경 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경 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비고

1.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2.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는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공급·사용 지역은 나목을 준용한다. 라.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비고: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황 함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 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 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 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 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 환경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황 함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가.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 삭제 <2013.1.31>

[별표 11의2] <신설 2008.12.31>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의3] <개정 2019. 7. 2.>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만, 지역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나목 단서에 따른 승인 기준, 절차 및 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2톤 이상 ·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평택시·오산시·용인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부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구권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대상지역		구분	전용면적	사용연료
수도권	서울특별시	-	· 82.6㎡ 이상 · 40.0㎡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기존	· 82.6㎡ 이상 · 59.5㎡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수도권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신규	·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상지역	구분	전용면적	사용연료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기존	·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부산권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기존	· 59.5㎡ 이상
		신규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기존	· 59.5㎡ 이상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대구권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대구광역시	기존	· 59.5㎡ 이상
		신규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구미시, 포항시	기존	· 59.5㎡ 이상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전남권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기존	·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북권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기존	·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전권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기존	·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신규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비고 : 1.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지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2.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라. 시·도지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나 B-C유(황산화물계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비고: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1996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검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 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검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검용버너의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7. 12. 26.>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2조 관련)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종류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1.0	1.0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0.3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별표 12의2] <신설 2020. 3. 31.>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 관련)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 4,500대를 말한다.

비고

1. 판매수량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4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수량을 말한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수량이 4,500대 미만인 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13] <개정 2019. 7. 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제56조 관련)

1. 정비·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휘발유·가스 분야	경유 분야
1) 리프트 또는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1조 이상	○	○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
4)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	
5) 교정용 표준가스 5조(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이상	○	
6)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
7) 그 밖에 정비·점검에 필요한 공구	○	○

비 고

- 배출가스 측정기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 분야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정한다.
- 휘발유·가스 분야와 경유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자,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자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가) 1)과 2) 중에서 2명 이상 나) 1)과 2) 중에서 1명 이상과 3)에서 1명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확인검사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구 분	시설 및 장비
정밀검사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 기기 각 1조 이상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교정용 표준가스(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엔진회전 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검사 장면 촬영용 카메라 매연 포집시설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 분	시설 및 장비
정밀검사 지역 외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구 분	자 격	확보기준
전국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비 고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정밀검사 지역: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정밀검사 지역 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지역 내 전문정비사업자의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諸元)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 <개정 2016. 7. 26.>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1. 자동차제작자별 과징금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未達成量)(g/km)에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거래 또는 상환한 양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g/km)]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량} = (\text{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text{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times \text{판매 대수(대)}$$

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말한다.

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다. "판매 대수"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자별 해당 연도 판매 대수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연도	과징금 요율[원/(g/km)]
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00원
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00원
다. 2020년 이후	50,000원

[별표 14의2] <신설 2018. 11. 27.>

냉매회수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가. 냉매회수기기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 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나. 냉매회수용기(부속품 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다. 누출감지기	
라. 계량장치	
마. 운반차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바. 보관시설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사. 그 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장비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 비 고
1.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 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별표 15] <개정 2020.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의2	60	80	100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200	200	20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200	200	200
마.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의2	200	200	200
사.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100	200	300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2호	60	80	100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6호	120	160	200
타.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60	80	100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7호	60	80	100
하. 법 제44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8호	200	200	200
거.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2	500	500	500
너.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2	100	100	100
더.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의3	100	100	100
러.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9호	100	150	200
머.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3호	300	300	300
버.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0호	100	150	200
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4호	50	100	300
어.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3	200	300	500
저.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94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4항제5호	5	5	5
커.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1호의4	300	400	500
터.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1호	100	150	200
퍼.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받기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5항	2		1
허.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60	80	100
고.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의2	60	80	100
노.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2호	100	150	200
도.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3호	100	150	200
모.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4호	100	150	200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1항제2호	200	300	(3차) 400 (4차 이상) 500
소.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100	100	100
오.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2	60	80	100
조. 법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5호	100	150	200
초. 법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6호	100	150	200
코. 법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의3	60	80	100
토.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포.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60	80	100

비고: 위 표 퍼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2990
[별표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2992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2993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2994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3014
[별표 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3015
[별표 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3018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3019
[별표 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3031
[별표 6의4]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3032
[별표 6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	3033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3033
[별표 7의2] 삭제 <2018. 11. 29.>	3034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3034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3074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3075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3076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3077
[별표 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3090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3094
[별표 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3096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3096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3098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3101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와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3101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3105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3110
[별표 17의2] 삭제 <2012.10.26.>	3132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3132
[별표 18의2] 인증·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3143
[별표 18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	3145
[별표 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3145
[별표 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3146
[별표 19의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3147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3149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3150
[별표 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3제2항 관련)	3165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3165
[별표 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	3168
[별표 23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3168

[별표 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3169
[별표 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3170
[별표 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3171
[별표 27] 삭제 <2013.2.1.>	3175
[별표 28] 삭제 <2013.2.1.>	3175
[별표 29] 삭제 <2013.2.1.>	3175
[별표 30] 삭제 <2013.2.1.>	3175
[별표 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3175
[별표 3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3176
[별표 32] 삭제 <2013.2.1.>	3176
[별표 33]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3176
[별표 34]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3179
[별표 34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3179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3182
[별표 35의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3182
[별표 35의3]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	3183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3184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3192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3192

[별표 1] <개정 2017. 1. 26.>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폼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별표 1의2] <신설 2017. 1. 2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36. 암모니아
37. 아세트산비닐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39. 디메틸포름아미드
40. 일산화탄소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2. 망간화합물
43. 구리 및 그 화합물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27. 에틸렌옥사이드
- 28. 디클로로메탄
- 29. 스틸렌
-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1. 1,2-디클로로에탄
- 32. 에틸벤젠
- 33. 트리클로로에틸렌
- 34. 아크릴로니트릴
- 35. 히드라진

[별표 3] <개정 2020. 12. 3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 아)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훈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燃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 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燃焼)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① 반응시설 ② 분리정제시설 ③ 분쇄시설 ④ 성형시설 ⑤ 가열시설 ⑥ 건조시설 ⑦ 저장시설 ⑧ 포장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육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마)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2) 화학섬유 제조 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㉘ 용융·용해시설 ㉙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㉚ 건조시설 ㉛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③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가열·건조시설 ㉘ 선별(選別)시설 ㉙ 혼합시설 ㉚ 용융·용해시설
16) 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전로 ㉘ 정련로 ㉙ 배소로(焙燒爐) ㉚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㉛ 환형로(環形爐) ㉜ 가열로 ㉝ 용융·용해로 ㉞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炭爐)를 포함한다] ㉟ 전해로(電解爐) ㊱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도금시설 ㉘ 탈지시설 ㉙ 산·알칼리 처리시설 ㉚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전로 ㉘ 정련로 ㉙ 용융·용해로 ㉚ 가열로 ㉛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㉜ 전해로 ㉝ 건조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㉓ 도금시설 ㉔ 탈지시설 ㉕ 산·알칼리 처리시설 ㉖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시설(진공 속에서 금속 화합물을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어 다른 물체에 부착시키는 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㉗ 전로 ㉘ 정련로 ㉙ 용융·용해로 ㉚ 가열로 ㉛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㉜ 전해로 ㉝ 건조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㉓ 도금시설 ㉔ 탈지시설 ㉕ 산·알칼리 처리시설 ㉖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120 kW 이상) 다) 120 k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저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kW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120kW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120kW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120kW 이상인 린반연전 발전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약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별표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p>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쇄 및 파쇄시설 ② 건조시설
22) 보일러	<p>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p> <p>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p> <p>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p>
2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p>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p>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p>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p>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m³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p>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p> <p>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m³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p>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 시설	<p>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靛)시설 <p>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p>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p>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27) 기타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디) 크롬 및 그 화합물 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베틀)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 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352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kg	1.00	유연탄	kg	1.34
코크스	kg	1.32	갈탄	kg	0.90
이탄	kg	0.80	목탄	kg	1.42
목재	kg	0.70	유황	kg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kg	2.40
액화 천연가스	Sm ³	1.56	석탄타르	kg	1.88
메탄올	kg	1.08	에탄올	kg	1.44
벤젠	kg	2.02	톨루엔	kg	2.06
수소	Sm ³	0.62	메탄	Sm ³	1.86
에탄	Sm ³	3.36	아세틸렌	Sm ³	2.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석탄가스	Sm ³	0.80
발생로가스	Sm ³	0.2	수성가스	Sm ³	0.54
훈성가스	Sm ³	0.60	도시가스	Sm ³	1.42
전기	kW	0.17			

다. 삭제 <2019. 5. 2.>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증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 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 사)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다림질(덴터)시설 (2)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기모(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시설 (2)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5)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 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7)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反應)시설 (2) 흡수(吸收)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濃縮)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燒成)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回收)시설 (6) 연소(燃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 제거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의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6) 연소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9)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촉매재생시설 (7) 황산화물제거시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 (2) 분쇄시설 (3) 가스화시설 (4) 제진시설 (5)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포함한다) (6)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6)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7) 촉매재생시설 (8) 탈황시설 다) 연산제조시설 및 폐연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1) 반응시설 (2) 분리정제시설 (3) 분쇄시설 (4) 성형시설 (5)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6) 건조시설 (7) 저장시설 (8) 포장시설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3)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4)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5) 그 밖의 화학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16) 탄화시설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목장업의 숯가마·빚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건조시설 (4) 회수시설 (5)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蘇鍊)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4) 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플라스틱물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소련시설 (2) 분리시설 (3)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21)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조시설 (5)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2)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4) 용융·용해시설 (5) 냉각시설 (6)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라) 건조시설 (마)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3)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가열·건조시설 (나) 선별(選別)시설 (다) 혼합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22) 1차 철강 제조 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鎔銹爐)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다) 배소로(焙燒爐) (라)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環形爐)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炭爐)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電解爐)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선로 또는 제선로 (나) 용융·용광로 및 관련 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마) 환형로 (바)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사) 용융·용해로 (아)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자) 전해로 (차)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저장시설 (2) 혼합시설 (3)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4)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5) 주물사 재생시설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8) 반도체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다)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또는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라)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설비용량이 120킬로와트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라) 가), 나) 및 다)의 부대시설(해당 시설의 공정에 일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분쇄시설(별규시설을 포함한다) (2) 파쇄시설 (3) 용융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p>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p> <p>(1) 분쇄 및 파쇄시설 (2) 건조시설</p>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p>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p>
33)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p>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 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 (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파쇄·분쇄시설은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선별시설 (2) 건조·가열시설</p>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p>(3) 파쇄·분쇄시설 (4)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p>
34)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p>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마시설 (2) 제재시설 (3) 제분시설 (4) 선별시설 (5) 파쇄·분쇄시설 (6) 탈사(脫砂)시설 (7)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2)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력이 52.5킬로와트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2) 유·무기산 저장시설</p>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2) 훈증시설 (3) 산·알칼리 처리시설 (4) 소성시설 (5) 그 밖의 로(爐)
37) 그 밖의 시설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1. 위 표의 1)부터 37)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계수
무연탄	kg	1.00	유연탄	kg	1.34
코크스	kg	1.32	갈탄	kg	0.90
이탄	kg	0.80	목탄	kg	1.42
목재	kg	0.70	유황	kg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kg	2.40
액화 천연가스	Sm³	1.56	석탄타르	kg	1.88
메탄올	kg	1.08	에탄올	kg	1.44
벤젠	kg	2.02	톨루엔	kg	2.06
수소	Sm³	0.62	메탄	Sm³	1.86
에탄	Sm³	3.36	아세틸렌	Sm³	2.80
일산화탄소	Sm³	0.62	석탄가스	Sm³	0.80
발생로가스	Sm³	0.2	수성가스	Sm³	0.54
훈성가스	Sm³	0.60	도시가스	Sm³	1.42
전기	kW	0.17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안착·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 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 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 다. 대분류에 따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라.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 마. 소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바. 소분류에 따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사. 소분류에 따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아. 세분류에 따른 발전업
- 사.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다.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1.8.19>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판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 동 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량자동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륜자동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 동 차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다 목 적 자 동 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중 형 자 동 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종 류	정 의	규 모
대 형 자 동 차	많은 사람이나 많은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 륜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 동 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용3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승용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승용4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화 물 자 동 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화물2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화물3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이 륜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 동 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8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인 이상 15명 이하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화 물 자 동 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2톤 이상
이 료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 중량이 0.5톤 미만	
건 설 기 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마.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 자 동 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 용 자 동 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 물 자 동 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 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 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이 료 자 동 차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종류	정의	규모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시합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비고

- 가목의 승용자동차 및 나목의 다목적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합차(차량의 너비가 2,000mm미만이고 차량의 높이가 1,800mm 미만인 승합차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 가목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를 포함한다.
- 가목의 중형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나목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와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 다목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바퀴는 제외한다)는 모페드형(원동기를 장착한 소형 이륜차의 통칭(스쿠터형을 포함한다)만 이륜자동차에 포함한다).
-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목 및 라목에서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 별표 17 제1호마목 비교의 제6호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비교의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 별표 17 제1호바목 비교의 제18호 및 같은 표 제2호바목 비교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라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 마목 및 바목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1회 충전 주행거리
제1종	80km 미만
제2종	80km 이상 160km 미만
제3종	160km 이상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종류

가. 건설기계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베티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트럼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쇠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축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나. 농업기계류의 종류

제작일자	종 류	규 모
2013년 2월 2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2013년 7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콤바인, 트랙터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별표 6] <개정 2019. 12. 30.>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윤활성 향상제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별표 6의2] <신설 2020. 4. 3.>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1. 2005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제1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제2종	가사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3, 화물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0.4 g/kWh 이하	2.63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승용3, 화물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제3종	휘발유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승용1, 승용2, 화물1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3, 화물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4.0 g/kWh 이하	3.5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경유자동차	경자동차	0.50 g/km 이하	0.25 g/km 이하	0.30 g/km 이하	-	-	0.02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화물1	가	0.50 g/km 이하	0.25 g/km 이하	0.30 g/km 이하	-	-		0.025 g/km 이하
			승용2	가	0.63 g/km 이하	0.33 g/km 이하	0.39 g/km 이하	-		-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가스자동차	승용3, 화물2	나	0.95 g/km 이하	0.75 g/km 이하	0.08 g/km 이하	-	-	0.02 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3, 화물2	0.95 g/km 이하	0.78 g/km 이하	0.08 g/km 이하	-	-	0.02 g/km 이하	
		승용4, 화물3	2.1 g/kWh 이하	5.0 g/kWh 이하	0.66 g/kWh 이하	-	-	0.02 g/kWh 이하	
	승용1	가	2.11 g/km 이하	0.12 g/km 이하	0.047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나	2.61 g/km 이하	0.19 g/km 이하	0.056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경자동차, 화물1	가	2.11 g/km 이하	0.13 g/km 이하	0.078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2	가	2.11 g/km 이하	0.13 g/km 이하	0.078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나	2.34 g/km 이하	0.19 g/km 이하	0.097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3, 화물2	가	2.73 g/km 이하	0.22 g/km 이하	0.10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가	0.4 g/kWh 이하	3.0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비고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나. 제2종 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승용1·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각각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라 한다)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내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에 따른 결합확인검사(이하 "결합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12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 휘발유자동차 승용1·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라. 경유자동차 승용2의 가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마. 휘발유자동차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바.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비(非)메탄계탄화수소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메탄을 포함하는 총탄화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사.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제1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제2종	가스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3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4 g/kWh 이하	2.0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	-	-	ND-13 모드
하이브리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3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CVS-75모드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제3종	가스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2.0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경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	-	0.01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305(RW) ≤ 1,760kg	0.63 g/km 이하	0.17 g/km 이하	0.23 g/km 이하	-	-	0.01 g/km 이하	
	RW) 1,760kg			0.74 g/km 이하	0.27 g/km 이하	0.34 g/km 이하	-	-	0.01 g/km 이하		
	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3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CVS-75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2.0 g/kWh 이하	0.55 g/kWh 이하	0g/1주행	-	-	-	ETC 모드
		경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	-	0.01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305(RW) ≤ 1,760kg	0.63 g/km 이하	0.17 g/km 이하	0.23 g/km 이하	-	-	0.01 g/km 이하	
				RW) 1,760kg	0.74 g/km 이하	0.39 g/km 이하	0.46 g/km 이하	-	-	0.01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3.5 g/kWh 이하	0.46 g/kWh 이하	-	-	0.01 g/kWh 이하	-	ND-13 모드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1.06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CVS-75모드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1.31 g/km 이하	0.033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0.4 g/kWh 이하	2.63 g/kWh 이하	0.2 g/kWh 이하	0g/1주행	-	-

비고

-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100킬로그램을 더한 수치로 한다.
-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자동차는 시험중량(RW) ≤ 1,305킬로그램(kg) 기준에 따른다.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의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 승용·화물과 중형 승용·화물
 - 2006년 9월 30일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화물과 초대형 승용·화물
- 마.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제3종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을 제외한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제3종 가스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
- 바.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 사.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 아.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 자.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제3종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 차.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용도로 등록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3. 2009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제 1 종	모든 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제 2 종	휘발유·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경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0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RW ≤ 1,305kg 0.50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0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제 3 종	휘발유·가스 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1.305(RW) ≤ 1,760kg 0.63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RW) 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하이브리드	휘발유·가스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제 1 종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8g /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RW ≤ 1,305kg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1,305(RW) ≤ 1,760kg	0.63 g/km 이하	0.235 g/km 이하	0.29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RW) 1,760kg	0.74 g/km 이하	0.28 g/km 이하	0.3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가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나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제 2 종	휘발유·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가	1.06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2 g/테스트 이하	-	CVS-75 모드	
			나	1.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g/테스트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가	4.0 g/kWh 이하	1.6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RW ≤ 1,305kg	0.50 g/km 이하	0.18 g/km 이하	0.23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승용, 중형 화물	1,305(RW ≤ 1,760kg)	0.63 g/km 이하	0.235 g/km 이하	0.29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RW)1760kg	0.74 g/km 이하	0.28 g/km 이하	0.35 g/km 이하	0g/1주행	-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ND-13 모드
		4.0 g/kWh 이하	1.2 g/kWh 이하	0.36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ETC 모드

비고

- 가.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 나. 시험중량은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 다. 제3종 소형승용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 경유자동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은 차량을 구동·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 마.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 1)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 가) 경자동차
 - 나) 소형승용(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시험중량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 중형 승용·화물
- 바.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 1)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 승용차
 - 2)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 중형 승용·화물
- 사. 제2호의 기준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은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아.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 자. 제3종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로 측정하되,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 차.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THC로 측정하되,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NMHC로 측정한다.
- 카.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와 하이브리드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 타.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가란은 배출가스 보정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내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 보정기간 5년 또는 80,000km 이후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 파.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환산비율이 추가하여 각각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 분	1등급 일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일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km 이하	140g/km 초과 164g/km 이하
가스 자동차	105g/km 이하	105g/km 초과 124g/km 이하
경유 자동차	161g/km 이하	161g/km 초과 189g/km 이하
환산비율	0.2	0.1

- 하.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 휘발유·가스자동차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0.625 g/km이하	0.01875 g/km이하	0.0125 g/km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 거.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서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5g/km 이하로 한다.
 - 1)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 2) 제3종 경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 너. 휘발유·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더. 경유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2012년 7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

비고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 해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 수소 (배기관 가스)	블로 바이 가스	증발 가스	입자상 물질	암모 니아	메탄	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	0.004 g/km 이하	-	-	CVS- 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	-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또는 2g/테스트 이하	0.004 g/km 이하	-	-	CVS- 75 모드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	-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는 위 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1.2g/테스트 이하)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증발가스 기준은 2g/테스트 이하로 한다.
-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에서 기술된 직접분사 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및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측정 방법
제3종 경자동차, 제3종 소형 승용·화물, 제3종 중형 승용·화물	0.625g/km 이하	0.01875g/km 이하	0.0125g/km 이하	CVS-75 모드

-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교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다. 경유자동차

저공 해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이 가스	입자개수	암모 니아	측정 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ECE-1 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RW≤ 1,305kg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6.0×10 ¹¹ #/km 이하	-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이 가스	입자개수	암모 니아	측정 방법
	승용· 화물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RW) 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탄화수소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10 ppm 이하	WHTC 모드
			1.5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탄화수소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	8.0×10 ¹¹ #/kWh 이하	10 ppm 이하	WHS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소형 화물, 중형승 용·화물	RW≤ 1,305kg	0.5 g/km 이하	0.13 g/km 이하	0.1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ECE- 15 및 EUDC 모드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185 g/km 이하	0.24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RW) 1,760kg	0.74 g/km 이하	0.22 g/km 이하	0.29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h 이하	1.20 g/kWh 이하	탄화수소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10 ppm 이하
			1.50 g/kWh 이하	1.20 g/kWh 이하	탄화수소 0.30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주행	8.0×10 ¹¹ #/kWh 이하	10 ppm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004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	WHTC 모드	
	경유	경자동차, 소형승용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 중형승용· 화물	RW≤1,305kg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9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RW)1,760kg	0.74 g/km 이하	0.125 g/km 이하	0.2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 g/kWh 이하	1.2 g/kWh 이하	탄화수소 0.3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1.5 g/kWh 이하	1.2 g/kWh 이하	탄화수소 0.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ESC 모드 또는 WHSC 모드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차종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별 기준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3.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 및 비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5. 2014년 1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

비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따른다.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	-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4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	10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에서 기술된 직접분사식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4.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3종에 해당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측정방법
0.625g/km 이하	0.01875g/km 이하	0.0125g/km 이하	CVS-75 모드

다. 경유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블로바이가스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제 2 종
	소형 화물, 중형	RW≤1,305kg	0.5 g/km 이하	0.04 g/km 이하	0.08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주행	6.0×10 ¹¹ #/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 이가스	입자개수	암모 니아	측정 방법
		화물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053 g/km 이하	0.09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RW>1,760kg	0.74 g/km 이하	0.063 g/km 이하	0.108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0 g/kW h 이하	0.23 g/kW h 이하	탄화 수소 0.08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10 ppm 이하	WHT C 모드
				1.50 g/kW h 이하	0.20 g/kW h 이하	탄화 수소 0.065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8.0×10 ¹¹ #/km 이하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		0.50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ECE- 15 및 EUD 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화물	RW≤1,305kg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1,305(RW ≤1,760kg	0.63 g/km 이하	0.079 g/km 이하	0.146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RW>1,760kg	0.74 g/km 이하	0.094 g/km 이하	0.161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블로바 이가스	입자개수	암모 니아	측정 방법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4.00 g/kW h 이하	0.35 g/kW h 이하	탄화 수소 0.12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6.0×10 ¹¹ #/km 이하	10 ppm 이하
				1.50 g/kW h 이하	0.3 g/kW h 이하	탄화 수소 0.097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g/1 주행	8.0×10 ¹¹ #/km 이하	10 ppm 이하

비고

-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 경자동차, 소형·중형 승용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중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중형 화물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 제4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 해자 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 물질	측정 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4 g/km 이하	CVS-75 모드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	WHTC 모드
경유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5 g/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RW≤1,305kg	0.5 g/km 이하	0.06 g/km 이하	0.13 g/km 이하	0.004 5g/km 이하	
		1,305(RW≤1,760kg	0.63 g/km 이하	0.079 g/km 이하	0.14 6g/km 이하	0.004 5g/km 이하	
	RW)1,760kg	0.74 g/km 이하	0.094 g/km 이하	0.161 g/km 이하	0.0045 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2 g/kWh 이하	탄화수소 0.01 g/kWh 이하	WHTC 모드	
		1.5 g/kWh 이하	0.3 g/kWh 이하	0.097 g/kWh 이하	탄화수소 0.01 g/kWh 이하	WHS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및 그 외의 증발가스·입자개수·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가스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위 나목의 휘발유·가스 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경유 사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위 다목의 경유자동차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나. 휘발유·가스·경유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23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합확인 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경유자동차의 경우 메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제5호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7. 2019년 7월 1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나.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 2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0.35g / 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23 g/kWh 이하	0.05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제 3 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g/km 이하		0g/1주행	0.35g / 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및 결합확인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며, 가스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입자상물질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나목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2016년 12월 1일 당시 인증을 신청한 하이브리드자동차

8. 2020년 4월 3일 이후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제 2 종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002 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01 g/kWh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차종별 적용시기, 그 밖에 암모니아·메탄 등의 배출허용기준(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다. 휘발유·가스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메탄	측정방법
제3종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중형 승용·화물	0.6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 g/km 이하	-	-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35 g/kWh 이하	0.10 g/kWh 이하	0g/1주행	-	0.01 g/kWh 이하	10 ppm 이하	0.5 g/kWh 이하	WHTC 모드

비고

1. 차종 분류, 시험중량, 탄화수소 측정방법, US06 모드와 SC03 모드 배출허용기준 및 결합확인 검사 배출허용기준 등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 및 별표 17에 따른 해당 연도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2. 증발가스 기준에 대해서는 휘발유자동차와 가스자동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5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가스자동차의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소형승용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별표 6의3] <신설 2020. 4.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비고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배기관에서의 암모니아(NH3) 배출허용기준은 10ppm이하로 한다.

2.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3년 또는 8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충기간	측정방법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6의4] <개정 2020. 4. 3.>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공회전제한장치는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각 성능기준 및 주요기능 이상이여야 한다.

성능기준	주요기능
가.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	- 엔진 정지를 위한 냉각수 온도 설정 기능이 필요
나.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저속 운전 상황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 엔진 정지를 위한 차량 속도 설정 기능이 필요
다.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다만,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설정 값 이상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또는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
라.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 공기압 측정 및 설정 기능이 필요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의 제동 및 정지 이후에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엔진이 정지되도록 할 것	- 차량 속도 및 제동 감지 기능과 차량 정지 후 엔진이 정지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
바. 야간에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차량 식별을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	-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전조등은 소등되고,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점등되는 기능이 필요
사. 엔진 재시동 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 장치는 엔진 시동이 완료된 후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 엔진 시동 완료 후 전조등, 에어컨의 순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필요
아.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운전 중 장치의 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자. 공회전제한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정차 시에 경보를 발생하도록 할 것	- 공회전 상태로 5분 경과 후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필요
차. 장치의 재시동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으로 시동모터가 사용된 경우 경보를 발생하도록 할 것	- 시동모터 사용횟수의 저장 및 설정 기능과 시동모터 사용횟수가 설정 값 이상시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이 필요
카. 공회전 정지 시간과 실사용(차량 정지 시간과 공회전 정지 시간의 비율)을 저장하고 표시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과거 6개월간 1일 공회전 정지시간 및 실사용 값을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
타.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200km 이상 실제 도로를 주행하였을 때 정차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 실사용 등 주요 항목의 저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차의 기능이 정상 동작함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별표 6의5] <개정 2020. 4.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납 및 그 화합물
4. 칼슘 및 그 화합물
5. 수은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망간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벤젠
10. 포름알데히드
11. 염화수소
12. 불소화물
13. 시안화물
14. 사염화탄소
15. 클로로포름
16. 1,3-부타디엔
17. 디클로로메탄
18. 스틸렌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0. 1,2-디클로로에탄
21. 에틸벤젠
22. 트리클로로에틸렌
23. 염화비닐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7] <개정 2019. 2. 13.>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7의2] 삭제 <2018. 11. 29.>

[별표 8] <개정 2020. 12. 30.>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 그 밖의 배출시설	20 이하 20 이하 30(12) 이하 30(13) 이하 5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 보일러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0(12) 이하 200(12) 이하 200(12) 이하 50(12) 이하 200(12) 이하 300(15) 이하 200(12) 이하 200(12) 이하 80(1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③ 그 밖의 지역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다) 그 밖의 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70(4) 이하 100(4) 이하 50(4)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20(12) 이하			
	9) 확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00(4) 이하 50(4) 이하 180(4)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 가스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화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황산화물 제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에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구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13) 고행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나) 고택연료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다) 일반 고행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4) 확장로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바) 그 밖의 배출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가스터빈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6) 그 밖의 발전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4) 1차급속 제조시설, 급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배소로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다) 소결로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70(15)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3)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가) 가열시설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10) 고행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행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2)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13)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 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6(4) 이하	
나)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 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시아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2)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5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페놀화합물 (C ₆ H ₅ OH)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5) 그 밖의 배출시설	0.08(12) 이하 0.05(6) 이하 0.05(15) 이하 0.08(13) 이하 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 그 밖의 배출시설	0.25(13) 이하 2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시설 중 중합 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과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과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5 이하 50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6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 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페놀화합물 (C ₆ H ₆ OH)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과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2) 과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 난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황산화물(SO₂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₂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가)(2)(나)①시설과 2)가)(2)(나)②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시설과 2)가)(2)(나)① 시설 중 물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나)(1)(7)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하고,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7)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	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사	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예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4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예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카	삭제 (2019. 5. 2.)	
타	삭제 (2018. 6. 28.)	
파	삭제 (2019. 5. 2.)	
하	2)가)(2)가)①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거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	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₂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준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주)한주	(주)한주의 병거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라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9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예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예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를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로 중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190(15) 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7)가) 해당 시설	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70g/m ³ 이하	50g/m ³ 이하
	2) 5,000대/년 이상	60g/m ³ 이하	45g/m ³ 이하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110g/m ³ 이하	65g/m ³ 이하
	4) 5,000대/년 이상	90g/m ³ 이하	60g/m ³ 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대/년 미만	85g/m ³ 이하
		6) 2,500대/년 이상	75g/m ³ 이하
	차 체	7) 2,500대/년 미만	110g/m ³ 이하
		8) 2,500대/년 이상	90g/m ³ 이하
버스	9) 2,000대/년 미만	250g/m ³ 이하	200g/m ³ 이하
	10) 2,000대/년 이상	225g/m ³ 이하	150g/m ³ 이하
차체부품		225g/m ³ 이하	150g/m ³ 이하

비고

가)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운전석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차체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위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의 g/m³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 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다) "기존시설"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라)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삭제 <2019. 5. 2.>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mg/Sm ³)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가) 소결로		20(1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소결로		10(15)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1) 코크스로		20(7)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나) 연소시설		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3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연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8) 고품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일반 고품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로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2)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나)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0.5(12) 이하 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4)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0.5(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2) 고행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비산먼지 (mg/Sm ³)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01(12) 이하 0.05(12) 이하 0.1(12) 이하
	2)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1(12) 이하 0.0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0.3(12) 이하 0.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4)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2) 고행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 난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 먼지의 5) 및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행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mg/Sm³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5(4)mg/Sm³ 이하를 적용한다.

-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mg/Sm³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6)mg/Sm³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mg/Sm³ 이하를 적용한다.
-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10(6)mg/Sm³ 이하를 적용한다.
-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2019. 5. 2.>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2 이하
	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3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15(12) 이하
일산화탄소 (ppm)	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0(13) 이하
	6)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로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 보일러	20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0(12) 이하		9) 확장로시설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0(15)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4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200(12) 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③ 그 밖의 지역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40(4) 이하 210(4) 이하 80(4) 이하 50(4) 이하 140(4) 이하 210(4) 이하 210(4) 이하 50(4) 이하 140(4)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확장로시설	2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2) 이하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4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9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로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9(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 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4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② 그 밖의 지역	21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6)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25(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 발전시설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6)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15)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사용시설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60(6)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100(6)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마) 기계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鑄鑪)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00(6) 이하 60(4) 이하 15(15) 이하 100(6) 이하 60(4) 이하 10(15) 이하 50(6) 이하 10(4) 이하 120(4) 이하 140 이하 90 이하 45 이하 140(15) 이하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그 밖의 지역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설 황산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 황산화물 제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연소시설	45(15) 이하 180(8) 이하 90 이하 180(4) 이하 120(4) 이하 80(4) 이하 120(4) 이하 120(4) 이하 250(12) 이하 50(12) 이하 50(12) 이하 50(12) 이하 210(4) 이하 80(8) 이하 30(8) 이하 80(7)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12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13) 이하 80(13)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8) 이하 80(8)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13) 이하 35(13)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85(7)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0(12) 이하 35(12) 이하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된 시설 (2)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이하 230(13)이하 150(13)이하 65(13)이하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13) 이하 80(13) 이하 15(13) 이하 35(13) 이하 10(13) 이하 20(13) 이하		14) 고행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일반 고행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20(12) 이하 25(12)이하 70(15)이하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1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 그 밖의 배출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20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7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바) 그 밖의 배출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4)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 발전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가스터빈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5(15)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나) 디젤기관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0(1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6)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5(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15)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5(4) 이하		(6) 그 밖의 발전시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6) 이하		가) 배소로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㉔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㉕ 그 외 가열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75(4) 이하 50(4) 이하 130(4) 이하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70(15) 이하 100(15) 이하 60(15)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115(11) 이하 80(11) 이하		7)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135(13) 이하 250(13) 이하 135(13)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50(4) 이하 130(4)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95 이하 135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3) 이하 200(13) 이하 80(13)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50(4) 이하 130(4) 이하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10)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50(8) 이하
	나) 연소시설	1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35(8) 이하
	11)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15(7) 이하
	12) 고행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60(12) 이하
다) 일반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7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7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90(12)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15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8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4(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황산화물제거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4(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4 이하
	5)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3(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나) 황산 제조시설	5(4) 이하 5(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7)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2) 그 밖의 배출시설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6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0.05(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	0.04(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0.04(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0.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0.2(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나) 과상중합반응시설	40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	7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	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나) 과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다) 유화중합반응시설	70 이하	
라) 공중합반응시설	90 이하	
마)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11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 이하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6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이하
	저장시설	20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스티렌 (ppm)	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이로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8(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8(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식각(蝕刻) 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12) 이하
	9) 확장로시설	5(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 (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1(12) 이하 1(12) 이하 1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2)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2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를 포함한다),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5) 그 밖의 배출시설	0.03(12) 이하 0.02(6) 이하 0.02(15) 이하 0.03(13) 이하 0.05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 그 밖의 배출시설	0.1(12) 이하 0.1(13) 이하 0.3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폴리염화비닐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 나) 과상중합반응시설 다) 유화중합반응시설 라) 공중합반응시설 마) 그 밖의 배출시설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현탁중합반응시설 나) 과상중합반응시설 다) 유화중합반응시설 라) 공중합반응시설 마) 그 밖의 배출시설	15 이하 25 이하 50 이하 90 이하 7 이하 10 이하 20 이하 50 이하 90 이하 5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2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25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	6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스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산소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8), 9)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황산화물(SO₂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₂로서)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2)가)2)나)① 해당 시설과 2)가)2)나)② 해당 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40(4)ppm 이하, 청주지역의 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2)가)① 해당 시설과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8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0(6)ppm 이하, 2021년 1월 1일부터는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라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5(6)ppm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6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3) 해당 시설	역물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9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3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퍼센트를 적용한다.
차	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60(4)ppm이하를 적용한다.
카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_x로서)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1)가) 해당 시설 중 한국난방공사의 수원, 용인, 대구 및 청주지사 액체연료보일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원 및 용인지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지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1)라)1)가) 해당 시설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체연료 보일러, 대구염색공단 및 부산염색공단의 기체연료사용보일러	연간 누계 72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다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2004년 12월 3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	2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2)(가)① 해당 시설 중 울산화학발전소	울산화학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대구 및 청주 열병합발전시설, 무림피앤피	「집단지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중 대구지사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40(4)ppm 이하를 적용하고, 무림피앤피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2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학발전소	영동화학발전소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연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대구 연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1) 부산연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대구연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학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학발전소, 강릉인인화학발전소, 삼척화학발전소 및 고성하이화학발전소	1) 영흥화학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55(6)ppm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학발전소 1호기, 강릉인인화학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학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학발전소 1호기·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다)(1)(가) 해당 시설 중 GS파워 인양열병합발전소	GS파워 인양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다)(6) 해당 시설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1) 포스코 포항제철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 및 11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1호기 및 4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포스코 포항제철소 9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2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 3호기 및 8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6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타	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총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선택적 환원촉매장치)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경우	23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학발전소, 보령화학발전소, 호남화학발전소, 동해화학발전소	1) 삼천포화학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학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학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학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로 중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190(15) 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145(15) 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6가)(2)(가)② 해당 시설 중 (주)현대케미칼	납사개질공정의 가열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70(4)ppm을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30(4)ppm을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을 말하고,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여,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60g/m ³ 이하	45g/m ³ 이하
	2) 5,000대/년 이상	55g/m ³ 이하	40g/m ³ 이하
소형상용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90g/m ³ 이하	55g/m ³ 이하
	4) 5,000대/년 이상	80g/m ³ 이하	50g/m ³ 이하
트럭	5) 2,500대/년 미만	70g/m ³ 이하	55g/m ³ 이하
	6) 2,500대/년 이상	60g/m ³ 이하	45g/m ³ 이하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차 체	7) 2,500대/년 미만	90g/m ³ 이하	65g/m ³ 이하
	8) 2,500대/년 이상	75g/m ³ 이하	60g/m ³ 이하
버스	9) 2,000대/년 미만	215g/m ³ 이하	170g/m ³ 이하
	10) 2,000대/년 이상	195g/m ³ 이하	125g/m ³ 이하
차체부품		195g/m ³ 이하	125g/m ³ 이하

비고.

1.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버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2. 위 표 트럭의 차종란 중 "차체"란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를 말하고, 같은 표 중 "차체부품"이란 비고 제1호의 차종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을 말한다.
3.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m³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4.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2) 기준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9.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0.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저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SK에너지의 저장시설 중 5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4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2) SK종합화학㈜의 저장시설 중 5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3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6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3) GS칼텍스㈜의 저장시설 중 1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4) 에스-오일㈜의 저장시설 중 4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5) 현대오일뱅크㈜의 저장시설 중 2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mg/Sm ³)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5(4) 이하 15(4) 이하 1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발전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15)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15)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4)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6(6)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6) 이하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6)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 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 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결로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6) 이하		10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20(4) 이하		10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10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6) 이하		2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20(4) 이하		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10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20(1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 일터를 포함한다)			20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15)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 로그램)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10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25(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5(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2)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 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15(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25(1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15(7) 이하 15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4) 이하 15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25(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 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4) 이하 15(4) 이하 3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나) 연소시설 다) 황 회수시설 라) 황산 제조시설	25(8) 이하 15(7) 이하 20(4) 이하 15(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30(13) 이하 3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3) 이하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2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연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나) 그 밖의 배출시설	20 이하 3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3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3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30 이하
	18) 고품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품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15(12) 이하
	다) 일반 고품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2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5 이하 25(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30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2) 이하 15(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08(12) 이하 0.15(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2(12) 이하 0.06(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0.4(12) 이하 0.8(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5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5(12) 이하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0.8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15(1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구리화합물 (Cu로서) (mg/Sm ³)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4) 그 밖의 배출시설	0.2(13) 이하 0.4 이하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비산먼지 (mg/Sm ³)	1) 시멘트 제조시설 2)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0.4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벤조a피렌으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0.05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1(12) 이하 0.04(1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08(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1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 일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연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4(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0.8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8(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 일리를 포함한다)	0.15(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벤조a피렌으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0.03 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 먼지의 5) 및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먼지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가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인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및 영동화력발전소	1)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mg/Sm ³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5(6)mg/Sm ³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인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5(6)mg/Sm ³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6)mg/Sm ³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4)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10(6)mg/Sm ³ 이하, 2호기는 5(6)mg/Sm ³ 이하를 적용한다.

5.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기준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2) 기준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6.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도·시·군 지역별 역세대로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2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하 "자동전송배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4) 및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다.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 자동전송배출시설이 제134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

2)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시·도지사에게 통지한 경우

3)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 - \text{표준산소농도}) \div (21 - \text{측정산소농도})$ 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동개시

나) 재가동

다) 가동중지

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가동중지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증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전까지(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 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표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재가동	가동중지	가동개시·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8시간	6시간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2)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원료 투입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나) 촉매 재생시설 (다)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6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소화 버너 소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 분해시설) (나)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① 인산 제조시설	5시간 3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재가동	가동중지	가동개시·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②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③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다) 인광석 소성시설 (라)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마) 가열시설	4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6)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① 질소질비료(요소비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② 복합비료 제조시설 (나)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 회수·재생시설 (다)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라) 가열시설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7)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8)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9)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0)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1)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융·용해시설 또는 소성시설 (나) 가열시설	3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 제조 용융·용해시설 (나) 산처리시설	8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3)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나)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다)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8시간 8시간 5시간	2시간 6시간 3시간	버너 점화 소성로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소성로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나) 석고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8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6)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용융·용해시설	8시간	3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17) 제1차 금속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소결로 (다) 가열로 (라)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熔燒爐) (마) 산처리시설 (바) 주물사 처리시설	2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기준초과 인정시점	
	가동개시·재가동	가동 중지	가동개시·재가동 시	가동중지 시
(18)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나) 가열로 (다) 전로 또는 용융·용해로 (라) 산처리시설 (마) 주물사 처리시설 (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 시설	2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5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원료 투입 중지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가) 발전용 내연기관 (나) 복합화력 형식의 발전시설 (다) 그 외의 발전시설	4시간 5시간 9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점화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연료 투입 중지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폐가스 소각시설 (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마) 폐수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 투입 폐기물 투입 폐가스 투입 폐기물 투입 폐수 투입	폐기물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가스 투입 중지 폐기물 투입 중지 폐수 투입 중지
(21) 공동시설 중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 점화	연료 투입 중지
(2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23)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가) 탈사·탈청시설 (나) 증발시설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원료 투입 버너 점화	원료 투입 중지 버너 소화
(24)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3시간	2시간	버너 점화	버너 소화
(2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비고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을 최초로 가동하는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의 가동을 48시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 나. 가동중지 및 재가동 : 배출시설의 가동을 4시간(발전시설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를 가동중지라 하며, 가동중지 후 다시 가동하는 경우를 재가동이라 한다.
2.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학물 제조시설의 황산화물제거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가동개시·재가동 후 24시간 중 8시간, 가동중지 후 120시간 중 6시간으로 하고,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재가동 후 72시간 중 8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 중 가동개시의 시점이 원료투입부터인 경우 원료투입 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 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발전시설·보일러시설·가열시설 중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료투입 중지 2시간 전 또는 버너소화 2시간 전"으로 한다.
5. 소각시설 중 일괄 투입방식의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시 기준초과 인정시점을 "연소완료 3시간 전"으로 한다.
6.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이 위의 시설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8의2] <개정 2019. 12. 20.>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 ³
납 및 그 화합물	0.05mg/m ³

물질명	기준농도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 ³
비스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 ³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 ³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 ³
플리염화비페닐	1pg/m ³
다이옥신	0.001ng-TEQ(독성 등가치)/m ³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 ³
이황화메틸	0.1ppb
총 VOCs (아닐린,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 ³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농도는 0.00으로 한다.

[별표 9] <개정 2015.7.21.>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1.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0] <개정 2019. 12. 2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료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등유 (황함량 0.001%)	0.05	0.05	17.0S	2.16	2.16	2.16			
등유 (황함량 0.1%)	0.24	0.24	17.0S	2.40	2.40	2.40			14.7 ¹⁾
경유 (황함량 0.1, 0.05%)	0.24	0.24	17.0S	2.40	2.40	2.40			53.4 ²⁾
B-A유	0.84	0.84	5.28	5.99	5.99	5.99			
B-B유	1.20	1.20	14.3S	2.47	2.47	2.47			
B-C유 (황함량 0.3~4.0%)	1.1S+0.39	1.1S+ 0.39	14.3S	6.64	6.64	6.64			
무연탄	5.0A	5.0A	19.5S	5.83	5.83	9.00			
유연탄	5.0A	5.0A	19.0S	4.55	5.55	7.50			
액화천연가스 (LNG)	0.03	0.03	0.01	3.70	3.70	6.04			42.9 ²⁾
액화석유가스 (LPG)	0.07	0.07	0.01	2.18	2.28	2.28			

비고

1. A(회분함량) : 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임
2. S(황함량) : 등유(0.1%), B-A유(1.5%), B-B유(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임
3. 배출계수단위 : 유류(g/ℓ), 석탄(g/kg) 액화천연가스(g/m³), 액화석유가스(g/kg)
4. 환산계수 : 액화천연가스(1kg=1.238m³), 액화석유가스(1kg=1.97ℓ =0.529m³)
5. 주 1) : 가스터빈
주 2) : 내연기관

나.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측에 의한 방법

가.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나. 가목에 따른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별표 10의2] <개정 2020. 4. 3.>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3제2항 관련)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연간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나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구개발시설 다) 상시 진공상태로 가동되어 관리대상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시설 라) 제3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4)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45일 이내에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를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리기간을 다음 공정중지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기록기준	1)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이하 "운영기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내용을 기록해야 하거나 또는 운영기록부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별도의 서식을 정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구 분	시 설 관 리 기 준
	2) 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개요, 조치내용 및 조치 완료 후 점검·확인 사항 등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운영기록부는 환경청장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기준	1) 최초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2) 연간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구분	업 종	업종별 적용물질	공동 적용물질
가. 1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구분	업 종	업종별 적용물질	공동 적용물질	
나. II업종	1) 제철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제강업			
다. III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2) 축전지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구분	업 종	업종별 적용물질	공동 적용물질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 장치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28)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라. IV업종	1) 강선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3.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가. I업종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공정배출 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fluid)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 가공, 표백, 탈지, 중간 저장, 포장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p> <p>(1) 밀폐된 공간(공정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외기(外氣)로 비산배출되지 않도록 포집시설을 통해 전량 포집되어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p> <p>(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가) 2)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한다.</p> <p>(나)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다) 축열식 연소산화방식,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등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 화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5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p> <p>(라) (다)에 따른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다.</p> <p>(마) (다)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치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하면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라) 플라스틱 성형 압출 공정에서 흠(fume)과 압출기, 실린더, 공압출 장치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p> <p>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TOC)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p> <p>(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 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p> <p>(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2) 플레어스택 (배출가스 연소탑)	<p>가) 이 관리기준은 플레어스택의 용량(flare load)이 1.26×10^7 kcal/hr(50 MMBTU/hr)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다)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403\text{kcal}/\text{Sm}^2$ ($270\text{BTU}/\text{Sft}^2$)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196\text{kcal}/\text{Sm}^2$ ($22\text{BTU}/\text{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p> <p>(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p> <p>(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라) 광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월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마) 플레어스택에서 매연이 발생(이하 "비정상 가동"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Ringelmann smoke chart)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2)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p> <p>(3)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분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p>
3) 저장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설계저장용량이 40㎥ 이상이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이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p> <p>(1)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p> <p>(2)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p> <p>(가) 유연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p> <p>(나) 이중 밀봉장치는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상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p> <p>(3) 자동환기구와 림(rim)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4) 자동환기구는 개스킷(누설방지재)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힌 상태여야 한다.</p> <p>(5)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p> <p>(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6)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p>
다)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p>(1)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판식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p> <p>(2)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3)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p> <p>(4)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p> <p>(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p> <p>(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라) 고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육상출하 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육상출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도를 이용하는 육상출하시설은 제외한다.</p> <p>나) 육상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일렌함유 예폭시수지, 초산 등 상온(25℃)에서 점도가 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 이상으로 물질흐름이 정지되는 특성 때문에 하부로 실는 작업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다) 가)의 유체 출하 시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출하과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은 회수하여 공정 중에서 재이용하거나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p>
5) 폐수처리 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p> <p>나) 폐수관로[드레인 라인(drain line)을 포함한다]는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특성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장치의 동인 하에 일정 구간의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다) 중간집수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환기배관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라) 집수조의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을 500ppm(총탄화수소 기준)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집수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p> <p>마) 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6) 비산누출 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접속기), 플랜지(flange),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등의 비산누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 있는 비산누출시설의 경우에는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한다.</p> <p>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확인방법이 규정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비산누출시설은 현장에서 비산누출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따른다.</p> <p>(1)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비산누출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p> <p>(2)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플랜지, 커넥터 등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p> <p>다) 개방식라인</p> <p>개방식라인(비상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긴급 운전정지 시설에 있는 개방식라인은 제외한다)에는 무경, 블라인드 플랜지(blind flange),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보수작업 외에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p> <p>라) 펌프</p> <p>(1) 펌프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buffer fluid)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dual mechanical seal)이나 밀폐형(sealless type)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p> <p>(2)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p> <p>(가) 완충유체 가압방식 이중기계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는 펌프의 실체임버(seal chamber)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해야 한다.</p> <p>(나) 완충유체 비가압방식 이중기계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 내부로 누출된 관리대상물질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closed-loop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3) 비제조구역[공정배출시설이 위치한 제조구역과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도로, 하천 등으로 구분되어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만 설치된 구역(off-site)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설치된 펌프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1) 및 (2)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펌프의 경우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마) 압축기</p> <p>(1) 압축기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왕복압축기, 원심압축기 또는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2) 왕복압축기 또는 원심압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축기 내부 가스가 대기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3)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p> <p>(가) 완충유체 가압방식 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는 압축기의 스템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해야 한다.</p> <p>(나) 완충유체 비가압방식 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 내부로 누출된 관리대상물질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p> <p>바) 압력완화장치</p> <p>(1) 압력완화장치는 누출기준농도 이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다만, 설정 압력 이상으로 관리대상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설정 압력 이상으로 관리대상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최대 5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조치한 후 누출여부를 재확인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3) 공정배출시설 또는 저장시설 등으로 회수되거나 1)나)(2)(가)부터 (다)까지의 시설로 연결된 압력완화장치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사) 검사용 시료채취장치</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1) 검사용 시료채취 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p> <p>(가)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유체가 공정 중으로 회수되는 배관</p> <p>(나)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유체가 폐액 저장시설로 이송되는 배관</p> <p>(다)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유체가 배출가스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배관</p> <p>(2) 시료채취 시 발생하는 관리대상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3) (1)(다)에 따라 관리대상물질을 배출가스 처리시설로 이송시키는 경우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4) 다음 시료채취장치에 대해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가) 발생원 내부 시료채취장치(in-situ sampling systems)</p> <p>(나) 시료채취 과정에서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료채취장치</p> <p>(다) 비제조구역 내 설치된 시료채취장치</p> <p>아)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p> <p>자) 아)에 따른 누출점검은 총탄화수소를 기준으로 하고, 누출기준농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p> <p>(1)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0ppm</p> <p>(2) 2020년 1월 1일부터: 500ppm. 다만, 펌프는 1,000ppm으로 한다.</p> <p>(3) 비제조구역 내의 펌프 및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500ppm</p> <p>차) 자)에 따른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시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조치한 후 누출여부를 재확인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카) 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고온·고압조건, 시설의 붕괴 및 폭발의 위험 등과 같이 누출점검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안전 누출시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2) 파이프 받침대(rack), 공간협소지역, 낙상사고 우려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온재로 밀폐한 시설이나 고소 위험지역에 위치하여 누출점검자가 누출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누출점검 난해시설</p> <p>(3) 라)(1)에 따른 밀폐형 펌프</p> <p>(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확인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비산 누출시설</p> <p>타)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총 개수는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20%를 초과할 수 있다.</p> <p>파)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는 제1호다목에 따른 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p>

나. II업종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비산먼지 배출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분체상 물질을 아적, 신기·내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에는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고, 그 운영 현황을 매주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다) 분체상 원료 야적장(야적면적이 10,00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에서 근접한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기준(ES 01302)에 따라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라)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규제를 따른다.</p>
2) 소결로 및 관련시설	<p>가) 소결로(燒結爐) 주변 지면은 매주 2회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고,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나) 소결로의 소결광 상단지점은 소결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음압(주변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한다. 또한 소결가스 포집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다) 소결로 말단의 배광부는 밀폐하여야 하며 내부의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여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라) 소결로 냉각시설의 상부는 1/3 이상 덮개(후드시설)를 설치하고 개방된 부분에는 살수설비를 설치·운영(동절기는 제외)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한다.</p> <p>마) 소결로 측면으로부터 5m 내외 주변 지점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3) 코크스로 및 관련 시설	<p>가)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1)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2)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가)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2,403\text{kcal}/\text{Sm}^3(270\text{BTU}/\text{Sft}^3)$ 이상, 연소공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196\text{kcal}/\text{Sm}^3(22\text{BTU}/\text{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p> <p>(나) (가)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공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p> <p>(다) (가)와 (나)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p> <p>(3)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월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4)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가)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나)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p> <p>나) 삭제 (2019. 7. 16.)</p> <p>다) 장입구(裝入口)는 점토(粘土) 현탁액(또는 적합한 물질)으로 장입구 주위를 밀봉하여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최소화 한다. 또한 코크스로에 석탄을 장입할 때 장입장치와 장입구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며 코크스로는 내부의 음압을 다음 기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장입 시 배출가스 누출을 최소화한다.</p> <p>(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4mmH₂O</p> <p>(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 (-)25mmH₂O</p> <p>라) 코크스로는 스프링 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밀봉문 주위를 매주 2회 청소한다. 다만, 코크스로의 밀봉문과 문틀의 밀봉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p> <p>마) 라) 본문에 따라 밀봉문 주위를 청소하는 경우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바) 코크스로의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은 배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체 밀봉한다.</p> <p>사) 코크스 탄화실과 연소실 간막이벽의 누출상태를 매주 1회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누출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수리한다.</p> <p>아) 코크스의 인출과정과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인출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p>자) 코크스의 습식냉각탑은 수증기중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최소 30m 이상(다만, 기존에 설치된 습식냉각탑은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며, 타워 상단에 응수 실수장치와 오염물질 저감판(baffle plate)을 설치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차) 코크스로는 운전 시에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불투명도 값은 20%(코크스 인출시의 불투명도는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비산먼지 불투명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4)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p> <p>가)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를 사용한다.</p> <p>나) 출선로에 상부덮개와 집진시설을 설치하며,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을 설치한다.</p> <p>다) 전로와 전기로에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건물 전체에 대한 집진시설(이하 "건옥집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로의 경우 건옥집진시설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라)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은 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힌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를 개방하지 않고 원료를 장입하는 전기로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마) 일관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3)가)에 따른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의 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바) 삭제 (2019. 7. 16.)</p> <p>사) 삭제 (2019. 7. 16.)</p> <p>아) 전로와 전기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 또는 건옥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전한다.</p> <p>자) 삭제 (2017. 1. 26.)</p> <p>차)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불투명도 값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불투명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다. III업종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공정 배출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p> <p>(1) 밀폐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p> <p>(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가)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화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거나 10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p> <p>(다) (나)에 따른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p> <p>(라) (나)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치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하면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라) 플라스틱 성형 압출 공정에서 흡과 압출기, 실린더, 공압출 장치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p> <p>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p> <p>(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 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p> <p>(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p>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2) 저장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설계저장용량이 40㎥ 이상인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p> <p>(1)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p> <p>(2)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p> <p>(가)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상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p> <p>(나) 이중 밀봉장치는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상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지렛대 구조밀봉장치</p> <p>(3) 자동환기구와 립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4)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5)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4)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1)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구조이어야 한다. (2)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4)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체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체표면에 떠 있지 않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폐수 처리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 나) 폐수관로(드레인 라인)를 포함한다는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특성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경청장의 동의에 일정 구간의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중간집수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환기배관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은 500ppm(총탄화수소 기준)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집수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 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마) 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비산 누출시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함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비상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긴급 운전정지 시설에 있는 개방식라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압력완화장치, 커넥트, 플랜지, 공정배수구 등의 비산누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 있는 비산누출시설의 경우에는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확인방법이 규정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비산누출시설은 현장에서 비산누출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따른다.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1)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비산누출시설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p> <p>(2)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플랜지, 커넥트 등 부착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p> <p>다) 개방식라인</p> <p>개방식라인에는 뚜껑, 블라인드 플랜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보수작업 외에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p> <p>라) 펌프</p> <p>(1) 펌프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이나 밀폐형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p> <p>(2)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이중기계봉인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p> <p>(가) 완충유체 가압방식 이중기계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는 펌프의 실제임버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해야 한다.</p> <p>(나) 완충유체 비가압방식 이중기계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 내부로 누출된 관리대상물질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p> <p>(3) 비제조구역 안에 설치된 펌프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1) 및 (2)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펌프의 경우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4) 다음 펌프 중 (1) 및 (2)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봉인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펌프를 측정할 결과 아)의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누출이 확인될 때에는 (1) 및 (2)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p> <p>(가) 2016년 1월 1일 전에 제2호다목1)부터 9)까지, 12) 및 13)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펌프</p> <p>(나) 2018년 1월 1일 전에 제2호다목10), 11) 및 14)부터 28)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펌프</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마) 압축기</p> <p>(1) 압축기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왕복압축기, 원심압축기 또는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 <p>(2) 왕복압축기 또는 원심압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축기 내부 가스가 대기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3)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p> <p>(가) 완충유체 가압방식 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는 압축기의 스테핑 박스 압력보다 항상 높은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장착해야 한다.</p> <p>(나) 완충유체 비가압방식 봉인시설에서 완충유체 내부로 누출된 관리대상물질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다)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p> <p>(4) 다음 압축기 중 (1)부터 (3)까지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봉인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압축기를 측정할 결과 아)의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누출이 확인될 때에는 (1)부터 (3)까지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p> <p>(가) 2016년 1월 1일 전에 제2호다목1)부터 9)까지, 12) 및 13)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압축기</p> <p>(나) 2018년 1월 1일 전에 제2호다목10), 11) 및 14)부터 28)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압축기</p> <p>바) 압력완화장치</p> <p>(1) 압력완화장치는 누출기준농도 이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다만, 설정 압력 이상으로 관리대상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설정 압력 이상으로 관리대상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최대 5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조치한 후 누출여부를 재확인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3) 공정배출시설 또는 저장시설 등으로 회수되거나 1)나)(2)(가)부터 (다)까지의 시설로 연결된 입력원화장치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사)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p> <p>아) 사)에 따른 누출점검은 총탄화수소를 기준으로 하고, 누출기준농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p> <p>(1)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0ppm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0ppm (3) 2021년 1월 1일부터: 500ppm. 다만, 펌프는 1,000ppm으로 한다. (4) 비제조구역 안의 펌프: 500ppm</p> <p>자) 자)에 따른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하는 시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조치한 후 누출여부를 재확인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전체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차) 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고온·고압조건, 시설의 붕괴 및 폭발의 위험 등과 같이 누출점검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안전 누출시설 (2) 파이프 지지대, 공간협소지역, 낙상사고 우려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존재로 밀폐한 시설이나 고소 위험지역에 위치하여 누출점검자가 누출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누출점검 난해시설 (3) 라)(1)에 따른 밀폐형 펌프 (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비산 누출시설</p> <p>카)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총 개수는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30%를 초과할 수 있다.</p> <p>타)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는 제1호다목에 따른 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p>
5) 세정시설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세정시설(탈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나) 세정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6) 용해로	<p>가) 이 관리기준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관리대상물질을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용해로를 대상으로 한다.</p> <p>나)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p> <p>다) 용해로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 또는 건축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전체가 닫힌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한다.</p>

라. IV업종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옥내도장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또는 구성부분품을 옥내에서 도장하는 시설(규모 50,000㎡ 이상)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옥내도장시설에서의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포집 및 방지시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1) 이 기준시행 이전에 설치된 옥내도장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되, 전체 대비 2018년까지 10%, 2019년까지 30%, 2020년까지 60%, 2021년까지 80%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연차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포집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p> <p>(2) 이 기준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옥내도장시설은 2020년까지 100% 설치되어야 한다.</p> <p>다)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하여야 한다.</p> <p>(1) 포집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흡입방식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p> <p>(2) 단위시간 당 포집량은 옥내도장시설 부피의 최소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에서 옥내도장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의 1.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라) 포집된 배출가스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100pp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p> <p>마) 라)에 따른 총탄화수소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p> <p>바) 라)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사) 도장 및 건조 과정 중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옥내도장시설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p> <p>아) 방지시설의 가동 없이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일일 도장작업 내용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p>
2) 야외도장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함유하는 도료를 이용하여 선박 또는 선체블록을 야외에서 도장하는 시설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선박도장 등 야외도장의 경우에도 관리대상물질을 최대한 포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야외도장 시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처리계획 및 실적 있을 경우에는 제1호다목에 따른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p> <p>(1) 고품분 부피비 70% 이상인 도료를 총 도로 사용량의 30wt% 이상 사용(도로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강선 건조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coal tar free epoxy 도로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로 사용</p> <p>(3) 희석제의 사용은 총 도로사용량의 20wt% 이내로 사용</p> <p>라) 삭제 <2017. 1. 26.></p>
3) 옥내 및 야외도장	<p>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로(이하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옥내 및 야외에서 도장하는 시설 및 공정을 대상으로 한다.</p> <p>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전체 도로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대비 2020년까지 2%,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p>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p>30%, 2023년까지 45%, 2024년 이후 60% 이상(옥내에서 도장하는 경우에는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연간 배출량은 1) 및 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의 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p> <p>다) 나)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은 도로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통해 산정하되, 도로 및 희석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연 1회 산정해야 한다.</p> <p>라) 도로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간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p>
4) 기 타	<p>사업자는 도로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을 옥내도장 및 야외도장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연간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비고

1. 저유소는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 시설관리기준만 적용받으며, 저유소의 출하시설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내의 시설과 이 지역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제3호가목1)마)2) 및 같은 호 다목1)마)2)의 시설관리기준은 열교환기 냉각수 입·출구 농도 측정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제3호가목2)다) 및 같은 호 나목3)가)2)의 시설관리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제3호가목5)마) 및 같은 호 다목3)마)의 시설관리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제3호가목6)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호 다목4)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3] <개정 2020. 4. 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제51조의3제3항 관련)

1. 정기점검의 절차

- 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은 최초 정기점검의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정기점검은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받아야 한다.
- 나. 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의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1부
 - 3) 직전 3년간 연간점검 보고서 1부
 - 4) 직전 정기점검 결과서 1부
 - 5) 직전 3년간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서 1부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 다. 점검기관은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라. 정기점검 일정과 비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정기점검 예정일 전날(예정일 전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정일)까지 정기점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마.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정기점검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구 분	내용 및 방법
가. 공통기준 준수 여부 조사	1)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칭·운영 현황 2) 사업장 내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파악 현황 3)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의 목록 및 제외 사유의 적정성 검토
나. 업종별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	1) 1 업종 가) 공정배출시설 (1) 공정배출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3)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현황 (4) 냉각탑 및 열교환기 입·출구에서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을 통한 확인 (5)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상부 덮개 등의 설치 및 적절한 관리·운영 현황 나) 플레어스택 (1)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2)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3)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4)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5)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6)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다)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설치 현황 (나)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구 분	내용 및 방법
	<p>①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②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2)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가) 부상지붕,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설치 현황</p> <p>(나)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등 누출점검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p> <p>(3)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라) 육상축하시설</p> <p>(1) 육상축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 설치 현황</p> <p>(2) 육상축하시설의 배출가스 재이용,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마) 폐수처리시설</p> <p>(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현황</p> <p>(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현황</p> <p>(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운영현황</p> <p>(4) 상부덮개 또는 부상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집수조의 개방면 현장측정을 통한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확인</p> <p>(5)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밀폐 설치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p>

구 분	내용 및 방법
	<p>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바) 비산누출시설</p> <p>(1) 비산누출시설별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보관 현황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명판 부착 현황</p> <p>(2)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p> <p>(3) 펌프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4) 압축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5)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6)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7)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인력 현황</p> <p>(8)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및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p> <p>(9) 점검기관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p> <p>(가) 대상시설은 관리대상물질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누출기준농도 초과이력 이 있는 시설을 위주로 선정</p> <p>(나)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전수 실시</p> <p>(다)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대상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 다만,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검사용 시료 채취장치, 공정배수구의 경우에는 개별 장치종류별로 5% 이상 누출점검 을 실시</p> <p>(라) 비산누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누출현황(시설별 누출농도, 누출기준농도 초과시설 현황, 사업장 자체 누출점검 결과 비교)</p> <p>2) II 업종</p> <p>가) 비산먼지 배출시설</p> <p>(1)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의 재비산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운영상태</p> <p>(2) 사업장 내부도로 재비산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 사항 검토</p> <p>(3) 비산먼지 농도의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및 실제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토</p>

구 분	내용 및 방법
	(4)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규제 준수 현황 나) 소결로 및 관련시설 (1) 소결로 주변 지면의 주 2회 청소 내역 (2) 소결가스 포집압력의 음압 유지 및 모니터링 상태 (3) 배광부 밀폐 및 내부 음압 유지 현황 (4) 냉각시설 상부의 배광부로부터 1/3 덮개설치 및 집진상태 (5) 냉각시설 상부의 개방된 부분에 살수설비 설치·운영 현황 (6) 소결로 측면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및 실제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토 다) 코크스 및 관련시설 (1) 코크스로 배출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이용 현황 (2)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가)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나)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다)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라)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마)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바)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3) 장입구 주위 밀봉운전 및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기준 준수 내역 (4) 코크스오븐 스프링방식의 밀봉문 설치 및 주 2회 청소 현황 (5) 코크스로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유체밀봉 상태 (6) 주 1회 탄화실과 연소실 칸막이벽의 누출상태 점검 및 수리 기록 사항 검토 (7) 코크스의 인출 및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설치현황 (8) 습식냉각탑의 설치 높이, 용수살수장치,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상태 (9)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라)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1) 출선로 내벽의 타르성분 무첨가 코팅제 사용현황 (2) 출선로에 상부덮개, 집진시설 설치·운영 현황 (3)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자점에 집진시설 설치·운영 현황 (4)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및 건옥집진시설 설치·운영 현황 (5) 용광로 및 전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전량 포집 및 연료 재이용 현황

구 분	내용 및 방법
	(6)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7)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가)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나) 자동점화시설 설치 현황 또는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현황, 모니터링 기록내용 (다) 총발열량 기준 준수 현황 및 모니터링 기록 내용 (라) 관리대상물질 불완전연소 배출여부 모니터링 기록 내용 (마) 매연 발생 시 매연 측정결과 및 점화불꽃 모니터링 기록 내용 (바) 매연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 3) III 업종 가) 공정배출시설 (1) 공정배출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연결 현황 (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3)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현황 (4) 냉각탑 및 열교환기 입·출구에서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을 통한 확인 (5)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상부 덮개 등의 설치 및 적절한 관리·운영 현황 나)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설치 현황 (나)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 (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 ①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 ②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구 분	내용 및 방법
	<p>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2)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가) 부상지붕,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설치 현황</p> <p>(나)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립환기구 등 누출점검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 운영 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누출점검(점검대상시설 총 개수의 10% 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실시)</p> <p>(3)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 여부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다) 폐수처리시설</p> <p>(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현황</p> <p>(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현황</p> <p>(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운영현황</p> <p>(4) 상부덮개 또는 부상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집수조의 개방면 현장측정을 통한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확인</p> <p>(5)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라) 비산누출시설</p> <p>(1) 비산누출시설별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와 위치정보를 포함한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보관 현황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 명판 부착 현황</p> <p>(2)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p> <p>(3) 펌프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4) 압축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5) 압력완화장치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p> <p>(6)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측정방법, 측정인력 현황</p>

구 분	내용 및 방법
	<p>(7)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및 누출기준준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p> <p>(8) 점검기관의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p> <p>(가) 대상시설은 관리대상물질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누출기준농도 초과이력 이 있는 시설을 위주로 선정</p> <p>(나)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전수 실시</p> <p>(다) 비산누출시설 총 개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대상 개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개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누출점검을 실시. 다만,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공정배수구의 경우에는 개별 장치종류별로 5%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p> <p>(라) 비산누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누출현황(시설별 누출농도, 누출기준농도 초과시설 현황, 사업장 자체 누출점검 결과 비교)</p> <p>마) 세정시설</p> <p>(1) 세정시설의 폐쇄형 구조 설치 현황</p> <p>(2) 세정시설의 밀폐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바) 용해로</p> <p>(1) 용해로의 밀폐 설치 또는 배출가스 포집 및 배출가스 처리시설 연결 현황</p> <p>(가)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주기, 내용, 체류시간 산정내역</p> <p>(나) 방지시설등의 경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또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p> <p>(2) 용해로 가동 시 건축집진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전하는지 여부</p> <p>4) IV 업종</p> <p>가) 옥내도장</p> <p>(1) 옥내도장시설의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 현황,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에 대한 측정주기, 측정방법, 측정결과 등 운영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의</p>

구 분	내용 및 방법
	실제 측정을 통한 확인 (2) 단위시간당 급기량 기준 준수 현황 (3) 일일 도장작업 내용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기록내용 (4) 옥내도장시설 닫힌 상태 운영 현황 (5) 도로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 기록 사항 확인 나) 야외도장 (1)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검토 (2) 도로 및 희석제의 월별 사용량 기록 사항 검토 (가) 고형분 부피비(Solid Volume Ratio) 70% 이상인 도로 사용 현황 (나) coal tar free epoxy 도로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로 사용 현황 (다) 희석제 사용 현황 다) 기타 (1)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로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로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로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자 감량 현황

비고

- 이 기준은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호나목1)가)(1)(나), 1)다)(1)(다)②, 1)다)(3)(나), 1)마)(5)(나), 3)가)(1)(나), 3)나)(1)(다)②, 3)나)(3)(나), 3)다)(5)(나), 3)마)(2)(나), 3)바)(1)(나) 및 4)가)(1)에 따른 확인은 굴뚝 농도 또는 시설 저감효율을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전단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굴뚝 농도만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20. 4. 3.>

자기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관계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2. 관계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나.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비고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별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측정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측정횟수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제1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와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와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연도 이전 최근 2년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검사를 실시한 날이 포함된 측정 주기의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같음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2] <개정 2011.8.19>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1. 석탄사용시설

-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 라.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마.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₂), 질소산화물(NO_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틱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척(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p>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p> <p>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p>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p>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p>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p>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p>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p>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p>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p>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중합처분업</p>

비고

-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도시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개정 2020. 4. 3.> [시행일 : 2021. 1. 1.]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아적(분체상물질을 아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아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아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함 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아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아적장과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흙한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마. 아적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고, 아적 설비 주위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사.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2. 신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신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 신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신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캐년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목·나목·바목·사목 및 차목만 적용하고, 목재수송은 사목·야목 및 차목만 적용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시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차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금속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할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f/cm²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운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그 밖의 먼지제거 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시설) 또는 살수시설 등으로 한다. 마. 이송시설의 하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송시설에서 떨어진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경내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급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녹 제거	가. 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야외 도장(운송장비 제조업 및 조립금속 제품제조업의 야외 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 제조 등의 야외도장 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측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간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결함 부위 등 돌출면의 먼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측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측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축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가. 아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신기와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신거나 내릴 것 나. 신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부림시설(물부림 반경 7m 이상, 수압 5kg/㎠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시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부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시·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20. 4.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와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가. 제조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 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른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위 2)에 따른 측정결과, 누출농도가 1만ppm 이상(압력완화장치에 대하여는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전체 제조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에는 시료채취 시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위 6)에 따른 배관장치나 배출관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됨이 없이 공정 중으로 재취수시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p>키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p> <p>8)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p> <p>9) 중간 집수조 (Junction Box)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Open Vent Pi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조사나 보수를 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덮개와 집수조 사이에 틈새가 발견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10) 중간집수소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 (Sewer line)가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되며, 금·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1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80퍼센트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2) 폐수처리장의 유수분리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저장탱크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나. 저장시설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p>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p>가)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p> <p>나) 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p> <p>(1)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p> <p>(2) 이중 밀봉장치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p> <p>다)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는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표면 위에 떠 있지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p> <p>마) 림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2)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p> <p>가)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p>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p>나)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p> <p>라) 자동환기구와 립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마)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p> <p>3) 기존의 고정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다. 출하시설	<p>1) 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일렌함유 예폭시수지, 초산 등 상온(25℃)에서 점도가 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 이상으로 물질흐름이 정지되는 특성 때문에 하부로 실는 작업이 불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 등으로부터 출하시에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공정 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3) 위 2)에 따른 회수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4) 출하시 포장을 하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p>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 유 소	가. 저장시설	제1호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입하량 또는 출하량 총량이 해당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하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출하시설	제1호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3. 주 유 소	가. 저장시설	<p>1)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積下)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회수밸브 등의 회수설비(이하 이 년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게 하거나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에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유류를 적하하는 경우에는 유조차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회수배관을 회수설비에 연결하여야 하고, 저장탱크나 유조차의 탱크로리를 임의로 개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류 주입구 및 저장탱크 맨홀 등에서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4)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p> <p>5) 2)에 따라 설치한 대기밸브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p> <p>6) 회수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감쇄·누설 등을 2년마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p>
	나. 주유시설	1) 주유소에서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시설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년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은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증기 회수배관은 배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유증기 회수배관을 설치한 후에는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이 적정범위(0.88 ~ 1.2)에 있는지를 회수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 1. 26.) 7) 삭제 (2014.2.6)
4. 세탁작업	세탁시설	1) 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이어야 한다(용제회수기가 별도로 부착된 경우는 밀폐형으로 본다)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비고

- "암력완화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배관 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 "검사용 시료채취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 중인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 밸브, 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배수장치"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 밸브,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 "유수분리조"란 폐수중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 "부상지붕"이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 "하부적하방식"이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 중으로 노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실고 내리며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등의 저장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 "출하시설"이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중간집수조"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 (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당시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유증기 방지시설(이하 "유증기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2015년도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28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배출시설	설치기한
가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19년 1월 28일
나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다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
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비고

- 연간 판매량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는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15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
- 2017년 1월 28일 당시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에 유증기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로서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위에 따른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관리권역에서 2020년 4월 3일 당시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분	배출시설	설치기한
가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22년 4월 2일
나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
다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 날이 2023년 12월 31일보다 빠르면 다음에 따른 기한을 적용한다.

비고

1. 휘발유 연간 판매량은 2018년도 기준을 말한다.
2. 연간 판매량을 산정할 때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3. 위 표 기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설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치기한 직전 연도 판매량이 2018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판매량을 적용한다.
4.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주유소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위 표에 따른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기목·나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16의2] <개정 2019. 7. 16.>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 가. 용도 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로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로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로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부기준

- 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 1) 건축용 도로

용도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35 이하
(2) 수성광택	70 이하
(3) 하도(下塗)	수성 30 이하, 유성 190 이하
(4) 퍼티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45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47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 상도마감용(락카계)	23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4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23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5) 스테인	수성 15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480 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	48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0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70 이하
(5) 유성 하도	550 이하
(6) 수성	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	35 이하
(2) 유성	3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150 이하
(3) 투명도료	5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540 이하
다) 상도-single	450 이하
라) 상도-basecoat	450 이하
마) 상도-topcoat	45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800 이하

3)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수성 도로표지용 도료	170 이하
나) 유성 도로표지용 도료	40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방오도료	500 이하
(2) 무독성방오도료	45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550 이하
(5)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
(6) 마감도료(2액형)	500 이하
(7) 발라스트(유니버설 프라이머)	400 이하
(8)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600 이하
나) 철구조물(강교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5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5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보수용은 63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530 이하
(8) 마감도료(수성)	150 이하
(9) 불소계 도료	580 이하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35 이하
(2) 수성광택	65 이하
(3) 하도(下塗)	수성 30 이하, 유성 180 이하
(4) 퍼티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41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200 이하
나)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42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17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2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170 이하
다)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42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 하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5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43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5) 스테인	수성 100 이하, 유성 300 이하
라)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460 이하
(2) 유성 상도 다액형	400 이하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80 이하
(4) 유성 중도(中塗) 다액형	60 이하
(5) 유성 하도	480 이하
(6) 수성	35 이하
마) 가정용도료	
(1) 수성	35 이하
(2) 유성	10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50 이하
(3) 투명도료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사) 기타	
(1) 수성	180 이하
(2) 유성	250 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워시프라이머	66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42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다) 상도-single	420 이하
라) 상도-basecoat	200 이하
마) 상도-topcoat	42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680 이하
사) 기타	250 이하

3) 도로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도로표지용 도료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나) 도로포장용 도료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다) 기타	수성 150 이하, 유성 250 이하

4) 공업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가) 선박용 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2) 방오도료	450 이하
(3) 무독성방오도료	45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0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45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45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450 이하
(8) 발라스트(유니버설 프라이머)	320 이하
(9)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550 이하
(10) 에칭 프라이머	750 이하
(11) 홀딩 프라이머	60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2) 바니쉬	550 이하
나) 중방식도료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30 이하
(2)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성 50 이하, 유성 630 이하
(3)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1액형)	500 이하
(4)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2액형)	450 이하
(5) 방청도료(녹 방지 도료)(수성)	80 이하
(6)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보수용은 600 이하)
(7) 마감도료(2액형)	470 이하
(8) 마감도료(수성)	150 이하
(9) 불소계 도료	520 이하
다) 내열도료	650 이하
라) 내화도료	500 이하
마) 불연기자재용 도료	720 이하
바) PCM 도료	
(1) 고체(Solid)(안료함량 15% 이상)	800 이하
(2) 고체(Solid) 외(안료함량 15% 미만)	880 이하
사) 제관용 도료	
(1) 2PC(내면)	300 이하
(2) 2PC(외면)	500 이하
(3) 3PC/DRD/기타	880 이하
아) 기계 및 금속용 도료	
(1) 수성	200 이하
(2) 유성	750 이하
(3)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자) 목공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하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수성 180 이하, 유성 72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차) 전기·전자제품용(금속용) 도료	
(1) 하도용(메탈)	750 이하
(2) 하도용(유색)	750 이하
(3) 하도용(투명)	750 이하
(4) 상도용(메탈)	800 이하
(5) 상도용(유색)	800 이하
(6) 상도용(투명)	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카) 전기·전자제품용(플라스틱용) 도료	
(1) 하도용(메탈)	850 이하
(2) 하도용(유색)	850 이하
(3) 하도용(투명)	850 이하
(4) 상도용(메탈)	800 이하
(5) 상도용(유색)	800 이하
(6) 상도용(투명)	800 이하
(7) 특수기능도료	850 이하
타) 전기·전자제품용(기타소재용) 도료	890 이하
파) 자동차(신차)용 도료	
(1) CLEAR	650 이하
(2) BASECOAT	수성 400 이하, 유성 800 이하
(3) 중도용	수성 400 이하, 유성 650 이하
(4) 전착용(전기 도장용)	100 이하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하) 자동차 부품용 도료	
(1) CLEAR	750 이하
(2) BASECOAT	750 이하
(3) 특수기능도료(고휘도/반사용)	850 이하
(4) 프라이머	800 이하
(5) 전착용(전기 도장용)	100 이하
거) 기타	
(1) 수성	200 이하
(2) 유성	900 이하

비고 :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7] <개정 2020. 4. 3.>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경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8.0g/km 이하	1.5g/km 이하	2.1g/km 이하	0g/1주행	4g/테스트 이하
	1996년 12월 1일부터	가 2.11(4.5)g/km 이하	0.62(1.25)g/km 이하	0.25(0.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1999년 12월 31일까지	나 4.0g/km 이하	1.0g/km 이하	0.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승용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11(2.75)g/km 이하	0.40(0.62)g/km 이하	0.25(0.3)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km 이하	1.43g/km 이하	0.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가 6.21g/km 이하	0.75g/km 이하	0.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1999년 12월 31일까지	나 6.21g/km 이하	1.06g/km 이하	0.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중량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33.5g/kWh 이하	11.4g/kWh 이하	1.3g/kWh 이하	0g/1주행	-

CVS-75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위 표의 비고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를 감응하여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5.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경승용차(코치·밴 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 안은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1996년 9월 14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승용차에 적용한다.
6.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비고 5. 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적용기간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하이드	측정방법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2.11)g/km 이하	0.25(0.62)g/km 이하	0.16(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자동차	가 2.11(2.75)g/km 이하	0.25(0.44)g/km 이하	0.16(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3.11)g/km 이하	0.37(0.62)g/km 이하	0.19(0.29)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가 2.75g/km 이하	0.25g/km 이하	0.24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나 3.11g/km 이하	0.43g/km 이하	0.29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중량자동차	33.5g/kWh 이하	5.5g/kWh 이하	1.3g/kWh 이하	0g/1주행	-	0.01g/kWh 이하	

비고

-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 경자동차 중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의 '가'란은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라 한다)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까지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가'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종	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2.11)g/km 이하	0.25(0.62)g/km 이하	0.16(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승용자동차	가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16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나	2.61g/km 이하	0.37g/km 이하	0.19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차종	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다목적자동차	가	2.34g/km 이하	0.39g/km 이하	0.21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4g/km 이하	0.43g/km 이하	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중형자동차	가	2.75g/km 이하	0.25g/km 이하	0.24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나	3.11g/km 이하	0.43g/km 이하	0.29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대형자동차	33.5g/kWh 이하	5.5g/kWh 이하	1.3g/kWh 이하	0g/1주행	-	0.01g/kWh 이하	D-13 모드

비고

-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경자동차·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 경자동차 중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 중형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라. 2002년 7월 이후

1) 휘발유 자동차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	가	2.11g/km 이하	0.12g/km 이하	0.047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나	2.61g/km 이하	0.19g/km 이하	0.056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화물1	2.11g/km 이하	0.12g/km 이하	0.047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승용2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56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승용3·화물2	2.73g/km 이하	0.25g/km 이하	0.062g/km 이하	0g/1주행	1.5g/테스트 이하		0.007g/kWh 이하
승용4·화물3	4.0g/kWh 이하	3.5g/kWh 이하	0.9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비고

1. 휘발유 자동차는 알코올과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갈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4.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 및 화물자동차 중 승용1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승용1의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3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한다.

구분	적용기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출고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7. 승용1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1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62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②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62g/km 이하	0g/1주행	
	나	2.6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8. 제7호의 적용기간 단 중 ①란 및 ②의 '가'란은 각각 5년 또는 80,000km까지 적용하고, ②의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경자동차·승용1·화물1·승용2·승용3 및 화물2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그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가스자동차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	가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g/km 이하	0.37g/km 이하	0.097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화물1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승용2	가	2.34g/km 이하	0.37g/km 이하	0.097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g/km 이하	0.43g/km 이하	0.10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승용3·화물2		2.73g/km 이하	0.43g/km 이하	0.10g/km 이하	0g/1주행	1.5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승용4·화물3		4.0(0.4)g/kWh 이하	3.5g/kWh 이하	0.9(0.2)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비고

1. 가스자동차는 가스와 알코올을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용1의 '가'란 및 승용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12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승용1의 '나'란 및 승용2의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3.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4.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승용4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적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승용4·화물3의 () 안의 기준 중 승용4는 2004년 1월 1일부터, 화물3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소형 승용·화물 자동차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0.4)g/kWh 이하	3.5g/kWh 이하	0.46(0.2)g/kWh 이하	0g/1주행	-	-	
		4.0g/kWh 이하	3.5g/kWh 이하	0.55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승용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3.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4.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5.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소형승용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조사별로 적용하며,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그 해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첫 해에서 3년을 유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출고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제작자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2006년 1월 1일부터	가	1.06g/km 이하	0.043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2008년 12월 31일까지	나	1.31g/km 이하	0.062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는 ND-13모드 또는 ETC모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 차량 총중량이 4톤미만인 대형승용차·화물차는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바. 2009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	2.11g/km 이하	0.031g/km 이하	0.047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나	2.61g/km 이하	0.044g/km 이하	0.056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기준 2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기준 3		0.625g/km 이하	0.0125g/km 이하	0.006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기준 4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1주행	0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4.0g/kWh 이하	2.0g/kWh 이하	0.55g/kW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초대형 승용·화물									

비고

-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 g/km 이하	0.01875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15.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삭제 <2012.2.3>
17.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 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고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마목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마목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	2.1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47 g/km 이하	0g/1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9 g/km 이하	CVS-75 모드		
		나	2.6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56 g/km 이하	0g/1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11 g/km 이하			
	기준 2	가	1.06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g/1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5 g/km 이하			
		나	1.31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4 g/km 이하	0g/1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7 g/km 이하			
	기준 3		0.62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00625 g/km 이하	0g/1주행	1.2 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기준 4		0 g/km 이하	0 g/km 이하	0 g/km 이하	0g/1주행	0 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4 g/kWh 이하	0g/1주행	-		-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수소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 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14.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6.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7.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	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 스	블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km 이하	0.01875g/km 이하	0.0125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18.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9. 삭제 <2012.2.3>
20.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기준 1을 적용한다.
2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2.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24.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기준 4는 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	일산화탄 소	질 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2016년 1월1일 이후	8.0 g/kW-h	0.6 g/kW-h	1.28 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1일 이후	6.0 g/kW-h	0.6 g/kW-h	0.96 g/kW-h	

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 자동차, 중형 승용·화물 자동차	기준 1	2.61g/km 이하	-	0.100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87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62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2	1.31g/km 이하	-	0.078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3	1.06g/km 이하	-	0.044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4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 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기준 5	0.625g/km 이하	-	0.019g/km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이하	CVS-75 모드	
	5.97g/km이하	-	0.031g/km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12g/km이하	-	-	-	SC03 모드	
	기준 6	0.625g/km 이하	-	0.0125g/km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이하	CVS-75 모드
		5.97g/km이하	-	0.031g/km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12g/km이하	-	-	-	SC03 모드
	기준 7	0g/km 이하	-	0g/km이하	0g/1주행	-	0g/km 이하	CVS-75 모드
		4.0g/kWh 이하	0.40g/kWh 이하	0.14g/kWh 이하	0g/1주행	-	-	WHTC 모드

비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4.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값으로 측정한다.
5.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6.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7.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사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표의 기준 1, 기준 2, 기준 5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8.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 림 일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기준1	2.61g/km 이하	0.100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22g/km 이하	-	-	-	US06 모드
	-	-	-	-	-	SC03 모드
기준2	1.31g/km 이하	0.078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	-	-	US06 모드
	-	-	-	-	-	SC03 모드
기준3	1.06g/km 이하	0.061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	-	-	US06 모드
	-	-	-	-	-	SC03 모드
기준4	1.06g/km 이하	0.044g/km 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0.105g/km 이하	-	-	-	US06 모드
	-	-	-	-	-	SC03 모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 림 일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기준5	0.625g/km이하	0.027g/km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모드
	5.97g/km 이하	0.043g/km이하	-	-	-	US06모드
	-	-	-	-	-	SC03모드
기준6	0.625g/km이하	0.018g/km이하	0g/1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모드
	5.97g/km 이하	0.043g/km이하	-	-	-	US06모드
	-	-	-	-	-	SC03모드

9.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 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0.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 2를 적용한다.
11.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12.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13.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며,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고비율 (%)	0	0	30	30	20	80	100	100	100	100

14.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Highway) 주행모드의 배출허용기준은 CVS-75 모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CVS-75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2g/km 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합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g/km 이하로 한다.

16. 제15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고비율 (%)	0	10	20	40	70	100	100	100	100	100

17.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US06 모드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6g/km이하로 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 출고되는 차량의 결합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11g/km를 적용한다.

18. 제17호 본문 및 단서의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는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출고비율 (%)	0	10	20	40	70	100	100	100	100	100

19.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SC03 모드로 인증을 받은 사항은 배출가스 결합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위 표의 증발가스 시험을 위한 세부 연료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22. 상기 증발가스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2.7톤 이하의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5g/테스트를, 그리고 총중량 2.7톤 초과와 다목적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0.75g/테스트의 기준을 적용한다.

23.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8.0g/kW·h	0.6g/kW·h	1.28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 1일 이후	6.0g/kW·h	0.6g/kW·h	0.96g/kW·h	

24.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하되,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만, 제작자가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측정항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메탄	측정방법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	6.0g/kW·h	0.6g/kW·h	0.21g/kW·h	0.75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THC를 측정하는 경우	6.0g/kW·h	0.6g/kW·h	0.75g/kW·h	-	

25.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별표 19의2 제3호(나목3)의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차량 총중량 4.6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 경유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이전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1999년 12월 31일까지	1.5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08g/km 이하	-	CVS-75모드
승용 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까지	980ppm 이하	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	-	50% 이하	D-6모드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12g/km 이하	-	CVS-75모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08g/km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5g/km 이하	0.62(1.12)g/km 이하	0.25g/km 이하	0.08(0.14)g/km 이하	-	
소형 화물 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	-	50% 이하	D-6모드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350ppm 이하 DI :750ppm 이하	670ppm 이하	-	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km 이하	1.43g/km 이하	0.50g/km 이하	0.31(0.16)g/km 이하	-	
	1998년 1월 1일부터	가 2.11g/km 이하	1.40.g/km 이하	0.25g/km 이하	0.14g/km 이하	-	
	1999년 12월 31일까지	나 2.11g/km 이하	1.40(1.96)g/km 이하	0.50g/km 이하	0.25(0.35)g/km 이하	-	
중량 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450ppm 이하 DI :850ppm 이하	670ppm 이하	-	50% 이하	D-6모드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350ppm 이하 DI :750ppm 이하	670ppm 이하	-	40% 이하	D-13모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9g/kWh 이하	11.0g/kWh 이하	1.2g/kWh 이하	0.9g/kWh 이하	3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4.9g/kWh 이하	6.0(9.0)g/kWh 이하	1.2g/kWh 이하	0.25(0.5)g/kWh 이하	25% 이하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란은 비고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 매연 난의 기준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입자상물질 중 () 안의 기준은 차량 총중량 2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난 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적용기준 중 () 안의 적용기준은 차량 총중량 3.0톤 이상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자동차	1.2g/km 이하	0.62(1.02)g/km 이하	0.25g/km 이하	0.05(0.11)g/km 이하		CVS-75 모드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소형화물자동차	가	2.11g/km 이하	1.02g/km 이하	0.25g/km 이하	0.11g/km 이하		
	나	2.11g/km 이하	1.06g/km 이하	0.50g/km 이하	0.14g/km 이하		
중량자동차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2g/kWH 이하	20% 이하	D-13 모드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중량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한다.
- 중량자동차에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자동차		0.5g/km 이하	0.02g/km 이하	0.01g/km 이하	0.01g/km 이하	20% 이하	CVS-75 모드
다목적 자동차		1.1g/km 이하	0.95g/km 이하	0.22g/km 이하	0.11g/km 이하	20% 이하	
중형자동차	가	2.11g/km 이하	1.02g/km 이하	0.25g/km 이하	0.11g/km 이하	20% 이하	
	나	2.11g/km 이하	1.06g/km 이하	0.50g/km 이하	0.14g/km 이하	20% 이하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대형자동차	가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2g/kWH 이하	20% 이하	D-13 모드
	나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15(0.1)g/kWH 이하	20% 이하	

비고

-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중형자동차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대형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하되, 출고단계에서는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출고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중형자동차와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각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대형자동차의 입자상물질 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 대형자동차의 '가'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대형자동차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라. 2002년 7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		0.5g/km 이하	0.02g/km 이하	0.01g/km 이하	0.01g/km 이하	15% 이하	CVS-75 모드
화물 1		0.8g/km 이하	0.65g/km 이하	0.07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승용2	가	0.95g/km 이하	0.65g/km 이하	0.08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나	0.95g/km 이하	0.75g/km 이하	0.08g/km 이하	0.09g/km 이하	15% 이하	
승용3·화물2	0.95g/km 이하	0.78g/km 이하	0.08g/km 이하	0.10g/km 이하	15% 이하	
승용4·화물3	2.1g/kWH 이하	5.0g/kWH 이하	0.66g/kWH 이하	0.10g/kWH 이하	15% 이하 및 K=0.8m-1	ND-13 모드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승용2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승용2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	0.64g/km 이하	0.50g/km 이하	0.56g/km 이하	0.05g/km 이하	15%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승용2	가					

- 매연의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과급기(Turbo 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용4 및 화물3의 K수치는 제작시의 기준으로 하되,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 2004년 7월 1일부터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화물3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25g/km 이하	10%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RW ≤ 1,305kg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5g/km 이하	10% 이하	
	1,305kg < RW ≤ 1,760kg	0.63g/km 이하	0.33g/km 이하	0.39g/km 이하	0.04g/km 이하	10% 이하	
	RW > 1,760kg	0.74g/km 이하	0.39g/km 이하	0.46g/km 이하	0.06g/km 이하	10%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km 이하	3.5g/km 이하	0.46g/km 이하	0.02g/km 이하	10%이하 K=0.5m-1	ND-13모드
		4.0g/km 이하	3.5g/km 이하	0.55g/km 이하	0.03g/km 이하	-	ETC 모드

비고

- 경유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9. 원동기 전부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 (ℓ/sec)	K수치 (m-1)	유량 (ℓ/sec)	K수치 (m-1)	유량 (ℓ/sec)	K수치 (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0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90	1.575	145	1.25	200	1.065

바. 2009년 9월 1일 이후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0.50g/km 이하	0.18g/km 이하	0.23g/km 이하	0.005g/km 이하	-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RW≤ 1,305kg 이하	0.50g/km 이하	0.18g/km 이하	0.23g/km 이하	0.005g/km 이하	
중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1,305kg <RW≤ 1,760kg 이하	0.63g/km 이하	0.235g/km 이하	0.295g/km 이하	0.005g/km 이하	-
	중형 화물차	RW> 1,760kg 이하	0.74g/km 이하	0.28g/km 이하	0.35g/km 이하	0.005g/km 이하	-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kWH 이하	2.0g/kWH 이하	0.46g/kWH 이하	0.02g/kWH 이하	K=0.5m-1	ND-13 모드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4.0g/kWH 이하	2.0g/kWH 이하	0.55g/kWH 이하	0.03g/kWH 이하		ETC 모드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Turbocharger: 배기터빈 과급기),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목록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목록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위 목록의 기준을 적용한다.
-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모드, ETC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모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0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11.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은 $6 \times 10^{11} \#/\text{km}$ 이하로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2014년 1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RW ≤ 1,305kg	0.5g/km 이하	0.08g/km 이하	0.17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1,305kg < RW ≤ 1,760kg	0.63g/km 이하	0.105g/km 이하	0.19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1,760kg	0.74g/km 이하	0.125g/km 이하	0.215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11}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1.5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01 g/kWh 이하	8×10^{11} #/kWh 이하	WHSC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4.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6×10^{11} #/kWh 이하	WHTC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	RW ≤ 2,380kg	2,380kg < RW ≤ 2,840kg	RW > 2,840kg
측정방법	ECE-15 및 EUDC 모드	제작자가 선택	WHSC, WHTC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및 중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 및 중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 WHTC 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THC로 측정한다.
9.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0.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의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차종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168g/km 이하	RDE-LDV

11. 삭제 <2017. 9. 28.>
12.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3.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0 g/kW-h	0.92 g/kW-h	0.24 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6.0 g/kW-h	0.69 g/kW-h	0.24 g/kW-h	

아.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입자개수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0.5 g/km 이하	0.08 g/km 이하	0.17 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 ¹¹ #/km 이하	WLTP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RW≤ 1,305kg g/km 이하 0.63 g/km 이하 1,760kg RW> 1,760kg g/km 이하	0.08 g/km 이하 0.105 g/km 이하 0.125 g/km 이하	0.17 g/km 이하 0.195 g/km 이하 0.21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0.0045 g/km 이하	6×10 ¹¹ #/km 이하 6×10 ¹¹ #/km 이하 6×10 ¹¹ #/km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 g/kWh 이하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46 g/kWh 이하	0.13 g/kWh 이하 0.16 g/kWh 이하	0.01 g/kWh 이하 0.01 g/kWh 이하	8×10 ¹¹ #/kWh 이하 6×10 ¹¹ #/kWh 이하		WHSC WHTC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증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한다.
-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	RW≤2,380kg	2,380kg<RW≤2,840kg	RW>2,840kg
측정방법	WLTP	제작자가 선택	WHSC, WHTC

-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와 WHTC 모드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THC로 측정한다.
-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암모니아(NH₃)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차종	구분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0.168g/km 이하	RDE-LDV
	RW≤1,305kg	0.168g/km 이하	
	1,305kg<RW≤1,760kg	0.221g/km 이하	
	RW>1,760kg	0.263g/km 이하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입자개수 기준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8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차종	구분	입자개수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9×10^{11} #/km 이하	RDE-LDV
	소형 화물차	9×10^{11} #/km 이하	
	중형 화물차	9×10^{11} #/km 이하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다음 표의 질소산화물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기목 본문 및 비고 제8호기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 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비고 제7호나목 본문 및 비고 제8호나목 본문을 각각 적용한다.

차종	구분	질소산화물	입자개수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0.114 g/km 이하	9×10^{11} #/km 이하	RDE-LDV
	소형·중형 화물차	0.114 g/km 이하	9×10^{11} #/km 이하	
		0.150 g/km 이하	9×10^{11} #/km 이하	

10.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7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출고 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2017년 10월 1일 이후	6.0g/kW-h	0.69g/kW-h	0.24g/kW-h	환경부장관이 고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자동차제작자가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 나.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9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자동차제작자가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kg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 다.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제작 및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 이 경우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자별 총 출고대수(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kg 이하인 소형화물차만 해당한다)의 30%의 범위에서 위 사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륜자동차

가. 199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원동기	배출 가스	1991년		1993년		1996년		2000년 1월 1일 이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탄화수소	탄화수소	탄화수소	탄화수소	원동기 형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25cc 이하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1.10% 이하	4.0% 이하	0.70% 이하	50cc 미만	8.0g/km이하	4.0g/km이하	0.1g/km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0% 이하					
125cc 초과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5% 이하	50cc 이상	2행정	8.0g/km이하	4.0g/km이하	0.1g/km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6% 이하	0.25% 이하					

원동기	적용 기간 배출 가스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 이후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원동기 형 태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질 소 산화물
500cc 초과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0% 이하	0.30% 이하	4행정	13.0g/ /km이하	3.0g/ km이하	0.3g/ km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3.5% 이하	0.12% 이하	2.5% 이하	0.12% 이하				
측정 방법	정 지 가 동							50cc 미만 CVS-47 50cc 이상 CVS-40			

비고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별 제3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동기	속도 배출 가스	최고속도 45km/h 이하		최고속도 45km/h 초과		
		일산화 탄 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 탄 소	탄 화 수 소	질 소 산화물
50cc 미만	2행정	1.0g/km 이하	1.2g/km 이하	5.5g/km 이하	2.0g/km 이하	0.1g/km 이하
	4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50cc 이상	2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4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150cc 미만	4행정	1.0g/km 이하	1.2g/km 이하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150cc 이상			2행정	5.5g/km 이하	1.0g/km 이하
4행정				5.5g/km 이하	1.0g/km 이하	0.3g/km 이하
측정 방법	CVS-47			CVS-40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출가스	원동기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km/h 이하	최고속도 45km/h 초과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km	1.0g/km	2.0g/km	2.0g/km
탄화수소		1.5g/km	-	0.8g/km	0.3g/km
질소산화물		0.4g/km	-	0.15g/km	0.15g/km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km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비고

-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로서 최고속도 45km/h를 초과하는 50cc 미만 원동기의 배출허용 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 분	기 준
일산화탄소	3.5g/km
탄화수소	1.5g/km
질소산화물	0.1g/km

-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는 0g/1주행을 적용한다.
- 최고속도 45km/h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기준 대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원동기 배출가스	배기량 50cc초과	
	최고속도 130km/h 미만	최고속도 130km/h 이상
일산화탄소	2.62g/km 이하	2.62g/km이하
탄화수소	0.75g/km 이하	0.33g/km 이하
질소산화물	0.17g/km 이하	0.22g/km 이하
측정방법	WMTC	WMTC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배출가스	원동기 삼륜 및 사륜	배기량 50cc 이하		배기량 50cc 초과	
		최고속도	최고속도	최고속도	최고속도
		45km/h 미만	45km/h 이상	130km/h 미만	130km/h 이상
일산화탄소	2.00g/km 이하	1.00g/km 이하	1.14g/km 이하	1.14g/km 이하	1.14g/km 이하
탄화수소	배기관 가스	0.55g/km 이하	0.63g/km 이하	0.38g/km 이하	0.17g/km 이하
	증발 가스	-	-	-	2.0g/test이하
질소산화물	0.25g/km 이하	0.17g/km 이하	0.07g/km 이하	0.07g/km 이하	0.09g/km 이하
측정방법	ECE R40	ECE R47	WMTC	WMTC	WMTC

비고

-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마. 2020년 1월 1일 이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THC	NMHC	증발가스		
1.00g/km 이하	0.10g/km 이하	0.068g/km 이하	1.5g/test 이하	0.06g/km 이하	WMTC

비고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직접분사(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5g/km 이하로 한다.
-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4. 건설기계 원동기

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9.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kWh 이하	KC1-8 모드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7kW 이상 75kW 미만	5.5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6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6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54g/kWh 이하	
225kW 이상 560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54g/kWh 이하	

비고

-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조사에 제작한 낱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30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탄화수소는 NMHC(THC로 측정할 경우에는 THC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NMHC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7.5g/kWh 이하	0.6g/kWh 이하	K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0g/kWh 이하	7.5g/kWh 이하	0.4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6.6g/kWh 이하	0.3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3.5g/kWh 이하	6.6g/kWh 이하	0.2g/kWh 이하	
225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6.4g/kWh 이하	0.2g/kWh 이하	

비고

-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조사에 제작한 낱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3. 1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위 표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7.5g/kWh 이하	0.3g/kWh 이하	ISO8178 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 이하	0.4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4.0g/kWh 이하	0.3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4.0g/kWh 이하	0.2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엔진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kW 이상 75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75kW 이상의 건설기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NRSC모드 및 NRTC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된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동 엔진을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6.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불도저, 모올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 에 대하여는 제작자 및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총 50대까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19kW 이상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불도저, 모올러, 기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원동기를 인증기관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건설기계로 제작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마. 2020년 12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NRSC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19kW 이상 37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라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라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짜가 라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건설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6.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7.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5. 농업기계 원동기

가. 2013년 2월 2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225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4.0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2g/kWh 이하	ISO8178 C1-8모드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2월 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13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g/kWh 이하	ISO8178 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4.0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3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4.0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2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19kW 이상 225kW 미만 원동기와 가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225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NRSC모드 및 NRTC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56kW 이상 130kW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56kW 이상 130kW 미만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12월 31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미만,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5.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농업기계 제작자가 해당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농업기계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6. 19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료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NRSC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	-	
19kW 이상 37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15g/kWh 이하	1 x 10 ¹² #/kWh 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료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까지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4.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계(트랙터 및 콤팩트)의 국내 판매량 평균이 50대 미만인 제작사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5.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출고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원동기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원동기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동일 사양 원동기의 국내 공급량의 2% 미만(또는 40대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의 원동기만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제작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교체용 원동기 제작 이력 및 교체 실적을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19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7.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S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 9.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6. 철도차량 원동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3.5g/kWh 이하	0.4g/kWh 이하	7.4g/kWh 이하	0.2g/kWh 이하	NRSC 모드

비고: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에 적용한다.

[별표 17의2] 삭제 <2012.10.26>

[별표 18] <개정 2020. 5. 27.>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10,000km	20,000km	40,000km
가스	승용자동차	80,000km	100,000km	120,000km
	소형화물자동차, 경자동차	10,000km	20,000km	40,000km
경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km

비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스	경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120,000km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경유	경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km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km를 적용한다.
5.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km로 한다.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이륜자동차(50cc 이상)	1년 또는 6,000km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km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km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60,000km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km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구분	적용기간		
	2000년	2001년	2002년
10년 또는 160,000km 적용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N-1) \times \frac{3abc}{ab+bc+ca}$$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 b, c : 직전 3년간 각 연도의 연평균 증가율)

4. 2002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50cc 이상)	1년 또는 60,000km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km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km로 한다.
-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할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km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합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할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교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교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자동차	6년 또는 10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20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5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1년 또는 20,000km
전기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160,000km로 한다.
-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160,000km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 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모든 부품	1년 또는 20,000km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적용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고비율	25%	50%	75%	100%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25kW 이상 560kW 미만은 2013년 2월 2일부터, 19kW 이상 225kW 미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 자동차	6년 또는 100,000km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전기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수소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우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 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장치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그 외 부품	7년 또는 120,000km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료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그 외 부품	6년 또는 100,000km 5년 또는 80,000km	
가 스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그 외 부품	7년 또는 120,000km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그 외 부품	7년 또는 120,000km 5년 또는 8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37kW 미만 19kW 미만	모든 부품 모든 부품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5년 또는 3,000시간 2년 또는 1,500시간

- 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에 따라 인증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전기 및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용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 (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 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 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모든 부품	10년 또는 192,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9.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10년 또는 16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15년 또는 24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우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 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 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 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그 외 부품	7년 또는 120,000km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19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할 수 있다.

10.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최고속도 130km/h 미만	2년 또는 2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합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 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160,000km

-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유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37kW 미만 19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8의2] <개정 2020.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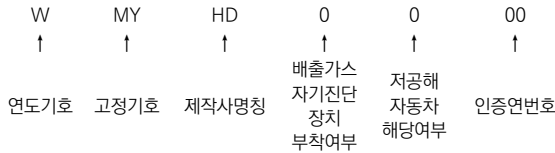
인증·변경인증의 표시(제6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라. 동일차종(원동기) 명칭 및 기호: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 원동기 주요 조정내용: 점화시기, 점화플러그 간격, 밸브 간격, 공회전수, 원동기 배기량 등을 표시한다.

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이라 표시한다.

사. 원동기의 주요 제원(중량자동차에 한함)

- 1) 표시마력(ps/rpm): 인증마력으로 표시
- 2) 전부하시 최소 연료소비율(g/ps/h)

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보증기간

- 1) 2014년 기준(경유), 2013년 기준(휘발유), 이륜자동차

적용기준의 연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 기 관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비 고	
					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작차의 경우에는 '배기관탄화수소' 항목 대신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항목으로 표기한다.

2) 2016년 기준(개별모드)

적용기준의 연도	시험모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 화물	입자상물질	증발가스	비 고	
						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
	CVS-75						
	Highway						
	US06						
	SC03						

3) 2016년 기준(합산모드)

적용기준의 연도	시험모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증발가스	비 고	
						차종	배출가스 보증기간
	CVS-75						
	Highway						
	합산						

자.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차. 삭제 <2020. 4. 3.>

2.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1회충전 주행거리

1) 자동차

상온: 도심(km), 고속도로(km), 복합(km)

저온(-6.7℃): 도심(km), 고속도로(km), 복합(km)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이륜자동차

상온: CVS 40(km)

저온(-10℃): CVS 40(km)

바. 이륜자동차의 최대 등판각():

사. 동일차종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축전지:

2) 충전기:

3) 전동기:

4) 제너레이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삭제 <2020. 4. 3.>

비고.

1.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작증에 표시되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및 카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제작사 명칭:

나. 인증번호:

다. 차종:

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g/km

마. 연료소비율: 도심(km/kg), 고속도로(km/kg), 복합(km/kg)

바. 동일차종

사. 연료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정격전압(V):

아. 전동기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최대출력(ps/rpm):

3) 정격전압(V):

자. 축전지의 주요 제원

1) 종류:

2) 출력전압(V):

3) 용량(Ah):

차.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1) 연료전지:

2) 축전지:

3) 전동:

4) 컨버터/인버터:

카. 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

타. 삭제 <2020. 4. 3.>

비고. 승용자동차는 후드 안쪽에 부착하고, 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한다.

[별표 18의3] <개정 2018. 11. 29.>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2 관련)

1. 시설장비

장비명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바. 입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사. 매연측정기	1조 이상

2. 기술인력

자격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차량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 자동차검사기사 이상, 자동차정비기사 이상, 일반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사 이상, 전자기사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및 농업기계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나목1)에 따른 기술자격 소지자 중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기환경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및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1)에 따른 기술자격을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명 이상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9] <개정 2014.2.6>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장 비	인 력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 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 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계, 화공 또는 자동차검사분야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

비고: 1.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엔진공급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동차제작자는 위 표에 따른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9의2] <개정 2015.12.31.>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1.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조사: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평균 배출허용기준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 1) 자동차제조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23 g/km 이하	0.022 g/km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7 g/km 이하	0.027 g/km 이하

- 2) 연간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조자의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연간 출고대수	250대 이하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9g/km	0.030g/km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	4,500대 초과 10,000대 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	0.047g/km	0.037g/km

나. 2016년 1월 1일 이후

- 1) 자동차제조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목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자동차 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차	0.063 g/km 이하	0.05 g/km 이하	0.053 g/km 이하	0.048 g/km 이하	0.043 g/km 이하	0.039 g/km 이하	0.034 g/km 이하	0.029 g/km 이하	0.024 g/km 이하	0.019 g/km 이하	
1.7톤 이상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중형승용차, 1.7톤 이상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	0.074 g/km 이하	0.068 g/km 이하	0.062 g/km 이하	0.056 g/km 이하	0.050 g/km 이하	0.043 g/km 이하	0.037 g/km 이하	0.031 g/km 이하	0.025 g/km 이하	0.019 g/km 이하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조자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 이후
0.100g/km 이하	0.078g/km 이하	0.044g/km 이하

3)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4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61g/km 이하이어야 한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적용모드
항목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0.069 g/km 이하	0.064 g/km 이하	0.061 g/km 이하	0.056 g/km 이하	0.052 g/km 이하	0.048 g/km 이하	0.044 g/km 이하	0.039 g/km 이하	0.036 g/km 이하	0.031 g/km 이하	CVS-75, US06, SC03 합산 모드

[별표 19의3] <개정 2015.12.31.>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1. CVS-75 모드

가.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Σ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times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times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배출값)] \div 전체출고량

비고

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바목 기준 1, 2 및 같은 호 사목 기준 1, 2의 경우 '가'란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을 사용한다.

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기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
기준 1	0.037g/km
기준 2	0.019g/km
기준 3	0.005g/km
기준 4	0g/km

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2) 2016년 1월 1일 이후

[Σ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times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Σ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times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배출값)] \div 전체출고량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 가)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사목의 '나'란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더하여 적용한다.
- 나)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에 0.003g/km를 빼서 적용한다.
- 다)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나)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 다목적형 소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 가)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나)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1.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1.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중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 별표 17 제1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차이분 및 초과분은 그 값에 3배를 곱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

2. CVS-75, US06, SC03 합산 모드

가.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Σ(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 ÷ 전체출고량

비고

- 1) 자동차제작자는 개별 차종에 대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차종의 기준값은 0.112g/km 이하이어야 한다.
CVS-75 모드 배출량 × 0.35 + US06 모드 배출량 × 0.28 + SC03 모드 배출량 × 0.37
- 2) 결합확인검사 시에는 SC03 모드 배출량은 CVS-75 모드 배출량을 적용한다.
- 3) 결합확인검사 시에는 자동차제작자가 1)에서 정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적용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작자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중에서 제작자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정한 개별 차종의 기준값에 1.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

[(해당 연도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 전체출고량

비고

-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별표 20] <개정 2019. 12.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장 치 별 구 분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Exhaust Gas Conversion System)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e, NOx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ive Heater)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 : EGR)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EGR 쿨러(Cooler)
3.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 PCV)	PCV밸브
5. 2차공기분사장치 (Air Injection System)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6. 연료공급장치 (Fuel Metering System)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Carburetor, Vapriize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펌프(Fuel Pump), 공회전속도제어장치(Iidle speed control system)
7. 점화장치 (Ignition System)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다만, 로더 및 캡 제외한다.

장 치 별 구 분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n Board Diagnostics)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Heated Catalyste Monitor), 실화 감시장치(Misfire Monitor), 증발가스 계통 감시장치(Evapor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Exhaust Gas Sensor Monitor),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Monitor),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서모스테트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Engine Cooling System Monitor),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Cold Start Emission Reduction Strategy Monitor), 가변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Variable Valve Timing Monitor), 직접오존저감장치(Direct Ozone Reduction System Monitor), 기타 감시장치(Comprehensive Component Monitor)
9. 흡기장치 (Air Induction System)	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배관촉로밸브(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吸氣多岐管)

비고: 1. 위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한다.

2. 위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서, 커넥터)와 위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별표 21] <개정 2018. 3. 2.>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나. "차량중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해당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 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 사.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호가목·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아. 제3호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무부하정지기동 검사방법(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및 무부하급기속검사방법(경유사용 자동차)로 측정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2호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자.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기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 카.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다. 원격측정기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시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의 정밀검사 기준(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을 적용한다.

2.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을 말하며, 원격측정기 검사방법에 의한 운행차 수시점검은 제외한다)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휘발유·알콜 사용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중형· 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이륜 자동차	소형· 중형	2018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	-	-

- 비고: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나. 경유사용자동차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 이하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소형	2016년 8월 31일까지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중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대형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의2. 원격측정기 검사방법에 의한 운행차 수시점검의 배출허용기준(휘발유(알코올 포함) 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경자동차

제작일자	차 종 검사항목	휘발유사용 경자동차			가스사용 경자동차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1997년 12월 31일 이전		12.60% 이하	3,270ppm 이하	6,330ppm 이하	16.38% 이하	4,230ppm 이하	7,590ppm 이하

제작일자	차 종 검사항목	휘발유사용 경자동차			가스사용 경자동차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7.20% 이하	1,170ppm 이하	5,400ppm 이하	9.36% 이하	1500ppm 이하	6,48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60% 이하	630ppm 이하	4,920ppm 이하	4.68% 이하	810ppm 이하	5,88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3.00% 이하	540ppm 이하	3,720ppm 이하	3.90% 이하	690ppm 이하	4,470ppm 이하

나. 승용차

제 작 일 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1988년 1월1일 부터 1997년 12월31일 까지	1,000 미만	5.49% 이하	840 ppm 이하	5,970 ppm 이하	5.49% 이하	630 ppm 이하	5,400 ppm 이하	7.14% 이하	1,110 ppm 이하	7,170 ppm 이하	7.14% 이하	819 ppm 이하	6,48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4.41% 이하	690 ppm 이하	4,770 ppm 이하	4.41% 이하	510 ppm 이하	4,320 ppm 이하	5.73% 이하	900 ppm 이하	5,730 ppm 이하	5.73% 이하	663 ppm 이하	5,184 ppm 이하
	1,200 ~ 1,400 미만	3.63% 이하	570 ppm 이하	3,930 ppm 이하	3.63% 이하	420 ppm 이하	3,570 ppm 이하	4.71% 이하	750 ppm 이하	4,740 ppm 이하	4.71% 이하	546 ppm 이하	4,284 ppm 이하

제 작 일 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1,400 ~ 1,600 미만	3.24% 이하	510 ppm 이하	3,480 ppm 이하	3.24% 이하	390 ppm 이하	3,150 ppm 이하	4.20% 이하	660 ppm 이하	4,200 ppm 이하	4.20% 이하	507 ppm 이하	3,780 ppm 이하
	1,600 ~ 1,800 미만	2.82% 이하	450 ppm 이하	3,030 ppm 이하	2.82% 이하	360 ppm 이하	2,760 ppm 이하	3.66% 이하	570 ppm 이하	3,660 ppm 이하	3.66% 이하	468 ppm 이하	3,312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2.61% 이하	420 ppm 이하	2,790 ppm 이하	2.61% 이하	330 ppm 이하	2,520 ppm 이하	3.39% 이하	540 ppm 이하	3,360 ppm 이하	3.39% 이하	429 ppm 이하	3,024 ppm 이하
	2,000 이상	2.37% 이하	360 ppm 이하	2,520 ppm 이하	2.37% 이하	300 ppm 이하	2,280 ppm 이하	3.09% 이하	480 ppm 이하	3,030 ppm 이하	3.09% 이하	390 ppm 이하	2,736 ppm 이하
199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1,000 미만	3.66% 이하	660 ppm 이하	4,650 ppm 이하	3.00% 이하	540 ppm 이하	4,200 ppm 이하	4.77% 이하	840 ppm 이하	5,580 ppm 이하	3.90% 이하	702 ppm 이하	5,04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2.97% 이하	540 ppm 이하	3,720 ppm 이하	2.43% 이하	450 ppm 이하	3,360 ppm 이하	3.87% 이하	690 ppm 이하	4,470 ppm 이하	3.15% 이하	585 ppm 이하	4,032 ppm 이하
	1,200 ~ 1,400 미만	2.46% 이하	450 ppm 이하	3,090 ppm 이하	2.01% 이하	360 ppm 이하	2,790 ppm 이하	3.21% 이하	570 ppm 이하	3,690 ppm 이하	2.61% 이하	468 ppm 이하	3,348 ppm 이하

제 작 일 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1,400 ~ 1,600 미만	2.19% 이하	390 ppm 이하	2,730 ppm 이하	1.80% 이하	330 ppm 이하	2,460 ppm 이하	2.85% 이하	510 ppm 이하	3,270 ppm 이하	2.34% 이하	429 ppm 이하	2,952 ppm 이하
	1,600 ~ 1,800 미만	1.95% 이하	360 ppm 이하	2,400 ppm 이하	1.59% 이하	300 ppm 이하	2,160 ppm 이하	2.55% 이하	450 ppm 이하	2,880 ppm 이하	2.07% 이하	390 ppm 이하	2,592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1.80% 이하	33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980 ppm 이하	2.34% 이하	420 ppm 이하	2,640 ppm 이하	1.92% 이하	351 ppm 이하	2,376 ppm 이하
	2,000 이상	1.65% 이하	300 ppm 이하	1,980 ppm 이하	1.35% 이하	240 ppm 이하	1,800 ppm 이하	2.16% 이하	39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77% 이하	312 ppm 이하	2,160 ppm 이하
2001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2월31일 까지 (가스차: 2001년 1월 1일	1,000 미만	2.31% 이하	420 ppm 이하	4,650 ppm 이하	2.31% 이하	420 ppm 이하	3,300 ppm 이하	3.00% 이하	540 ppm 이하	5,580 ppm 이하	3.00% 이하	540 ppm 이하	3,96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1.86% 이하	330 ppm 이하	3,720 ppm 이하	1.86% 이하	330 ppm 이하	2,610 ppm 이하	2.43% 이하	420 ppm 이하	4,470 ppm 이하	2.43% 이하	420 ppm 이하	3,120 ppm 이하
	1,200 ~ 1,400 미만	1.56% 이하	300 ppm 이하	3,090 ppm 이하	1.56% 이하	300 ppm 이하	2,160 ppm 이하	2.04% 이하	390 ppm 이하	3,690 ppm 이하	2.04% 이하	360 ppm 이하	2,580 ppm 이하

제 작 일 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부터 2003년 12월31일 까지)	1,400 ~ 1,600 미만	1.38% 이하	270 ppm 이하	2,730 ppm 이하	1.38% 이하	270 ppm 이하	1,890 ppm 이하	1.80% 이하	360 ppm 이하	3,270 ppm 이하	1.80% 이하	33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600 ~ 1,800 미만	1.23% 이하	240 ppm 이하	2,400 ppm 이하	1.23% 이하	240 ppm 이하	1,650 ppm 이하	1.59% 이하	312 ppm 이하	2,880 ppm 이하	1.59% 이하	300 ppm 이하	1,920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1.14% 이하	21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14% 이하	210 ppm 이하	1,50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2,64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740 ppm 이하
	2,000 이상	1.05% 이하	180 ppm 이하	1,980 ppm 이하	1.05% 이하	180 ppm 이하	1,350 ppm 이하	1.38% 이하	24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38% 이하	240 ppm 이하	1,590 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스차: 2004년 1월 1일 이후)	1,000 미만	2.31% 이하	420 ppm 이하	3,090 ppm 이하	2.31% 이하	420 ppm 이하	3,090 ppm 이하	3.00% 이하	540 ppm 이하	3,720 ppm 이하	3.00% 이하	540 ppm 이하	3,72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1.86% 이하	330 ppm 이하	2,550 ppm 이하	1.86% 이하	330 ppm 이하	2,490 ppm 이하	2.43% 이하	420 ppm 이하	3,060 ppm 이하	2.43% 이하	420 ppm 이하	3,000 ppm 이하
	1,200 ~ 1,400 미만	1.56% 이하	30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56% 이하	300 ppm 이하	2,070 ppm 이하	2.04% 이하	390 ppm 이하	2,640 ppm 이하	2.04% 이하	390 ppm 이하	2,490 ppm 이하

제 작 일 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1,400 ~ 1,600 미만	1.38% 이하	270 ppm 이하	1,980 ppm 이하	1.38% 이하	270 ppm 이하	1,830 ppm 이하	1.80% 이하	36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80% 이하	36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600~ 1,800 미만	1.23% 이하	240 ppm 이하	1,800 ppm 이하	1.23% 이하	240 ppm 이하	1,590 ppm 이하	1.59% 이하	300 ppm 이하	2,160 ppm 이하	1.59% 이하	300 ppm 이하	1,920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1.14% 이하	210 ppm 이하	1,590 ppm 이하	1.14% 이하	210 ppm 이하	1,47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92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770 ppm 이하
	2,000 이상	1.05% 이하	180 ppm 이하	1,470 ppm 이하	1.05% 이하	180 ppm 이하	1,320 ppm 이하	1.38% 이하	240 ppm 이하	1,770 ppm 이하	1.38% 이하	240 ppm 이하	1,590 ppm 이하

다.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산화물		
1988년 1월1일 부터 1997년	1,500 미만	8.73% 이하	690 ppm 이하	4,410 ppm 이하	6.60% 이하	600 ppm 이하	3,780 ppm 이하	11.34 %	900 ppm 이하	5,310 ppm 이하	8.58% 이하	780 ppm 이하	4,530 ppm 이하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2월31일까지	1,500 ~ 1,750 미만	7.80% 이하	630 ppm 이하	3,960 ppm 이하	5.88% 이하	540 ppm 이하	3,360 ppm 이하	10.14% 이하	810 ppm 이하	4,740 ppm 이하	7.65% 이하	720 ppm 이하	4,05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6.66% 이하	540 ppm 이하	3,390 ppm 이하	5.04% 이하	450 ppm 이하	2,880 ppm 이하	8.67% 이하	690 ppm 이하	4,050 ppm 이하	6.54% 이하	600 ppm 이하	3,45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6.03% 이하	480 ppm 이하	3,060 ppm 이하	4.56% 이하	420 ppm 이하	2,580 ppm 이하	7.83% 이하	630 ppm 이하	3,660 ppm 이하	5.94% 이하	540 ppm 이하	3,09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5.46% 이하	450 ppm 이하	2,760 ppm 이하	4.17% 이하	390 ppm 이하	2,340 ppm 이하	7.11% 이하	570 ppm 이하	3,300 ppm 이하	5.43% 이하	510 ppm 이하	2,82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4.86% 이하	390 ppm 이하	2,430 ppm 이하	3.72% 이하	360 ppm 이하	2,070 ppm 이하	6.33% 이하	510 ppm 이하	2,910 ppm 이하	4.83% 이하	480 ppm 이하	2,49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4.47% 이하	360 ppm 이하	2,220 ppm 이하	3.42% 이하	330 ppm 이하	1,890 ppm 이하	5.82% 이하	480 ppm 이하	2,670 ppm 이하	4.44% 이하	420 ppm 이하	2,250 ppm 이하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3,000 이상	4.11% 이하	330 ppm 이하	2,070 ppm 이하	3.15% 이하	300 ppm 이하	1,740 ppm 이하	5.34% 이하	450 ppm 이하	2,490 ppm 이하	4.11% 이하	390 ppm 이하	2,100 ppm 이하			
	1,500 미만	6.57% 이하	570 ppm 이하	3,630 ppm 이하	5.52% 이하	540 ppm 이하	3,360 ppm 이하	8.55% 이하	750 ppm 이하	4,350 ppm 이하	7.17% 이하	720 ppm 이하	4,05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5.88% 이하	510 ppm 이하	3,240 ppm 이하	4.92% 이하	480 ppm 이하	3,000 ppm 이하	7.65% 이하	690 ppm 이하	3,900 ppm 이하	6.39% 이하	630 ppm 이하	3,60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5.04% 이하	450 ppm 이하	2,790 ppm 이하	4.23% 이하	420 ppm 이하	2,580 ppm 이하	6.54% 이하	600 ppm 이하	3,360 ppm 이하	5.49% 이하	540 ppm 이하	3,09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4.56% 이하	420 ppm 이하	2,520 ppm 이하	3.84% 이하	390 ppm 이하	2,310 ppm 이하	5.94% 이하	540 ppm 이하	3,030 ppm 이하	4.98% 이하	510 ppm 이하	2,76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4.14% 이하	390 ppm 이하	2,280 ppm 이하	3.51% 이하	360 ppm 이하	2,100 ppm 이하	5.37% 이하	480 ppm 이하	2,730 ppm 이하	4.56% 이하	480 ppm 이하	2,520 ppm 이하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500 ~ 2,750 미만	3.72% 이하	360 ppm 이하	2,010 ppm 이하	3.15% 이하	330 ppm 이하	1,860 ppm 이하	4.83% 이하	450 ppm 이하	2,430 ppm 이하	4.11% 이하	420 ppm 이하	2,22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3.39% 이하	330 ppm 이하	1,860 ppm 이하	2.88% 이하	300 ppm 이하	1,710 ppm 이하	4.41% 이하	420 ppm 이하	2,220 ppm 이하	3.75% 이하	390 ppm 이하	2,040 ppm 이하
	3,000 이상	3.15% 이하	300 ppm 이하	1,710 ppm 이하	2.67% 이하	270 ppm 이하	1,560 ppm 이하	4.11% 이하	390 ppm 이하	2,070 ppm 이하	3.48% 이하	360 ppm 이하	1,890 ppm 이하
2001년 1월1일부터	1,500 미만	2.28% 이하	420 ppm 이하	3,630 ppm 이하	1.44% 이하	300 ppm 이하	1,980 ppm 이하	2.97% 이하	540 ppm 이하	4,350 ppm 이하	1.86% 이하	39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2.07% 이하	360 ppm 이하	3,240 ppm 이하	1.29% 이하	270 ppm 이하	1,770 ppm 이하	2.70% 이하	480 ppm 이하	3,900 ppm 이하	1.68% 이하	360 ppm 이하	2,100 ppm 이하
2003년 12월31일까지	1,750 ~ 2,000 미만	1.80% 이하	330 ppm 이하	2,79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890 ppm 이하	2.34% 이하	420 ppm 이하	3,360 ppm 이하	1.92% 이하	360 ppm 이하	2,250 ppm 이하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000 ~ 2,250 미만	1.65% 이하	300 ppm 이하	2,520 ppm 이하	1.35% 이하	240 ppm 이하	1,710 ppm 이하	2.16% 이하	390 ppm 이하	3,030 ppm 이하	1.77% 이하	330 ppm 이하	2,04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53% 이하	270 ppm 이하	2,280 ppm 이하	1.26% 이하	240 ppm 이하	1,530 ppm 이하	1.98% 이하	360 ppm 이하	2,760 ppm 이하	1.65% 이하	300 ppm 이하	1,86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38% 이하	240 ppm 이하	2,010 ppm 이하	1.14% 이하	210 ppm 이하	1,380 ppm 이하	1.80% 이하	330 ppm 이하	2,43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65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29% 이하	240 ppm 이하	1,860 ppm 이하	1.05% 이하	210 ppm 이하	1,260 ppm 이하	1.68% 이하	300 ppm 이하	2,220 ppm 이하	1.38% 이하	270 ppm 이하	1,500 ppm 이하
	3,000 이상	1.23% 이하	210 ppm 이하	1,710 ppm 이하	1.02% 이하	180 ppm 이하	1,140 ppm 이하	1.59% 이하	270 ppm 이하	2,070 ppm 이하	1.32% 이하	240 ppm 이하	1,380 ppm 이하
2004년 1월1일 이후	1,500 미만	2.28% 이하	420 ppm 이하	2,850 ppm 이하	1.44% 이하	300 ppm 이하	1,980 ppm 이하	2.97% 이하	540 ppm 이하	3,420 ppm 이하	1.86% 이하	39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2.07% 이하	360 ppm 이하	2,550 ppm 이하	1.29% 이하	270 ppm 이하	1,770 ppm 이하	2.70% 이하	480 ppm 이하	3,060 ppm 이하	1.68% 이하	360 ppm 이하	2,100 ppm 이하

연식	차량 무게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750 ~ 2,000 미만	1.80% 이하	330 ppm 이하	2,19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890 ppm 이하	2.34% 이하	420 ppm 이하	2,640 ppm 이하	1.92% 이하	360 ppm 이하	2,25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65% 이하	300 ppm 이하	1,980 ppm 이하	1.35% 이하	240 ppm 이하	1,680 ppm 이하	2.16% 이하	390 ppm 이하	2,370 ppm 이하	1.77% 이하	330 ppm 이하	2,04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53% 이하	270 ppm 이하	1,800 ppm 이하	1.26% 이하	240 ppm 이하	1,530 ppm 이하	1.98% 이하	360 ppm 이하	2,160 ppm 이하	1.65% 이하	300 ppm 이하	1,86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38% 이하	240 ppm 이하	1,590 ppm 이하	1.14% 이하	210 ppm 이하	1,380 ppm 이하	1.80% 이하	330 ppm 이하	1,920 ppm 이하	1.47% 이하	270 ppm 이하	1,65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29% 이하	240 ppm 이하	1,470 ppm 이하	1.05% 이하	210 ppm 이하	1,260 ppm 이하	1.68% 이하	300 ppm 이하	1,770 ppm 이하	1.38% 이하	270 ppm 이하	1,500 ppm 이하	
3,000 이상	1.23% 이하	210 ppm 이하	1,380 ppm 이하	1.02% 이하	180 ppm 이하	1,140 ppm 이하	1.59% 이하	270 ppm 이하	1,650 ppm 이하	1.32% 이하	240 ppm 이하	1,380 ppm 이하	

라.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7.53% 이하	600ppm 이하	5,850ppm 이하	9.78% 이하	780ppm 이하	7,02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6.66% 이하	540ppm 이하	5,160ppm 이하	8.67% 이하	690ppm 이하	6,21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6.03% 이하	480ppm 이하	4,650ppm 이하	7.83% 이하	630ppm 이하	5,58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5.46% 이하	450ppm 이하	4,200ppm 이하	7.11% 이하	570ppm 이하	5,04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4.86% 이하	390ppm 이하	3,690ppm 이하	6.33% 이하	510ppm 이하	4,44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4.47% 이하	360ppm 이하	3,360ppm 이하	5.82% 이하	480ppm 이하	4,02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4.11% 이하	330ppm 이하	3,120ppm 이하	5.34% 이하	450ppm 이하	3,750ppm 이하	
	3,250 이상	4.08% 이하	330ppm 이하	3,120ppm 이하	5.31% 이하	450ppm 이하	3,720ppm 이하	
	2001년 1월 2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5.67% 이하	510ppm 이하	5,160ppm 이하	7.38% 이하	660ppm 이하	6,21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5.04% 이하	450ppm 이하	4,590ppm 이하	6.54% 이하	600ppm 이하	5,49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4.56% 이하	420ppm 이하	4,110ppm 이하	5.94% 이하	540ppm 이하	4,92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4.14% 이하	390ppm 이하	3,720ppm 이하	5.37% 이하	480ppm 이하	4,44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3.72% 이하	330ppm 이하	3,270ppm 이하	4.83% 이하	450ppm 이하	3,93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3.39% 이하	300ppm 이하	2,970ppm 이하	4.41% 이하	420ppm 이하	3,570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3,000 ~ 3,250 미만	3.15% 이하	300ppm 이하	2,760ppm 이하	4.11% 이하	390ppm 이하	3,330ppm 이하
	3,250 이상	3.12% 이하	300ppm 이하	2,760ppm 이하	4.05% 이하	390ppm 이하	3,33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750 미만	5.67% 이하	510ppm 이하	4,500ppm 이하	7.38% 이하	660ppm 이하	5,40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5.04% 이하	450ppm 이하	3,990ppm 이하	6.54% 이하	600ppm 이하	4,77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4.56% 이하	420ppm 이하	3,570ppm 이하	5.94% 이하	540ppm 이하	4,29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4.14% 이하	390ppm 이하	3,240ppm 이하	5.37% 이하	480ppm 이하	3,87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3.72% 이하	330ppm 이하	2,850ppm 이하	4.83% 이하	450ppm 이하	3,42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3.39% 이하	300ppm 이하	2,610ppm 이하	4.41% 이하	420ppm 이하	3,12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3.15% 이하	300ppm 이하	2,430ppm 이하	4.11% 이하	390ppm 이하	2,910ppm 이하
	3,250 이상	3.12% 이하	300ppm 이하	2,430ppm 이하	4.05% 이하	390ppm 이하	2,910ppm 이하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부하검사방법)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1) 경자동차

제작일자	차중 검사항목	휘발유사용 경자동차			가스사용 경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97년 12월 31일 이전		4.20% 이하	1,090ppm 이하	2,110ppm 이하	5.46% 이하	1,410ppm 이하	2,530ppm 이하

제작일자	차중 검사항목	휘발유사용 경자동차			가스사용 경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40% 이하	390ppm 이하	1,800ppm 이하	3.12% 이하	500ppm 이하	2,16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0% 이하	210ppm 이하	1,640ppm 이하	1.56% 이하	270ppm 이하	1,960ppm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스차: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 이하	180ppm 이하	1,240ppm 이하	1.30% 이하	230ppm 이하	1,490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스차 : 2008년 1월 1일 이후)		1.00% 이하	180ppm 이하	1,240ppm 이하	1.30% 이하	180ppm 이하	1,490ppm 이하

2) 승용차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000 미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000 ~ 1,200 미만	1.83% 이하	280ppm 이하	1,990ppm 이하	1.83% 이하	210ppm 이하	1,800ppm 이하	2.38% 이하	370ppm 이하	2,39ppm 이하	2.38% 이하	273ppm 이하	2,160ppm 이하
	1,200 ~ 1,400 미만	1.47% 이하	230ppm 이하	1,590ppm 이하	1.47% 이하	170ppm 이하	1,440ppm 이하	1.91% 이하	300ppm 이하	1,910ppm 이하	1.91% 이하	221ppm 이하	1,728ppm 이하
		1.21% 이하	190ppm 이하	1,310ppm 이하	1.21% 이하	140ppm 이하	1,190ppm 이하	1.57% 이하	250ppm 이하	1,580ppm 이하	1.57% 이하	182ppm 이하	1,428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종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400 ~ 1,600 미만	1.08 이하	170 ppm 이하	1.160 이하	1.08 이하	130 이하	1.050 이하	1.40 이하	220 이하	1.400 이하	1.40 이하	169 이하	1,260 이하
	1,600 ~ 1,800 미만	0.94 이하	150 ppm 이하	1,010 이하	0.94 이하	120 이하	920 이하	1.22 이하	190 이하	1,220 이하	1.22 이하	156 이하	1,104 이하
	1,800 ~ 2,000 미만	0.87 이하	140 ppm 이하	930 이하	0.87 이하	110 이하	840 이하	1.13 이하	180 이하	1,120 이하	1.13 이하	143 이하	1,008 이하
	2,000 이상	0.79 이하	120 ppm 이하	840 이하	0.79 이하	100 이하	760 이하	1.03 이하	160 이하	1,010 이하	1.03 이하	130 이하	912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000 미만	1.22 이하	220 ppm 이하	1,550 이하	1.00 이하	180 이하	1,400 이하	1.59 이하	280 이하	1,860 이하	1.30 이하	234 이하	1,680 이하
2000년 12월 31일까지	1,000 ~ 1,200 미만	0.99 이하	180 ppm 이하	1,240 이하	0.81 이하	150 이하	1,120 이하	1.29 이하	230 이하	1,490 이하	1.05 이하	195 이하	1,344 이하
	1,200 ~ 1,400 미만	0.82 이하	150 ppm 이하	1,030 이하	0.67 이하	120 이하	930 이하	1.07 이하	190 이하	1,230 이하	0.87 이하	156 이하	1,116 이하
	1,400 ~ 1,600 미만	0.73 이하	130 ppm 이하	910 이하	0.60 이하	110 이하	820 이하	0.95 이하	170 이하	1,090 이하	0.78 이하	143 이하	984 이하
	1,600 ~ 1,800 미만	0.65 이하	120 ppm 이하	800 이하	0.53 이하	100 이하	720 이하	0.85 이하	150 이하	960 이하	0.69 이하	130 이하	864 이하

제작일자	차량종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800 ~ 2,000 미만	0.60 이하	110 ppm 이하	730 이하	0.49 이하	90 이하	660 이하	0.78 이하	140 이하	880 이하	0.64 이하	117 이하	792 이하
	2,000 이상	0.55 이하	100 ppm 이하	660 이하	0.45 이하	80 이하	600 이하	0.72 이하	130 이하	790 이하	0.59 이하	104 이하	72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1,000 미만	0.77 이하	140 ppm 이하	1,550 이하	0.77 이하	140 이하	1,100 이하	1.00 이하	180 이하	1,860 이하	1.00 이하	180 이하	1,320 이하
2005년 12월 31일까지	1,000 ~ 1,200 미만	0.62 이하	110 ppm 이하	1,240 이하	0.62 이하	110 이하	870 이하	0.81 이하	140 이하	1,490 이하	0.81 이하	140 이하	1,040 이하
	1,200 ~ 1,400 미만	0.52 이하	100 ppm 이하	1,030 이하	0.52 이하	100 이하	720 이하	0.68 이하	130 이하	1,230 이하	0.68 이하	120 이하	86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400 ~ 1,600 미만	0.46 이하	90 ppm 이하	910 이하	0.46 이하	90 이하	630 이하	0.60 이하	120 이하	1,090 이하	0.60 이하	110 이하	730 이하
	1,600 ~ 1,800 미만	0.41 이하	80 ppm 이하	800 이하	0.41 이하	80 이하	550 이하	0.53 이하	104 이하	960 이하	0.53 이하	100 이하	640 이하
	1,800 ~ 2,000 미만	0.38 이하	70 ppm 이하	730 이하	0.38 이하	70 이하	500 이하	0.49 이하	90 이하	880 이하	0.49 이하	90 이하	580 이하
	2,000 이상	0.35 이하	60 ppm 이하	660 이하	0.35 이하	60 이하	450 이하	0.46 이하	80 이하	790 이하	0.46 이하	80 이하	530 이하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006년 1월 1일 이후(가스차: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0 미만	0.77 % 이하	140 ppm 이하	1,030 ppm 이하	0.77 % 이하	59 ppm 이하	1,080 ppm 이하	1.00 % 이하	180 ppm 이하	1,240 ppm 이하	1.00 % 이하	18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0.62 % 이하	110 ppm 이하	850 ppm 이하	0.62 % 이하	49 ppm 이하	850 ppm 이하	0.81 % 이하	140 ppm 이하	1,020 ppm 이하	0.81 % 이하	140 ppm 이하	
	1,200 ~ 1,400 미만	0.52 % 이하	100 ppm 이하	730 ppm 이하	0.52 % 이하	42 ppm 이하	690 ppm 이하	0.68 % 이하	130 ppm 이하	880 ppm 이하	0.68 % 이하	130 ppm 이하	
	1,400 ~ 1,600 미만	0.46 % 이하	90 ppm 이하	660 ppm 이하	0.46 % 이하	37 ppm 이하	610 ppm 이하	0.60 % 이하	120 ppm 이하	790 ppm 이하	0.60 % 이하	120 ppm 이하	
	1,600 ~ 1,800 미만	0.41 % 이하	80 ppm 이하	600 ppm 이하	0.41 % 이하	33 ppm 이하	530 ppm 이하	0.53 % 이하	100 ppm 이하	720 ppm 이하	0.53 % 이하	100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0.38 % 이하	70 ppm 이하	530 ppm 이하	0.38 % 이하	30 ppm 이하	49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64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2,000 이상	0.35 % 이하	60 ppm 이하	490 ppm 이하	0.35 % 이하	30 ppm 이하	440 ppm 이하	0.46 % 이하	80 ppm 이하	590 ppm 이하	0.46 % 이하	80 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가스차:2008년 1월 1일 이후)	1,000 미만	0.77 % 이하	140 ppm 이하	1,030 ppm 이하	0.77 % 이하	59 ppm 이하	1,080 ppm 이하	1.00 % 이하	180 ppm 이하	1,240 ppm 이하	1.00 % 이하	180 ppm 이하	
	1,000 ~ 1,200 미만	0.62 % 이하	110 ppm 이하	850 ppm 이하	0.62 % 이하	49 ppm 이하	850 ppm 이하	0.81 % 이하	140 ppm 이하	1,020 ppm 이하	0.81 % 이하	14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200 ~ 1,400 미만	0.52 % 이하	100 ppm 이하	730 ppm 이하	0.52 % 이하	42 ppm 이하	690 ppm 이하	0.68 % 이하	130 ppm 이하	880 ppm 이하	0.68 % 이하	130 ppm 이하	
	1,400 ~ 1,600 미만	0.46 % 이하	90 ppm 이하	660 ppm 이하	0.46 % 이하	37 ppm 이하	610 ppm 이하	0.60 % 이하	120 ppm 이하	790 ppm 이하	0.60 % 이하	120 ppm 이하	
	1,600 ~ 1,800 미만	0.41 % 이하	80 ppm 이하	600 ppm 이하	0.41 % 이하	33 ppm 이하	530 ppm 이하	0.53 % 이하	100 ppm 이하	720 ppm 이하	0.53 % 이하	100 ppm 이하	
	1,800 ~ 2,000 미만	0.38 % 이하	70 ppm 이하	530 ppm 이하	0.38 % 이하	30 ppm 이하	49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64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2,000 이상	0.35 % 이하	60 ppm 이하	490 ppm 이하	0.35 % 이하	30 ppm 이하	440 ppm 이하	0.46 % 이하	80 ppm 이하	590 ppm 이하	0.46 % 이하	80 ppm 이하	

3)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500 미만	2.91 % 이하	230 ppm 이하	1,470 ppm 이하	2.20 % 이하	200 ppm 이하	1,260 ppm 이하	3.78 % 이하	300 ppm 이하	1,770 ppm 이하	2.86 % 이하	26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2월 31일 까지	1,500 ~ 1,750 미만	2.60 % 이하	210 ppm 이하	1,320 ppm 이하	1.96 % 이하	180 ppm 이하	1,120 ppm 이하	3.38 % 이하	270 ppm 이하	1,580 ppm 이하	2.55 % 이하	240 ppm 이하	1,35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2.22 % 이하	180 ppm 이하	1,130 ppm 이하	1.68 % 이하	150 ppm 이하	960 ppm 이하	2.89 % 이하	230 ppm 이하	1,350 ppm 이하	2.18 % 이하	200 ppm 이하	1,15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2.01 % 이하	160 ppm 이하	1,020 ppm 이하	1.52 % 이하	140 ppm 이하	860 ppm 이하	2.61 % 이하	210 ppm 이하	1,220 ppm 이하	1.98 % 이하	180 ppm 이하	1,03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82 % 이하	150 ppm 이하	920 ppm 이하	1.39 % 이하	130 ppm 이하	780 ppm 이하	2.37 % 이하	190 ppm 이하	1,100 ppm 이하	1.81 % 이하	170 ppm 이하	94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62 % 이하	130 ppm 이하	810 ppm 이하	1.24 % 이하	120 ppm 이하	690 ppm 이하	2.11 % 이하	170 ppm 이하	970 ppm 이하	1.61 % 이하	160 ppm 이하	83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49 % 이하	120 ppm 이하	740 ppm 이하	1.14 % 이하	110 ppm 이하	630 ppm 이하	1.94 % 이하	160 ppm 이하	890 ppm 이하	1.48 % 이하	140 ppm 이하	750 ppm 이하
	3,000 이상	1.37 % 이하	110 ppm 이하	690 ppm 이하	1.05 % 이하	100 ppm 이하	580 ppm 이하	1.78 % 이하	150 ppm 이하	830 ppm 이하	1.37 % 이하	130 ppm 이하	70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1,500 미만	2.19 % 이하	190 ppm 이하	1,210 ppm 이하	1.84 % 이하	180 ppm 이하	1,120 ppm 이하	2.85 % 이하	250 ppm 이하	1,450 ppm 이하	2.39 % 이하	240 ppm 이하	1,35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1.96 % 이하	170 ppm 이하	1,080 ppm 이하	1.64 % 이하	160 ppm 이하	1,000 ppm 이하	2.55 % 이하	230 ppm 이하	1,300 ppm 이하	2.13 % 이하	210 ppm 이하	1,20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 이하	150 ppm 이하	930 ppm 이하	1.41 % 이하	140 ppm 이하	860 ppm 이하	2.18 % 이하	200 ppm 이하	1,120 ppm 이하	1.83 % 이하	180 ppm 이하	1,03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 이하	140 ppm 이하	840 ppm 이하	1.28 % 이하	130 ppm 이하	770 ppm 이하	1.98 % 이하	180 ppm 이하	1,010 ppm 이하	1.66 % 이하	170 ppm 이하	92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38 % 이하	130 ppm 이하	760 ppm 이하	1.17 % 이하	120 ppm 이하	700 ppm 이하	1.79 % 이하	160 ppm 이하	910 ppm 이하	1.52 % 이하	160 ppm 이하	84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24 % 이하	120 ppm 이하	670 ppm 이하	1.05 % 이하	110 ppm 이하	620 ppm 이하	1.61 % 이하	150 ppm 이하	810 ppm 이하	1.37 % 이하	140 ppm 이하	74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13 % 이하	110 ppm 이하	620 ppm 이하	0.96 % 이하	100 ppm 이하	570 ppm 이하	1.47 % 이하	140 ppm 이하	740 ppm 이하	1.25 % 이하	130 ppm 이하	68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3,000 이상	1.05 % 이하	100 ppm 이하	570 ppm 이하	0.89 % 이하	90 ppm 이하	520 ppm 이하	1.37 % 이하	130 ppm 이하	690 ppm 이하	1.16 % 이하	120 ppm 이하	630 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1,500 미만	0.76 % 이하	140 ppm 이하	1,210 ppm 이하	0.48 % 이하	100 ppm 이하	660 ppm 이하	0.99 % 이하	180 ppm 이하	1,450 ppm 이하	0.62 % 이하	130 ppm 이하	79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0.69 % 이하	120 ppm 이하	1,080 ppm 이하	0.43 % 이하	90 ppm 이하	590 ppm 이하	0.90 % 이하	160 ppm 이하	1,300 ppm 이하	0.56 % 이하	120 ppm 이하	70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0.60 % 이하	110 ppm 이하	93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630 ppm 이하	0.78 % 이하	140 ppm 이하	1,120 ppm 이하	0.64 % 이하	120 ppm 이하	75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0.55 % 이하	100 ppm 이하	840 ppm 이하	0.45 % 이하	80 ppm 이하	570 ppm 이하	0.72 % 이하	130 ppm 이하	1,010 ppm 이하	0.59 % 이하	110 ppm 이하	68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0.51 % 이하	90 ppm 이하	760 ppm 이하	0.42 % 이하	80 ppm 이하	510 ppm 이하	0.66 % 이하	120 ppm 이하	920 ppm 이하	0.55 % 이하	100 ppm 이하	620 ppm 이하
	2,500 ~ 2,750 미만	0.46 % 이하	80 ppm 이하	670 ppm 이하	0.38 % 이하	70 ppm 이하	460 ppm 이하	0.60 % 이하	110 ppm 이하	81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55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750 ~ 3,000 미만	0.43 % 이하	80 ppm 이하	620 ppm 이하	0.35 % 이하	70 ppm 이하	420 ppm 이하	0.56 % 이하	100 ppm 이하	740 ppm 이하	0.46 % 이하	90 ppm 이하	500 ppm 이하
	3,000 이상	0.41 % 이하	70 ppm 이하	570 ppm 이하	0.34 % 이하	60 ppm 이하	380 ppm 이하	0.53 % 이하	90 ppm 이하	690 ppm 이하	0.44 % 이하	80 ppm 이하	460 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500 미만	0.76 % 이하	140 ppm 이하	950 ppm 이하	0.48 % 이하	100 ppm 이하	660 ppm 이하	0.99 % 이하	180 ppm 이하	1,140 ppm 이하	0.62 % 이하	130 ppm 이하	790 ppm 이하
	1,500 ~ 1,750 미만	0.69 % 이하	120 ppm 이하	850 ppm 이하	0.43 % 이하	90 ppm 이하	590 ppm 이하	0.90 % 이하	160 ppm 이하	1,020 ppm 이하	0.56 % 이하	120 ppm 이하	700 ppm 이하
	1,750 ~ 2,000 미만	0.60 % 이하	110 ppm 이하	73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630 ppm 이하	0.78 % 이하	140 ppm 이하	880 ppm 이하	0.64 % 이하	120 ppm 이하	750 ppm 이하
	2,000 ~ 2,250 미만	0.55 % 이하	100 ppm 이하	660 ppm 이하	0.45 % 이하	80 ppm 이하	560 ppm 이하	0.72 % 이하	130 ppm 이하	790 ppm 이하	0.59 % 이하	110 ppm 이하	680 ppm 이하
	2,250 ~ 2,500 미만	0.51 % 이하	90 ppm 이하	600 ppm 이하	0.42 % 이하	80 ppm 이하	510 ppm 이하	0.66 % 이하	120 ppm 이하	720 ppm 이하	0.55 % 이하	100 ppm 이하	620 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 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500 ~ 2,750 미만	0.46 % 이하	80 ppm 이하	530 ppm 이하	0.38 % 이하	70 ppm 이하	460 ppm 이하	0.60 % 이하	110 ppm 이하	640 ppm 이하	0.49 % 이하	90 ppm 이하	550 ppm 이하
	2,750 ~ 3,000 미만	0.43 % 이하	80 ppm 이하	490 ppm 이하	0.35 % 이하	70 ppm 이하	420 ppm 이하	0.56 % 이하	100 ppm 이하	590 ppm 이하	0.46 % 이하	90 ppm 이하	500 ppm 이하
	3,000 이상	0.41 % 이하	70 ppm 이하	460 ppm 이하	0.34 % 이하	60 ppm 이하	380 ppm 이하	0.53 % 이하	90 ppm 이하	550 ppm 이하	0.44 % 이하	80 ppm 이하	460 ppm 이하

4)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제작일자	차량중량(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2.51% 이하	200ppm 이하	1,950ppm 이하	3.26% 이하	260ppm 이하	2,34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2.22% 이하	180ppm 이하	1,720ppm 이하	2.89% 이하	230ppm 이하	2,07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2.01% 이하	160ppm 이하	1,550ppm 이하	2.61% 이하	210ppm 이하	1,86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82% 이하	150ppm 이하	1,400ppm 이하	2.37% 이하	190ppm 이하	1,68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62% 이하	130ppm 이하	1,230ppm 이하	2.11% 이하	170ppm 이하	1,480ppm 이하

제작일자	차량중량(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750 ~ 3,000 미만	1.49% 이하	120ppm 이하	1,120ppm 이하	1.94% 이하	160ppm 이하	1,34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1.37% 이하	110ppm 이하	1,040ppm 이하	1.78% 이하	150ppm 이하	1,250ppm 이하
	3,250 이상	1.36% 이하	110ppm 이하	1,040ppm 이하	1.77% 이하	150 ppm 이하	1,24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1.89% 이하	170ppm 이하	1,720ppm 이하	2.46% 이하	220ppm 이하	2,07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이하	150ppm 이하	1,530ppm 이하	2.18% 이하	200ppm 이하	1,83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이하	140ppm 이하	1,370ppm 이하	1.98% 이하	180ppm 이하	1,64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38% 이하	130ppm 이하	1,240ppm 이하	1.79% 이하	160ppm 이하	1,48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24% 이하	110ppm 이하	1,090ppm 이하	1.61% 이하	150ppm 이하	1,31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13% 이하	100ppm 이하	990ppm 이하	1.47% 이하	140ppm 이하	1,19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3,000 ~ 3,250 미만	1.05% 이하	100ppm 이하	920ppm 이하	1.37% 이하	130ppm 이하	1,110ppm 이하
	3,250 이상	1.04% 이하	100ppm 이하	920ppm 이하	1.35% 이하	130ppm 이하	1,110ppm 이하
	1,750 미만	1.89% 이하	170ppm 이하	1,500ppm 이하	2.46% 이하	220ppm 이하	1,80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이하	150ppm 이하	1,330ppm 이하	2.18% 이하	200ppm 이하	1,59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이하	140ppm 이하	1,190ppm 이하	1.98% 이하	180ppm 이하	1,430ppm 이하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작일자	차량종량(kg)	휘발유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2,250 ~ 2,500 미만		1.38% 이하	130ppm 이하	1,080ppm 이하	1.79% 이하	160ppm 이하	1,29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24% 이하	110ppm 이하	950ppm 이하	1.61% 이하	150ppm 이하	1,14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13% 이하	100ppm 이하	870ppm 이하	1.47% 이하	140ppm 이하	1,04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1.05% 이하	100ppm 이하	810ppm 이하	1.37% 이하	130ppm 이하	970ppm 이하
3,250 이상		1.04% 이하	100ppm 이하	810ppm 이하	1.35% 이하	130ppm 이하	970ppm 이하

나. 경유사용 자동차

제작일자	검사항목 적용일자	매연		질소산화물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40%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35% 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15% 이하	-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8% 이하	-
2018년 1월 1일 이후		-	8% 이하	2,000ppm 이하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다음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	제작일자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2.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별표 17 제2호아목 비고 제7호가목·나목 및 같은 비고 제9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3,000ppm 이하로 한다.

4.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자동차

영 제54조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구조변경검사(원동기·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제3호의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별표 21의2] <신설 2013.2.1>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3제2항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별표 22] <개정 2019. 12. 20.>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 검사 전 확인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 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야 함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확용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매연여과장치 및 그 밖에 맨능 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3)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소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
	4)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이전 또는 최종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나. 배출가스 검사대상 자동차의 상태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 1)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가) 수냉식 기관의 경우 계기판 온도가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이 1/4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원동기실 덮개를 열고 5분 이상 지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 나) 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는 원동기를 시동하여 5분이 지난 후 측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2) 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된 상태)인지를 확인
	3) 냉방장치 등 부속장치는 가동을 정지할 것	냉·난방장치, 서리 제거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
다.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의 측정결과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모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p>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p> <p>(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500~1,000rpm) 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cm 이상 삽입한다.</p> <p>(2)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 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p> <p>나) 고속공회전 검사모드(High Speed Idle Mode)</p> <p>(1) 저속공회전모드에서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검사가 끝나면, 즉시 정지가동 상태에서 원동기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유지 시킨다(승용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2)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p>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인플(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 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라. 매연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연을 측정할 경우 측정된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정기검사의 광투과식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p>가)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p> <p>나)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m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5cm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p> <p>다)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으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로 한다.</p> <p>라) 위 다)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된 매연 농도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연속 측정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거나 최종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최대 5회까지 측정하면서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이고 측정치의 산술평균값도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마치고 이를 최종측정치로 한다.</p> <p>마) 위 라)의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5회까지 반복 측정하여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p>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 5%를 초과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3회(3회, 4회, 5회)의 측정치를 산술하여 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비고

1.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격회전전수로 수정·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을 검사에서 검사대상 자동차의 엔진회전수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또는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범위를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검사모드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 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와 서로 일치할 것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2. 배출가스 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확인	가. 검사를 위한 정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확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등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 상태를 확인
	다.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라.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계기판 엔진회전속도, 온도계 등을 확인
	마. 엔진공회전 및 가속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	1) 엔진공회전속도는 가능한 제작 당시의 엔진회전속도를 준용 2) 제작 당시의 엔진공회전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엔진공회전속도 확인 가) 500cc 이하: 2,000rpm 이하 나) 500cc 초과: 1,500rpm 이하 3)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바.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상태)인지를 확인
3.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정지자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cm 이상 삽입한다. 만약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의 충분한 흡입을 위해 시료채취관을 삽입한 후 20초 이상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3)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20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비고: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3] <개정 2013.2.1>

[별표 23의2] <개정 2018. 3. 2.>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기술능력

(제87조제2항 관련)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

(제87조제4항 관련)

장비	기술능력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비고

1.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와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술능력 중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증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소형·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비고: 1.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장비명	비 고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와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 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별표 25] <개정 2019. 12. 20.>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비고 : 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란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이르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로 설정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8.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0일(변경등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외의 기간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그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1)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2)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 3)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코올사용 자동차
- 4) 소방용 자동차(지휘차, 순찰차 및 구급차를 포함한다)
- 5) 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사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자동차

나. 배출가스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차대동력계상에서 검사 중에 자동차의 결함 발생 또는 엔진출력 부족 등으로 검사모드가 구현되지 아니하여 배출가스검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즉시 중단하고 부적합 처리하여 측정대상자동차를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한 후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라.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를 가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이 표에서 정한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능 및 기능검사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 배출가스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 확인	1) 검사를 위한 정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2) 부속장치는 작동을 금지할 것	에어컨, 히터, 서리제거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
	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아닐 것	정화용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그 밖에 관능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4)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닐 것	조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
	5)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아닐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6)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닐 것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
	7)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 등이 누설되지 아닐 것	엔진오일 양과 상태의 적정 여부 및 오일, 냉각수, 연료의 누설 여부 확인
	8) 엔진, 변속기 등에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것	냉각팬,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배기장치 등이 안전상 위험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확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1)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증기저장캐니스터의 연결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나) 크랭크케이스 저장연결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다) 연료호스 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라) 연료계통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2) 배출가스 전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정화율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매연여과장치 등의 정상 부착 여부 확인 나) 정화율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 보호판 및 방열판 등의 훼손 여부 확인 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 관련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가) 정화율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매연여과장치 등의 정상 부착 여부 확인 나) 정화율 촉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 보호판 및 방열판 등의 훼손 여부 확인 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여과장치 관련 부품(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재순환 밸브의 부착 여부 확인 나) 재순환 밸브의 수정 또는 파손 여부를 확인 다) 진공밸브 등 부속장치의 유무, 우회로 설치 여부 및 변경 여부를 확인 라) 진공호스 및 라인 설치 여부, 호스 폐쇄 여부 확인	가) 재순환 밸브의 부착 여부 확인 나) 재순환 밸브의 수정 또는 파손 여부를 확인 다) 진공밸브 등 부속장치의 유무, 우회로 설치 여부 및 변경 여부를 확인 라) 진공호스 및 라인 설치 여부, 호스 폐쇄 여부 확인
4) 엔진의 가속상태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가)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나) 최대로 가속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가)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나) 최대로 가속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5)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스로틀포지션센서 등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센서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나) 엔진공회전속도가 정상(500~1,000rpm 이내)인지를 확인	가)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센서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나) 엔진공회전속도가 정상(500~1,000rpm 이내)인지를 확인
6) 그 밖에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그 밖에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그 밖에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3. 배출가스검사

가. 부하검사방법의 적용

사용연료	부하검사방법	적용차종
휘발유·알코올·가스	정속모드(ASM2525모드: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를 포함한다)	모든 자동차
경유	한국형 경유 147(KD147모드) 검사방법	1) 승용자동차 2) 중형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	1)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 중형 화물·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비고

1. 자동차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경유사용 자동차 중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

나. 부하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에서는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정속모드(ASM2525모드)에서는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맞을 것	(1) 예열모드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상에서 25%의 도로부하에서 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40km/h의 속도에 적합한 변속기(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한다)하여 40초 동안 예열한다. (2)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p>(가) 예열모드가 끝나면 공회전 (500 ~ 1,000rpm)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cm 이상 삽입한다.</p> <p>(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p> <p>(3) 정속모드(ASM2525모드)</p> <p>(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가 끝나면 즉시 차대동력계에서 25%의 도로부하로 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40km/h의 속도에 적합한 변속기어(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한다]에서 검사모드 시작 2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p>(나)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고 기록한다.</p>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p>(다) 차대동력계에서의 배출가스 시험중량은 차량중량에 136kg을 더한 수치로 한다.</p>
2) 매연(Lug- Down 3모드는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최대출력검사를 포함한다) 및 질소산화물(해당자동차에 한정한다)	가) 해당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광투과식 분석방법(부유유량 채취방법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매연농도와 경우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질소산화물 농도가 부하검사방법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맞아야 한다.	<p>(1)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p> <p>(가)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40% 부하에서 50±6.2km/h의 차량속도로 4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 다음 환경부장관이 정한 주행주기와 도로부하마력에 따라 총 147초 동안 0km/h(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최고 83.5km/h까지 적정한 변속기어를 선택하면서 주행한다.</p> <p>(나) 매연측정값은 최고측정치를 중심으로 매 1초 동안 전후 0.25초마다 측정된 5개의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한다. 다만, 1초 동안 산술평균값이 매연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연측정값을 산출한다.</p> <p>①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20%를 초과하면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산출한다.</p>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p>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는 부하검사방법 1모드에서 엔진정격회전수, 엔진정격최대출력의 측정결과가 엔진정격회전수의 ±5% 이내이고, 이</p>	<p>로 하고, 2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p> <p>②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5% 이하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10%를 초과하면 1초 동안의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1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p> <p>③ 산술평균값(A, B)이 매연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p> <p>(다) 질소산화물 측정값은 검사모드를 시작하면서 매 7초 동안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최종측정치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p> <p>(라)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산출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 단위로 산출한다.</p> <p>(1)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p> <p>(가)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p>		<p>때 측정된 엔진최대출력이 엔진정격출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엔진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은 엔진정격출력의 50%로 산출한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s 단위로 산출한 값으로 한다.</p>	<p>에서 엔진정격출력의 40% 부하에서 $50 \pm 6.2 \text{ km/h}$의 차속도로 4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다.</p> <p>(나) 자동차의 예열이 끝나면 즉시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상태에서 자동차 속도가 가능한 70 km/h에 근접하도록 하되 100 km/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속기어를 선정(자동변속기는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여 부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모드를 시작한다. 다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정격회전수에서 차속이 85 km/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모드를 시작한다.</p> <p>(다) 검사모드는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형성하여 각 검사모드에서 모드 시작 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되면 엔진회전수, 최대출력 및 매연 측정을 시작하여 10초 동안 측정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라) 엔진회전수 및 최대출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각 10rpm, 1ps단위로,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단위로 산출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 무부하검사방법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무부하검사방법은 별표 22의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경유사용 자동차는 광투과식 검사모드를 적용한다.

[별표 27] 삭제 <2013.2.1>

[별표 28] 삭제 <2013.2.1>

[별표 29] 삭제 <2013.2.1>

[별표 30] 삭제 <2013.2.1>

[별표 30의2] <개정 2015.12.2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1. 삭제 <2015.12.22.>
2.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 및 기준(원격측정기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봉인이 되어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및 관련된 부품(촉매장치·가버너 등)을 정비한 때에는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별표 31] <개정 2013.2.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앞면)

운 행정 지

자동차등록번호 :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km

운행정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함.

(인)

134mm × 190mm(보존용지(1급)120g/㎡)

(뒷면)

이 표지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 비고 :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2.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 유의사항 : 1. 이 표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표는 운행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합니다.
 3. 이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별표 32] 삭제 <2013.2.1>

[별표 33] <개정 2015.7.2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항 목	제 조 기 준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4(21)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납 함량 (g/ℓ)	0.013 이하
인 함량 (g/ℓ)	0.0013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황 함량 (ppm)	10 이하
증기압 (kPa, 37.8℃)	60 이하
90% 유출온도 (℃)	170 이하

-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경유

항 목	제 조 기 준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밀도 @15℃ (kg/m³)	815 이상 835 이하

항 목	제 조 기 준
황함량 (ppm)	10 이하
다환방향족 (무게%)	5 이하
유효성 (μm)	400 이하
방향족 화합물(무게%)	30 이하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52 이상

비고: 1.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항 목	제 조 기 준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밀도 @15°C (kg/m³)	815 이상 845 이하
황함량 (ppm)	30 이하
다환방향족 (무게%)	11 이하
유효성 (μm)	460 이하
방향족 화합물(무게%)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2. 흑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 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흑한기 적용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LPG

항 목	제 조 기 준	
황 함량 (ppm)	40 이하	
증기압 (40°C, MPa)	1.27 이하	
밀 도 (15°C, kg/m³)	500 이상 620 이하	
동판부식 (40°C, 1시간)	1 이하	
100ml 증발잔류물(ml)	0.05 이하	
프로판 함량 (mol%)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5 이상 35 이하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 이하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라. 바이오디젤(BD100)

항목	제조기준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96.5 이상	
잔류탄소분 (무게 %)	0.1 이하	
동점도(40°C, mm²/s)	1.9 이상 5.0 이하	
황분 (mg/kg)	10 이하	
회분 (무게 %)	0.01 이하	
밀도@ 15°C (kg/m³)	860 이상 900 이하	
전산가 (mg KOH/g)	0.50 이하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0.80 이하	
디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유리 글리세린 (무게 %)	0.02 이하	
총 글리세린 (무게 %)	0.24 이하	
산화안정도(110°C, h)	6 이상	
메탄올 (무게 %)	0.2 이하	
알카리금속 (mg/kg)	(Na + K)	5 이하
	(Ca + Mg)	5 이하
인 (mg/kg)	10 이하	

비고: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마. 천연가스

항 목	제조기준
메 탄(부피 %)	88.0 이상
에 탄(부피 %)	7.0 이하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5.0 이하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0.2 이하
황 분 (ppm)	40 이하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4.5 이하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바. 바이오가스

항목	제조기준
메탄(부피 %)	95.0 이상
수분(mg/Nm ³)	32 이하
황분(ppm)	10 이하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5.0 이하

2. 첨가제 제조기준

- 가.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맞아야 하며, 혼합된 성분 중 카드뮴(Cd)·구리(Cu)·망간(Mn)·니켈(Ni)·크롬(Cr)·철(Fe)·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mg/ℓ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

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단위	기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kg/ m ³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3)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mg/kg	-	5
불용해성물질	mg/kg	-	20
인(PO4)	mg/kg	-	0.5
칼슘(Ca)	mg/kg	-	0.5
철(Fe)	mg/kg	-	0.5
구리(Cu)	mg/kg	-	0.2
아연(Zn)	mg/kg	-	0.2
크롬(Cr)	mg/kg	-	0.2
니켈(Ni)	mg/kg	-	0.2
알루미늄(Al)	mg/kg	-	0.5
마그네슘(Mg)	mg/kg	-	0.5
나트륨(Na)	mg/kg	-	0.5
칼륨(K)	mg/kg	-	0.5

비고: 요소함량, 밀도@ 20℃, 굴절지수@ 20℃의 목표값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요소함량: 32.5%
2. 밀도 @20℃: 1089.5kg/cm³
3. 굴절지수 @20℃: 1.3829

[별표 34] <개정 2009.7.14>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

(제119조 관련)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〇〇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4의2] <개정 2015.7.2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1.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고: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 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1식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식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분석 가능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11	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12	회분시험기(Furnace)	1식	
13	전산가시시험기(Acid value)	1식	
14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1식	
15	세탄가측정기(Cetane number)	1식	
16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2) LPG·CNG·바이오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TCD, PFPD)	1식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분석 가능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비고: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고: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배출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차대동력계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2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3	배출가스 분석장치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5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6	원동기동력계	1식	경유 전용
7	매연 측정기	1식	경유 전용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제1호나목 1)에서 정하는 검사장비

2) LPG·CNG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배출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1	차대동력계	1식
2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3	배출가스 분석장치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5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제1호나목 2)와 같고, 유해물질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검사장비	수량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비고: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촉매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증직부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요소함량분석기(Total Nitrogen Analyzer)	1식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굴절계(Refractometer)	1식	Abbe 방식
6	자동적정기(Auto Titration) 또는 적정기(Titration)	1식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별표 35] <개정 2013.3.23>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기관 출력	정격 기관속도 (n: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속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kWh)		
		기준 1	기준 2	기준 3
130kW 초과	n이 130rpm 미만일 때	17 이하	14.4 이하	3.4 이하
	n이 130rpm 이상 2,000rpm 미만일 때	45.0×n(-0.2) 이하	44.0×n(-0.23) 이하	9.0×n(-0.2) 이하
	n이 2,000rpm 이상일 때	9.8 이하	7.7 이하	2.0 이하

비고: 기준 1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3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각각 적용하되, 기준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5의2] <신설 2018. 11. 29.>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 관련)

종류	범위	규모
건축물의 냉·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식품의 냉동·냉장용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그 밖의 산업용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별표 35의3] <신설 2018. 11. 29.>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및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해야 한다.

3. 냉매의 회수기준

가.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 (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 소유자들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냉매의 처리기준

가.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제3호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 나. 소유자들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별표 36] <개정 2020. 5. 27.>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8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인 경우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2)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치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법 제36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8)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7)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36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취소 또는 폐쇄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고	조업정지 20일

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그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 제20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1)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하였을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 일부터 1)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일까지, 3), 4)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까지, 6), 10) 및 11)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4. 6)가)의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5. 삭제 <2013.2.1>

나.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나)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다)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라) 영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 별표 3 제2호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9호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36조 제9호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6)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나)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8)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1호	등록취소			
9)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10)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나) 기술인력이 30일 이상 부족한 경우 다)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라)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의3 제1항제4호	등록취소			
12)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5호	등록취소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37조의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제37조의4제5호에 따른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4)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와 관련된 행정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 시설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 제5항·제8항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다)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 제6항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4)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5)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항,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고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및 법 제44조제9항(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라. 삭제 <2013.2.1.>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자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자배출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5조 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3호	경고	경고	인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4호	경고	경 고	인증취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 제4항제1호	인증취소		
6)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저감효율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0조 제4항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4항제3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인증취소
8)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		
9)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10)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3)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비고:

-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바. 삭제 <2013.2.1.>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호	등록취소	-	-
2) 법 제69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2호	등록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9조 제4호	등록취소	-	-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5호	등록취소	-	-
6)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9조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8조의3 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48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48조의3 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의3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냉매회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1호	등록취소	-	-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2호	경고	등록취소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3호	등록취소	-	-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76조의13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6조의13제5호	등록취소	-	-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6호	등록취소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법 제76조의13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고		

[별표 37] <개정 2017. 1. 26.>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 기 일	보고자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	수 시	사고발생 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국립환경과학원장
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연 2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4.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	연료: 연 4회 첨가제: 연 2회	연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첨가제: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국립환경과학원장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비고 :

1.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 보고에 관한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8] <신설 2010.12.31>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1. 수시검사, 결함확인 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	수시	위반사항 적발 시
2. 결함확인검사 결과	수시	위반사항 적발 시
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연 2회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5편
대기·기후

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3197	제1조(목적) 3197	제1조(목적) 3197
제2조(정의) 3197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319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98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3197
제4조(사업자의 책무) 3198		
제5조(국민의 책무) 319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198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3198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319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3200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3200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3200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3200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3200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320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3201	제4조(위원회의 구성) 320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201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3202	
	제7조(위원회의 운영) 3202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3203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3203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3203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3204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3205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3204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3205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3204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3207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3204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3206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20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3208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3208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3208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3209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3209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3210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3210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210	제13조 삭제 3210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3210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3212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 3210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3214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3214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3212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3214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3213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3216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3213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3217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3217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3214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 3219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3215
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3219	제15조(자료제출·검사 등) 3219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3216
제27조(수수료) 3220		제19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3217
제28조(청분) 3220		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3217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3220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220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3218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221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3219
제31조(과태료) 3221	제17조(과태료) 3221	제20조(수수료) 3220
부칙 3222	부칙 3222	부칙 32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정 2018. 8.14 법률 제15718호 개정 2019. 3.26 법률 제16303호 2020. 3.31 법률 제17177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p> <p>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10: 미세먼지)</p> <p>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2.5: 초미세먼지)</p> <p>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p> <p>가. 질소산화물</p> <p>나. 황산화물</p> <p>다. 휘발성유기화합물</p> <p>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p> <p>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정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4호 개정 2019. 3.26 대통령령 제2965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9.24 대통령령 제30096호 2020. 3.31 대통령령 제30590호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19. 2.13 환경부령 제799호 개정 2019. 9.20 환경부령 제825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p> <p>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31.></p> <p>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p> <p>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 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p>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p> <p>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산림청장·기상청장을 말한다.</p> <p>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와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6.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p> <p>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6.></p> <p>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p>		<p>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p> <p>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p>	<p>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p>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당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생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정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p> <p>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p>	<p>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p> <p>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p> <p>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p> <p>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p>	<p>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0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p>②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p> <p>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을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p>	<p>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p> <p>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p>	<p>제13조 삭제 (2020. 3. 31.)</p>	<p>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p> <p>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p>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p> <p>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p> <p>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p>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의 목적 2. 대상지역의 범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3.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현황</p> <p>4.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p> <p>5.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p> <p>6. 대상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계획</p> <p>7. 열람 기간, 장소 및 방법</p> <p>④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 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p> <p>2.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p> <p>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의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 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p>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는 같은 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p> <p>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 <p>②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⑤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 2. 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3. 인력 및 시설·장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p> <p>⑤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등급·규격·표시·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p>⑧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지에 관한 평가방법 등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 등급 3.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p>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p>	<p>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p>	<p>제19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p> <p>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해야 한다.</p> <p>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추는 것</p> <p>2. 시료채취,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물질 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p> <p>3. 환경공학, 대기환경, 대기과학, 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갖추는 것</p> <p>4. 삭제 <2021. 1. 5.></p> <p>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로 중점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미세먼지연구센터는 미세먼지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미세먼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9. 20.]</p> <p>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p> <p>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p> <p>2. 별표 4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3. 별표 4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4.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p> <p>5.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p> <p>6. 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9. 9. 20.]</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6.]</p> <p>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4.]</p> <p>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9. 9. 24.]</p> <p>제15조(자료제출·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p>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p>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3.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5.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6.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p>	<p>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p>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p>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요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3.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p>제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사유 없이 위반한 자</p> <p>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p> <p>6.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p> <p>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p> <p>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718호, 2018. 8.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p> <p>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514호, 2019. 2. 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별표 제2호라목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초미세먼지(PM-2.5)</p> <p>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초미세먼지(PM-2.5)</p> <p>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9호, 2019. 2.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초미세먼지(PM-2.5)</p> <p>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6303호, 2019. 3.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7177호, 2020. 3. 3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p> <p>부칙 <제29657호, 2019. 3.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자자동차”를 “수소전자자동차”로 한다. ③ 및 ④ 생략</p> <p>부칙 <제30096호, 2019. 9. 24.></p> <p>이 영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590호, 2020. 3. 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1379호, 2021. 1. 5.>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p> <p>부칙 <제825호, 2019. 9. 20.></p> <p>이 규칙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227
-------------------------------	------

[별표]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1호	10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00	200	200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00		
마.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10		
바. 법 제21조제4항제1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100	200	200
사.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100	200	200
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00		

0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		
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		

비고

1. 하나의 행위가 가목과 마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가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마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3. 사목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3231
[별표 2]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3231
[별표 3]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3232
[별표 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3233
[별표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3234

[별표 1]

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1.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가. 반복재현성
- 나. 상대정밀도
- 다. 자료획득률
- 라. 정확도
- 마. 결정계수

2.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80% 초과	0.8 초과
2등급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70% 초과 80% 이하	0.7 초과 0.8 이하
3등급	60% 초과 70% 이하	60% 초과 70% 이하		50% 초과 70% 이하	0.6 초과 0.7 이하
등급 외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0.6 이하

비고

1.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2. 제1호가목의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각각 갖추어 것

구분	자격	기준
가.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 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연구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대기 관련 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기 관련 분야의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 시설·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각각 갖추어 것

구분	시설·장비	수량
가. 시설	1) 실내시험실	1실 이상
	2) 천칭실	1실 이상
	3) 시험품 보관실	1실 이상
	4) 실외 시험동	1동 이상
나. 장비	1) 항온항습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1벌 이상
	2) 정밀저울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1벌 이상

구분	시설·장비	수량
	3) 표준입자 발생장치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1벌 이상
	4) 시험체입버(chamber) 또는 동등한 성능 이상의 장비	1벌 이상
	5)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4벌 이상
	6)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벌 이상

비고

- 제2호나목 5)에 따른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획득한 장비여야 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성능인증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4)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3호	지정 취소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4] <신설 2019. 9. 20.>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환경부장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중점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 가. 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 나. 대기 배출원 측정장비 1벌 또는 대기질 측정장비 1벌
 - 다. 채취 시료 전처리 및 기기분석 장비 1벌
 - 라.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장비 1벌
2. 연구인력 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화학분석 또는 대기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기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정한다)을 취득한 사람
 - 4)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환경공학, 환경학,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환경보건 또는 대기과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별표 5] <신설 2019. 9. 20.>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 제1호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마.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의2 제3항제4호, 영 제14조의3 제2호	지정 취소			

비고: 라목의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0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목 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3239
제2조(설치 및 기능)	3239
제3조(구성)	3239
제4조(위원의 임기)	3239
제5조(위원의 해촉)	3239
제6조(위원장의 직무)	3239
제7조(회의)	3239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3239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등)	3240
제10조(자문단)	3240
제11조(사무기구 등)	3240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3240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3240
제14조(수당 등)	3240
제15조(존속기한)	3240
제16조(운영세칙)	3240
부칙	324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4.25 대통령령 제297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1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환경부장관
6. 국토교통부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

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11. 국내외 기후환경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표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국민정책참여단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국민정책참여단, 협의체, 자문단, 사무기구 및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9713호, 2019. 4.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대기·기후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247	제1조(목적) 3247	제1조(목적) 3247
제2조(정의) 3247	제2조(대기관리권역) 3247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3247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3248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324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248		
제5조(사업자의 책무) 3248		
제6조(주민의 책무) 3248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3249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3249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 3249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3249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3249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3250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3249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3251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325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3251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3252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3253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3252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3253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3253	
	제8조(위원회의 구성) 3254	
	제9조(위원회의 임기) 3254	
	제10조(위원의 해촉) 325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3254	
	제12조(회의) 325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3255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255	제13조(사무기구) 3255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 3255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3255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3256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3256 제18조(수당 및 여비) 3256 제19조(운영세칙) 3257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3257 제16조(허가의 제한) 3260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3261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3257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3261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3263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3264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3257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3259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3260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3261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 3261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3262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3262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3262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 3263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3263 제18조(이의신청) 3263
제18조(이의신청) 3263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3264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3265	제2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3265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3265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3265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326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3266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3267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3268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3268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3269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3266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3267 제27조(정수비용의 지급) 3267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3268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3268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3266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3266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3269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3269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3270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3272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3272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3273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3273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3272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3273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3273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3270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3270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3271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3272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3274 제32조(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3274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3275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3275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3276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3274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3275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3274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327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277</p> <p>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p> <p>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3277</p> <p>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3278</p> <p>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3278</p> <p>제7장 보칙</p> <p>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3279</p> <p>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3280</p> <p>제42조(청문) 3280</p> <p>제43조(수수료) 3280</p> <p>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3280</p> <p>제8장 벌칙</p> <p>제45조(벌칙) 3284</p> <p>제46조(벌칙) 3284</p> <p>제47조(벌칙) 3285</p> <p>제48조(양벌규정) 3285</p> <p>제49조(과태료) 3285</p> <p>부칙 3286</p>	<p>제6장 보칙</p> <p>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3280</p> <p>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3283</p> <p>제37조(보고) 3283</p> <p>제38조(규제의 재검토) 3283</p> <p>제7장 벌칙</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285</p> <p>부칙 3286</p>	<p>제32조(인증의 신청) 3276</p> <p>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3277</p> <p>제6장 보칙</p> <p>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3280</p> <p>제35조(수수료) 3280</p> <p>제36조(보고) 3283</p> <p>제37조(규제의 재검토) 3283</p> <p>부칙 3286</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정 2019. 4. 2 법률 제16305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중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p>제정 2020. 3.31 대통령령 제3059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p>	<p>제정 2020. 4. 2 환경부령 제85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p> <p>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p> <p>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p>		<p>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 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p>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p> <p>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 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자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p>	<p>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p> <p>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p>	<p>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p>	<p>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p> <p>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p>		<p>(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 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p> <p>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p> <p>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p> <p>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p>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p> <p>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p>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p> <p>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p> <p>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p> <p>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p> <p>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p> <p>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p> <p>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p> <p>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p> <p>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장의 배치도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p> <p>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p> <p>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p> <p>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p> <p>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p>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p>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p>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16조(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p>		<p>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p> <p>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p> <p>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p>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p> <p>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p>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p>	<p>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할당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p> <p>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p> <p>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p>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 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p> <p>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 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나. 적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p>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p> <p>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p>	<p>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p>	<p>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p> <p>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p>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이의신청의 내용 <p>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p> <p>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p>	<p>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p>	<p>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p> <p>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p>	<p>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p>	<p>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p> <p>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p> <p>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p> <p>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p> <p>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p> <p>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p>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p> <p>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p> <p>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제2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p>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p> <p>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 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p>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p>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p>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p> <p>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p> <p>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p>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p> <p>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p> <p>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p> <p>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p>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p>	<p>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p>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p>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p>제32조(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p>	<p>의 차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p>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p>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p> <p>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p> <p>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방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p>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p> <p>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p>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p>	<p>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p>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또는 지원 요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4.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p>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37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p> <p>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p>제36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p>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p>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2020년 1월 1일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2020년 1월 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변경인증 시 제출 서류: 2020년 1월 1일 제34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p>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305호, 2019. 4. 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p> <p>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p>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p> <p>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p> <p>4.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기행사업 허가를 받으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591호, 2020. 3. 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p> <p>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로서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p> <p>제4조(다른 영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57호, 2020. 4. 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4항」으로 한다.</p> <p>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p> <p>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p> <p>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p> <p>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기행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p> <p>제4조(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p> <p>제7조(사업장설치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사업장으로 본다.</p> <p>제8조(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p> <p>제9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또는</p>	<p>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p> <p>④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p> <p>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p> <p>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p> <p>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p>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p> <p>④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16조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p> <p>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3293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3293
[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	3294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3296
[별표 5]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	3296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297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3298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제22조 관련)

1. 부착대상 시설별 측정기기의 종류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2)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 3)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먼지 측정기기간 해당한다)
-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5)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간 해당한다)
- 6)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간 해당한다)
 -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간 해당한다)
 -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간 해당한다)

나. 연료유량계

가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고

1.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중간자료 수집기(FEP: Front End Processor)를 부착해야 한다.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4. 제1호가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5. 제1호가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부착 제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6.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 중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및 먼지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인 배출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목 및 나목의 적용을 유예한다.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 1)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 2)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3)에서 같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D/L: Data Logger)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따른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 4)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연료유량계

- 1)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측정기기의 설치 시기

가.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4.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산정방법

- 1) 측정자료의 산정기준
 - 가) 30분 배출량은 그래프(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나) 월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2) 측정 자료의 수치 뺏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3) 배출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64÷22.4
먼지	30분 평균농도(mg/Sm³)×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 ⁻³

나. 연료유량계에 의한 산정방법

$$\text{월당 연료사용량} \times \text{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times (1 - \text{방지시설 효율}/100)$$

비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방지시설 효율}(\%) = (\text{발생량} - \text{배출량}) \div \text{발생량} \times 100$$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제24조제1항 관련)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times 0.1 \times (\text{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div \text{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별표 5]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5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질소산화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황산화물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먼지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배출허용총량 초과율(\%)} = (\text{연간 배출량} - \text{배출허용총량}) \div \text{배출허용총량} \times 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 제1호	60	80	100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위반 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 제2호	50	75	100
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	100	150	20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3301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제12조 관련)	3306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3307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3308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309
[별표 6]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3310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사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1. 질소산화물(N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사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축매 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10(6)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0(6)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10(4) 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10(15) 이하	
(3) 열병합발전시설 중 흑역 사용시설	60(4) 이하	45(4) 이하	
(4)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4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10(4)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사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15) 이하	8(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9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3)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60(4) 이하	40(4) 이하	
(4)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0(4) 이하	10(4) 이하	
(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30(4) 이하	1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5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7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외의 시설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2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20(4) 이하	
(2)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0(4) 이하	4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이로폐기물 처리시설 0.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2) 이하	1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4(12) 이하	
4)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2) 이하	12(12) 이하	
나) 고행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4(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13) 이하	135(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나) 석화-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120(13) 이하	80(13)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다) 그 밖의 시설	70 이하	6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	100 이하	75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100 이하	60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4)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산소 사용시설	70 이하	7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120(4) 이하	105(4)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나) 그 밖의 시설	120(4) 이하	8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0(4) 이하	6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40(4) 이하	3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7)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스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소결로	45 이하	30 이하	
나)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 이하	5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40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7) 이하	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7) 이하	60(7) 이하	

2. 황산화물(S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17(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2) 열병합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2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0(6)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2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25(4) 이하	25(4)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50(4) 이하	30(4)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30(15) 이하	20(15)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0(4) 이하	10(4)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가)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50(6)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③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15(6)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30(15) 이하	10(15) 이하	
(4)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50(4) 이하	3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25(6)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사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23(6) 이하	23(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5(4) 이하	5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4) 이하	5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3) 소각시설	10(12) 이하	5(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12) 이하	5(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00(13) 이하	50(13) 이하	
(나) 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50 이하	35 이하	
(다) 그 밖의 시설	40 이하	1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50(4) 이하	30(4) 이하	
(나)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다)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50 이하	35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사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 연도	최종 연도	
라)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0 이하	35 이하	
마) 그 밖의 시설	10 이하	10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증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 건식 황산화수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2) 습식 황산화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50 이하	5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사설		종류
	기준농도(mg/Sm ³)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 시설, 전기집진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6) 이하	3(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15) 이하	2(15)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7(15) 이하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mg/Sm ³)		
	초기 연도	최종 연도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3(4) 이하	
(나)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7(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6) 이하	9(6) 이하	
(2)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6) 이하	9(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5(4) 이하	
(2) 배출가스가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14(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12) 이하	
4) 고흥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흥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흥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4(12) 이하	

비고

1.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지시설로 본다.
2.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4 및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같은 비고 4 다목·타목 및 비고 5 하목·거목은 제외한다)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가. 초기 연도 기준농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나. 최종 연도 기준농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3. 기준농도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4. 각 호의 표 가목3)의 소각시설 중 폐가스소각시설(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기 대신 순(純)산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text{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text{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times \text{할당계수 단위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있는 배출시설

- 1) 초기 할당계수(초기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초기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2) 최종 할당계수(최종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종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최종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 3)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한다.

비고

1.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따라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무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보다 작은 때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이 경우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적용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단위배출량과 최근 연도의 단위배출량 중 높은 값을 초기 할당계수로 한다.

나. 가목 외의 배출시설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text{초기 할당계수} = \text{최종 할당계수}$$

3.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계수 단위량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으로 한다.

비고

1. 시설 개선, 연료 변경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동중지기간을 제외하고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동중지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때에는 가동중지기간을 1개월로 본다.

$$\text{할당계수 단위량} = \frac{\text{최근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5 - (\text{가동중지기간 개월수} \div 12)}$$

2. 시설 증설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및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예상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예상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및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계산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給電)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중앙급전발전기(「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판 해당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 중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의 증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증가를 제외한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 예상량 등을 고려한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 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 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단위배출량"이란 해당 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 연도의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2.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전년도에 시설 미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동된 이전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하고, 폐쇄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text{폐쇄 연도의 이전가능 배출허용총량} = \text{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times \frac{\text{해당 연도의 가동일수}}{365}$$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도가 할당받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제작일자 \ 검사항목	매연
1992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비고

-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은 제1호가목에 따른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영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중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대기관리 권역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인증대상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가정용 보일러
- 나.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

2. 인증기준

가. 1종

항 목		인증기준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2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나. 2종

항 목		인증기준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40(0) ppm 이하	8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200(0) ppm 이하	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81% 이상	84% 이상

비고

1.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이하 "액화석유가스"라 한다)를 말하며,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 라벨, 인쇄, 각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에 따른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제2호의 인증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계속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응축수가 발생하는 보일러의 제조를 제외하고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6]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사무 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법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	수시	변경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4.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현황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 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승인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 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현황	수시	조정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사무 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현황	수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사업장의 폐쇄명령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현황	수시	자발적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2.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결과	연 2회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유역환경청장(한강 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5편
대기·기후

05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 2. 4.)		
제1조(목적) 3318	제1조(목적) 3318	제1조(목적) 3318
제2조(정의) 3318		제2조(지정약취물질) 3318
		제3조(약취배출시설) 3318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3318		
제4조(약취실태조사) 3319		제4조(약취실태조사) 3319
제5조 삭제 3320		제5조(약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3320
제2장 사업장 약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 2. 4.)		
제6조(약취관리지역의 지정) 3320		제5조의2(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3320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321
제7조(배출허용기준) 3322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322	제7조 삭제 3322
제8조(약취관리지역의 약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3323		제8조(배출허용기준) 3322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3324	제9조(약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3323
제8조의2(약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약취배출시설 신고 등) 3324		제10조(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324
제8조의3(약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3326		제11조(약취방지계획) 3325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3328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3329	제11조의2(약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326
제10조(개선명령) 3329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3330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3327
		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330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조업정지명령) 3330		
제12조(과징금처분) 3331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약취배출시설) 3331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3331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3331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3332		제13조 삭제 3332
제14조(개선 권고 등) 3332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3332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3333	
제3장 생활약취의 방지		
제15조 삭제 3333		
제16조(공공수역의 약취방지) 3333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3333		제13조의2(기술진단) 3333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3335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3335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3335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3336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3335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3337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3337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3338		
제16조의7(생활약취 관리) 3339		
제4장 검사 등		
제17조(보고·검사 등) 3339		제14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3339
제18조(약취검사기관) 3340		제15조(약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3340
		제16조(약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3341
		제17조(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3341
		제18조(검사수수료) 3341
제19조(지정취소 등) 3342		제19조(행정처분기준) 3342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개정 2010. 2. 4.)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3342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3342	
제21조(약취저감기술 지원) 3342	제8조의2(약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3342	제19조의2(약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3343
제22조(청분) 3344		
제23조(수수료) 3344		제20조(수수료) 3344
제24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3345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3345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3345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347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3346
제6장 벌칙 (개정 2010. 2. 4.)		
제26조(벌칙) 3347		
제27조(벌칙) 3348		
제28조(벌칙) 3348		
제29조(양벌규정) 3348		
제30조(과태료) 3349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349	
부칙 3349	부칙 3349	부칙 3349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정 2004. 2. 9 법률 제7170호 개정 2005. 3.31 법률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2006.10. 4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0호 2007. 4.11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 5.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 3.21 법률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2. 4 법률 제10031호 2012. 2. 1 법률 제11259호 2013. 7.16 법률 제11911호 2013. 7.16 법률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 3.24 법률 제12520호 2015.12. 1 법률 제13531호 2016. 1.27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 1.27 법률 제13881호 2016.12.27 법률 제14491호 2017. 1.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8. 6.12 법률 제15655호 2020. 3.24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 5.26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17845호</p>	<p>제정 2005. 2. 7 대통령령 제18695호 개정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26 대통령령 제22639호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2.10. 9 대통령령 제24135호 2014. 7.16 대통령령 제25478호 (하수도법 시행령)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3호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8호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5호 2019. 6.11 대통령령 제29842호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5호</p>	<p>제정 2005. 2. 7 환경부령 제170호 개정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12.29 환경부령 제187호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7. 4 환경부령 제240호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7.12.31 환경부령 제2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9. 6.30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임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 2. 1 환경부령 제396호 2012.10.18 환경부령 제480호 2014. 4.11 환경부령 제551호 2014. 4.30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 9.22 환경부령 제573호 2015.12.22 환경부령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 2.19 환경부령 제639호 2016.12.30 환경부령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 1.19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5.17 환경부령 제698호 2017.12.20 환경부령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노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8. 1.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9. 6.13 환경부령 제810호 2019.12.20 환경부령 제833호 (아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0. 3. 3 환경부령 제856호</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0. 2. 4.></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p>[전문개정 2010. 2. 4.]</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p>	<p>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6.]</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p> <p>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2. 1.]</p> <p>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2. 1.]</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p>		<p>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5조 삭제 (2006. 10. 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2010. 2. 4.)</p> <p>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p> <p>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p>		<p>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13.)</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7.)</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약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p> <p>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약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약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p> <p>⑧ 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전문개정 2010. 2. 4.]</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기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약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약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약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p>② 약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8. 6. 12.></p> <p>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p> <p>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p> <p>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본조신설 2011. 1. 26.]</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7조 삭제 <2007. 7. 4.></p> <p>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약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p> <p>제8조(약취관리지역의 약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약취관리 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약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약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약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약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약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약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약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약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약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약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p> <p>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2. 1.]</p> <p>제9조(약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약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약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약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약취방지계획서 1부 5. 약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전문개정 2010. 2. 4.]</p> <p>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 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 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p>[전문개정 2011. 1. 26.]</p>	<p>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전문개정 2011. 2. 1.]</p> <p>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약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p>		<p>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취배출시설 또는 약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약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약취방지계획서 1부 4. 약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p>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약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11조(약취방지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약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 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약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p>[전문개정 2011. 2. 1.]</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2. 4.]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p>		<p>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p> <p>④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p> <p>⑤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악취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르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p> <p>[본조신설 2010. 2. 4.]</p>		<p>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본조신설 2014. 4. 11.]</p> <p>[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 4. 11.>]</p> <p>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2019. 12.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p>		<p>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p> <p>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p> <p>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운영경비·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p> <p>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과징금·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p> <p>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p> <p>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p>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1.]</p> <p>[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 4. 11.>]</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전문개정 2010. 2. 4.]</p> <p>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1. 26.]</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p>	<p>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6.></p>	<p>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3.></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3. 24.]</p> <p>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취배출시설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p>	<p>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약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시설 2.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 	<p>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3.]</p> <p>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9. 22.></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0. 2. 4.]</p> <p>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약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약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3. 7. 16.]</p>	<p>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6.]</p> <p>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약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9. 6. 11.]</p>	<p>제13조 삭제 <2011. 2. 1.></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p> <p>제15조 삭제 <2010. 2. 4.>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p>	<p>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p>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1.]</p>	<p>제13조의2(기술진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다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p> <p>④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p> <p>[본조신설 2010. 2. 4.]</p>		<p>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p> <p>③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해당 개선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2020. 3. 3.></p> <p>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수립한 경우: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p>	<p>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p>	<p>기환경청장</p> <p>2.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p> <p>④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2. 1.]</p> <p>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본조신설 2019. 6. 13.]</p> <p>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4. 기술인력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중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7로 이동 (2018. 6. 12.)]</p> <p>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일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p>[본조신설 2018. 6. 12.]</p>	<p>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5. 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p> <p>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p> <p>[본조신설 2019. 6. 13.]</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 까지 보고할 것 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약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7.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p>[본조신설 2019. 6. 11.]</p>	<p>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p> <p>[본조신설 2019. 6. 13.]</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6. 12.]</p> <p>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12. 1.]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8. 6. 12.)]</p> <p>제4장 검사 등</p> <p>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p>		<p>제14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취검사기관에 약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p> <p>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p> <p>⑥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18조(약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약취검사를 하는 약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연구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p>②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p>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약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6. 13.></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약취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6. 13.></p> <p>[전문개정 2011. 2. 1.]</p> <p>[제목개정 2019. 6. 13.]</p> <p>제15조(약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약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약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p> <p>제16조(약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약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약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p>[전문개정 2011. 2. 1.]</p> <p>제17조(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1. 2. 1.]</p> <p>제1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1.]</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19조(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약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5장 보칙 <개정 2010. 2. 4.></p> <p>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약취방지기술 등 약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21조(약취저감기술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약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약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에 따른 약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의 약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p>[전문개정 2011. 1. 26.]</p> <p>제8조의2(약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환경부장관이 약취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약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약취저감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3조·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 6. 13.> [전문개정 2011. 2. 1.]</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12. 2. 1.]</p>	<p>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p> <p>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p> <p>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p> <p>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p> <p>다.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p> <p>2. 삭제 <2016. 12. 30.></p> <p>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p> <p>②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p>	<p>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1.></p> <p>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p> <p>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p> <p>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p>[전문개정 2010. 2. 4.]</p> <p>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약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약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약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10. 9.]</p>	<p>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약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약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10. 18.]</p> <p>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 10.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운영신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24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2. 2. 1.]</p>	<p>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6. 11., 2020. 3.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2.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p>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9.</p>	<p>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전문개정 2011. 2. 1.]</p> <p>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p> <p>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전문개정 2011. 2. 1.] [제목개정 2012. 10. 18.]</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 신고의 수리 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 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p>[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2. 10. 9.]</p>	<p>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약취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약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6장 벌칙 <개정 2010. 2. 4.></p> <p>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2에 따른 약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16. 12. 30.>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p>②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30.]</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p> <p>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p> <p>[전문개정 2018. 6. 12.]</p> <p>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p> <p>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약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p> <p>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약취방지계획에 따라 약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전문개정 2010. 2. 4.]</p> <p>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p>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4.]</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170호, 2004. 2. 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취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 약취오염에 관한 공정시험방법은 제5조의</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11.></p> <p>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p>[전문개정 2011. 1. 26.]</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695호, 2005. 2. 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0호, 2005. 2. 7.></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중 “가스·입자성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p> <p>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p> <p>제29조를 삭제한다.</p> <p>제30조를 삭제한다.</p> <p>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p> <p>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p> <p>②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p> <p>③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④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p> <p>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 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p> <p>⑥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p>	<p>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p> <p>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p> <p>제48조제1항제19호 자목을 삭제하고, 동호 자목중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p> <p>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p> <p>②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p> <p>③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97호, 2007. 9.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p> <p>⑥ 부터 ⑪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취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취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p> <p>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p> <p>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p> <p>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p> <p>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p> <p>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p> <p>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p> <p>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호, 2005. 7. 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p> <p>⑫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p>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p> <p>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를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약취방지법</p> <p>제4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중전의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7459호, 2005. 3. 31.> (수질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⑩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⑧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p>	<p>부칙 <제22639호, 2011. 1. 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부칙 <제23267호, 2011. 10.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4135호, 2012. 10. 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478호, 2014. 7. 16.> (하수도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약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p>	<p>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⑭생략</p> <p>부칙 <제187호, 2005. 12. 29.></p> <p>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5호, 2006. 7.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40호, 2007. 7. 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251호, 2007. 10.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약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㉑내지 (57)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038호, 2006. 10.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9조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p> <p>제11조 생략</p> <p>부칙 <제8210호, 2007. 1. 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약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약취방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4호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법률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본다.</p> <p>부칙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p>	<p>부칙 <제25613호, 2014. 9. 18.></p> <p>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278호, 2016. 6. 28.></p> <p>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7735호, 2016. 12. 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9842호, 2019. 6. 11.></p> <p>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30505호, 2020. 3. 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약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교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약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p> <p>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약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p> <p>⑩ 부터 ⑰ 까지 생략</p> <p>부칙 <제252호, 2007. 10. 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p> <p>④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p> <p>⑤ 부터 ⑩ 까지 생략</p> <p>제13조 생략</p> <p>부칙 <제270호, 2007. 12.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②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6호,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까지 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957호, 2008. 3.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35호, 2009. 6. 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96호, 2011. 2. 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48호, 2012. 10. 1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1호, 2014. 4. 1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3호, 2014. 4.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족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3조 생략</p> <p>부칙 <제10031호, 2010. 2. 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 내에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지정·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도시의 장의 지정·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3조(기술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삭제한다.</p> <p>부칙 <제11259호, 2012. 2. 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악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911호, 2013. 7. 1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1915호, 2013. 7. 16.> (하수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73호, 2014. 9. 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628호, 2015. 12. 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39호, 2016. 2. 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84호, 2016. 12. 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688호, 2017. 1.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④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p> <p>④부터 <71>까지 생략</p> <p>부칙 <제12520호, 2014. 3. 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531호, 2015. 12. 1.></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④부터 ⑩까지 생략</p> <p>부칙 <제698호, 2017. 5. 17.></p> <p>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23호, 2017. 12. 2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45호,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p> <p>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⑪부터 ⑮까지 생략</p> <p>부칙 <제810호, 2019. 6. 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약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약취배출</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p> <p>⑪부터 ⑳까지 생략</p> <p>부칙 〈제13881호, 2016. 1.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491호, 2016. 12. 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물환경보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p> <p>⑥부터 〈89〉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833호, 2019. 12. 2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856호, 2020. 3. 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약취방지법	약취방지법 시행령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p>부칙 <제15655호, 2018. 6. 1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지자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자산 또는 한정자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약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부터 <102>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p data-bbox="228 195 461 221">부칙 <제17845호, 2021. 1. 5.></p> <p data-bbox="134 232 396 256">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약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336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3362

[별표 1] (신설 2019. 6. 1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다음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실험실 각 1곳

- 1) 공기회석관능 실험실: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및 악취회석장비 1벌
-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농축장비 1벌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실험기기 각 1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 각 1대 이상

가. 유속계

나. 수온 측정기

다.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라. 온도계

마. 습도계

바. 압력계

사. 복합악취포집 상자

아. 악취포집용 펌프

자. 임핀저(impinger, 집진측정장치) 세트

차. 미니펌프

카. 산업용 내시경

타. 연기발생기

파. 기상측정장비(온도, 습도,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 회전계

거. 전압전류측정기

너. 거리측정기

더.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

3. 기술인력

가. 기술진단을 위한 인력

1) 다음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가) 환경, 화학공학, 기계 관련 학과 박사

나) 대기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또는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2)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일반기계,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이상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표에서 "환경측정분석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시료분석을 위한 인력

1)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2) 악취를 분석하는 요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화학분석 기능사 또는 환경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 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악취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악취를 판정하는 요원 5명 이상: 해당 기관의 근무인력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소정의 냄새 강도와 냄새질 시험을 통과한 표준적인 냄새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

비고

1. 제1호나목에 따른 실험실(장비 및 실험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은 악취검사기관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이면 해당 실험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하며, 기술인력 1명이 2종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환경 관련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공학, 상하수도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 중 악취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산업기사는 기계가공조립, 건설기계정비 또는 환경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또는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의 요건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라.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비고: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지정약취물질(제2조 관련)	3367
[별표 2] 약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3367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3371
[별표 4] 약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3372
[별표 5]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3373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3374
[별표 7] 약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3374
[별표 8] 약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3375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3375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	3377

[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2] <개정 2019. 12. 20.>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의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의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 수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제사(製絲) 및 방적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제조업, 신발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출판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포함하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도장(塗裝)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시설

비고

-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제재업(20101)은 제외한다.
- 출판업 시설에서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마.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사.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자. 그 밖의 식품 제조 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카. 맥아 및 맥주 제조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파. 제사 및 방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하.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더.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러.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본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커. 무기인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인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허.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혼중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고.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도. 도로·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오. 금속의 용융·제련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 시설(절연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 ³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m ²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누.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화·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두. 그 밖의 시설	위 항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약취 또는 지정약취를 측정할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약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약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05.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스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05.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회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회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 가. 연소에 의한 시설
 -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별표 5] <신설 2011.2.1>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내 용	방 법
현황 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내 용	방 법
운영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별표 6] <개정 2018. 1. 17.>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마.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약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비고: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 <개정 2017. 12. 20.>

약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대기환경기사 1명 약취분석요원 1명 약취판정요원 5명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2. 지정약취물질 실험실 3.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4. 약취희석장비 1벌 5. 약취농축장비(필요한 측정·분석장비별) 1벌 6. 지정약취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각 1벌

비고

1. 대기환경기사는 다음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국립연구원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라.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약취검사기관에서 약취분석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약취분석요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 가. 대기환경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국립연구원기관의 대기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약취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약취판정요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약취판정요원 선정검사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여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5. 지정약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인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 <개정 2019. 6. 13.>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한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해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별표 9] <개정 2019. 6. 13.>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의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6조의6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으며,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 업무 또는 악취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또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약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법 제13조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비고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6 제1항제1호를 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영 제7조의2제2항제7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의6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다. 약취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지정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10] <개정 2011.2.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업무 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약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 과학원장
2. 약취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5편
대기·기후

0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목 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385	제1조(목적) 3385
제2조(정의) 3385	
제3조(기본원칙) 3385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386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386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3387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3387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3388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89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89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389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3390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3390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390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3391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3391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3394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3394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3395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3395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3396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3395
제11조(배출권등록부) 3396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3395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339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3397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3397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3398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3397
제14조(할당의 통보) 3401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3397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3401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3398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3401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3398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3404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3398
제18조(배출권 예비분) 3405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3399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배출권의 거래) 3406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3400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3406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3400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3406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3401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3407	제2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3401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3408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3402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3409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402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3403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3404
	제30조(배출권 예비분) 3405
	제31조(배출권의 거래) 3406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3406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3406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3407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3408
	제36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3408
	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3408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340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p> <p>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3411</p> <p>제24조의2(검증기관) 3412</p> <p>제24조의3(검증심사원) 3413</p> <p>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3413</p> <p>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34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p> <p>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3411</p> <p>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3412</p> <p>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3413</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3413</p> <p>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34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p> <p>제27조(배출권의 제출) 3415</p> <p>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3415</p> <p>제29조(상쇄) 3416</p> <p>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3417</p> <p>제31조(상쇄등록부) 3420</p> <p>제32조(배출권의 소멸) 3420</p> <p>제33조(과징금) 3420</p> <p>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34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및 상쇄</p> <p>제44조(배출권의 제출) 3415</p> <p>제45조(배출권의 차입) 3416</p> <p>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3416</p> <p>제47조(상쇄) 3416</p> <p>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3417</p> <p>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3418</p> <p>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3420</p> <p>제51조(과징금) 3420</p> <p>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342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5조(금융상·세계상의 지원 등) 3421</p> <p>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3421</p> <p>제37조(실태조사) 3422</p> <p>제37조의2(청문) 3422</p> <p>제38조(이의신청) 3423</p> <p>제39조(수수료) 3423</p> <p>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4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53조(금융상·세계상의 지원) 3421</p> <p>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3422</p> <p>제55조(이의신청) 3423</p> <p>제56조(수수료) 3423</p> <p>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3424</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25	
제8장 별칙 및 과태료	
제41조(별칙) 3425	
제42조(양발규정) 3427	
제43조(과태료) 3427	
부칙 3427	부칙 342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right;"> 제정 2012. 5.14 법률 제11419호 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7. 7.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8.10.16 법률 제15836호 2020. 3.24 법률 제17104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p>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p style="text-align: right;">전부개정 2020. 8.18 대통령령 제30944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할 것</p> <p>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p> <p>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p>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립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6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제8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의 기준·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p> <p>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p> <p>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p> <p>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p>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p> <p>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p> <p>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3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p> <p>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0. 3.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p> <p>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자.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의 승인·변경승인</p> <p>차.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p> <p>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p> <p>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p> <p>파.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와 접수, 평가 및 공개</p> <p>하.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p> <p>거.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등록</p> <p>너.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p> <p>러.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의 승인 및 등록</p> <p>머.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버.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서.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채납처분</p> <p>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p> <p>저.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p> <p>처.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p> <p>커.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p> <p>티.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p> <p>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p>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p>	<p>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분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p> <p>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p> <p>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p> <p>1.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 1회 이상 했을 것</p> <p>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p> <p>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신설 2020. 3. 24.)</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p>	<p>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p> <p>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배출권등록부)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p> <p>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준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p> <p>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p> <p>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p>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이량 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p>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배출권의 할당</p> <p>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p>	<p>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제6호·제9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p>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배출권의 할당</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직업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p>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p>	<p>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p> <p>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p> <p>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직업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p>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p>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제공하는 생산품목·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공정별 또는 원료·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함에 따른 시설·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p>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p>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p> <p>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및 의건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p> <p>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p>	<p>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p> <p>제2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p>②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2차 및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p> <p>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절차 및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p>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p> <p>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제27조(신장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다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가.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p> <p>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 <p>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⑥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⑦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4.></p> <p>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20. 3. 24.]</p>	<p>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p> <p>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p> <p>⑫ 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배출권의 거래</p> <p>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배출권의 거래</p> <p>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p> <p>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p> <p>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p>③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증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증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p> <p>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증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p>	<p>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증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4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2.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3.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4.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p>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p> <p>제36조(배출권 거래를 증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증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증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증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증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p> <p>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p>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말한다.</p> <p>③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중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p>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p>	<p>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p>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의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p> <p>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p> <p>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5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춘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의 내용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p> <p>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p> <p>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p>	<p>⑧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p> <p>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명세서 검증 기준·절차, 검증업무 수행결과와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p> <p>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①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p>	<p>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p> <p>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p> <p>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및 상쇄</p> <p>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p>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상해)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p>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2. 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익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익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p>②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47조(상해)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같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와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의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p>	<p>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① 부분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분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분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p>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p>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p>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p> <p>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p> <p>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p> <p>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p>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p> <p>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8회 이내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의 손실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했음에도 그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p>	<p>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1.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기간 중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분할납부할 과징금을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p> <p>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p> <p>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p>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p> <p>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p> <p>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p> <p>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p> <p>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p> <p>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p> <p>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p> <p>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p> <p>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p> <p>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p> <p>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55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p> <p>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p> <p>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p> <p>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p> <p>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p> <p>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p> <p>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p> <p>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p>[본조신설 2018. 10.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 및 과태료</p> <p>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행위를 한 자</p> <p>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p> <p>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p> <p>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p> <p>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p> <p>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419호, 2012. 5.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무상할당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3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0944호, 2020. 8.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3차 계획기간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p>②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p> <p>③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12월 31일을 말한다.</p> <p>④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1>까지 생략 <70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70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3>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36호, 2018. 10. 16.></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04호, 2020.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p>	<p>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제3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p>제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2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하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법 제8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이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p> <p>제6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인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p> <p>②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p> <p>제3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의 신청 또는 조정의 신청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으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3433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1항 관련)	3434
[별표 3]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3434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3435
[별표 5]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3436
[별표 6]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3436
[별표 7]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3437

[별표 1]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_2\text{-eq}/\text{년}) \times \text{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text{원}/tCO_2\text{-eq})}{\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text{원}/\text{년})}$$

2. 무역집약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text{원}/\text{년})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text{원}/\text{년})}{[\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text{원}/\text{년})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text{원}/\text{년})]}$$

3. 제1호에 따른 비용발생도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집약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다만,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산정 시 기준기간은 2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와 2차 이행연도로 한다.

나.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대상 업체들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연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이란 기준기간 중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라.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및 수입액은 해당 업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수입액·매출액·부가가치 생산액·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이 호에서 "연평균 수출액등"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수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의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1항 관련)

온실가스의 종류	지구온난화 계수	
이산화탄소(CO ₂)	1	
메탄(CH ₄)	21	
아산화질소(N ₂ O)	310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11,700
	HFC-32	650
	HFC-41	150
	HFC-43-10mee	1,300
	HFC-125	2,800
	HFC-134	1,000
	HFC-134a	1,300
	HFC-143	300
	HFC-143a	3,800
	HFC-152a	140
	HFC-227ea	2,900
	HFC-236fa	6,300
	HFC-245ca	560
과불화탄소(PFCs)	PFC-14	6,500
	PFC-116	9,200
	PFC-218	7,000
	PFC-31-10	7,000
	PFC-c318	8,700
	PFC-41-12	7,500
	PFC-51-14	7,400
유불화황(SF ₆)	23,900	

[별표 3]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다른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검증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
-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
- 검증심사원 2명 이상이 한 조(組)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도록 배정하고, 배정된 검증심사원 외의 검증심사원이 해당 조에 참여하여 검증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1)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2) 별표 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5호	지정취소			

[별표 5]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1.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 가. 광물 분야
- 나. 화학 분야
- 다. 철강·금속 분야
- 라. 전기·전자 분야
- 마. 폐기물 분야
- 바. 농축산 및 임업 분야
- 사. 항공 분야
- 아. 공통 분야
- 자. 외부사업 분야

2. 자격요건

- 가.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기후, 해양, 농축산, 산림환경 등을 포함한다)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및 에너지 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비고

- 1.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의 실무경력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2. 제1호자목에 따른 외부사업의 세부 분야,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 및 경력 증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 1.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증하거나 자격의 범위 또는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
- 2. 자신이 맡은 검증 및 그 부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아야 한다.
- 3. 자신이 검증을 맡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4.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필수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5.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6. 검증보고서의 세부 검증 내용 및 발견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 7. 검증심사원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8.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별표 기]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1호	자격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3호				
1)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2) 별표 6 제3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3) 별표 6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4호	자격정지(교육이수 시까지)			
바. 필수적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취소		
사. 장기간(최종 검증종료일부터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3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44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443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3443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3443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3443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3444
제7조(재검사)	3444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3444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3444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3445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3445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3445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3445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3445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3445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3446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3446
제17조(기술인력 관리)	3446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3446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3447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등)	3447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3447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3447
부칙	344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9. 3.30	국도해양부령 제112호 환경부령 제327호
개정	2010. 2.18	국도해양부령 제2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0.10.14	국도해양부령 제293호
	2013. 3.23	국도교통부령 제 1 호 (국도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 2. 2	환경부령 제594호
	2017.10.26	국도교통부령 제457호
	2018. 7.20	국도교통부령 제537호
	2019. 4.23	국도교통부령 제621호
	2019.12. 9	국도교통부령 제673호
	2020. 2.28	국도교통부령 제698호
		환경부령 제855호
	202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7.22	국도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4. 2.>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 4. 2.>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

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9., 2020. 7. 22.>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 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장비"는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본다.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하려면 종합검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가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측정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드슬립 측정기
2. 제동 시험기
3. 속도계 시험기
4. 전조등 시험기
5. 전자장치 진단기
6. 차대동력계(車臺動力計) 등 배출가스 검사장비
7.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제7조(재검사) ①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6., 2019. 12. 9.>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제·해제 및 미작동
 -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23.>

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나.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라. 행정처분서
 - 마.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2.)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별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13. 3. 23., 2015. 2. 2.)

1. 종합검사의 기준·방법 연구 및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분석
4.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삭제 <2015. 2. 2.>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 ②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제17조(기술인력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 2. 2.>
-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 2. 2.>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2., 2019. 4. 23.)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 ⑥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7. 20.)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호, 2009.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교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교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교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교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 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222호, 2010. 2. 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0”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칙 <제293호, 2010. 10. 1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시정경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7호, 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7호, 201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73호, 2019.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4 제2호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 및 파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5호, 2020. 2. 2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7호, 2020. 4.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878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대기관리권역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마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3453
[별표 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3454
[별표 3]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	3456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3457

[별표 1] (개정 2020. 7. 22.)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2] <개정 2020. 7. 2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1.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분		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검사진로	통합형 (길이×너비×높이)	20m×5m×4m 이상	14m×4m×2.5m 이상
	분리형 (길이×너비×높이)	13m×5m×4m 이상	9m×4m×2.5m 이상
	구성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4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5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피트 (길이×너비×높이)		8m×0.8m×1.5m 이상	5m×0.75m×1.5m 이상

구분	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진입·진출로	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검사진로 입구부터 6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는 차대동력계 검사 전에 반드시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자동차안전 분야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 진로 중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분야 진로에만 피트를 설치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수행 전 피트 위에서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검사일,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종합검사시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
 4.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2. 검사장비
- 가. 안전검사 분야: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을 준용하고, 종합검사시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용하되, 나뭇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와 중복되는 검사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장비 및 시설
1)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공기과잉을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4) 교정용 표준가스(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1조 이상
5) 교정용 표준필터 1조(40%·60% 및 80%) 이상
6)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7)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8)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9)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10) 매연 포집시설
11)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비고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성능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와 배출가스 검사장비로 구성되고, 별도의 입·출력을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나.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는 검사 결과의 입·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제어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수행되어야 한다. 1개의 배출가스 측정기로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와 경유자동차배출가스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때에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개별 측정기는 검사장비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 방법별 검사 모드, 검사 결과의 입·출력,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 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입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장면이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 종료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전송·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
7. 부하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관능 및 기능 검사 전에 정지상태상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부하 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직무

구분	자격	직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0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구분	자격	직무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비고

1.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확보기준

- 1) 종합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 이상
- 2) 종합검사원(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한다)
 - 가)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3명 이상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4명 이상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5명 이상
2만 5천대 이상	6명 이상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2명 이상
300대 초과 800대 이하	3명 이상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4명 이상
1천500대 초과	5명 이상

[별표 3]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 요령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8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 관련 법령 다.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3.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비고: 임시교육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0. 2. 28.)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같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 마.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바.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사.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2)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공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1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2호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2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를 검사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아.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7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0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 제8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	지정취소	
거.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2호의2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너.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3호	지정취소	
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5호	지정취소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서.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 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제18호	지정취소	

편 집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정 미
행정사무관 최 진 호
정 태 균

환 경 법 전 (상)

2020년 12월 일 인쇄

2020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환 경 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 201-6394

인쇄처 :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화 044) 868-9324

비매품